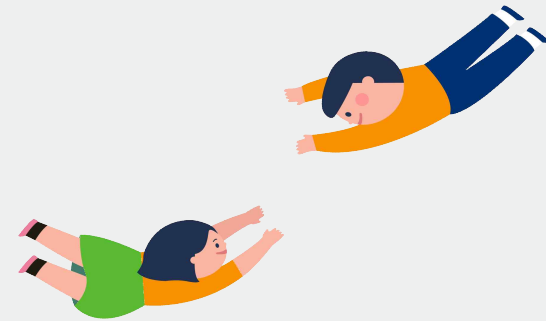


본 약관은 관계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  
종합보험(세만기형)  
(Hi2601)

**H** 현대해상



contents

- I. 약관 이용 가이드북
  - II.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 III. 상품 안내
  - IV. 보통약관
  - V. 특별약관
  - VI. 별표
-



## 주요목차

I. 약관 이용 가이드 .....	25
1. QR코드로 편리하게 안내 받기 .....	25
2.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	26
II.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	27
1. 보험계약의 개요 .....	29
2.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31
3. 보험계약 이해를 위한 주요 일반사항 .....	34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	37
5.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38
6.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	41
7. 보험용어 해설 .....	43
III. 상품 안내 .....	45
IV. 보통약관 .....	103
V. 특별약관 .....	132
VI. 별표 .....	1030
< 참고 > 인용 법·규정 .....	1210

### 약관이용꿀팁

- QR코드로 약관해설/보험금지급절차/ 전국지점 쉽게 안내받으세요~ → 25P
- 약관 가장 뒷면에서 가나다순 특약 색인으로 특약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 약관조항이 컬러화되거나 진하게 된 경우 주요 내용이므로 주의 깊게 읽어주세요!



※ 가입하신 계약관련 기타 문의사항은 당사 홈페이지([www.hi.co.kr](http://www.hi.co.kr)) 또는 고객센터 1588-5656를 통해 더욱 편리하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 거래단계별 필요한 금융꿀팁 또는 핵심정보 등은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 포털(FINE, [fine.fss.or.kr](http://fine.fss.or.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보통약관 목차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105**
  - 제1조 (목적) .....105
  - 제2조 (용어의 정의) .....105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107**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07
  - 제3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 .....107
  - 제4조 (6대질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108
  - 제4조의1 (뇌손상 등의 정의) .....110
  - 제4조의2 (수술의 정의와 장소) .....110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10
  - 제5조의2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111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12
  -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 등의 통지) .....113
  -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113
  -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113
  - 제10조 (중도인출금) .....114
  -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114
  -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115
  -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115
  -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116
  - 제15조 (주소변경통지) .....116
  -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116
  -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116
  
-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117**
  -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117
  - 제19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117
  -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118
  -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119
  
-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119**
  - 제22조 (계약의 성립) .....119
  - 제23조 (피보험자의 범위) .....119
  - 제24조 (청약의 철회) .....120
  -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120
  - 제26조 (계약의 무효) .....121

-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121
- 제28조 (보험나이 등) .....122
- 제29조 (계약의 소멸) .....122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122

-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122
-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123
- 제31조의1 (보험료의 납입체증) .....123
- 제3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124
-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124
-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125
- 제3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125

##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125

- 제3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125
- 제36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126
- 제3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126
- 제3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126
- 제39조 (해약환급금) .....126
- 제40조 (보험계약대출) .....128
- 제41조 (배당금의 지급) .....128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128

- 제42조 (분쟁의 조정) .....128
- 제43조 (관할법원) .....128
- 제44조 (소멸시효) .....128
- 제45조 (약관의 해석) .....128
- 제46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129
-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129
- 제48조 (개인정보보호) .....129
- 제49조 (준거법) .....129
-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129
- [부표1] .....130



# 특별약관 목차

## 1. 상해관련 특별약관 .....134

1-1 상해사망추가보장 특별약관 / 상해사망추가[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4

1-2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사망[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34

1-3 상해후유장해(20%이상)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20%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5

1-4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80%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6

1-5 상해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50%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7

1-6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8

1-7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9

1-8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0

1-9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1

1-10 골절진단 II(치아파절제외)(1-5급)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 II(치아파절제외)(1-5급)[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42

1-11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보장 특별약관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43

1-12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44

1-13 5대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 5대골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46

1-14 경추/흉추및요추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 경추/흉추및요추골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47

1-15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화상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화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화상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8

1-16 중증화상/부식진단 II보장 특별약관 / 중증화상/부식진단 II[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48

1-17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49

1-18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50

1-19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50

1-20 통합상해진단보장 특별약관 / 통합상해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통합상해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통합상해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1

1-21 상해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3

1-22 상해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54

1-23 상해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약관	155
1-24 상해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56
1-25 상해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57
1-26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58
1-27 상해입원일당(1-1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0일, 중환자실)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59
1-28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1인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1인실)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61
1-29 상해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62
1-30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2-3인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2-3인실)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63
1-31 상해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65
1-32 골절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골절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66
1-33 화상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화상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67
1-34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69
1-35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보장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갱신형)보장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맞춤고지 II] 보장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170

1-36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 [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74
1-37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보장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 [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78
1-38 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81
1-39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82
1-40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84
1-41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 종합병원)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86
1-42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 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 상급종합병원)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89
1-43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1
1-44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3
1-45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 [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4

1-46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6
1-47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8
1-48 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 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골절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골절수술[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00
1-49 골절수술Ⅱ(1-5급)보장 특별약관 / 골절수술Ⅱ(1-5급)[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01
1-50 5대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 5대골절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02
1-51 화상수술보장 특별약관 / 화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화상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화상수술[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04
1-52 심한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 심한상해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05
1-53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06
1-54 상해흉터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해흉터성형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08
1-55 자동차사고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209
1-56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보장 특별약관 /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10
1-57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12
1-58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13
1-59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연간1회	

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15
1-60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16
1-61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18
1-62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19
1-63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20
1-64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22
1-65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24
1-66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25
1-67 상해수술(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27
1-68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29
1-69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30
1-70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2

1-71 특정마취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마취합병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34

1-72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5

1-73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9

**2. 질병관련 특별약관 .....243**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 질병사망추가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맞춤고지Ⅱ] 특별약관 / 질병사망추가[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3

2-2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사망[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3

2-3 3대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 3대질병사망[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4

2-4 질병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6

2-5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50%이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7

2-6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80%이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8

2-7 3대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 3대질병후유장해(80%이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9

2-8 암진단Ⅱ(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Ⅱ(유사암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51

2-9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Ⅱ(유사암제외)[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3

2-10 유사암진단Ⅱ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진단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진단Ⅱ

[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진단Ⅱ[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6

2-11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고액치료비암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58

2-12 여성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여성특정암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59

2-13 남성생식기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남성생식기암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61

2-14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63

2-15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68

2-16 재진단암진단Ⅱ보장 특별약관 / 재진단암진단Ⅱ[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73

2-17 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재진단암진단Ⅱ[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77

2-18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특별약관 /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82

2-19 중증갑상선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중증갑상선암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85

2-20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87

2-21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90

2-22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92

2-23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특암)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특암)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95

2-24 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암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99

2-25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301

2-26 양성뇌종양진단보장 특별약관 / 양성뇌종양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303

2-27 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출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04
2-28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졸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뇌졸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뇌졸중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4
2-29 뇌혈관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5
2-30 뇌혈관질환( I )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 I )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 I )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 I )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6
2-31 뇌혈관질환(II)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 II)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II)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II)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7
2-3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8
2-33 허혈심장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 허혈심장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허혈심장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허혈심장질환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9
2-34 심혈관질환(특정 I , I49제외)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 , I49제외)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 , I49제외)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 , I49제외)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0
2-35 심혈관질환( I49)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 I49)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 I49)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 I49)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1
2-36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2

2-37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3
2-38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4
2-39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16
2-40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16
2-41 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17
2-42 중증폐렴진단보장 특별약관 / 중증폐렴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18
2-43 급성신우신염진단보장 특별약관 / 급성신우신염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12
2-44 특정패혈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패혈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20
2-45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21
2-46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23
2-47 항암방사선치료 II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26
2-48 항암방사선치료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28
2-49 항암방사선치료 II(치료당)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31
2-50 항암방사선치료 II(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33

2-51 항암방사선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36
2-52 항암방사선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38
2-53 항암약물치료 II 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42
2-54 항암약물치료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44
2-55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47
2-56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50
2-57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354
2-58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56
2-59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60
2-60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63
2-6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67

2-6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372
2-6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76
2-6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81
2-6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86
2-6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91
2-6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02
2-68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3
2-69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6
2-70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8
2-71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23
2-72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426
2-73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28

2-74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31
2-75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36
2-76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성의약품)치료(연간1회한)(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성의약품)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42
2-77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47
2-78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49
2-79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54
2-80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59
2-81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61
2-82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66
2-83 전이암항암약물치료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약물치료[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67
2-84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69
2-85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73
2-86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	

절)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77
2-87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78
2-88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 10일면책)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 10일면책)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81
2-89 말기간경화진단보장 특별약관 / 말기간경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2
2-90 말기폐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 말기폐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3
2-91 말기신부전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말기신부전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4
2-92 만성간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 만성간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5
2-93 만성신부전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만성신부전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6
2-94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7
2-95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8
2-96 크론병진단보장 특별약관 / 크론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8
2-97 다발경화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다발경화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9
2-98 만성당뇨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90
2-99 특정감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특정감염병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91
2-100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보장 특별약관 /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92
2-101 대상포진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 대상포진눈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31
2-102 통풍진단보장 특별약관 / 통풍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94
2-103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7.5%이상)[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495
2-104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497
2-105 당뇨인슐린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당뇨인슐린치료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498
2-106 고혈압(원발성)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고혈압(원발성)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499
2-107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00
2-108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02
2-109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03
2-110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맞춤고지 II] /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505
2-111 특정천공진단 보장 특별약관 / 특정천공진단[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506
2-112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연간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507
2-113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보장 특별약관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509
2-114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12
2-115 결핵진단보장 특별약관 / 결핵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15
2-116 위 · 십이지장 ·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 위 · 십이	

지장 ·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16
2-117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장(최초1회한) 특별약관 /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장(최초1회한)[맞춤고지 II] 특별약관 .....	517
2-118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18
2-119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20
2-120. 암주요치료비 II(연간1회한,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 II(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 II(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 II(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21
2-121. 암주요치료비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29
2-122.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36
2-123.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41
2-124.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주요	



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46
2-125.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49
2-126.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52
2-127.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56
2-128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59
2-129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62
2-130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63
2-131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06
2-132 혈전용해치료비 II(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혈전용해치료비 II(최초1회한)[맞춤	

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68
2-133 혈전용해치료비 III(최초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보장 특별약관 / 혈전용해치료비 III(최초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71
2-134 혈전용해치료비 II(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혈전용해치료비 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72
2-135 혈전용해치료비 III(연간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보장 특별약관 / 혈전용해치료비 III(연간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73
2-136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574
2-137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577
2-138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81
2-139 질병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84
2-140 질병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85
2-141 질병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87
2-142 질병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88
2-143 질병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90
2-144 질병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91
2-145 질병입원일당(1-1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0일,중환자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93
2-146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94
2-147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96
2-148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598
2-149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00
2-150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602
2-151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605
2-152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보장 특별약관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09
2-153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612
2-154 심뇌혈관질환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15
2-155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16
2-156 질병수술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619
2-157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22
2-158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25
2-159 특정감염병 II 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 특정감염병 II 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28
2-160 독감(인플루엔자)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 독감(인플루엔자)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30
2-161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631
2-162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보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갱신형)보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맞춤고지 II]보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	633
2-163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637
2-164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	642
2-165 질병수술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646
2-166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648

2-167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49
2-168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 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51
2-169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 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 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 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 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53
2-170 질병수술Ⅳ(1-5종)(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Ⅳ(1-5종)(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Ⅳ(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Ⅳ(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55
2-171 암수술보장 특별약관 / 암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57
2-172 암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수술[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60
2-173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63
2-174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66
2-175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69
2-176 특정질병수술(남성)보장 특별약관 / 특정질병수술(남성)[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70
2-177 특정질병수술(여성)보장 특별약관 / 특정질병수술(여성)[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71

2-178 간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간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73
2-179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 충수염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74
2-180 추간판장애수술보장 특별약관 / 추간판장애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75
2-181 심뇌혈관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76
2-182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78
2-183 뇌혈관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0
2-184 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허혈심장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1
2-185 혈전제거치료Ⅱ(연간1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 혈전제거치료Ⅱ(연간1회한, 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혈전제거치료Ⅱ(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혈전제거치료Ⅱ(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82
2-186 관상동맥우회술(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관상동맥우회술(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4
2-187 관상동맥성형술(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관상동맥성형술(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5
2-188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연간1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6
2-189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연간1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7
2-190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1회한)보장 특별약관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8
2-191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보장 특별약관 /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9

2-192 여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여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691
2-193 120대질병수술II보장 특별약관 / 120대질병수술II[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693
2-194 120대질병수술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120대질병수술II[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96
2-195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보장 특별약관 /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맞춤고지I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99
2-196 5대기관질병수술(관혈/비관혈)(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5대기관질병수술(관혈/비관혈)(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00
2-197 당뇨고혈압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당뇨고혈압질환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03
2-198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04
2-199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06
2-200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연간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10
2-201 질병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13
2-202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16
2-203 암직접치료통원일당보장(종합병원)특별약관 / 암직접치료통원일당보장(종합병원)[맞춤고지II]특별약관	719
2-204 보험료환급/지원(6대질병진단)특별약관	722
2-205 보험료환급(6대질병진단)특별약관 / 보험료환급(6대질병진단)[맞춤고지II]특별	

약관	725
2-206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특별약관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맞춤고지II]특별약관	729
2-207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특별약관 /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II]특별약관	731
2-208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33
2-209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37
2-210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39
2-211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41
2-212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43
2-213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45
2-214 질병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질병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46
2-215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47
2-216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49

2-217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51
2-218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753
2-219 상·뇌혈관질환(특정 II)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상·뇌혈관질환(특정 II)장애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55
2-220 2대질병입원중특정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2대질병입원중특정합병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56
2-221 질병수술(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58
2-222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60
2-223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 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 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62
2-224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64
2-225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상급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상급종합병원)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66
2-226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종합병원)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68
2-227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70
2-228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상급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상급종합병원)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72
2-229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	

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종합병원)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74
2-230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76
2-231 상·뇌혈관질환(특정 III)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90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 상·뇌혈관질환(특정 III)특정재활치료 (1일1회, 연간90회한, 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777
2-232 특정질환로봇수술(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특정질환로봇수술(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781
2-233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784
2-234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786
2-235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787
2-236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788
2-237 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00
2-238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13
2-239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24
2-240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36
2-241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41
2-242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II(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II(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46
2-243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VII(1-180일, 전환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VII(1-180일, 전환용)[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50
2-244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 /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54
2-245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58

2-246 암주요치료비IV(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66
2-247 암주요치료비IV(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V(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875
2-248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883
2-249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889
2-250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894
2-251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903
2-252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912

2-253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914
2-254 치매MRI·CT·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917
2-255 특정치매약제치료(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921
2-256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중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24
2-257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중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 (치료당,36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28
2-258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보장 특별약관	932
2-259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935
2-260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937

### 3.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941

3-1 5대장기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5대장기이식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41
3-2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각막이식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42
3-3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II, 수술후감염,기타감염)수술 보장 특별약관 /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II, 수술후감염,기타감염)수술 [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43
3-4 김스치료보장 특별약관 / 김스치료[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44
3-5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보장 특별약관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45
3-6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47
3-7 6대인공관절치환수술(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6대인공관절치환수술(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49
3-8 보형료납입면제대상보장 특별약관 / 보형료납입면제대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951
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56
3-10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57
3-11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59
3-12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61
3-13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63
3-14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64
3-15 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66
3-16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68
3-17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69
3-18 무릎관절연골손상(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무릎관절연골손상(중증)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970
3-19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도이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도이상)	

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971
3-20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973
3-21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976
3-22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 급여)(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978

#### 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981

4-1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보장 특별약관 .....	981
4-2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보장 특별약관 .....	984
4-3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	988
4-4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	989
4-5 강력범죄피해보장 특별약관 .....	990
4-6 폭력피해보장 특별약관 .....	991
4-7 가족법률비용손해 II (의료과외)보장 특별약관 .....	993

#### 5.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 V(가족) .....998

#### 6. 기타 특별약관 .....1019

6-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	1019
6-2 특정 신체부위 · 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도특별약관 .....	1019
6-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	1021

6-4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	1022
6-5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제도특별약관 .....	1022
6-6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	1023
6-7 전자서명 제도특별약관 .....	1023
6-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제도특별약관 .....	1023
6-9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 특별약관 .....	1025
6-10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 .....	1027
6-11 보험금 선지급 제도특별약관 .....	1028



## 별표 목차

---

[별표1] 장해분류표 .....	1032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	1063
[별표2] 골절 분류표 .....	1045	[별표25] 급성신우신염 분류표 .....	1064
[별표3] 골절(1-5급) 분류표 .....	1045	[별표26] 말기폐질환 분류표 .....	1064
[별표4-1] 골절 등급분류 기준표1 .....	1046	[별표27] 말기신부전증 분류표 .....	1065
[별표4-2] 골절 등급분류 기준표2 .....	1048	[별표28]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	1066
[별표5] 5대골절 분류표 .....	1051	[별표29] 특정감염병 분류표 .....	1067
[별표6]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 분류표 .....	1051	[별표30] 대상포진 분류표 .....	1068
[별표7] 화상 분류표 .....	1052	[별표31] 대상포진눈병 분류표 .....	1068
[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	1052	[별표32] 통풍 분류표 .....	1069
[별표9] 심한상해 분류표 .....	1053	[별표33] 당뇨병 분류표 .....	1069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	1054	[별표34] 결핵 분류표 .....	1070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	1055	[별표35] 특정감염병 II 분류표 .....	1071
[별표12] 간질환 분류표 .....	1056	[별표36] 1-5종수술 III 분류표 .....	1072
[별표13] 26대질환 II 분류표 .....	1056	[별표37] 특정질환(남성) 분류표 .....	1076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	1058	[별표38] 특정질환(여성) 분류표 .....	1077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이상의 신생물 분류표 .....	1058	[별표39] 비급여대상 .....	1079
[별표16]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	1059	[별표40] 시각질환(백내장, 녹내장) 분류표 .....	1081
[별표17] 여성특정암 분류표 .....	1060	[별표41] 치핵 분류표 .....	1081
[별표18] 남성생식기암 분류표 .....	1060	[별표42] 충수염 분류표 .....	1082
[별표19] 양성뇌종양 분류표 .....	1061	[별표43] 탈장 분류표 .....	1082
[별표20] 뇌출혈 분류표 .....	1061	[별표44] 추간판장애 분류표 .....	1083
[별표21] 뇌졸중 분류표 .....	1062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	1083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	1062	[별표46] 당뇨고혈압질환 분류표 .....	1084
[별표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	1063	[별표47]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 .....	1085

[별표48]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	1089
[별표49] 간경변증 분류표	1089
[별표50] 만성특정폐질환 분류표	1090
[별표51] 여성생식기질환 분류표	1090
[별표52] 요실금 분류표	1091
[별표53] 요실금수술 대상 수가코드	1092
[별표54] 24대질환 분류표	1092
[별표55] 다발성10대질환 분류표	1095
[별표56] 58대질환 II 분류표	1096
[별표57] 5대기관질환 분류표	1101
[별표58] 3대질환 분류표	1103
[별표59]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1104
[별표60]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1104
[별표61]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1105
[별표62]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행정소송)	1105
[별표63]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1106
[별표64] 특정바이러스질환 분류표	1106
[별표65] 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1107
[별표66]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1107
[별표67]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1108
[별표68] 특정부위 분류표	1109
[별표69] 특정질환 분류표	1110
[별표70] 뇌혈관질환(Ⅰ) 분류표	1112
[별표71] 뇌혈관질환(Ⅱ) 분류표	1112
[별표72] 심혈관질환(특정Ⅰ, 149제외) 분류표	1113
[별표73] 심혈관질환(특정Ⅱ) 분류표	1113
[별표75]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1114
[별표76] 폐렴 분류표	1114

[별표77] 특정폐혈증 분류표	1115
[별표78]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	1115
[별표79]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분류표	1116
[별표80] PSI지표 점수 산정	1117
[별표81] 갑상선관련질환 분류표	1118
[별표82] 심혈관질환(149) 분류표	1119
[별표83]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 분류표	1120
[별표84] 뇌심장질환 분류표	1120
[별표85]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1121
[별표86]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1122
[별표87]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대상 수가코드	1122
[별표88]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대상 수가코드	1123
[별표89]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대상 수가코드	1123
[별표90]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124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1124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1125
[별표91]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126
[별표9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1126
[별표9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1127
[별표9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1129
[별표92-1] 1-5종수술Ⅳ 분류표	1129
[별표93]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1134
[별표94]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1135
[별표95]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 수가코드	1136
[별표96] 주요관절손상 분류표	1137
[별표97]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대상 수가코드	1139
[별표98]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140
[별표98-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	1141

[별표98-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수술 .....	1142
[별표99]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1142
[별표100]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1143
[별표100-1]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분류표 .....	1143
[별표101]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환(2대) 분류표 .....	1144
[별표102]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환(3대) 분류표 .....	1144
[별표103]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환(5대) 분류표 .....	1145
[별표104]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환(4대) 분류표 .....	1146
[별표105] 특정암 분류표 .....	1146
[별표106]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 .....	1147
[별표107]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1148
[별표108]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1159
[별표109]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1163
[별표110]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 분류표 .....	1163
[별표111] 급어 특정중증치료(4종) 대상 수가코드 .....	1164
[별표112] 특정감염질환 분류표 .....	1165
[별표113] 특정외상성뇌손상 분류표 .....	1168
[별표114] 특정외상성뇌출혈 분류표 .....	1169
[별표115] 특정외상성장기손상 분류표 .....	1169
[별표116] 유사암 분류표 .....	1170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	1171
[별표118]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	1171
[별표119] 특정시술치료(급어) 대상 수가코드 .....	1172
[별표120] 특정순환계질환 I 분류표 .....	1176
[별표121] 삼뇌혈관질환(특정 II) 분류표 .....	1177
[별표122]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분류표 .....	1177
[별표123]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	1178
[별표124] 폐렴 II 분류표 .....	1179

[별표125] 심부전 분류표 .....	1179
[별표126] 삼뇌혈관질환(특정 III) 분류표 .....	1180
[별표127]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분류표 .....	1180
[별표128]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분류표 .....	1181
[별표129]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 분류표 .....	1181
[별표130] 뇌동맥류(비파열성) 분류표 .....	1182
[별표131] 급어 뇌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 .....	1182
[별표132] 급어 심장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 .....	1183
[별표133]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	1183
[별표134]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	1185
[별표135]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 분류표 .....	1187
[별표136] 심혈관질환(심근병증) 분류표 .....	1188
[별표137] 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	1188
[별표137-1] 급어 혈관색전술(동맥류) 대상 수가코드 .....	1189
[별표138] 급어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대상 수가코드 .....	1189
[별표139-2] 급어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 .....	1191
[별표139-3] 항혈소판제(아스피린이외) 분류표 .....	1191
[별표140] 급어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 .....	1191
[별표141] 8대중대질환 분류표 .....	1192
[별표142] 11대중대질환 분류표 .....	1193
[별표143] 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성분명 및 의약품명 분류표 .....	1194
[별표144] 자궁특정질환 분류표 .....	1194
[별표145] 갑상선특정질환 분류표 .....	1195
[별표147] 무릎관절증 분류표 .....	1196
[별표148] 통합상해 분류표 .....	1197
[별표149] 특정마취합병증 분류표 .....	1199
[별표150] 고혈압(원발성) 분류표 .....	1200
[별표151]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분류표 .....	1200

[별표152]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분류표 .....	1201
[별표153]특정천공 분류표 .....	1202
[별표154]특정마취(급여) 의료행위 분류표 .....	1202
[별표155]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	1203
[별표156]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	1204
[별표157]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	1205
[별표158]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	1206
[별표159]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	1207
[별표160]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	1207
[별표161]심장질환 분류표 .....	1208
[별표162]치매 분류표 .....	1208
[별표163]치매CDR척도검사 분류표 .....	1209
[별표164]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 .....	1209

# 현대해상 약관 이용 가이드

## 보험약관이란?





**보험약관**은 가입하신 보험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내용 및 조건 등을 미리 정하여 놓은 계약조항으로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약철회, 계약취소, 보험금 지급 및 제한사항 등 중요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담겨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한눈에 보는 현대해상 약관 구성

약관 이용 가이드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상품안내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별표 및 인용 법·규정
약관을 쉽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b>약관의 구성, 쉽게 찾는 방법</b>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b>지침서</b> 입니다.	다소 생소한 보험약관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b>계약 주요내용 및 유의사항</b> 등을 <b>시각적 방법</b> 을 이용하여 <b>간단 요약한 약관</b> 입니다.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가입하신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b>보통약관</b> : 기본계약을 포함한 공통 사항을 정해놓은 기본 약관</li> <li><b>특별약관</b> : 보통약관에서 정한 사항 외 선택 가입한 보장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 약관</li> </ul>	약관 이해를 돕기 위한 <b>별표, 관련 법규</b> 등을 안내한 자료입니다.

## 더 자세하고 알기 쉬운 설명을 위해 참고하세요!

 <b>【 유의사항 】</b> 약관 해당 조항에 덧붙여 계약자가 유의하여 할 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b>【 용어해설 】</b> 약관 내용과 관련된 어려운 법률·금융 용어를 쉽게 풀어 안내해 드립니다.	 <b>【 예시안내 】</b> 도표, 그림, 계산법 활용 등의 예시를 통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해 드립니다.	 <b>【 관련법규 】</b> 약관에서 인용한 법률 조항 및 규정을 자세하게 안내해 드립니다.
---	---	--	--

## QR코드로 편리하게 안내 받기

**스마트폰**으로 해당 **QR코드**를 **스캔**하면 상세내용 등을 손쉽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약관해설 영상	보험금 지급절차	전국 지점



## 약관의 핵심 체크항목 쉽게 찾기

※ 보통약관의 조항입니다.

### 1. 보험금 지급에 관해 알려주세요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107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110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112



### 2. 청약을 철회하고 싶어요

제24조 (청약의 철회) .....	120
---------------------	-----



### 3. 어떤 경우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나요?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120
----------------------------	-----



### 4.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제26조 (계약의 무효) .....	121
---------------------	-----



### 5. 계약 전 유의할 사항이 있나요?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	117
------------------------	-----



### 6. 계약 후 유의할 사항도 궁금해요

제19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117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118



### 7. 보험료 납입이 연체 되었어요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124
--	-----



### 8. 계약을 부활시키고 싶어요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125
--	-----



### 9. 계약 해지와 해약환급금에 대해 알려주세요

제3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125
제39조 (해약환급금) .....	126



### 10. 긴급자금이 필요해요

제40조 (보험계약대출) .....	128
---------------------	-----





**H** 현대해상



##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

1. 보험계약의 개요
  2.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3. 보험계약 이해를 위한 주요 일반사항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5.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6. 자주 발생하는 민원 예시
  7. 보험용어 해설
-





# 1. 보험계약의 개요



## 상품의 주요 특징



### 상품개요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민기형)(H2601)은  
상해, 질병,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상품구조

구분	1종 (일반형)	2종 (납입면제형)	3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종형	일반심사	일반심사, 일반심사(보험료 현명한납입형), 건강고지 II (6년), 건강고지 II (7년) 건강고지 II (8년), 건강고지 II (9년) 건강고지 II (10년)	
상품 형태	보장적립구분형		순수보장형
적용 이율	보장부분	2.7% (단, 독립특약 2.5%)	
	적립부분	보장성 공시이율 V (단, 최저보증이율은 0.3%)	해당없음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또는 6대질병 중 하나로 진단시	상해 또는 질병으로 80%이상후유장해 발생시 또는 6대질병 중 하나로 진단시 또는 중대한특정장해수술시

\* 6대질병: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폐질환,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증



## '상품명'으로 상품의 특징 이해하기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	
1종	일반형
2종	납입면제형
3종	해약환급금미지급형 I

<b>무배당</b>	계약자에게 배당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b>종합보험</b>	상해, 질병, 비용손해, 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b>세만기형</b>	납입기간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며, 납입기간 종료 이후에도 만기까지 보장됩니다.
<b>일반형</b>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운영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b>납입면제형</b>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는 상품입니다.
<b>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b>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료 납입완료 후에는 표준형 해약환급금 대비 50%를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01  
상품종류

보장성보험

02  
해약환급금

해약환급금미지급형  
<3종>

03  
보험료 변경

비갱신형

05  
예금자보호 제도

예금자보호 대상 상품

## 2.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유의사항

### 1.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이 보험에는 **면책기간**, **감액지급**, **보장한도** 및 **자기부담금**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이 부가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품안내 및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면책기간

##### 면책기간

##### 보험금 미지급

이 보험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기간(면책기간)**이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면책기간 적용 담보(예시) >

담보명	면책기간
암진단 II (유사암제외)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항암방사선치료 II	가입 후 90일간 보장 제외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 7.5%이상)(갱신형)	가입 후 1년간 보장 제외

※ 세부사항은 상품안내의 '1.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중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감액지급

##### 감액지급

##### 50% [1년 미만]

이 보험에는 **일정기간 보험금이 일부만 지급(감액지급)**되는 담보가 있습니다.

#### < 감액지급 적용 담보(예시) >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유사암진단 II	가입 후 1년미만 가입금액 50%지급
뇌졸중진단	가입 후 1년미만 가입금액 50%지급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가입 후 1년미만 가입금액 50%지급

※ 세부사항은 상품안내의 '1.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중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보장한도

##### 보장한도

##### 최초1회한, 입원일 한도

이 보험에는 **보험금 지급 한도**가 설정된 담보가 있습니다.

#### < 보장한도 적용 담보(예시) >

담보명	감액기간 및 비율
뇌졸중진단	최초1회에 한하여 보장
상해입원일당(1-180일)	1일째 입원일부터 180일 한도로 보장

※ 세부사항은 상품안내의 '1.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중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자기부담금 차감

##### 자기부담금

##### 차감 후 지급

이 보험에는 **일정금액 또는 일정비율**의 자기부담금을 차감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 < 자기부담금을 차감하는 담보(예시) >

담보명	자기부담금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변호사비용 : 10만원
일상생활중배상책임 V (가족)(누수사고포함)(갱신형)	대인/대물(누수사고)/대물(누수사고 제외) 사고로 구분하여 <b>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b>
일상생활중배상책임 V (가족)(누수사고제외)(갱신형)	대인/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로 구분하여 <b>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b>

※ 세부사항은 상품안내의 '1.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중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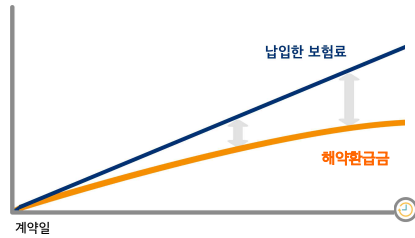
## 2.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

有

#### < 1종(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 >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보험회사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며,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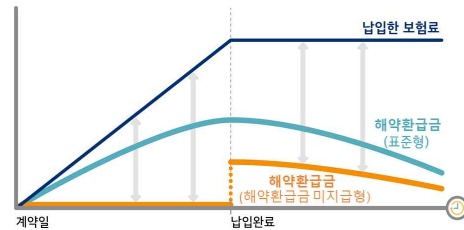


### 해약환급금

0원  
[납입기간 중 해지시]

#### < 3종(해약환급금미지급형 I) >

보험계약자가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이 없습니다.** 다만,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가입기 준의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3. 갱신시 보험료 인상 가능성

### 보험료갱신형



이 보험에는 **갱신시 보험료가 변동**되는 갱신형 계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갱신형 계약은 **갱신할 때마다** 연령의 증가, 위험률 변동 등으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는 계약 >

질병후유장해(갱신형), 암진단 II (유사암제외)(갱신형), 뇌졸중진단(갱신형) 등 담보명에 '**갱신형**' 이 포함된 보장 계약

## 4. 실손보상형 담보

### 실손형 담보 [중복가입 부적절]

비례  
보상

이 보험에는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실손보상)**하는 담보가 있습니다.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2개 이상의 계약에 **중복 가입**하더라도 **실제 발생한 손해(비용)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 가입시 비례 보상)

#### < 실손보상형 담보(예시) >

가족화재보험, 의료사고법률비용 등

※ 세부사항은 상품안내의 '1.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중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5.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상품의 주요 특성

### 보장성보험

### 보장성보험 [사망·상해·질병 등]



- 이 보험은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이며, 저축이나 연금수령을 목적으로 가입하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 안기 또는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보다 환급금이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금리연동형 보험

### 금리연동형 [적용금리 변동]



#### < 1종(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 >

- ① 적립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 계약자적립액 산출**에 적용되는 이율로 **매월 변동**됩니다.
- ② 적립부분 적용이율은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에서 계약체결·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위험보장을 위한 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 ③ 이 보험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입니다.  
\*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 적용이율
- ④ 해약환급금 미지급형은 적립부분이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입니다.

## 건강고지형

### 건강고지형



- ① 이 보험은 **건강한 소비자**가 일반고지형 대비 추가로 회사에서 운영하는 계약 전 알릴의무사항을 통해 확인한 건강상태에 따라 가입할 수 있으며, 동일한 보장의 **일반고지형 대비**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상품입니다.
- ② 건강고지형 상품 가입을 위해 추가 운영하는 알릴사항도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예금자보호제도에 관한 사항

### 예금자보호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의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3. 보험계약 이해를 위한 주요 일반사항

#### 1. 청약철회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제1회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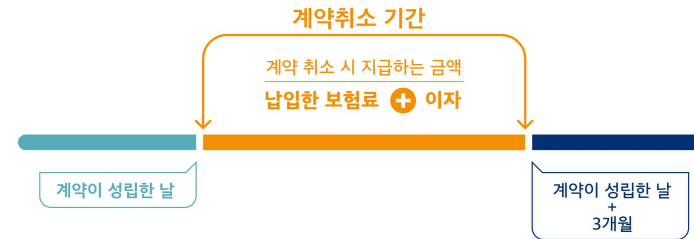
다만, 아래의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운금 용소비자가 체결한 계약
2.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계약



#### 2. 계약취소

계약체결시 보험약관과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받지 못한 때 또는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지급합니다.



#### 3.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장하는 계약에서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 만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 사유로 한 계약의 경우
-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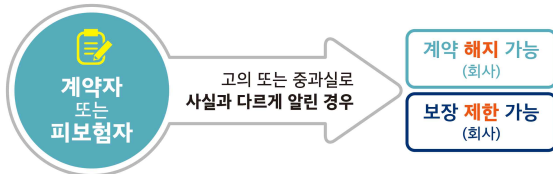
#### 4. 계약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는 보험에 가입하실 때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자필서명(전자서명 포함)을 하셔야 합니다.  
단,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음성녹음으로 대체합니다.



##### ※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민원 사례** A씨는 고지혈증, 당뇨병으로 90일간 투약처방 받은 사실을 보험설계사에게만 알려주고, 청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채 00질병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 이후 1년간 당뇨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아 보험금을 청구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이 해지됨과 동시에 보험금 지급이 어려움을 안내

**법률 지식**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59837 ]  
일반적으로 보험설계사는 독자적으로 보험회사를 대리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나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

#### 5. 계약후 알릴 의무 및 위반시 효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아래와 같은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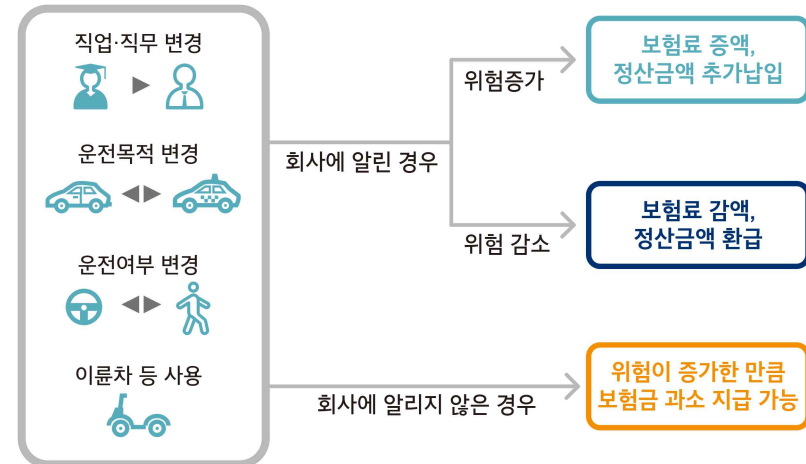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변경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 ※ 알릴의무 위반시 효과

회사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피보험자의 직업·직무 변경 등으로

- ① 위험이 감소한 경우 보험료를 감액하고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리며,
- ② 위험이 증가한 경우 보험료가 증액되고 정산금액의 추가 납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6. 보험료의 납입연체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자가 제2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7일)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고, 그 때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 계약이 해지됩니다.



### 7. 해지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보험료 납입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직업, 직종 등에 따라 승낙여부를 결정하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거나 보장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8. 보험계약대출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환하지 않은 보험계약대출금 및 이자는 해약환급금 또는 보형금에서 차감될 수 있으며,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 환급금 내역서(예시) >

해약환급금	대출금액			실 수령액
	원금	이자	계	
1,000 만원	500 만원	5 만원	505 만원	495 만원

해약환급금  
1,000만원

-

대출금 500만원  
이자 5만원

=

실수령액  
495만원

### 9. 보험금의 지급절차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신체손해에 관한 보험금은 3영업일, 재물손해와 배상책임손해에 대한 보험금은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다만,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또는 확인이 이루어져 지급기일 초과가 예상되거나,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보험수익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급보형금으로 지급합니다. 만약 지급기일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소정의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4.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 안내



### ○ 보험금 청구 소멸시효

- 보험금 청구서류를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접수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상법 제662조)

### ○ 보험금 지급심사 위탁

- 보험업감독규정[금융기관의 업무위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은 금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업무를 위탁하거나 제3자의 업무를 수탁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 손해사정사 선임 및 조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을 위해 사고 현장조사, 병원 방문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보험업법에 따라 공인된 손해사정법인에게 조사 업무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 ※ 손해사정법인 : 보험업법에 따라 공정한 보험금 지급심사에 대한 인가를 받은 업체

### ○ 장해진단서 제출시 유의 사항

- 장해진단서 제출의 경우에는 가능한 3차 의료기관에서의 진단을 요청드리며, 진단 전에 보상 담당자와 협의 하시는 것이 신속한 보험금 심사에 도움이 됩니다.

(3차 의료기관 : 500병상 이상의 대학병원, 종합병원)

- 장해상태에 대하여 의료 재심사가 이루어 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의료심사

- 상해 질병보험 등에서는 약관에 따른 보험금 지급여부와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진단서, 치료관련 기록 등 제출하여 주신 서류를 기초로 해당 과별 전문의에 의한 의료심사가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보험회사가 부담합니다.

### ○ 손해/생명 보험사간 치료비 분담 지급 (비례보상 적용)

- 상해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 실비를 보상하는 상품의 경우 다른 보험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타보험사의 가입사항은 보험협회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

### ○ 실손형보험의 비례보상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은 다른 보험 회사의 가입여부에 따라 비례보상원칙을 적용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 「실제 발생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는 실손형 보험」이란 실손의료비보험, 자동차사고와 관련된 변호사선임비용·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 자동차보험 중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다른 자동차 운전 및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 벌금을 보상하는 보험, 일상생활배상책임을 보상하는 보험, 민사소송법률비용 및 의료사고법률비용을 보상한 보험, 출원원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 등을 말합니다.

### ○ 보험금 지급안내 및 심사 절차 조회 방법

-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보험금 지급안내(서면, 전자우편, 문자전송)가 이루어집니다.
- 보험금 지급심사 결과 보험금이 지급거절 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부지급 사유 및 근거를 제시합니다.
-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약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 현대해상(주)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계약내용 및 사고처리 진행경과 및 지급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보험금 부지급 결정 및 산정내역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면 상담하여 드립니다.
- ※ 대표전화 : 1588-5656

## 5. 보험금 청구시 구비서류 안내

※ 다음의 서류 이외에도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상담당자가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아래 서류들은 다른 서류로 대체될 수 있으니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확인은 고객센터 1588-5656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간단정리 ]

구분	진단서	입원/수술/통원확인서	진단확인서류	공통
사망	●(사망진단서)			청구서 신분증
장해	●(장해진단서)			
진단	●		●(검사결과지 등)	
입원/수술/실손	△	●	●	



### 1. 공통 구비서류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공통 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공통	- 보험금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수익자 계좌번호 - 청구인 신분증 사본(앞면)	당사 양식
	<b>가족관계 확인 필요시</b> (배우자/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 가족관계 확인 서류 (가족/혼인관계증명서)
	<b>대리인청구시</b>	- 위임장 원본(인감날인) -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보험금청구권자의 개인(신용)정보동의서



### 2. 질병/상해관련보장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구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실손	공통	- 입통원 진료비 영수증(처방시 약제비 영수증) ※ 카드매출전표 및 소득공제 확인용 '진료비납입확인서' 는 불가함
	입원	- 진단서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입퇴원확인서
	통원	- 처방전 ※ 처방전에 질병분류코드 미기재 시 추가증빙서류(진단서, 소견서 등)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 비급여 의료비 발생 시 필수 제출
진단금	공통	- 진단서(진단명, 질병분류코드 포함)
	암	- 조직검사결과지 · 백혈병 : 골수검사지 및 혈액검사결과지 · 뇌/폐/췌장암 : 방사선 판독결과지 (조직검사 못할 경우) · 간 : (조직검사 못할 경우) 방사선 판독결과지 및 혈액검사 결과지
	뇌질환	- CT / MRI / MRA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질환	- 각종 검사결과지(심전도검사, 심근효소검사, 관상동맥조영술, 심초음파 등)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골절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진단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 1 (예 : 의사소견서, 통원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수술	- 진단명(질병분류코드), 수술명, 수술일자가 포함된 서류 중 택 1(예 : 수술확인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킵스치료	1. 킵스 시행여부 확인 가능한 진단서 2. (토킵스 시행일) 진료차트 및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의료기관
치아	- 치과치료확인서 등 치료대상 치아별 치료내용 포함된 서류	의료기관 당시양식
저체중아입원일당 / 신생아질병 입원일당	1.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입퇴원확인서(진단명 포함) - 진료확인서(진단명 및 입원기간 포함) - 진단서(입원기간 포함) ※ 인큐베이터 사용 시 해당기간 명시 2. (저체중아 입원일당 청구시) 출생증명서	의료기관
유산/사산	- 유산시 : 진단서 - 사산시 : 사산증명원	의료기관
장해	1. 아래의 서류 중 택 1 - 후유장해진단서 - 일반진단서(일반진단서로 대체 가능한 장애인 경우) 2. 일반진단서 제출시 필요 서류 - 만성신부전 혈액투석 :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 기재 - 사지절단 : 절단부위, 환자상태 기재, X-ray 필름 첨부 - 비장, 신장적출 : 비장, 신장적출 수술일 기재	의료기관
사망	1. 아래의 서류 중 택 1 - 사망진단서(사체감안서) 원본 - 사망진단서(사체감안서) 사본(원본대조필포함) & 피보험자 기본증명서(사망사실 기재)	의료기관 주민센터
	2.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 요청서류 - 상속관계 확인서류(예시 : 가족 / 혼인관계증명서 등) - 상속인이 다수시 : 상속인 각각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 보험회사 (위임장)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자동차사고 부상/ 자동차사고 상해진단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을 받은 경우 : 해당 자동차보험의 보상처리확인서	보험회사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한 경우 · 자동차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상해등급을 판단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경찰서  병원



### 3. 비용손해관련보장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 외에도 추가/대체 서류를 요청 드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보험금 종류별 추가 서류

##### <자동차사고비용>

구 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긴급비용	1. 교통사고 처리확인서 2. 견인비 영수증 또는 긴급출동서비스 내역서 3. 수리비 견적서	보험회사 정비공장 견인처
안심지원금	- 대인/대물/자손 보험금 지급결의서 중 택 1	보험회사
대인할증 지원금	- 대인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회사
교통사고 처리비용	- 대인 II 또는 대물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회사
자기차량 부분/전부 손해위로금	- 자차 보험금 지급결의서	보험회사
	- 전손시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① 자동차등록원부 또는 자동차말소증명원 ② 수리비 견적서 ③ (도난시) 도난사실확인원	보험회사

구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형사합의 지원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교통사실확인원 - 피해자 진단서 또는 사망진단서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청구시 아래의 서류 추가 제출 ① 형사합의서 원본(형사합의금 기재, 경찰 또는 검찰 원본대조필 날인시 원본인정) ② 형사합의금이 입금된 내역	경찰서/의료기관  경찰서/금융기관
벌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벌금납부 영수증 -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 판결문	경찰서 법원
방어비용	- 공소 제기시(약식기소 포함) ① 교통사고사실확인원 ② 약식명령문 또는 법원 판결문	경찰서 법원
	- 구속시 ①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②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법원 구치소
변호사선임비용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판결문, 공소장, 변호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 구속영장 또는 사건처분증명원 - 재소 또는 출소증명원	경찰서/법원 구치소 변호사사무소
면허정지/ 취소위료금	- 교통사고사실확인원 - 운전경력증명서 - 면허정지확인원(교육 이수 후) - 면허취소확인원	경찰서

★ 당사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별도 서류 없이 당사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기타비용>

구분	구비서류	제공/발급처
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강력범죄피해(사망제외) 폭력피해(사망제외)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진단서, 치료비명세서	경찰서 의료기관



4. 재물손해/배상책임관련보장 보험금 청구 구비서류

※ 재물손해 / 배상책임손해는 보험목적물 / 사고내용에 따라 보험금 수령을 위한 구비서류가 매우 상이하오니 사고발생시에는 보상담당자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1588-5656)

○ 보험종류별 추가서류

구분	구비서류	발급처	
재물손해	- 사고증명원(화재, 도난, 기상변화 등) - 자산대장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방서/경찰서 기상청/구청	
배상책임	공통	- 합의서 (합의 완료시 합의금 지급확인서)	의료기관
	대인배상 사고	-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 - 초진진료기록지 - 치료비영수증	
	대물배상 사고	- 피해물품의 사진 - 피해물품의 구입시기·가격의 증빙서류 - 수리비 견적서 및 영수증	구입처 수리업자

2024.10.25.부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가 시행됩니다.

- 「보험업법」 개정('23.10.24)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는 병원에서 진료비 관련 중 이서류 제출 없이도, 실손24 앱·웹(홈페이지)등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전송하는 동시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Play스토어 또는 App스토어에서 “실손24”를 검색하여 설치하세요!



Google Play



App Store에서  
다운로드 하기



안드로이드



iOS

## 6. 자주발생하는 민원 예시

### <사례 1> 가입초기 해약환급금이 너무 적어요

(사례) A씨는 보험가입 6개월 후 개인사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은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 보험계약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다른 계약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되며, 또다른 일부는 보험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 <사례 2> 제가 청약한 내용과 나중에 받은 보험증권 내용이 달라요.

(사례) A씨는 계약 체결 후 증권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청약시 안내받은 사항과 다른 점을 발견하여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의사항) 고객님의 청약한 내용과 계약사항이 상이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청약서에 명기된 납입기간,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등이 청약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3> 보험료환급/지원(6대질병진단) 특약의 보험금이 생각보다 적게 나왔어요**

(사례) A씨는 보험가입 10년 후 보험료환급/지원(6대질병진단) 특약의 가입금액 감액 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최초 가입시 예상된 보험금(보험료환급금 및 보험료 납입 지원금)보다 적은 보험금 수령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 해당 특약의 보험금(보험료환급금 및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사고 당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보험금(보험료환급금 및 보험료 납입지원금)이 최초 가입시 예상된 보험금(기납입보험료 등)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험료를 납입하던 중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해약환급금이 없대요**

(사례) A씨는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계약 체결 후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려 하였으나,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습니다.

(유의사항)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계약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계약 체결시 해지시점에 따른 해약환급금 지급액 등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보험용어 해설

### 보험약관

보험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 보험증권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 보험계약 당사자

<b>보험회사</b>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자로서,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
<b>보험계약자</b>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 보험계약 관계자

<b>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b>	<b>피보험자</b>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으로 피보험자라 정함
	<b>보험수익자</b>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갖는 사람
	<b>대리인</b>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b>배상책임보장</b>	<b>피보험자</b>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하며, 해당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
	<b>대리인</b>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의사 표시를 하고 또 의사 표시를 받을 권한을 가진 사람

### 보험료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보험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

#### < 1종 (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 3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및 무배당 갱신형 납입면제보장 특별약관 >

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b>보장순보험료</b>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험료
<b>적립순보험료</b>	보험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보험료
<b>부가보험료</b>	보험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보험료
<b>손해조사비</b>	보험금 청구의 사유 및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비용

### 보험목적

<b>배상책임보장</b>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	--------------------------

### 보험가입금액

<b>신체손해보장</b>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

### 보험금

<b>신체손해보장, 비용손해보장</b>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b>배상책임보장</b>	피보험자의 재물손해, 배상책임손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 🕒 보험기간

회사의 책임이 시작되어 끝날 때까지의 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

## 📅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 📅 보험계약일

계약자와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일, 철회 산정기간의 기준일이며 매년 도래하는 보험계약일을 계약해당일이라 함

## 📅 보험년도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함

## 👤 계약자적립액

### < 1종 (일반형) 및 2종 (납입면제형) >

계약자적립액 = 기본계약 계약자적립액(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 특별약관 계약자적립액

### < 3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계약자적립액 = 기본계약 계약자적립액(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 특별약관 계약자적립액

### < 무배당 갱신형 납입면제보장 특별약관 >

계약자적립액 = 특별약관 계약자적립액

**보장부분  
(기본계약, 특별약관)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장순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장래의 만기환급금 지급을 위하여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적립순보험료를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해약환급금

### < 1종 (일반형) 및 2종 (납입면제형) >

해약환급금 = 기본계약 해약환급금(보장부분 해약환급금 +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 특별약관 해약환급금

### < 무배당 갱신형 납입면제보장 특별약관 >

해약환급금 = 특별약관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계약자적립액에서 해약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을 차감한 금액

**해약공제액  
(미상각  
신계약비)**

신계약을 청약하고 승낙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체결비용이라 하며,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에서 균등하게 공제함. 그러나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공제하지 못한 계약체결비용을 한꺼번에 공제하게 되는데 이를 해약공제액(미상각 신계약비)라 함

### < 3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보험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종료 후에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합니다.

구 분	지급금액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동일한 가입 기준의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해약환급금 = 기본계약 해약환급금(보장부분 해약환급금) + 특별약관 해약환급금

이 보험용어 해설의 용어는 보험의 특성에 따라 의미가 상이하므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당약관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H** 현대해상



## 상품안내

※ 상품안내는 계약자의 편의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상품의 주요 내용만을 요약한 자료이므로, 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구체적인 상품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Hi2601)상품안내

### <유의사항>

○ 이 상품에 대한 보다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상품설명서 및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1. 보험금 지급사유, 지급금액 및 지급제한사항

#### 가. 보험금 지급사유 및 지급금액

※건강고지II의 경우 담보명에서 [맞춤고지II] 생략

단,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가족화재별금, 의료사고법률비용, 인터넷직거래사기피해, 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가족법률비용손해II(의료과외),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치료당,36회한)(갱신형), 치매CDR적도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치매MRI·CT·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특정치매약제치료(급여,연간1회한),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종합병원),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상급종합병원) 보장 특약 제외

#### [기본계약]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해사망	상해로 사망시	상해사망보장의 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상해후유장해보장의 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 [의무부가 특약]

- 의무부가 특약은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구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보험료 납입 면제 대상	2종(납입면제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 가입 금액 (최초 1회한)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또는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 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 [선택계약]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의 경우 가입 가능한 특별약관이 제한됩니다.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 해 관 련 보 장	상해사망추가 상해사망(갱신형)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상해후유장해 (20%이상)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2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상해후유장해 (80%이상)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5대골절진단	5대골절(머리의 으깬손상, 목/흉추/요추/골반/대퇴골 골절, 흉추의 다발성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경추/흉추및요추골절진단	경추, 흉추 또는 요추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갱신형)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갱신형)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갱신형)	상해(경증상해제외)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갱신형)	상해로 통원(당일입원 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화상진단 화상진단(갱신형)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 해 관 련 보 장	중증화상/부식진단Ⅱ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상해입원일당(1-180일)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상해입원일당 (1-180일)(갱신형)		
	상해입원일당(1-30일)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 가입금액(30일한도)
	상해입원일당(1-10일)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 가입금액(10일한도)
	상해입원일당 (1-30일, 종합병원, 1인실)	상해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1-30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1-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상해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상해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	상해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0일한도)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상해입원일당 (1-180일, 중환자실)	상해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1-10일, 중환자실)	상해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10일 한도)																											
상해수술입원일당 (1-120일)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상해수술입원일당 (1-10일)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0일 한도)																											
상해수술입원일당 (1-120일, 종합병원)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상해수술입원일당 (1-120일, 상급종합병원)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상해후유장해 (80% 이상, 월지급형)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4">지급방법</th> </tr> </thead> <tbody> <tr> <td colspan="4">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최초 1회한)</td> </tr> <tr> <th colspan="4">1회 지급액</th> </tr> <tr> <td colspan="4">해당 특약 월지급액</td> </tr> </tbody> </table>	지급방법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최초 1회한)				1회 지급액				해당 특약 월지급액														
지급방법																													
보험금 지급기간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최초 1회한)																													
1회 지급액																													
해당 특약 월지급액																													
상해후유장해 (50% 이상, 월지급형)	상해로 50% 이상 후유장해시																												
골절진단 II (치아파절 제외) (1-5급)	‘골절(1-5급)’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골절등급분류기준표1의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보험가 입금액 500만원 기준</th> <th>보험가 입금액 300만원 기준</th> <th>보험가 입금액 50만원 기준</th> </tr> <tr> <th colspan="3">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급</td> <td>500만</td> <td>300만</td> <td>50만</td> </tr> <tr> <td>2급</td> <td>200만</td> <td>150만</td> <td>30만</td> </tr> <tr> <td>3급</td> <td>100만</td> <td>100만</td> <td>30만</td> </tr> <tr> <td>4급</td> <td>50만</td> <td>50만</td> <td>20만</td> </tr> <tr> <td>5급</td> <td>30만</td> <td>30만</td> <td>20만</td> </tr> </tbody> </table> (1사고당)	구 분	보험가 입금액 500만원 기준	보험가 입금액 300만원 기준	보험가 입금액 50만원 기준	지급금액			1급	500만	300만	50만	2급	200만	150만	30만	3급	100만	100만	30만	4급	50만	50만	20만	5급	30만	30만	20만
구 분	보험가 입금액 500만원 기준	보험가 입금액 300만원 기준		보험가 입금액 50만원 기준																									
	지급금액																												
1급	500만	300만	50만																										
2급	200만	150만	30만																										
3급	100만	100만	30만																										
4급	50만	50만	20만																										
5급	30만	30만	20만																										

상  
해  
관  
련  
보  
장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골절진단 골절진단(갱신형)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골절진단 (치아파절제외) (갱신형)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골절 (치아파절제외) 부목치료	‘골절’ (‘치아파절’ 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골절특정재활치료 (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	‘골절’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0회한, 1일 1회한)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연간1회한)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골절수술 골절수술(갱신형)	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골절수술 II (1-5급)	‘골절(1-5급)’로 ‘골절등급분류기준표2의 골절등급’에 해당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 분</th> <th>보험가입금액 300만원기준</th> <th>보험가입금액 50만원기준</th> </tr> <tr> <th colspan="2">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 <td>1급</td> <td>300만</td> <td>50만</td> </tr> <tr> <td>2급</td> <td>150만</td> <td>30만</td> </tr> <tr> <td>3급</td> <td>100만</td> <td>30만</td> </tr> <tr> <td>4급</td> <td>50만</td> <td>20만</td> </tr> <tr> <td>5급</td> <td>30만</td> <td>20만</td> </tr> </tbody> </table> (1사고당)	구 분	보험가입금액 300만원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기준	지급금액		1급	300만	50만	2급	150만	30만	3급	100만	30만	4급	50만	20만	5급	30만	20만
구 분	보험가입금액 300만원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기준																				
	지급금액																					
1급	300만	50만																				
2급	150만	30만																				
3급	100만	30만																				
4급	50만	20만																				
5급	30만	20만																				
5대골절수술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상해입원후통원일당 (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	상해로 3일 이상 퇴원없이 계속입원 후 통원한 경우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20일 한도)																				

상  
해  
관  
련  
보  
장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해수술Ⅲ(1-5종) (수술회당지급), 상해수술Ⅲ(1-5종) (수술회당지급) (갱신형)	상해로 '1-5종 수술Ⅲ분류표'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1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1-5종 수술Ⅲ분류표'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2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1-5종 수술Ⅲ분류표'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3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1-5종 수술Ⅲ분류표'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4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1-5종 수술Ⅲ분류표'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5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화상수술	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화상수술(갱신형)		
심한상해수술	심한상해(약관에서 정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 발생)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중대한 특정상해수술	상해로 뇌손상,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 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상해흉터 성형수술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안면부, 상지, 하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성형수술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 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 성형수술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1년 이내 받은 성형수술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해특정급여수술치료(연간1회한)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수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수술치료(신경차단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수술치료(화상)'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수술치료(도수정복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수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수술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수술치료(기타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상해수술(종합병원)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 경증상해제외)	상해(경증상해제외)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사고당)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가입금액(30일 한도)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가입금액(60일 한도)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상 해 관 련 보 장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평균 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갱신형)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각각 180일한도)
상 해 관 련 보 장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	상해로 병원(요양, 정신, 한방병원 및 의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평균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5일한도)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	상해로 병원(요양, 정신, 한방병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5일한도)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상 해 관 련 보 장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갱신형)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단, 간병인 평균 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	상해로 1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또는 간병인지원 (180일 한도)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각 180일한도)
	골절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골절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화상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화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골절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골절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화상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	화상으로 1일 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한도)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 해 관 련 보 장	안면부 상해흉터성형수술 (1cm이상)	상해로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안면부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받은 성형수술	최대수술길이가 - 1cm 이상 5cm 미만인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30% - 5cm 이상 10cm 미만인 경우 : 특약가입금액의 60% - 10cm 이상인 경우 : 특약가입금액
	상해MRI검사지원비 (연간1회한,급여)	상해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상해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상해CT검사지원비 (연간1회한,급여)	상해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상해C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골절철심제거수술 (연간1회한,급여)	골절(치아파절제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골절철심제거술' 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상해후유장해 (50%이상)	상해로 5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중증화상산정 특례대상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으로 신규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상 해 관 련 보 장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 (연간1회한)	상해로 인하여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 (연간1회한)	상해로 인하여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상해재활치료 (연간15회한,급여)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5회한, 1일 1회한)	
	상해재활치료 (연간15회한,급여) (갱신형)			
	주요관절손상 수술치료(연간 1회한,급여)	팔꿈치 ,손목, 발목	'주요관절(팔꿈치, 손목, 발목) 손상' 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를 받은 경우	'주요관절(팔꿈치, 손목, 발목)손상수술' 보장의 보장가입금액(연간1회한)
		어깨, 무릎	'주요관절(어깨, 무릎)손상' 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를 받은 경우	'주요관절(어깨, 무릎)손상수술' 보장의 보장가입금액(연간1회한)
		고관절	'주요관절(고관절)손상' 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를 받은 경우	'주요관절(고관절)손상수술' 보장의 보장가입금액(연간1회한)
	8대중대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연간1회한)	'8대중대질환' 으로 인해 '응급환자' 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8대중대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연간1회한) (갱신형)			
특정마취합병증진단	'특정마취합병증'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1회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 해 관 련 특 별 약 관	경증상 해진단	'머리 및 목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복부 및 등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어깨 및 팔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손목 및 손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엉덩이 및 다리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발목 및 발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통합상 해진단 (갱신 형)	중등증 상해진 단	'머리 및 목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복부 및 등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어깨 및 팔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손목 및 손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엉덩이 및 다리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발목 및 발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 해 관 련 특 별 약 관	통합 상 해 진단  중등 상 해 진단	중등 상 해 진단 (갱신 형)	'머리 및 목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복부 및 등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어깨 및 팔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손목 및 손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엉덩이 및 다리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발목 및 발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상 해 관 련 보 장 특 약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 II(1-180일)(갱신형)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지원 (180일한도)
	간병인사용 상해입원일당VI (1-180일, 전환용) (갱신형)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평균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 (180일한도)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 병 관 련 보 장 특 약	질병사망	질병으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질병사망추가		
	질병사망(갱신형)		
	뇌혈관질환(Ⅰ) 진단	뇌혈관질환(Ⅰ)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뇌혈관질환(Ⅰ) 진단(갱신형)		
	뇌혈관질환(Ⅱ) 진단	뇌혈관질환(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뇌혈관질환(Ⅱ) 진단(갱신형)		
	질병후유장해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후유장해(갱신형)		
	질병후유장해(80%이상)	질병으로 8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질병후유장해(50%이상)	질병으로 50%이상 후유장해시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암진단 II (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소액암으로 진단시 상기금액의 50%)	
암진단 II (유사암제외) 추가			
암진단 II (유사암제외) (갱신형)			
유사암진단 II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유사암진단 II (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3대질병사망		3대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3대질병 후유장해 (80%이상)		3대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암직접치료 통원일당 (종합병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 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 료를 한 경우	통원 1회당 특약가입금액 (1일 통원당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전이암진 단(최초1 회한)	림프절전이 암	보장개시일 이후 '림프절전이암' 으 로 진단 확정된 경우	'림프절전이암진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전이암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전이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정전이암진단'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암주요 치료비II (연간1회 한, 진단후10 년),	암치료급여 금(기타피부 암및갑상선 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10회 지급)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치 료급여금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10회 지급)

질병 관련 보장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암주요 치료비II (연간1회한, 진단후10년)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 터포함)),	암치료급여 금(기타피 부암및갑상 선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10회 지급)
	암주요 치료비II (연간1회한, 진단후10년) (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 터포함)) (갱신형)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최대10회 지급)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진단후10년)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하 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를 받은 경 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 대 10년간 보장)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 0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 0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상급 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하 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를 받은 경 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 대 10년간 보장)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질병 관련 보장

구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보장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암 제외)(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암 제외)(연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가금액의 50%)

구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보장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암 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암 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 병 관 련 보 장	전이암 항암약물치료 (치료당), 전이암 항암약물치료 (치료당)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주사제)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주사제외)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1회한)
	전이암 항암방사선치 료 (치료당), 전이암 항암방사선치 료 (치료당)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 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치료당 1회)
	전이암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치료 당)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 병 관 련 보 장	남성통합암 (전이포함)진단 (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두경부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위암및식도암' 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소장·대장·항문암및기타 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간·담낭·담도암및췌장 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흉곽내기관·종피성암및연 조직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골·피부등전신부위암' 으 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비뇨기관·부신암및 내분비선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뇌암및중추신경계통암' 으 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혈액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남성생식기암' 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관련보장 여성통합암 (전이포함)진단 (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두경부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위암및식도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소장·대장·항문암및기타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간·담낭·담도암및췌장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흉곽내기관·중피성암및연조직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골·피부등전신부위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비뇨기관·부신암및내분비선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뇌암및중추신경계통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혈액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생식기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난소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자궁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관련보장	여성특정암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더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남성생식기암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더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재진단암진단 II	재진단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재진단암진단 II (갱신형)		
	재진단암진단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보장개시일 이후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양성뇌종양진단	양성뇌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뇌출혈진단	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더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뇌졸중진단		
	뇌졸중진단(갱신형)	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뇌혈관질환진단(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		
	허혈심장질환진단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허혈심장질환진단(갱신형)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과장	급성신우신염진단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중증폐렴진단	중증폐렴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패혈증진단	특정패혈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질병입원후통원일당 (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	질병으로 3일이상 퇴원없이 계속입원 후 통원한 경우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20일 한도)
	심혈관질환 (주요심장염증)진단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혈관질환 (주요심장염증)진단 (객신행)		
	심혈관질환(대동맥 판막협착증)진단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	심혈관질환(심근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말기간경화진단	말기간경화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말기폐질환진단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말기신부전증진단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과장	만성간질환진단	만성간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만성특정폐질환 (중기이상)진단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만성신부전증진단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대한재생 불량성빈혈진단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비(연간1회한, 10일면책)(객신행)	보장개시일 이후 '독감(인플루엔자)' 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 를 처방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독감(인플루엔자) 입원일당(1-30일)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한도)
	크론병진단	크론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다발경화증진단	다발경화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만성당뇨 합병증진단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특정감염병진단 (갱신형)	특정감염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대상포진진단(10일 연책)	보장개시일 이후 대상포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대상포진노병진단	대상포진노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통풍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통풍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갑상선암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로봇암수술 (다빈치및레보아이) (최초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을 받은 경우	보장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을 받은 경우	보장가입금액 (최초 1회한)
로봇암수술 (다빈치및레보아이) (연간1회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을 받은 경우	보장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을 받은 경우	보장가입금액 (연간 1회한)

질병관련과정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당뇨병진단 (당화혈색소 7.5%이상)(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당뇨병진단 (당화혈색소 6.5%이상)(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결핵진단	결핵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위·십이지장·대장 양성종양(폴립포함) 진단(연간1회한)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급여)' 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	'특정바이러스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갑상선항진증치료 (최초1회한)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뇌동맥류(비파열성) 진단	뇌동맥류(비파열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관련과정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당뇨인슐린치료비(갱신형)	‘당뇨병’ 으로 ‘당뇨병인슐린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고혈압(원발성)진단(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고혈압(원발성)’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고혈압(원발성)약제 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고혈압(원발성)’ 으로 180일 이상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갱신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갱신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으로 180일 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약제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특정천공진단	‘특정천공’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 제거수술(급여, 연간1회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 제거수술(급여) 를 받은 경우 (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 제거수술(급여) 진료행위’ 당 연간 1회)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대장용종 제거수술비(급여) , 대장용종 제거수술비(급여) , 대장용종 제거수술비(급여) (갱신형)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 를 받은 경우(용종개수당)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대장용종 제거수술비(급여) (갱신형)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90일내 상기금액의 10%, 90일초과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 관련 보장	혈전용해치료비 II (최초1회한)	뇌졸중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심장질환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최초 1회한)	
	혈전용해치료비 III (최초1회한) (특정순환계질환 I)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최초 1회한)
	심뇌혈관질환 환주요약제 치료비(연간1 회한,급여)	심뇌혈관질환 항혈전주사치 료(급여)	'심뇌혈관질환' 으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주사치료( 급여)'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심뇌혈관질환' 으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주사치료 (급여)'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심뇌혈관질환 항혈전경구약 물치료(급여)	'심뇌혈관질환' 으로 90일 이상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 급여)'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심뇌혈관질환' 으로 90일이상 '심뇌혈관질환 항혈소판제경구약물 치료(급여)' 를 받은 경우			가. 아스피린 단독 처방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나. 아스피린 이외 처방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 관련 보장	암주요 검사비(연간1회 한,급여), 암주요 검사비(연간1회 한,급여) (갱신 형)	급여 암MRI촬영 검사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암 MRI 검사'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급여 암CT 검사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암 CT 검사'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급여 양양전자방출단 층촬영(PET) 검사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양 양전자단층촬영 (PET) 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급여 암초음파검사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암 초음파 검사'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심뇌혈 관질환 주요검사비(연 간1회한 ,급여), 심뇌혈 관질환 주요검사비(연 간1회한 ,급여)( 갱신형)	급여 심뇌혈관질환MRI 촬영 검사비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 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 검사'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급여 심뇌혈관질환CT 촬영 검사비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 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 검사'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급여 심뇌혈관질환혈 관조영술/양전자 방출단층촬영(PE T) 검사비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 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 조영술/양전자단층촬영 (PET) 검사'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0% 해당액 (연간 1회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 척수액 검사비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 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 초음파/뇌척수액 검사' 를 받 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심뇌혈관질환 관련 요양 비용 보장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수술및 혈전용해치료	'심뇌혈관질환' 으로 '수술' 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한)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갱신형)	중환자실 (종합병원(이 상)(요양병원 제외))입원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 병원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수술및 혈전용해치료	'심뇌혈관질환' 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한)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갱신형)	중환자실 (상급종합병 원)입원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질병입원일당(1-180일), 질병입원일당 (1-180일)(갱신형)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80일한도)	
	질병입원일당(1-30일)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30일한도)	
	질병입원일당(1-10일)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0일한도)	
	질병입원일당 (1-180일, 종합병원)	질병으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80일한도)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입원 관련 보장	질병입원일당 (1-10일, 종합병원)	질병으로 1일이상 종합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0일한도)
	질병입원일당 (1-180일, 중환자실)	질병으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80일한도)
	질병입원일당 (1-10일, 중환자실)	질병으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0일한도)
	질병입원일당 (1-30일, 종합병원, 1인실)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 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1-30일, 상급종합병 원, 1인실)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 (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 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1-30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 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1-30일, 상급종합병 원, 2-3인실)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30일 한도)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1-180일, 요양병원 제외), 암직접치료 입원일당 (1-180일요양병원제 외)(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요양병원제외)에 1일이상 입원한 경우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 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제외)에 1일 이상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80일 한도)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보장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입원1일당 특약가입금액 (90일 한도)
	암직접치료 통원일당 (상급종합병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 1회당 특약가입금액 (1일 통원당 1회한)
	심뇌혈관질환 입원일당 (1-180일)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80일한도)
	당뇨고혈압질환 입원일당 (4-120일)	당뇨고혈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가입금액 (120일한도)
	질병수술입원일당 (1-120일)	질병으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질병수술입원일당 (1-10일)	질병으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0일 한도)
	질병수술입원일당 (1-120일, 종합병원)	질병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질병수술입원일당 (1-120일, 상급종합병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20일 한도)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보장	특정강염병II입원일당(1-30일)	특정강염병I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가입금액 (30일한도)
	질병수술, 질병수술(갱신형)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하나의 질병당)
	질병수술(경증질병 제외), 질병수술(경증질병 제외)(갱신형)	질병(경증질병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하나의 질병당)
	질병수술IV (1-5종)(수술회당지급)	질병으로 '1-5종 수술IV분류표' 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IV(1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1-5종 수술IV분류표' 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IV(2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1-5종 수술IV분류표' 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IV(3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1-5종 수술IV분류표' 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IV(4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1-5종 수술IV분류표' 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IV(5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수술(중합병원)	질병으로 중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하나의 질병당)	
	질병수술 (상급종합병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하나의 질병당)
	질병수술 (상급종합병원, 경증 질병제외)	질병(경증질병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하나의 질병당)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	질병으로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질병으로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신경차단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질병으로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기타시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 (연간30일한)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 (연간30일한, 중합병원)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 (연간30일한, 상급종합병원)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 (연간60일한)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중합병원)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중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 (연간60일한, 상급종합병원)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혈전용해치료비II (연간1회한)	'뇌졸중'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특정심장질환'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혈전용해치료비III (연간1회한) (특정순환계질환 I )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심·뇌혈관질환(특정III) 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 를 받은 경우	'심·뇌혈관질환(특정III)' 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90회한, 각각 1일 1회한)
	'심·뇌혈관질환(특정III)' 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90회한, 각각 1일 1회한)
	'심·뇌혈관질환(특정III)' 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90회한, 각각 1일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2대질환입원중 특정합병증진단	‘뇌출혈 및 뇌경색증 입원중 폐렴 II’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중 심부전’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뇌혈관질환 (특정 II)장애진단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으로 진단확정되고 ‘15대장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질환 로봇수술 (연간1회한)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자궁및 난소질환’ 으로 진단받고 ‘로 봇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전립선 및방광질환’ 으로 진단받고 ‘로봇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내분비 및소화계질환’ 으로 진단받고 ‘로봇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혈관질환 (특정 I, 149제외) 진단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으 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혈관질환 (특정 I, 149제외) 진단(갱신형)		
심혈관질환 (특정 II)진단	심혈관질환(특정 II)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혈관질환 (특정 II)진단 (갱신형)		

질병관리법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암수술,  암수술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암수술(상급종합 병원(국립암센터 포함)),  암수술(상급종합 병원(국립암센터 포함))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및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 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의 20%
조혈모세포 이식수술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 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질병간호간병 통합서비스입원 일당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 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 하여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30일 한도)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 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 하여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60일 한도)

질병관리법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 병 관 련 보 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 일당Ⅶ (1-180일)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 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 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 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평균 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간병인사용질병입원 일당Ⅶ (1-180일)(갱신형)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 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 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 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 보험가입금액 (각각 180일한도)
	간병인사용질병입원 일당Ⅶ (181-365일)	질병으로 병원(요양,정신,한 방병원및의원 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 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 한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평균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 (185일한도)
	간병인사용질병입원 일당Ⅶ (181-365일)(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요양,정신,한방병원 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 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각각 185일한도)
	보험료납입지원 (유사암진단)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 1회한)	특약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 기간동안 매년 확정지급 + 특약가입금액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납입지원 (심뇌혈관질환수술)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 병 관 련 보 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 일당Ⅶ(상급종합 병원)(1-180일), 간병인사용질병입원 일당Ⅶ(상급종합 병원)(1-180일)( 갱신형)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 여 치료를 받으면서 간병인을 사 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특약가입금액 (단, 간병인 평균 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180일한도)
	간병인지원 질병입원일당 (1-180일)(갱신형)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또는 간병인지원 (180일 한도)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일반병동/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 반병동/재활병동) 사용 1일당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각 180일한도)
	질병입원일당(1-180일 ,전환용)(갱신형)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 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 (180일 한도)
	질병수술(7대및경증질 병제외,수술회당지급, 질병수술(7대및경증질 병제외,수술회당지급) (갱신형)	질병(7대및경증질병제외)의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 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포장	심뇌혈관질환수술 심뇌혈관질환수술(갱신형)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갱신형)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뇌혈관질환수술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혈전제거치료 II (연간1회한, 급여), 혈전제거치료 II (연간1회한, 급여) (갱신형)	‘뇌졸중’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특정심장질환’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관상동맥성형술 (최초 1회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관상동맥우회술 (최초 1회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연간1회한, 급여)	‘특정뇌동맥질환’ 으로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장부정맥고주파 냉각절제술 (연간1회한, 급여)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포장	총수염수술	총수염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추간판장애수술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특정질병수술 (남성)	특정질병(남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특정질병수술 (여성)	특정질병(여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간질환수술	간질환으로 수술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허혈심장질환수술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당뇨고혈압질환수술	당뇨고혈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 (1회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다발성질병수술 (3대질병) 다발성질병수술 (3대질병)(갱신형)	3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여성특정생식기질환 수술		여성생식기질환으로 수술을 받는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요실금(급여)수술을 받는 경우 (개복에 의한 또는 질강을 통한 수술)	특약가입금액 (연간1회한)
120대 질병 수술 II , 120대 질병 수술 II (갱신 형)	질병수술1 (26대질병 II)	26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수술2 (58대질병 II)	58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수술3 (24대질병)	24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치핵수술	치핵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갑상선관련 질병수술	갑상선관련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다발성10대 질병수술	다발성1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해당 보장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5대기관질병수술 (관혈/비관혈) (연간1회한)		5대기관(뇌혈관, 심장, 간, 신장,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기관별 각각 연간1회한)
		5대기관(뇌혈관, 심장, 간, 신장,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50% (기관별 각각 연간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 관련 보장	보험료 환급/지원 (6대질병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특약가입금액 × 지급사유발생일 기준 납입경과월수  보험료 납입지 원금  특약가입금액의 12배를 보험료납입지원 기간동안 매년 확정지급 + 특약가입금액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보험료환급 (6대질병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최초 1회한)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보험료 환급금 : 특약가입금액 × 지급사유발생일 기준 납입경과월수
	유방암으로인한 유방수술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혈관질환 (149)진단	심혈관질환(149)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혈관질환 (149)진단 (갱신형)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양전자방출단층촬영 검사지원비(PET) (연간1회한,급여)	'급여 양전자단층촬영 (PET)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가금액의 50%)
	항암방사선 약물치료II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II (연간1회한) (갱신형)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연간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II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 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II (갱신형)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 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 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치료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 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 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 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치료당 1회)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 (갱신형)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치료당 1회)
	항암약물 치료II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 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항암약물 치료II (갱신형)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항암약물치료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중 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항암약물치료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갱신형)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 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 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항암약물 치료 II (치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 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항암약물 치료 II (치료당)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 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항암약물 치료 II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연간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하이클래스항암약 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이클래스 항 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 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보장)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하이클래스항암약 물치료(상급종합 병원(국립암센터 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 료’ 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 부터 최대 10년간 보장)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하이클래스항암약 물치료(상급종합 병원(국립암센터 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 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 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 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전이암항암약물치 료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 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가금액의 50%)

구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 보장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 (연간1회한)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표적항암 약물허가치료 (치료당)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입원 또는 통원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한)
	항암방사선 (양성자) 치료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치료당 1회)

구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 보장	항암방사선 (세기조절) 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치료당 1회)
	항암방사선 (방사성 리간드약품) 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성리간드약품 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중 방사성리간드 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보장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를 받은 경우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 '암' 중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	보장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항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항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 (치료당)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호르몬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호르몬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의 20% (연간 1회한)
전이암표적항 암약물허가치 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전이암항암 방사선(양성 자)치료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  
관련  
보장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 관련 보장	전이암항암방사선 (세기조절)치료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전이암항암호르몬약 물허가치료(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비급여)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특약가입금액 (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치료(갱 신형)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갑상선암의 수술 후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카티(CAR-T)항암약 물허가치료(연간1회 한)(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 '암' 중 카티(CAR-T)치료제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 료(상급종합병원(국 립암센터포함))(갱 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보장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각각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를 받은 경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터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관련보장	기타피부암 및 감상선암 제외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 10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감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기타피부암 및 감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감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기타피부암 및 감상선암 제외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 10년)(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기타피부암 및 감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기타피부암 및 감상선암	기타피부암 또는 감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질병수술(백내장및대장용종 제외), 질병수술(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갱신형)	질병(백내장, 대장용종 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하나의 질병당)
	질병수술(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경증 질병제외), 질병수술(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경증 질병제외)(갱신형)	질병(백내장및대장용종제외, 경증질병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하나의 질병당)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 급여)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관련보장	암주요 치료비III (유사암제외) (연간1회한)	주요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주요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암주요 치료비III (유사암제외) (연간1회한)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 호르몬 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중환자실 입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관련보장	유사암주요 치료비III (연간1회한)  유사암주요 치료비III (연간1회한) (갱신형)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 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항암 호르몬 치료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중환자실 입원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관련보장	암주요 치료비III (유사암제외)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  암주요 치료비III (유사암제외)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항암 호르몬 치료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중환자실 입원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 '중환자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유사암주요 치료비I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유사암주요 치료비I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갱신형)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 1회한)
		항암 호르몬 치료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중환자실 입원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되고, 유사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 '중환자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암주요치 료비IV (치료당, 진단후10 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암주요치 료비IV (치료당, 진단후10 년) (갱신형)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암주요 치료비Ⅳ (종합병원) (치료당, 진단후10 년)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암주요 치료비Ⅳ (종합병원) (치료당, 진단후10 년) (갱신형)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암주요 치료비 Ⅳ (상급 종합병 원(국 립암센 터포함 (치료 당,진 단후10 년)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암주요 치료비 Ⅳ (상급 종합병 원(국 립암센 터포함 (치료 당,진 단후10 년) (갱신 형)	기타피부 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 을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입원 또는 통원 치료당 1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부더 10년간 보장)	이 보장의 가입금액 (치료당1회)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관련보장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갱신형)	1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수술1회당)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구분	지급사유	지급금액			
질병관련보장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갱신형)	2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0만원 (수술1회당)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만원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관련보장	3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수술1회당)	최초 계약일 부터 1년 미만	연간 총 지급금액 7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만원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관련보장	1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수술1회당)	최초 계약일 부터 1년 미만	연간 총 지급금액 3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 관련 보장	2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0만원 (수술1회당)	최초 계약 일부터 1년미만 상기 금액의 50%	연간 총 지급금액 5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 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만원 (연간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 관련 보장	3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수술1회당)	최초 계약 일부터 1년미만 상기 금액의 50%	연간 총 지급금액 7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 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만원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관련보장	1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최초계약일부 1년미 만 상기금 액의 50%	연간 총 지급금액 2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 일부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병관련보장	2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0만원 (연간 1회한)	최초계약일부 1년미 만 상기금 액의 50%	연간 총 지급금액 5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 일부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연간 1회한)		

구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보장 3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000만원 (연간 1회한)

최초계약일부담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연간 총 지급금액 8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구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보장 1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최초계약일부담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연간 총 지급금액 2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 관련 보장	2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0만원 (연간 1회한)	최초 계약 일부 터 1년미 만  상기 금액 의 50%	연간 총 지급금액 5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 일부 터 1년미 만 상기한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0만원 (연간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 관련 보장	3형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최초 계약 일부 터 1년미 만  상기 금액 의 50%	연간 총 지급금액 8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 일부 터 1년미 만 상기한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000만원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혈전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뇌졸중'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특정심장질환'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혈전주요치료비 (연간1회한) (갱신형)	'특정순환계질환 1'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뇌졸중'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특정심장질환'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특정순환계질환 1'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수술 및 혈전용해치료	'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병원에서 '수술' 을 받 거나 '혈전용해치료' 를 받 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병원에서 '수술' 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한)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비II (연간1회한)	'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 상)(요양병원제외))' 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 (이상)(요양병원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비II (연간1회한) (갱신형)	중환자실 입원	'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 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 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 상)(요양병원제외))' 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 (이상)(요양병원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특정중증치료 (4종, 급여)	'심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 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중증치 료(4종)'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비II (연간1회한)	‘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한)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 주요치료비II (연간1회한) (객신행)	‘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특정중증치료 (4종, 급여)	‘심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1회한)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항암방사선 치료후 9대질병진단(5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고 1년이내에 골괴사, 방사선장염, 방사선방광염으로 진단확정되거나 90일이내에 폐렴, 뇌부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항암방사선치료후 9대질병진단(5대)’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 치료후 9대질병진단(4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고 1년이내에 ‘항암방사선치료후9대합병증(4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항암방사선 약물치료후 5대질병진단(2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항암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1년이내에 ‘항암방사선약물 치료후5대질병(2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심장질환, 폐색전증	‘항암방사선약물치료 후 5대질병진단(2대)’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항암방사선 약물치료후 5대질병진단(3대)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항암 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1년이내에 ‘항암방사선약물 치료후5대질병(3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호중구감소증, 혈소판 감소증, 신경병증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급여)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NGS유전자패널검사’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검사당 각각 연간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특정생검조직 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검사 당 각각 연간 1회한)	
암진단II (소액암및유사암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소액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암진단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심혈관질환 (특정2대)진단	‘심혈관질환(특정2대)’ 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심혈관질환 (특정2대)진단 (갱신형)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	유사암 및 소액암 제외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 이 된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및 소액암제외)’ 보장 의 보험가입금액(최초 1회한)
	소액암	보장개시일 이후 ‘소액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 이 된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소액암)’ 보장 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유사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 이 된 경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유사암)’ 보장 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회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	질병으로 인하여 ‘회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신규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신규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	질병으로 인하여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MRI 검사지원비 (연간1회한, 급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질병MRI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질병CT검사 지원비 (연간1회한, 급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질병CT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중복암 및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중복암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이 된 경우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중복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재등록암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이 된 경우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재등록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질병재활치료 (연간15회한, 급여)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5회한, 1일 1회한)	
질병재활치료 (연간15회한, 급여)(갱신형)			

제 품 판 권 도 장

제 품 판 권 도 장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장특약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질병으로 인하여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신규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질병으로 인하여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신규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질병으로 인하여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질병MRI 검사지원비 (연간1회한, 급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건을 토대로 '급여 질병MRI 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질병CT검사 지원비 (연간1회한, 급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건을 토대로 '급여 질병CT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중복암 및 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중복암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이 된 경우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중복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재등록암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이 된 경우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재등록암)'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질병재활치료 (연간15회한, 급여)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재활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5회한, 1일 1회한)	
질병재활치료 (연간15회한, 급여)(갱신형)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질병관련장특약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II(1-180일)(갱신형)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입원 1일당 간병인지원 (180일한도)
	간병인사용 질병입원일당VI(1-180일, 전환용)(갱신형)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단, 간병인 평균사용금액이 1일당 8만원 미만인 경우 상기금액의 50%) (180일한도)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사용 1일당 해당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0일한도)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특 약	원격지 암직접치료 통원임시거주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원격지’ 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 를 지출한 경우	통원한 1일당 실제 지출한 ‘임시거주비’ (10만원한도)
	원격지 암직접치료 통원임시거주비 (갱신형)	‘기타피부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원격지’ 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 를 지출한 경우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원격지’ 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 를 지출한 경우	

구 분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특 약		보장개시일 이후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최초 1회한)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최경증치매및경도 알츠하이머치매)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7회이상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최초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19회이상 받은 경우	이 보장의 가입금액 (최초 1회한)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최경증치매및경도 알츠하이머치매) (치료당, 36회한)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치료당, 36회한)

구 분	지 급 사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특 약	치매CDR척도 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의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치매MRI·CT·PET 검사지원비 (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의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급여 치매 MRI·CT·PET검사'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특정치매약제치료 (급여,연간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로 '급여 특정 치매약제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치매직접치료 통원일당 (연간12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통원 1일당, 연간12일한)
	치매직접치료 통원일당 (연간12회한, 종합병원)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통원 1일당, 연간12일한)
	치매직접치료 통원일당 (연간12회한, 상급종합병원)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특약가입금액 (통원 1일당, 연간12일한)

구 분	지 급 사유	지 급 금 액	
질 병 관 련 보 장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 집속술(HIFU)(최초1회 한)	'자궁특정질환' 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 집속술(HIFU)(최초1회 한)(갱신형)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 초1회한)	'갑상선특정질환' 으로 '갑상선고주파열치료'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 초1회한)(갱신형)		
상 해 및 질 병 관 련 보 장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 절제치료비(최초1회한)	'유방특정질환' 으로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 절제치료비(최초1회한) (갱신형)		
	5대장기이식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 서 5대장기(간장, 신장, 심장, 췌 장, 폐장)에 대한 장기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 증II, 수술후감염, 기타 감염)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특정감염질환 (특정패혈증II, 수술후감염, 기타감 염)수술'을 받은 경우	수술 1회당 특약가입금액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연간1회한,급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급여 인공심 박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 연간1회한,급여)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 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무릎관절연골손상(중증 )진단	'무릎관절연골손상(중증)'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 도이상)진단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도이상) '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최초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상 해 및 질 병 관 련 도 장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	상해 또는 질병으로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급여)	질병으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상해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을 받은 경우	
	각막이식수술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최초 1회한)
	갑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갑스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응급실내원 진료비(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11대중대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 11대중대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갱신형)	'11대중대질환' 으로 인해 '응급환자' 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비갱신/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비갱신/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으로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상 해 및 질 병 관 련 도 장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p>&lt; 특약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gt;</p> <table border="1"> <thead> <tr> <th>마취시간</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td>3시간 이상</td><td>600만원</td></tr> <tr><td>4시간 이상</td><td>1200만원</td></tr> <tr><td>5시간 이상</td><td>1,500만원</td></tr> <tr><td>6시간 이상</td><td>1,800만원</td></tr> <tr><td>7시간 이상</td><td>2,100만원</td></tr> <tr><td>8시간 이상</td><td>2,400만원</td></tr> <tr><td>9시간 이상</td><td>2,700만원</td></tr> <tr><td>10시간 이상</td><td>3,000만원</td></tr> </tbody> </table>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600만원	4시간 이상	1200만원	5시간 이상	1,500만원	6시간 이상	1,800만원	7시간 이상	2,100만원	8시간 이상	2,400만원	9시간 이상	2,700만원	10시간 이상	3,000만원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600만원																			
4시간 이상	1200만원																			
5시간 이상	1,500만원																			
6시간 이상	1,800만원																			
7시간 이상	2,100만원																			
8시간 이상	2,400만원																			
9시간 이상	2,700만원																			
10시간 이상	3,000만원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갱신형)	질병으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p>&lt; 특약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gt;</p> <table border="1"> <thead> <tr> <th>마취시간</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td>3시간 이상</td><td>600만원</td></tr> <tr><td>4시간 이상</td><td>1200만원</td></tr> <tr><td>5시간 이상</td><td>1,500만원</td></tr> <tr><td>6시간 이상</td><td>1,800만원</td></tr> <tr><td>7시간 이상</td><td>2,100만원</td></tr> <tr><td>8시간 이상</td><td>2,400만원</td></tr> <tr><td>9시간 이상</td><td>2,700만원</td></tr> <tr><td>10시간 이상</td><td>3,000만원</td></tr> </tbody> </table> <p>(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각 구간별)</p>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600만원	4시간 이상	1200만원	5시간 이상	1,500만원	6시간 이상	1,800만원	7시간 이상	2,100만원	8시간 이상	2,400만원	9시간 이상	2,700만원	10시간 이상	3,000만원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600만원																			
4시간 이상	1200만원																			
5시간 이상	1,500만원																			
6시간 이상	1,800만원																			
7시간 이상	2,100만원																			
8시간 이상	2,400만원																			
9시간 이상	2,700만원																			
10시간 이상	3,000만원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상해 및 질병 연 관련 보장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p>&lt;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기준 &gt;</p> <table border="1"> <thead> <tr> <th>마취시간</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td>3시간 이상</td><td>2,400만원</td></tr> <tr><td>4시간 이상</td><td>2,800만원</td></tr> <tr><td>5시간 이상</td><td>3,500만원</td></tr> <tr><td>6시간 이상</td><td>4,200만원</td></tr> <tr><td>7시간 이상</td><td>4,900만원</td></tr> <tr><td>8시간 이상</td><td>5,600만원</td></tr> <tr><td>9시간 이상</td><td>6,300만원</td></tr> <tr><td>10시간 이상</td><td>7,000만원</td></tr> </tbody> </table>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2,400만원	4시간 이상	2,800만원	5시간 이상	3,500만원	6시간 이상	4,200만원	7시간 이상	4,900만원	8시간 이상	5,600만원	9시간 이상	6,300만원	10시간 이상	7,000만원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2,400만원																			
4시간 이상	2,800만원																			
5시간 이상	3,500만원																			
6시간 이상	4,200만원																			
7시간 이상	4,900만원																			
8시간 이상	5,600만원																			
9시간 이상	6,300만원																			
10시간 이상	7,000만원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갱신형)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p>&lt; 특약가입금액 7,000만원 기준 &gt;</p> <table border="1"> <thead> <tr> <th>마취시간</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td>3시간 이상</td><td>2,400만원</td></tr> <tr><td>4시간 이상</td><td>2,800만원</td></tr> <tr><td>5시간 이상</td><td>3,500만원</td></tr> <tr><td>6시간 이상</td><td>4,200만원</td></tr> <tr><td>7시간 이상</td><td>4,900만원</td></tr> <tr><td>8시간 이상</td><td>5,600만원</td></tr> <tr><td>9시간 이상</td><td>6,300만원</td></tr> <tr><td>10시간 이상</td><td>7,000만원</td></tr> </tbody> </table> <p>(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금액의 50%)(각 구간별)</p>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2,400만원	4시간 이상	2,800만원	5시간 이상	3,500만원	6시간 이상	4,200만원	7시간 이상	4,900만원	8시간 이상	5,600만원	9시간 이상	6,300만원	10시간 이상	7,000만원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2,400만원																			
4시간 이상	2,800만원																			
5시간 이상	3,500만원																			
6시간 이상	4,200만원																			
7시간 이상	4,900만원																			
8시간 이상	5,600만원																			
9시간 이상	6,300만원																			
10시간 이상	7,000만원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급여)(갱신형)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마취(급여)' 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연간 1회한)																		

구 분	지급 사유	지급 금액	
비영손해관련보장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li> <li>: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li> <li>-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li> </ul>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li> <li>: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li> <li>-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li> </ul>
	가족화재보험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판결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실손보상</li> <li>-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실손보상</li> </ul>
	의료사고 법률비용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해당액으로 1사고당 특약가입금액 한도 (단, 1심에 한함)
	강력범죄피해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폭력피해	폭력피해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약가입금액



구 분	지 급 사유	지 급 금 액
비영신권권면거장 가족법률비용 용손해II (의료과외)	피보험자에게 의료과외와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130%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피보험자의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li> <li>- 상대방변호사비용(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의 한도 내에서 실제 부담한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액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소송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30%를 초과하는 금액) :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소송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30%)</li> <li>- 인지액+송달료:500만원 한도</li> </ul>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구 분	지 급 사유	지 급 금 액
일상생활중배상책임V (가족)(누수사고포함)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대물(누수사고)/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대인/대물(누수사고)/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로 구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일상생활중배상책임V (가족)(누수사고제외) (갱신형)	보장개시일 이후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의 신체에 장애 또는 재물에 손해(누수사고제외)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로 구분하여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대인/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로 구분하여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

■ 주요 용어 해설

- **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
- **중환자실**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정한 중환자실
- **요양병원**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요양병원
- **5대장기** : 간장, 신장, 심장, 췌장, 폐장
- **중증화상/부식** : 신체표면적 20%이상의 3도 화상 및 부식
- **유사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
- **특정질병(남성)**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
- **특정질병(여성)**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신부전
- **남성생식기암** : 음경, 전립선, 고환의 악성신생물
- **여성특정암** : 유방 및 여성생식기관련(자궁/난소/외음/질/태반)의 악성신생물
- **재진단암** :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은 제외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장기에 재발된 암

4.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전립선암' 제외)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 **재진단암의 보장개시일**

1.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 (유사암 제외)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

•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 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2.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4.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부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보장개시일**

1. 첫 번째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최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번째 이후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직전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 **고액치료비암** : 식도의 악성신생물, 췌장의 악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위의 악성신생물, 림프/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 **13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 신부전,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폐렴, 녹내장, 결핵

• **다발성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 **26대질병 II** : 중증근무력증,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II, 치열 및 치루, 골수염 및 골괴사증, 뼈의 파쇄병 및 뼈의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눈및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후각특정질환II, 유방의장애II

• **58대질병 II** :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중이염, 중이 및 유도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

광의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강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희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고혈압, 당뇨병, 용혈-요독증후군(헴버거병), 비장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의 기타장애,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의한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질환, 위공장궤양,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I

• **24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폐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뇌및척수염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췌장염, 췌장질환,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버거씨병

• **3대질병** : 관절염, 백내장, 생식기질환 (단, N47, N48 제외)

• **10대질병** :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 **심뇌혈관질환** :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 **당뇨고혈질환** : 당뇨병, 고혈압

• **5대기관** : 뇌, 심장, 간, 폐, 신장

• **남성특징비뇨기계질환** : 사구체 질환, 세뇨관-간질, 신부전, 요로결석증, 신장 및 요관의 기타장애, 비뇨계통의 기타질환,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 **누수사고** : 피보험자의 주택 내 각종 급배수 설비를 비롯한 주택 건물 및 부대설비의 노후화, 하자, 결함 등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

• **6대기관** : 간, 담관(담낭 및 담보), 췌장, 기관지 및 폐, 갑상선, 생식기관

• **표적항암제**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 **보험료환급/지원(6대질병진단)**

- **납입경과월수** : 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월 계약해당일의 경과횟수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기본계약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본계약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월단위 기간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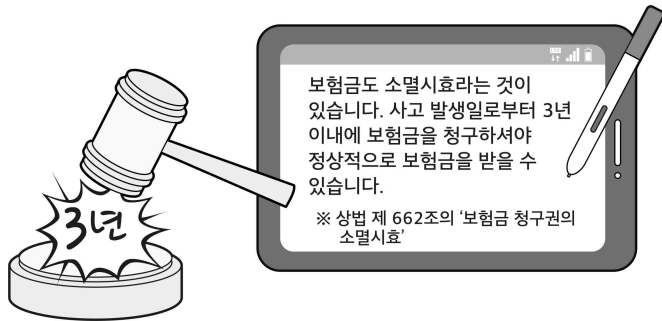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기본계약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기본계약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월단위 기간
- 보장용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보험금 지급제한 사항**

※ 건강고지II의 경우 담보명에서 [맞춤고지II] 생략

- 1) 이 상품의 배상책임관련보장 및 비용손해보장 등은 해당담보를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내용에 따라 비례보상 됩니다.
- 2)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및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 보장특약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3) 암수술(갱신형) 및 암수술 보장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는 약관에서 정한 '수술보험금' 의 지급이 불가능합니다.
- 4) 혈전용해치료가 함은 의사가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특정순환계질환 I' 및 '심뇌혈관질환'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 를 혈관으로 주입하는 치료를 말하며 ①항응고제 ②경구용약제 투약 ③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 제거술은 보상에서 제외됩니다.
- 5) 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내용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 본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바빠서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이 있는데, 아무 때나 청구하면 되나요?**



☞ **회사의 보장은 언제부터 시작되나요?**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단,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로부터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암진단II(유사암제외), 암진단II(유사암제외)추가, 암진단II(유사암제외)(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 여성특정암진단, 남성생식기암진단, 재진단암진단II, 재진단암진단II(갱신형), 전이암진단(최초1회한),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갱신형),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 통통진단, 당노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갱신형), 당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갱신형),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암수술, 암수술(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II, 항암약물치료II, 항암방사선치료II(갱신형), 항암약물치료II(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II(연간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II(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 전이암항암약물치료, 유방암으로인한 유방수술, 보형료환급/지원(6대질병진단), 보형료환급(6대질병진단),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선의약품)치료(연간1회한)(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 중증감상선암진단,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갱신형),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II(치료당), 항암약물치료II(치료당), 항암방사선치료II(치료당)(갱신형), 항암약물치료II(치료당)(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급여)(갱신형),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급여), 보험료납입면제대상, 특정암진단, 암진단II(소액암및유사암제외),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 및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10일면책)(갱신형), 암주요치료비II(연간1회한,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

신형), 항암방사선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항암방사선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항암약물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항암약물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암주요치료비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대장포진진단(10일연책),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갱신형), 고혈압(원발성)진단(갱신형),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갱신형),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 급여),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 급여)(갱신형),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갱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갱신형),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갱신형),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갱신형),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갱신형),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IV(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IV(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암주요치료비IV(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암주요치료비IV(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I(갱신형),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갱신형),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중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중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치료당, 36회한)(갱신형),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치매MRI·CT·PET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한), 특정치매약제치료(급여, 연간1회한),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 종합병원),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 상급종합병원) 및 무배당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보장특약의 경우는 해당 특별약관에서 정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을 따릅니다.

■ 이 상품의 보장 중에 보험 가입 후 일정기간 동안 보험금을 감액지급하거나 연책기간이 있는 보장이 있습니다.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지급	
암진단 II (유사암제외), 암진단 II (유사암제외) 추가, 암진단 II (유사암제외)(갱신형),	암(소액암, 유사암 제외)	90일면책	-	X
	소액암	90일면책	최초 계약일 부터 1년미만	○
허혈심장질환진단, 허혈심장질환진단(갱신형), 크론병진단,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1회한), 만성신부전증진단, 만성간질환진단,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진단, 120대질병수술 II, 다발성질환수술(3대질병), 120대질병수술 II(갱신형), 다발성질환수술(3대질병)(갱신형),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 급여),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최초1회한),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 뇌혈관질환( I )진단, 뇌혈관질환( II )진단, 심혈관질환(특정 I, I49제외)진단, 심혈관질환(149)진단,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 뇌혈관질환( I )진단(갱신형), 뇌혈관질환( II )진단(갱신형), 심혈관질환(특정 I, I49제외)진단(갱신형), 심혈관질환(149)진단(갱신형),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갱신형),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갱신형)		-	최초 계약일 부터 1년미만	○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 지급
심뇌혈관질환수술, 심뇌혈관질환수술(갱신형),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갱신형), 뇌혈관질환수술, 허혈성장질환수술,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 양전자방출단층촬영영상사지원비(PET)(연간1회한, 급여), 유사암진단 II, 유사암진단 II(갱신형), 뇌졸중진단, 뇌졸중진단(갱신형), 뇌출혈진단, 뇌혈관질환진단, 뇌혈관질환진단(갱신형), 급성심근경색증진단,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 급여)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갱신형),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 대상포진진단, 대상포진눈병진단, 추간판장애수술, 질병후유장애, 질병후유장애(갱신형), 2대질환임원중특정합병증진단,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 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 특정뇌동맥질환혈관색전술(연간1회한, 급여),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연간1회한, 급여)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갱신형)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갱신형)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 당뇨인슐린치료비(갱신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갱신형)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갱신형)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 지급
재진단암진단 II, 재진단암진단 II(갱신형), 고액치료비암진단, 중증갑상선암진단,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 급여),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환진단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환진단 특정암진단, 암진단 II(소액암및유사암제외),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갱신형),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연간1회한)(갱신형)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선의약품)치료(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진단(최초1회한),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갱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 전이암항암약물치료,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90일면책	-	X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 지급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 한)(갱신형),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 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 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갱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갱신형)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	90일면책	-	X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갱신형),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갱신형) 고혈압(원발성)진단(갱신형)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갱신형)	1년면책	-	X
유방암으로인한유방수술, 여성특정암진단, 남성생식기암진단, 통풍진단, 특정질화로봇수술(연간1회한)(갱신형),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90일면책	최초계약 일 부터 1년미만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 함))(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 터포함))(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 함))(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갱신형)	암(기 타피 부암, 갑상 선암 제외)  기타 피부 암, 갑상 선암	90일 면책	○
		최초계약 일부 부터 1년미만	○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 지급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연간1회한)(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갱신형)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 급여)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 급여)(갱신형)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90일 면책	-	X
항암방사선치료 II, 항암약물치료 II, 항암방사선치료 II(갱신형), 항암약물치료 II(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 II(치료당), 항암방사선치료 II(치료당)(갱신형) 항암약물치료 II(치료당), 항암약물치료 II(치료당)(갱신형)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한)(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 센터포함)) 항암방사선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 센터포함))(갱신형) 항암약물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 터포함)) 항암약물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 터포함))(갱신형) 암직접치료의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 암직접치료의원일당 (1-180일, 요양병원제외)(갱신형), 요양병원암의원일당(1-90일), 요양병원암의원일당(1-90일)(갱신형), 암수술, 암수술(갱신형), 암직접치료의원일당(상급종합병원), 암직접치료의원일당(종합병원)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갱신형)	암(유사암 제외)  유사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90일면책	-	X
			-	X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 지급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암주요치료비 II (연간1회한,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 III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암주요치료비 I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 I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 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 (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 (갱신형)	90일 면책	-	X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X
암(유사암 제외)  보험료환급/지원 (6대질병진단),  보험료환급 (6대질병진단)	90일면책	-	X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 말기폐질환	-	-	X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 지급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 V(가족) (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대인	-	X	
		대물, 누수	90일면책	-	X
		대물, 누수외	-	-	X
보험료납입면제대상	-	암(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간경화 말기신부전, 말기폐질환 상해후유장해(80%이상) 질병후유장해(80%이상) 중대한특정상해수술	90일면책	-	X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유사 암 및 소액암제외)	90일 면책	-	-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 상	90일 면책	소액암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	
		유사암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	
중증질환자 (중복암및재등록암) 산정특례대상	90일 면책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유사 암 제외)	-	-	
		유사암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암)	-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 (연간1회한, 10일면책)(갱신형)	10일면책	-	-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	10일면책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 지급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 당(3시간이상))(갱신형)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 시간당(3시간이상))(갱신형)	상해	-	-	X
	질병	-	최초계약일 부터 1년미만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환)(갱 신형),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환)(갱신형),	암(유사암 제외)	90일면책	-	X
	유사암	-	-	X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갱신형)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	90일 면책	-	X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10% 감액지 급	50% 감액지 급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연간 1회환),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갱신형)	-	최초계약일 부터 90일이내	○	-
		최초계약일 부터 90일 초과 1년미만	-	○

구 분	최초계약과 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면책기간	보험금 감액기간 및 감액지급		
		보험금 감액기간	50% 감액 지급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IV(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 ) 암주요치료비IV(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td>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td> <td>90일면책</td> <td>-</td> <td>X</td>	암(기타피부 암, 갑상선암 제외)	90일면책	-	X
암주요치료비IV(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암주요치료비IV(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 ) 암주요치료비IV(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td>기타피부암, 갑상선암</td> <td>-</td> <td>-</td> <td>X</td>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	X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갱신형)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갱신형)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갱신형)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 신형)		90일면책	최초계약 일 부터 1년미만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치료당, 36회환)(갱신형)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환), 치매MRI·CT·PET검사지원비(급여, 연간1회환), 특정치매약제치료(급여, 연간1회환)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환)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환, 종합병원)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환, 상급종합병원)		1년면책	-	X



## 2. 보험료 산출기초 및 공시이율

### 가. 보험료의 구성

#### <1종(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 적립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적립보험료 = 적립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험료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로 구성됩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보험료 = 보장보험료

보장보험료 = 보장순보험료 + 부가보험료 + 손해조사비

### 나. 적용이율

구 분	보장부분 적용이율	적립부분 적용이율
1종(일반형) 2종(납입면제형)	연단위 복리 2.7% (단, 독립특약 2.5%)	보장성 공시이율 V (단,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연단위 복리 2.7% (단, 독립특약 2.5%)	(해당 없음)

#### ☞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란?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 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을 '보장부분 적용이율'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보장부분 적용이율이 높으면 보험료는 내려가고, 낮아지면 보험료는 올라갑니다.

#### ☞ 적립부분 적용이율(보장성 공시이율 V)란?

적립부분 적용이율(보장성 공시이율 V)이란 보험회사가 장래 보험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의 납입보험료의 일정부분을 적립해 나가는데, 이 계약자적립액을 적립하는 이율을 의미합니다.

- (무)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 1종(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은 객관적인 외부지표금리\*와 운용자산이익률\*\*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율을 가감하여 매월 회사가 결정하는 보장성 공시이율 V에 연동되는 상품입니다. 보장성 공시이율 V가 변동될 경우 (무)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 1종(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의 적립부분 적용이율도 변동됩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입니다.

\* 외부지표금리는 국고채, 회사채, 통화안정증권,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고려하여 산출

\*\* 운용자산이익률은 직전 1년간 운용자산에 대한 투자영업수익과 투자영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산출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인터넷홈페이지 상품공시실에서 (무)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의 사업방법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최저보증이율이란?

회사의 운용자산이익률 및 시중금리가 하락하더라도 회사에서 지급을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  
(Hi2601)

**H** 현대해상

보통약관





##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의 질병, 상해 또는 비용손해에 대한 위험을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진단계약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료 기본납입형	제31조의1(보험료의 납입체증)을 적용하지 않으며 납입기간동안 일정한 보장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보험료 현명한납입형	제31조의1(보험료의 납입체증)에 의하여 기준보험료에서 1년주기로 기준보험료의 10%씩 체증한 금액을 보장보험료로 납입하며, 총 5회 체증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보험료 기본납입형 보장보험료 납입 예시 >  
20년납, 월납, 보장보험료 10만원 기준

구 분	보험료 기본납입형
1차년도	100,000원
2차년도	100,000원
3차년도	100,000원
4차년도	100,000원
5차년도	100,000원
6차년도	100,000원
7차년도	100,000원
...	
20차년도	100,000원

· 실제 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합니다.

#### 【 예시안내 】

< 보험료 현명한납입형 보장보험료 납입 예시 >  
20년납, 월납, 기준보험료 10만원 기준

구 분	보험료 현명한납입형
1차년도	100,000원
2차년도	110,000원
3차년도	120,000원
4차년도	130,000원
5차년도	140,000원
6차년도	150,000원
7차년도	150,000원
...	
20차년도	150,000원

· 실제 납입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합니다.

####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상해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
후유장해	[별표1]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장애상태를 말합니다.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다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 3. 지급금과 이자율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1차년도 이자 : 10원(100원(원금)×10%(이율)) 2차년도 이자 : 11원(110원(원금+1차년도 이자)×10%(이율))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fss.or.kr">www.fss.or.kr</a> )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다만,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관련법규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제2관 보험금의 지급**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상해사망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

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상해사망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상해후유장해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 ([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상해후유장해보장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용어해설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제3조의2 (보험료 납입면제)**

< 2종(납입면제형) >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2.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4조(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된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1.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

- 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제4조(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된 6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 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 (이하 '중대한특정상해수술' 이라 합니다.)을 받은 경우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차회 이후의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에 관한 사항 >**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에 가입하고, 회사가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를 납입면제하여 드립니다.

- ※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리고 보험료 납입면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 회사는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등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계약이 해지된 이후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제자리신 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4조 (6대질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계약에서 '6대질병' 이라 함은 아래 항에서 정의되는 '암' ( '유사암' 제외),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계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이 계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계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이 계약에서 ‘뇌졸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1]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⑪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⑫ 이 계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⑬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⑭ 이 계약에서 ‘말기신부전증’ 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콩팥병(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별표27] ‘말기신부전증 분류표’ 참조)
  - ⑮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⑯ 이 계약에서 ‘말기간경화’라 함은 만성 말기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알코올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1. 통체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 ⑰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⑱ 이 계약에서 ‘말기폐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6] ‘말기폐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 각호의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호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동일한 상태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이하

- ⑭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의1 (뇌손상 등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제8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계약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요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4조의2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계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⑤ 장애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을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⑦ 같은 상태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상태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해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해지급률 계산  
 • 장해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해(60%) - 보험가입 전 장해지급률(5%))

- ⑩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장애로 인한 후유장애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5조의2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2중(납입면제형), 3중(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 ①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1호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③ 장애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태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여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태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지급률이 결정된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결정된 후유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이 결정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결정된 후유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2.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 - 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 ⑧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 ( ‘유사암’ 제외)과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2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해당 질병과 관련된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2호의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 ( ‘유사암’ 제외)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추가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장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⑨ 제8항의 ‘암’ ( ‘유사암’ 제외)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⑩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8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⑪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⑫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의 상해관련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7조 (보험금 지급사유 등의 통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8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9조 (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 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를 조사·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와 지급 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이내를 지급)에 대하여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즉시 통지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조(보험금 등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정합니다.
  1. 소송제기
  2. 분쟁조정 신청
  3. 수사기관의 조사
  4.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한 조사
  5. 제6항에 따른 회사의 조사요청에 대한 동의 거부 등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의 조사와 확인이 지연되는 경우
  6.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제3자의 의견에 따르기로 한 경우
- ③ 제2항에 의하여 장해지급률의 판정 및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확정된 장해지급률에 따른 보험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분쟁으로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이미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가지급합니다.
- ④ 제2항에 의하여 추가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 회사는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따라 회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용어해설 】

#### < 가 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⑤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제2항의 규정에서 정한 지급예정일을 통지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⑥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사실 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제6항의 서면조사에 대한 동의 요청시 조사목적, 사용처 등을 명시하고 설명합니다.

### 제10조 (중도인출금)

#### < 1종(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 >

- ① 회사는 계약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된 유효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매 보험년도마다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금을 지급합니다.  
단, 중도인출금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는 계약에 한하여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중도인출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된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다만,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기본계약 해약환급금을 한도로 하며, 이하 동일합니다)의 80%의 범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도인출금의 총 누적액은 중도인출금을 한번도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의 80%를 한도로 하며, 이 계약에 의한 대출금이 있을 때에는 그 대출원금과 이자의 합계액을 공제한 후의 잔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③ 제1항의 중도인출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약자적립액에서 해당 중도인출금액을 차감합니다.
- ④ 중도인출시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에서 인출금액 및 인출금액에 적용되었을 이자만큼 차감되므로 만기(해약)환급금이 감소합니다.



### 【 용어해설 】

####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계약일이 2020년 8월 15일인 경우 보험년도는 8월 15일부터 다음년도 8월 14일까지 1년입니다.



### 【 예시안내 】

#### < 중도인출금의 한도 >

중도인출 시점에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의해 산출된 금액이 아래와 같은 경우

- 기본계약 해약환급금 : 120만원
-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 100만원  
(기본계약 적립부분 해약환급금이 기본계약 해약환급금보다 적음)  
⇒ 총 중도인출 가능액 = 100만원 × 80% = 80만원  
⇒ 기 신청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원금과 이자의 합계를 30만원으로 가정)  
잔여 중도인출 가능액 = 80만원 - 30만원 = 50만원

####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계약자는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유의사항 】

#### < 보험종목의 세목에 관한 사항 >

이 계약은 1종(일반형)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중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에 관한 사항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회사가 지급해야 할 해약환급금은 없습니다.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중도인출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제11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

- ① 이 계약의 기본계약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보장성공시이율V(이하 '공시이율' 이라 합니다)로 합니다.



단,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연단위 복리 0.3%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공시이율은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과 외부 지표금리를 가중평균하여 산출된 공시기준이율에서 향후 예상수익 등을 고려한 조정률을 가감하여 결정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공시이율 및 산출방법 등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 용어해설 】**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1%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자는 공시이율이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최저보증이율로 적용된 계약자적립액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운용자산이익률 >**

사업방법서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운용자산이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 외부지표금리 >**

사업방법서 ‘공시이율에 관한 사항’에 따라 국고채 수익률, 회사채 수익률, 통화안정증권 수익률 및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제12조 (만기환급금의 지급)**

**< 1종 (일반형) 및 2종 (납입면제형) >**

- ① 회사는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 만기환급금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이 때 만기환급금은 적립순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2종(납입면제형) 계약의 경우,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2항에 따라 적립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만기환급금은 납입중지 이전까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적립보험료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만기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다.

- ④ 회사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청구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의한 만기환급금의 지급시기가 되면 지급시기 7일 이전에 그 사유와 지급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알려드리며, 만기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 만기환급금 계산에 관한 사항 >**

보험기간 중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만기시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합니다.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

이 계약은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에 관한 사항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은 적립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1종 (일반형) 및 2종 (납입면제형) >**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사망당시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이 계약의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회사가 적용한 이 계약의 사망당시 적립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금액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을 말합니다.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차회 보험료 납입시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일시납 또는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미경과보험료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함에 있어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 따릅니다.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사망당시 보장부분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보장하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사망당시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장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말합니다.

제14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

보험금 : 6,000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 2025년 1월 1일 일 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지급액
2025년 1월 1일	2천만원
2026년 1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2027년 1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sup>2</sup>

제15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보험수익자가 계약자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를 포함합니다)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에 한합니다.

제16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의 보험수익자는 만기환급금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사망보험금의 경우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으로 하며, 이외의 보험금은 피보험자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제17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 예시안내 】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 제18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규정에 따른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 제19조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우편, 전화, 방문 등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직업 또는 직무의 변경
    - 가. 현재의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 나.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 다.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



#### 【 용어해설 】

##### < 직업 >

- ① 생계유지 등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동안(예: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종사하는 일
-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의 사회적 신분에 따르는 위치나 자리를 말함(예) 학생, 미취학아동, 무직 등

##### < 직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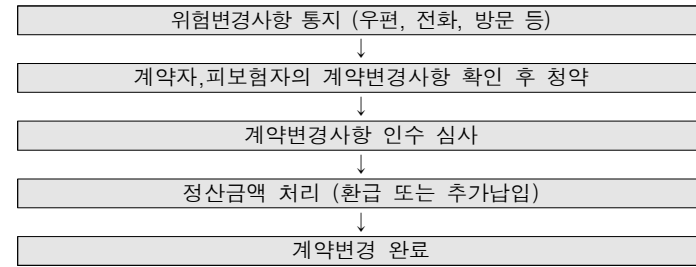
직책이나 직업상 책임을 지고 담당하여 맡은 일

2.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 목적이 변경된 경우  
예)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변경,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 등
  3. 보험증권 등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운전여부가 변경된 경우  
예) 비운전자에서 운전자로 변경, 운전자에서 비운전자로 변경 등
  4.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계속적으로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로 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하게 된 경우(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통지로 인하여 위험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 예시안내 】

##### < 위험변경에 따른 계약변경 절차 >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계약내용을 변경할 때 위험이 감소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감액하고,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이라 합니다)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는 보험료의 증액 및 정산금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일시납 또는 잔여 보험료 납입기간과 5년 중 큰 기간(단, 잔여 보험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동안의 분납 중 선택하여 정산금액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료 갱신형 계약 등 일부 보험계약의 경우 분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의 경우에도 '위험이 감소 또는 증가' 된 경우 '보험료의 감액 또는 증액' 및 '정산금액의 환급 또는 추가납입' 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④ 제1항의 통지에 따라 위험의 증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경우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정산금액을 포함합니다)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때, 회사는 위험이 증가되기 전에 적용된 보험요율(이하 '변경전 요율' 이라 합니다)의 위험이 증가된 후에 적용해야 할 보험요율(이하 '변경후 요율' 이라 합니다)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험금을 삭감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증가된 위험과 관계없이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관해서는 원래대로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 각 호의 변경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았을 경우 변경후 요율이 변경전 요율보다 높을 때에는 회사는 그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제4항에 따라 보장됨을 통보하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 상해보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에 따른 보험금 삭감 예시 >**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회사가 청구한 추가보험료를 계약자가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 120, 변경전 요율 : 50, 변경후 요율 : 60]

$$\bullet \text{ 삭감후 보험금} = 100 = \text{보험금}(120) \times \frac{\text{변경전 요율}(50)}{\text{변경후 요율}(60)}$$

**제20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9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

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1년)이 지난을 때
- 3. 계약체결일(갱신형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4. 회사가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5.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고지를 권유했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한 고지를 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3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제1항 제2호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19조(상해보험 계약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 관계없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⑧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유의사항 】**

보험계약을 청약하면서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이 있다고만 얘기하였을 뿐, 청약서의 계약전 알릴 사항에 아무런 기재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설계사에게 고혈압 병력을 얘기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21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대리진단, 약물사용을 수단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의 진단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2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단을 받지 않는 계약은 청약일, 진단계약은 진단일(재진단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부터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라 일부보장 제외 조건을 붙여 승낙하였더라도 청약일로부터 5년(갱신형 계약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의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보장이 제외되는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약관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⑥ 제5항의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부활을 청약한 날을 제5항의 청약일로 하여 적용합니다.



**【 용어해설 】**

**< 1종 (일반형) 및 2종 (납입면제형) >**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와 ‘적립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가 적립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필요한 적립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begin{aligned} \text{보험료} &= \text{보장보험료} + \text{적립보험료} \\ \text{보장보험료} &= \text{보장순보험료} + \text{부가보험료} + \text{손해조사비} \\ \text{적립보험료} &= \text{적립순보험료} + \text{부가보험료} \end{aligned}$$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보험료는 계약자가 계약에 의거하여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을 말하며, 보험료는 ‘보장보험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험료는 보험금 지급을 위한 보장순보험료, 회사의 사업경비를 위한 부가보험료 및 보험금 지급 조사를 위한 손해조사비로 구성됩니다.

$$\begin{aligned} \text{보험료} &= \text{보장보험료} \\ \text{보장보험료} &= \text{보장순보험료} + \text{부가보험료} + \text{손해조사비} \end{aligned}$$

**제23조 (피보험자의 범위)**

이 계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본인을 말합니다.

### 제24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용어해설 】

#####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 관련법규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 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1항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하여 다툼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제25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 용어해설 】

#####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경우



#### 【 용어해설 】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보통약관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행사방법·효과 등)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포함)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 저축성보험 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
-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및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6조 (계약의 무효)**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1.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피보험자의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  
다만, 단체가 규약에 따라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때 단체보험의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이 아닌 자로 지정할 때에는 단체의 규약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적용합니다.
2. 만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한 경우  
다만, 심신박약자가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속 단체의 규약에 따라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 용어해설 】**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치산자가 되며, 금치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에서 정한 피보험자의 나이에 미달되었거나 초과되었을 경우.  
다만, 회사가 나이의 착오를 발견하였을 때 이미 계약나이에 도달한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보나, 제2호의 만15세 미만자에 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27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다만,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계약의 경우 보험종목,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 보험가입금액의 증액 및 보장의 추가는 신청할 수 없으며, 보험료 현명한납입형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의 변경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주기,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 없이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된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권리를 대항하기 위해서 계약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유의사항 】

##### < 계약자의 보험수익자 변경 통지 >

계약자가 회사에 보험수익자가 변경되었음을 통지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변경 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변경된 보험수익자에게는 별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④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가 제2항에 따라 보험수익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피보험자가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경우로서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를 포함)으로 동의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 유의사항 】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제28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6조(계약의 무효) 제2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 나이를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 예시안내 】

##### < 보험나이 계산 >

생년월일 : 1994년 3월 3일, 현재(계약일) :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0월 13일 - 1994년 3월 3일 = 29년 7개월 10일 = 30세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성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계약해당일 >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2023년 10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0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나이 또는 성별의 정정 기준 >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합니다.

#### 제29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5관 보험료의 납입

####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1.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나 건강진단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2.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3. 진단계약에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진단계약에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해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드립니다.
- ⑤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계약의 경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조(6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이 경우 적립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일부터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적립하여 드리고,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거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되었을 경우에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적립보험료는 제11조(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에 정한 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31조의1 (보험료의 납입체증)

- ① 계약자는 보험료 현명한납입형의 경우 납입회차별 아래의 금액을 보장보험료로 합니다.

납입회차	보장보험료
제1~12회	기준보험료의 100%
제13~24회	기준보험료의 110%
제25~36회	기준보험료의 120%
제37~48회	기준보험료의 130%
제49~60회	기준보험료의 140%
제61회 이후	기준보험료의 150%

- ② 제1항의 기준보험료는 계약일 당시 제1회 보장보험료로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된 초회보험료를 의미합니다. 단,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계약내용으로 산출된 초회보험료를 기준보험료로 합니다.
- ③ 20년납의 경우 제1항의 납입회차는 제1회부터 240회까지이며, 30년납의 경우 제1항의 납입회차는 제1회부터 360회까지입니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보장 특약은 보험료 납입체증에서 제외됩니다.



구분	내용
갱신형 특약	사업방법서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의 갱신형 특별약관
질병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치매MRI·CT·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특정치매약제치료(급여,연간1회한),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종합병원),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상급종합병원)
상해 또는 질병	보험료납입면제대상, 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비용	가족화재배금, 의료사고법률비용,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 가족법률비용손해Ⅱ(의료과외)
독립특약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Ⅴ(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32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0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

- 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3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제33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와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④ 보험수익자와 계약자가 다른 경우 보험수익자에게도 제1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⑤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하며, 계약의 해지 전에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차회 이후의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⑥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3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3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35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27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보험수익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한 보험수익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보험수익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수익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보험수익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승낙합니다.



**【 용어해설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36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및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


- ①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3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26조(계약의 무효)에 따라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서면으로 동의를 한 피보험자는 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에는 언제든지 서면동의를 장래에 한하여 철회할 수 있으며, 서면동의 철회로 계약이 해지되어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3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6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 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39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37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3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38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39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9조 (해약환급금)**

**< 1종 (일반형) 및 2종 (납입면제형) >**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유의사항 >**

계약이 해지되기 전 지급된 중도인출금이 있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시점부터 해지할 때까지 해당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하였을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⑤ 제3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절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해약환급금에 관한 유의사항 >

- 1)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이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표준형 해약환급금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 2)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표준형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된 금액으로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 3) 회사는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계약을 체결할 때 표준형과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환급률 포함) 수준을 비교·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정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⑤ 제36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절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중 아래의 보장 특약은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약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3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일반심사 >

구분	보장 특약
갱신형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의 갱신형 특별약관
상해	5대골절수술,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 화상수술,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 중증화상/부식진단Ⅱ,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
질병	다발경화증진단, 대상포진뇌병진단, 크론병진단, 뇌혈관질환수술, 허혈심장질환수술, 당뇨고혈압질환수술,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 급여), 중증갑상선양진단,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 독감(인플루엔자)입원일당(1-30일), 120대질병수술Ⅱ, 총수염수술,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 여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진단, 특정강염질환(특정패혈증Ⅱ, 수술후강염, 기타강염)수술,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특암)산정특례대상,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
상해질병	보험료납입면제대상, 각막이식수술, 조혈모세포이식수술, 5대장기이식수술,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연간1회한, 급여), 김스치료
비용	가족화재보험, 의료사고법률비용, 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 3종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건강고지Ⅱ(6년), 건강고지Ⅲ(7년), 건강고지Ⅳ(8년), 건강고지Ⅴ(9년), 건강고지Ⅵ(10년)>

구분	보장 특약
갱신형 특별약관	사업방법서 별지 '8. 갱신계약에 관한 사항' 의 갱신형 특별약관
상해	5대골절수술[맞춤고지 II], 상해수술III(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 II], 화상수술[맞춤고지 II],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맞춤고지 II],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맞춤고지 II], 중증화상/부식진단 II[맞춤고지 II],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 강력범죄피해, 폭력피해
질병	다발경화증진단[맞춤고지 II], 대상포진뇌병진단[맞춤고지 II], 크론병진단[맞춤고지 II], 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 II], 허혈심장질환수술[맞춤고지 II], 당뇨고혈압질환수술[맞춤고지 II],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 II], 중증감상선암진단[맞춤고지 II],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맞춤고지 II], 독감(인플루엔자)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 120대질병수술 II [맞춤고지 II], 총수염수술[맞춤고지 II],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맞춤고지 II]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 II], 여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맞춤고지 II],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진단[맞춤고지 II], 특정강염질환(특정폐혈증 II, 수술후강염, 기타강염)수술[맞춤고지 II],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특암)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맞춤고지 II],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맞춤고지 II]
상해질병	보험료납입면제대상[맞춤고지 II], 각막이식수술[맞춤고지 II], 조혈모세포이식수술[맞춤고지 II], 5대장기이식수술[맞춤고지 II]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 II], 갑스치료[맞춤고지 II]
비용	가족화재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 제40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41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2조 (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43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제44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유의사항】

##### < 소멸시효의 완성 >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3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45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 신의성실의 원칙 >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제46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의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제47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에게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함의로 보험수익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용어해설 】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함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자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48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49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0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환급금을 각각 예금자 1인당 1억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반환기일 <sup>주)</sup>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지급기일 <sup>주)</sup>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 부터 6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sup>주)</sup>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 부터 90일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가산이율(8.0%)	
만기환급금 (1,2종에 한함)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린 경우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회사가 환급금의 지급시기 7일 이전에 지급사유와 지급금액을 알리지 않은 경우		1년 초과	공시이율의 40%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공시이율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해약환급금	1종(일반형) 2종(납입연체형)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공시이율의 40%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이율의 50%
1년 초과			평균공시이율의 40%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글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 ※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 보험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영업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3. 가산이율  
 - (우)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 보통약관 제9조(보험금 등의 지급절차)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  
(Hi2601)

**H** 현대해상

## 특별약관



해당 특별약관에서 '보통약관'이라 함은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  
보통약관을 말합니다.

---





# 1. 상해관련 특별약관

## 1-1 상해사망추가보장 특별약관 / 상해사망추가[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2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사망[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상해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 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6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 상해후유장해(20%이상)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20%이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2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후유장해보험금 (20%이상)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2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

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③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⑧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상해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80%이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애분류표(별표1) ‘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상해로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③ 장애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

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 상해후유장애(50%이상)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애(50%이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애분류표(별표1) ‘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후유장애보험금	상해로 장애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애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에 따릅니다.

-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 - 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 상해후유장애(80%이상,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애(80%이상,월지급형)[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애분류표(별표1) ‘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월지급액을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방법	1회 지급액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상해로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월지급액

- ② 이 특약에서 월지급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매월 확정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월지급액의 지급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③ 장애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해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해지급률 계산  
 • 장해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해(60%)-보험가입 전 장해지급률(5%))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고도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 상해후유장해(50%이상,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후유장해(50%이상,월지급형)[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월지급액을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매월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방법	1회 지급액
중증후유장해 보험금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월지급액을 매월 확정지급	월지급액

- ② 이 특약에서 월지급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금 지급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매월 확정 지급하여야 할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선택한 월지급액의 지급기간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애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상해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애가 이미 후유장애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 - 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중증후유장애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8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



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골절진단보험금	'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해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9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골절진단보험금	'골절'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해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치아파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해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0 골절진단Ⅱ(치아파절제외)(1-5급)보장 특별약관 / 골절진단Ⅱ(치아파절제외)(1-5급)[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1-5급)’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골절등급분류기준표1의 골절등급’ 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골절진단 (1-5급) 보험금	‘골절(1-5급)’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골절등급분류 기준표1의 골절등급’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지급금액		
			보험가입 금액 500만원기준	보험가입 금액 300만원기준	보험가입 금액 50만원기준
		1급	500만	300만	50만
		2급	200만	150만	30만
		3급	100만	100만	30만
		4급	50만	50만	20만
		5급	30만	30만	20만

**제2조 (골절(1-5급)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골절(1-5급)’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골절(1-5급)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치아파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골절등급분류기준표1의 골절등급’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1] ‘골절등급분류기준표1’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상태를 기준으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1-5급)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골절진단(1-5급)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골절진단(1-5급)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골절진단(1-5급)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1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보장 특별약관 /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 ( ‘치아파절’ 제외)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골절부목치료 보험금	‘골절’ ( ‘치아파절’ 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골절’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치아파절’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부목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부목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부목(Splin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골절(치아파절 제외) 환자의 근골격계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근골격계 손상 부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을 부목(Splint)으로 고정하면서 지지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치료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Sling, Brace 등)는 ‘부목(Splint)’에서 제외됩니다.

**【 유의사항 】**

‘부목(Splint)치료’라 함은 ‘골절(치아파절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T6151~T6155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골절상태가 발생하여 부목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부위에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골절부목치료보험금

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2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연간10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연간10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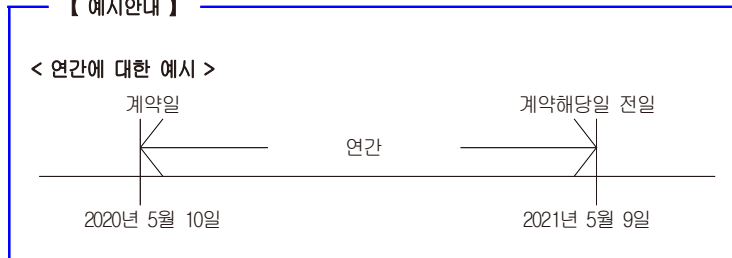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병원에 입원중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이하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이하 ‘외래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골절 특정재활치료 (급여)보험금	‘골절’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0회한 (1일 1회한)

- ② 제1항의 골절 특정재활치료(급여)보험금은 연간 발생한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골절 등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골절 특정재활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의 골절 치료 중, 골절 치료 완료 후 골절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라 함은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

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간헐적견인치료-경추견인	MM051
간헐적견인치료-골반견인	MM052
전기자극치료-마비근 치료	MM060
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TENS]	MM070
간섭파전류치료[ICT]	MM080
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MM085
단순운동치료 [1일당]	MM101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 [1일당]	MM10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105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 [1일당]	MM114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MM151
압박치료 [1일당]	MM190
재활기능치료-매트 및 이동치료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MM302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에 준하여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외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골절'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외래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시안내 】**

- < 예시1 >  
 병원에 통원하여 간헐적견인치료-경추견인(MM051)과 간섭파전류치료(MM080), 압박치료(MM190)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 (여러 진료행위를 받더라도 1일 1회에 한함)
- < 예시2 >  
 병원에 통원하여 간섭파전류치료(MM080) 재활치료를 받고, 그 날 입원하여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MM114)와 단순운동치료(MM101)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2회** 지급 (외래 1회 + 입원 1회)
- < 예시3 >  
 입원하여 8일간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고, 퇴원 후 병원에 통원하여 5일간 급여 골절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0회** 지급(입원과 외래를 각각 합산(13회)하여 연간 10회 한도)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3 5대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 5대골절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5대골절진단보험금	'5대골절'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5대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5대골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 '5대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해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5대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4 경추/흉추및요추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  
경추/흉추및요추골절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경추,흉추 및 요추 골절’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진단보험금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 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 등의 정의)**

이 특약에서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2가지 이상의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5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화상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화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화상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화상진단보험금	‘화상’ (심재성 2도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 ‘화상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두 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인 경우에도 1회에 한하여 화상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6 중증화상/부식진단II보장 특별약관 / 중증화상/부식진단II[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화상/부식 진단보험금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중증 화상’ 이라 함은 최소 20% 이상의 신체 표면적에 3도 화상을 입은 경우를 말하며, ‘중증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이라 함은 최소 20% 이상의 신체 표면적에 3도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신체 표면적은 ‘9의 법칙(Rule of 9's)’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Lund & Browder chart)’ 에 의해 측정된 경우를 말하며, ‘9의 법칙’ 또는 ‘룬드와 브라우더 신체 표면적 차트’ 측정범처럼 표준화되고 임상학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다른 신체 표면적 차트를 사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나온 것도 인정합니다.
- ‘중증 화상 또는 중증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 화상 또는 중증 부식(화학약품 등에 의한 피부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부식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17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맞춤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외상성뇌출혈 진단보험금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특정외상성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외상성뇌출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4] '특정외상성뇌출혈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외상성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특정외상성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외상성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18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외상성뇌손상 진단보험금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특정외상성뇌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외상성뇌손상’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3] ‘특정외상성뇌손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외상성뇌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외상성뇌손상’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19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특정외상성장기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진단보험금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특정외상성장기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5] ‘특정외상성장기손상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수술을 하지 않은 탈장 및 내장장기의 단순 부종이나 단순 울혈 등은 제외합니다.
-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이학적 검진과 함께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20 통합상해진단보장 특별약관 / 통합상해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통합상해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통합상해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합상해분류표’ ([별표148] ‘통합상해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통합상해사고’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구분 및 부위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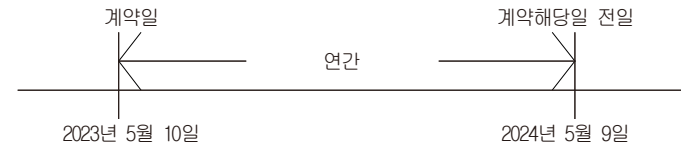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경증상해 진단보험 금	'머리 및 목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복부 및 등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어깨 및 팔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손목 및 손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엉덩이 및 다리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발목 및 발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의 경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경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중등증상 해진단보 험금	'머리 및 목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복부 및 등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어깨 및 팔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손목 및 손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엉덩이 및 다리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발목 및 발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의 중등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등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상해진단보험 금	'머리 및 목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복부 및 등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어깨 및 팔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손목 및 손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엉덩이 및 다리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발목 및 발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기타의 중증상해'로 진단 확정된 경우	'중증상해진단보험금'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통합상해사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통합상해사고'라 함은 [별표148] '통합상해분류표'에 해당하는 상해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통합상해사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방사선 촬영(X-ray), 기타 정밀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통합상해사고'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1 상해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금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금여금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금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금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혐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혐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22 상해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금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금여금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30일 한도)

####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금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금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3 상해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4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할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5 상해입원일당(1-1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0일,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6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를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7 상해입원일당(1-1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10일,중환자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다만,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상해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0일 한도)

###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28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30일 한도)

###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29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30일 한도)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죽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0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30일 한도)

###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1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30일 한도)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

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상해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2 골절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골절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되어 그 ‘골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골절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골절중환자실 입원급여금	골절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제2조 (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골절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골절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골절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3 화상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화상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으로 진단확정되어 그 ‘화상’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화상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화상중환자실 입원급여금	화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0일 한도)

### 제2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 '화상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제3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화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화상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화상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화상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34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아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0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 상해입원급여금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60일 한도)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자

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재활병동' 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안내하는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병동으로 지정된 병동을 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재활병동을 제외한 병동을 '일반병동' 이라 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각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 상해입원급여금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 상해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 및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작일부터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호를 각각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호를 각각 적용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

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5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1-180일)보장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1-180일)(갱신형)보장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1-180일)[맞춤고지Ⅱ]보장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금액)	지급금액
상해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8만원 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 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만원 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 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 사용일수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2024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6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입원일수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사용1. 2024년 4월 10일 ~ 1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88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이상에 해당) → 6만원 X 8일 = 48만원 지급
    - 사용2. 2024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52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미만에 해당) → 3만원 X 8일 = 24만원 지급
- 총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48만원 + 24만원 = 72만원 지급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보장 보험가입금액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 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급여금 및 상해입원간호·간병통합서 비스(재활병동)사용급여금 각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상해입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일반병동) 사용급여금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 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 활병동)사용급여금' 보장 보험가입금액
2. 상해입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재활병동) 사용급여금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④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 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 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 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제5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재활병동’ 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안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병동으로 지정된 병동을 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재활병동을 제외한 병동을 ‘일반병동’ 이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강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책임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1-36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보장 및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은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일반병동/재활병동)보장’ 과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 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및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은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일반병동/재활병동)보장’ 과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 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36-1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일반병동/재활병동)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 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상해로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5일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사용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상해로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185일 한도)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이 보장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정신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한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작일부터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을 지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상해입원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상해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제6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축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36-2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 (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보장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금액)	지급금액
상해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정신/한방 병원및의원제외) (181일이상)	상해로 병원(요양/정신/한 방병원및의원제외) 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만원 미만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 (181일이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185일한도)
		8만원 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 (181일이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185일한도)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과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 사용일수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2024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6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입원일수 214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사용1. 2024년 5월 10일 ~ 2024년 11월 22일 : 총 사용일수 197일, 사용금액 총 1,773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이상에 해당) → 가입금액 6만원 X 17일(=197일-180일) = 102만원 지급  
사용2. 2024년 11월 22일 ~ 11월 26일 오전, 11월 27일 오후 ~ 11월 29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52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미만에 해당) → 가입금액 6만원 X 50% X 8일 = 24만원 지급  
· 총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24일  
보험금 102만원 + 24만원 = 126만원 지급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정신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한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 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속, 채워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조를 적용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및의원제외)에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기간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제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7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보장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Ⅵ(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금액)	지급금액
상해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만원 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8만원 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 사용일수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2024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6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입원일수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사용1. 2024년 4월 10일 ~ 1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88만원
      - ☞ (1일당 평균 8만원 이상에 해당) → 6만원 X 8일 = 48만원 지급
    - 사용2. 2024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52만원
      - ☞ (1일당 평균 8만원 미만에 해당) → 3만원 X 8일 = 24만원 지급
- 총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금액
  -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 보험금 48만원 + 24만원 = 72만원 지급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 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

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족,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

- 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강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

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기간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제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8 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수술보험금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39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수술입원’이라 합니다)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수술입원급여금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2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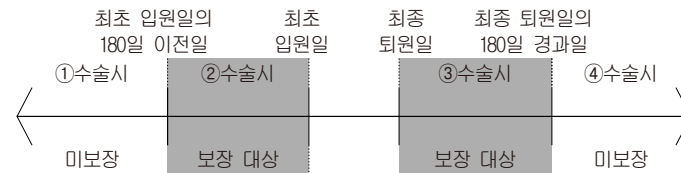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수술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로부터 '최초 입원일'
  2.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예시안내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① '최초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로부터 '최초 입원일'에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 ③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 ④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후 수술시 미보장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0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수술입원’이라 합니다)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수술입원급여금	상해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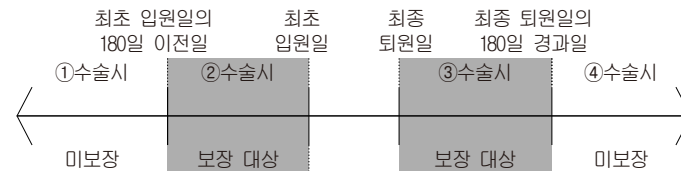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수술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을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로부터 '최초 입원일'
  2.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예시안내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① '최초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로부터 '최초 입원일'에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 ③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수술입원급여금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 ④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후 수술시 미보장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격리증(양쪽 눈을 강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통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41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종합병원 수술입원'이라 합니다)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20일 한도)

####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종합병원수술입원’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수술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종합병원수술입원’ 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수술' 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제1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로부터 '최초 입원일'
  2.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 이내

【 예시안내 】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장 기준 >



- ① '최초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로부터 '최초 입원일' 에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 ③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9항에 따라 보장
- ④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 후 수술시 미보장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안검내반(눈꺼풀 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42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이라 합니다)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입원일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20일 한도)

###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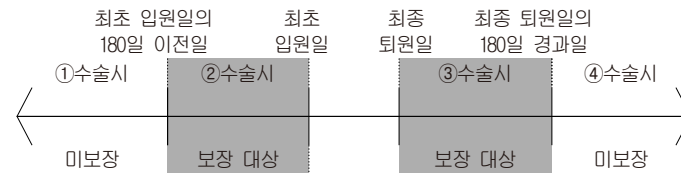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수술’ 이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 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수술’ 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에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제1항 내지 제9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로부터 ‘최초 입원일’
  2.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 이내

【 예시안내 】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 ① ‘최초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로부터 ‘최초 입원일’ 에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보장
- ③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해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9항에 따라 보장
- ④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 후 수술시 미보장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3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퇴원없이 계속 2일 이상 입원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수술 (당일입원제외)보험금	상해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신의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4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통원수술 (당일입원포함)보험금	상해로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당일입원' 이라 함은 입원일자와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통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5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경증상해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경증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써 퇴원 없이 계속 2일 이상 입원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수술 (당일입원제외)보험금 (경증상해제외)	상해(경증상해제외)로 2일이상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당일입원'이라 함은 입원일자과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입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입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보험금(경증상해제외)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경증 상해(치아의 탈구(S03.2), 치아의 파절(S02.5))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6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경증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써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통원수술 (당일입원포함)보험금 (경증상해제외)	상해(경증상해제외)로 통원(당일입원포함)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지 않고 의사의 관리 하에 치

- 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당일입원’ 이라 함은 입원일자과 퇴원일자가 동일한 입원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통원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상해통원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보험금(경증상해제외)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경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경증 상해(치아의 탈구(S03.2), 치아의 파절(S02.5))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7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1-5종수술Ⅲ 분류표’ ([별표36] ‘1-5종수술Ⅲ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보험금	상해로 ‘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1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2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3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4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해로 ‘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수술Ⅲ(5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Ⅲ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단,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해수술Ⅲ(1-5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안검내반(눈꺼풀 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

- 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력개선 목적으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수술확인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48 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 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골절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골절수술[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골절수술보험금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골절'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49 골절수술 II (1-5급)보장 특별약관 / 골절수술 II (1-5급)[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1-5급)’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골절등급분류기준표2의 골절등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골절수술 (1-5급) 보험금	‘골절(1-5급)’로 ‘골절등급분류기준표 2의 골절등급’에 해당되어 수술을 받은 경우	지급금액		
		구분	보험 가입금액 300만원기준	보험 가입금액 50만원기준
		1급	300만	50만
		2급	150만	30만
		3급	100만	30만
		4급	50만	20만
5급	30만	20만		

**제2조 (골절(1-5급)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골절(1-5급)’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 ‘골절(1-5급)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골절등급분류기준표2의 골절등급’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2] ‘골절등급분류기준표2’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경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골절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골절수술을 기준으로 하나의 골절수술(1-5급)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동일한 사고로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골절수술(1-5급)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높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골절수술(1-5급)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골절수술(1-5급)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0 5대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 5대골절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5대골절’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5대골절수술보험금	5대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5대골절의 정의)

이 특약에서 '5대골절'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 '5대골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5대골절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5대골절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5대골절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51 화상수술보장 특별약관 / 화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화상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화상수술[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화상'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화상수술보험금	'화상' (심재성 2도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화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화상'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 '화상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으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말합니다.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화상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화상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화상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2.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2 심한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 심한상해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2조(심한상해의 정의)에서 정한 신경 또는 장기에 손상이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한상해수술보험금	‘심한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심한상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심한상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9] ‘심한상해 분류표’에서 정한 상병을 말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심한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심한상해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한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3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 중대한특정상해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또는 ‘개복(開腹)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험금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을 입고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뇌손상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뢰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뇨도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54 상해흉터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 상해흉터성형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상해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500만원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흉터성형수술보험금	상해로 '상해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 안면부 : 수술 1cm당 14만원 · 상지/하지 : 수술 1cm당 7만원 (단, 3cm 이상에 한함) ※ 최고 500만원 한도

#### 제2조 (상해흉터성형수술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상해흉터성형수술' 이라 함은 '안면부', '상지', '하지' 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안면부', '상지', '하지' 라 함은 다음을 말합니다.
  - '안면부' 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 '상지' 란 견관절 이하의 팔부분을 말합니다.
  - '하지' 란 고관절 이하 대퇴부, 하퇴부, 족부를 말하며 둔부, 서혜부, 복부 등은 제외합니다.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상해흉터성형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상지' 또는 '하지' 에 대하여는 3cm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길이측정이 불가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5 자동차사고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해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보험금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자동차사고성형수술’이라 함은 자동차사고로 외형상의 반흔(흉터)이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부터 1년 이 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자동차사고’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고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 1.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한 자동차사고
  - 2. 운행중인 자동차에 운전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탑승하고 있을 때에 발생한 자동차 사고
  - 3. 운행중인 자동차에 탑승하지 않은 때, 운행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자동차사고
- ③ 이 특약에서 ‘자동차’라 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한 건설기계(덤프트럭, 타이어식 기중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타이어식 굴삭기, 트랙지게차, 도로보수트럭, 노면측정장비 등)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사고로 성형수술을 두 번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자동차사고성형수술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  
로 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내고 도주하였을 경우
  2.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
  3. 제2조(자동차사고성형수술 등의 정의)에서 정한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  
안 발생한 손해
  4.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영업목적으로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6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보장 특별약관 /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치료를 받고 그 직접결과로써 ‘안  
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최대수술 길이에 따라 수술 1회당 아  
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안면부 상해흉터 성형수술 보험금	상해로 '안면부상해 흉터성형수술' '을 받은 경우	최대 수술길이가 1cm 이상 5cm 미만인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30% 해당액
		최대 수술길이가 5cm 이상 10cm 미만인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60% 해당액
		최대 수술길이가 10cm 이상인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 이라 함은 '안면부' 에 외형상의 반흔(흉터)이 나 추상장해,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해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부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사고발생시점 만15세 미만자의 경우 부득이 사고일부 2년 경과후에 성형수술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에서 '안면부' 라 함은 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최대수술길이란 하나의 독립된 반흔(흉터)의 최대 길이를 기준으로 하며, 길이측정이 불가능한 피부이식수술 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 직경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7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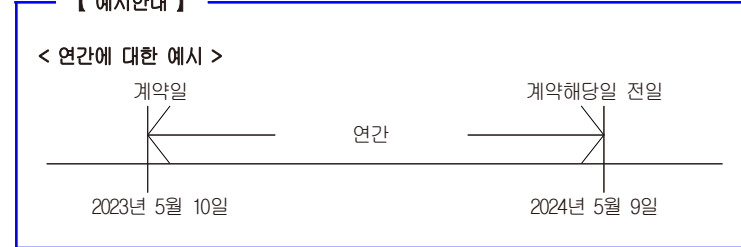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주요관절손상’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주요관절의 부위별로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주요관절(팔꿈치, 손목, 발목)손상수술치료보험금	‘주요관절(팔꿈치, 손목, 발목)손상’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2. 주요관절(어깨, 무릎)손상 수술치료보험금	‘주요관절(어깨, 무릎)손상’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3. 주요관절(고관절)손상 수술치료보험금	‘주요관절(고관절)손상’으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주요관절손상의 정의)**

이 특약에서 ‘주요관절손상’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96] ‘주요관절손상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제3조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라 함은 ‘주요관절손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별표97]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에 준하여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외에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58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해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입원후통원'이라 합니다)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3일이상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퇴원없이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경우
2.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제1호의 퇴원일(이하 상해입원후통원급여금의 '기준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 이내에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통원한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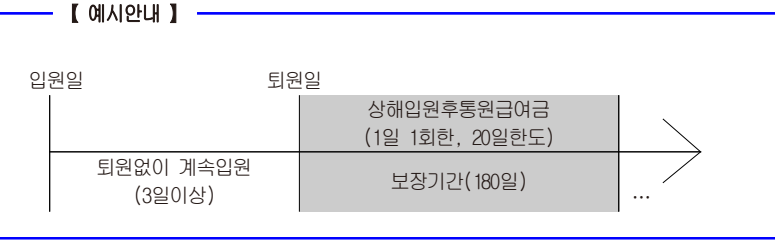
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후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20일을 한도로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후 통원급여금	상해로 '입원 후 통원' 한 경우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입원후통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0일 한도)

**【 유의사항 】**

※ 피보험자가 해당 상해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통원) 하더라도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입원(통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제2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4조(병원 등의 정의)에서 정한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4조(병원 등의 정의)에서 정한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

상해

---

질병

---

상해  
및  
질병

---

비용  
손해

---

독립  
특별  
약관

---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치과의원' 및 '한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의원 및 한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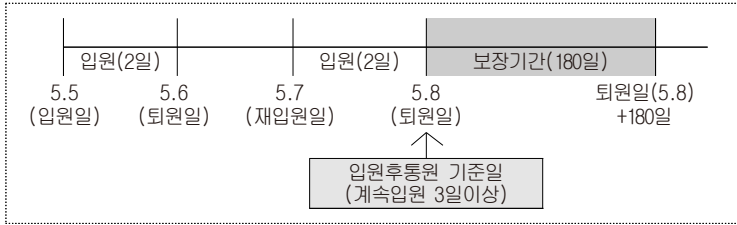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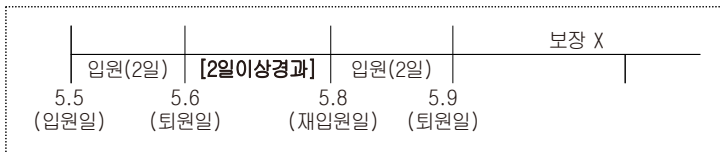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퇴원일을 포함하여 2일이 지난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다시 입원하더라도 상해입원후통원급여금의 기준일(퇴원일),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해입원후통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1(제5조 제1항) :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동일한 상해로 재입원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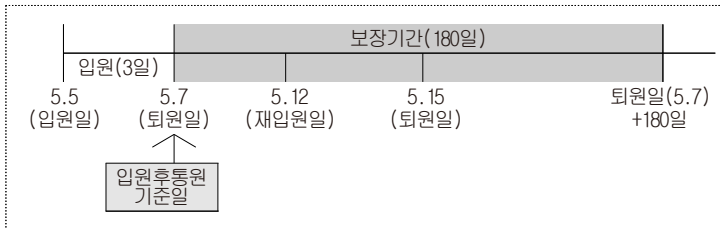


⇒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동일한 상해로 재입원시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것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함



⇒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재입원하지 않은 경우 입원일수를 합산하지 않음 (계속입원일이 3일 미만으로 입원후통원 미해당)

< 예시2(제5조 제2항): 퇴원일 포함 2일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상해로 재입원시 >



⇒ 동일한 상해로 다시 입원하더라도 입원후통원의 기준일(퇴원일),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는 변경되지 않음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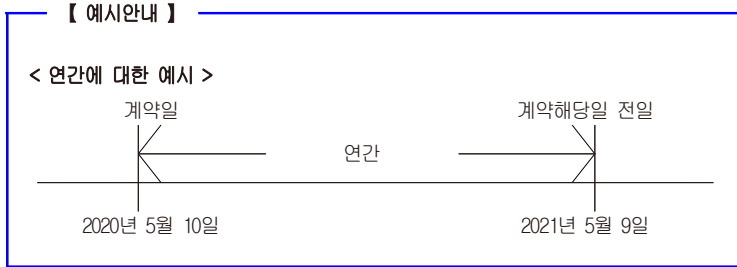
**1-59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확정되는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아나필락시스 쇼크진단보험금	'아나필락시스쇼크' 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아나필락시스쇼크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아나필락시스쇼크' 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78]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아나필락시스쇼크는 외부에서 들어온 물질에 대해 급격하게매우 심각하고 전신적으로 나타나는 면역반응으로, 호흡 곤란이나 혈압 저하, 의식 저하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르기기도 합니다.

② '아나필락시스쇼크'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아나필락시스쇼크'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 시행된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병이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0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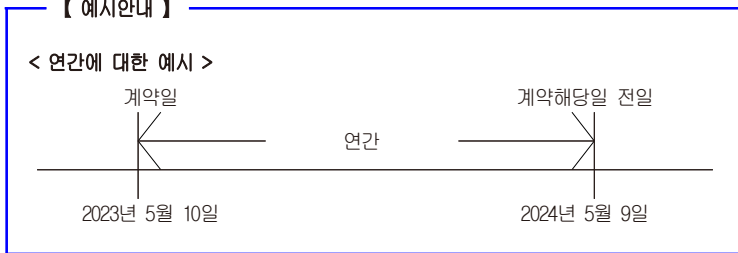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상해MRI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를 받은 경우에는 연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 MRI검사비	상해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상해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②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급여 상해MRI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상해MRI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상해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상해MRI검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상해MRI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상해MRI검사' 외에 '급여 상해MRI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1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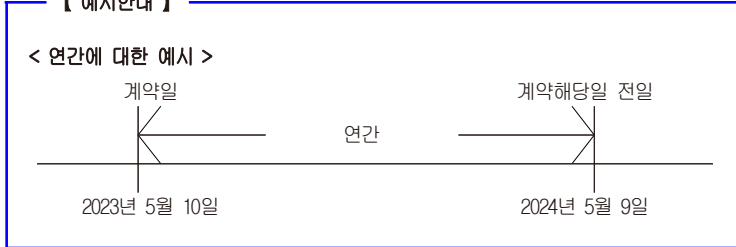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상해C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 CT검사비	상해로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상해C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②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급여 상해CT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상해CT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상해C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상해CT검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상해CT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상해CT검사' 외에 '급여 상해CT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2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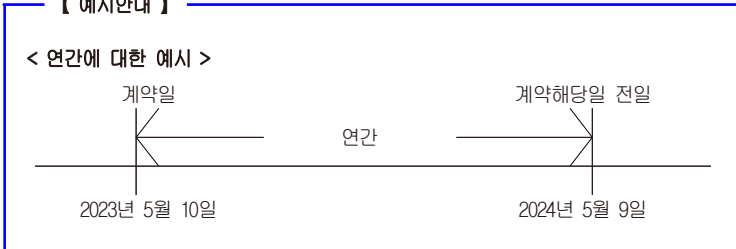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골절(치아파절제외)' 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에 삽입한 철심을 제거하는 '급여 골절철심제거술' 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골절철심제거술 보험금	'골절(치아파절제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골절철심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골절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골절'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 '골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치아파절'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치아의 파절 및 파절치(분류번호 S02.5)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골절이라 함은 외력에 의해 뼈의 연속성이 완전 또는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하며,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단순방사선검사(X선 촬영) 또는 CT와 같은 영상검사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제3조 (급여 골절철심제거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골절철심제거술' 이라 함은 '골절'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반골, 대퇴골]	N0972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상완골, 견갑골]	N0973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N0974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N0975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N0976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	N0977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 금속정등을근막절개하에 간단히제거한경우	N0978
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 금속정등을근막절개없이 간단히제거한경우	N0979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방	N2471
척추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후방	N2472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악골내강선고정의제거)	U4971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소형금속판의제거)	U4972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재건용금속판의제거, 악골1/20이상크기에달한것)	U4973
악골내고정용금속제거술(재건용금속판의제거, 악골1/20미만크기인것)	U4974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골절철심제거술' 에 준하여 '급여 골절철심제거술' 을 결정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골절철심 제거술’ 외에 ‘급여 골절철심제거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 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3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중에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험금	상해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으로 신규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② 제1항의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98]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 중증화상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

·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제3조 ( ‘산정특례 신규등록’ 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유의사항】

**< 산정특례 재등록 >**

법령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기간(1년) 종료 후 2년 이내에 ‘중증화상의 수술을 받는 경우(V306 제외)에는 산정특례 재등록을 할 수 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4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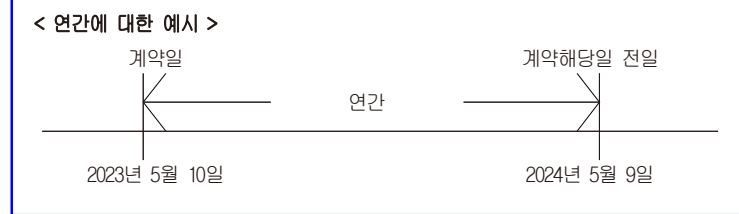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하여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외상 산정특례 대상보험금	상해로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99]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중증외상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

·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외상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5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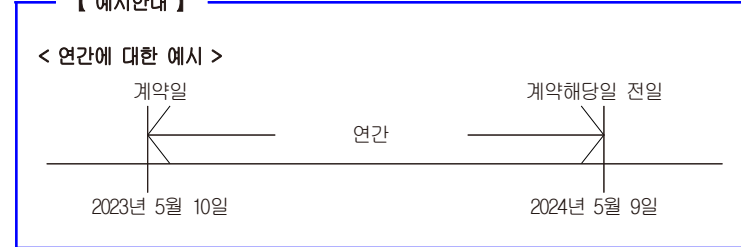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병원에 입원중에 ‘급여 재활치료’ (이하 ‘입원 급여 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재활치료’ (이하 ‘외래 급여 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상해재활치료(급여)보험금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5회한 (1일 1회한)

- ② 제1항의 상해재활치료(급여)보험금은 연간 발생한 ‘입원 급여 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5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재활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재활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여 재활치료’라 함은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항목 중 제7장 이학요법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단,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MM350)은 ‘급여 재활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재활치료’에 준하여 ‘급여 재활치료’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급여 재활치료’ 외에 ‘급여 재활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급여 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외래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66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II]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연간1회한)’,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신경차단술)(연간1회한)’,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연간1회한)’,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연간1회한)’,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기타시술)(연간1회한)’의 6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아래 해당하는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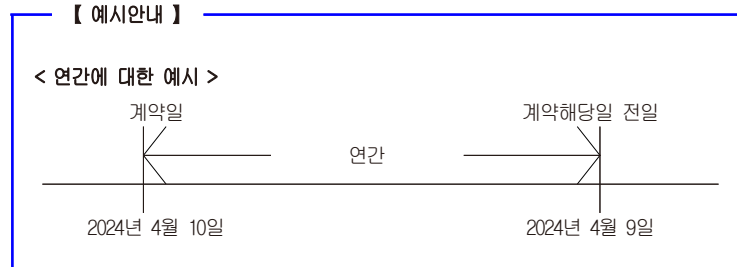
기타  
특별  
약관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장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신경차단술) (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신경차단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화상)'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 (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도수정복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 (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단순창상봉합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기타시술) (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상해로 '상해 특정급여시술치료(기타시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별표119] 특정시술치료(급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 외에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



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인 경우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무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1-67 상해수술(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 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상해수술보험금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직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종합병원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교정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8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보험금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외)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69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경증상해제외)의 직접결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보험금 (경증상해제외)	상해(경증상해제외)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인)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상해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상급종합병원 상해수술보험금(경증상해제외)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4.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다만, 사고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은 포함합니다.
  5.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6. 경증 상해(치아의 탈구(S03.2), 치아의 파절(S02.5))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1-70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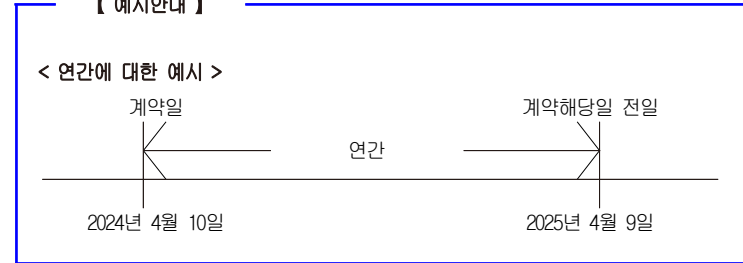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8대중대질환' 으로 인해 '응급환자' 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8대중대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연간1회한)	'8대중대질환' 으로 인해 '응급환자' 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연간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및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특약에서 '응급환자' 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뇌막염,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췌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손실
  - 사. 알러지 : 알콜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체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 ‘8대중대질환’ 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8대중대질환’ 이라 함은 [별표141] ‘8대중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 ② ‘8대중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8대중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사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활동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1 특정마취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마취합병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마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되는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마취합병증 진단보장금	‘특정마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특정마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마취합병증’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49] ‘특정마취합병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마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특정마취합병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 시행된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마취합병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마취합병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특정마취합병증으로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상병이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마취합병증진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형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형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2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하여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에서 정한 간병인을 보험수익자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 제21조(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간병인 지원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제2항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 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회사가 정한 비용 >**

계약일(갱신일)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현물급부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제1항의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의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① 이 특약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 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속,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들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5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

이 특약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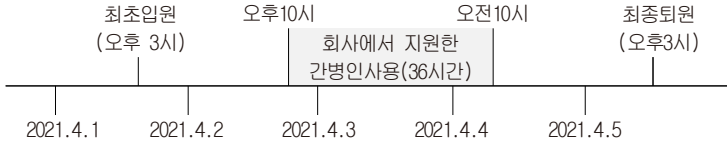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간병인지원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지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24시간을 1일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며, 이때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간병인지원비용 상당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이 아닌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1일당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

< 예시1 : 간병인 지원일수(회사에서 지원한 간병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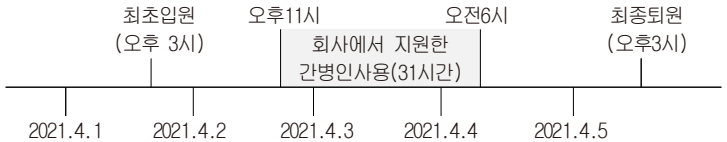
- 최초입원일시: 2021년 4월 1일 오후 3시
- 간병인 사용시간: 1일 12시간 (36시간)



⇒ 총 입원일수 : 5일 (2021.4.1. ~ 2021.4.5)  
간병인 지원일수 : 2일 (24시간+12시간)

< 예시2 : 간병인 지원일수(회사에서 지원한 간병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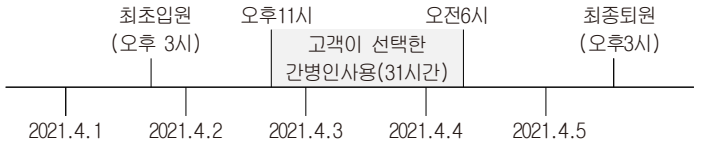
- 최초입원일시: 2021년 4월 1일 오후 3시
- 간병인 사용시간: 1일 7시간 (31시간)



⇒ 총 입원일수 : 5일 (2021.4.1. ~ 2021.4.5)  
간병인 지원일수 : 2일 (24시간+7시간)

< 예시3 : 간병인 지원일수(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사용)>

- 최초입원일시: 2021년 4월 1일 오후 3시
- 간병인 사용시간: 1일 7시간 (31시간)



⇒ 총 입원일수 : 5일 (2021.4.1. ~ 2021.4.5)  
간병인 지원일수 : 1일 (24시간+7시간)

- 제1항에서 정한 보상 한도 최종일(180일째 입원일을 말합니다)에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라도 24시간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미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간병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실제 간병인지원비용 상당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제정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전환)**

- ① 회사는 법령, 제도의 변경 또는 간병인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이 특약에 따른 간병인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가입금액의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갱신형)보장 특약' 및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약' (이하 '전환후 특약' 이라 합니다.)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전환될 경우 이 계약은 제10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되며, 전환후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일, 보험기간 종료일은 전환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따릅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전환될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정산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정산금액을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법령, 제도의 변경 또는 간병인업체의 폐업 등으로 이 특약에 따른 간병인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가입 특별약관	변경 특별약관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 보장 특약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갱신형) 보장 특약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 전환용)(갱신형)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요양병원및의원)(1-180일, 전환용)(갱신형)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약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약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 전환용)[맞춤고지Ⅱ](갱신형)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요양병원및의원)(1-180일, 전환용)[맞춤고지Ⅱ](갱신형)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1-73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1-180일,전환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Ⅷ(1-180일,전환용)[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1-74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보장 특별약관 제9조(특약의 전환)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금액)	지급금액
상해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상해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만원 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8만원 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

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 사용일수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2024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6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입원일수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사용1. 2024년 4월 10일 ~ 1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88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이상에 해당) → 6만원 X 8일 = 48만원 지급  
사용2. 2024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52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미만에 해당) → 3만원 X 8일 = 24만원 지급  
· 총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48만원 + 24만원 = 72만원 지급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해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상해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 1일당 '상해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③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③ 이 특약에서 '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상해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 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보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족,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제5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

이 특약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 있는 입원 환자
-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칭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 질병관련 특별약관

### 2-1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 질병사망추가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맞춤고지Ⅱ] 특별약관 / 질병사망추가[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2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사망[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사망보험금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6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3 3대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 3대질병사망[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3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3대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3대질병 사망보험금	3대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3대질병' 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하는 '암' ( '유사암' 포함), '뇌혈관

질환' , '허혈심장질환' 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5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암' ( '유사암' 포함)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포함)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정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포함)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⑩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에서 ‘뇌혈관질환’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⑫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⑬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⑭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

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이 특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사유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4 질병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애분류표([별표1] ‘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3%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후유장해보험금	질병으로 장애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50% 해당액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2년 이내
  -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 1년 이내
- 장애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

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하나의 질병으로 인한 후유장해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50%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5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해를 포함합니다)
  - 2.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해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장해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해지급률 계산  
 • 장해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해(60%)-보험가입 전 장해지급률(5%))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6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  
 질병후유장해(80%이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별표1] ‘장해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고도후유장해보험금	질병으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해상태에 해당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 - 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도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 3대질병후유장애(80%이상)보장 특별약관 / 3대질병후유장애(80%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3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3대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애분류표([별표1] ‘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3대질병 고도후유장애 보험금	3대질병으로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제2조 (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3대질병’이라 함은 아래에서 정하는 ‘암’ ( ‘유사암’ 포함), ‘뇌혈관 질환’, ‘허혈심장질환’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암’ ( ‘유사암’ 포함)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포함)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포함)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⑩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⑪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에서 '뇌혈관질환'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⑫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⑬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⑭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해지급률이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에 장해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장해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해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해상태를 기준으로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③ 장해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해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해정도에 따라 장해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장해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해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해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같은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⑥ 다른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지급률을 결정하고, 이 전에 발생한 후유장해에 대한 후유장해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장해가 이미 후유장해보험금을 지급받은 동일한 부위에 가중된 때에는 최종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해보험금에 해당하는 장해지급률을 차감하여 장해지급률을 결정합니다. 다만, 장해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⑦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후유장애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2. 후유장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6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 - 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대질병고도후유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8 암진단 II (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 II (유사암제외)추가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 II (유사암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 II (유사암제외)추가[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암진단 (유사암제외) 보험금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암’ ( ‘소액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 ③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5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⑩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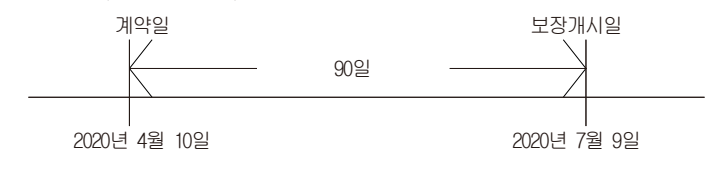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유사암제외)보험금의 '암' ( '소액암' ,

‘유사암’ 제외)과 ‘소액암’ 이 동시에 진단확정된 경우 그 중 큰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유사암제외)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9 암진단 II (유사암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 II (유사암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암진단 (유사암 제외) 보험금	‘암’ ( ‘소액암’ , ‘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소액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 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소액암’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 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 ③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5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 다.
-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 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 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⑩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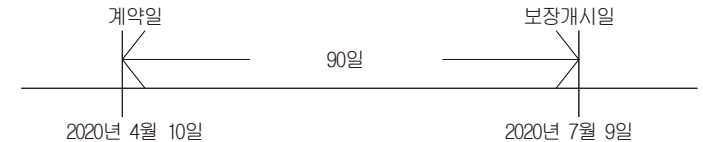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예시안내】

<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유사암제외)보험금의 ‘암’ (‘소액암’, ‘유사암’ 제외)과 ‘소액암’이 동시에 진단확정된 경우 그 중 큰 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유사암제외)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통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  
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3조(보  
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 유사암진단 II 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진단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진단 II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진단 II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  
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  
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  
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 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1. 기타피부암 진단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 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 금액의 100% 해당액
2.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3. 제자리암 진단보험금	‘제자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4. 경계성종양 진단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제2조 (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제3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4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  
다.
- ⑥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제6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6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⑧ 제6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유사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 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 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진단보험금, 갑상선암진단보험금, 제지리암진단보험금 및 경계성종양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고액치료비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고액치료비암 진단보험금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장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고액치료비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고액치료비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고액치료비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액치료비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원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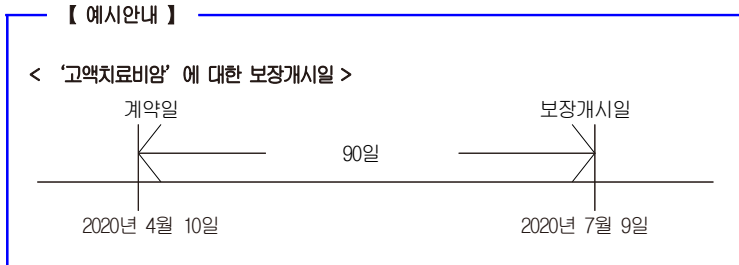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고액치료비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고액치료비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고액치료비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치료비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고액치료비암' 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 여성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여성특정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특정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여성특정암 진단보험금	'여성특정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여성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여성특정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7] '여성특정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여성특정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성특정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여성특정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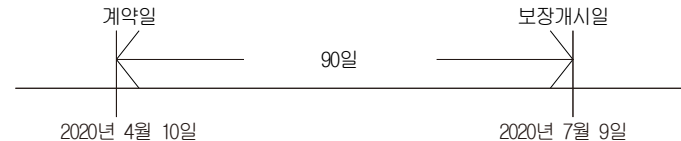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여성특정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1년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여성특정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부터 ‘여성특정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여성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특정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여성특정암’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 남성생식기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남성생식기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부터 1년 이상
남성생식기암 진단보험금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2조 (남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남성생식기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8] ‘남성생식기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남성생식기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성생식기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남성생식기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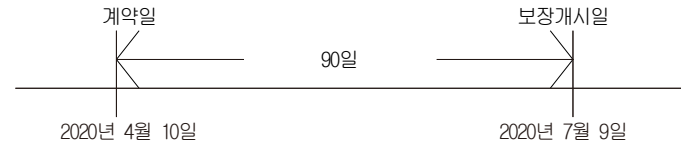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남성생식기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남성생식기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남성생식기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남성생식기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남성생식기암’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이 보장 특별약관은 남성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 보장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10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두경부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위암및식도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흉곽내기관·종피성암 및 연조직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남성생식기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혈액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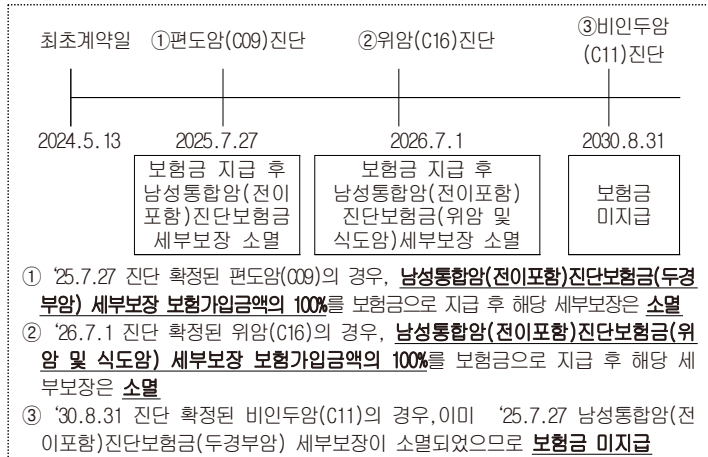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암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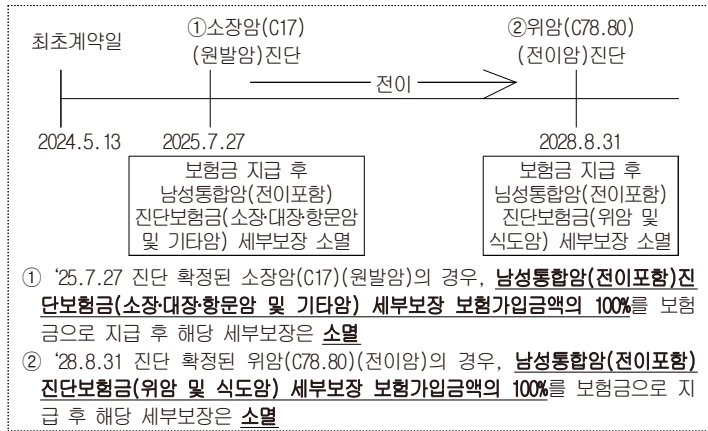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두경부암)	'두경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위암 및 식도암)	'위암및식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흉곽내기관·종피성암 및 연조직암)	'흉곽내기관·종피성암 및 연조직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남성생식기암)	'남성생식기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뇌암및중추신경계통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혈액암)	'혈액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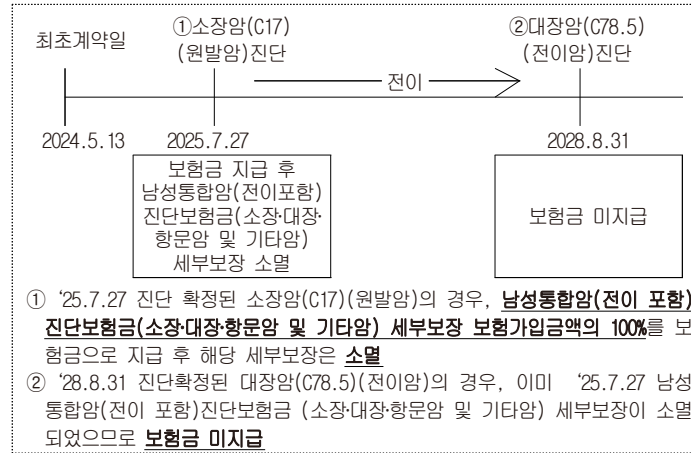
※ 보험금 지급예시  
<예시1> (동일 양구분의 원발암 진단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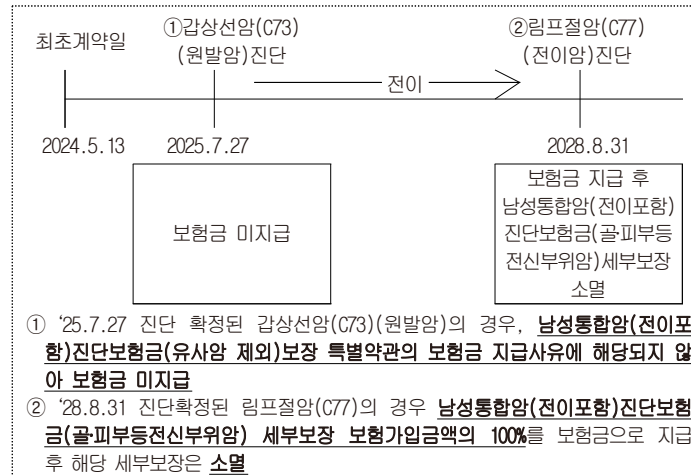
<예시2> (원발암과 다른 양구분의 전이암 진단시)



<예시3> (원발암과 동일 양구분의 전이암 진단시)



<예시4> (유사암 원발암 진단이후 전이암 진단시)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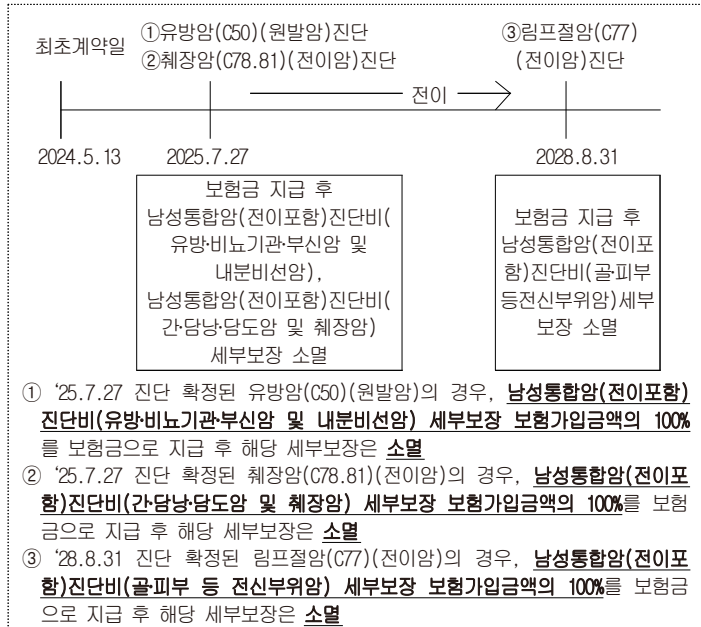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예시5> (원발암과 전이암 동시진단 및 이후 전이암 추가 진단시)**



**제2조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이라 함은 '남성통합암(전이포함)(두경부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위암 및 식도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간·담낭·담도암 및 체장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혈액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남성생식기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3]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5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6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7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8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암'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암'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및, '암'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9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제3항의 '암' 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제1항의 '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제3항의 ‘암’ 에 한하여 적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두경부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위암 및 식도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남성생식기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혈액암)’ 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 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소멸된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소멸된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을 세부보장으로 각각 1회씩 총 10회 지급한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5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이 보장 특별약관은 여성에 한하여 가입가능합니다.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 보장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12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두경부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위암및식도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여성생식기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난소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자궁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비(혈액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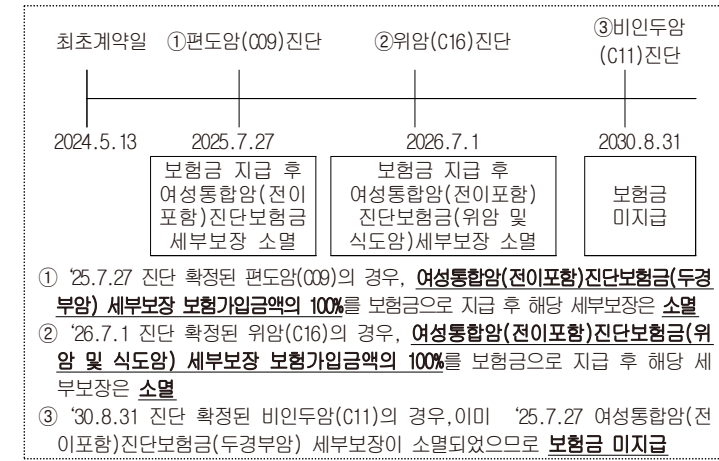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암 구분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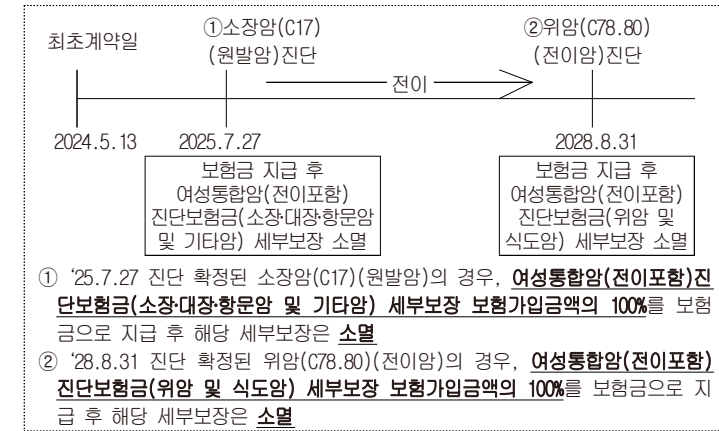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두경부암)	'두경부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위암 및 식도암)	'위암및식도암' 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 타암)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 타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 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 암)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 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여성생식기암)	'여성생식기암' 으로 진단 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난소암)	'난소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자궁암)	'자궁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뇌암및중추신경계통암' 으 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 (혈액암)	'혈액암' 으로 진단확정 된 경우	이 세부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예시안내 】

※ 보험금 지급예시  
<예시1> (동일 암구분의 원발암 진단시)



<예시2> (원발암과 다른 암구분의 전이암 진단시)



특별  
약관

상해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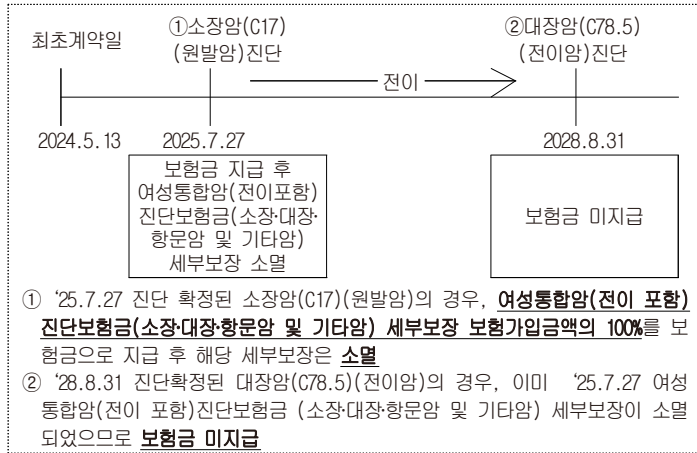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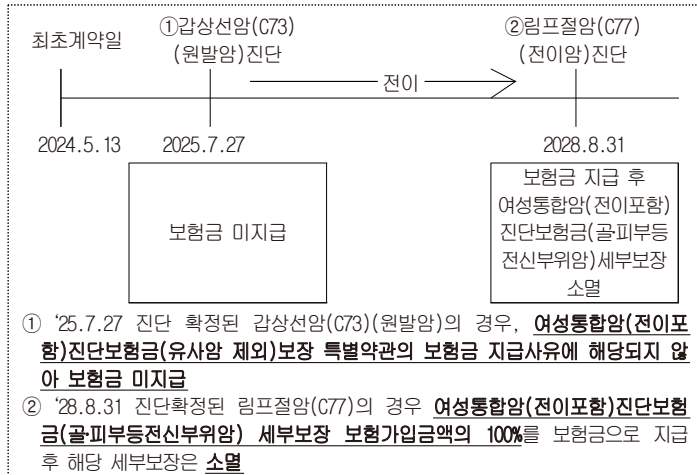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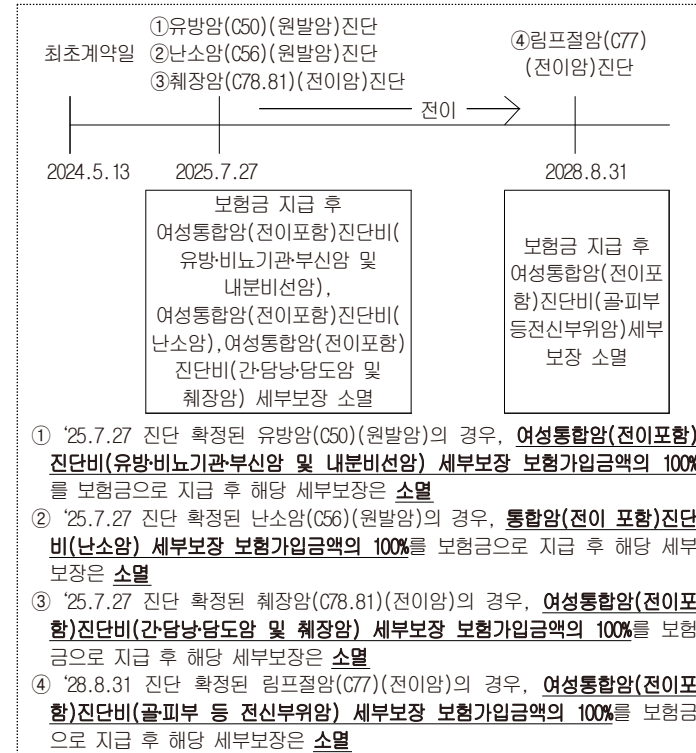
<예시3> (원발암과 동일 양구분의 전이암 진단시)



<예시4> (유사암 원발암 진단이후 전이암 진단시)



<예시5> (원발암과 전이암 동시진단 및 이후 전이암 추가 진단시)



제2조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이라 함은 '여성통합암(전이포함)(두경부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위암 및 식도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혈액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여성생식기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난소

- 암’ , 여성통합암(전이포함)(자궁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4]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5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6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7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8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⑨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 ‘암’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 ‘암’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및, ‘암’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⑪ 제9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⑫ 제3항의 ‘암’ 중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하지만, 제1항의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 제외)’ 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제3항의 ‘암’ 에 한하여 적용)**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 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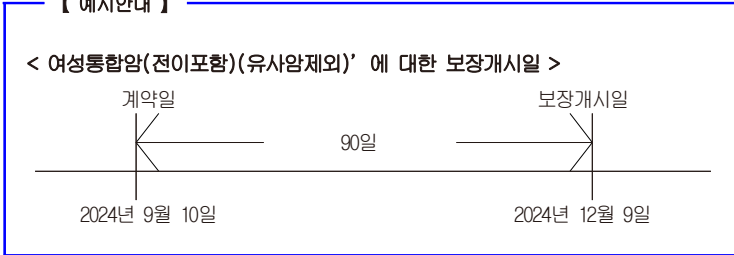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두경부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위암 및 식도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흉곽내기관종피성암 및 연조직

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골·피부 등 전신부위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여성생식기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혈액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난소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보험금(자궁암)’ 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소멸된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소멸된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을 세부보장별로 각각 1회씩 총 12회 지급한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 재진단암진단 II 보장 특별약관 / 재진단암진단 II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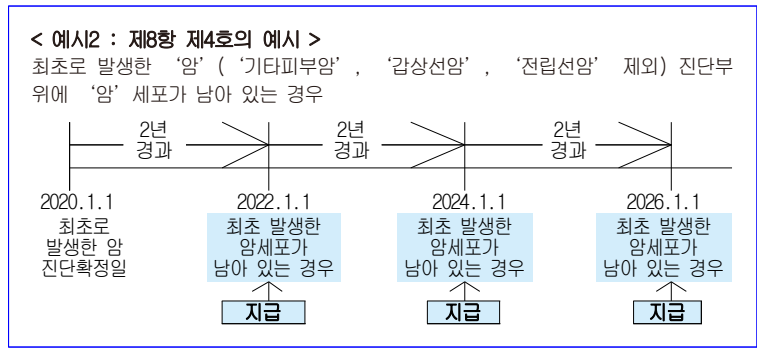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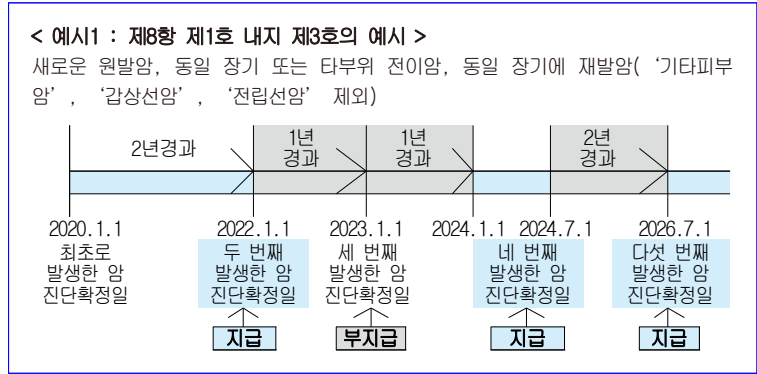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재진단암 진단보험금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은 제외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 장기내 재발된 암
  4.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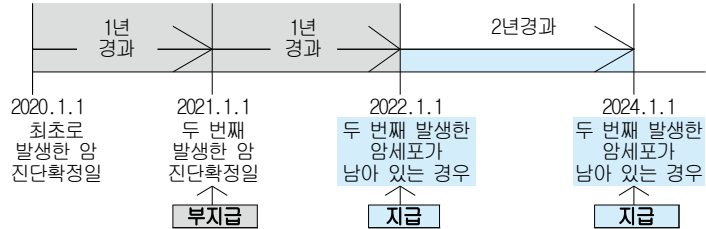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 예시3 : 제8항 제4호의 예시 >**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 ⑨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⑪ ‘재진단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 예시>**

- 혈액암의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상태에서의 치료
- 추적관찰을 위한 치료

- ⑫ 제11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 진단 또는 치료(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또는 수술)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11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⑬ 제9항 내지 제1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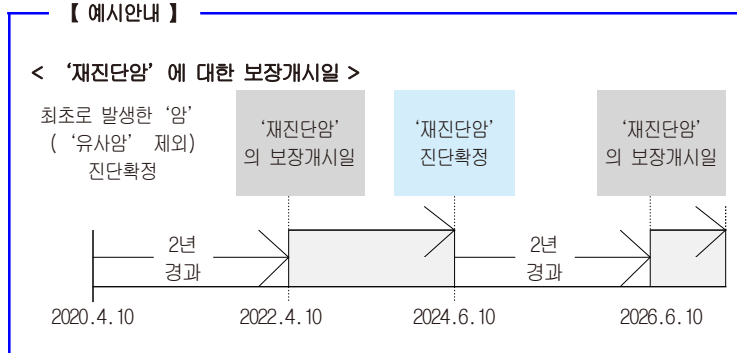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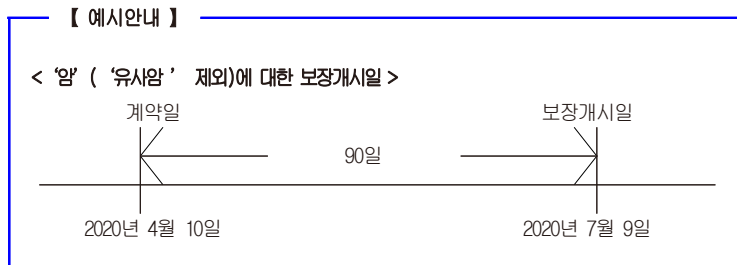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이하 ‘재진단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은 ‘재진단암’이라 합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 ( ‘유사암’ 제외) 진단확정일부러 그 날을

-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제1항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 ('유사암' 제외)이라 함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 2년 내에 제2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 2년 진단(유사암제외)보장 특약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잔여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재진단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종료일이 진단확정일부 2년 을 포함하여 2년이내인 경우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 재진단암진단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재진단암진단 II [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재진단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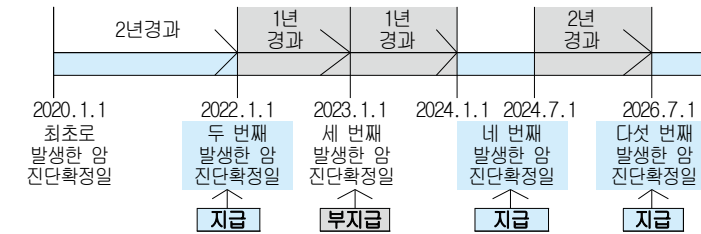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재진단암 진단보험금	'재진단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전립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 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은 제외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4.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발생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전립선암' 제외) 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 예시1 : 제8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예시 >**

새로운 원발암,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 전이암, 동일 장기에 재발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 '전립선암' 제외)



특별약관

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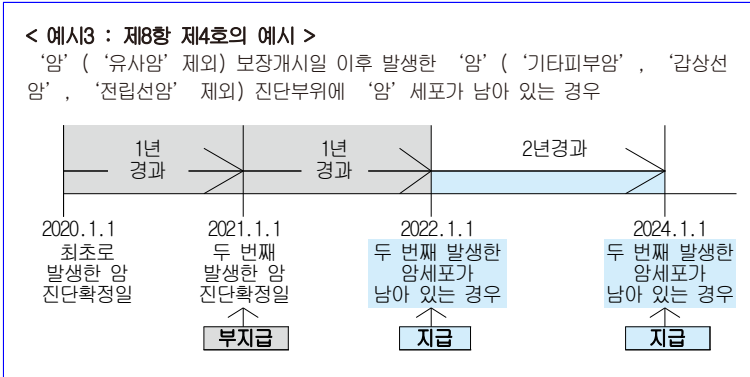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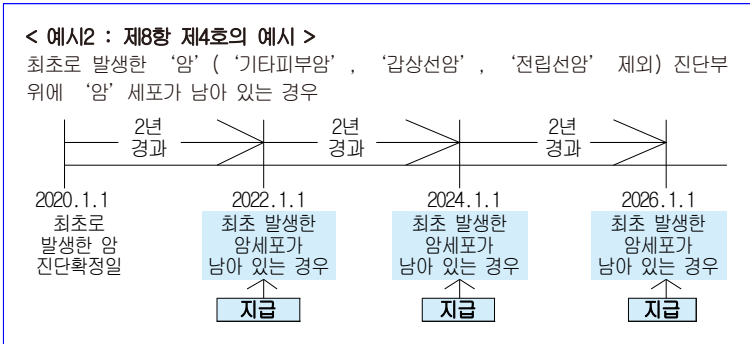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 ⑨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⑪ ‘재진단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 예시 >**

- 혈액암의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상태에서의 치료
- 추적관찰을 위한 치료

- ⑫ 제11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재진단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11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⑬ 제9항 내지 제10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용어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안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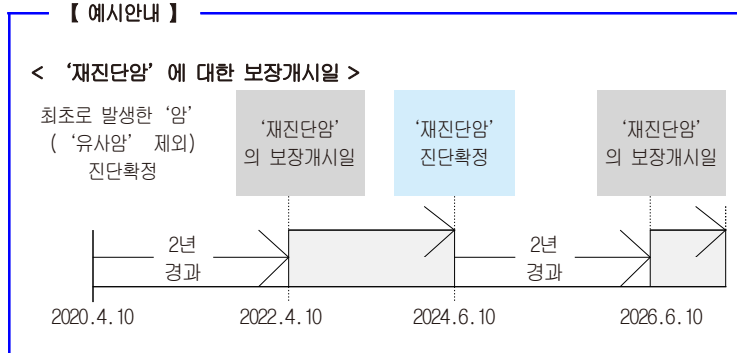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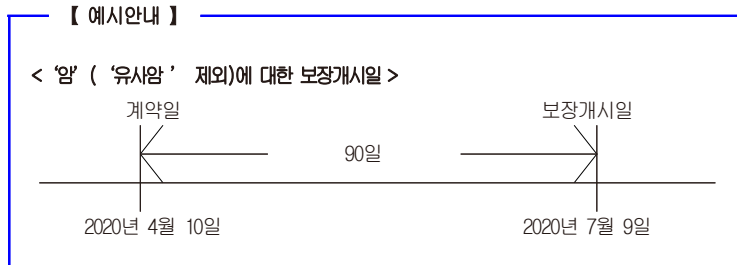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재진단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이하 ‘재진단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은 ‘재진단암’이라 합니다)
  1. 첫 번째 재진단암 : 최초로 발생한 ‘암’ ( ‘유사암’ 제외) 진단확정일부러 그 날을



-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 번째 이후 재진단암 : 직전 재진단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 ② 제1항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 ('유사암' 제외)이라 함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별약관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암'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2년 내에 제2조(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8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진단(유사암제외)보장 특약에서 최초로 발생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 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재진단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이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내인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3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 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될 계약(이하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 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2]세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하며, 갱신시점 나이가 [갱신종료나이-2]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을 보험기간으로 하여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 : 48세의 피보험자가 5년만기로 8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3세, 58세 ~ 73세, 78세  
 ⇒ 78세 갱신시점에서는 8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5년보다 짧아 5년만기로 갱신하지 않고 2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에게 [갱신종료나이-2]세까지 최초로 발생한 '암' ( '유사암' 제외)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특약은 [갱신종료나이-2]세 갱신시점부터 더 이상 갱신하지 않으며, 갱신을 종료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⑦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통약관 제32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약관 변경내역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자동으로 갱신되며,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⑩ 제9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이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갱신일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제12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8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특별약관 /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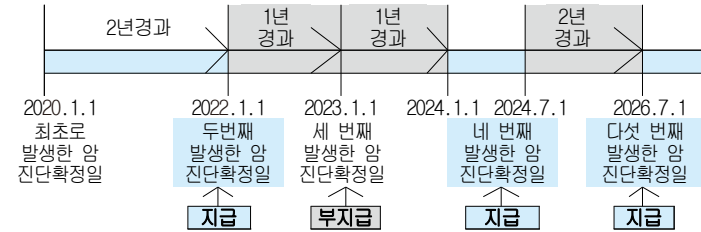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재진단 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다음 각 호의 ‘암’ 을 말합니다.
  1. 새로운 원발암
  2.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에 전이된 암
  3. 동일 장기에 재발된 암
  4.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부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세포가 남아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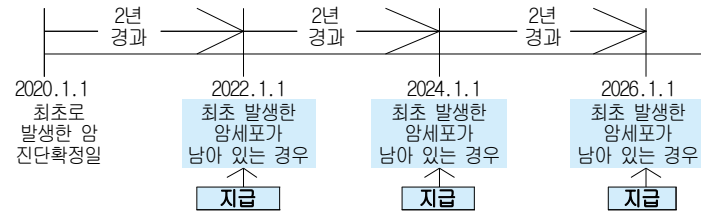
**< 예시1 : 제3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예시 >**

새로운 원발암, 동일 장기 또는 타부위 전이암, 동일 장기에 재발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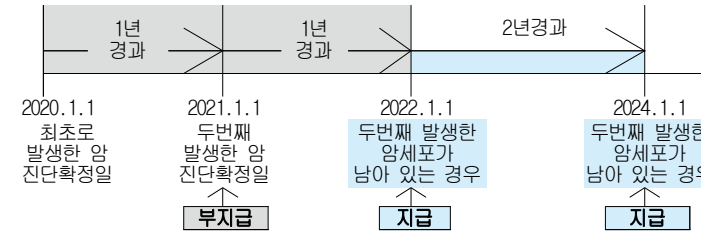
**< 예시2 : 제3항 제4호의 예시 >**

최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 예시3 : 제3항 제4호의 예시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부위에 ‘암’ 세포가 남아 있는 경우



④ 제3항에서 새로운 원발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첫

- 번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또는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과 다른 조직 병리학적 특성을 가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을 말합니다.
- ⑤ 제3항에서 "전이암"이란 원발부위에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암세포가 새로운 장소로 퍼져(침윤 또는 원격전이) 다시 그곳에서 자리를 잡고, 지속적인 분열과 성장과 정을 거쳐 증식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재발암"이란 ‘첫 번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또는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과 동일한 조직병리학적 특성(Histopathological Appearance)을 가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서 치료를 통해 몸에서 첫 번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또는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암세포를 제거한 후 그 ‘첫 번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또는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인하여 새롭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 출현되어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판명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을 말합니다.
  - ⑦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⑧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단, 치료시점에서 암세포의 잔존이 확인되지 않은 암에 대한 치료(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보조적 또는 예방적 암치료 예시>

- 혈액암의 완전관해(Complete remission)상태에서의 치료
- 추적관찰을 위한 치료

- ⑨ 제7항 내지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 내지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⑩ 제7항 내지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조건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 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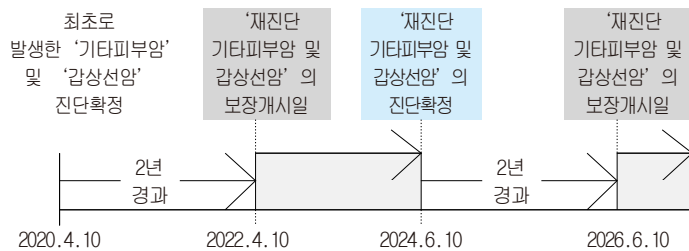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다음 각 호

를 따릅니다.

1. 첫 번째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최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2. 두번째 이후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직전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

**【 예시안내 】**

**< '재진단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서 최초로 발생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이라 함은 이 특약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해당 지급사유 발생일부 2년 내에 제2조(재진단 기타피부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

형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1. 전여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 되는 날까지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지 않은 경우
  2. 피보험자가 '재진단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보험기간종료일이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이내인 경우
- 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 중증갑상선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중증갑상선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갑상선암 진단보험금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갑상선암' 및 '중증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중증갑상선암'이라 함은 '갑상선암'중에서 '수질성암(Medullary carcinoma)' 또는 '역형성암(Anaplastic carcinoma)'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갑상선암' 및 '중증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갑상선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및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중증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증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갑상선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중증갑상선암'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2대)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2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2대)보험금	'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1년 이내에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2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심장질환, 폐색전증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3대)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3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3대)보험금	'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고 1년 이내에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3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호중구감소증, 혈소판감소증, 신경병증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예시1 >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3.01.01	보장개시일	-	
2025.01.01	암진단	-	
2025.02.01	항암치료 1차	-	
2025.07.01	항암치료 2차	-	
2026.04.01	2대합병증 진단	지급	
2026.05.01	3대합병증 진단	지급	
2026.06.01	2대합병증진단	부지급	보장 소멸

< 예시2 >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3.01.01	보장개시일	-	
2025.01.01	암진단	-	
2025.02.01	항암치료 1차	-	
2025.07.01	2대합병증 진단	지급	
2026.04.01	항암치료 2차	-	
2026.05.01	2대합병증 진단	부지급	보장 소멸

< 예시3 >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3.01.01	보장개시일	-	
2025.01.01	암진단	-	
2025.02.01	항암치료 1차	-	
2025.07.01	항암치료 2차	-	
2026.04.01	보장종료일	-	
2026.05.01	항암치료 3차	-	
2026.08.01	2대합병증 진단	부지급	2025.07.01.부터 1년 이상 경과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④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⑦ 이 특약에서 ‘항암치료후특정합병증(2대)’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1] ‘항암방사선악물치료후5대질병(2대)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⑧ 이 특약에서 ‘항암치료후특정합병증(3대)’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2] ‘항암방사선악물치료후5대질병(3대)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⑨ ‘항암방사선악물치료후5대질병(2대)’ 및 ‘항암방사선악물치료후5대질병(3대)’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 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⑪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통약관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항암방사선치료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날(보험기간 중 마지막으로 치료받은 날을 말합니다.)로부터 1년 이내에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2대)' 또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3대)'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2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3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진단(5대)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중 골괴사, 방사선장염, 방사선방광염으로 진단확정되거나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중 폐렴, 뇌부종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후 9대질병진단(5대)보험금	‘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고 1년 이내에 골괴사, 방사선장염, 방사선방광염으로 진단확정되거나 90일 이내에 폐렴, 뇌부종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진단(4대)보장**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30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고,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4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후 9대질병진단 (4대)보험금	‘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고 1년 이내에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4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앙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3]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4대)'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4]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4대)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⑨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및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4대)'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⑩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후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그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날(보험기간 중 치료받은 경우를 말합니다.)로부터 1년(다만,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중 중 폐렴 또는 뇌부종의 경우에는 90일)이내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또는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4대)'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해당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4대)'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2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 된 경우에는 아래 각항의 보험금을 각각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 부터 1년 미만	계약일 부터 1년 이상
1. 산정특례대상 (신규암 (유사암및소액암제외)) 보장보험금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유사암 및 소액암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산정특례대상 (신규암 (소액암)) 보장보험금	‘소액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3. 산정특례대상 (신규암 (유사암)) 보장보험금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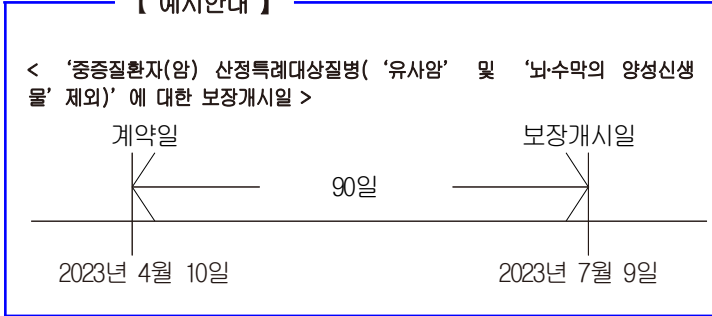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3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이라 함은 [별표100-1]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소액암'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 ③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5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6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7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이 특약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수막의 양성신생물(분류코드 D32)와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3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⑨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⑩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9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앙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⑪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 '산정특례 신규등록'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신규암 등록' 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신규암' 으로 [별표100]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신규암' 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 해 등록된 암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 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 합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 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 단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 (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 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이 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제5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 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 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질 수가 있는 등' 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

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 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 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 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 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 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 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 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 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 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산출방법 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 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 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신규암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신규암(유사암및 소액암제외))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신규암(소액암))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신규암(유사암)) 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3호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 (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23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록암)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중복암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이 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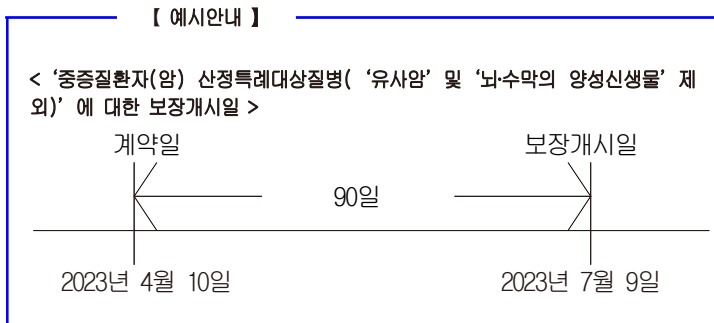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산정특례대상 (중복암)보장보험금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재등록암: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이 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산정특례대상 (재등록암)보장 보험금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으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이 된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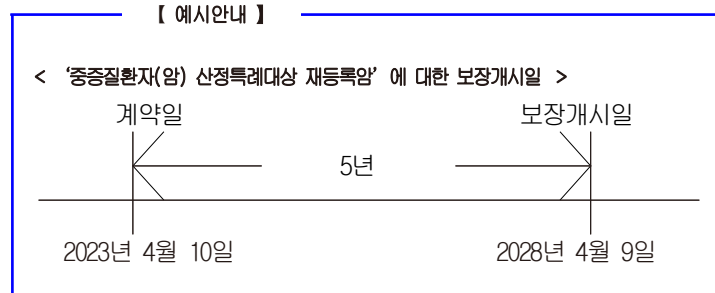
### 제2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산정특례중복암 등록 및 산정특례재등록암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중복암)보험금 및 산정특례대상(재등록암)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3조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이라 함은 [별표100-1]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분류표'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이라 함은 제1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질병 중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수막의 양성신생물(분류코드 D32)와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신생물(분류번호 D3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조직학의 전연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⑩⑨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뇌·수막의 양성신생물’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중복암 등록’ 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중복암’ 으로 [별표100]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재등록암 등록’ 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재등록암’ 으로 [별표100]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중복암’ 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4항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중복암’ 으로 표기

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재등록암’ 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해 등록된 암을 말하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재등록암’ 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신규암’ 이라 함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등록된 암 중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 상에 ‘신규암’ 으로 표기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관련법규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중증질환자 암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확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간 적용하며, 30일 이후에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5년간 적용이 됩니다.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중복암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산정특례 등록 신청 등) 제4항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중 암환자로 등록된 자가 산정특례 적용기간 중 추가로 발생한 다른 암종(전이암 제외)에 대하여 산정특례를 신청한 경우, 추가로 발생한 암의 진단확진일 부터 적용한다.

**<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재등록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암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잔존암, 전이암이 있거나,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암조직의 제거소멸을 목적으로 수술, 방사선·호르몬 등의 항암치료 중인 경우이거나, 항암제를 계속 투여 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5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질 수가 있는 등' 의 사유로 금융위원회 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약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 ①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3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신규암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3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중복암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 '유사암' 및 '뇌·수막의 양성신생물' 제외)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의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③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의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재등록암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의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 ④ 다만,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각



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중복암)보장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재등록암)보장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잔여보험기간이 그 날을 포함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 신규암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된 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가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이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④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제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 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암진단보험금	'특정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특정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5] '특정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특정암'의 진단확정은 해부병리 또는 임상병리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특정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특정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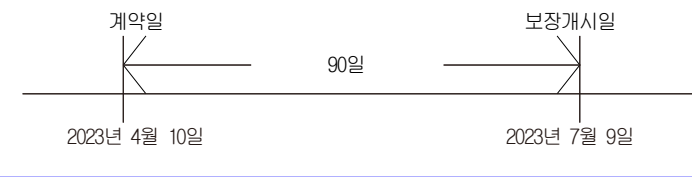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암진단'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예시안내 】

< '특정암진단'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특정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특정암진단'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암진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정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 암진단 II (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보장 특별약관 / 암진단 II (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소액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진단 (소액암및유사암제외) 보험금	‘암’ ( ‘소액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소액암’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암’ 중에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악성신생물(암)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암)	C50
2.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암)	C53
3.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암)	C54
4.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	C61
5. 방광의 악성신생물(암)	C67

- ③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5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7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8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계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암’ ( ‘소액암’ , ‘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암’ ( ‘소액암’ , ‘유사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소액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⑩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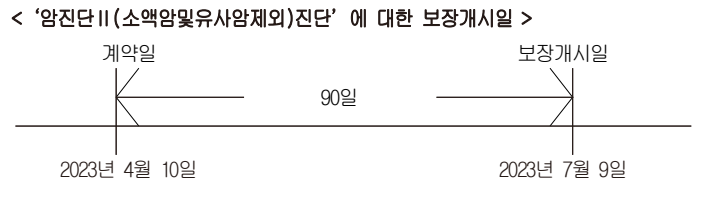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진단(소액암및유사암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②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진단(소액암및유사암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제1항 내지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특정암진단’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진단(소액암및유사암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진단(소액암및유사암제외)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6 양성뇌종양진단보장 특별약관 / 양성뇌종양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양성뇌종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양성뇌종양 진단보험금	‘양성뇌종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양성뇌종양’ 이라 함은 [별표19] ‘양성뇌종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가.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나. 위 가.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라.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② ‘양성뇌종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양성뇌종양’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양성뇌종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27 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출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출혈 진단보험금	‘뇌출혈’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뇌출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출혈’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0] ‘뇌출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출혈’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출혈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출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8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뇌졸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뇌졸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뇌졸중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뇌졸중 진단보험금	'뇌졸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뇌졸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1] '뇌졸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졸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9 뇌혈관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뇌혈관질환 진단보험금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0 뇌혈관질환(Ⅰ)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Ⅰ)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Ⅰ)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Ⅰ)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Ⅰ)'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뇌혈관질환 (1) 진단보험금	‘뇌혈관질환(1) (1)’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뇌혈관질환(1)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1)’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70] ‘뇌혈관질환(1)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1)’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1)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1)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1)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1 뇌혈관질환(II)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II)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II)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II)진단[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II)’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뇌혈관질환 (II) 진단보험금	‘뇌혈관질환(II)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뇌혈관질환(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I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7] ‘뇌혈관질환(II)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질환(II)’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II)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혈관질환(II)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급성심근경색증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급성심근경색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심근경색증’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3 허혈심장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  
허혈심장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허혈심장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허혈심장질환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허혈 심장질환 진단보험금	'허혈 심장질환' 으 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 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허혈심장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4 심혈관질환(특정 I, I49제외)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 I49제외)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 I49제외)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 I49제외)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특정 I, I49제외)'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심혈관질환 (특정 I, 149 제외) 진단보험금	'심혈관질환(특 정 I, 149제외)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2]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활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5 심혈관질환(149)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149)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149)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149)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149)'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심혈관질환 (149) 진단보험금	'심혈관질환 (149)'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심혈관질환(149)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149)'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82] '심혈관질환(149)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혈관질환(149)'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149)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149)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질환(149)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6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심혈관질환 (주요심장영 증) 진단보험금	'심혈관질환 (주요심장영 증)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심혈관질환(주요심장영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주요심장영증)'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3] '심혈관질환(주요심장영증)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혈관질환(주요심장영증)'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활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주요심장영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주요심장영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주요심장영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7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특정 II)'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심혈관질환 (특정 II) 진단보험금	‘심혈관질환 (특정 II)’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심혈관질환(특정 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특정 I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3] ‘심혈관질환(특정 II)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혈관질환(특정 II)’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특정 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특정 II)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질환(특정 II)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8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특정2대)’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심혈관질환 (특정2대) 진단보험금	'심혈관질환 (특정2대)'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심혈관질환(특정2대)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특정2대)'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6]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특정 방실차단 및 전도장애	방실차단, 2도	144.1
	완전방실차단	1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144.3
	이중성유속차단	145.2
	삼중성유속차단	145.3
기타 심장부정맥	기타 심장부정맥	149

- ② '심혈관질환(특정2대)'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를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③ '심혈관질환(특정2대)' 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심전도 검사, 심도자 검사,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핵의학 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을 기초로 합니다.
- ④ 제2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혈관질환(특정2대)의 진단확정은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에 따라 진단확정을 위한 기초검사가 다를 수 있습니다.
- ⑥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에서 정한 질병과 연관이 없는 경우 회사는 진단확정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39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보장 특별약관 /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동맥류(비파열성)’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뇌동맥류(비파열성) 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동맥류(비파열성) 진단보험금	‘뇌동맥류(비파열성)’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 ‘뇌동맥류(비파열성)’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별약관에서 ‘뇌동맥류(비파열성)’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30] “뇌동맥류(비파열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이 때, “선천성(비파열성) 대뇌동맥류(Q28.3)”는 보장하지 않으며,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I67.0)”와 “기타 대뇌전 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I72.5)”도 제외됩니다.
- ② ‘뇌동맥류(비파열성)’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 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 방출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동맥류(비파열성)’ 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동맥류(비파열성)’ 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뇌동맥류(비파열성)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0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 으로 진

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심혈관질환 (대동맥판막협착증) 진단보험금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5]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등 검사결과 상 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1 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혈관질환(심근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심혈관질환(심근병증) 진단보험금	'심혈관질환(심근병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2조 (심혈관질환(심근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혈관질환(심근병증)’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6] ‘심혈관질환(심근병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혈관질환(심근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심도자검사, 심장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심장 전산화단층촬영(CT)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혈관질환(심근병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혈관질환(심근병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2 중증폐렴진단보장 특별약관 / 중증폐렴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폐렴(PSI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폐렴(PSI 5등급) 진단보험금	‘중증폐렴(PSI 5등급)’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제2조 (중증폐렴(PSI 5등급)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증폐렴(PSI 5등급)’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에 있어서 [별표76] ‘폐렴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PSI(Pneumonia severity Index : 폐렴중증도지표) 점수([별표80] 참조)가 131점 이상에 해당되는 상태가 된 때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2.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 ② ‘중증폐렴(PSI 5등급)’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

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폐렴(PSI 5등급)'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예시안내 】**

**< PSI 등급 진단서의 제출 >**  
폐렴으로 진단 확정된 피보험자가 PSI 점수 131점 이상으로 부여받은 날을 '중증 폐렴'의 진단일로 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폐렴으로 최초 진단 시 PSI 점수를 측정 받은 경우  
: 진단일자의 폐렴진단서 및 PSI 점수 증빙서류 제출

2) 보험기간 중 폐렴으로 최초 진단 시 PSI 점수 기준 미충족하였으나, 이후에 PSI 점수가 기준을 충족한 경우  
: PSI 점수 측정일자 기준의 폐렴진단서 재발급 및 PSI 점수 증빙서류 제출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폐렴(PSI 5등급)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3 급성신우신염진단보장 특별약관 / 급성신우신염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성신우신염 진단보험금	'급성신우신염'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급성신우신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급성신우신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5 '급성신우신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급성신우신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성신우신염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4 특정패혈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특정패혈증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패혈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패혈증 진단보험금	‘특정패혈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최초 1회한)

**제2조 (특정패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패혈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7] ‘특정패혈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연쇄구균패혈증	A40
기타 패혈증	A41

- ② ‘특정패혈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함이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패혈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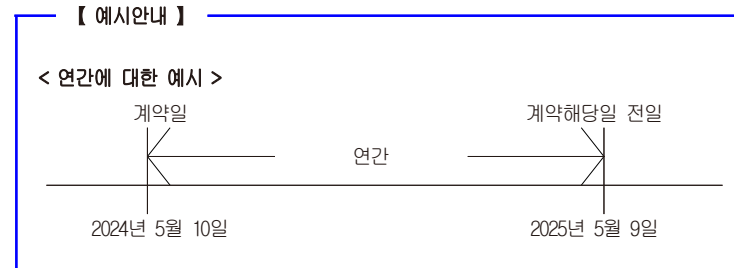
**2-45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환)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환)[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암’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6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 (연간1회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 (연간1회환)[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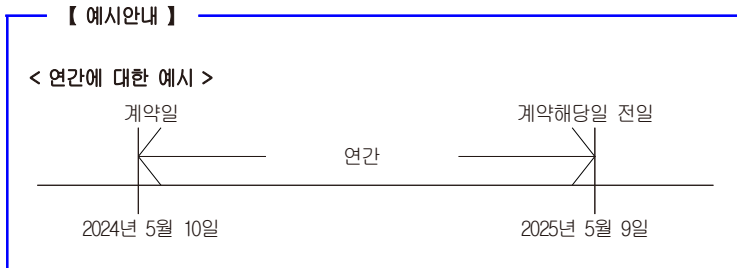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방사선약물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방사선 또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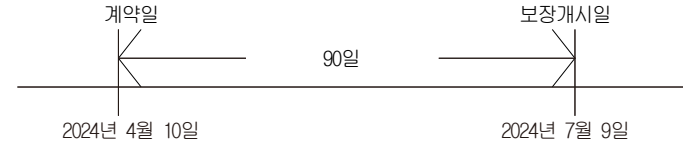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7 항암방사선치료 II 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 은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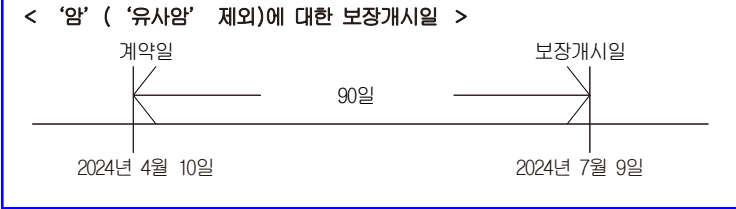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8 항암방사선치료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



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 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 은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 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뜸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 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 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 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 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 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 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 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 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유사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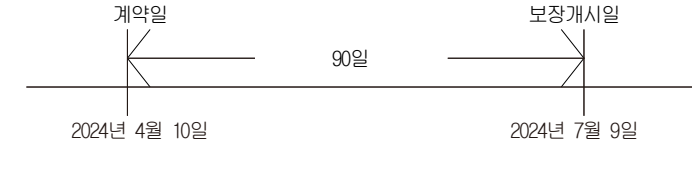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 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통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49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제자리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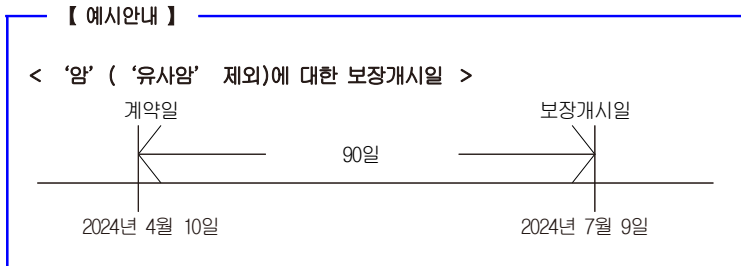
####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0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 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 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 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침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조건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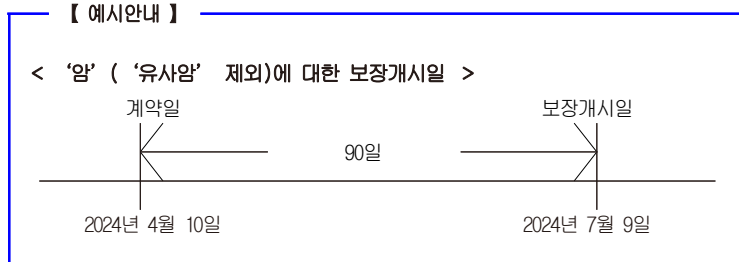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죽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1 항암방사선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 (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 은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15세 이상 피보험자 가입시 예시]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2 항암방사선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

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 (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 은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성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위)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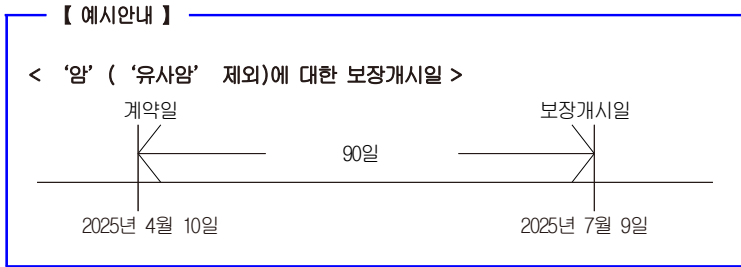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유사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중앙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요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적용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3 항암약물치료 II 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 은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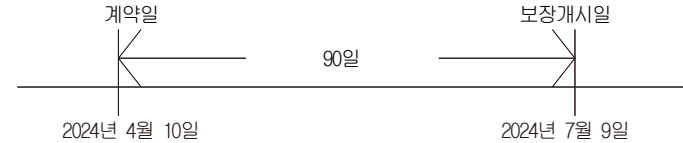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예시안내】

<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4 항암약물치료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

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 은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

늘뜸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유사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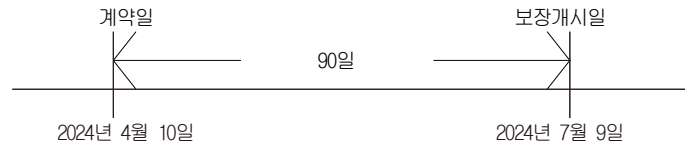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예시안내】**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

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5 항암약물치료 II(치료당)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치료당)[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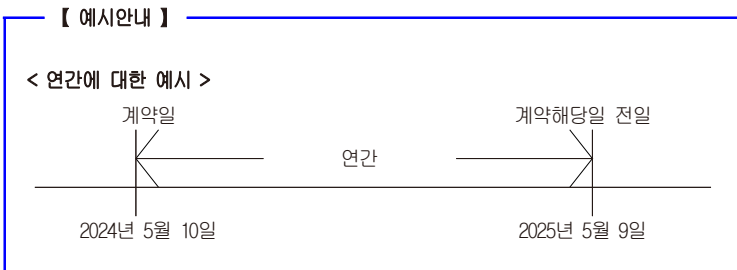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갑상선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제자리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암’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갑상선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제자리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 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 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 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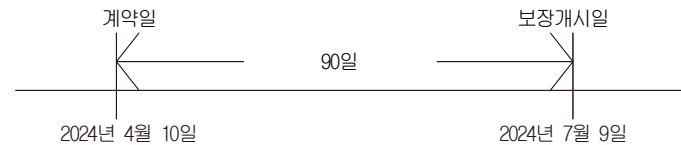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주사제’ 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6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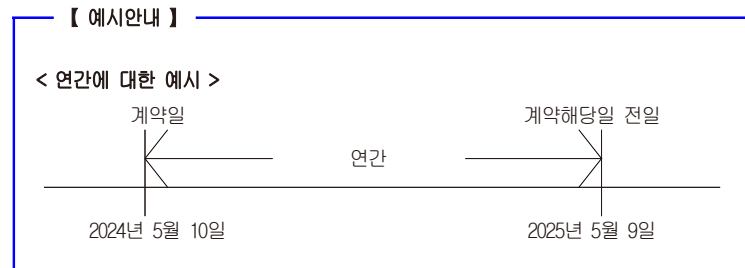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갑상선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제자리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의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암' (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갑상선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제자리암'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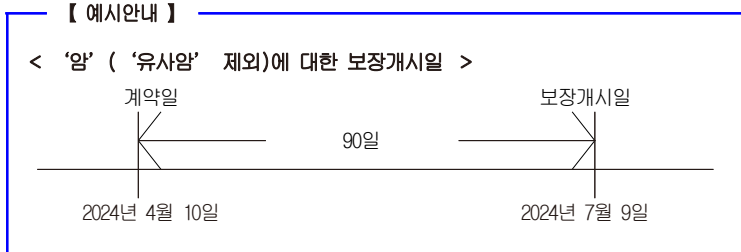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죽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7 항암약물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 (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 은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경시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8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



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유사암'은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4. 제자리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제자리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5. 경계성종양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역)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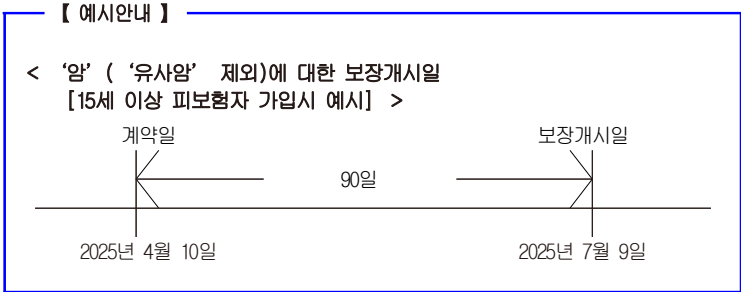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유사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유사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 (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59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환,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환,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환,진단후10년)[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환,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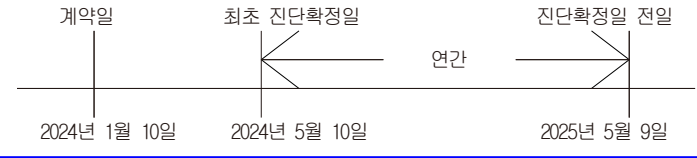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조건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이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예시안내】

<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 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②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 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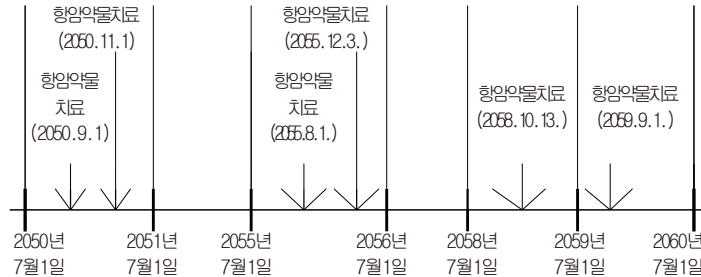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2-5 차년도	6차년도	7-8 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항암약물치료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 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 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16)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항암약물치료 (C17)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	-



※ 2050년 7월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 진단 이후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감상선암' 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60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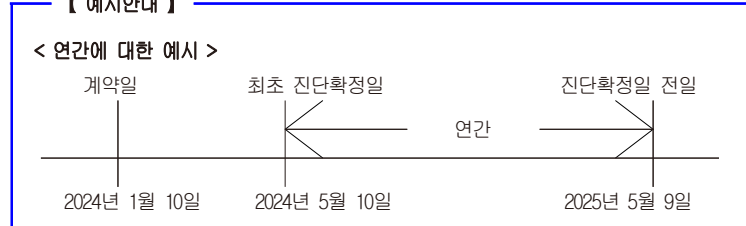


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 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 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금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②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이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 상선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 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 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 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 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외)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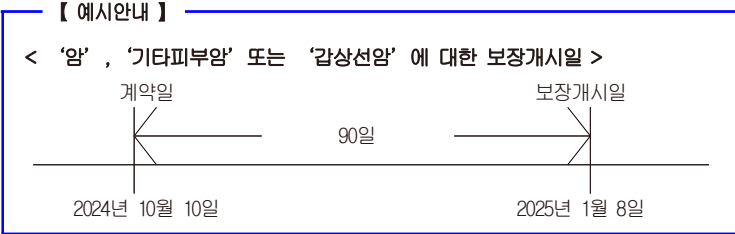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 영함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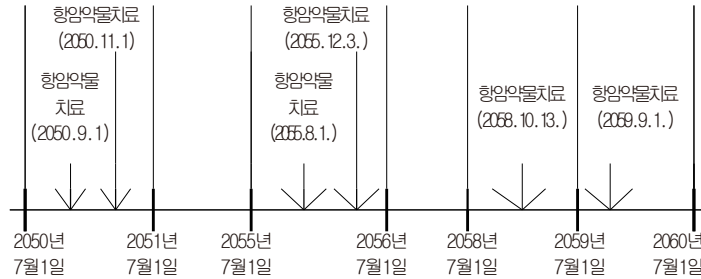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하이클래스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금액 예시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2-5차년도	6차년도	7-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6)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항암약물치료(C17)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	-



※ 2050년 7월 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 진단 이후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 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정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6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1. 암의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약중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뢰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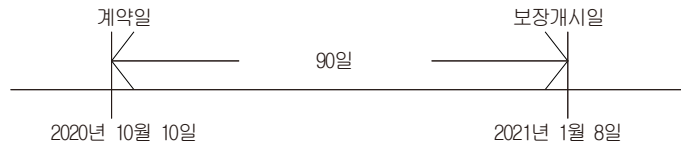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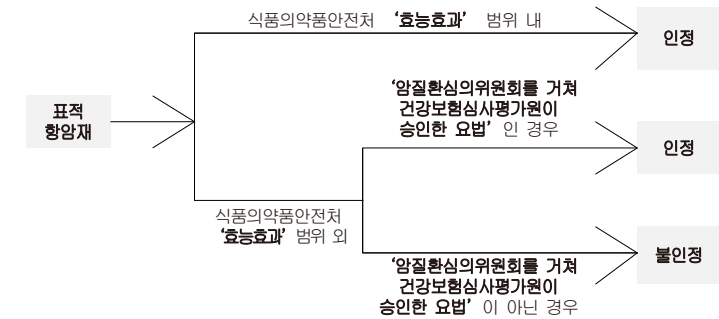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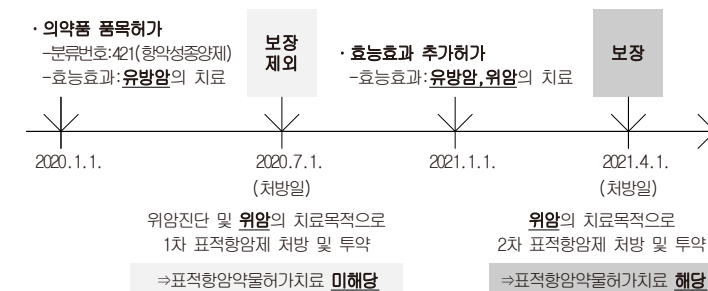
**<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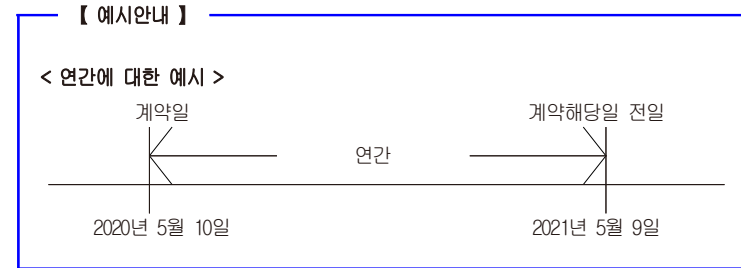
**2-62 표적항암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물허가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형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형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형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료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견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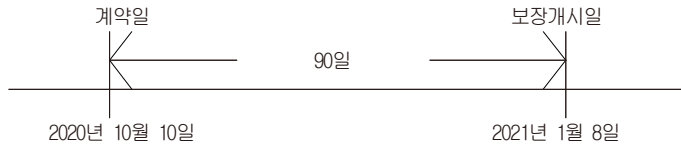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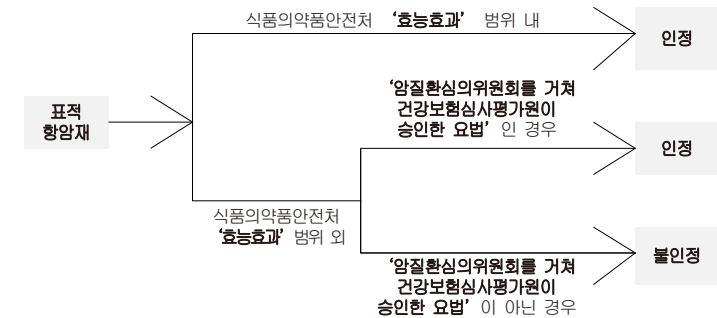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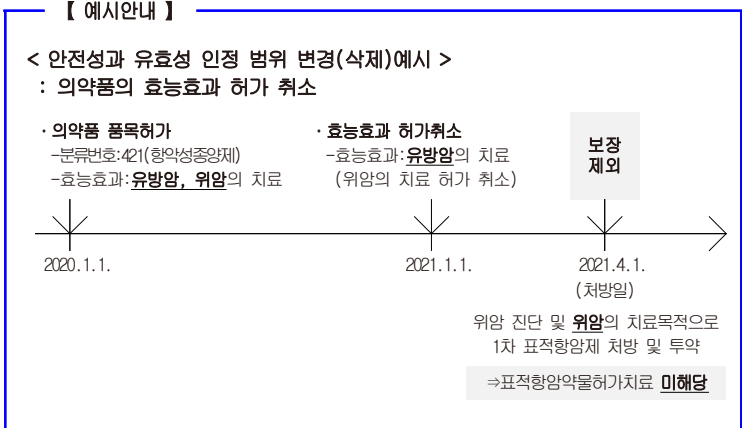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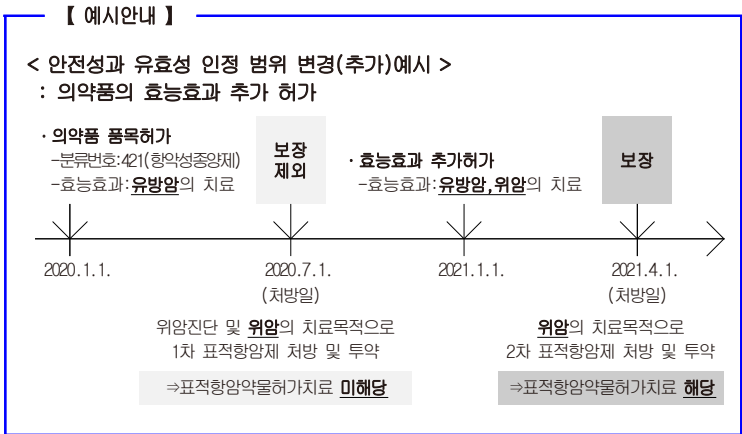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감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감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63 표적항암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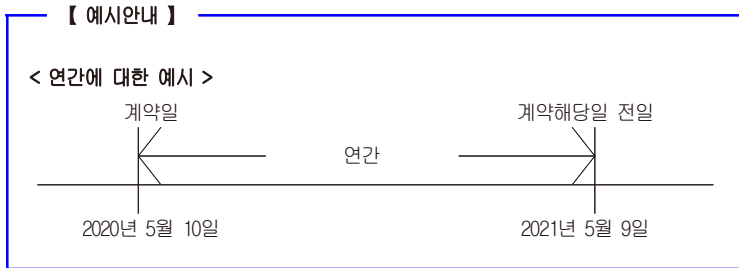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2. 갑상선암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주사제 외)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주사제 외)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주사제 외)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①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주사제’ 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 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료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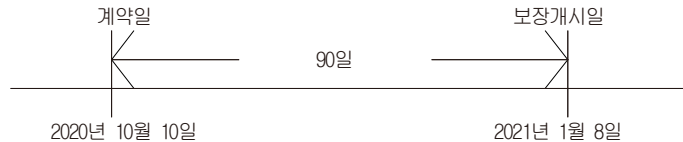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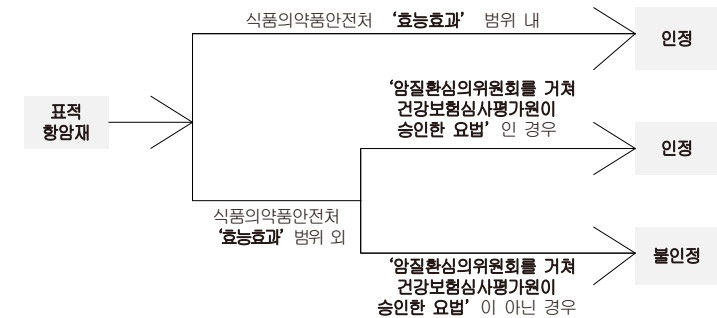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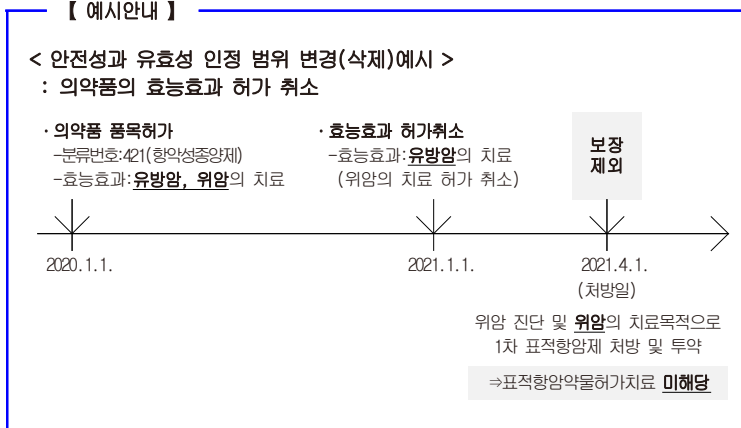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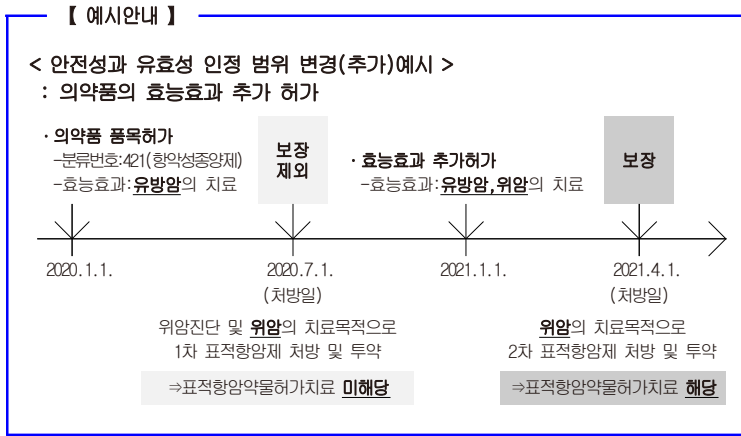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표적항암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상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감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감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

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6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은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1. 암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중 ‘비급여’ 대상에 해당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비급여 표적항암제' 예시 >

2024년 2월 기준 비급여 표적항암제에 해당하는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아래 의약품 등이 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비급여 표적항암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국문·영문)	의약품명(국문)
1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Capmatinib Hydrochloride Monohydrate	타브렉타정20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타브렉타정150밀리그램 (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2	프랄세티닙분무건조분산체 Pralsetinib Spray Dried Dispersion	가브레토캡슐100밀리그램 (프랄세티닙)

- ⑥ 제5항의 '비급여' 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⑦ 전액본인부담금(100/100)(요양급여 비용 또는 의료급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은 급여에 해당하므로 '비급여' 로 보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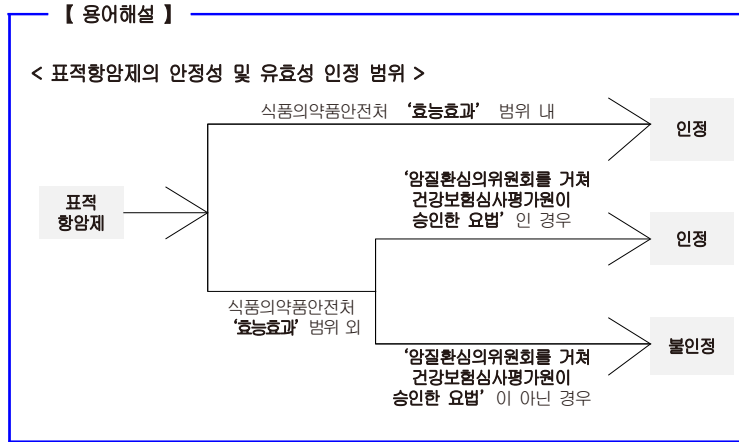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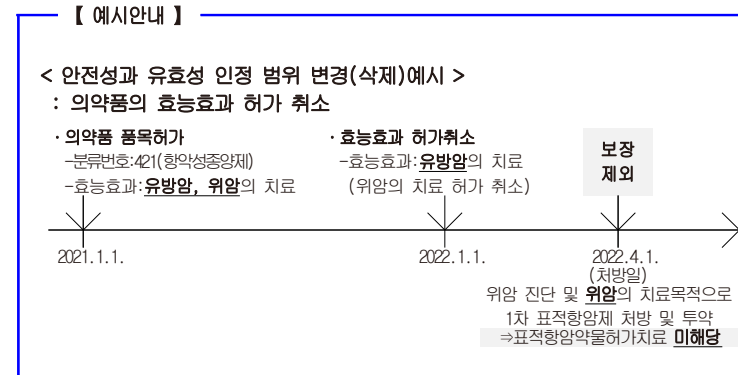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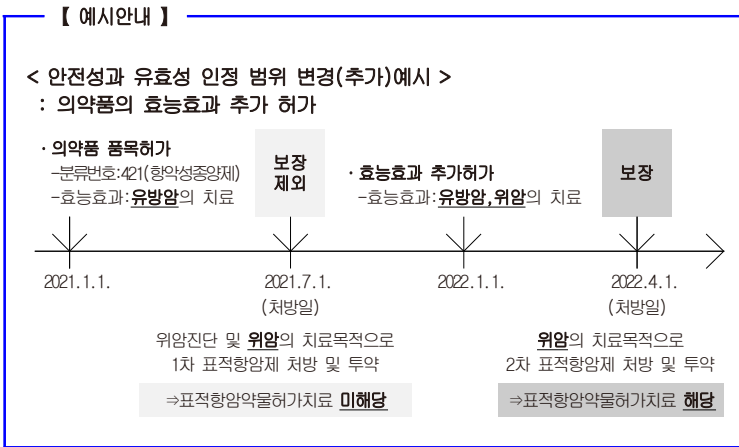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제물허가치료보험금은 비급여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학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비급여’ 해당되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및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비급여 약제 사용시 허가사항(효능효과) 이내 사용근거 및 소견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강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의 비급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6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1. 암의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보험금	‘암’ (‘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 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 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상급종합병 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 적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표적항암약물허 가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 항암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직)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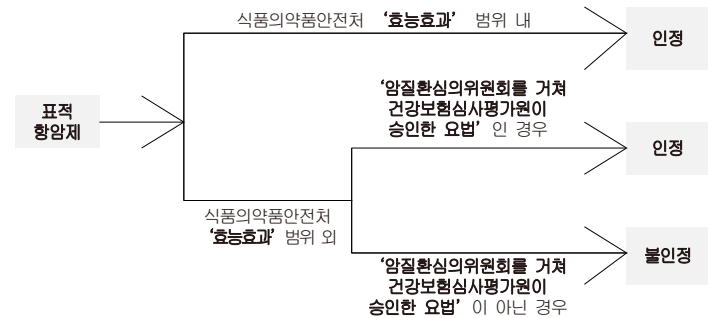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15세 이상 피보험자 가입시 예시]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정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특별약관

상해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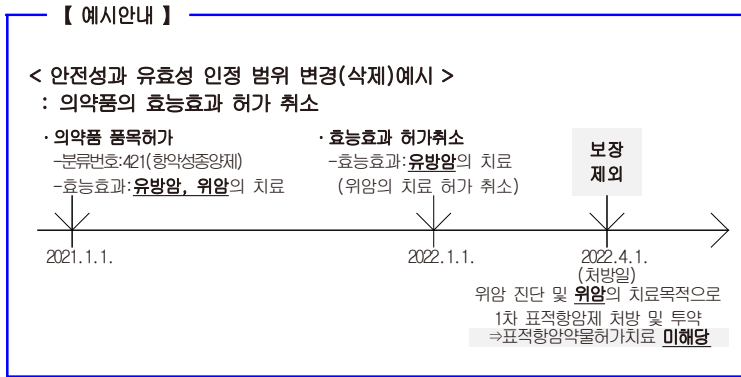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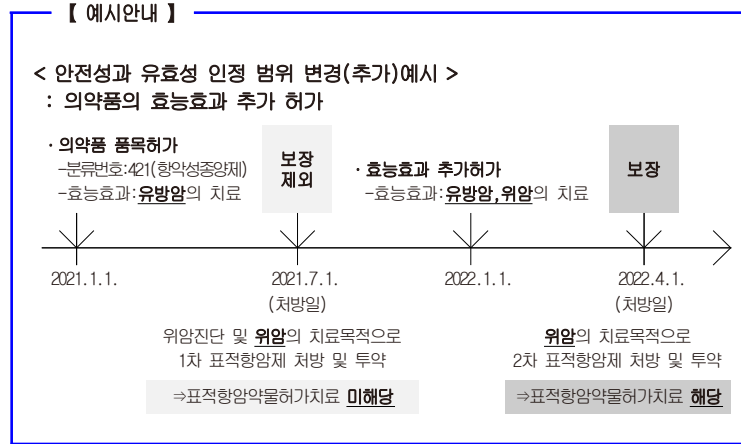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1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6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맞춤고지 II 포함)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갱신형, 맞춤고지 II 포함)

**2-66-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주사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손해

독립특별약관

기타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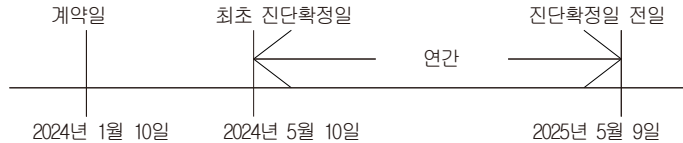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주사제 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 이라 함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 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제’ 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 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 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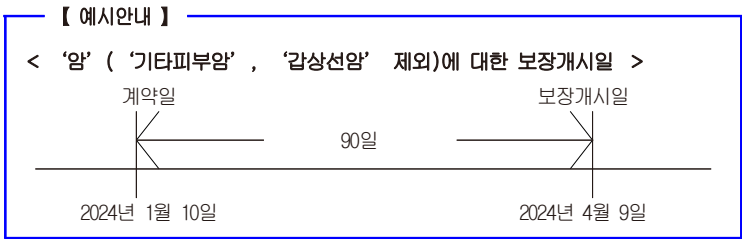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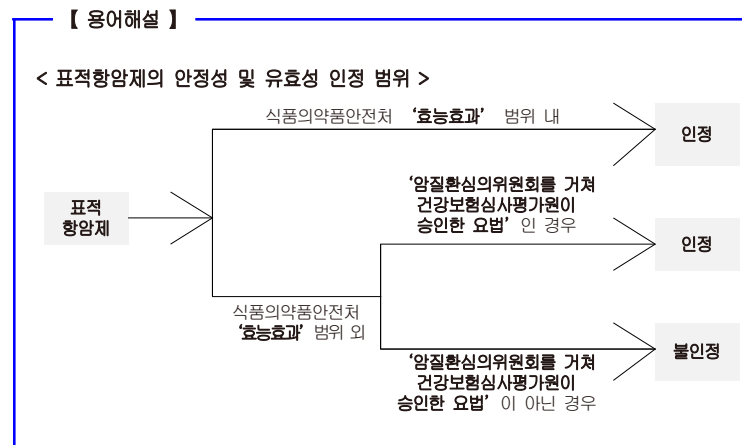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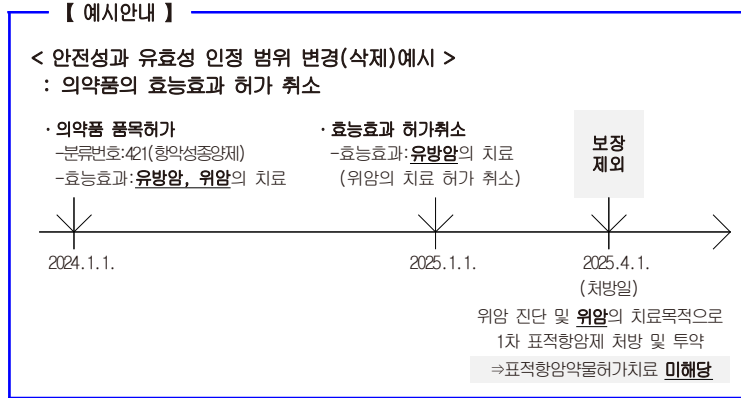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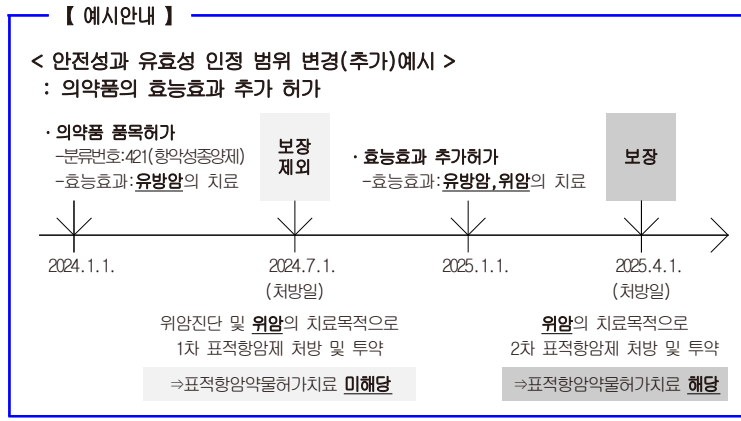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⑥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물허가치료를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

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표적항암물허가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0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

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암’ ( ‘기타 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66-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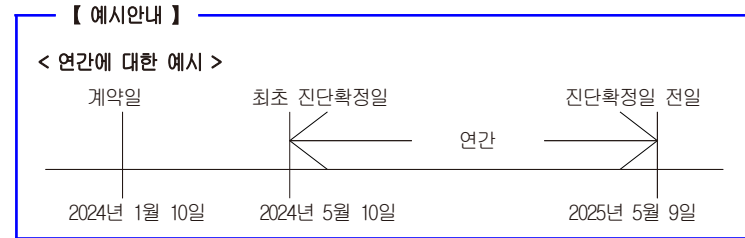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사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주사제)’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 ) (주사제 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보장에서 ‘동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견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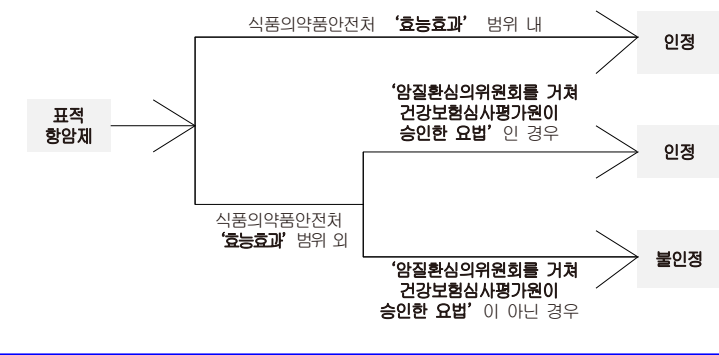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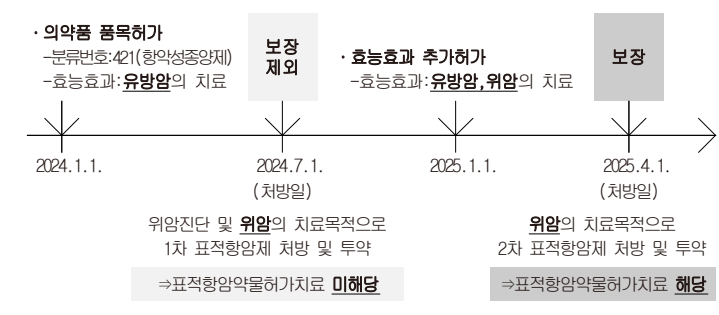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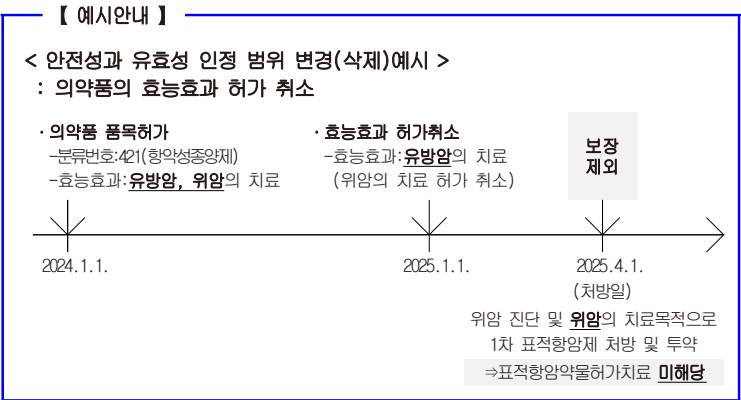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4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⑥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향상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준용규정)**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6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진단후 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진단후 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맞춤고지 II 포함)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기타피부암 및갑상선암)보장 (※갱신형, 맞춤고지 II 포함)

**2-67-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진단후 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진단후 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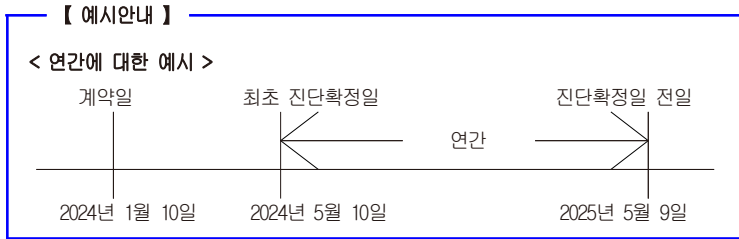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주사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주사제 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 이라 함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④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조건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약품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7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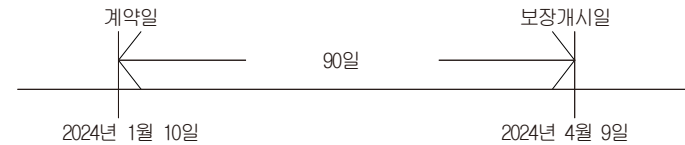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동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⑥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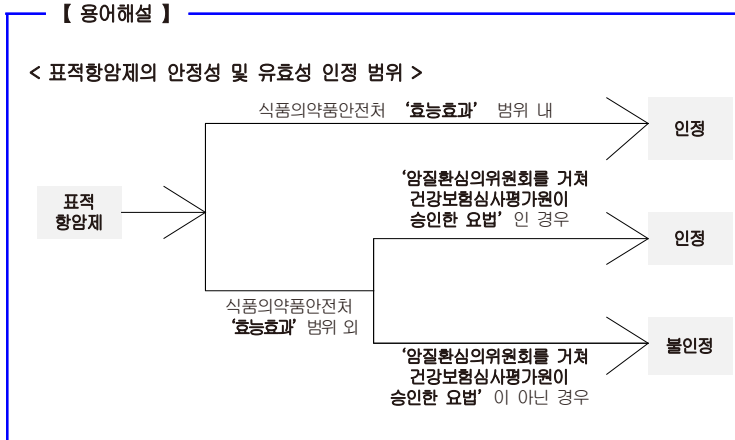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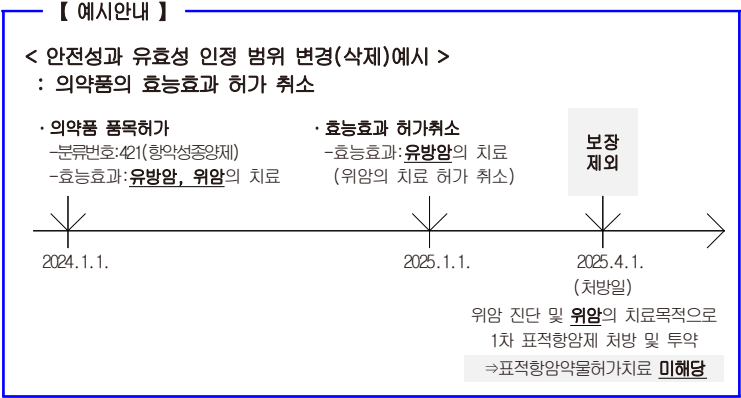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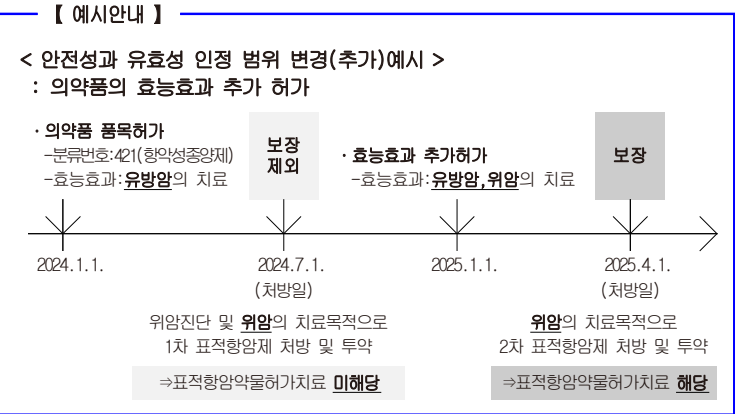
기타  
특별  
약관



(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

-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강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11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2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3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6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17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67-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Ⅱ]  
(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사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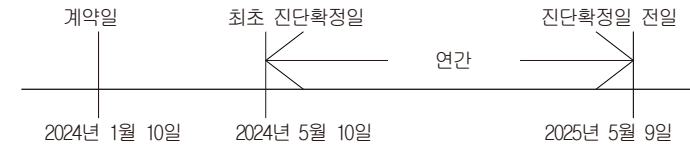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사제 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④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보장에서 ‘동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7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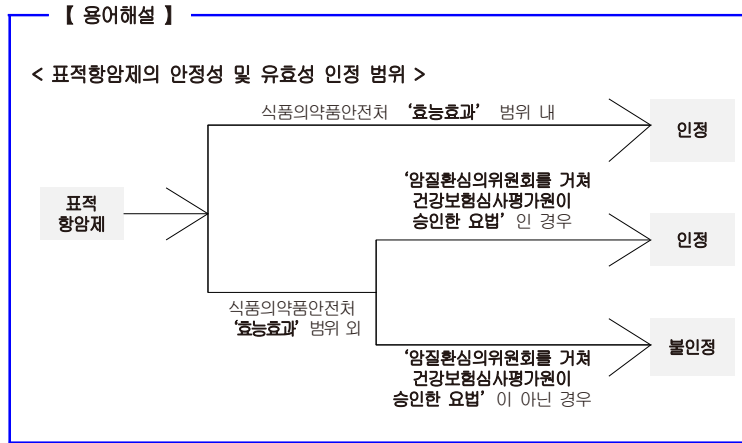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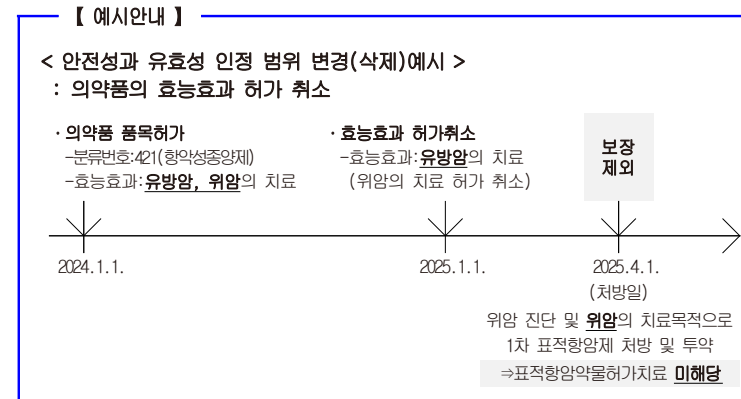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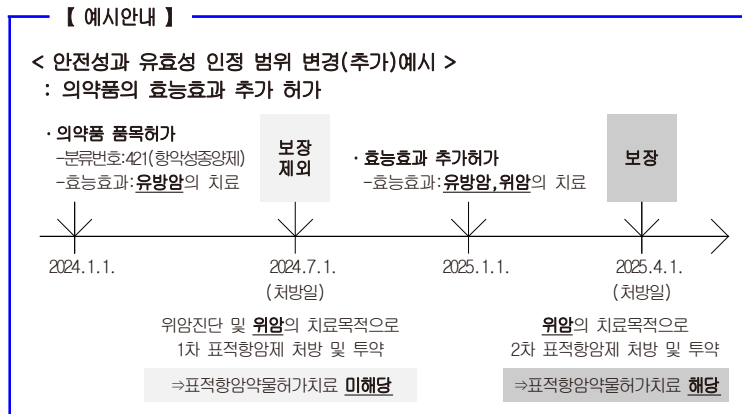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4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표적항암약물허가 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안전성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68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방사선치료(양성자)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은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1. 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양성자)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의 정의)

- ①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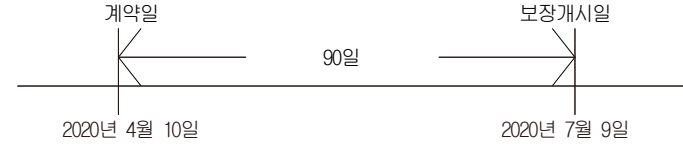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69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의 정의)

- ①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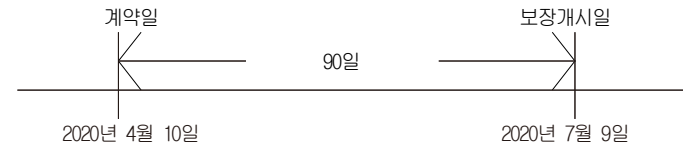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 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0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 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 10년)[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맞춤고지II 포함)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갱신형, 맞춤고지II 포함)



**2-70-1.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 험금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 이라 함은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용어해설】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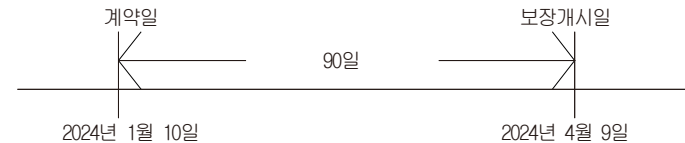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위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0-2.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항암 방사선(양성자)치료'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1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방사선치료(세기조절)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1. 암의 항암방사선 (세기조절) 치료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 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 의 항암방사선 (세기조절) 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 (세기조절) 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세기조 절)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원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의 정의)**

- ①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 문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법” 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방사선세 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중앙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중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2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의 정의)

- ①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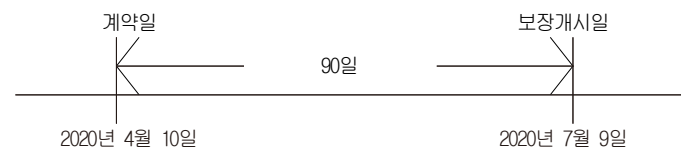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73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1. 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보험금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 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를 받은 경우			
3.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피보험자의 나이에 따라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1.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미만인 경우는 계약일
2. 피보험자의 나이가 15세 이상인 경우는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15세 이상 피보험자 가입시 예시]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4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맞춤고지II 포함)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갱신형, 맞춤형지 II 포함)

**2-74-1.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보험금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 이라 함은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조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4-2.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진단후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

형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 )치료’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 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의 정의)

- ①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법” 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직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중앙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5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맞춤고지 II 포함)
-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갱신형, 맞춤고지 II 포함)

**2-75-1.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  
(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보험금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 이라 함은 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조건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②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요)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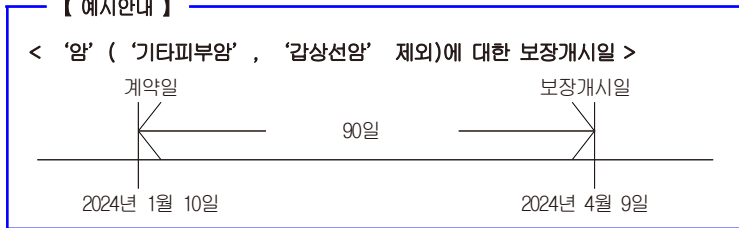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

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 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5-2.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를 받은 경우 (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의 정의)

- ①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 치료법”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요)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② 보형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6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성의약품)치료(연간1회환)(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성의약품)치료(연간1회환)[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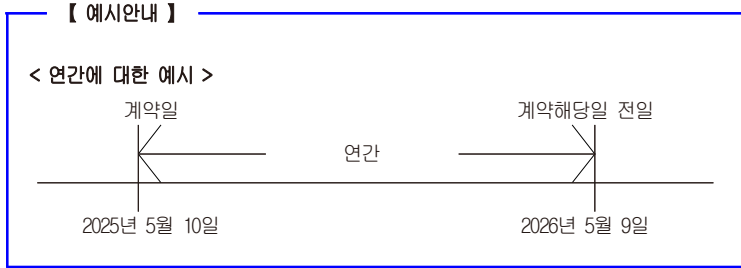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및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성리간드약품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및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보험금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으로 '방사성리간드약품 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및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보험금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으로 '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이라 함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중 제4조(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 제1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방사성리간드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시점(2024년 9월 기준)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처방 시점에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은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성인의 소마토스타틴 수용체 양성 신경내분비종양(GEP-NET)
  2. 안드로겐 수용체 경로 차단(APPI)치료와 탁산 기반의 화학요법을 받았던 성인의 전립선특이막항원(PSMA)양성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mCRPC)
- ③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이라 함은 '암' 중 제4조(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 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 을 말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라 현시점(2024년 9월 기준)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처방 시점에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은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갑상선암
  2. 갈색세포종
  3. 신경아세포종
- ⑤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 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⑨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8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⑩ 제8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또는 핵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 (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방사성리간드약품’ ([별표143]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성분명 및 의약품명 분류표 참조)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31(방사성의약품)’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방사성의약품’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주사 또는 경구 형태 등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주입하여 해당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의약품으로, 특정 암세포를 표적하여 결합 가능한 리간드와 방사성동위원소를 결합한 형태의 약품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방사성물질단독약품’ ([별표143]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성분명 및 의약품명 분류표 참조)이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

여 의약품 분류번호 ‘431(방사성의약품)’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방사성의약품’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주사 또는 경구 형태 등으로 방사성동위원소를 인체에 주입하여 해당 방사성동위원소에서 발생하는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등 방사선이 암세포를 파괴하는 의약품으로, 방사성동위원소 단독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방사성동위원소가 종양 발생 기관 또는 조직 내 특정 세포(신경내분비세포 등)에 흡수되는 물질(MIBG(Metaiodobenzylguanidine) 등)과 결합한 약품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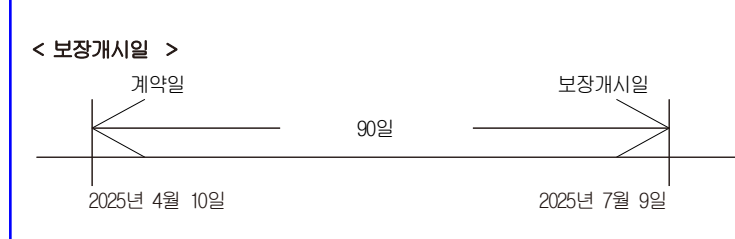
다만, 강내치료, 조직내치료, 관내치료, 자임치료 또는 색전술(경동맥방사선색전술(Transarterial radioembolization) 등)에서 활용한 방사성동위원소약품은 제외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방사성리간드약품 치료’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 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또는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사성리간드약품’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을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진단 목적으로 투여하는 약품은 제외합니다.
- ④ 제3항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주요방사성의약품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방사성리간드약품’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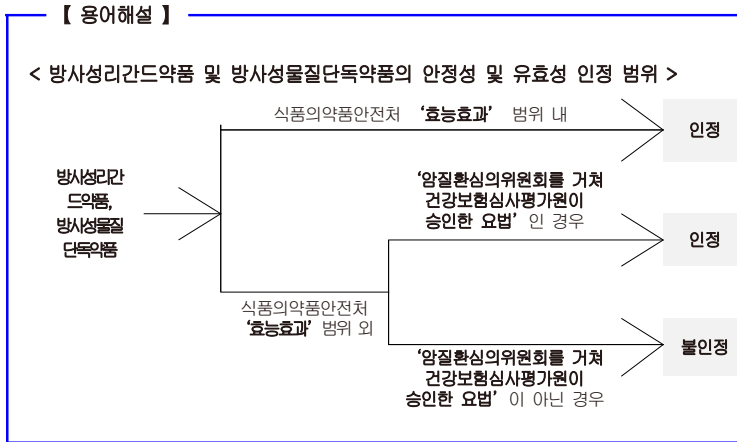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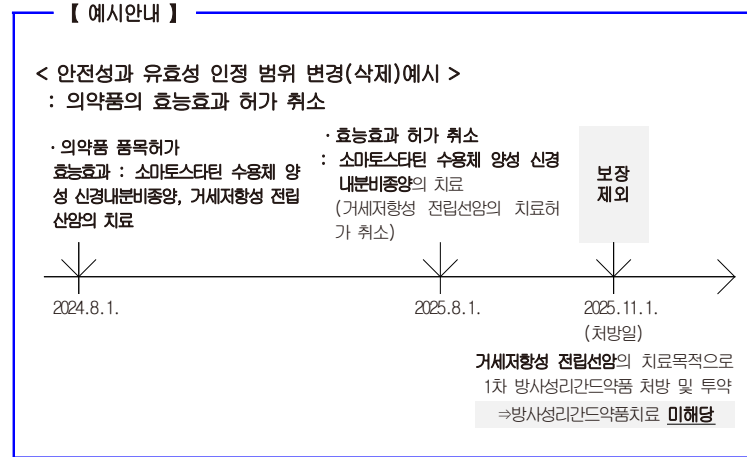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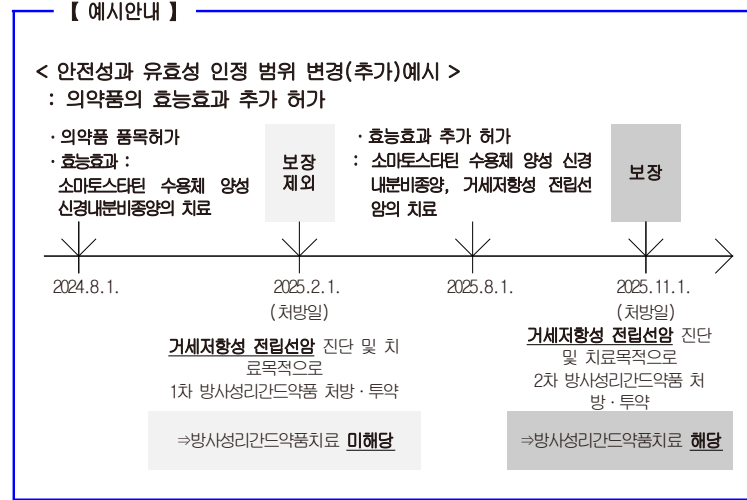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보장

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보험금 및 제2항의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보험금은 ‘방사성리간드약품’,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 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및 제2항의 ‘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방사성리간드약품’ 또는 ‘방사성물질단독약품’을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받은 치료내용이 제2조(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및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에 해당하는 여부 또는 제4조(방사성리간드약품 등의 정의)에서 정한 방사성리간드약품 또는 방사성물질단독약품에 해당하지는 여부와 관련하여 명확한 확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인을 위해 주치이나 처방한 의사에게 의견을 구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증명서
    - 가.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또는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진단확인서, 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및 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품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향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항암방사선(방사성리간드약품)치료 적응증' 및 '항암방사선(방사성물질단독약품)치료 적응증' 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7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보험금	‘암’으로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조건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의 정의)**

-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중 국내에 허가된 중입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자치료센터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암 환자의 몸 에 조사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항 암방사선(양성자)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표면에 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는 특성(브래그 피크)를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③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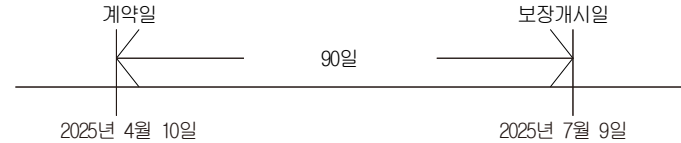
항암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전리화된 탄소, 헬륨 등(수소 제외)의 중이온을 가속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중이온은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표면에서 작은 양의 에너지를 전달하고, 심부에서 많은 양의 에너 지를 전달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암 방사선(중입자)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일반 정상 조직에 조사되는 방사선이 적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 고 바로 소멸되기 때문에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조직의 손상위험을 최 소화한다는 점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 등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진료비세부내역서 등 항암방사선(중 입자)치료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종양자)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8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1호의 암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진단 받은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1. 암의 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 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 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의 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 액의 1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3. 갑상선암의 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 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보 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별표7] 참조)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에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그 지급사유가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과 동일한 질병인 경우(갱신 전 계약에서 이미 보험금이 지급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를 말합니다) 회사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되어 보험금이 지급된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이 특약에 따라 보장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이라 함은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서 정한 계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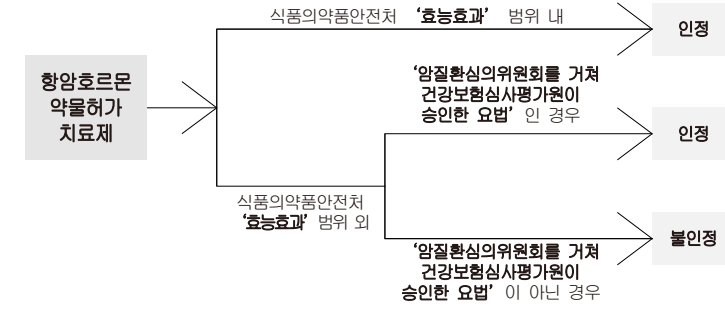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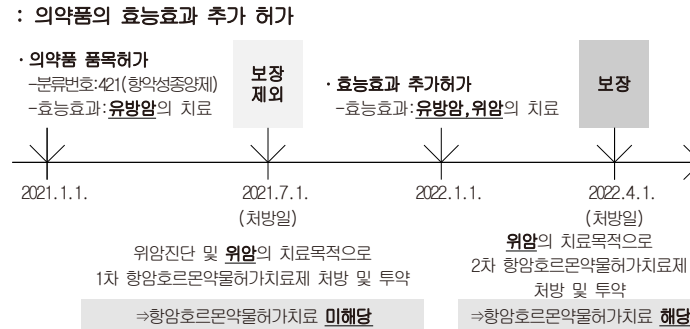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79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주사제) 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보험금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보험금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보험금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제5조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별표79] 참조)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향상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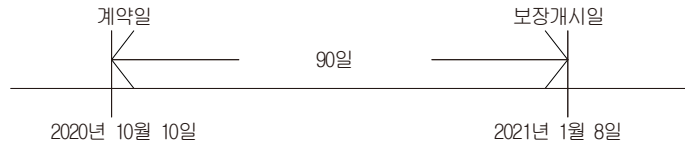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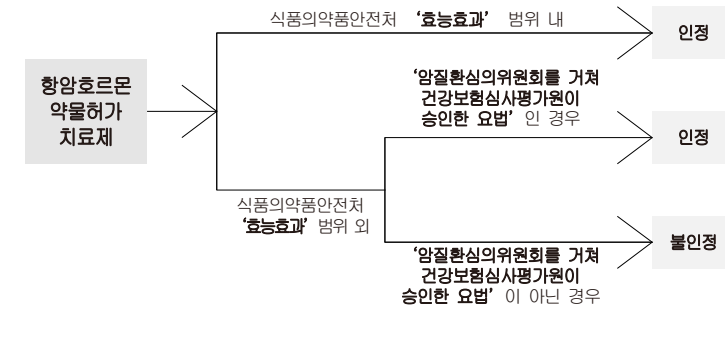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항암화학요법 등의 정의) 및 제5조(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제 등의 정의)의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보험금은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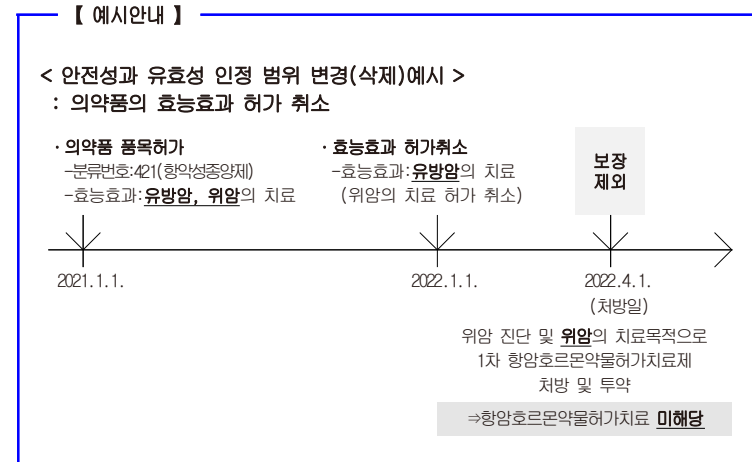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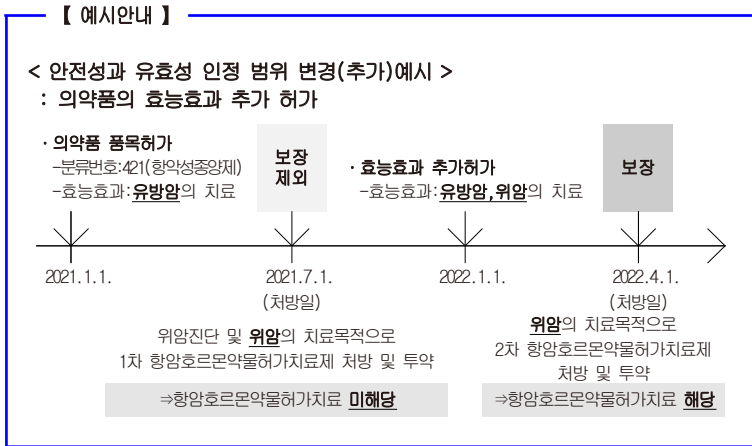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항암호르몬억제거치료제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항안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항안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항안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명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80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의 수술 후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에 정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치료 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의 수술 후 '갑상선암수술후 호르몬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앙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라 함은 피보헨자의 '갑상선암' 수술 후 치료 또는 재발 방지 목적으로 사용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하며, '항암약물치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③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 용어해설 】

#### <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갑상선암호르몬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81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환)[맞춤고지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카티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으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이라 함은 '암' 중 제4조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및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 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카티(CAR-T)치료제의 안정성과 유효성 인정범위에 따라 투약 처방이 가능한 '암' 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현시점(2022년 7월 기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투약 처방 시점에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적응증' 은 확대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B세포 급성 림프성 백혈병(ALL)
  2.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DLBCL)
- ③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⑦ 제6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6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⑧ 제6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및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별표86]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참조)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환자의 면역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항체 바이러스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의 표면항원에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키메라항원수용체T세포(CAR-T 세포)를 발현시킨 뒤 다시 환자의 몸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 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로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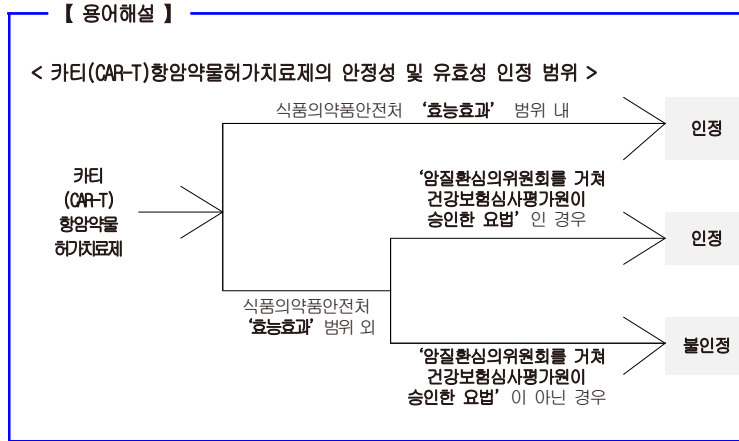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보장개시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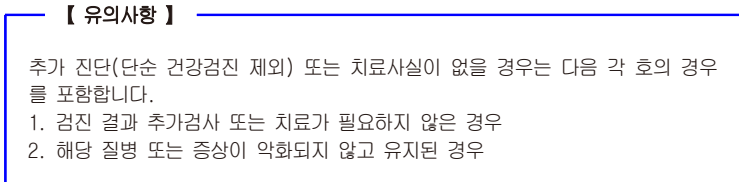
The diagram shows a horizontal timeline. On the left, a vertical line marks the '계약일' (Contract Date) as '2022년 4월 10일'. A horizontal line extends to the right from this point, with '90일' written above it. On the right, another vertical line marks the '보장개시일' (Benefit Start Date) as '2022년 7월 9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합니다)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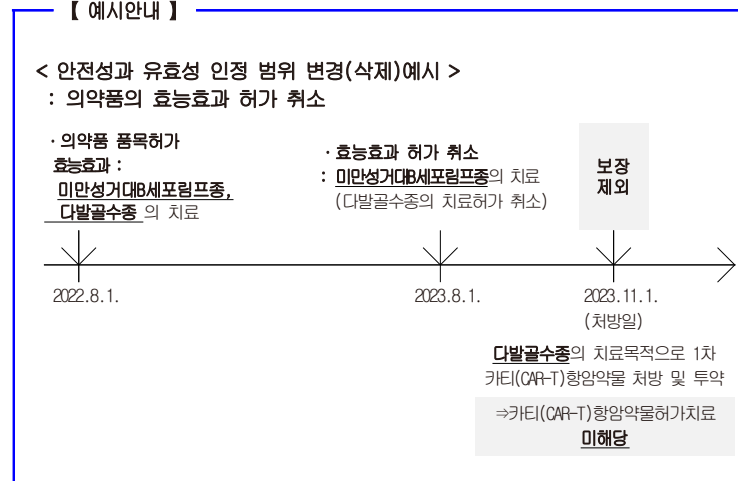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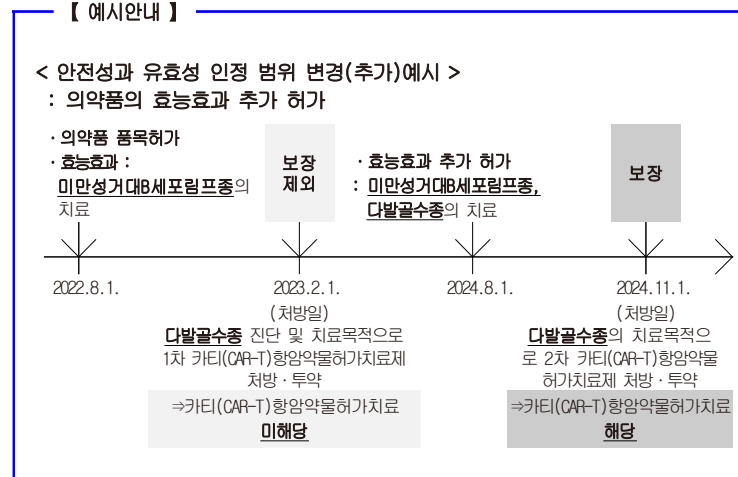


④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장을 개시합니다.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및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진단확인서,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향상의위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 적응증’ 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82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전이암' 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전이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전이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83 전이암항암약물치료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약물치료[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전이암'으로 항암약물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제2조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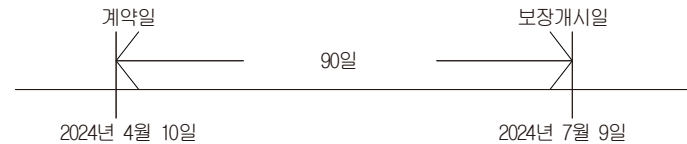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



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84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전이암의 표적항암약물 허가치료보험금	'전이암'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포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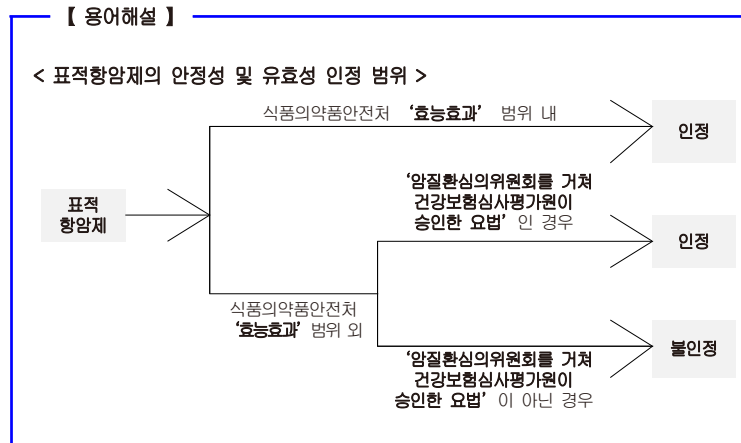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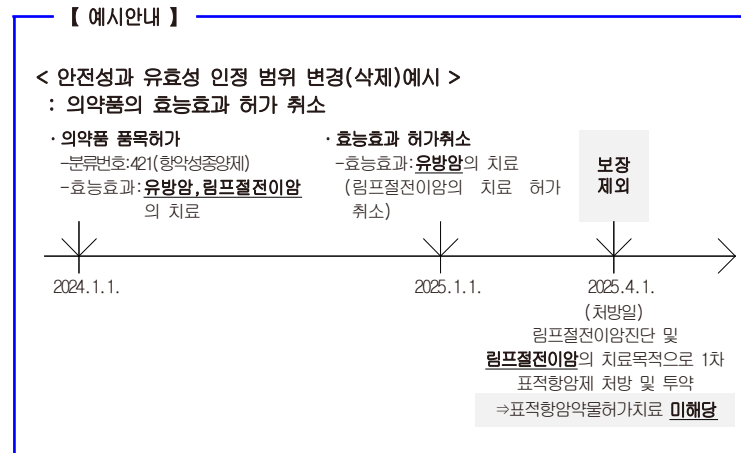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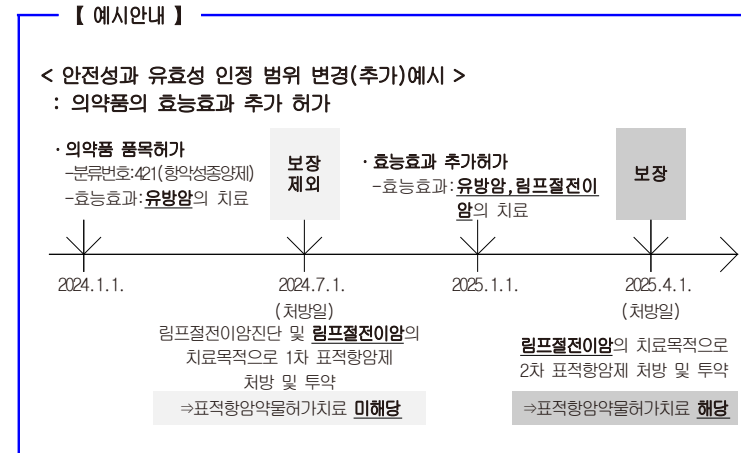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제12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은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85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전이암의 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보험금	‘전이암’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포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별표79] 참조)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 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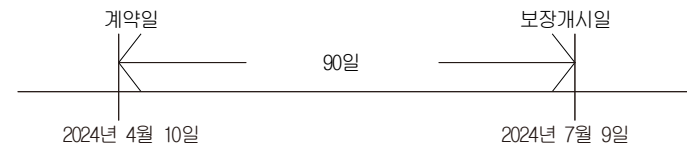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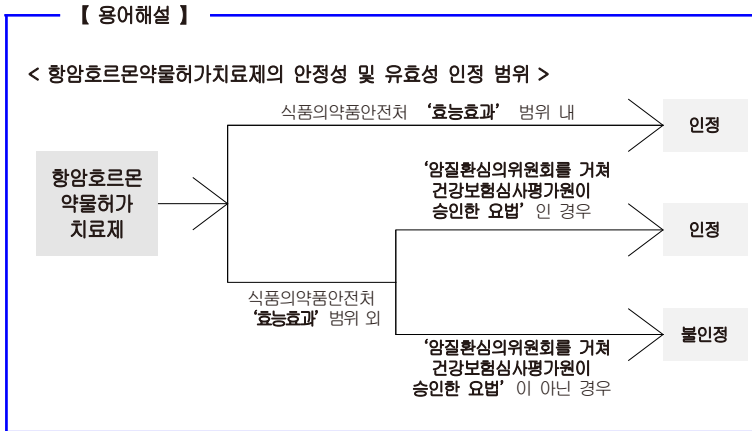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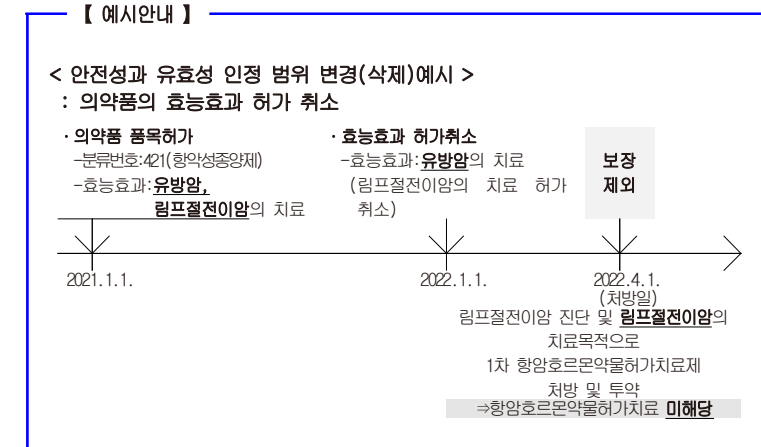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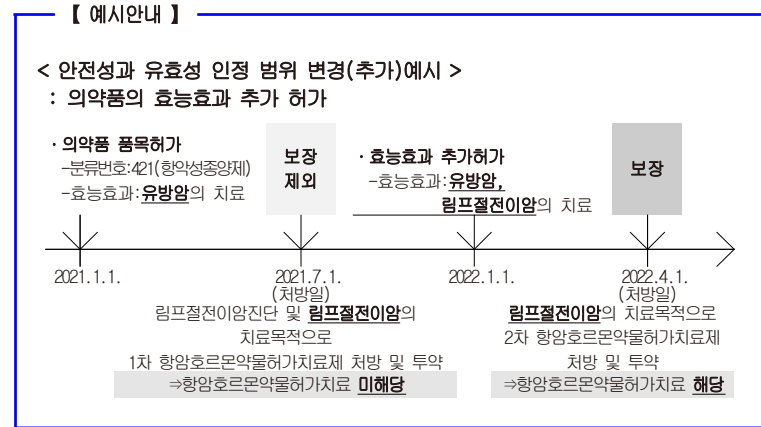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다만, 제4조(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1항을 따릅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86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	'전이암' 으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포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앙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세기조절방사선치료법 >**

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중앙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제10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은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 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87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최초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 치료보험금	'전이암' 으로 항암방사선(양성자)치 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 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제10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은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 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88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 10일면책)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 10일면책)  
[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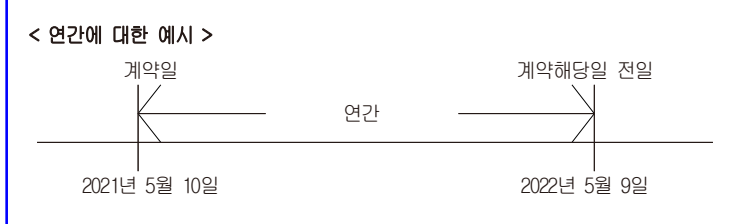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독감(인플루엔자)’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독감(인플루엔자) 항바이러스제 치료보험금	‘독감(인플루엔자)’으로 ‘독감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독감(인플루엔자) 및 독감 항바이러스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5]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독감(인플루엔자)’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 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

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독감 항바이러스제’라 함은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체내에 침입한 바이러스의 작용을 약화 또는 소멸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서, 진단 당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항목에 독감(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증의 치료제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 용어해설 】**

**【독감 항바이러스제 해당 성분명 안내】**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
- 자나미비르(zanamivir)
- 페라미비르(peramivir)
- 발록사비르(baloxavir)

※ 상기 독감 항바이러스제 해당 성분명은 2020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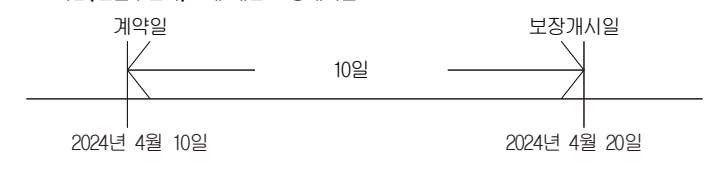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독감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인플루엔자)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독감(인플루엔자)’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89 말기간경화진단보장 특별약관 / 말기간경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간경화’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말기간경화 진단보험금	‘말기간경화’ 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말기간경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 라 함은 만성 말기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 ②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 ③ ‘말기간경화’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간경화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0 말기폐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 말기폐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말기폐질환 진단보험금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말기폐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6] ‘말기폐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 이라 함은 제1항에 포함되고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각호의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호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여 그와 동일한 상태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정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이하
- ③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폐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1 말기신부전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말기신부전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말기신부전증 진단보험금	‘말기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말기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콩팥병(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별표27] ‘말기신부전증 분류표’ 참조)
- ②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말기신부전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2 만성간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 만성간질환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만성간질환 진단보험금	‘만성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만성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만성간질환’이라 함은 중기이상 만성간질환을 말하며 만성적인 염증으로 인해 정상적인 간조직이 재생결절(regenerative nodules: 작은 덩어리가 만들어지는 현상) 등의 섬유화 조직으로 바뀌어, 간의 기능이 저하되는 간경변증으로 진단확정되고, 복수(ascites)가 확인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간경변증’이라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9] ‘간경변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만성간질환’의 진단확정과 ‘복수(ascites)의 확인’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학적 소견, 복수 천자, 영상검사를 통해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간질환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3 만성신부전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만성신부전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만성신부전증 진단보험금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만성신부전증’이라 함은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으로 단백뇨가 지속적으로 나오거나 혈뇨와 같은 신장손상의 증거가 있는 등 지속적으로 신장기능이 저하된 상태로서, 만성 콩팥병(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사구체 여과율(GFR) 수치가 반복적인 검사 결과 30mL/min/1.73m<sup>2</sup> 미만인 상태로 90일 이

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② ‘만성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신장 초음파 검사에서 신장의 크기 및 요로폐쇄 징후 등의 확인을 통해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조(만성신부전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중기이상 만성신부전증’에 해당하는 상태가 되고, 그 상태가 90일 이상 지속되어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진단확정 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만성신부전증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신부전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4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만성특정폐질환 (중기이상) 진단보험금	‘만성특정폐질환(중 기이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이라 함은 ‘만성특정폐질환’에 해당되는 질병으로 인해 폐장이 비가역적인 기능부전을 보이고 그 결과 평지에서서의 보행에도 호흡곤란이 있는 상태로써 다음의 한가지 기준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폐기능 검사에서 최대한 노력하여 잘 불었을 때 1초간 노력성 호기량(FEV1.0)이 지속적으로 정상예측치의 40%이하인 경우
  - 비가역적인 만성 저산소증으로서 안정상태에서의 동맥혈 가스분석검사(ABGA)상 동맥혈 산소분압(PaO2)이 65mmHg이하인 경우
- 이 특약에서 ‘만성특정폐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50] ‘만성특정폐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정한 폐기능 검사성적과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는 그 성질상 변동하기 쉬운 것 이미 때문에 폐질환의 경과 중에 있어서 가장 적절하게 상병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되는 검사성적에 근거하여야 합니다.
-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 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정기적인 흉부X선 소견, 폐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검사 등을 통해 문서화된 기록 또는 기록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95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험금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Severe Aplastic Anemia)’이라 함은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로서 피보험자가 근본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혈, 면역억제제, 골수 촉진제와 같은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 현재 골수이식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질병상태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이라 함은 만성 골수부전상태로서 호중구 수가 200/mm<sup>3</sup> 미만이거나, 또는 골수세포총실성(bone marrow cellularity)이 25% 이하이고 동시에 다음 중 두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것을 말합니다.
  1. 호중구 수가 500/mm<sup>3</sup> 미만
  2. 혈소판 수가 20,000/mm<sup>3</sup> 미만
  3. 망상적혈구 수가 20,000/mm<sup>3</sup> 미만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재생불량성빈혈’은 제외합니다.
- ④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혈액학 전문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제2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의 ‘영구적인 재생불량성빈혈’에 해당하는 상대가 되고, 제2조(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의 표준적 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 보험기간이 만료된 후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 진단이 확정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대한 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6 크론병진단보장 특별약관 /  
크론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크론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크론병 진단보험금	‘크론병’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크론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크론병(Crohn’s Disease)’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크론병[국소성 장염](분류번호 K50)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가족성 크론병은 제외합니다.
- ② ‘크론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내과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병리학적·방사선학적 검진과 함께 내시경 검사, 전산화단층촬영(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크론병’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크론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7 다발경화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다발경화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다발경화증’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다발경화증 진단보험금	‘다발경화증’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다발경화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다발경화증(Multiple Sclerosis)’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발경화증(분류번호 G35)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다발경화증’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전문의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척수액검사(CSF), 자기공명영상(MRI), 뇌유발전위 검사(Brain E-P)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다발경화증’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다발경화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8 만성당뇨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만성당뇨합병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만성당뇨합병증 진단보험금	‘만성당뇨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만성당뇨합병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만성당뇨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만성당뇨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28]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 단, 다음의 합병증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 ② ‘만성당뇨합병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반드시 피보험자가 당뇨병의 병력과 함께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합병증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 1. 당뇨병성 망막증 : 내과와 안과에서 시행한 안저검사 및 형광 안저혈관 조영술을 시행하여 망막출혈반, 미세동맥류, 면화반, 부종 등의 소견이 보이는 경우
  - 2. 당뇨병성 신증 : 소변검사상 단백뇨가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없는 상태에서 24시간 소변에서 단백이 500mg 이상 검출된 경우(단백뇨군으로 분류), 혈청 크레아티닌치가 1.5mg/dl 이상인 경우(당뇨로 인한 신부전증으로 분류)
  - 3. 당뇨병성 신경병증 :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으로 구분하여 신경전도검사상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이상소견을 보이거나 Ewing 방법에 의한 심혈관계 자율신경 기능 검사상 이상이 있는 경우
  - 4. 당뇨병성 말초순환장애 : 이학적검사상 피부궤양(Ulcer), 괴저(Gangrene) 및 말초혈관병증(Peripheral Angiopathy)이 있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만성당뇨합병증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99 특정감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특정감염병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  
  
이 특별약관은 1종(일반형) 및 2종(납입면제형)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감염병 진단보험금	‘특정감염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특정감염병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9] ‘특정감염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00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보장 특별약관 /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대상포진'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대상포진 진단보험금	'대상포진'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대상포진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대상포진'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0] '대상포진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대상포진'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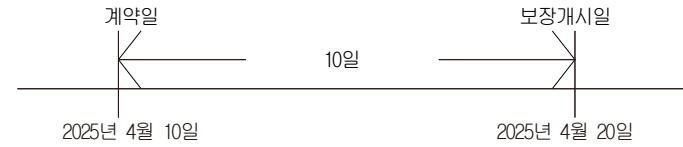
피보험자가 해당질병으로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질병이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대상포진진단'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대상포진'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대상포진'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

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1 대상포진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 대상포진눈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대상포진눈병 진단보험금	‘대상포진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대상포진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대상포진눈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1] ‘대상포진눈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대상포진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유의사항】**

피보험자가 해당질병으로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질병이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대상포진눈병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2 통풍진단보장 특별약관 / 통풍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통풍’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통풍 진단보험금	‘통풍’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통풍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통풍’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2] ‘통풍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통풍’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

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임상학적 기준을 근거로 혈청 요산 검사, 관절액 채취 및 편광현미경 검사, 기타 혈액 검사 등의 검사 소견 및 초음파, 이중에너지 컴퓨터 단층촬영, 방사선 검사 등의 영상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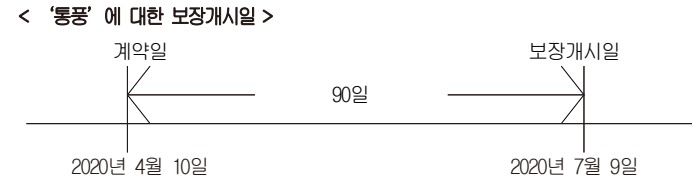
**【 유의사항 】**

피보험자가 통풍으로 진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질병이 의심되거나 추정적인 진단으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통풍'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최초로 발생한 통풍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통풍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통풍'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3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당뇨병 (당화혈색소7.5%이상) 진단보험금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제2조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이라 함은 당화혈색소(HbA1c) 7.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3] '당뇨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당화혈색소(HbA1c)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라 함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GSP)'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를 말합니다.
- ④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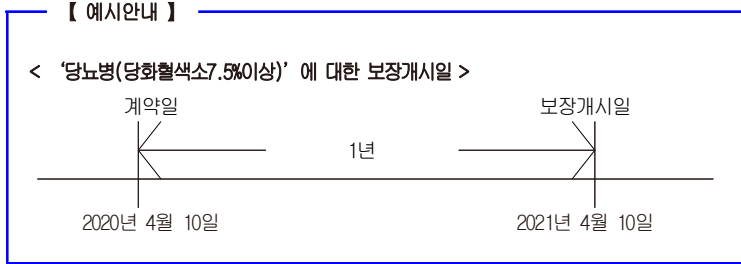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당화혈색소(HbA1c) 수치를 포함한 검사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당뇨병(당화혈색소7.5%이상)’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4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당뇨병 (당화혈색소6.5%이상) 진단보험금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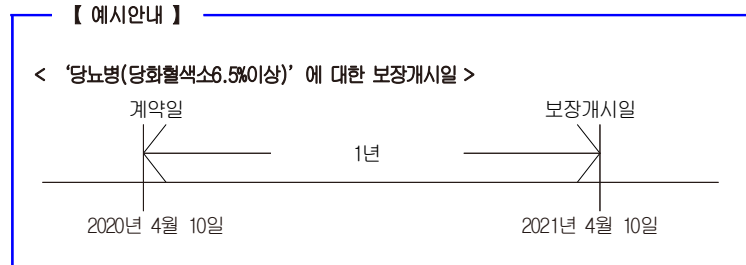
**제2조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이라 함은 당화혈색소(HbA1c) 6.5% 이상을 만족하는 ‘당뇨병’으로 의사에 의해 진단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제1항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3] ‘당뇨병

-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당화혈색소(HbA1c)는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표준화된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라 함은 ‘국제당화혈색소 측정 표준화 프로그램(National Glycohemoglobin Standardization Program: NGSP)’에 의해 인증되고 ‘당뇨병 조절과 합병증에 대한 연구(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 방법으로 측정된 당화혈색소(HbA1c)를 말합니다.
  -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은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당화혈색소(HbA1c) 수치를 포함한 검사기록지 또는 진료기록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초로 발생한 '당뇨병(당화혈색소6.5%이상)'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05 당뇨인술린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당뇨인술린치료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당뇨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목적으로 '당뇨병인술린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당뇨병인슐린 치료보험금	'당뇨병' 으로 '당뇨병인슐린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당뇨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당뇨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3] '당뇨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② '당뇨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유의사항 】**

- < '당뇨병' 의 의학적 진단기준 >  
 다음의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당뇨병' 으로 진단합니다.  
 · 당뇨병의 전형적 증상(다음, 다뇨, 설명되지 않는 체중감소 등) 및 식사와 무관하게 측정된 혈장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 8시간 공복 혈장 혈당이 126mg/dL 이상인 경우  
 · 75g 경구당부하검사서 2시간 혈장 혈당이 200mg/dL 이상인 경우  
 · 당화혈색소 수치가 6.5% 이상인 경우

**제3조 (당뇨병인슐린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당뇨병인슐린치료' 라 함은 '당뇨병' 의 치료를 목적으로 인슐린을 투여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혈당강화제치료(경구용 또는 주사용 제제 등), 정맥주사, 비인슐린제제(GLP-1 수용체 유사체 등)치료, 외상 또는 급성질환, 수술 등과 같은 이유로 일시적인 인슐린 치료를 받는 경우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② 인슐린 치료의 필요성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사(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에 의하여 명확하게 증명되고, 이를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당뇨병인슐린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6 고혈압(원발성)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고혈압(원발성)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고혈압(원발성)진단 보험금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 제2조 (고혈압(원발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50] ‘고혈압(원발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고혈압(원발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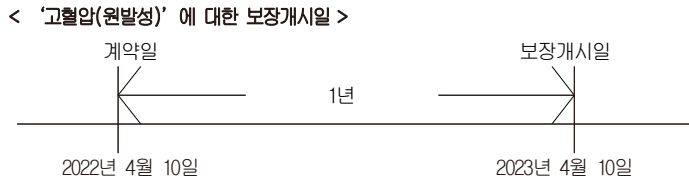
#### 【 유의사항 】

< ‘고혈압(원발성)’의 의학적 진단기준 >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면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합니다.  
 ·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 이상인 경우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예시안내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고혈압(원발성)’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7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에 ‘고혈압(원발성)’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 보험금	‘고혈압(원발성)’으로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제2조 (고혈압(원발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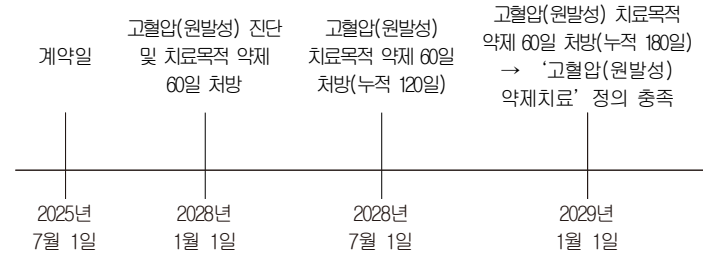
- ① 이 특약에서 ‘고혈압(원발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50] ‘고혈압(원발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② ‘고혈압(원발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고혈압(원발성)’의 치료를 목적으로 약제(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 214에 해당하는 혈압강하제)를 누적하여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고혈압(원발성)’이 동반되지 않고 기타질환의 증상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혈압강하제가 투여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

**<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 예시 >**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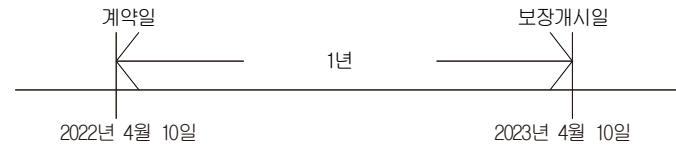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지정한 ‘의약품등분류번호’ 214 해당 여부 확인방법 안내 >**  
 · 약학정보원(<https://health.kr>)의 의약품검색에서 약제정보 검색 후 해당 제품의 식약처 분류 혈압강하제(214) 해당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8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보험금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1]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유의사항 】**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의 의학적 진단기준 >  
 다음의 기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해당하면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진단합니다.

- 총 콜레스테롤이 240mg/dL 이상인 경우
- LDL 콜레스테롤이 160mg/dL 이상인 경우
- HDL 콜레스테롤이 40mg/dL 미만인 경우
- 중성지방이 200mg/dL 이상인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09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진단 확정되고, 진단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치료를 목적으로 18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 보험금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180일 이상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51]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②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제3조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라 함은 의사가 피보험자의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구용 약제를 누적하여 180일 이상의 기간에 대해 처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는 의사에 의하여 명확히 증명되고, 이를 증명할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의료계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사의 처방 등)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이 동반되지 않고 기타질환의 증상관리나 합병증 예방을 목적으로 약제가 투여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구용 약제’라 함은 주성분이 아래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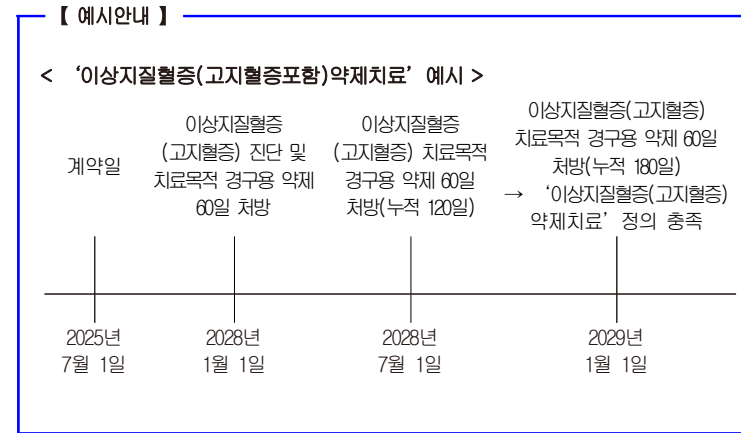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구분	주성분
HMG-CoA 환원효소억제제(스타틴제)	Atorvastatin
	Fluvastatin
	Lovastatin
	Pravastatin
	Simvastatin
	Rosuvastatin
	Pitavastatin
에제티미브	Ezetimibe
담즙산 제거제	Cholestyramine
Fibrate 계열 약제	Bezafibrate
	Fenofibrate
	Gemfibrozil
Niacin 계열 약제	Acipimox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0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맞춤고지Ⅱ] /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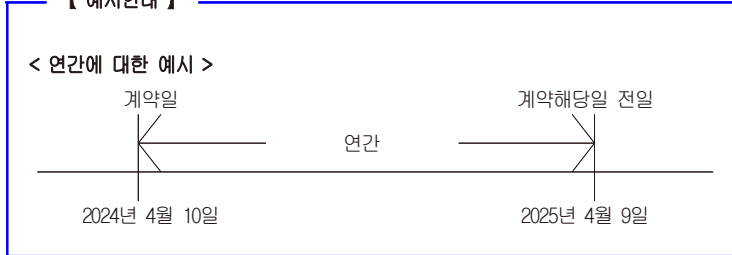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으로 진단 확정되고,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수술보험금 (연간1회한)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2]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1 특정천공진단 보장 특별약관 / 특정천공진단[맞춤고지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천공'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아래와 같이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천공 진단보험금	'특정천공'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2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  
약관 /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연간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진료행위' 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90일 이내	계약일부 90일 초과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보험금(연간1회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를 받은 경우 (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진료행위' 당 연간 1회)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진료행위' 라 함은 제2조(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등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의 '위폴립절제술' , '종양절제술' , '점막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 '점막하박리절제술(위)' 및 '점막하박리절제술(식도)' 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특정천공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천공'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3] '특정천공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천공'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천공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천공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천공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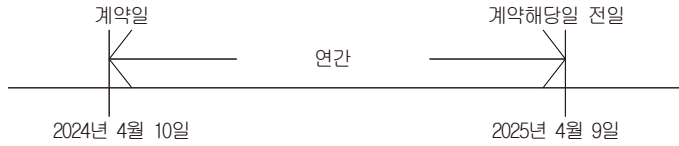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정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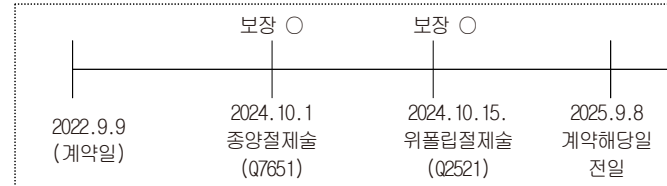
【 예시안내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 예시1 >

: 연간 다른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진료행위' 를 받은 경우

- 2022.09.09. : 계약일
- 2024.10.01. : 종양절제술(Q7651) 시행
- 2024.10.15. : 위폴립절제술(Q2521)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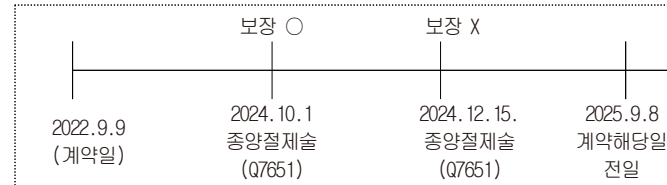


⇒ 보험가입금액 **2회** 지급(다른 진료행위 이므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보험금을 각각의 진료행위에 대하여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함)

< 예시2 >

: 연간 같은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진료행위' 를 받은 경우

- 2022.09.09. : 계약일
- 2024.10.01. : 종양절제술(Q7651) 시행
- 2024.12.15. : 종양절제술(Q7651) 시행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같은 진료행위 이므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보험금을 연간 1회 한도로 지급함)

제2조 (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

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별표159]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	수가코드
위폴립절제술	위폴립절제술	Q2521
종양절제술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
점막 및 점막하종양 절제술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
점막하박리절제술(위)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위	Q7653
점막하박리절제술(식도)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식도	Q7654

- ② 제1항의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외에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필수 기재), 내시경 시술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13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보장 특별약관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 및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II] 보장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2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개당,최초1회한) 보장 (※맞춤고지II 포함)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연간1회한) 보장 (※맞춤고지II 포함)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113-1.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개당,최초1회한) 보장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개당,최초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절제된 용종의 개수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90일 이내	계약일부 90일 초과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대장용종제거 수술보험금(급여) (용종개수당, 최초1회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의 1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예시안내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 예시1 > 용종 3개 제거, 급여 3회 적용**

「결장경하 중양 수술-폴립 절제술(Q7701)」: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중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Q7702)」: 급여 2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3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예시2 > 용종 7개 제거, 급여 6.5회 적용**

「결장경하 중양 수술-폴립 절제술(Q7701)」: 급여 0.5회\* 적용  
 「결장경하 중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Q7702)」: 급여 4회 적용  
 「결장경하 중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중양절제술(Q7703)」: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중양 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QX706)」: 급여 1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7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부수술로 인정되어 명세서상 0.5회로

적이나 실제로는 1회 수술을 받았으므로 1회의 가입금액을 지급

**< 예시3 > 용종 10개 제거, 급여 6회 적용**

「결장경하 중양 수술-폴립 절제술(Q7701)」: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중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Q7702)」: 급여 5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6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Q7702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따라 최대 5개까지만 급여로 인정받으므로 5회의 가입금액을 지급

- ② 제1항의 절제된 용종의 개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은 시행횟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시행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에도 1개의 용종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별표160]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외에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내시경 시술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장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보험금(용종개수당)(급여,최초1회한)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3-2.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연간1회한) 보장 /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연간1회한)[맞춤고지II]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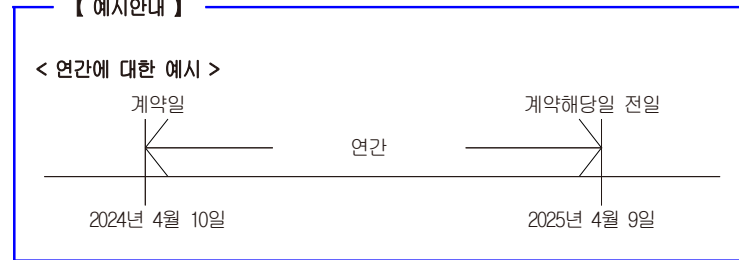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90일 이내	계약일부 90일 초과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대장용종제거수술보험금(급여,연간1회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별표160]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형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외에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내시경 시술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보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당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14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갱신형) 및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보장(2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갱신형)(개당,최초1회한) 보장 (\*맞춤고지 II 포함)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갱신형)(연간1회한) 보장 (\*맞춤고지 II 포함)

## 2-114-1.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갱신형)(개당,최초1회한) 보장 /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개당,최초1회한) 보장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절제된 용종의 개수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갱신계약
		최초계약			
		계약일부 90일 이내	계약일부 90일 초과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대장용종제거 수술보험금(급 여) (용종개수당, 최초1회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 여)’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의 1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예시안내 】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을 받은 경우】

< 예시1 > 용종 3개 제거, 급여 3회 적용

「결장경하 중앙 수술-폴립 절제술(Q7701)」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중앙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Q7702)」 : 급여 2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3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예시2 > 용종 7개 제거, 급여 6.5회 적용

「결장경하 중앙 수술-폴립 절제술(Q7701)」 : 급여 0.5회\* 적용  
 「결장경하 중앙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Q7702)」 : 급여 4회 적용  
 「결장경하 중앙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중양절제술(Q7703)」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중앙 수술-점막하 박리 절제술(QX706)」 : 급여 1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7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건강보험요양급여 적용기준에 따라 부수술로 인정되어 명세서상 0.5회로 적히나 실제로는 1회 수술을 받았으므로 1회의 가입금액을 지급

< 예시3 > 용종 10개 제거, 급여 6회 적용

「결장경하 중앙 수술-폴립 절제술(Q7701)」 : 급여 1회 적용  
 「결장경하 중앙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 1개당)(Q7702)」 : 급여 5회\* 적용  
 ⇒ 「보험가입금액×6개」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

\* Q7702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기준에 따라 최대 5개까지만 급여로 인정받으므로 5회의 가입금액을 지급

② 제1항의 절제된 용종의 개수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를 적용받은 시행횟수를 의미합니다. 다만, 진료비세부내역서상 시행횟수가 1회 미만인 경우에도 1개의 용종으로 인정합니다.

제2조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의 정의와 장소)

- 이 특약에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별표160]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외에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 필수 기재), 내시경 시술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장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보험금(용종개수당)(급여,최초1회한)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4-2.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갱신형)(연간1회한) 보장 /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연간1회한)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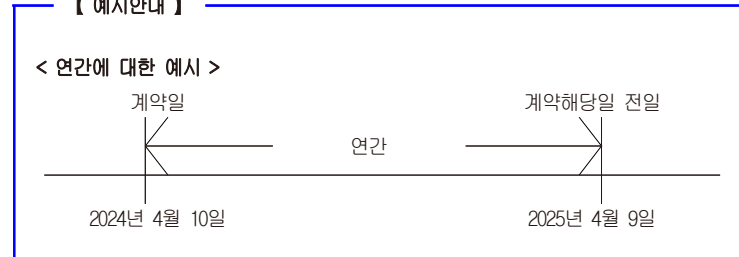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90일 이내	계약일부 90일 초과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대장용종제거수술보험금(급여,연간1회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가 피보험자의 질병으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관리 하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별표160]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외에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내시경 시술 기록지,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수술기록지, 검사기록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중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5 결핵진단보장 특별약관 / 결핵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결핵’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결핵진단보험금	‘결핵’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결핵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결핵’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4] ‘결핵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결핵’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임상적, 방사선학적 또는 조직학적 소견과 함께 결핵균의 임증을 위한 혈액 또는 조직에서 항산균도 말 양성, 결핵균 배양 양성, 특이 유전자 검출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약제감수성검사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결핵균/약제내성결핵균(스퍼결핵 포함) 검사 결과지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결핵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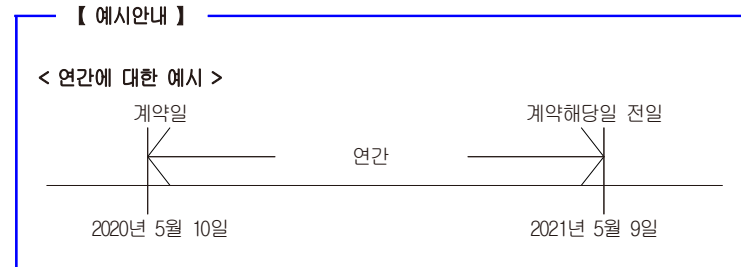
**2-116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진단보험금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1회한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3]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



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6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7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장(최초 1회한) 특별약관 /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장(최초 1회한)[맞춤고지 II]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바이러스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  
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특정바이러스질 환진단 보험금	‘특정바이러스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특정바이러스질  
환’ 일지라도 보험계약일 이전에 이미 해당 바이러스를 보유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가입 전에 피보험자가 ‘특정바이러스질환’ 관련 바이러스를 보유  
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2조 (특정바이러스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바이러스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  
표64] ‘특정바이러스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바이러스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  
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회사가 ‘특정바이러스질환’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혐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혐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18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진단(최초1회한),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림프절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및 ‘특정전이암진단(최초1회한)’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전이암 구분(림프절전이암 또는 특정전이암)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림프절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보험금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림프절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특정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보험금	‘특정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정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포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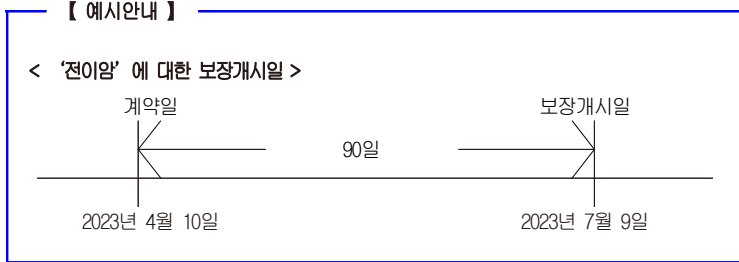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보험금 및 특정전이

암진단보험금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을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19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갱신형),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림프절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및 '특정전이암진단(최초1회한)'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전이암 구분(림프절전이암 또는 특정전이암)에 따라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림프절전이암 진단(최초1회한) 보험금	'림프절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림프절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특정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보험금	'특정전이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정전이암진단(최초1회한)'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전이암' 등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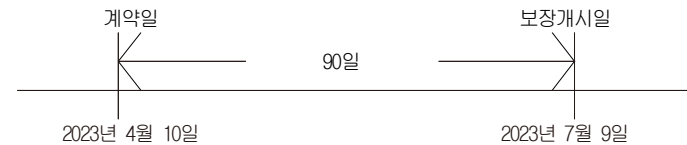
-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 및 제2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인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

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진단보험금 및 특정전이암진단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0. 암주요치료비 II (연간1회한,진단후 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 II (연간1회한,진단후 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 II (연간1회한,진단후 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 II (연간1회한,진단후 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 진단후10년) (갱신형), 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 및 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맞춤고지Ⅱ 포함)
-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보장 (\*갱신형, 맞춤고지Ⅱ 포함)

**2-120-1.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보장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보장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맞춤고지Ⅱ] 보장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Ⅱ]  
(갱신형)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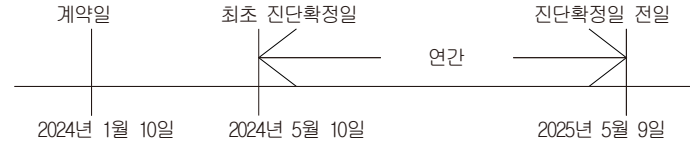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암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치료급여금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 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 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영양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 로 봅니다.

【관련법규】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 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나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용어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보장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제12조(보장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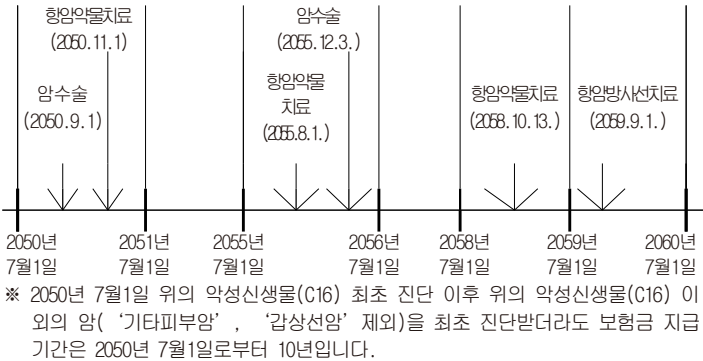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암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지급금액 예시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2-5차년도	6차년도	7-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 치료(C17) 1,000만 원 지급	항암방사선 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16)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	-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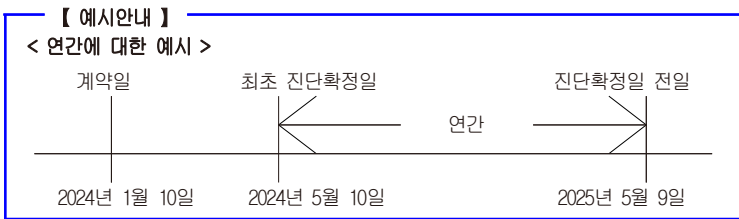
**2-120-2.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 보장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갱신형) 보장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맞춤고지 II] 보장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치료급여금[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암 주요치료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 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 (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 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 로 봅니다.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 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 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형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2050년 7월1일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C73) 이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

-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를 따릅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 (보장의 자동갱신)**

-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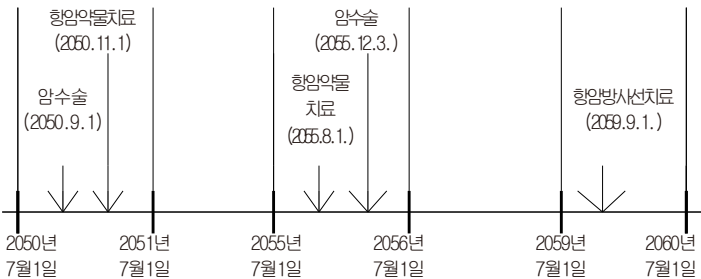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지급금액 예시 >**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30년만기
-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5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진단 후 7~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73) 200만원 지급	-	항암방사선 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73)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1. 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 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및 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암주요치료비 II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갱신형, 맞춤고지 II 포함)
- 암주요치료비 II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갱신형, 맞춤고지 II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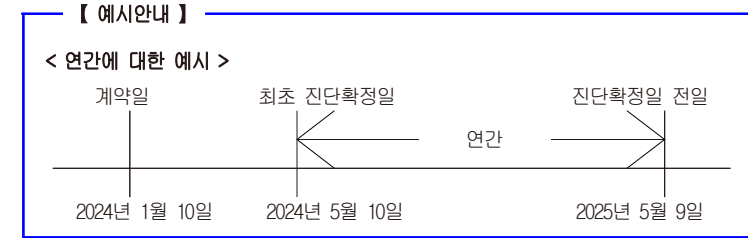
**2-121-1. 암주요치료비 II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 보장 암주요치료비 II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 보장 암주요치료비 II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 II] 보장 암주요치료비 II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 II] (갱신형)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암치료료(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치료료(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 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 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 로 봅니다.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 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  
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  
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여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8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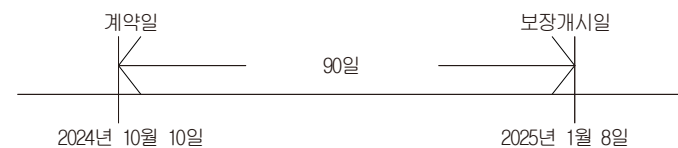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  
영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보장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제14조(보장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암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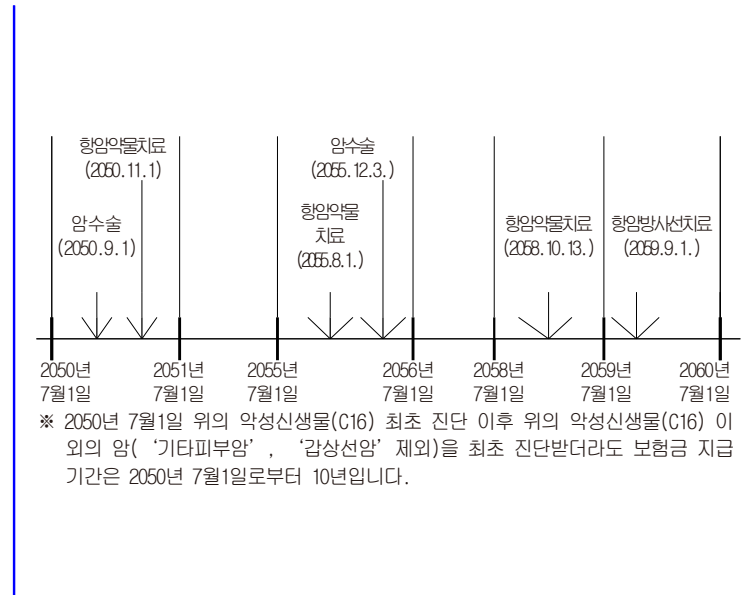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암치료급여금(‘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지급금액 예시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2-5차년도	6차년도	7-8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방사선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C16)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	-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 (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4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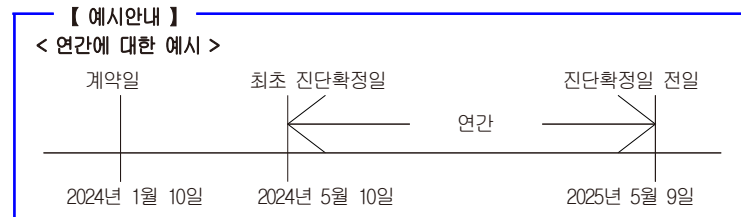
**2-121-2. 암주요치료비 II(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 보장  
 암주요치료비 II(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 보장  
 암주요치료비 II(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 II] 보장  
 암주요치료비 II(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 II]  
 (갱신형)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보장의 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제2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3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 주요치료’ 라 함은 암수술,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암 주요치료’ 로 봅니다.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3호**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암수술 등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외)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8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암 주요치료(암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시안내 】**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치료급여금 지급금액 예시 >**

- 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30년만기
-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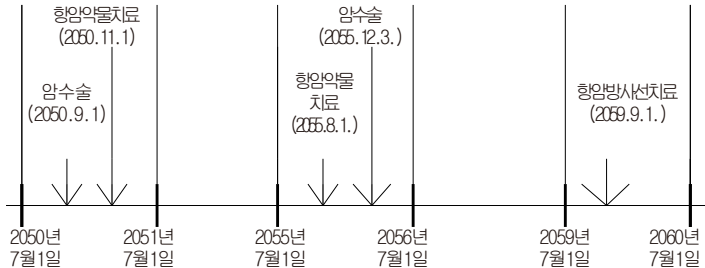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갑상선암(C73)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 기타피부암(C44)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진단 후 2~5차년도	진단 후 6차년도	진단 후 7~9차년도	진단 후 10차년도
암수술(C73) 2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73) 200만원 지급	-	항암방사선 치료(C44) 2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73)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암수술(C44) 지급 X (연간1회한도 초과)	-	-



※ 2050년 7월1일 갑상선암(C73) 최초 진단 이후 갑상선암(C73) 이외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2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31조(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이 보장의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제13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2.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진단후10년) [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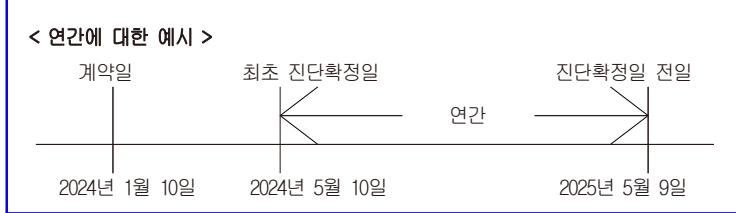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라 함은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를 말합니다.
- ②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이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 1항의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은 암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 1항의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은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⑦ 제 1항의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은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⑧ 제1항의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함니  
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  
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  
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  
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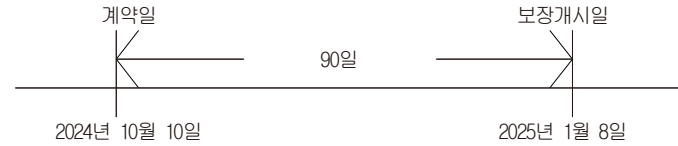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  
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  
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  
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  
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  
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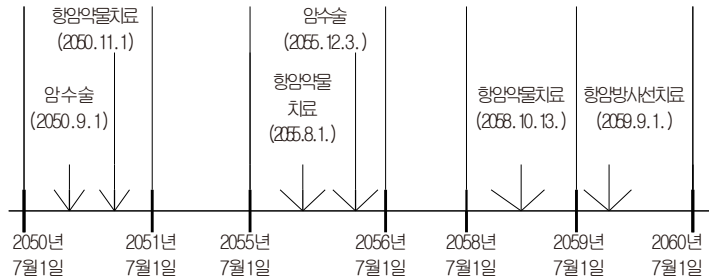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 지급금액 예시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2-5 차년도	6차년도	7-8 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 치료(C17) 1,000만 원 지급	항암방사선 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16)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	-



\* 2050년 7월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 진단 이후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3.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연간1회한,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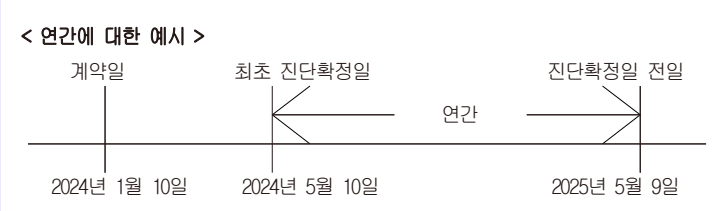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

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은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단,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도, 최대 10회 지급)

- ② 제1항에서 보험금 지급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라 함은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를 말합니다.
- ②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이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 1항의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암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 1항의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⑦ 제 1항의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⑧ 제1항의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헴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헴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8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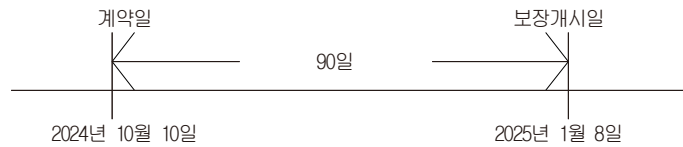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함

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을 보장합니다.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하이클래스 암 주요치료'를 각각 연 1회 이상 이용한 경우에도 1회의 이용으로 간주하여 하나의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만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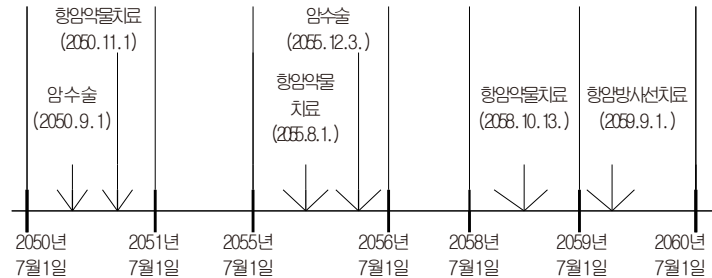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하이클래스 암치료급여금 지급금액 예시 >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30년만기
- 계약일 : 2024년 7월 1일
-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진단 확정일 : 2050.7월 1일
- 소장의 악성신생물(C17) 최초진단 확정일 : 2055.8월 1일

- 암 최초진단 후 암주요치료 시, 지급금액 예시

진단 후					
1차년도	2-5 차년도	6차년도	7-8 차년도	9차년도	10차년도
암수술(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치료 (C16) 1,000만원 지급	-	항암약물 치료(C17) 1,000만 원 지급	항암방사선 치료(C17) 1,000만원 지급
항암약물치료 (C16)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암수술(C17) 지급 X (연간회한도 초과)	-	-	-



※ 2050년 7월1일 위의 악성신생물(C16) 최초 진단 이후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외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을 최초 진단받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은 2050년 7월1일로부터 10년입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 특약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 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제 1항에서 정한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에 대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4.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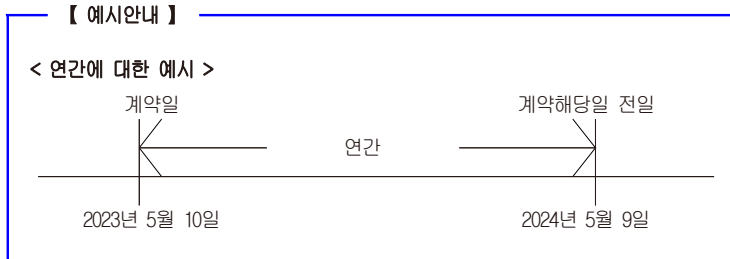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전이암 항암약물치료,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치료 급여금 (갑상선 림프절전이암 제외)	1. '전이암' 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
	2. '전이암' 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3. '전이암' 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 ②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일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전이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림프절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 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특정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

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칭이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전이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5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⑦ 제5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전이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주요치료’라 함은 전이암수술,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전이암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전이암 주요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전이암 주요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이암 주요치료’로 봅니다.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전이암 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수술’이라 함은 ‘전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전이암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전이암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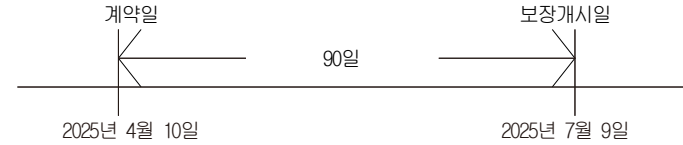
이 특약에서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2조(전이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의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이 제2조(전이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 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5.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전이암 항암약물치료,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치료 급여금	1. ‘전이암’ 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
	2. ‘전이암’ 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3. ‘전이암’ 으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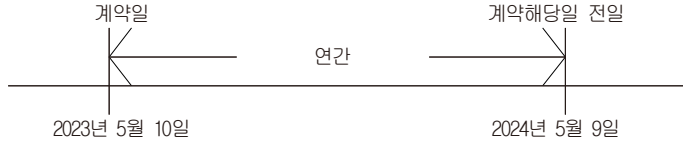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 '전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림프절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 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특정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 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전이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주요치료' 라 함은 전이암수술,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전이암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전이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전이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이암 주요치료' 로 봅니다.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3. '말기환자' 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전이암 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수술' 이라 함은 '전이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전이암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전이암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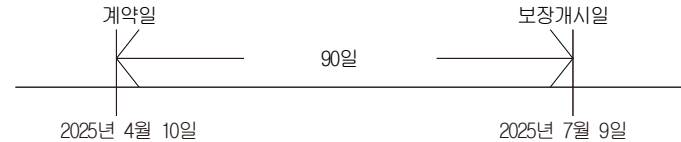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6.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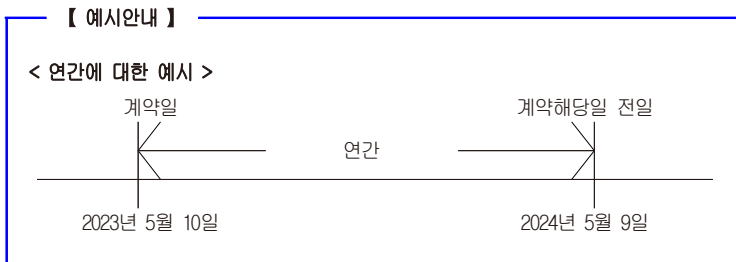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전이암 항암약물치료,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치료 급여금 (갑상선 림프절전이암 제외)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
1. '전이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2. '전이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약물치료)'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3. '전이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를 받은 경우 (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	

②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전이암' 및 '갑상선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이 특약에서 '전이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림프절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 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특정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 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전이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5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5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⑦ 제5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제3조 (전이암 주요치료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전이암 주요치료' 라 함은 전이암수술,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전이암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전이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식이요법, 영양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면역력 강화 치료
  -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전이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이암 주요치료' 로 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 3. ‘말기환자’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전이암 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수술’이라 함은 ‘전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전이암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전이암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혈자의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혈자의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8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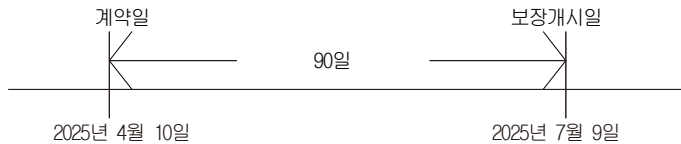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2조(전이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의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이 제2조(전이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갑상선 림프절 전이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7.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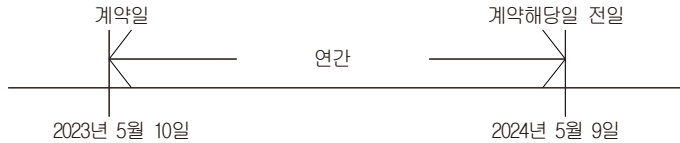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 전이암 항암약물치료,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치료 급여금	1. '전이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수술)'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각각 연간1회)
	2. '전이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약물치료)'를 받은 경우	
	3. '전이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전이암 주요치료(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 ②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 '전이암'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림프절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 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특정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 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전이암 주요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주요치료' 라 함은 전이암수술,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 전이암 항암약물치료를 말합니다.
- ② '전이암 주요치료'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전이암 주요치료'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이암 주요치료' 로 봅니다.

【 관련법규 】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3호 >

3. '말기환자' 란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제4조 (전이암 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수술' 이라 함은 '전이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전이암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전이암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전이암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전이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외) 제1항에 따라 전문외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구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8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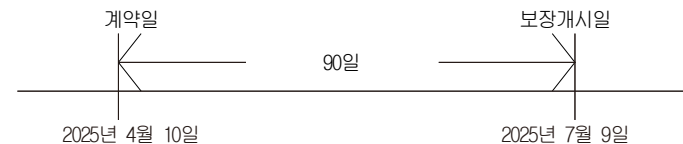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양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11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할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8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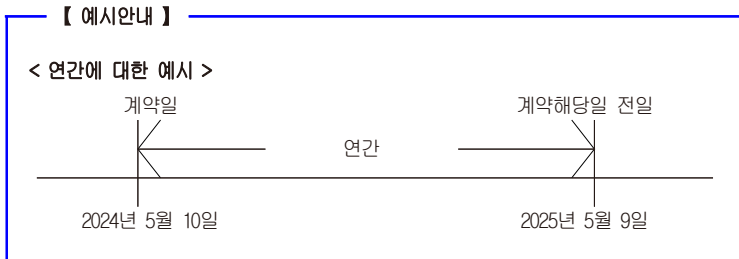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전이암’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주사제 외)	‘전이암’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

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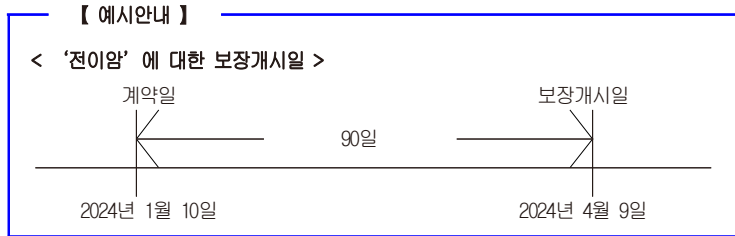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29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의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전이암'으로 항암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 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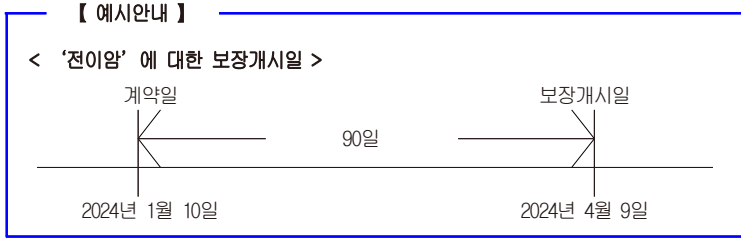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제3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전이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 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0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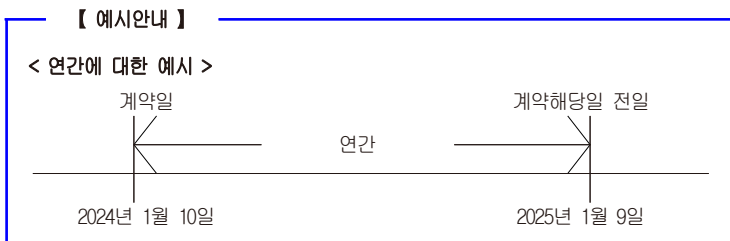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주사제)	'전이암'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전이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전이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전이암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보험금(주사제 외)	'전이암' 으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전이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전이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림프절전이암' 및 제3항에서 정한 '특정전이암' 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약관에서 '림프절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포종의 악성 신생물)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약관에서 '특정전이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있어서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 C78(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C79(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암)) 및 C80(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암))을 말합니다.
- ④ '전이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전이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5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별약관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4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 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4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및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주사제)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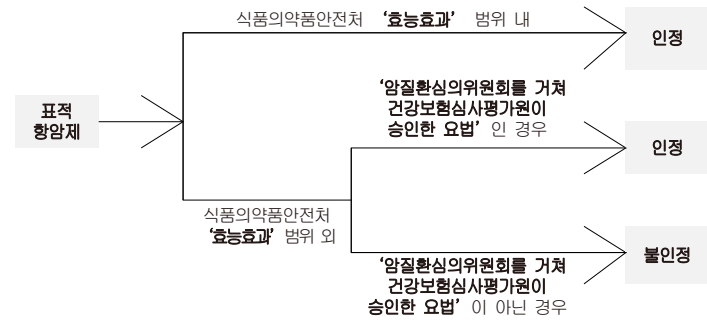
<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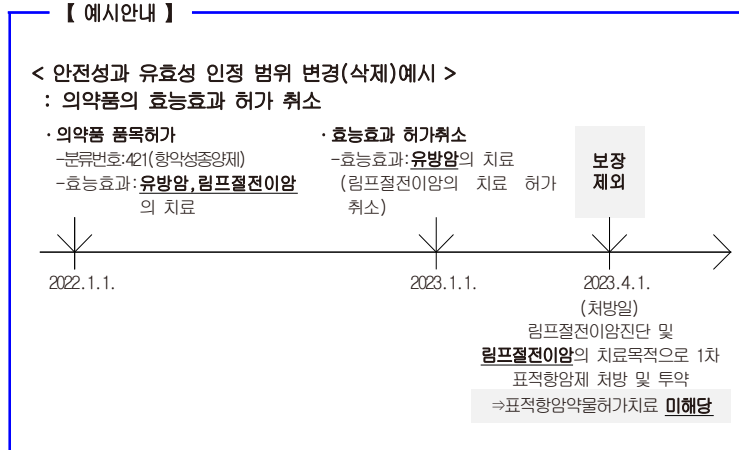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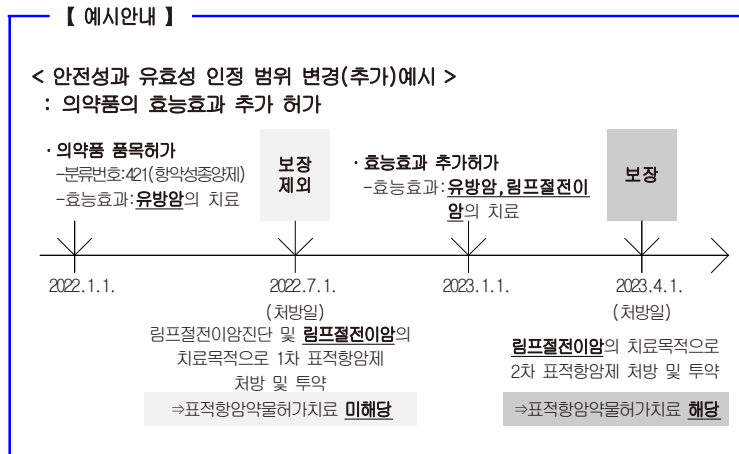
【 용어해설 】

< 표적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5조(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진단명
      - 투약한 약제의 제명명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

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전이암'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 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갑상선항진증 치료보험금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갑상선기능항진증 및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기능항진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5] '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갑상선 영상검사(초음파), 갑상선 기능검사(혈액검사) 등을 기초로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③ '갑상선기능항진증치료'라 함은 갑상선기능항진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치료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1. 갑상선절제술을 받은 경우  
: 이 특별약관에 있어서 '갑상선절제술'이라 함은 갑상선엽 전체 혹은 일부를 절제하는 '갑상선엽 전절제술(Total Thyroidectomy)' 및 '갑상선엽 아전절제술(Subtotal Thyroidectomy)'을 말합니다.
  2. 방사성요오드 치료를 받은 경우
  3. 60일 이상 항갑상선제를 처방받은 경우

**2-131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 1회한)[맞춤고지서]보장 특별약관**

**【 용어해설 】**

- **방사성요오드치료**  
: 주성분이 요오드화 나트륨에 해당하는 치료
- **항갑상선제**  
: 주성분이 methimazole, propylthiouracil, carbimazole에 해당하는 약제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의사처방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갑상선항진증치료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2 혈전용해치료비Ⅱ(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혈전용해치료비Ⅱ(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졸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	‘뇌졸중’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비	‘특정심장질환’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뇌졸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 ② 이 특약에서 ‘특정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특정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 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오래된 심근경색증	125.2

- ③ ‘뇌졸중’ 및 ‘특정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졸중’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특정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 또는 ‘특정심장질환’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또는 ‘특정심장질환’ 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④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⑥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⑦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제3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 라 함은 의사가 ‘뇌졸중’ 또는 ‘특정심장질환’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 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 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특정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33 혈전용해치료비Ⅲ(최초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보장 특별약관 / 혈전용해치료비Ⅲ(최초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 [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순환계질환 I’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순환계질환 I 혈전용해치료비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특정순환계질환 I 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순환계질환 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0] ‘특정순환계질환 I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② ‘특정순환계질환 I’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정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④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

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제3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 라 함은 의사가 ‘특정순환계질환 I’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 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 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I 혈전용해치료비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4 혈전용해치료비II(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혈전용해치료비II(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졸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	‘뇌졸중’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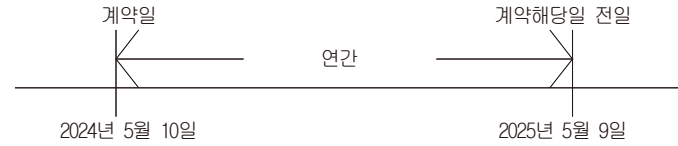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심장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비	‘특정심장질환’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뇌졸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뇌졸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② 이 특약에서 ‘특정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특정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 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오래된 심근경색증	125.2

③ ‘뇌졸중’ 및 ‘특정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특정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 또는 ‘특정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또는 ‘특정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④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⑤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⑥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⑦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졸중’ 또는 ‘특정심장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5 혈전용해치료비Ⅲ(연간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보장 특별약관 / 혈전용해치료비Ⅲ(연간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 I’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순환계질환 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순환계질환 I 혈전용해치료비	‘특정순환계질환 I’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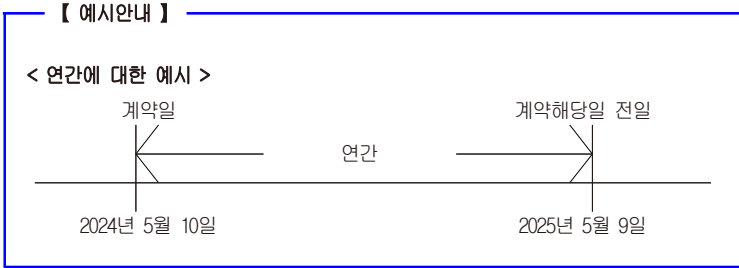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2조 (특정순환계질환 I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순환계질환 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0] ‘특정순환계질환 I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② ‘특정순환계질환 I’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특정순환계질환 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특정순환계질환 I’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④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특정순환계질환 I’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6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급여)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심뇌혈관질환혈전주사치료비(급여)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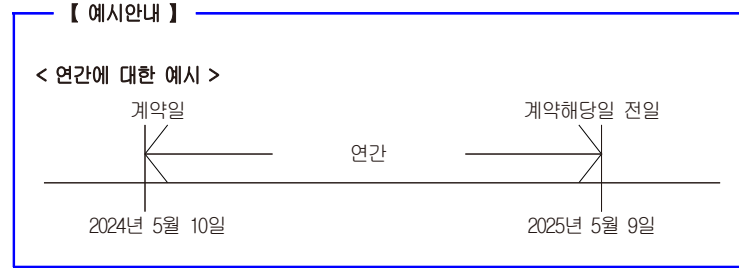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주사치료(급여)’ 또는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항혈전주사치료비(급여)	1. ‘심뇌혈관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2. ‘심뇌혈관질환’으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주사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② 심뇌혈관질환항혈전경구약물치료비(급여)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진단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9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단독 처방)’ 또는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이외 처방)’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항혈전경구약물치료비(급여)	1. ‘심뇌혈관질환’으로 90일 이상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2. ‘심뇌혈관질환’으로 90일 이상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가. 아스피린 단독 처방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나. 아스피린 이외 처방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심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진단시점’이라 함은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 또는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심뇌혈관질환’의 연내 최초 진단시점을 말하며, ‘진단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 다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목적으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 또는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를 받은 경우, 해당 처방일을 합산하여 90일 이상 약물치료 여부를 판단합니다.
-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번호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조 (심뇌혈관질환항혈전주사치료(급여) 등의 정의)**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항혈전주사치료(급여)' 라 함은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주사치료(급여)' 또는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주사치료(급여)' 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주사치료(급여)' 라 함은 의사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주사제' 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심뇌혈관질환항응고주사제' 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 에 해당하며 주사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주사치료(급여)' 라 함은 의사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주사제' 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⑤ 제4항의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주사제' 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에 있어 [별표139-1] '항혈소판제 분류표' 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목록에 해당하며 주사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대상 약제 제외 또는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약제 제외 또는 분류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주사제' 또는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주사제' 에 준하여 '심뇌혈관질환항응고주사제(급여)' 및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주사제(급여)' 를 결정합니다.
- ⑦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항혈전경구약물' 은 제1항의 '심뇌혈관질환항혈전주사치료(급여)' 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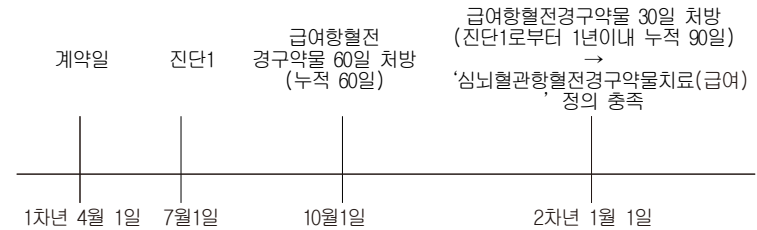
**제4조 (심뇌혈관질환항혈전경구약물치료(급여)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항혈전경구약물치료(급여)' 라 함은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단독 처방)' 또는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이외 처방)' 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치료(급여)' 라 함은 의사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 을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 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에서 정한 분류번호가 '333(혈액응고저지제)' 에 해당하며 내복약(경구)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단독 처방)' 라 함은 의사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아스피린 단독 처방)' 을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4항에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아스피린 단독 처방)' 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에 있어 [별표139-2]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분류표' 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목록에 해당하며 내복약(경구)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치료(급여)(아스피린 이외 처방)' 라 함은 의사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아스피린 이외 처방)' 을 처방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⑦ 제6항의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아스피린 이외 처방)' 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에 있어 [별표139-3] '항혈소판제(아스피린이외) 분류표' 에 해당하는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목록에 해당하며 내복약(경구)에 해당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 ⑧ 제1항 내지 제7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대상 약제 제외 또는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약제 제외 또는 분류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아스피린 단독 처방)' 또는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아스피린 이외 처방)' 에 준하여 각각의 약물을 결정합니다.
- ⑨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혈전용해제', '항혈전주사제' 는 '심뇌혈관질환항응고제경구약물(급여)',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급여)(아스피린 단독 처방)' 및 '심뇌혈관질환항혈소판제경구약물(급여)(아스피린 이외 처방)' 에서 제외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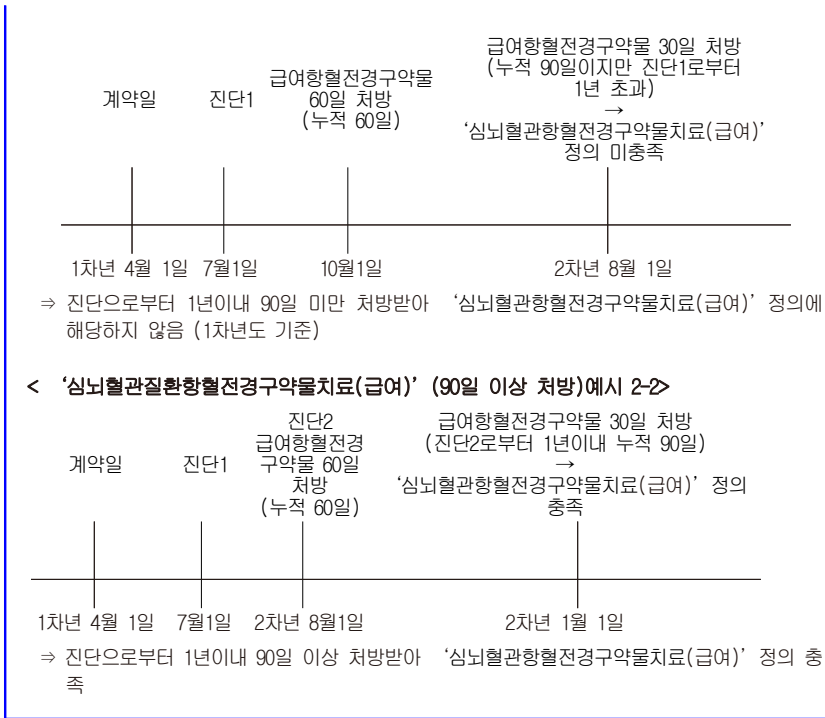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심뇌혈관질환항혈전경구약물치료(급여)' (90일 이상 처방)예시 1>**



⇒ 진단으로부터 1년 이내 90일 이상 처방받아 '심뇌혈관질환항혈전경구약물치료(급여)' 정의 충족

**< '심뇌혈관질환항혈전경구약물치료(급여)' (90일 이상 처방)예시 2-1>**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7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환)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환)[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환)[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심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비	'심뇌혈관질환'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 (요양병원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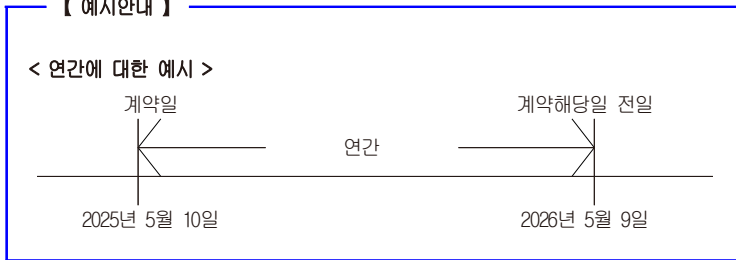
기타  
특별  
약관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의 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 (종합병원(이상) (요양병원제외)) 입원급여금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심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 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5조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이라 함은 ‘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의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부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 ②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6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5조(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의 정의에서 정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은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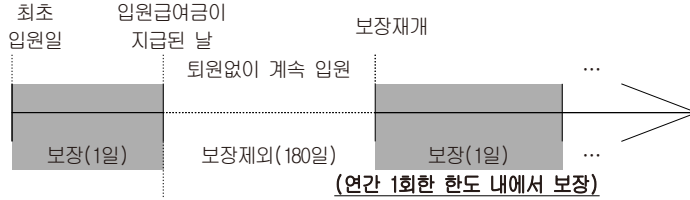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예시1>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예시2>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5. 3. 1	보장개시일	-	
2025. 3. 5. - 3. 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2025. 10. 1. - 10. 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미충족)
2026. 3. 15. - 3. 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충족)

- ⑤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해당하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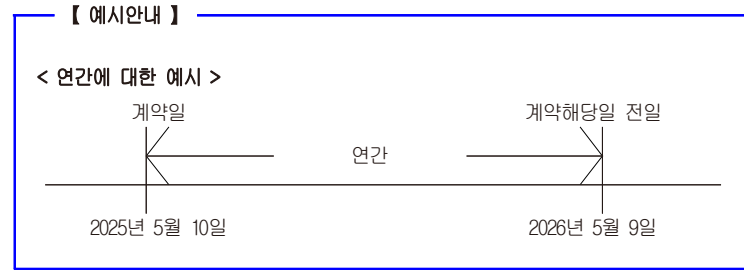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8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  
[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  
[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심뇌혈관질환’ 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비	‘심뇌혈관질환’ 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편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 라 함은 의사가 ‘심뇌혈관질환’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 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 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 제5조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 의 ‘중환자실’ 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위)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 ②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제6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함)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5조(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에서 정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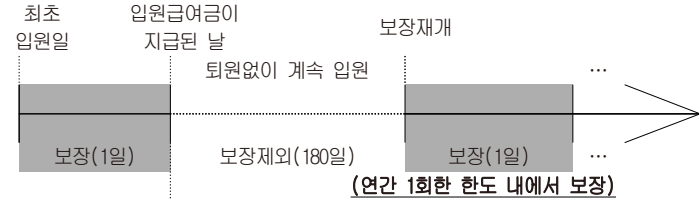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은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심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예시안내】

<예시1>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예시2>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5.3.1	보장개시일	-	
2025.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2025.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총족) 연간1회한 한도 (미총족)
2026.3.15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총족) 연간1회한 한도 (총족)

-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질환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39 질병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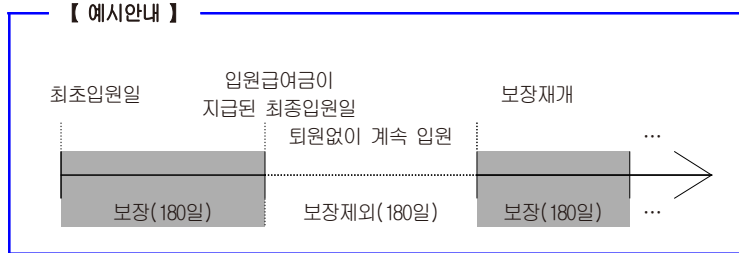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료질환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중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0 질병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3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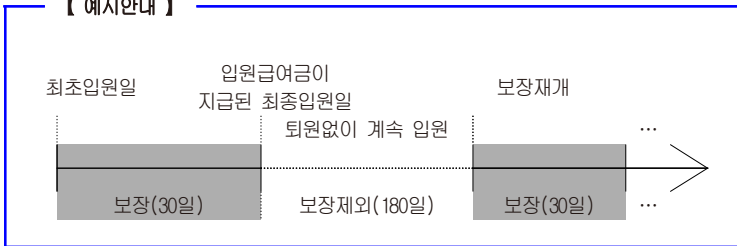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질환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1 질병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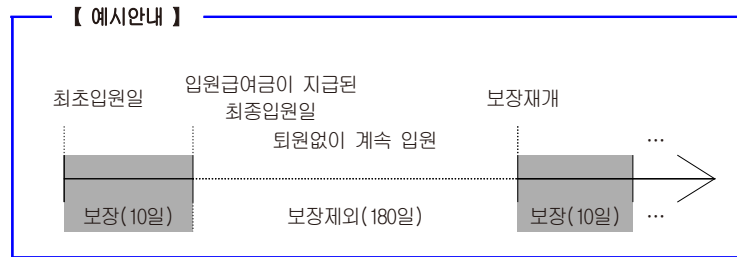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

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2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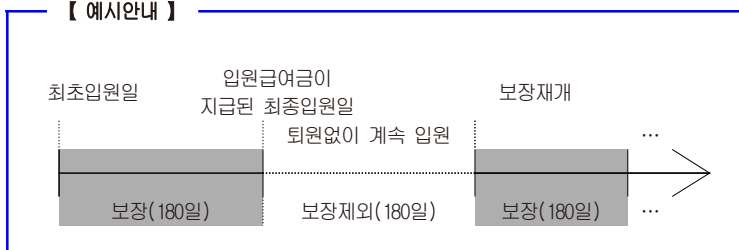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

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료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3 질병입원일당(1-1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0일,종합병원)[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

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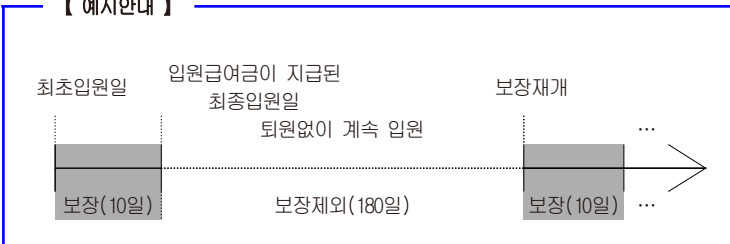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

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인 것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인 것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4 질병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부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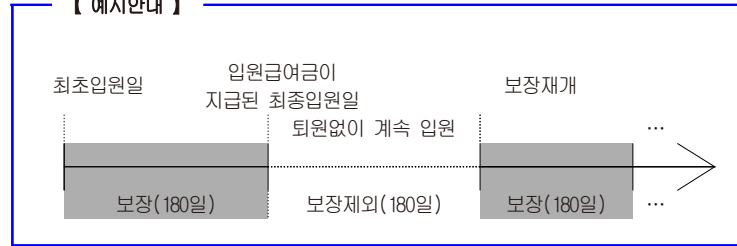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5 질병입원일당(1-1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10일,중환자실)[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일 한도)

**제2조 (중환자실의 정의)**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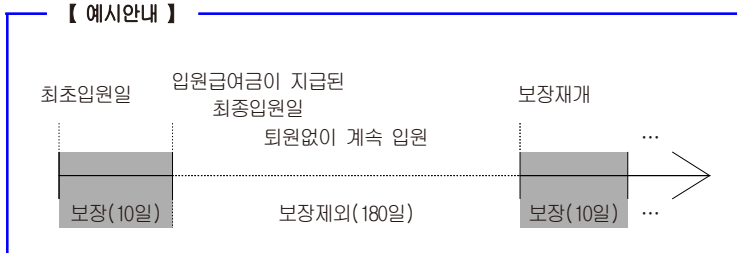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6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1인실)[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 (3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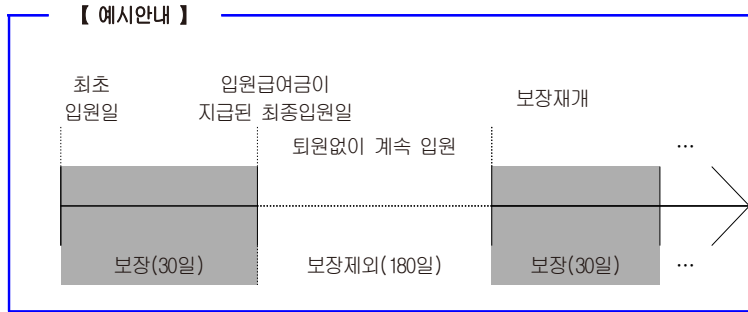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로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7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1인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30일 한도)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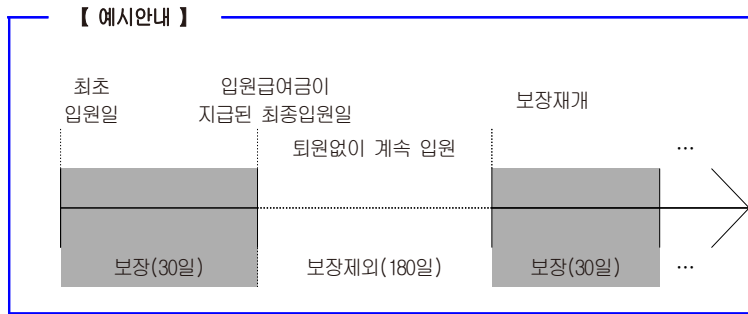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상급병실(1인실)로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상급병실(1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특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1인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8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종합병원,2~3인실)[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

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 (3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  
 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  
 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  
 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  
 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  
 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  
 는 종합병원 2·3인실 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  
 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  
 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  
 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  
 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  
 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  
 라도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  
 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종합병원 2·3인실 질  
 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  
 우에는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상해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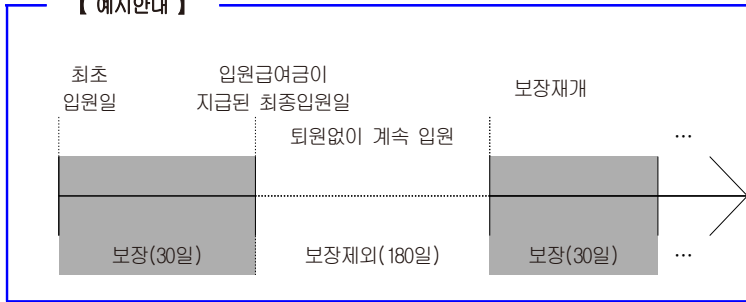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의 2~3인실로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49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일당(1-30일,상급종합병원,2~3인실)[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함

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의 2-3인 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 입금액 (30일 한도)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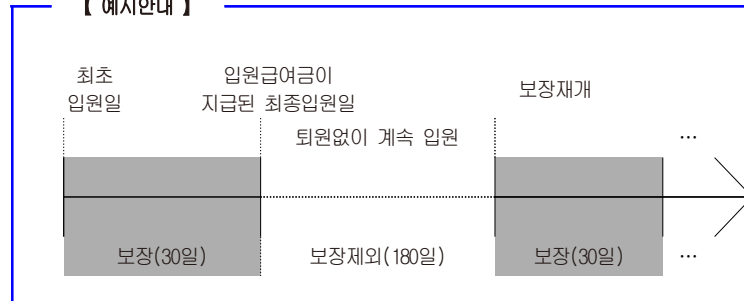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의 2-3인실로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외의 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이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외의 병실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의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2-3인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⑪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과실환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정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0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2. 유사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자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경계성종양’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가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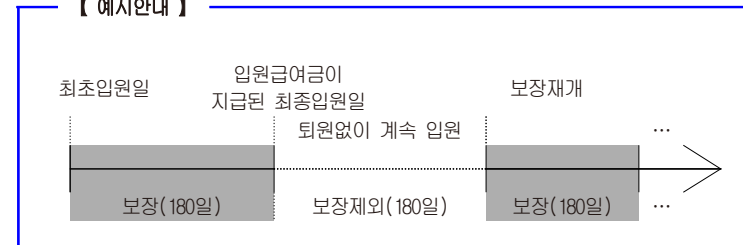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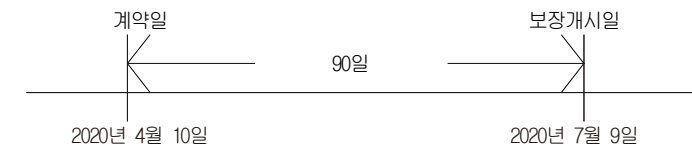
#### 【예시안내】



- ②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1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요양병원제외)[맞춤고지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2. 유사암 직접치료 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자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경계성종양'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제3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 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을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5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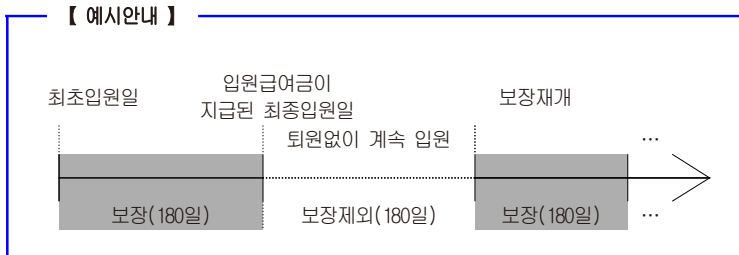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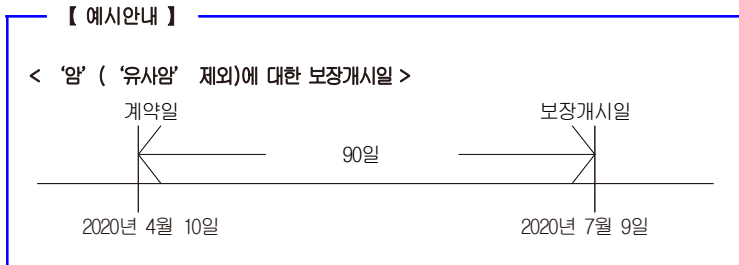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2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보장 특별약관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요양병원 암 입원급여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장가입금액 (90일 한도)
2. 요양병원 유사암 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갑상선암'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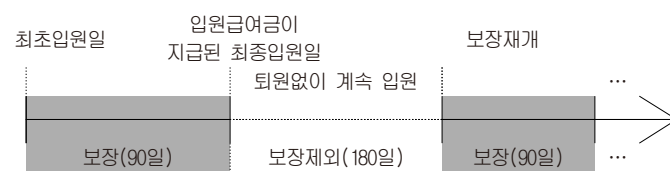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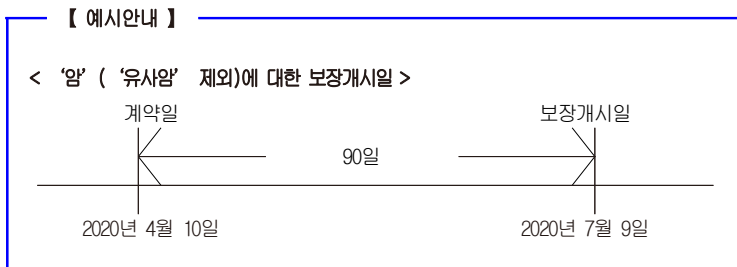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가입일부터 지급된 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함

니다.

- ④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3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각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9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요양병원 암 입원급여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90일 한도)
2. 요양병원 유사암 입원급여금	‘기타피부암’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갑상선암’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으로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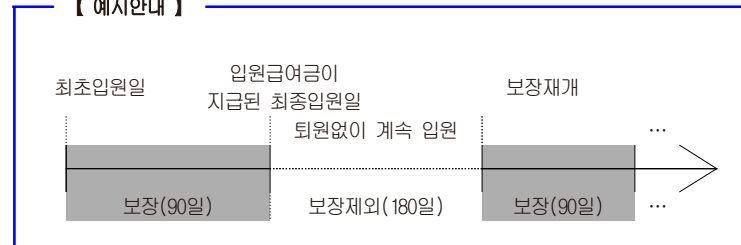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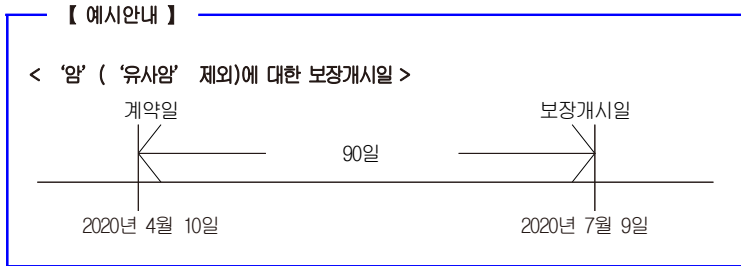
【예시안내】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경우, 이 특약의 최초계약 가입일부터 지급된 입원급여금의 누적 지급일수(이하 “누적 지급일수”라 합니다)가 365일을 초과 시에는, 365일을 초과한 날 이후부터 이 특약의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만료일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원급여금은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한 질병이 완치된 이후에 해당 질병을 다시 진단받는 경우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4 심뇌혈관질환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로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심뇌혈관질환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 입원급여금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80일 한도)

**제2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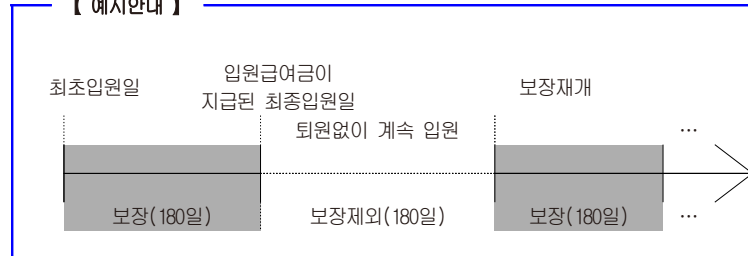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심뇌혈관질환’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 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심뇌혈관질환’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심뇌혈관질환’ 에 대한 입원이라도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심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혐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5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수술입원’이라 합니다)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3. 제1항 및 제2항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2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

- 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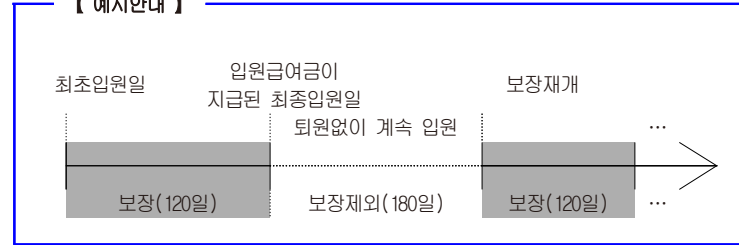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 입원’ 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 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또다른 ‘수술입원’ 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수술입원’ 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수술’ 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로부터 ‘최초 입원일’
  2.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 이내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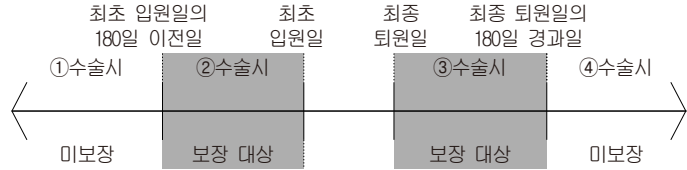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 ① '최초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로부터 '최초 입원일' 에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
- ③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
- ④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후 수술시 미보장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 ~ 0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결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Q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력개선 목적의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6 질병수술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수술입원’이라 합니다)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1.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2.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
- 3. 제1항 및 제2항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입원당 1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일 한도)

**제2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항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마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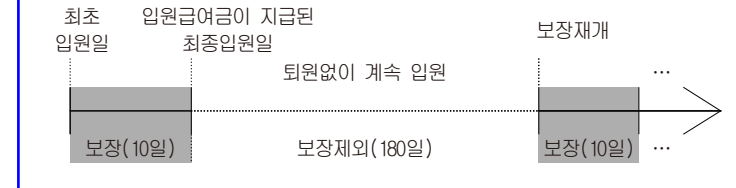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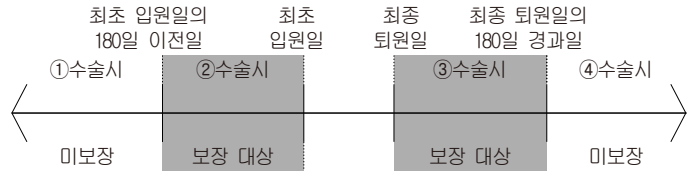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수술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수술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로부터 ‘최초 입원일’
  2.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또다른 ‘수술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수술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 보상 기준 >



- ① '최초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전 수술시 미보장
- ②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로부터 '최초 입원일' 에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
- ③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수술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질병수술입원급여금을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내지 제5항에 따라 보장
- ④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후 수술시 미보장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 ~ 0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5. 비만(E66)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결질환(K60 ~ 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이아가 태아 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Q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교정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7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종합병원수술입원’이라 합니다)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종합병원 수술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20일 한도)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



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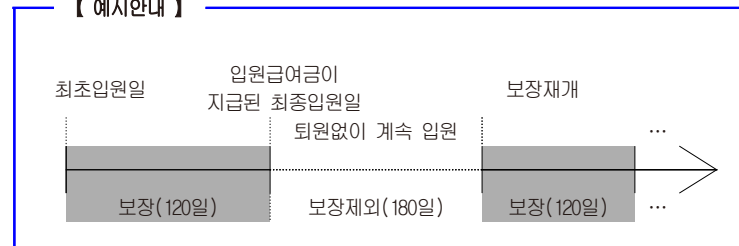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

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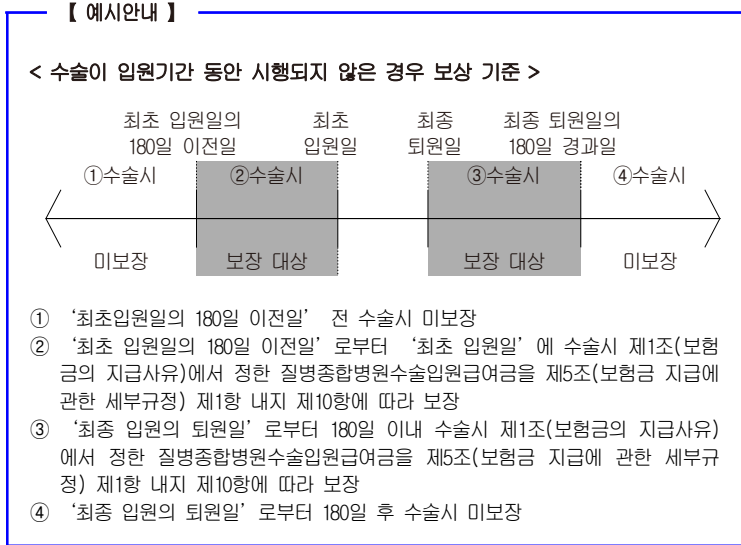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종합병원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또다른 '종합병원수술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종합병원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 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종합병원수술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⑪ '수술' 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제1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 로부터 '최초 입원일'
  2. '최종 입원의 퇴원일' 로부터 180일 이내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경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물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경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

- 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8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인해 아래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이라 합니다)로 입원하여 치료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2.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수술입원당 12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수술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20일 한도)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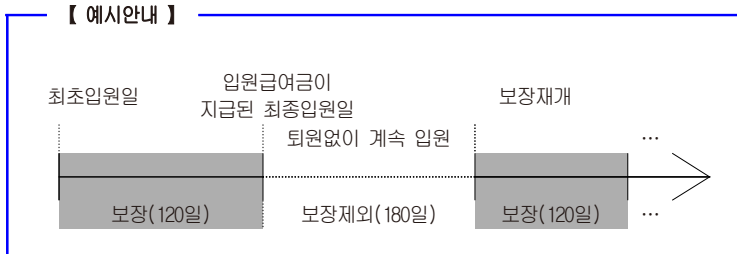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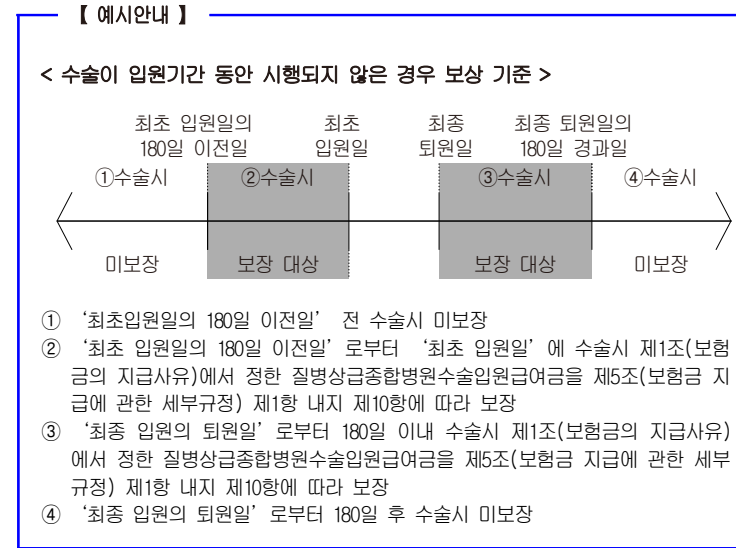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이를 1회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보며, 새로운 입원일 이후 같은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또다른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으로 보아 새로운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다른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 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 후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⑪ '수술' 이 입원기간 동안 시행되지 않은 경우라도 아래의 기간에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 을 받은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상급종합병원수술입원급여금을 제1항 내지 제10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1. '최초 입원일의 180일 이전일'로부터 '최초 입원일'
  2.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⑤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아래에 열거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안검내반(눈꺼풀 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59 특정감염병 II 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  
특정감염병 II 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감염병 II’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감염병 I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특정감염병 II 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감염병 II 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특정감염병 I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30일한도)

**제2조 (특정감염병 II의 정의)**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병 II’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35] ‘특정감염병 II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단, ‘U07.1’은 응급 사용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의 지시에 의해 즉시 사용될 수 있는 분류항목군에 수록되어, 이후 세계보건기구의 추가적인 결정에 따라 다른 대분류상의 특정 코드로 변경 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특정강염병II’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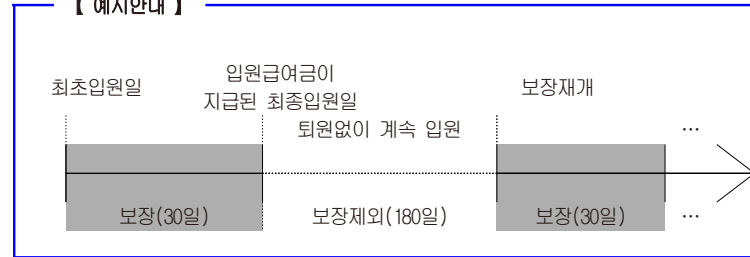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특정강염병I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특정강염병II’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특정강염병II’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특정강염병II’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특정강염병II’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특정강염병II’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특정강염병II’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특정강염병I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특정강염병II’에 대한 입원이라도 특정강염병II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특정강염병II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특정강염병II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초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③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특정강염병I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특정강염병II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특정강염병II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0 독감(인플루엔자)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 독감(인플루엔자)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독감(인플루엔자)’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독감(인플루엔자)’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독감(인플루엔자) 입원급여금	‘독감(인플루엔자)’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30일 한도)

**제2조 (독감(인플루엔자)의 정의)**

- 이 특약에서 ‘독감(인플루엔자)’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5]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독감(인플루엔자)’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배양 검사, 유전자 검출 검사, 혈청검사, 신속항원 검사(Rapid Antigen test) 또는 의사의 임상적 판단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독감(인플루엔자)」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독감(인플루엔자)’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관련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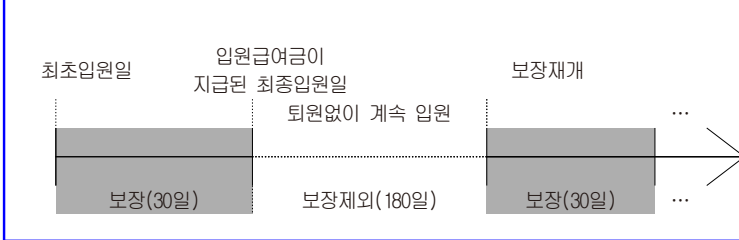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독감(인플루엔자)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독감(인플루엔자)’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독감(인플루엔자)’ 의 치료 중에 발생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독감(인플루엔자)’ 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독감(인플루엔자)’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독감(인플루엔자)’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독감(인플루엔자)’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 에 대한 입원이라도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독감(인플루엔자)’ 의

-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규정에 따라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독감(인플루엔자)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1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아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30일을 한도로 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30일 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 질병입원급여금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사용 1일당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60일 한도)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재활병동’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안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병동으로 지정된 병동을 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재활병동을 제외한 병동을 ‘일반병동’이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각호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 질병입원급여금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 질병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각 1회 입원당 30일 및 6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작일부터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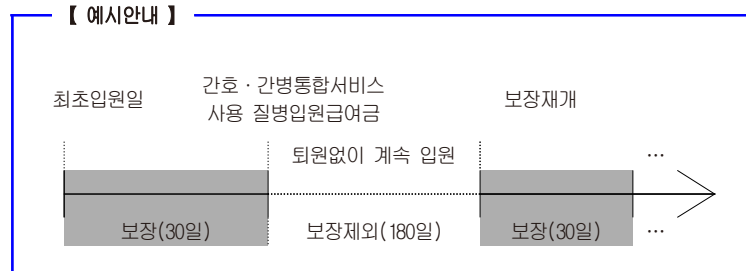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⑤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호를 각각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질병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호를 각각 적용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2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보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갱신형)보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맞춤고지Ⅱ]보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금액)	지급금액
질병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만원 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8만원 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 사용일수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2024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6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입원일수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사용1. 2024년 4월 10일 ~ 1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88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이상에 해당) → 6만원 X 8일 = 48만원 지급
- 사용2. 2024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52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미만에 해당) → 3만원 X 8일 = 24만원 지급
- 총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금액
-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 보험금 48만원 + 24만원= 72만원 지급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 병원 및 의원)'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 각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급여금 및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급여금 각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질병입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일반병동) 사용급여금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 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호· 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 병동)사용급여금' 보장 보험가입금액
2. 질병입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재활병동) 사용급여금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④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 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제5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재활병동’ 이라 함은 보건복지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년 안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업지침」에 따라 재활병동으로 지정된 병동을 말하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중 재활병동을 제외한 병동을 ‘일반병동’ 이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 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 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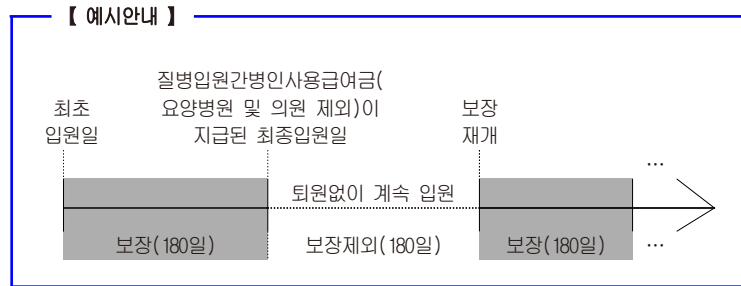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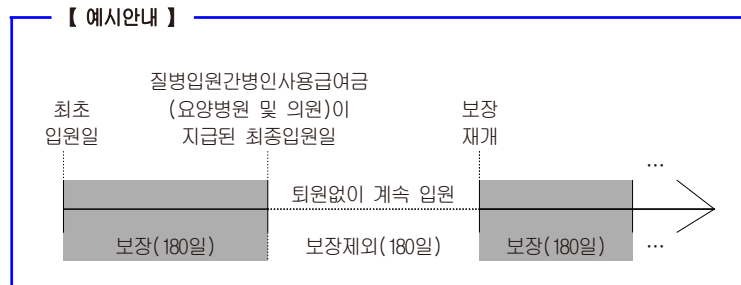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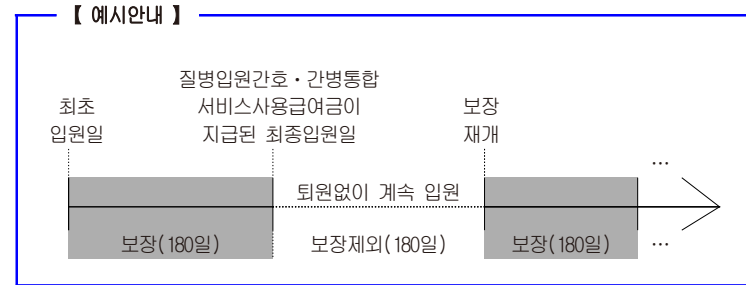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

병동)사용급여금 또는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급여금 또는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사용급여금 또는 질병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사용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⑧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의 지급일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별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제정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 ④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3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보장 및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은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요양, 정신, 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 일반병동/재활병동)보장’ 과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요양, 정신, 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 의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163-1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일당(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일반병동/재활병동)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일반병동 또는 재활병동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에게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아래의 각액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재활병동)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 사용질병입원급여금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질병으로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일반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5일한도)
2.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 사용질병입원급여금 (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 (181일이상)	질병으로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간호·간병통합서비스(재활병동)를 사용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185일 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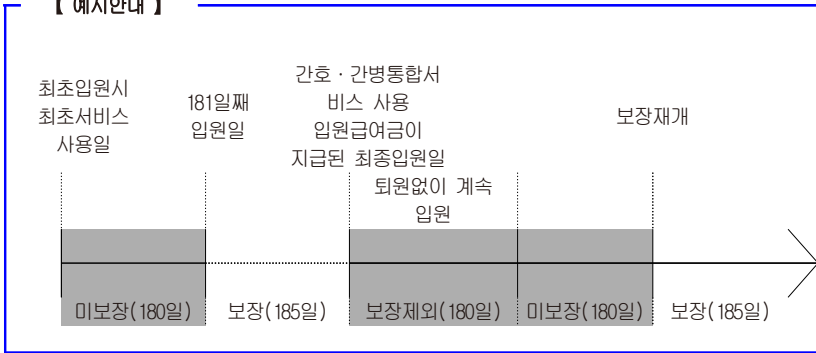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이 보장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정신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한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181일이상 계속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시작일로부터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제1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하여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던 중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을 중단 또는 종료하는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일수를 기준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을 지급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 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⑥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및 한방병원제외)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⑦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질병입원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제외)(181일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단,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사용한 경우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여부 및 사용일자를 판단할 수 있는 서류여야 합니다.

제6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3-2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및 의원제외)에 181일 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일을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5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금액)	지급금액
질병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정신/한방 병원및의원제외) (181일이상)	질병으로 병원(요양/정신 /한방병원및의 원제외)에 181일이상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만원 미만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 (181일이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185일한도)
		8만원 이상	181일째 입원일로부터 간병인을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 (181일이상)'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185일한도)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 사용일수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2024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6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4년 5월 1일 ~ 2024년 11월 30일 (입원일수 214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사용1. 2024년 5월 10일 ~ 2024년 11월 22일 : 총 사용일수 197일, 사용금액 총 1,773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이상에 해당) → 가입금액 6만원 X 17일(=197일-180일) = 102만원 지급  
 사용2. 2024년 11월 22일 ~ 11월 26일 오전, 11월 27일 오후 ~ 11월 29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52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미만에 해당) → 가입금액 6만원 X 50% X 8일 = 24만원 지급  
 · 총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24일  
 보험금 102만원 + 24만원 = 126만원 지급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정신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정신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정신병원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한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 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변기사용 보조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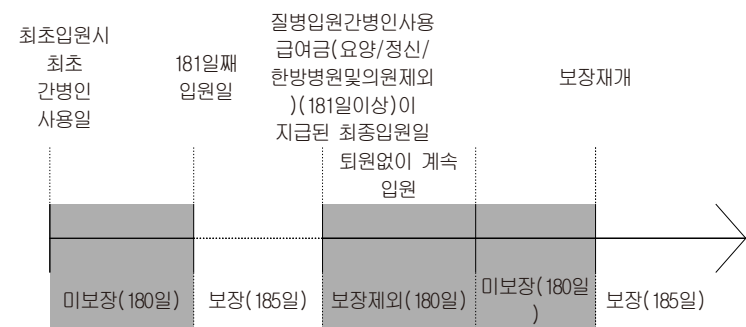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정신/한방병원및의원제외)(181일이상)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④ 피보험자가 병원(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및의원제외)에 이적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의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료질환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세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4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금(상급종합병원)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금액)	지급금액
질병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만원 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상급종합병원)'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8만원 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상급종합병원)'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짜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 사용일수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2024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6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입원일수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사용1. 2024년 4월 10일 ~ 1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88만원
      - ☞ (1일당 평균 8만원 이상에 해당) → 6만원 X 8일 = 48만원 지급
    - 사용2. 2024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52만원
      - ☞ (1일당 평균 8만원 미만에 해당) → 3만원 X 8일 = 24만원 지급
- 총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금액
  -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 보험금 48만원 + 24만원 = 72만원 지급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요)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세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족,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2. 「치료강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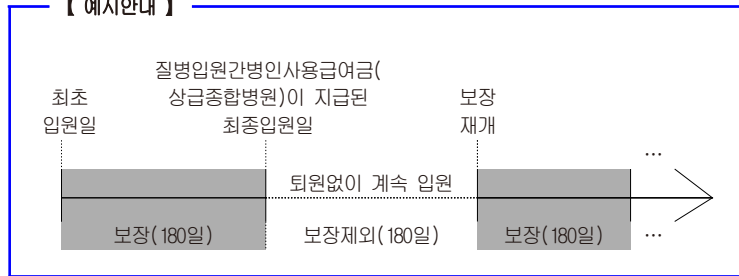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지급일수 및 지급한도는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지급일수는 간병인을 실제 사용한 날에 대하여 사용일을 합산하여 적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일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⑨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으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까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⑪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⑫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최초로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 제3항 및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상급종합병원)을 지급합니다.
- ⑬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제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③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 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5 질병수술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보험금	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

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 ~ 099)
  -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5. 비만(E66)
  - 6. 요실금(N39.3, N39.4, R32)
  -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료질환(K00 ~ K0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166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보험금 (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	질병(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 ~ 0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백내장(H25 ~ H27)
  10. 대장의 용종(폴립)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K63.5, D12.0-D12.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Q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감염병 등 안과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7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경증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보험금 (경증질병제외)	질병(경증질병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풍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경증질환제외)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경증질환제외)을 지급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 ~ 0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경증질환(다래끼(H00), 결막염(H10), 바이러스성결막염(B30),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H92), 외이염(H60), 티눈(L84))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



- 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Q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응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8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보험금 (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	질병(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 경증질병제외)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백내장 및 대장용종 제외, 경증질병제외)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백내장(H25 ~ H27)
  10. 대장의 용종(폴립) 또는 대장의 양성신생물(K63.5, D12.0-D12.8)
  11. 경증질병(다래끼(H00), 결막염(H10), 바이러스성결막염(B30),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H92), 외이염(H60), 티눈(L84))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69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7대및경증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보험금 (7대및경증질병제외)	질병(7대및경증질병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7대및경증질병제외)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7대및경증질환제외)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2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7대및경증질환제외)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경증질환(다래끼(H00), 결막염(H10), 바이러스성결막염(B30),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H92), 외이염(H60), 티눈(L84))
10. 그 외 아래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7대질환	백내장 및 결막이완증	H11.8, H25, H26, H27
	결장의용종 및 항문의 양성신생물	K63.5, D12
	후각특정질환	J30, J31, J33, J34
	특정피부질환 II	L02, L30, L60, L72, L75, L84
	혈관종및림프관종	D18
	유방의장애 II	N60, N62, N63, N64, D24
	감상선질환 II	D34, E00-E07, E89.0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시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Q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경수술. 다만, 안경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경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 · 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과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적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0 질병수술Ⅳ(1-5종)(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Ⅳ(1-5종)(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Ⅳ(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Ⅳ(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Ⅳ 분류표’ ([별표92-1] ‘1-5종수술Ⅳ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수술Ⅳ (1-5종)(수술 회당지급) 보험금	질병으로 ‘1-5종 수술Ⅳ분류표’에서 정한 ‘1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Ⅳ(1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1-5종 수술Ⅳ분류표’에서 정한 ‘2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Ⅳ(2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1-5종 수술Ⅳ분류표’에서 정한 ‘3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Ⅳ(3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1-5종 수술Ⅳ분류표’에서 정한 ‘4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Ⅳ(4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질병으로 ‘1-5종 수술Ⅳ분류표’에서 정한 ‘5종’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Ⅳ(5종)’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Ⅳ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같은 질병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보험금에 해당하는 한 종류의 수술에 대해서만 질병수술Ⅳ(1-5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이미 낮은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질병수술Ⅳ(1-5종)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때에는 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질병수술Ⅳ(1-5종)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질병수술Ⅳ(1-5종)보험금을 차감하고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질병수술(1-5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열거된 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Ⅳ(1-5종)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일반적인 질병(제자리암, 경계성종양 포함) 치료목적의 수술
    - 가.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otomy)
    - 나.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 다. 망막박리 수술
    - 라.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 마. 냉동응고에 의한 안구 수술
    - 바. 중이내 튜브유치술
    - 사. 체외충격파쇄석술(E.S.W.L)
    - 아. 내시경(Fiv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 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경피적 수술
  2.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 가. 내시경 수술, 카테터(Catheter) · 고주파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 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단,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 및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 제외)
  3. 악성신생물 근치 · 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 가.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단, 5,000Rad 이상의 조사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 나. 두 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4.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

- ③ 제1항에서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 먹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흉부장기 · 복부장기 · 비뇨생식 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 · 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 ~ 099)(단,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術)은 보상합니다)
  3.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4. 비만(E66)
  5.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6. 티눈 및 굳은살(L84)
  7. 피부 및 피하조직의 모낭염(L72)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 · 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9〕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 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외격리증(양쪽 눈을 강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1 암수술보장 특별약관 / 암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수술보험금	‘암’ (‘유사암’ 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유사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갑상선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자리암’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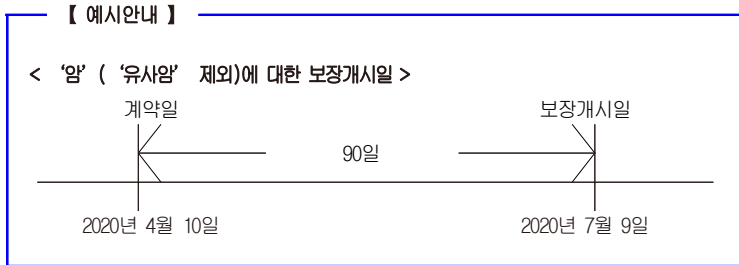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②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2 암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수술[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수술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유사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갑상선암’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자리암’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 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 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비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마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 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 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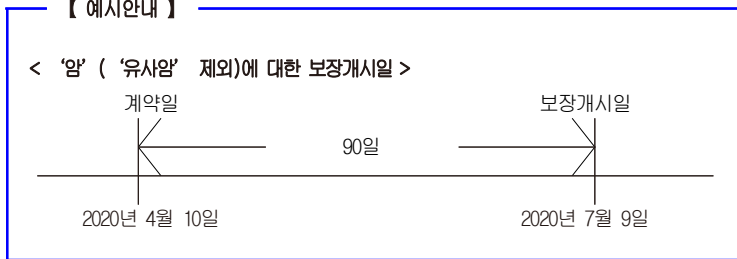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3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그 ‘암’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수술보험금	‘암’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유사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 해당액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제자리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마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전자(穿刺), 비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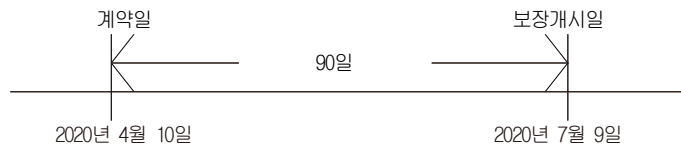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4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수술보험금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2. 유사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갑상선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20% 해당액
‘제자리암’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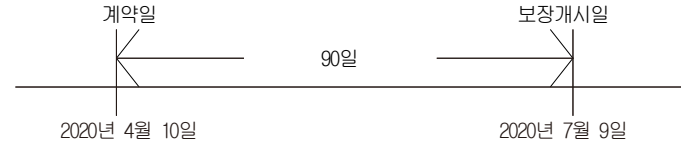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5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조혈모세포이식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수혜자로서 관련법규에 따라 정부에서 인정한 무균실이 있는 골수이식의료기관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조혈모세포이식 수술보험금	수혜자로서 '조혈모세포이식'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조혈모세포이식의 정의)**

이 특약에서 '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각종 혈액질환 및 악성종양 치료시 발생하는 골수부전상태를 근본적으로 치료할 목적으로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이식하는 시술로서 다음의 각 호에서 정한 동종(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자가(골수,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술을 말합니다.

- 단, 조혈모세포를 제공하는 공여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채취하는 시술은 제외합니다.
1. '동종(allogenic)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2. '동종(allogenic)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를 가진 공여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3. '자가(autoologous)골수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골수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4. '자가(autoologous)말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피보험자의 말초혈액내 조혈모세포를 미리 채취하여 보관하였다가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다시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5.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이라 함은 정상적인 조혈모세포가 있는 제대혈(탯줄혈액)내 조혈모세포를 골수부전상태에 있는 피보험자에게 투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조절모세포아식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6 특정질병수술(남성)보장 특별약관 /  
 특정질병수술(남성)[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남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질병(남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질병 수술보험금	‘특정질병(남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특정질병(남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질병(남성)’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37] ‘특정질병(남성)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고혈압 2. 당뇨병 <sup>주)</sup> 3. 심장질환 4. 뇌혈관질환 5. 간질환 6.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7.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별표37] 참조

주) 당뇨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단, ‘1. 고혈압’ 및 ‘2. 당뇨병’의 경우 다음의 합병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I67.4 H35.0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관절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 ② ‘특정질병(남성)’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 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특정질병(남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특정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7 특정질병수술(여성)보장 특별약관 / 특정질병수술(여성)[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질병(여성)’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질병(여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질병 수술보험금	‘특정질병(여성)’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2조 (특정질병(여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특정질병(여성)’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38] ‘특정질병(여성)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고혈압 2. 당뇨병 <sup>주)</sup> 3. 심장질환 4. 뇌혈관질환 5.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6. 신부전	[별표38] 참조

주) 당뇨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단, ‘1. 고혈압’ 및 ‘2. 당뇨병’ 의 경우 다음의 합병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I67.4 H35.0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관절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② ‘특정질병(여성)’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특정질병(여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특정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광서에서 손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8 간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간질환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간질환수술보험금	'간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간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 '간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79 총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 총수염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총수염’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총수염’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총수염 수술보험금	‘총수염’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총수염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총수염’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2] ‘총수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총수염’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총수염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80 추간판장애수술보장 특별약관 / 추간판장애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추간판 장애수술보험금	‘추간판장애’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추간판장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추간판장애’라 함은 척추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통증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4] ‘추간판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추간판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81 심뇌혈관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심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심뇌혈관질환’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 액의 100%

**제2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82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심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심뇌혈관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83 뇌혈관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뇌혈관질환'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제2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

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84 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허혈심장질환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허혈심장 질환수술보험금	‘허혈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제2조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전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혐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혐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85 혈전제거치료 II (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혈전제거치료 II (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혈전제거치료 II (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혈전제거치료 II (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  
졸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  
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뇌 특정 혈전제거술 보험금	‘뇌졸중’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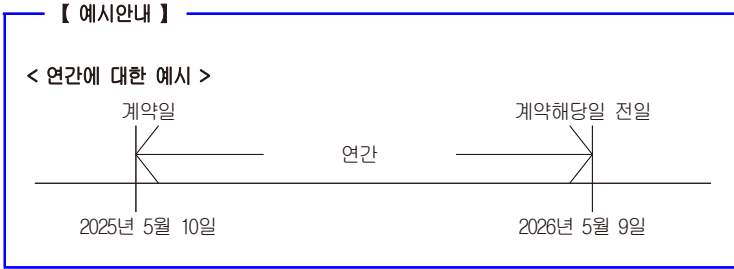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특정심장질환 혈전제거술 보험금	‘특정심장질환’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 I’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순환계질환 I’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특정순환계질환 I 혈전제거술 보험금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뇌졸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뇌졸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② 이 특약에서 ‘특정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특정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 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오래된 심근경색증	125.2

③ 이 특약에서 ‘특정순환계질환 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0] ‘특정순환계질환 I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④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및 ‘특정순환계질환 I’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졸중’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특정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또는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또는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⑤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⑥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⑦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⑧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조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졸중’ 또는 ‘특정심장질환’ 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40]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외에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이라 함은 “혈관으로부터 혈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186 관상동맥우회술(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관상동맥우회술(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관상동맥우회술보험금	‘관상동맥우회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관상동맥우회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관상동맥우회술’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적으로 하여 개흉술을 한 후 대복재정맥(Greater Saphenous Vein), 내유동맥(Internal Mammary Artery)등의 자가우회도관을 협착이 있는 부위보다 원위부(遠位部)의 관상동맥에 연결하여 주는 수술을 말합니다.
- ② 관상동맥확장술(인공혈관 등)과 다른 모든 내부동맥에 활용된 카테터(Catheter) 및 레이



저시술이나 개흉술을 동반하지 않는 수술은 모두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예) 관상동맥성형술(Percutaneous Transluminal Coronary Angioplasty, PTCA),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축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③ 제1항의 관상동맥우회술은 혈관촬영법을 통해 현격한 관상동맥의 협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시술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장내과 전문의나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관상동맥우회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87 관상동맥성형술(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관상동맥성형술(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관상동맥성형술 보험금	‘관상동맥성형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관상동맥성형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관상동맥성형술(PTCA)’이라 함은 관상동맥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여 관상동맥우회술(CABG)대신 혈관카테터를 이용한 관상동맥확장술을 말합니다.  
 예) 경피적관동맥풍선확장술(Percutaneous Transluminal Balloon Angioplasty), 스텐트삽입술(Coronary Stent), 회전축상반절제술(Rotational Atherectomy) 등
- ② 제1항의 관상동맥성형술은 혈관촬영법을 통해 현격한 관상동맥의 협착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그 시술이 의학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심장내과 전문의나 순환기내과 전문의의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관상동맥성형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88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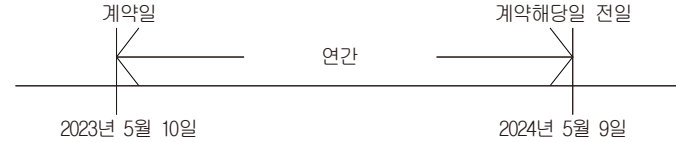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특정뇌동맥질환’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여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 보험금	‘특정뇌동맥질환’으로 진단받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 ‘특정뇌동맥질환’ ,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특정뇌동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37] ‘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뇌동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특정뇌동맥질환’ 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 137-1]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대상 수가코드’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은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혈관색전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외에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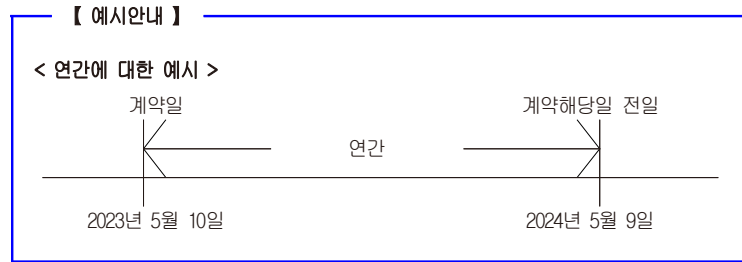
**2-189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연간1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	계약일로부터 1년 이상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보험금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38]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외에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0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1회한)보장 특별약관 /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남성특정비뇨기계 질환수술보험금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액

**제2조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7]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외충격파결석파쇄술(Extracorporeal Shock Wave Lithotripsy)을 시행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방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보험금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되고 유방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100% 해당액

제2조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유방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50)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별표48]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수술을 말합니다.
- ③ ‘유방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방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방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3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2-191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보장 특별약관 /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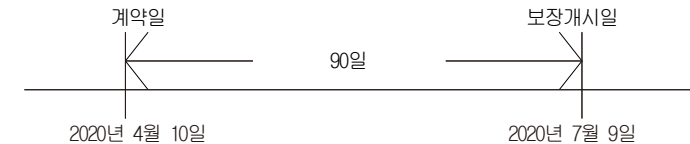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유방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유방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

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유방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유방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유방암'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2 여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여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여성생식기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여성생식기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여성생식기질환 수술보험금	'여성생식기질환'으로수술을 받은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요실금'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요실금'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실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요실금수술보험금	'요실금'으로 진단받고 '요실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③ 제2항의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특별  
약관

상해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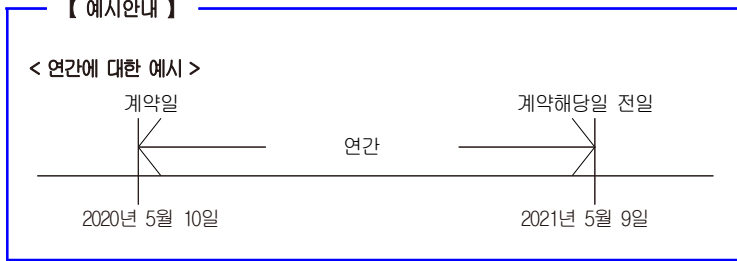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한도 산정의 기준일자는 치료개시일로 합니다.



**제2조 (여성생식기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여성생식기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51] '여성생식기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실금'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2] '요실금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요실금수술' 이라 함은 [별표53] '요실금수술 대상 수가코드' 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실금수술' 에 준하여 '요실금수술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 ④ 제3항의 요실금수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요실금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여성생식기질환' 및 '요실금'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요실금수술 보험금의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3 120대질병수술 II 보장 특별약관 /  
120대질병수술 II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20대질병수술 II, 120대질병수술 II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질병수술1(26대질병 II)', '질병수술2(58대질병 II)', '질병수술3(24대질병)', '치핵수술', '갑상선관련질병수술' 및 '다발성10대질병수술'의 6개 세부 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2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질병수술1 (26대질병 II) 보험금	'26대질병 II'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1(26대질병 II)'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질병수술1(26대질병 II)'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질병수술2 (58대질병 II) 보험금	'58대질병 II'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2(58대질병 II)'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질병수술2(58대질병 II)'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질병수술3 (24대질병)보험금	'24대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3(24대질병)'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질병수술3(24대질병)'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치핵수술 보험금	'치핵'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치핵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치핵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갑상선 관련질병 수술보험금	'갑상선관련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갑상선관련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갑상선관련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다발성 10대질병 수술보험금	'다발성10대질병'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발성10대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다발성10대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12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120대질병'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26대질병 II', 제3항에서 정한 '58대질병 II', 제4항에서 정한 '24대질병', 제5항에서 정한 '치핵', 제6항에서 정한 '갑상선관련질병' 및 제7항에서 정한 '다발성10대질병'을 총칭합니다.

구분	대상질병	
120 대질 병 II	26대 질병 II	중증근무력증, 안와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 II, 치열 및 치루, 골수염 및 골괴사증, 뼈의 파열 및 뼈의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눈및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후각특정질환 II, 유방의장애 II
	58대 질병 II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종이염, 종이 및 유물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고혈압, 당뇨병, 용혈-요독증후군(헴버거병), 비장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의 기타장애,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의외한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질환, 위공정장애, 특정소화기질환,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I
	24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장애,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뇌척수액의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체장염, 체장질환,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버거씨병
	치핵	치핵
	갑상선 관련 질병	갑상선질환,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다발성 10대 질병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조직의 양성신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신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 ② 이 특약에서 '26대질병 I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 '26대질병 II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58대질병 I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6] '58대질병 II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단, '고혈압' 및 '당뇨병' 의 경우 다음의 합병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H35.0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 ④ 이 특약에서 '24대질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4] '24대질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단, 아래에 각 호의 질병코드를 동시에 진단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24대질병' 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N51.0)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나.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N51.1)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다.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N51.8)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⑤ 이 특약에서 '치핵'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1] '치핵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갑상선관련질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1] '갑상선관련질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다발성10대질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5] '다발성10대질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120대질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함이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4 120대질병수술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120대질병수술 II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20대질병수술 II (갱신형), 120대질병수술 II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질병수술1(26대질병 II)', '질병수술2(58대질병 II)', '질병수술3(24대질병)', '치핵수술', '갑상선관련질병수술' 및 '다발성10대질병수술'의 6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20대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120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 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질병수술1 (26대질병 II) 보험금	'26대질병 II' 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1(26대질병 II)'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질병수술1(26대질병 II)'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질병수술2 (58대질병 II) 보험금	'58대질병 II' 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2(58대질병 II)'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질병수술2(58대질병 II)'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질병수술3 (24대질병) 보험금	'24대질병' 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질병수술3(24대질병)'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질병수술3(24대질병)'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치핵수술 보험금	'치핵' 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치핵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치핵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갑상선 관련질병 수술보험금	'갑상선관련질병' 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갑상선관련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갑상선관련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다발성 10대질병 수술보험금	'다발성10대질병' 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다발성10대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다발성10대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120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120대질병'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26대질병 II', 제3항에서 정한 '58대질병 II', 제4항에서 정한 '24대질병', 제5항에서 정한 '치핵', 제6항에서 정한 '갑상선관련질병' 및 제7항에서 정한 '다발성10대질병'을 총칭합니다.

구분	대상질환
120대 질병	26대 질병 II 중증근무력증, 안외장애, 유리체의 장애, 하지정맥류, 과민대장증후군, 전신결합조직장애 II, 치열 및 치루, 골수염 및 골괴사증, 뼈의 파절병 및 뼈의기타장애, 연골병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요도결석증, 다한증, 눈및부속기관의 양성종양, 수면무호흡증, 결막장애, 외이의 질환, 림프절염, 대상포진, 급성 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식도정맥류, 후각특정질환 II, 유방의장애 II
	58대 질병 II 담석증, 사타구니 탈장,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만성 부비동염, 급성상기도감염, 후각특정질환,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성대결절, 근육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종이염, 종이 및 유두의 질환, 내이의 질환, 황반변성,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신세뇨관-간질질환, 방광의결석,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유방의장애, 특정 부위의 탈장,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특정장질환, 복막의질환, 담낭담도질환, 척추변형, 척추병증, 추간판장애(디스크질환), 골다공증, 안면신경장애, 손목터널증후군, 단일신경병증, 특정 누적외상질환, 윤활막 및 힘줄장애, 식도질환, 위·십이지장 질환, 어깨병변, 고혈압, 당뇨병, 용혈-요독증후군(햄버거병), 비장질환, 부갑상선질환, 뇌하수체질환, 대사장애, 마비, 귀의 기타장애,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외부요인에의한폐질환, 폐부종, 특정호흡기질환, 침샘질환, 위공장계양, 특정소화기질환, 장출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I
	24대 질병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계양, 동맥경화증,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폐렴, 녹내장, 결핵, 신부전, 패혈증,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수막염),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질환(뇌및척수염증성질환), 파킨슨병, 다발경화증,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대동맥류, 폐질환, 급성 체장염, 체장질환, 뇌전증, 뇌성마비, 수두증, 버거씨병
	치핵 치핵
	갑상선 관련 질병 갑상선질환, 갑상선의 양성신 생물
다발성 10대 질병 소화기계통의 양성신 생물, 중이·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 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 생물, 조직의 양성신 생물, 생식기의 양성종양, 비뇨기관의 양성신 생물, 수막의 양성신 생물,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 생물, 내분비선의 양성신 생물, 유방의 양성종양	

- ② 이 특약에서 '26대질병 I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3] '26대질병 II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58대질병 I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6] '58대질병 II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단, '고혈압' 및 '당뇨병' 의 경우 다음의 합병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I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H35.0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 ④ 이 특약에서 '24대질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4] '24대질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단, 아래에 각 호의 질병코드를 동시에 진단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24대질병' 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 가.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N51.0)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나.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N51.1)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다. 남성생식기관의 결핵(A18.14)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생식기관의 기타 장애(N51.8)를 동시에 진단받은 경우
- ⑤ 이 특약에서 '치핵'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1] '치핵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갑상선관련질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81] '갑상선관련질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이 특약에서 '다발성10대질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5] '다발성10대질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120대질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함이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수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5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보장 특별약관 /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3대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3대질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3대질병 수술보험금	'3대질병' 으 로 수술을 받은 경우	'3대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3대질병수술'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3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3대질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8] '3대질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3대질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병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6 5대기관질병수술(관혈/비관혈)(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5대기관질병수술(관혈/비관혈)(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5대기관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대기관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5대기관 질병 관혈 수술 보험금	1. 뇌혈관질환 관혈수술보험금	'뇌혈관질환' 으 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2. 심장질환 관혈수술보험금	'심장질환' 으 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3. 간질환 관혈수술보험금	'간질환' 으 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4. 신장질환 관혈수술보험금	'신장질환' 으 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5. 폐질환 관혈수술보험금	'폐질환' 으 로 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 1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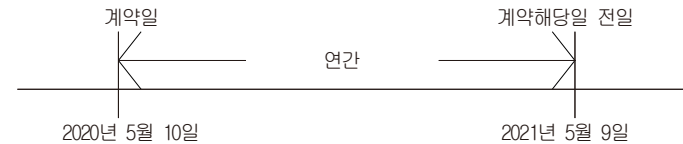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5대기관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5대기관질병'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간질환, 신장질환, 폐질환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5대기관 질병비 관혈 수술 보험금	1. 뇌혈관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	'뇌혈관질환' 으 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연간 1회한)
	2. 심장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	'심장질환' 으 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연간 1회한)
	3. 간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	'간질환' 으 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연간 1회한)
	4. 신장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	'신장질환' 으 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연간 1회한)
	5. 폐질환 비관혈수술보험금	'폐질환' 으 로 비관혈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연간 1회한)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5대기관질병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5대기관질병'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뇌혈관질환' , '심장질환' , '간질환' , '신장질환' 및 '폐질환' 을 총칭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5대기관질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57] '5대기관질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5대기관질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관혈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하여 보상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비관혈수술'이라함은 내시경수술, 카테터(도관)수술, 신의료비관혈수술을 말합니다.
  1. '내시경수술'이라 함은 인체 내부를 특수의료기구를 이용한 영상을 통하여 보면서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치료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복강경하수술', '흉강경하수술'은 제외합니다.
  2. '카테터(도관)수술'이라 함은 인체의 일부(주요혈관)와 외부를 연결해주는 도관을 이용하여 시행하는 직접 치료목적의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3. '신의료비관혈수술'이라 함은 관혈수술 이외의 수술에 해당하며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로 등재되어 있고 해당 부위에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수술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수술에 해당하지 않는 '도관을 이용한 약물주입'과 '중심정맥관 삽입술'은 제외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1회의 수술 중 관혈수술과 비관혈수술을 동시에 받은 경우에는 관혈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비관혈수술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연간'에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비관혈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의 경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연간'에 이미 관혈수술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비관혈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해당 '연간'에 비관혈수술보험금도 지급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7 당뇨고혈압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 당뇨고혈압질환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당뇨고혈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당뇨고혈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당뇨고혈압질환 수술보험금	‘당뇨고혈압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당뇨고혈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당뇨고혈압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46] ‘당뇨고혈압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고혈압 2. 당뇨병 <sup>주)</sup>	110-113, 115 E10-E14

주) 당뇨병에 해당하는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단, ‘1. 고혈압’ 및 ‘2. 당뇨병’의 경우 다음의 합병증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I67.4 H35.0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시구체장애	N08.3

② ‘당뇨고혈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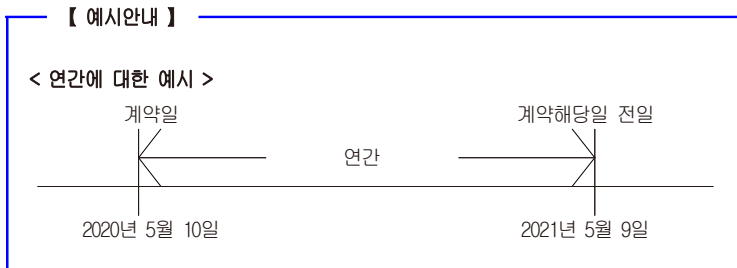
**2-198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별약관 /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이 발생한 부위, 개수와 관계없이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은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6대기관양성 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보험금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으 로 진단받고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1회한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2조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66]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이라 함은 [별표67]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 에 준하여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 제2항의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

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이 경우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마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  
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  
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199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로봇암수술 (다빈치및레보아이)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보험금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으 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로봇암수술 (다빈치및레보아이)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보험금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다빈치로봇암수술 등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로봇암수술' 이라 함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아래의 '로봇수술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	QZ966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로봇암수술' 중 다빈치(da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로봇암수술' 중 레보아이(Revo-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다빈치·레보아이로봇암수술】

다빈치·레보아이로봇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통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및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및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외에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8.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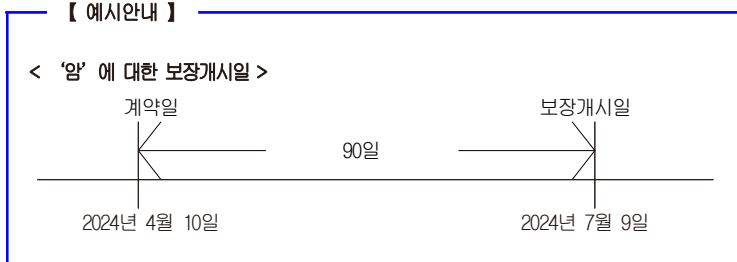
#### 제5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감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감상선암 및 전립선암)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존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0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연간1회한)[맞춤고지Ⅱ]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암’ (갑상선암및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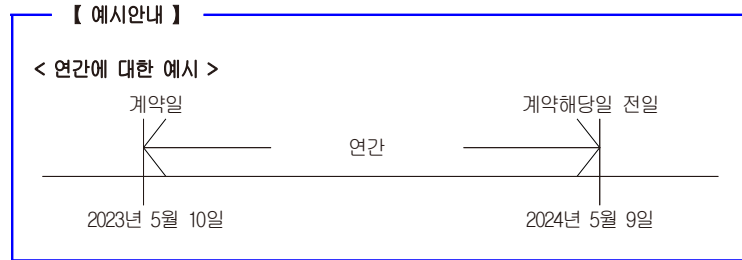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로봇암수술 (다빈치및레보아이)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보험금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 으 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 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로봇암수술 (다빈치및레보아이)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보험금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회한)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다빈치로봇암수술 등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로봇암수술' 이라 함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아래의 '로봇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	QZ966

- ② 이 특별약관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로봇암수술' 중 다빈치(da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별약관에서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이라 함은 제1항에서 정한 '로봇암수술' 중 레보아이(Revo-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한 경우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다빈치·레보아이로봇암수술】

다빈치·레보아이로봇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통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및 '레보아이로봇암수술'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및 '레보아이로봇암수술' 외에 '다빈치로봇암수술' 또는 '레보아이로봇암수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8. 항암방사선치료 및 항암약물치료

제5조 (항암방사선치료 등의 정의)

-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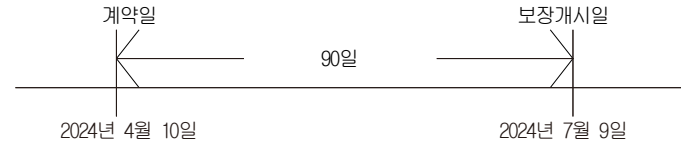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1 질병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 보장 특별약관 / 질병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20일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이하 '입원후통원'이라 합니다)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1.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3일이상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퇴원없이 계속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경우
  - 2.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호의 퇴원일(이하 질병입원후통원급여금의 '기준일'이라 합니다)부터 180일 이내에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통원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는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합니다.
- 다만, 질병입원후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20일을 한도로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입원후 통원급여금	질병으로 '입원 후 통원'한 경우 (퇴원일부터 180일 이내 통원)	입원후통원 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0일 한도)

**【 유의사항 】**

※ 피보험자가 해당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통원) 하더라도 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에 입원(통원)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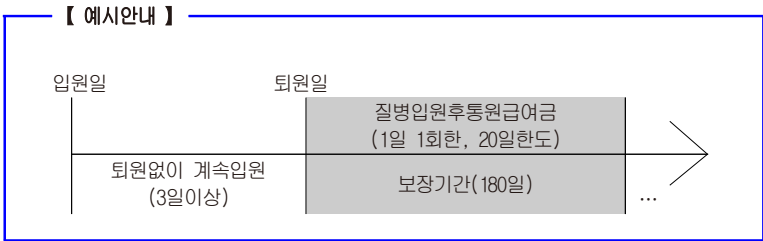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2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4조(병원 등의 정의)에서 정한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4조(병원 등의 정의)에서 정한 병원(치과의원, 한의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치과의원’ 및 ‘한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의원 및 한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신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종합병원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해당 질병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시 입원(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퇴원없이 계속입원

한 것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합니다.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퇴원일을 포함하여 2일이 지난 이후에는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다시 입원하더라도 질병입원후통원급여금의 기준일(퇴원일),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 ⑥ 이 특약에서 ‘동일한 질병’이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 시행)의 3자리 분류번호가 동일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외에도 통원기간 중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에서 정한 ‘동일한 질병’의 분류번호와 다른 분류번호를 진단 받았으나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의 기준에 따라 분류번호를 동시에 부여가 가능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부호 체계】

질병의 원인과 증상 두 가지 모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는 진단을 위해 아래 두 가지 분류부호가 사용됩니다. 또한 원인과 질환에 따라 동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검표(+): 원인이 되는 질환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 원인(검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3자리 분류번호】

I20, I24 등은 3자리로 표현된 분류번호라 합니다.

예를 들어 I20.8과 I20.9의 3자리 분류번호는 I20으로 동일하지만, I20.8과 I25.4의 3자리 분류번호는 각각 I20과 I25로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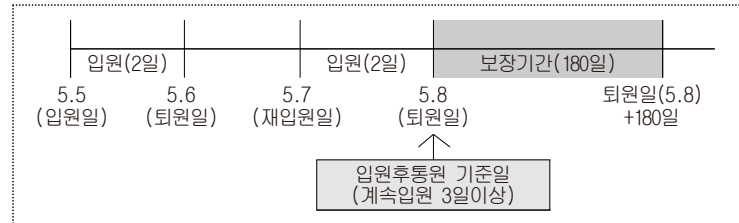
3자리 분류번호	대상 질병코드
I20	I20, I20.0, I20.1, I20.8, I20.9
I24	I24, I24.0, I24.1, I24.8, I24.9
I25	I25, I25.0, I25.1, I25.2, I25.3, I25.4, I25.5, I25.6, I25.8, I25.9

- ⑦ 동일한 입원기간 내에 2가지 이상의 질병을 진단확정 받았더라도 입원 후 통원일수는 질병별로 각각 적용하지 않고, 합산하여 최대 2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질병입원후통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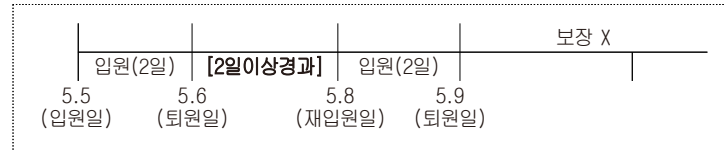
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1(제5조 제3항) :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재입원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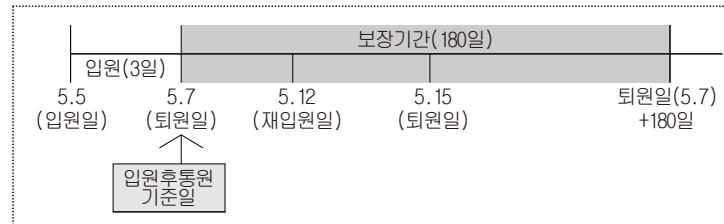


⇒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동일한 질병으로 재입원시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것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함



⇒ 퇴원한 날의 다음날까지 재입원하지 않은 경우 입원일수를 합산하지 않음 (계속입원일이 3일 미만으로 입원후통원 미해당)

< 예시2(제5조 제4항) : 퇴원일 포함 2일이 지난 이후에 동일한 질병으로 재입원시 >



⇒ 동일한 질병으로 다시 입원하더라도 입원후통원의 기준일(퇴원일), 지급횟수 및 지급한도는 변경되지 않음 (단,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새로운 입원으로 봄)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이하 '보통약관' 이라 합니다)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2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다만, 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유사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기타피부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제자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경계성종양'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요)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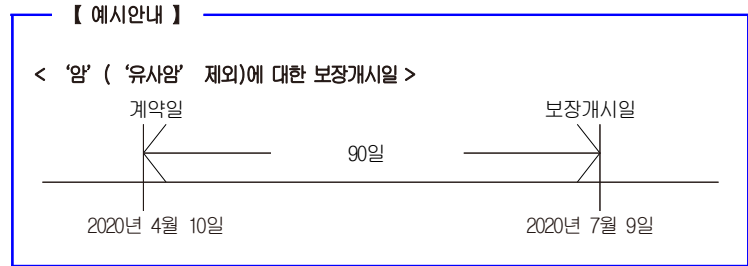
**제5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암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상급종합병원 암통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⑤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3 암직접치료통원일당보장(종합병원) 특별약관 / 암직접치료통원일당보장(종합병원)[맞춤고지 II]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종합병원)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 1회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2. 유사암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종합병원)	‘기타피부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갑상선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제자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경계성종양’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치료를 한 경우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정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정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정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형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형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형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5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암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유사암제외) 및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4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종합병원 암통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⑤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5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4 보험료환급/지원(6대질병진단) 특별약관**

**<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

이 특별약관은 1종(일반형)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제1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 1종(일반형)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단,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보험료 환급금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sup>주)</sup> × 납입경과월수
2. 보험료 납입지원금		이 특약의 가입금액 <sup>주)</sup> 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 + 이 특약의 가입금액 <sup>주)</sup>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 주) 보험료환급금 및 보험료납입지원금은 사고 당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납입경과월수’라 함은 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월 계약해당일의 경과횟수를 말합니다.  
단, 납입경과월수는 이 특약의 총 보험료 납입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 지원기간' 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예시안내 】**

**< 보험금 지급 예시 >**

2020년 1월 1일 계약체결 후, 2024년 6월 10일 암진단 발생시 (20년만기 전기납, 사고당시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 납입경과월수 = 2020년 1월 1일 ~ 2024년 6월 1일 = 54회(4년 6개월)
- ⇒ 잔여보험기간 = 이 특약의 보험기간(20년) - 납입경과월수(4년6개월) = 15년 6개월
  - 1)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 15년
  - 2) 보험료 납입지원잔여기간 = 6개월

1. 보험료 환급금 : 10만원 × 54개월 = 540만원
2. 보험료 납입지원금 :
  - 1) 1,800만원 지급(보험료 납입지원기간(15년) 동안 매년 120만원(12배×10만원))
  - 2) 60만원 지급(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6개월) × 10만원)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일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뇌졸중등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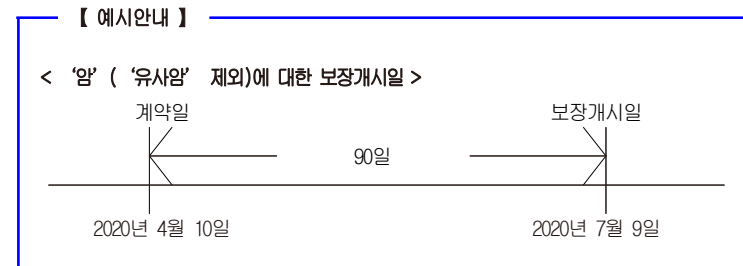
기타 특별 약관

-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1] '뇌졸중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급성심근경색증'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⑤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 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콩팥병(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별표27] '말기신부전증 분류표' 참조)
- ⑥ '말기신부전증'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 라 함은 만성 말기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 다만,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 ⑧ '말기간경화'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⑨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6] '말기폐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각 호의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호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동일한 상태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평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⑩ '말기폐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③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 (‘유사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유사암’ 제외)으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 (‘유사암’ 제외)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⑥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보험료납입지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5 보험료환급(6대질병진단) 특별약관 / 보험료환급(6대질병진단)[맞춤고지 II] 특별약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

이 특별약관은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현명한납입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제1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보험료 환급금	암 ( '유사암' 제외) 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sup>주)</sup> × 납입경과월수

주) 보험료환급금은 사고 당시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② 이 특약에서 '납입경과월수'라 함은 계약 체결시부터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매월 계약해당일의 경과횟수를 말합니다.

단, 납입경과월수는 이 특약의 총 보험료 납입횟수를 한도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금 지급 예시 >

2020년 1월 1일 계약체결 후, 2024년 6월 10일 암진단 발생시 (20년만기 전기납, 사고당시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납입경과월수 = 2020년 1월 1일 ~ 2024년 6월 1일 = 54회(4년 6개월)

보험료 환급금 : 10만원 × 54개월 = 540만원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뇌졸중등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1]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⑤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 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콩팥병(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별표27] '말기신부전증 분류표' 참조)
- ⑥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라 함은 만성 말기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다만,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 ⑧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⑨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6] ‘말기폐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약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각 호의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호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동일한 상태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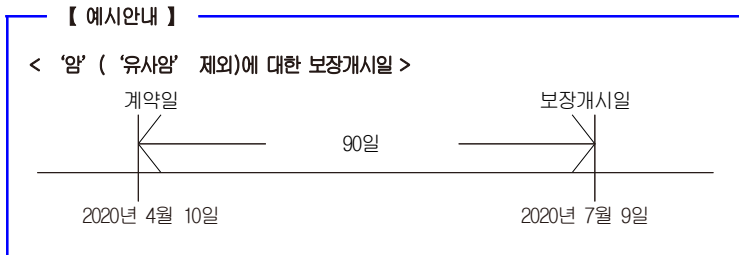
1.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정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⑩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③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 ( ‘유사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

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④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제1항의 보장개시일 이후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⑤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6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특별약관 /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맞춤고지 II] 특별약관**

<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  
  
이 특별약관은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현명한납입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제1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단,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보험료 납입 지원금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sup>주)</sup> 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 + 이 특약의 가입금액 <sup>주)</sup> x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 주)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 가입금액이며,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가입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이 끝날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올립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보험금 지급 예시 >

2022년 1월 1일 계약체결 후, 2026년 6월 10일 기타피부암진단 발생시(20년만기 전기납, 사고당시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 잔여보험기간
- = 2026년 6월 10일 ~ 2041년 12월 31일
- = 15년 6개월 22일

- 1) 보험료납입지원기간(년) = 15년 (연단위 미만 버림)  
= 2026년 6월 10일 ~ 2041년 6월 09일
- 2) 보험료납입지원잔여기간(월) = 7개월 (월단위 미만 올림)  
= 2041년 6월 10일 ~ 2041년 12월 31일

보험료 납입지원금 :

- 1) 1,800만원 지급(보험료 납입지원기간(15년) 동안  
매년 120만원(12 × 10만원))
- 2) 70만원 지급(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7개월) × 10만원)

제3조 (유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6] '유사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③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2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④ 제2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7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③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지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5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을 준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축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7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 특별약관 /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 II] 특별약관**

**<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

이 특별약관은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하며, 보험료 현명한납입형으로는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제1조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기본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단,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동안 매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지급사유 발생일 포함)에 지급합니다.  
단, 해당년도의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발생해당일의 전일을 지급사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보험료 납입지원금	‘심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sup>주)</sup> 의 12배를 보험료 납입지원기간 동안 매년 확정 지급 + 이 특약의 가입금액 <sup>주)</sup> ×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

- 주) 보험료납입지원금 지급사유 발생일 당시 가입금액이며, 계약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가입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이라 함은 제1항의 보험금의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의 연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연단위 미만의 끝수는 버립니다.
- ③ 이 특약에서 ‘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월)’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지원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부터 이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이전까지 월단위 기간을 말합니다. 단, 월단위 미만의 끝수는 올립니다.

【 예시안내 】

< 보험금 지급 예시 >

2022년 1월 1일 계약체결 후, 2026년 6월 10일 심뇌혈관질환수술 발생시  
(20년만기 전기납, 사고당시 가입금액 10만원 기준)

잔여보험기간

= 2026년 6월 10일 ~ 2041년 12월 31일  
= 15년 6개월 22일

- 1) 보험료납입지원기간(년) = 15년 (연단위 미만 버림)  
= 2026년 6월 10일 ~ 2041년 6월 09일
- 2) 보험료납입지원잔여기간(월) = 7개월 (월단위 미만 올림)  
= 2041년 6월 10일 ~ 2041년 12월 31일

보험료 납입지원금 :

- 1) 1,800만원 지급(보험료 납입지원기간(15년) 동안  
매년 120만원(12 × 10만원))
- 2) 70만원 지급(보험료 납입지원 잔여기간(7개월) × 10만원)

제3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료납입지원금은 보험수익자의 요청에 의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된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보통약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1항에서 정한 보장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중 뇌졸중진단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 이외의 상해 또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은 보통약관 제5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를 준용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8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환,급여) 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환,급여)(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환,급여)[맞춤고지II] 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환,급여)[맞춤고지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암 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암 MRI검사 보험금	‘암’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암 MRI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암 C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암 CT검사 보험금	‘암’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암 CT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보험금	‘암’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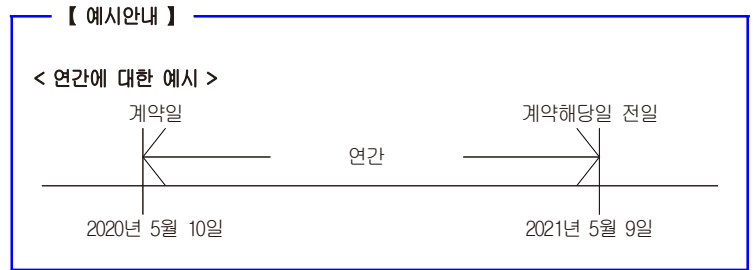
기타  
특별  
약관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암 초음파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한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암 초음파검사 보험금	'암'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암 초음파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급여 암 MRI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암 MRI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치료 후



경과관찰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암 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다-246)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용어해설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암 MRI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암MRI검사' 외에 '급여 암MRI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급여 암 CT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암 CT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치료 후 경과관찰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암 C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다-245 또는 다-245-1)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암 CT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암 CT검사' 외에 '급여 암 CT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제5조 (급여 암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암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치료 후 경과관찰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양전자단층촬영(PET)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암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다-339)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암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암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 외에 '급여 암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급여 암 초음파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암 초음파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암'의 진단 및 치료(치료 후 경과관찰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초음파를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암 초음파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검사료 항목에서 급여항목(나-940, 나-941, 나-942, 나-943, 나-944, 나-946, 나-948, 나-950, 나-951, 나-952, 나-956 또는 나-961)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암 초음파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암 초음파검사' 외에 '급여 암 초음파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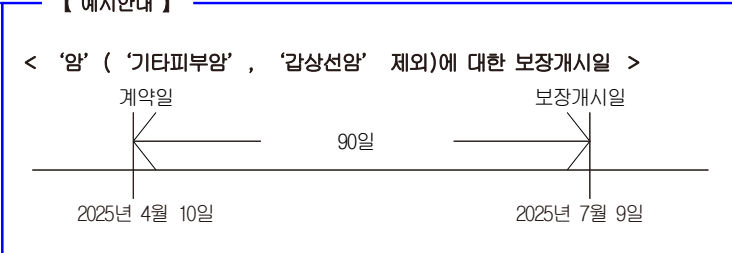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09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보험금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보험금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

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보험금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200% 해당액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보험금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 목적으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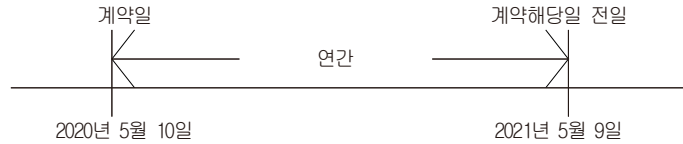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55]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는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용어해설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외에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56]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는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외에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제5조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

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57]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외에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6조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뇌혈관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58]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의료행위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외에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0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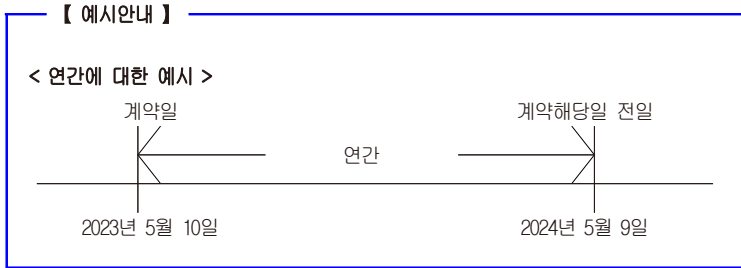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받은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급여 뇌정위적방사선 수술 보험금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이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87]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5

② 제1항의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다만,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을 동반하지 않고 개두술을 이용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제1항의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이외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 점수 및 산정지침)의 제3장(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에서 정하는 내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외에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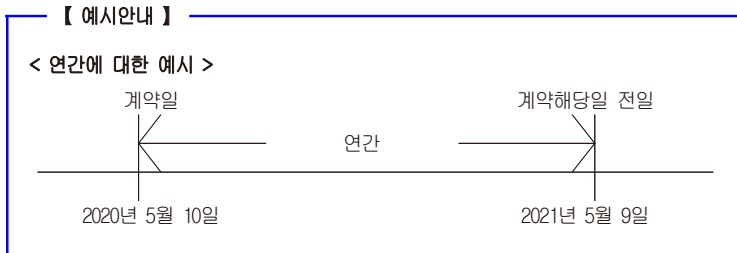
**2-211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환,급여)보장 특별약관 /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환,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의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를 받은 경우 각 검사당 연간 1회에 한하  
 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  
 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특정NGS유전자 패널검사보험금	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I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I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  
 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  
 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  
 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중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  
 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88]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	CB00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I	CB00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	CB00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I	CB006

**【 용어해설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기반 유전자패널검사는 기존 단일 유전자 검사(Sanger sequencing)와 달리 한번에 수십에서 수백개의 유전자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하여 유전자 분석을 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5조(선별급여 실시기관의 승인 및 관리) 및 별표3(실시조건)에 근거한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기반 유전자패널검사 실시 승인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실시된 경우에 한합니다.
- ③ 제1항의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 유전자패널검사’ 외에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가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2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이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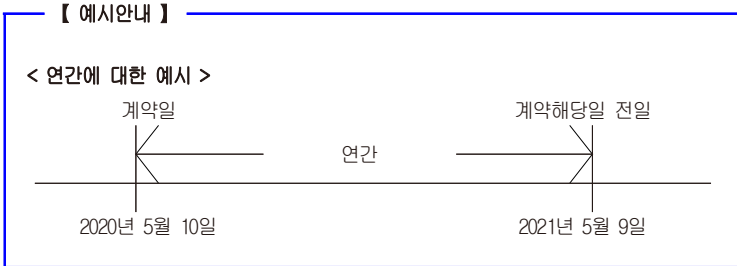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특 정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 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 사’를 받은 경우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보험금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 사’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2조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라 함은 급여 전립선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급여 갑상선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급여 유방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89]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전립선생검-경피적	C8551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갑상선생검-침생검	C8591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유방생검[편측]-침생검	C8641

- ③ 제1항의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는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 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이나 의원에서 행한 의료행위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 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 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바 늘생검조직병리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바늘생 검조직병리검사’ 외에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 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4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무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 필수 기 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

-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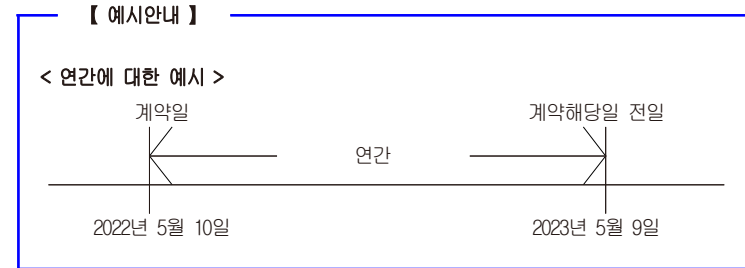
**2-213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질병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 MRI검사비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질병MRI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급여 질병MRI검사의 정의)**

- 이 특약에서 '급여 질병MRI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제1항의 '급여 질병MRI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질병MRI검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질병MRI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질병MRI검사' 외에 '급여 질병MRI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4 질병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질병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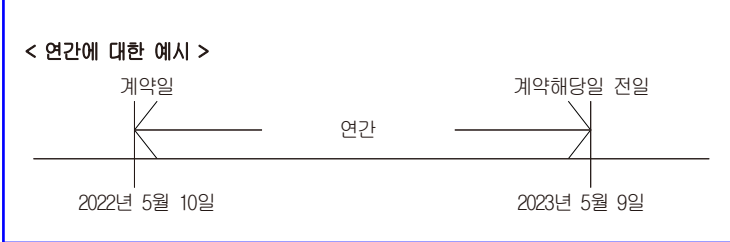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

을 토대로 '급여 질병CT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 CT검사비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질병CT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제1항의 '의료행위' 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급여 질병CT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질병CT검사' 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을 촬영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질병CT검사' 는 「국민건강보험법」 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질병CT검사'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질병CT검사' 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질병CT검사' 외에 '급여 질병CT검사'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기록부, 진단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5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보험기간중에 '산정특례 신규등록'된 경우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의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미만	계약일부 1년이상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질병으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으로 신 규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제2조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107]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

·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인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다만, [별표107]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의 III~V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이 사전에 승인한 요양기관을 통하여 신청해야 하며, 그 중 IV~V에 해당하는 산정특례는 질병관리청 희귀질환 전문위원회로부터 상세불명 희귀질환 및 기타영색체이상질환군의 질환임을 판정받은 후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제3조 ( ‘산정특례 신규등록’ 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 산정특례 재등록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희귀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희귀질환자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치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지

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6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보험기간중에 '산정특례 신규등록' 된 경우에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미만	계약일부 1년이상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질병으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신규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이라 함은 [별표108] '중증난치질환자 산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는 중증치매 산정특례로 분류되는 치매 질환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용어해설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

-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신생아의 호흡곤란(상병코드 P22.0, P22.8, P22.9) 상병은 생후 24개월 이내 신청가능하며, 인체면역바이러스질환(상병코드 B20-B24) 상병은 등록하지 않고 산정특례 적용합니다.

**제3조 ( '산정특례 신규등록' 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에 의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요양기관에 제출하여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에 의한 산정특례 재등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유의사항 】**

**< 산정특례 재등록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8조(산정특례 재등록)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에 따라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가 특례기간 종료시점에 등록된 중증난치질환자의 잔존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질환으로 계속 치료중인 경우 산정특례 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치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중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7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최초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미만	계약일부터 1년이상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질병으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으로 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50%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 ② 제1항의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최초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조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이라 함은 [별표109]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상 분류표'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

·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확진한 경우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 를 작성하여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요양기관(EDI 대행)에 등록 신청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 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정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특별약관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특별약관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 (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 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8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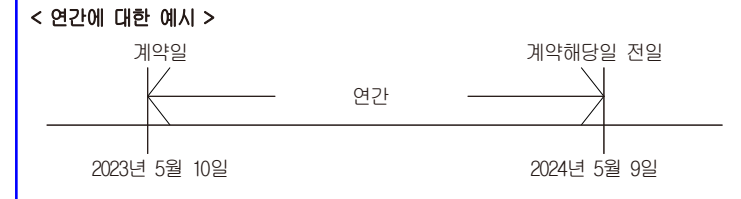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입원중에 '급여 재활치료' (이하 '입원 급여 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재활치료' (이하 '외래 급여 재활치료'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질병재활치료(급여)보험금	질병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5회한 (1일 1회한)

- ② 제1항의 질병재활치료(급여)보험금은 연간 발생한 '입원 급여 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15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재활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재활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여 재활치료'라 함은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항목 중 제7장 이학요법료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단, 고빌리루빈혈증에 대한 광선요법(MM350)은 '급여 재활치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재활치료'에 준하여 '급여 재활치료'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2항에서 정한 '급여 재활치료' 외에 '급여 재활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준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급여 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외래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19 심·뇌혈관질환(특정 II)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특정 II)장애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대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장애보험금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으로 진단확정되고 ‘15대장애’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심·뇌혈관질환(특정 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1] ‘심·뇌혈관질환(특정 II)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II)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심혈관질환(특정 II)	1. 급성심근경색증	121
	2. 후속심근경색증	1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4.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46.0

②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II)’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 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혈관질환(특정 II)’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특정 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특정 II)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15대장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15대장애’ 라 함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장애인’ 이라 함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 심장장애인, 호흡기장애인, 간장애인, 안면장애인, 장루·요루장애인 및 뇌전증장애인([별표122]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분류표’ 참조)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피보험자의 장애상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 확정일로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의 「장애정도판정기준」에 정한 ‘장애판정시기’ 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를 적용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장애인 복지법 및 장애인 복지법 시행규칙(이하 ‘관련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장애등급 판정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의 개정으로 「장애정도판정기준」이 폐지 또는 변경되어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장애등급 판정이 불가능한 경우 회사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따라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정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상·뇌혈관질환(특정II)'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장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장애인 등록증
  4.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장애의 원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③ 제1항 제3호의 장애인 등록증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에 의해 발급한 것으로 합니다.
- ④ 제1항 제4호의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의 진단서로 장애 진단을 의뢰받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상·뇌혈관질환(특정II)장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20 2대질병입원중특정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2대질병입원중특정합병증진단[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출혈 및 뇌경색증 입원 중 폐렴 II'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뇌출혈 및 뇌경색증 입원중 폐렴II 진단보험금	'뇌출혈 및 뇌경색증 입원중 폐렴II'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중 심부전' 으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급성심근경색증 심부전 진단보험금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중 심부전’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 제2조 (뇌출혈 및 뇌경색증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뇌출혈 및 뇌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3]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이 특약에서 ‘폐렴 II’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4] ‘폐렴 II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폐렴 II’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흉부X선 검사, 혈액검사를 포함한 폐기능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폐렴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폐렴 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 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

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⑦ 이 특약에서 ‘심부전’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5] ‘심부전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⑧ ‘심부전’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흉부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 심장초음파검사, 생체표지자(나트륨이노펩티드 등) 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보험기간 중 심부전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부전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 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뇌출혈 및 뇌경색증 입원 중 폐렴 II’이라 함은 ‘뇌출혈 및 뇌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 중 ‘폐렴 II’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폐렴 II’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 중 ‘뇌출혈 및 뇌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이 특약에 있어서 ‘급성심근경색증 입원 중 심부전’이라 함은 ‘급성심근경색증’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 중 ‘심부전’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다만, ‘심부전’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1일 이상 입원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출혈 및 뇌경색증’, ‘폐렴 II’,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심부전’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입원 중” 이라 함은 병원 등에 계속하여 입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가 병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한 때에는 계속하여 입원한 것으로 봅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가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에도 불구하고 입원 후 1일 이내에 ‘뇌출혈 및 뇌경색증’, ‘폐렴 II’,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심부전’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보고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진단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 ①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뇌출혈 및 뇌경색증 입원중 폐렴 II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급성심근경색증 입원중 심부전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항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21 질병수술(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종합병원 질병수술보험금	질병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비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작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한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Q00 ~ Q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한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Q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4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22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보험금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한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Q00 ~ Q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한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4]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23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경증질병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질병수술보험금 (경증질병제외)	질병(경증질병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제2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눈 관련 질환의 경우 레이저(Laser)에 의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다만, 다래끼 및 콩다래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 및 선천성질환으로 인한 레이저(Laser) 수술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같은 질병으로 두 종류 이상의 질병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이상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질병수술보험금(경증질병제외)만 지급합니다. 질병 수술을 받고 365일이 경과한 후 같은 질병으로 새로운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질병으로 간주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질병수술보험금(경증질병제외)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2.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000 ~ 099)
  4.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5. 비만(E66)
  6. 요실금(N39.3, N39.4, R32)
  7.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8.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9. 경증질환(다래끼(H00), 결막염(H10), 바이러스성결막염(B30),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H92), 외이염(H60), 티눈(L84))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수술은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2.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착취진과 관련된 수술
  3.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4.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5.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42]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6.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가. 쌍꺼풀수술(이중꺼름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말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꺼름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옹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라.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224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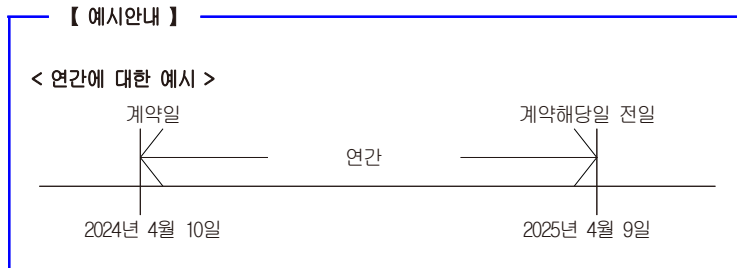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갱신형),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흡인,천자,절개,배액,배농)(연간1회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신경차단술)(연간1회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기타시술)(연간1회한)’의 3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아래 해당하는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장에 대하여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질병으로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흡인, 천자, 절개, 배액, 배농)'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신경차단술) (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질병으로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신경차단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기타시술) (연간1회한)보장 보험금	질병으로 '질병 특정급여시술치료(기타시술)' 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②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의 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 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

위 중 [별표119] 특정시술치료(급여)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 외에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인 경우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동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 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25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상급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상급종합병원)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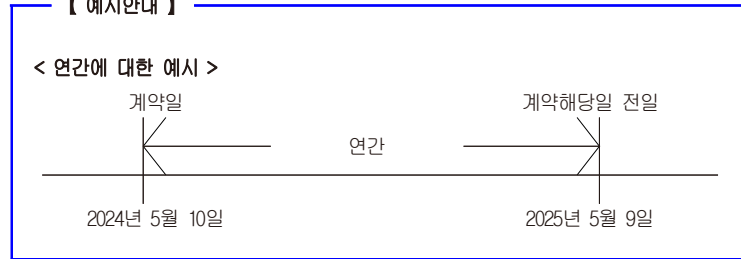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허혈심장질환 통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 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②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6. 만성 허혈심장병	125

- ③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4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 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 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심장질환'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심장질환' 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26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종합병원)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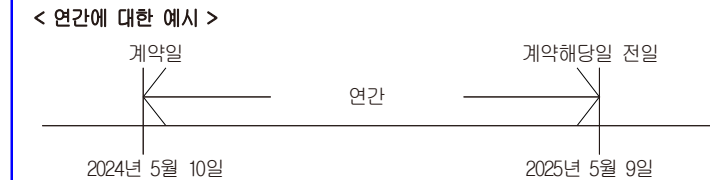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종합병원)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종합병원)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 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②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6. 만성 허혈심장병	125

③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

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4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27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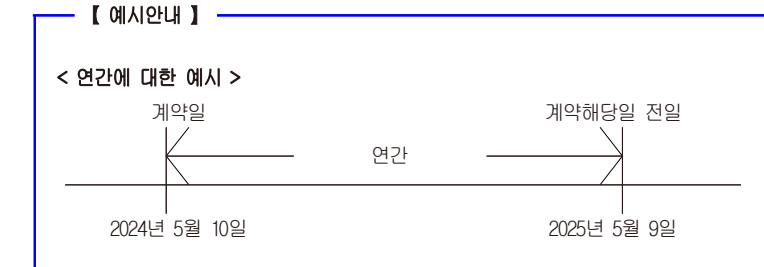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30일한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 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②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6. 만성 허혈심장병	125

③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 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 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심장질환'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심장질환' 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2-228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상급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상급종합병원)  
[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6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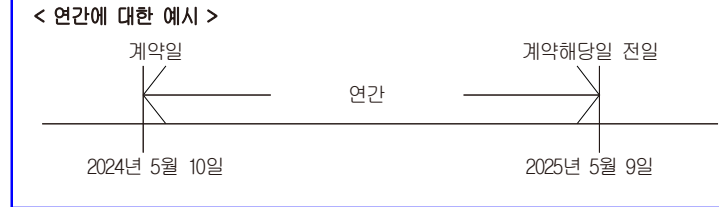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상급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6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허혈심장질환 통원급여금 (상급종합병원)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 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6. 만성 허혈심장병	125

- ③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구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제4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급종합병원 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의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

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의 의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상급종합병원의 정의)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상급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229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종합병원)  
[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6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 (종합병원)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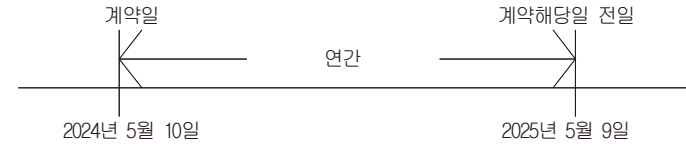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종합병원)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6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허혈심장질환 통원급여금 (종합병원)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 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6. 만성 허혈심장병	125

- ③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허혈성질환’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제3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제4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성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종합병원 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종합병원에 통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

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허혈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 의사에 의해 ‘허혈성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성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성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성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⑤ 피보험자가 종합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제3조(종합병원의 정의)의 종합병원 지정이 취소된 경우 종합병원 지정 취소 적용일 전일까지의 통원에 대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230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보장 특별약관 /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혈관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6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뇌혈관질환통원급여금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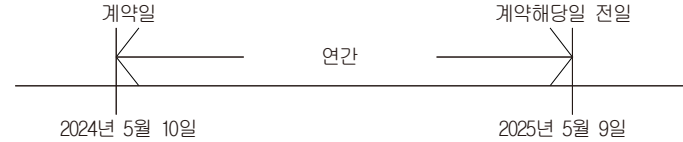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허혈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60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허혈심장질환통원급여금	‘허혈심장질환’ 의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60일한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 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 ② 이 특약에서 ‘허혈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6. 만성 허혈심장병	125

- ③ ‘뇌혈관질환’ 및 ‘허혈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



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허혈심장질환’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뇌혈관질환’ 또는 ‘허혈심장질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의 사에 의해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뇌혈관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이란의 사에 의해 ‘허혈심장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허혈심장질환’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허혈심장질환’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혈심장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1 심·뇌혈관질환(특정Ⅲ)특정재활치료(1일1회,연간90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특정Ⅲ)특정재활치료(1일1회,연간90회한,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특정Ⅲ)’으로 진단 확정되고 병원에 입원중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Ⅲ) 특정재활치료 I’ (이하 ‘입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Ⅲ) 특정재활치료 I’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Ⅲ) 특정재활치료 I’ (이하 ‘외래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Ⅲ) 특정재활치료 I’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심·뇌혈관질환(특정Ⅲ) 특정재활치료 I (급여)보험금	‘심·뇌혈관질환(특정Ⅲ)’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Ⅲ) 특정재활치료 I’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90회한 (각각 1일 1회한)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특정Ⅲ)’으로 진단 확정되고 병원에 입원중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Ⅲ) 특정재활치료 II’ (이하 ‘입

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 '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 (이하 '외래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 (급여)보험금	'심·뇌혈관질환(특정III)'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90회한 (각각 1일 1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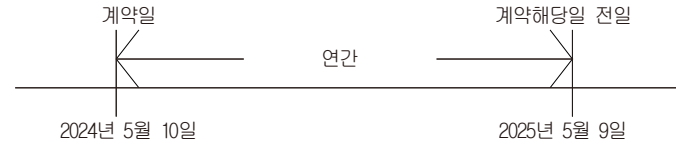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특정III)'으로 진단 확정되고 병원에 입원중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I' (이하 '입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I'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I' (이하 '외래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I'라 합니다.)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1일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I (급여)보험금	'심·뇌혈관질환(특정III)'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I'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90회한 (각각 1일 1회한)

- ④ 제1항의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 (급여)보험금, 제2항의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 (급여)보험금 및 제3항의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III (급여)보험금은 연간 발생한 '입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와 '외래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각각 연간 최대 9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⑤ 제4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심·뇌혈관질환(특정III)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특정III)'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서 [별표126] '심·뇌혈관질환(특정III)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II)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심혈관질환(특정III)	1. 불안정협심증	120.0
	2. 연속적 기재가 있는 협심증	120.1
	3. 급성심근경색증	121
	4. 후속심근경색증	122
	5.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6.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124.0
	7. 드레슬러증후군	124.1
	8.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46.0

- ② '심·뇌혈관질환(특정III)'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II)'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혈관질환(특정III)'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특정II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특정III)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 및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 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 목적의 심·뇌혈관질환(특정III) 치료 중, 심·뇌혈관질환(특정III) 치료 완료 후 심·뇌혈관질환(특정III)치료로 인한 구조적 손상과 기능적 장애를 전문재활인력이 진단, 평가 및 치료하여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상태를 최적의 수준으로 향상 및 유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 장애를 최소화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 라 함은 ‘심·뇌혈관질환(특정III)’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단순운동치료[1일당]	MM101

- ③ 이 특약에서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 라 함은 ‘심·뇌혈관질환(특정III)’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1일당]	MM102
운동치료-등속성운동치료[1일당]	MM103
압박치료[1일당]	MM190
복합리프몰리치료[1일당]	MM200

- ④ 이 특약에서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 라 함은 ‘심·뇌혈관질환(특정III)’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해당하는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MM105
작업치료-단순작업치료	MM111
작업치료-복합작업치료	MM112
작업치료-특수작업치료	MM113
일상생활동작훈련치료[1일당]	MM114
기능적 전기자극치료	MM151
재활기능치료-매트밋이동치료	MM301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	MM302
연하장애재활치료	MX141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MZ008
심장재활 - 심장재활교육	MM451
심장재활 - 심장재활평가	MM452
심장재활 - 심장재활치료	MM453
기립경사훈련[1일당]	MM460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MM304

- ⑤ 제2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에 준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를 결정합니다.
-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 외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한다)에 의하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유의사항 】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와 ‘외래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 각각에 대해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외래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II/III’를 받은 경우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1 >

병원에 통원하여 단순운동치료(MM101)와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MM102), 재활기능치료-보행치료(MM302)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심·뇌혈관질환(특정III)특정재활치료 I(급여)보험금, 심·뇌혈관질환(특정III)특정재활치료 II(급여)보험금, 심·뇌혈관질환(특정III)특정재활치료 III(급여)보험금 **각1회 지급**

< 예시2 >

병원에 통원하여 운동치료-복합운동치료(MM102) 재활치료를 받고, 그 날 입원하여 압박치료(MM190)와 복합림프물리치료(MM200)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심·뇌혈관질환(특정III)특정재활치료 II(급여)보험금 **2회** 지급 (외래 1회 + 입원 1회)

< 예시3 >

입원하여 80일간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를 받고, 퇴원 후 병원에 통원하여 20일간 급여 심·뇌혈관질환(특정III) 특정재활치료 I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90회** 지급(입원과 외래를 각각 합산(100회)하여 연간 90회 한도)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2 특정질환로봇수술(연간1회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특정질환로봇수술(연간1회환)[맞춤고지Ⅲ](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자궁및난소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 자궁및난소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로봇수술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보험금	‘특정 자궁및난소질환’으로 진단받고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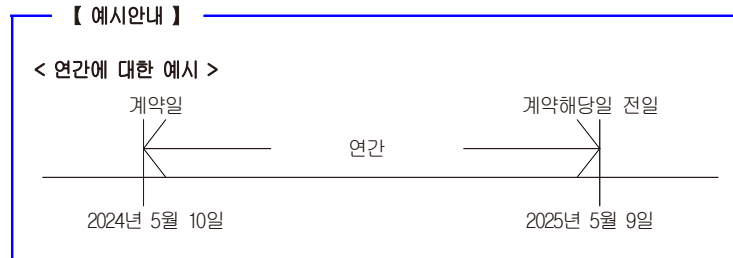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로봇수술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보험금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으로 진단받고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로봇수술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 보험금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으로 진단받고 ‘로봇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2조(특정 자궁및난소질환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7]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8]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9]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로봇수술’ 이라 함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아래의 ‘로봇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다빈치(da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행한 것에 한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	QZ966

**【 용어해설 】**

**[로봇수술]**

로봇수술이란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통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⑤ 제4항의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 또는 레보아이(Revo-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로봇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⑥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로봇수술’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⑦ 제4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4항에서 정한 ‘로봇수술’ 외에 ‘로봇수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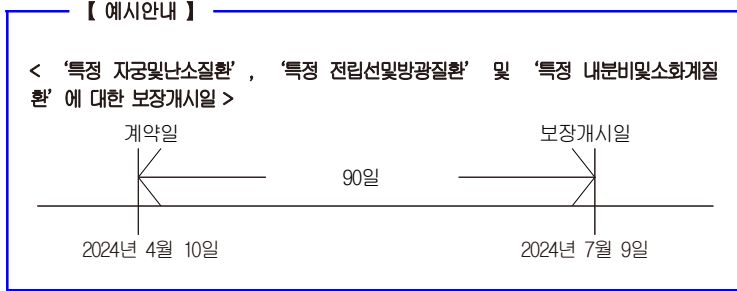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고 이 특약에서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및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특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및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부터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및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및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및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3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 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 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 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자궁특정질환’ 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자궁특정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자궁질환 고강도초음 파 집속술치료 비	‘자궁특정질환’ 으로 ‘고강도초음파 집속술’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자궁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자궁특정질환’ 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4] ‘자궁특정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자궁의 평활근종(D25) 또는 자궁선근증(N80.0)을 말합니다.
- ② ‘자궁특정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자궁특정질환’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이라 함은 ‘자궁특정질환’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자기공명영상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RZ565)’ 또는 ‘초음파 유도하 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자궁선근증)(RZ566)’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9.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기공명영상유도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267. 초음파유도하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 사용목적: 체외 고강도초음파를 이용하여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병변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
- 사용대상: 자궁근종, 자궁선근증 환자
- 시술방법: 고강도초음파를 체내 중앙조직의 한 점에 집중시켜 목표한 병변의 응고괴사를 유도시킴

【 용어해설 】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진료 지침(대한산부인과학회, 2016.7.15)】

- 주요 적응증: 18세 이상의 환자로써 출혈, 빈혈, 통증 등의 증상을 동반하는 자궁근종 혹은 자궁선근증을 가진 폐경 전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 일반적 금기증: (1)임신부  
(2)여성 생식기 관련 악성 병변이 의심되거나 진단된 경우  
(3)골반염 등 생식기 염증이 있는 경우  
(4)중증의 전신질환이 있는 경우

- ② 제1항의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술기록지상 ‘고강도초음파집속술’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고강도초음파집속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고강도초음파집속술’ 외에 ‘고강도초음파집속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4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갑상선특정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갑상선특정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갑상선질환 고주파열치 료비	‘갑상선특정질 환’으로 ‘갑상선고주파 열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갑상선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갑상선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5] ‘갑상선특정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갑상선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 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함)

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갑상선특정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이라 함은 ‘갑상선특정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증상이 있는 갑상선양성결절의 고주파열치료술(PZ612)’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이란 고주파가 발생하는 특수바늘(전극)을 갑상선 종양에 삽입하여 고열로 괴사시키는 의료행위를 말하며, 대한갑상선학회와 대한갑상선영상의학회의 갑상선 양성결절의 고주파 절제술 적응증 및 권고사항 내용을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술기록지상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 외에 ‘갑상선고주파열치료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

-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강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형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형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5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 1회한)보장 특별약관/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 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 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 1회한)[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유방특정질환’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유방특정질환’의 치료 또는 조직검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유방질환 진공보조장 치이용절제 치료비	‘유방특정질환’으로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제2조 (유방특정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유방특정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46] ‘유방특정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유방특정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는 제외합니다)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유방특정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제3조(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의 정의)

이 특별약관에서 ‘진공보조장치이용절제술’ 이라 함은 ‘유방특정절제’의 치료 또는 조직 검사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여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770.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

- 사용목적: 유방 양성병변의 치료를 위한 절제
- 사용대상: 유방 양성병변 환자
- 시술방법: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에 탐침을 삽입하여 탐침 내로 병변을 흡인하며 절제함

###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7조(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0조(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236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II] 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및 ‘맞춤고지II’ 포함)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주요치료)보장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항암호르몬치료)보장
-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보장

## 2-236-1.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주요치료) 보장

###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유사암' 제외)수술보험금	'암'('유사암' 제외)으로 암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유사암' 제외)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암'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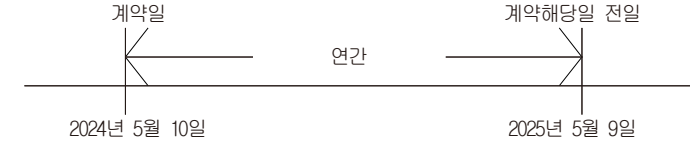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유사암' 제외)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암'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④ 제1항 내지 제 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방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 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 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



항암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5조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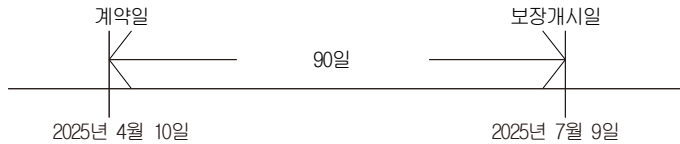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에서 제외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호르몬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⑤ 암수술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6-2. 암주요치료비Ⅲ(유사암제외)(연간1회한)(항암호르몬치료)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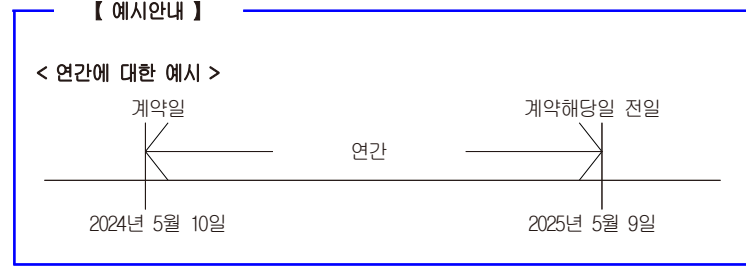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 제외)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유사암 제외)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	'암' (유사암 제외)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

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별표79] 참조)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 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② 이 보장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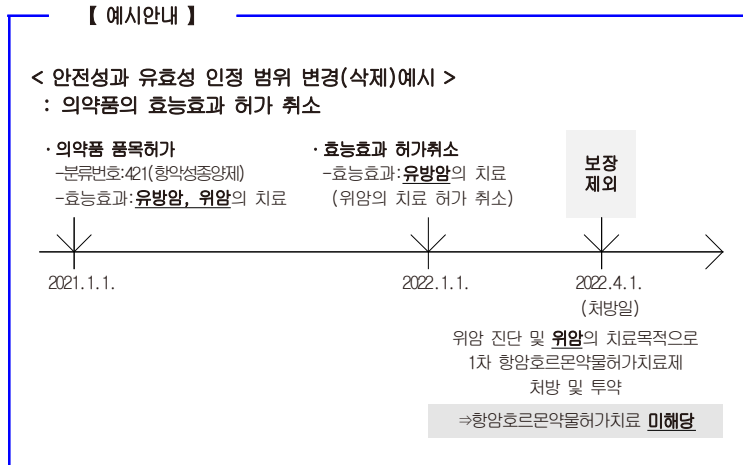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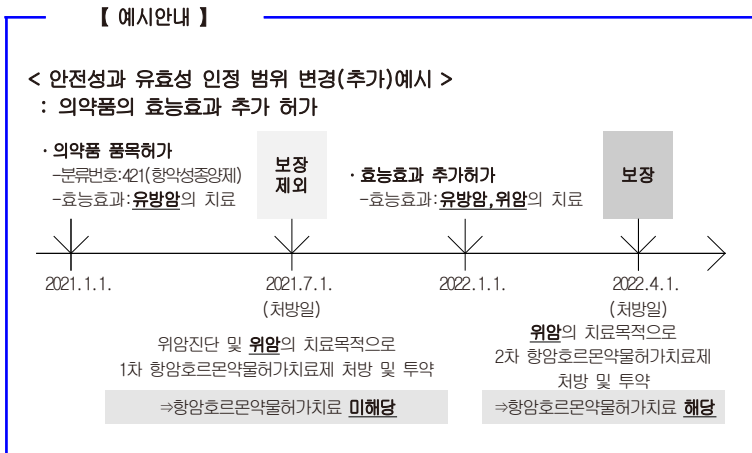
- ⑥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 ⑦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항암호르몬 약물허가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⑧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애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강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장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장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6-3. 암주요치료비III(유사암제외)(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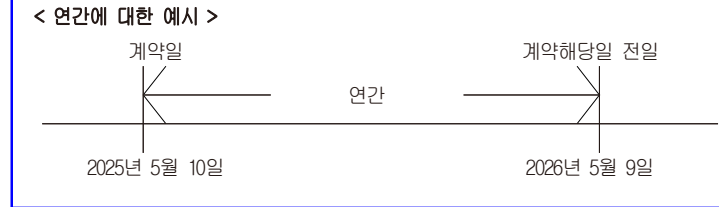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중환자실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5조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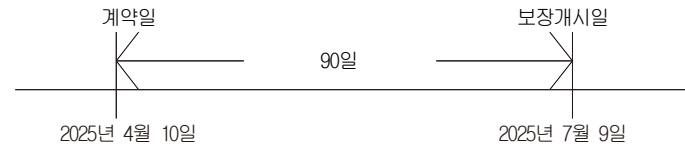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유사암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유사암' 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유사암 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유사암 제외)중환자실 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암(유사암 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유사암 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⑦ 다만, 제6항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예시안내 】**

**<예시1> 암(유사암 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예시2> 동일한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5.3.1	보장개시일	-	
2025.3.5.-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2025.10.1.-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미충족)
2026.3.15.-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충족)

- ⑧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유사암 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피보험자가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에 해당하

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유사암 제외)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회사는 암 잔존종양 없이 경과 관찰 중 새로이 발견된 질병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죽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장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  
 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장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  
 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  
 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  
 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  
 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가 적용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  
 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7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및 ‘맞춤고지Ⅱ’ 포함)  
 -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주요치료)보  
 장  
 -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항암호르몬치  
 료)보장  
 -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  
 보장

**2-237-1.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주요치료) 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  
 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  
 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  
 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  
 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유사암’ 제외)수술보험금	‘암’(‘유사암’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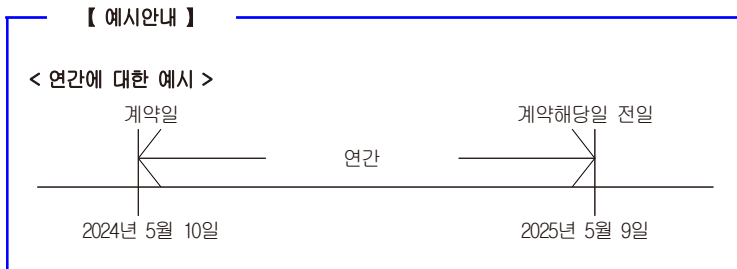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 '유사암' 제외)의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 금액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 '유사암' 제외)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4조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5조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암수술은 항암 방사선치료(수술제외)에서 제외합니다.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7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호르몬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⑤ 암수술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⑥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유사암’ 제외)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장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장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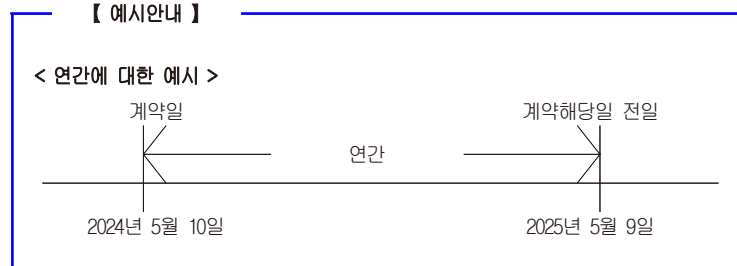
**2-237-2. 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항암호르몬치료)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유사암’ 제외)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유사암’ 제외)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	‘암’ (‘유사암’ 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료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4조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별표79] 참조)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 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약중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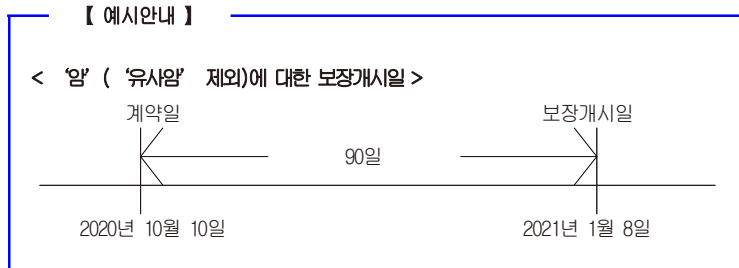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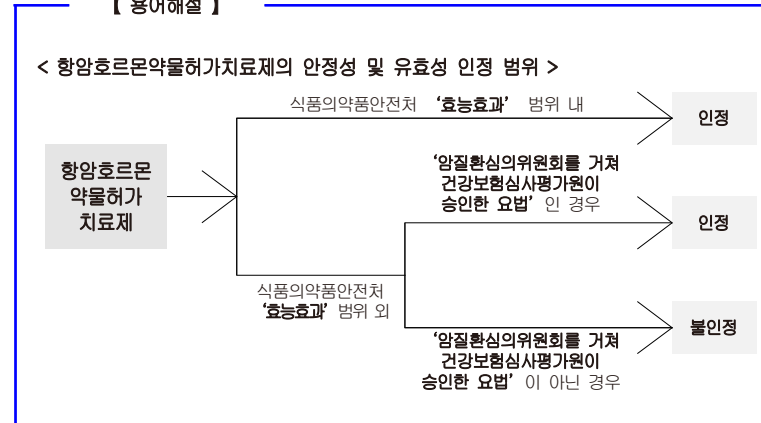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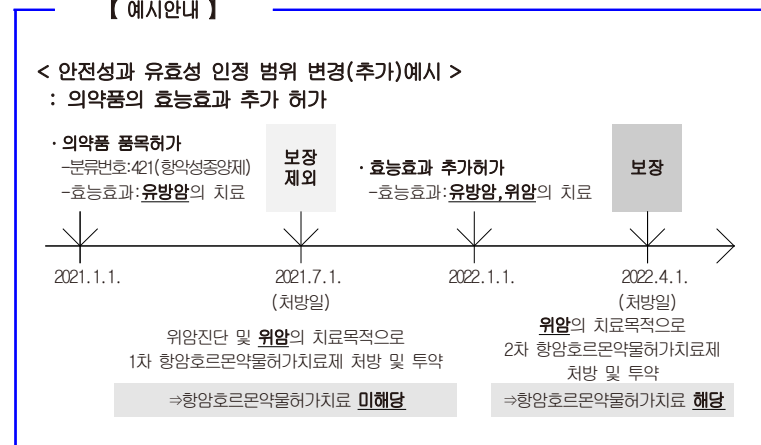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④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라 함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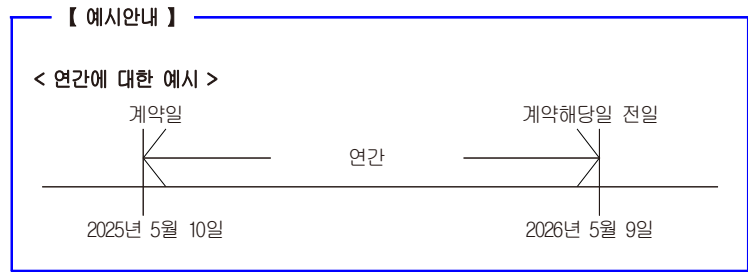
**2-237-3. 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유사암' 제외)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 입원급여금	'암'(유사암제외)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중환자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②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중환자실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구별 환자구조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7조 (암(유사암제외)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 '유사암' 제외)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 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

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암(유사암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 중에 발견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유사암' 제외)'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암(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암( '유사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입원이라도 암(유사암제외)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암(유사암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암(유사암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⑦ 다만, 제6항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예시안내 】**

**<예시1> 암(유사암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최초 입원일, 암(유사암제외) 중환자실입원 급여금이 지급된 날, 퇴원없이 계속 입원, 보장재개, ...

**(연간 1회한 한도 내에서 보장)**

**<예시2>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5.3.1	보장개시일	-	
2025.3.5.-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2025.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미충족)
2026.3.15.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충족)

- ⑧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암(유사암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암(유사암제외)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⑩ 피보험자가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암(유사암제외)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

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질환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회사는 암 잔존종양 없이 경과 관찰 중 새로이 발견된 질병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로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장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장의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8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및 '맞춤고지Ⅱ' 포함)  
-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주요치료)보장

-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항암호르몬치료)보장
-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보장

**2-238-1.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주요치료)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수술 보험금	'기타피부암'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수술 보험금	'갑상선암'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제자리암수술 보험금	'제자리암'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수술 보험금	'경계성종양' 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갑상선암' 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제자리암' 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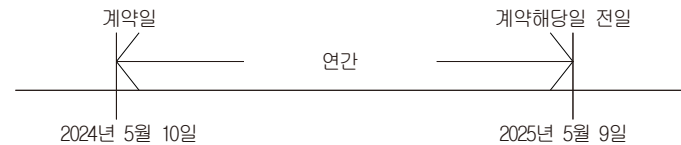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기타피부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갑상선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제자리암' 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경계성종양' 으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5조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에서 제외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호르몬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암수술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0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  
됩니다.

### 제11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238-2. 유사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항암호르몬치료)보장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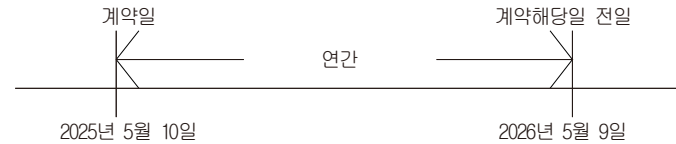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  
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보험금	'갑상선암'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 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보험금	'제자리암'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 ②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  
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조건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4조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별표79] 참조)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약품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 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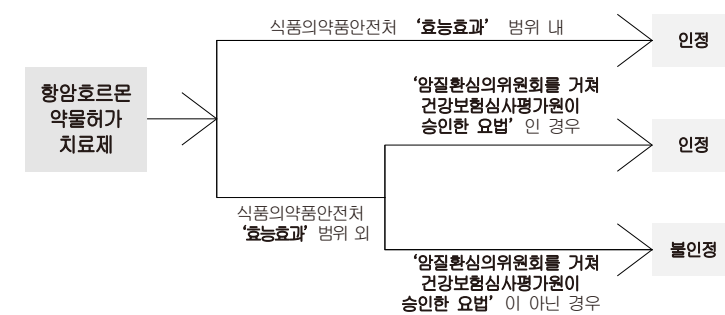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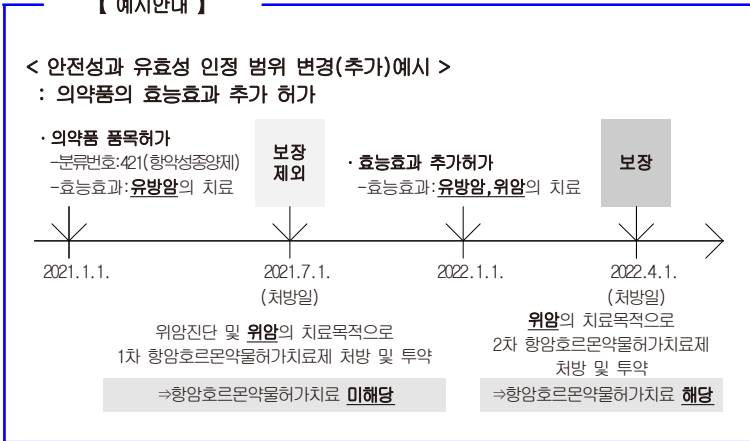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항암호르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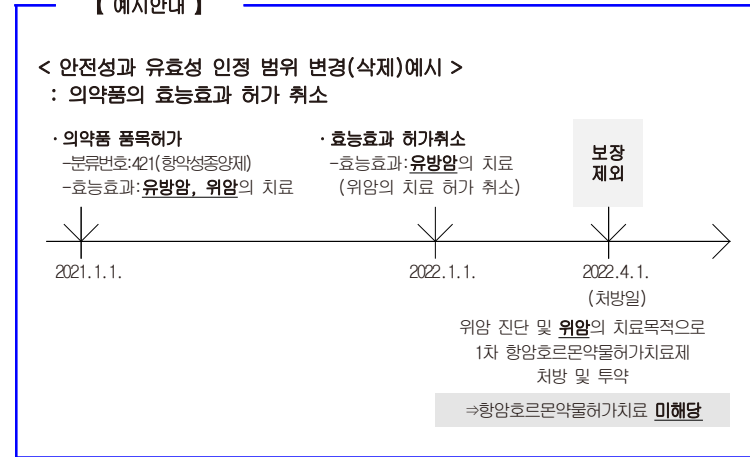
약물허가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예시안내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양질향상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죽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0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 됩니다.

### 제11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238-3. 유사암주요치료비Ⅲ(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보장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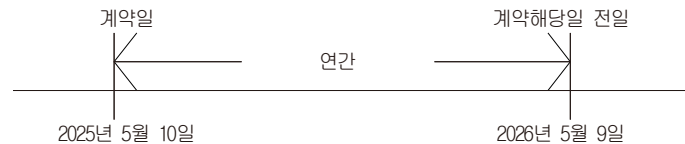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 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급여금	‘유사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중환자실’ 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중환자실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부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암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5조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유사암’ 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유사암’ 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사암’ 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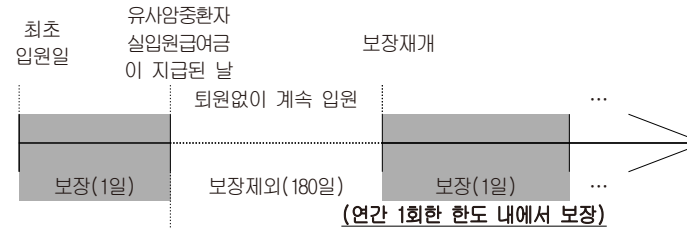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유사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사암’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사암’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유사암’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사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유사암’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사암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다만, 제4항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예시안내 】**

**<예시>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예시> 동일한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5.3.1	보장개시일	-	
2025.3.5.-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2025.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미충족)
2026.3.15.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충족)

- ⑥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피보험자가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회사는 암 잔존종양 없이 경과 관찰 중 새로이 발견된 질병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9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및 ‘맞춤고지II’ 포함)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주요치료)보장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항암호르몬치료)보장  
-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중환자실입원)보장

**2-239-1.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주요치료)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수술 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수술 보험금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제자리암수술 보험금	‘제자리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수술 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제자리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항암약물치료보험금 (호르몬약물치료제외)	'경계성종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를 받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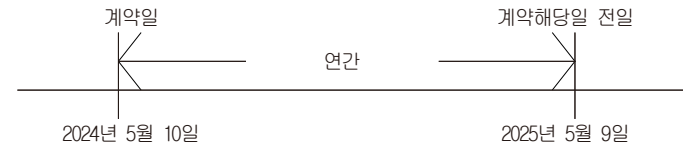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제자리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수술제외)	'경계성종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를 받은 경우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조건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4조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호르몬약물치료제외)’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헴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제5조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헴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다만, 암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수술제외)에서 제외합니다.

**제6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요)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구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7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호르몬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③ 암수술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9-2.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 1회한)(항암호르몬치료)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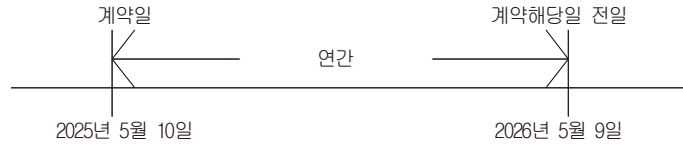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감상선암 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보험금	‘감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제자리암 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보험금	‘제자리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경계성종양 항암호르몬약물허가 치료보험금	‘경계성종양’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 ②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입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유사암' 제외 ) 및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함

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제4조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별표79] 참조)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치료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 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3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 용어해설 】**

④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위)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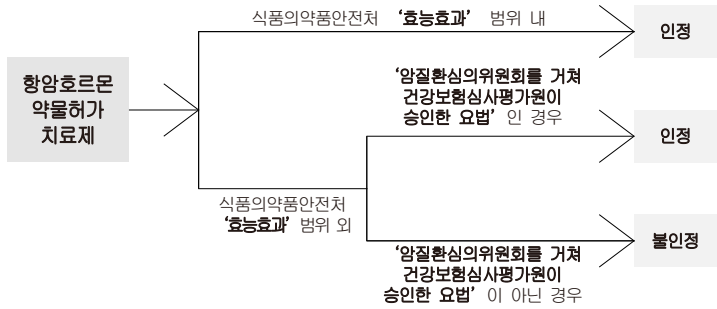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보험금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에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항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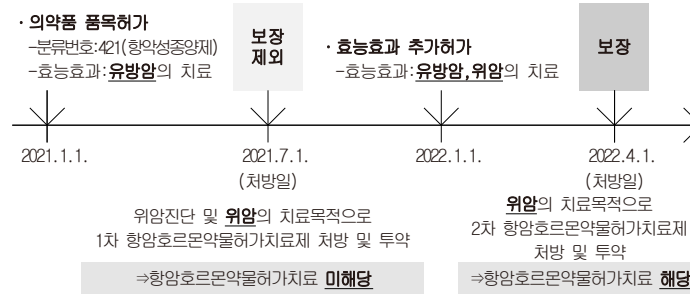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4조(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등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

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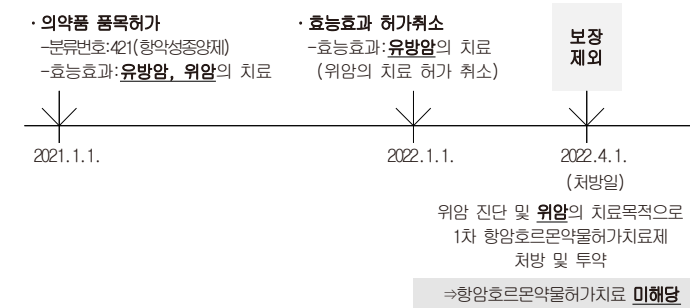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추가)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추가 허가**



**【 예시안내 】**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변경(삭제)예시 >  
: 의약품의 효능효과 허가 취소**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 (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1) 진단명
      -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나.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39-3. 유사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 1회한)(중환자실입원)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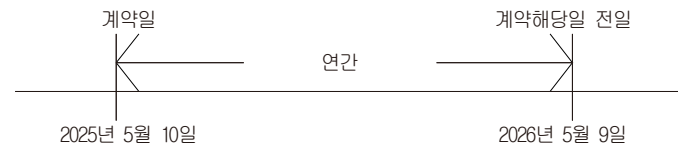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유사암 중환자실입원 급여금	'유사암'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②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



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보장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보장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⑨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 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중환자실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중환자실' 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측정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②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 제4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중환자실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5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구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제6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보장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 제7조 (유사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유사암'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유사암'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유사암'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은 '중환자실'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유사암'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유사암'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

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유사암' 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유사암'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유사암' 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유사암' 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유사암' 에 대한 입원이라도 유사암중환자실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 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⑤ 다만, 제4항의 새로운 입원인 경우에도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연간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 예시안내 】**

**<예시>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 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

**<예시> 동일한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회이상 입원한 경우**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5.3.1	보장개시일	-	
2025.3.5. -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2025.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총족) 연간1회한 한도 (미충족)
2026.3.15. -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총족) 연간1회한 한도 (총족)

- ⑥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⑦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⑧ 피보험자가 중환자실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에 해당하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유사암중환자실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질환
- ④ 제1항 내지 제3항 이외에도 회사는 암 잔존종양 없이 경과 관찰 중 새로이 발견된 질병 또는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13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0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장질환 수술보험금	‘심장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비	‘심장질환’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뇌혈관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비	‘뇌혈관질환’으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장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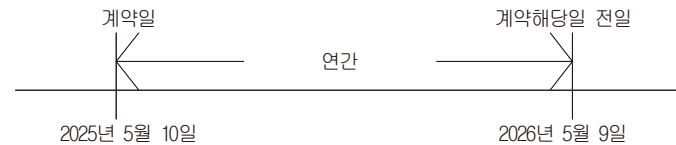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인공호흡기치료’는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뇌혈관질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보험금	‘심뇌혈관질환’으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심장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1] ‘심장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장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장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장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3조 (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혈관 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4조 (심뇌혈관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심뇌혈관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심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단, ‘뇌혈관질환’ 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심장질환 중 ‘허혈성심장질환’ 의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 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심뇌혈관질환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제5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6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7조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이라 함은 ‘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의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무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 ②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제외한 것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8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7조(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의 정의)에서 정한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9조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 111]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인공호흡기치료'는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인공호흡기 치료 (12시간 초과)	·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 이용)	M0860
	·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	M5860
저체온 요법	· 치료적저체온요법(1일당)	M5970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M5990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처치일 다음날부터 1일당	M5991
대동맥 내 풍선펌프	· 대동맥내풍선펌프	01921
	· 대동맥내풍선펌프-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01922
부분 체외순환	· 부분체외순환	01901
	·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01902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01903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이후(1일당) -10시간 초과 계속 사용	01904
	· 부분체외순환-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01905
	·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01906

② 제1항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도

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외에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심장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은 '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라 의사에 의해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생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심장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심장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심장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종합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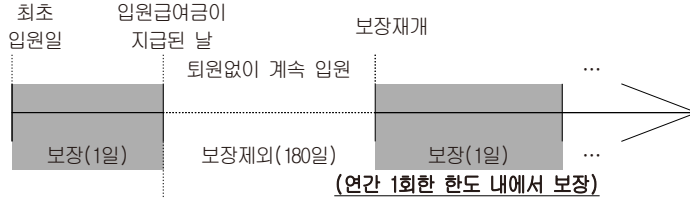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예시1>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예시2> 동일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 회이상 입원한 경우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5.3.1	보장개시일	-	
2025.3.5.-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2025.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미충족)
2026.3.15.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충족)

- ⑤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심장질환중환자실(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해당하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심장질환중환자실(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 병원이 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중환병원(이상)(요양병원제외)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피보험자에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

종)에 따른 급여 특정 중증치료(4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에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연간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간 1회를 한도로 급여 특정 중증치료(4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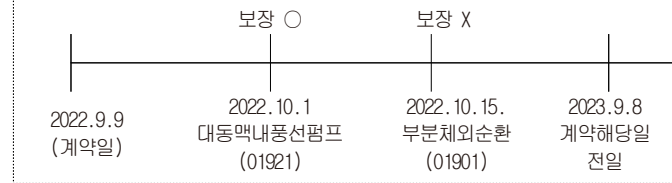
【 예시안내 】

<예시1>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M5860)과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M5990)을 동시에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을 받더라도 하나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치료보험금을 지급함)

<예시2>

병원에 입원하여 대동맥내풍선펌프(01921)를 받은 이후, 부분체외순환(01901)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연간1회 한도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치료보험금을 지급함)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해,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2. 성병
  -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제왕절개수술
  -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4. 정상분만, 치과질환

**제12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1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맞춤고지Ⅲ](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거나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상급종합병원 심장질환 수술보험금	‘심장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급종합병원 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비	‘심장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상급종합병원 뇌혈관질환 수술보험금	‘뇌혈관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상급종합병원 뇌혈관질환 혈전용해치료비	‘뇌혈관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각각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심장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심장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입원급여금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심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인공호흡기치료’는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6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심장질환’ 및 ‘뇌혈관질환’의 직접적 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 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 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직)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 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관의 시설규격]에 따른 중환자실 요건 >

-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 및 부정전시스템 갖추어야 함
-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함
- 병상 1개당 면적은 15㎡ 이상(신생아중환자실은 5㎡ 이상)
-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등 구비
- 중환자실 1개 단위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포함), 심전도기록기 등 구비
- 전담의사를 둘 수 있음(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 필수)
- 전담간호사를 두어야 함

③ 이 특약에서 ‘중환자실’이라 함은 의료법 시행규칙의 별표 4에서 정한 중환자실([별표 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참조)을 말합니다. 다만, 의료법상 기준과 규격에 부합하지 않는 집중치료실, 무균실, 격리병실 등은 제외하며 국외의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은 제외합니다.

제8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 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제7조(상급종합병원 등의 정의)에서 정한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 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9조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 111]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인공호흡기치료'는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인공호흡기 치료 (12시간 초과)	•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 이용)	M0860
	•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	M5860
저체온 요법	• 치료적저체온요법(1일당)	M5970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M5990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처치일 다음날부터 1일당	M5991
대동맥 내 풍선펌프	• 대동맥내풍선펌프	01921
	• 대동맥내풍선펌프-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01922
부분 체외순환	• 부분체외순환	01901
	•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01902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01903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이후(1일당)	01904
	-10시간 초과 계속 사용	
	• 부분체외순환-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01905
•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0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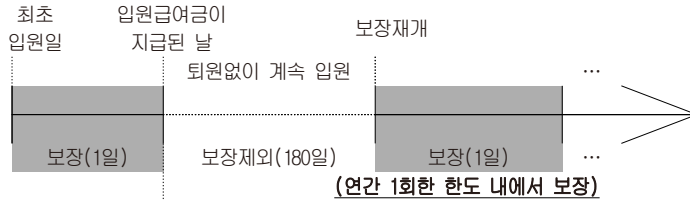
- ② 제1항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외에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심장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은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날만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④ 피보험자가 동일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봅니다.  
그러나 동일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에 대한 입원이라도 심장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심장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심장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예시1> 입원급여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 중인 경우



<예시2> 동일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2 회이상 입원한 경우

날 짜	구 분	보장여부	사유
2025.3.1	보장개시일	-	
2025.3.5.- 3.30	중환자실입원(1차)	지급	
2025.10.1. - 10.15	중환자실입원(2차)	부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미충족)
2026.3.15. -3.30	중환자실입원(3차)	지급	1차 퇴원후 180일 경과 (충족) 연간1회한 한도 (충족)

- ⑤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봅니다.
- ⑥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심장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⑦ 피보험자가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실(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는 병실(병원)로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 이전하여 입원한 날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심장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 또는 뇌혈관질환중환자실(상급종합병원)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상급종합병원 이외의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해당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해당하게 된 경우 상급종합병원 적용일부터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지급합니다.
- 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항에서 피보험자에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에 따른 급여 특정 중증치료(4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⑩ 피보험자에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연간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간 1회를 한도로 급여 특정 중증치료(4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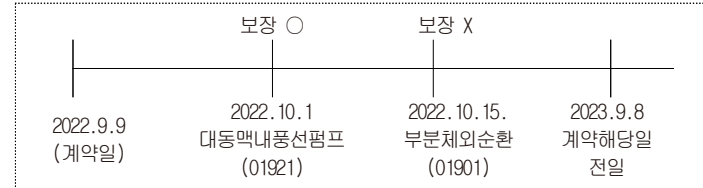
<예시1>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M5860)과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M5990)을 동시에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을 받더라도 하나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치료보험금을 지급함)

<예시2>

병원에 입원하여 대동맥내풍선펌프(01921)를 받은 이후, 부분체외순환(01901)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연간1회 한도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치료보험금을 지급함)

제11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경우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수술, 재양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치료질환

제12조 (특약의 소멸)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약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2-242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가 필요하여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지원 받기를 원할 경우에는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이 특약에서 정한 간병인을 보험수익자에게 지원해 드립니다. 이 경우 보통약관 제21조(보험수익자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합니다.  
다만, 간병인 지원 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하며 피보험자가 회사에 간병인 지원을 신청하였음에도 회사가 부득이한 이유로 간병인을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 사용비용을 보험수익자에게 제2항에서 정한 간병인지원비용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② 간병인지원비용이라 함은 제1항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회사가 정한 비용을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 회사가 정한 비용 >

계약일(갱신일)에 따라 그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 내 「현물급부공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간병인을 지원 받기 원하는 경우, 간병인 지원을 원하는 일자로부터 48시간 이전에 회사로 신청하여야 하며, 회사에 간병인을 신청하지 않고 임의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제1항의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의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병인'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 【 예시안내 】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족, 채워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 등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

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2. 「치료감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 제5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

이 특약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간병인 지원일수의 합계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병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의 간병인지원은 1일을 기준으로 하며 간병인을 지원한 시점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이라 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사정으로 간병인을 24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도 1일로 간주하며, 이때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시간에 대한 간병인지원비용 상당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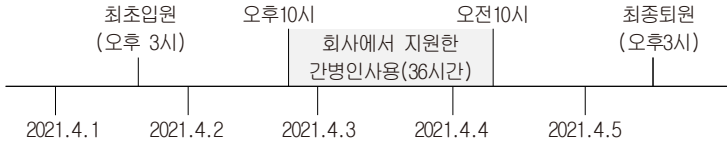
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회사가 지원하는 간병인이 아닌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사용한 간병인에 대해 1일당 8시간미만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간병인사용비용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

< 예시1 : 간병인 지원일수(회사에서 지원한 간병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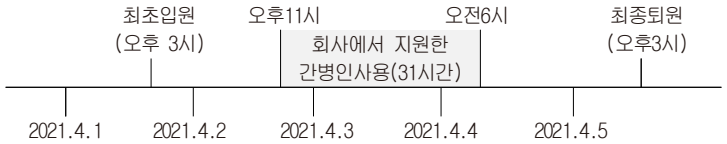
- 최초입원일시: 2021년 4월 1일 오후 3시
- 간병인 사용시간: 1일 12시간 (36시간)



⇒ 총 입원일수 : 5일 (2021.4.1. ~ 2021.4.5)  
간병인 지원일수 : 2일 (24시간+12시간)

< 예시2 : 간병인 지원일수(회사에서 지원한 간병인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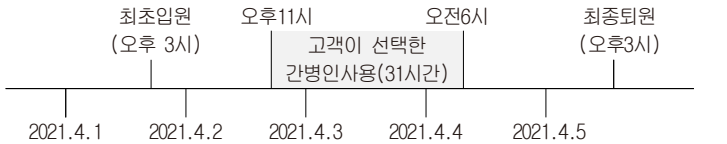
- 최초입원일시: 2021년 4월 1일 오후 3시
- 간병인 사용시간: 1일 7시간 (31시간)



⇒ 총 입원일수 : 5일 (2021.4.1. ~ 2021.4.5)  
간병인 지원일수 : 2일 (24시간+7시간)

< 예시3 : 간병인 지원일수(고객이 선택한 간병인사용)>

- 최초입원일시: 2021년 4월 1일 오후 3시
- 간병인 사용시간: 1일 7시간 (31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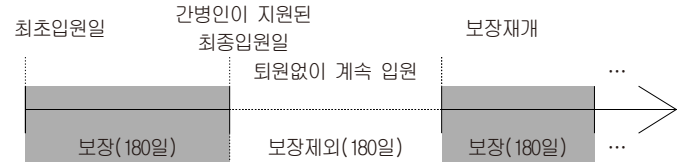


⇒ 총 입원일수 : 5일 (2021.4.1. ~ 2021.4.5)

간병인 지원일수 : 1일 (24시간+7시간)

- ⑤ 제1항에서 정한 보상 한도 최종일(180일째 입원일을 말합니다)에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라도 24시간을 한도로 보장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간병인이 지원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간병인이 지원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간병인이 지원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⑦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 등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를 더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 ⑨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간병인을 지원하지 않으며, 이미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른 간병인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 성병
  -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약제의 복용 및 사용
- ③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제왕절개수술
  -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 정상분만, 치과질환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간병인을 지원한 경우 실제 간병인지원비용 상당액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실제 고객이 선택하여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및 국제형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특약의 전환)

- 회사는 법령, 제도의 변경 또는 간병인 업체의 폐업 등으로 이 특약에 따른 간병인지원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가입금액의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갱신형)보장 특약' 및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Ⅷ(1-180일, 전환용)[맞춤고지Ⅲ](갱신형)보장 특약' (이하 '전환후 특약' 이라 합니다)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전환될 경우 이 계약은 제10조(특약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되며, 전환후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전환일, 보험기간 종료일은 전환전 특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을 따릅니다.
- 제1항에 따라 특약이 전환될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료와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책임준비금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정산금액을 환급하여 드립니다.
- 제3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정산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정산금액을 정산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를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제10조 (특약의 소멸)

-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법령, 제도의 변경 또는 간병인업체의 폐업 등으로 이 특별약관에 따른 간병인지원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특별약관으로 변경하여 드립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가입 특별약관	변경 특별약관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 II (1-180일)(갱신형) 보장 특약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VII (1-180일, 전환용)(갱신형) 보장 특약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VII(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 전환용)(갱신형)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VII(요양병원및의원)(1-180일, 전환용)(갱신형)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 II (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약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VII (1-180일, 전환용)[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약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VII(요양병원및의원제외)(1-180일, 전환용)[맞춤고지 II](갱신형)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VII(요양병원및의원)(1-180일, 전환용)[맞춤고지 II](갱신형)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3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VII(1-180일, 전환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 VII(1-180일, 전환용)[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이 특별약관은 2-257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 II(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 II(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9조(특약의 전환)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합니다.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사용금액)	지급금액
질병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질병으로 병원(요양병원 제외)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8만원 미만	간병인 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50%
		8만원 이상	간병인 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 보장 보험가입금액의 100%

- \* 지급기준은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 간병인 사용일의 연속여부 판단은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간병 사용 시작일자와 간병 사용 종료일자 사이에 간병인을 사용하지 않은 날짜가 없는 경우에는 간병인 사용일이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이때, 간병인을 사용한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간병인을 사용한 날씨가 연속된 경우 간병인 사용은 연속된 것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간병인 사용일수에 따른 지급금액 계산 >

- 보험계약일(보장개시일): 2024년 4월 1일, 보험가입금액 : 6만원
- 입원기간 및 간병인 사용일 예시
- 입원기간 :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입원일수 30일)
- 간병인 사용일 및 사용금액
- 사용1. 2024년 4월 10일 ~ 1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88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이상에 해당) → 6만원 X 8일 = 48만원 지급
- 사용2. 2024년 4월 20일 ~ 4월 24일 오전, 4월 25일 오후 ~ 4월 27일  
     : 총 사용일수 8일, 사용금액 52만원  
     ☞ (1일당 평균 8만원 미만에 해당) → 3만원 X 8일 = 24만원 지급
- 총 간병인사용입원일당 지급금액  
   : 간병인 사용일수 16일  
   보험금 48만원 + 24만원 = 72만원 지급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사용한 날에 대하여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다만,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질병입원 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질병으로 요양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하여 실질적으로 간병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간병인 사용 1일당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 (요양병원 및 의원)'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③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조 (병원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요양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3호 라목에서 규정한 국내의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병원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의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원급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제3조 (입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제4조 (간병인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간병인' 이라 함은 유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하는 자로서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 또는 사업자를 등록하거나 사업자 등록된 업체를 통하여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이 해당 서비스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확인된 자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의 사업자는 간병관련 업종에 해당되어야 하며, 국제청 업종코드 기준 '개인간병 및 유사서비스업' 또는 '개인간병인' 등 간병인 제공 또는 간병인 중개 서비스를 영위하는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때, 간병인 중개 서비스 사업자는 '직업안정법' 상 직업소개사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③ 제1항에서 '간병서비스' 라 함은 간병인이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에 입원하였을 경우 피보험자를 위하여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환경관리, 안전관리, 활동관리 등을 하는 것을 말하며, 제5조(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에서 정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간병인의 주요업무 >

침대높낮이 조정, 화장실 부축, 체위변경, 휠체어를 이용한 환자 이동, 기저귀 교환, 피부위생관리, 식사보조, 휴식돕기, 번기사용 보조 등

제5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의 정의)

이 특약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라 함은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

- 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자들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간호사,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그 밖에 간병지원인력(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이라 한다)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제공되는 입원서비스를 말한다.
- ②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이 조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④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보호자 등의 입원실 내 상주를 제한하고 환자 병문안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⑥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기관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확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

-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 ④ 법 제4조의2제4항 전단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은 제외한다.
    - 1.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보건의료기관
    - 2. 「치료강호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립정신의료기관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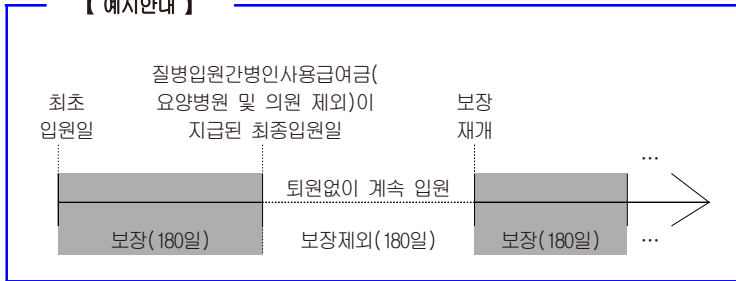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한 입원’이란 의사에 의해 질병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을 말하며, 질병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질병을 입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질병명 미상에 의한 입원으로서 입원 후 최초로 질병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이는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동일한 입원으로 봅니다.
- ②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보험기간 중에 2회 이상 입원한 경우에는 이를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더라도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 제외)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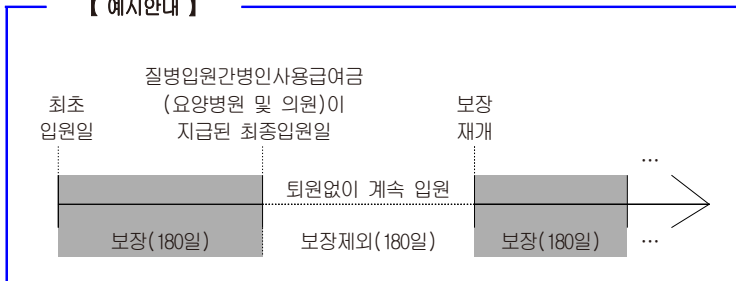


【 예시안내 】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질병에 대한 입원이라도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의 퇴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여 개시한 입원은 새로운 입원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이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일부터 180일이 경과하도록 퇴원없이 계속 입원중인 경우에는 질병입원간병인사용급여금(요양병원 및 의원)이 지급된 최종입원일의 그 다음날을 퇴원일로 봅니다.

【 예시안내 】



- ⑥ 피보험자가 병원 또는 의원을 이전하여 입원한 경우에도 동일한 질병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한 경우에는 1회 입원으로 보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을 각각 적용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도 퇴원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계속 보장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⑩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치매를 제외한 정신적 기능장애, 선천성 뇌질환 및 심신상실  
2. 성병  
3. 알코올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질병을 원인으로 하지 않는 신체검사, 예방접종, 인공유산, 불임시술, 재왕절개수술  
2. 피로, 권태, 심신허약 등을 치료하기 위한 안정치료  
3.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4. 정상분만, 초과질한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② 제4조(간병인의 정의)에서 정한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간병인 사용기간 및 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사업자등록된 업체가 발행한 영수증으로, 사업자등록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간이영수증을 제외한 카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이어야 합니다)  
다만, 해당서류의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간이영수증과 거래방법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계좌이체내역 등) 및 피보험자가 실제로 유상으로 간병인을 사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된 업체의 증빙서류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등록증 및 국제청 업종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의 직인 또는 서명이 담겨있어야 합니다)  
④ 회사는 간병인 필요사유 및 실제 사용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간병인, 병원종사자 등의 사실관계 확인 또는 추가적인 증빙서류(간병인사용계약서, 간병인사용확인서, 간병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간병근무일지, 간호기록 등)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당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4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 /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원격지’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통원 1일당 10만 원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지출한 ‘임시거주비’를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원격지’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통원한 1일당 실제 지출한 ‘임시거주비’ (10만원한도)
	‘기타피부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원격지’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원격지’에서 통원하기 위하여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 ② 제1항의 ‘임시거주비’는 피보험자가 ‘원격지’에 위치한 숙박시설 또는 음식점을 이용하여 실제로 지출한 숙박비 및 식비를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1. 숙박비 : 제1항의 통원한 날 또는 그 전날에 숙박시설 이용시 발생한 1일당 숙박비
  - 2. 식비 : 제1항의 숙박시설 이용시 발생한 식비
- ③ 제2항의 숙박시설은 현행 법률상으로 숙박이 가능하도록 허가받은 시설로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호텔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현행 법령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은 제외합니다.

 **【 관련법규 】**

<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정의) 제1항 제2호 >  
 2. “숙박업”이라 함은 손님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에 소재하는 민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호텔업의 종류) >**

- 가. 관광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오락·휴양·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이하 “부대시설”이라 한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業)
- 나. 수상관광호텔업: 수상에 구조물 또는 선박을 고정하거나 매어 놓고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다. 한국전통호텔업: 한국전통의 건축물에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거나 부대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라. 가족호텔업: 가족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마. 호스텔업: 배낭여행객 등 개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로서 샤워장, 취사장 등의 편의시설과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을 위한 문화·정보 교류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용하게 하는 업
- 바. 소형호텔업: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소규모로 갖추고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휴양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사. 의료관광호텔업: 의료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 및 취사도구를 갖추거나 숙박에 딸린 음식·운동 또는 휴양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주로 외국인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 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7]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4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3조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직접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로서,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가 인정한 최신 암치료법도 포함됩니다](이하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라 합니다)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에는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또는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 등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 2.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로 봅니다.
  - 1.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면역치료
  - 2.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면역력 강화 치료
  - 3. ‘암의 제거 및 증식 억제 치료’ 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 4.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해당하는 말기암환자에 대한 치료

**제4조 (통원의 정의와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원격지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원격지’ 라 함은 ‘거주지’ 가 아닌 지역을 말하며, ‘거주지’ 는 통원 당일 주민등록등본상 주소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원격지’ 및 ‘거주지’ 는 도에 인접한 광역시를 포함한 단위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10개의 지역으로 구분합니다.
  - 1. 서울
  - 2. 경기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 3. 충청북도
- 4. 충청남도권(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 5. 강원도
- 6. 전라북도
- 7. 전라남도권(광주광역시, 전라남도)
- 8. 경상북도권(대구광역시, 경상북도)
- 9. 경상남도권(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 10. 제주도

**【 예시안내 】**

**<예시1>**

· 거주지가 경기도 일산인 피보험자가 서울시 강남구 소재 A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서울시 중구에서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서울시 강남구 및 중구는 ‘거주지’ 인 ‘2. 경기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가 아닌 ‘원격지’ 에 해당하므로 원격지 암직접치료 통원 임시거주비 지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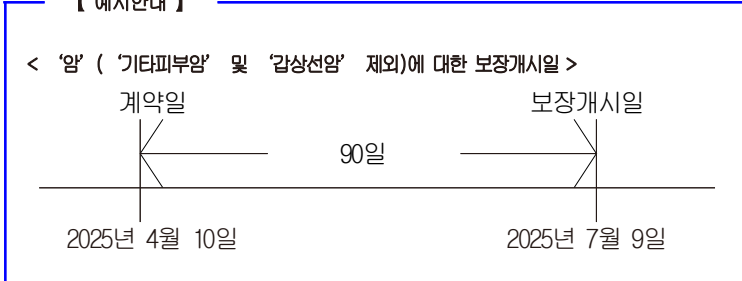
**<예시2>**

· 거주지가 경기도 파주인 피보험자가 서울시 관악구 소재 B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고 경기도 수원에서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기도 수원은 ‘거주지’ 인 ‘2. 경기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으로 ‘원격지’ 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격지 암직접치료통원 임시거주비 미지급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 이란 의사에 의해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이 된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을 말하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을 통원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통원으로 봅니다.
- ② 보통약관 제3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11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원격지' 가 아닌 '거주지역' 에서 통원한 경우
  2. 피보험자가 '원격지' 가 아닌 '거주지역' 에서 임시거주비를 지출한 경우
  3.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한 통원 목적 외에 다른 사유로 임시거주하는 경우
  4. 피보험자에게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장소에서 임시거주하는 경우
  5.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의료기관에서 입원하는 경우
  6.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의 '호텔업' 에 해당하지 않는 숙박시설(현행 법령상 불법으로 분류되는 숙박시설을 포함합니다)에서 임시거주하는 경우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

- 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주민등록등본(최근 변동사항 포함)
- 5. 발생한 비용을 증명하는 서류(숙박비 및 식비 지출 영수증. 단, 간이영수증 제외)
- 6.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기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9조 (보험금의 분담)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예시안내 】

<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begin{aligned} \bullet \text{계약1} &= 48 = 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text{계약2}(40)} \\ \bullet \text{계약2} &= 32 = 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text{계약2}(40)} \end{aligned}$$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2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제10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31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1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3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6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7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5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23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5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5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및 ‘맞춤고지Ⅱ’ 포함)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2-245-1.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수술보험금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암 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주사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주사제 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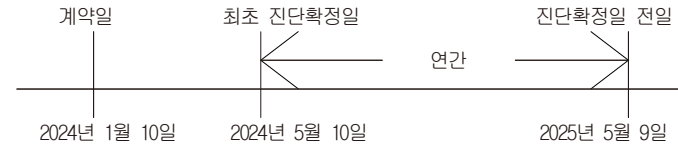
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 이라 함은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함)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다만, 해당 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④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준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안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 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 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 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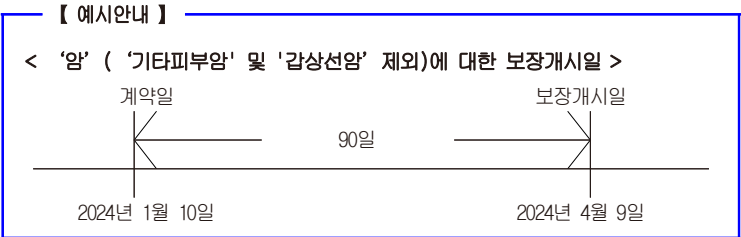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5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

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⑥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수술, 항암약물치료보험금 및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로부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보장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장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장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

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5-2.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진단후 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암 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사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사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 이라 함은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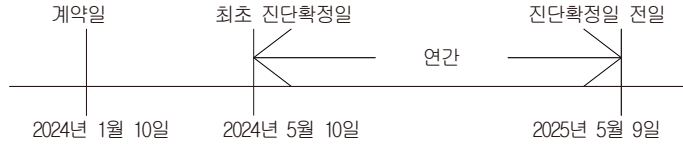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은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수술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안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장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5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로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위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수술, 항암약물치료보험금 및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1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2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3조 (중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6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의 보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및 '맞춤고지Ⅱ' 포함)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2-246-1.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수술보험금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일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주사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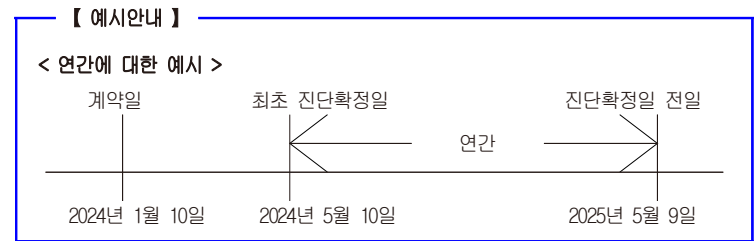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주사제 외)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 이라 함은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다만, 해당 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안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 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 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 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7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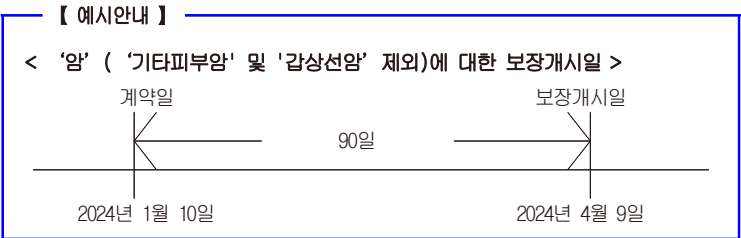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6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

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⑥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더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수술, 항암약물치료보험금 및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더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더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더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더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보장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장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더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장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

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8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5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행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6-2.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진단후10년)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사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주사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종합병원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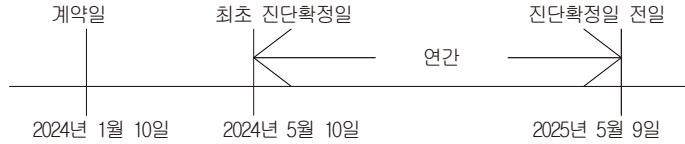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보장에서 '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추어야 함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함
- 상기의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제3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 ② 이 보장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5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7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8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6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

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수술, 항암약물치료보험금 및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0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1) 보장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보



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  
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7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  
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  
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  
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  
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의 보  
장은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갱신형' 및 '맞춤고지Ⅱ' 포함)  
-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  
선암제외)보장  
-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  
선암)보장

**2-247-1.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  
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  
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수술보험금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 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  
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주사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  
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  
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주사제 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제외)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6  
항 및 제7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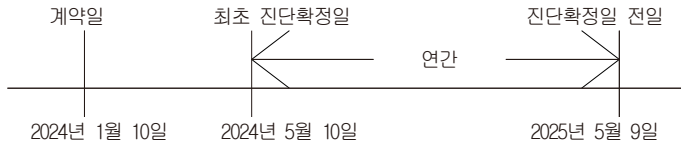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 이라 함은 그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예시안내 】

##### < 연간에 대한 예시 >



####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 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제3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양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양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 제4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①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7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점막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8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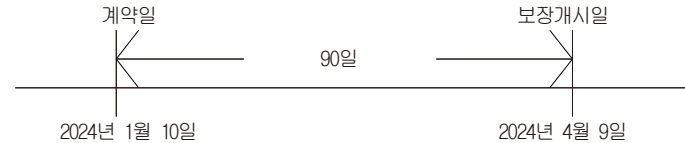
-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 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7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

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⑥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보장에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⑧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암수술, 항암약물치료보험금 및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⑨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 (보장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의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1) 보장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보장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보장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

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4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6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7-2.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상, 진단후 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수술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암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수술을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입원 또는 통원하여 '항암약물치료(주사제)' 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입원 또는 통원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사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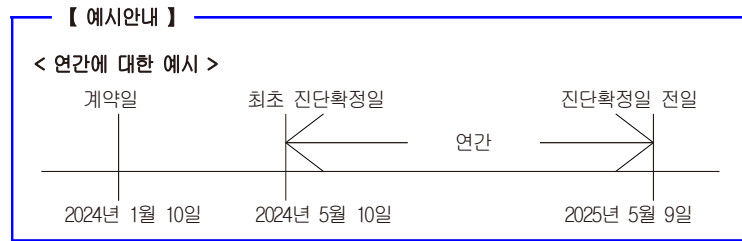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연간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약물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주사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외)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보험기간 중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되고, ‘보험금 지급기간’ 이내에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치료당 1회에 한하여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단, 최초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10년간)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보험금 지급 기간’이라 함은 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10년을 말하며 암수술, 항암약물치료 또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금 지급의 대상이 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 ⑥ 제3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월에 진단확정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연월의 말일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암의 진단확정’이라 함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진단확정된 암을 의미하며, 보험계약일 이전에 진단받은 암이 완치되기 전에 다시 진단받는 경우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2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 제3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양한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제4조 (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보장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 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보장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⑤ 제4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입원 등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의사항】

- <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 이루어진 경우 >
- 입원실에 머무른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를 의미
- 입원산정 기산점은 진료기록부 기재내역 및 환자가 실제로 입원실을 점유한 시점 등을 고려하여 입원실 입실시간을 기준으로 함
- 낮 병동에 입원하는 경우 등 상기 내용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1년 7월판)기준을 따르며, 심사지침이 변경될 경우 변경된 지침을 따릅니다.

② 이 보장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의 직접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암수술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기관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예시안내】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수술’ 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 는 제외합니다.

제7조 (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② 이 보장에서 ‘주사제’ 라 함은 소화관 대신 피부, 정맥 등 외부경계조직을 통해서 혈관, 근육, 장기, 조직, 병변 등에 직접적으로 투여하는 약제를 말합니다.

제8조 (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

이 보장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서 정한 수술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②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입원은 피보험자가 퇴원없이 계속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및 항암약물치료(주사제) 치료횟수와 관계없이 1회로 봅니다.
- ③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의 보험금은 암의 치료를 위한 입원 또는 통원이라 하더라도 제7조(항암약물치료 등의 정의)의 항암약물치료에 해당하지 않거나 항암치료를 위

하여 보조적인 약물을 투여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피보험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⑤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4항의 항암방사선치료는 암의 병소(cancer site)와 암의 병소 주변 림프절에 대한 방사선치료시 동일 조사 범위내 시행으로 보아 1회로 간주합니다.
- ⑥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 받고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보험금 지급기간' 이 만료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수술, 항암약물치료보험금 및 항암방사선치료보험금을 보장합니다.
- ⑦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보장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라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 받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5항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간이 경과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2조 (제2회 이후 보장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보장의 제2회 이후 보장보험료의 납입은 보통약관 제26조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의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부터 보장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보장의 경우, 제2항에 따라 차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는 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39조(해약환급금)에도 불구하고 표준형 해약환급금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13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보장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1조(보장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4조 (보장의 자동갱신)**

- ① 이 보장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갱신되지 않습니다.

**제15조 (준용규정)**

이 보장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8.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맞춤고지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II[맞춤고지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II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II'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총 지급한도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함이다)

<I형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50만원 (수술1회당)	500만원 (수술1회당)		연간 총 지급금액 3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 일부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만원 (수술1회당)	10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50만원 (연간 1회한)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만원 (연간 1회한)	1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50만원 (연간 1회한)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만원 (연간 1회한)	100만원 (연간 1회한)		

<형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75만원 (수술1회당)	750만원 (수술1회당)		연간 총 지급금액 5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 일부 1년미만 상기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만원 (수술1회당)	15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75만원 (연간 1회한)	7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만원 (연간 1회한)	1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75만원 (연간 1회한)	7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만원 (연간 1회한)	150만원 (연간 1회한)		

<3형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하이클래스암치료급여금 II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수술1회당)	1,000만원 (수술1회당)	연간 총 지급금액 7천만원 한도 (단, 최초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20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2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확정 되고,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200만원 (연간 1회한)	

②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대상질병' 이란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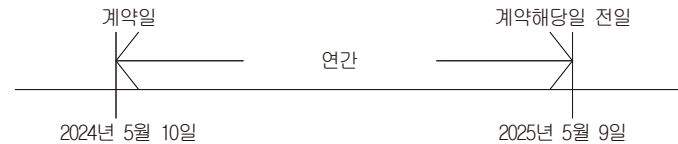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대상질병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유사암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③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치료급여금 II 연간 총 지급액은 각 유형별(1형,2형,3형)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2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 제3항에서 정한 '갑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상선암', 제4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제5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총칭합니다.

- ⑦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 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⑧ 제7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라 함은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를 말합니다.
- ②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이나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암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⑧ 제 1항의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⑨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II’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제4조 (암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암수술’이라 함은 암(‘암(유사암제외)’, ‘유사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 ‘유사암’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 ‘유사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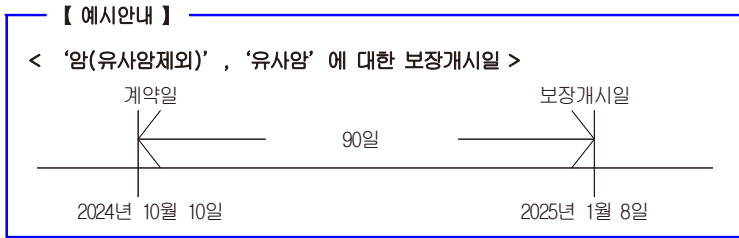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9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부터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0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0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에 대하여 제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49.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 대상질병' 으로 진단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Ⅱ' 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총 지급한도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1형 : 보험가입금액 3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최초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Ⅱ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50만원 (수술1회당)	500만원 (수술1회당)	연간 총 지급금액 3천만원 한도 (단, 최초 계약일부터 1년미만 상기 한도 금액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만원 (수술1회당)	10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50만원 (연간 1회한)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만원 (연간 1회한)	1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50만원 (연간 1회한)	5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만원 (연간 1회한)	100만원 (연간 1회한)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2형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하 이 클 래 스 암 치 료 급 여 금 II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75만원 (수술1회당)	750만원 (수술1회당)	연간 총 지급 금액 5천만 원 한도 (단, 최초 계약 일부 1년미 만 상기 한도 금액 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만원 (수술1회당)	15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75만원 (연간 1회한)	7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만원 (연간 1회한)	1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75만원 (연간 1회한)	7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만원 (연간 1회한)	150만원 (연간 1회한)	

<3형 : 보험가입금액 7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하 이 클 래 스 암 치 료 급 여 금 II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수술1회당)	1,000만원 (수술1회당)	연간 총 지급 금액 7천 만원 한도 (단, 최초 계약 일부 1년 미만 상기 한도 금액 의 50%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유사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수술1회당)	200만원 (수술1회당)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2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유사암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 ,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 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200만원 (연간 1회한)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라 함은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를 말합니다.
- ②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이나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은 암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항암약물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은 항암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⑧ 제1항의 ‘항암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은 항암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방사선치료료가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⑨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 II’ 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암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암수술’ 이라 함은 암(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 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 의하여 피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으로 인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④ 제2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2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⑥ 제2항 내지 제4항의 ‘수술’ 은 ‘항암방사선치료’ 와 ‘항암약물치료’ 는 제외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 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유사암제외)’, ‘유사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  
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포함)에 의해 항암  
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  
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항암방사선치료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 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  
보험자의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  
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제7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  
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  
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  
여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8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 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  
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  
영함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서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유사암제외)’, ‘유사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  
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유사암제외)', '유사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부터 '암(유사암제외)', '유사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유사암제외)', '유사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유사암제외)', '유사암'에 대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0.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총 지급한도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형 :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50만원 (연간 1회한)	500만원 (연간 1회한)		연간 총 지급 금액 2천 만원 한도 (단, 최초 계약 일부 터 1년 미만 상기 한도 금액 의 50%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만원 (연간 1회한)	1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2형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하이클래스암보험 정기보험금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375만원 (연간 1회한)	750만원 (연간 1회한)	연간 총 지급 금액 5천만 원 한도 (단, 최초 계약 일부 터 1년미 만 상기 한도 금액 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75만원 (연간 1회한)	1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2,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2,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2,000만원 (연간 1회한)	

<3형 :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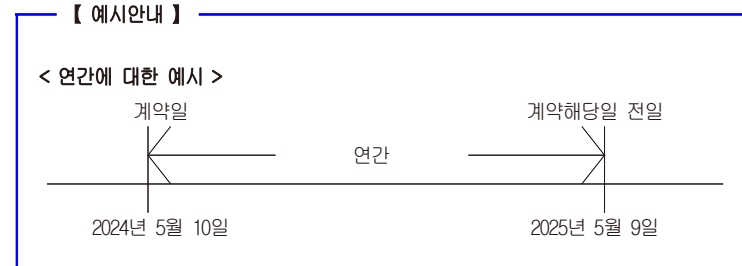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 한도
	최초계약		갱신 계약	
	계약일부터 1년 미만	계약일부터 1년 이상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 비급여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연간 총 지급 금액 8천 만원 한도 (단, 최초 계약 일부 터 1년 미만 상기 한도 금액 의 50%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2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을 받은 경우	1,500만원 (연간 1회한)	3,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 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0만원 (연간 1회한)	3,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을 받은 경우	1,500만원 (연간 1회한)	3,000만원 (연간 1회한)	

②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 대상질병' 이란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	대상질병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갑상선암, 전립선암 제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 ③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급여금의 연간 총 지급액은 각 유형별(1형,2형,3형) 보험 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립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5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3조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라 함은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를 말합니다.
- ②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이나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③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다빈치로봇암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⑦ 제1항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⑧ 제1항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양성자방사선치료료가 제 3항 및 제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양성자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⑨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다빈치로봇암수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이라 함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아래의 ‘로봇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다빈치(da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행한 것에 한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	Q2966

【 용어해설 】

**[다빈치로봇암수술]**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 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② 제1항의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 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외에 ‘다빈치로봇암수술’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물허가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심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으로 사용된 경우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는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특정면역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1.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2.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3.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용어해설 】**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백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 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 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 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 이외에 추가해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항암물허가치료’는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을 포함합니다. 다만,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의 정의)**

- ①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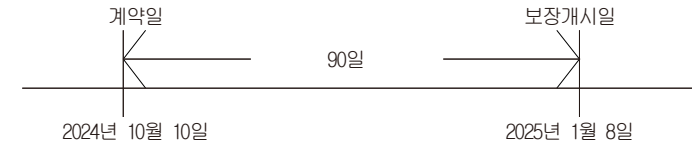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뒤의 정상 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 소화합니다.

**제9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10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1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2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3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검사결과지 등)
    - 가. 다빈치로봇암수술의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포함
    - 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경우 : 항암방사선치료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포함
    - 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진단명
        -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 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2)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1)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진단명
    -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
- (2)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4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2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하여 제9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1.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 대상질병'으로 진단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를 받은 경우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연간 총 지급한도내에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형 : 보험가입금액 2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갱신 계약	지급 한도
	최초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250만원 (연간 1회한)	500만원 (연간 1회한)	연간 총 지급 금액 2천 만원 한도 (단, 최초 계약 일부 1년 미만 상기 한도 금액 의 50%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만원 (연간 1회한)	1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형 :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갱신 계약	지급 한도
	최초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하이클래스인슈어런스 정지보급여부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을 받은 경우	375만원 (연간 1회한)	750만원 (연간 1회한)	연간 총 지급 금액 5천 만원 한도 (단, 최초 계약 일부 1년 미만 상기 한도 금액 의 50% 한도 )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을 받은 경우	75만원 (연간 1회한)	15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2,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 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2,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을 받은 경우	1,000만원 (연간 1회한)	2,000만원 (연간 1회한)	

<3형 : 보험가입금액 8천만원>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갱신 계약	지급 한도
	최초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하이클래스인슈어런스 정지보급여부	보장개시일 이후 '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을 받은 경우	500만원 (연간 1회한)	1,000만원 (연간 1회한)	연간 총 지급 금액 8천만 원 한도 (단, 최초 계약 일부 1년미 만 상기 한도 금액 의 50% 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갑상선암' 또는 '전립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을 받은 경우	100만원 (연간 1회한)	2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을 받은 경우	1,500만원 (연간 1회한)	3,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 급여포함))을 받은 경우	1,500만원 (연간 1회한)	3,000만원 (연간 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 암' (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 으로 진단 확정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 포함))을 받은 경우	1,500만원 (연간 1회한)	3,000만원 (연간 1회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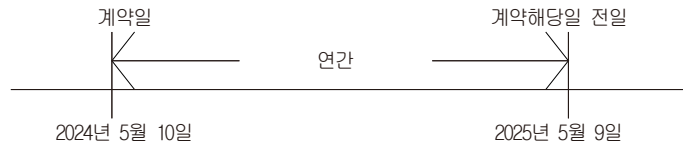
②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 대상질병' 이란 아래의 질병을 말합니다.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	대상질병
다빈치료보там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갑상선암, 전립선암제외)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갑상선암', '전립선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 ③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급여금의 연간 총 지급액은 각 유형별(1형,2형,3형)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연간 총 지급액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 이 특약에서 '암' 이란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란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란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전립선암' 이란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전립선의 악

성신생물(암)(분류번호 C61)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상기의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⑥ 제5항의 진단확정은 병리학적 검사결과와 임상소견이 상이할 경우 병리학적검사 결과를 우선 적용하며, 병리검사 결과보고일을 진단 기준일로 합니다.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약관

기타 특별약관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 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 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 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 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 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 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3조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라 함은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를 말합니다.
- ②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식이요법, 명상요법 등 암의 제거 또는 암의 증식 억제를 위하여 의학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2. 면역력 강화 치료
  3.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이나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의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 또는 합병증의 치료
  4. 호르몬 관련 치료제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의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진찰료, 입원료, 마취료, 검사료 등)
- ③ 제1항에서 전액본인부담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

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비용의 전부를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1항에서 비급여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 대상(「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쳤지만 급여항목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포함)을 말합니다.
- ⑤ 제1항의 '다빈치로봇암수술(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다빈치로봇암수술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내역서의 처치 및 수술료 중 직접적으로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에 사용한 비용이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의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⑦ 제1항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항암제의 약제비가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및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보조적인 약제는 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⑧ 제 1항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전액본인부담(비급여포함))'은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세부 내역서의 양성자방사선치료료가 제 3항 및 제 4항의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양성자방사선치료료에는 방사선 모의치료 및 치료계획 등 직접적인 치료 이외의 부수적인 행위는 제외됩니다.
- ⑨ 제1항의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라 함은 암을 제거하거나 암의 증식을 억제하는 치료이며,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수술’은 ‘항암방사선치료’와 ‘항암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5조 (다빈치로봇암수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다빈치로봇암수술’이라 함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아래의 ‘로봇수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다빈치(da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행한 것에 한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로봇 보조 수술	QZ966

**【 용어해설 】**

**【다빈치로봇암수술】**

다빈치로봇암수술이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행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내시경 및 수술용 기구 등을 다빈치(da Vinci) 기기 팔에 고정하고, 수술자가 조정장치를 작동하여 수술도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수술)

- ② 제1항의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술기록지상 다빈치(da Vinci)기기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다빈치로봇 암수술’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다빈치로봇암수술’ 외에 ‘다빈치로봇암수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5조 (항암약물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항암약물치료’라 함은 내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화학요법 또는 면역요법(의학계에서 항암약물과 동일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인정하는 면역요법에 한함)에 의해 항암약물을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암세포가 없는 상태에서 면역력을 증가시키는 대체약물치료는 제외합니다.

**제6조 (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악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호르몬 관련 치료제 >**

호르몬 관련 치료제란, 항암치료에 사용되는 호르몬제제, 암세포에 있는 호르몬 수용체에 작용하는 약제, 암을 성장시키는데 기여하는 호르몬이 생성되는 해당 장기에 작용하는 약제 등을 말합니다.

**< 표적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 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적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약품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③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특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2.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 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④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제2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는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를 포함합니다)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특정면역항암제’ 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421(항암성종양제)’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암성종양제’ 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 중 아래의 3가지에 해당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1.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2.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3.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용어해설 】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 >

면역관문억제제(Immune Checkpoint Inhibitors)란 암세포 또는 T세포의 표면에 발현되어 암세포가 면역체계의 공격을 회피하는데 이용하는 면역세포의 표면 단백질인 PD-1, PD-L1, CTLA-4 등의 면역관문(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 >

항체약물중합체(Antibody-Drug Conjugate) 항암치료제란 항암제에 특정 암세포의 항원 단백질을 공격하는 항체를 링커(Linker)로 접합하여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 >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면역세포에 일종의 암세포 위치추적 장치를 심어주는 방식의 치료제로 체내의 면역 T세포를 채집하여 체외로 추출한 후 벡터를 활용하여 암세포에 반응하는 특이적인 키메라항원수용체(CAR, Chimeric Antigen Receptor)를 발현시킨 뒤 다시 체내에 주입하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인식하고 공격하여 암세포의 성장 및 확산을 억제하는 방식의 항암제를 말합니다.

< 특정면역항암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안내 >

-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약중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와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성분명 :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 :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면역항암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특약에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5조(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내에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2항의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투약 처방 시점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로 사용된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이다)’으로 사용된 경우

【 용어해설 】

< 암질환심의위원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의2 제1항에 따라, 암환자(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하여 심의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보건의료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합니다.

<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외 「효능효과」,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함)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ttps://hira.or.kr>) - 의료정보 - 의약품정보 - 암질환사용약제및요법 - 항암화학요법 - 허가초과 항암요법 - 인정되고 있는 허가초과 항암요법(용법용량포함)

-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서 표적항암제의 분류번호를 특정하여 발령하는 경우,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 이외에 추가로 해당하는 의약품 또한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2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는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의 정의)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라 함은 제2항의 ‘항암방사선치료’ 중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양성자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이 특약에서 ‘항암방사선치료’라 함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방사선(ionizing radiation)을 조사(照射)하여 암세포를 죽이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 >

방사선 치료의 하나로, 수소 원자핵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 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암 치료법을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는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양성자방사선치료의 장점은 암 표적 부위에 도달하기 전까지 일반 정상 조직에는 거의 방사선을 조사하지 않으며 종양에 도달하면 모든 에너지를 방 출하고 바로 소멸되어서 종양 위의 정상 조직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양성자 치료는 종양을 둘러싼 건강한 정상 조직의 손상 위험을 최소화합니다.

제9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의)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10조 (국립암센터의 정의)

이 특약에서 ‘국립암센터’라 함은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에서 정한 국립암센터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암관리법 제27조(국립암센터 설립 등) >

- 암에 관한 전문적인 연구와 암환자의 진료 등을 위하여 국립암센터를 설립·운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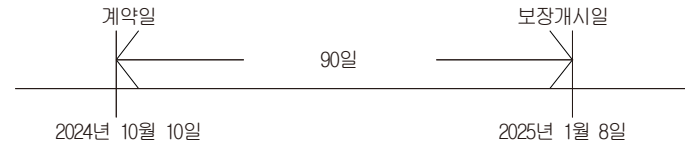
제11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에서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내지 제3조의3(종합병원)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 : 100개 이상의 병상 구비, 병상수에 따라 일정 개수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12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13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

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14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검사결과지 등)
  - 가. 다빈치로봇암수술의 경우 : 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포함
  - 나.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의 경우 : 항암양성선치료기록지, 진료비세부내역서 포함
  - 다.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진단명
      -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2)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라.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경우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증명서
    - (1)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진단서 또는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 확인서(회사양식)(이하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 진단명
      - ㉡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내 사용 여부
      -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범위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사용 여부
    - (2) 입원처방조제의 경우 진료비세부산정내역서, 외래처방조제의 경우 의사처방전 및 약제비 계산서
-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인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16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에 한해 적용합니다.>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14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8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에 대하여 제11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1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2.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졸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뇌졸중 혈전용해치료비	‘뇌졸중’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심장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심장질환 혈전용해치료비	‘특정심장질환’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순환계질환 I’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순환계질환 I 혈전용해치료비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혈전용해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④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뇌졸중’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뇌 특정 혈전제거술 보험금	‘뇌졸중’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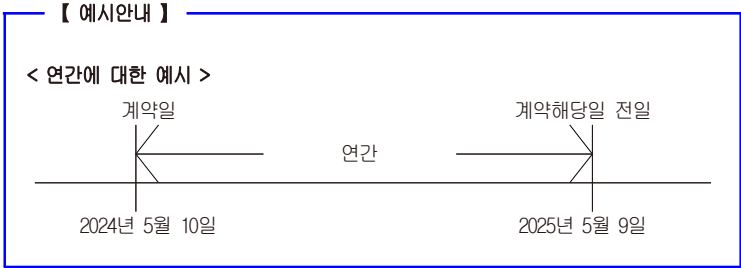
⑤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심장질환’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심장질환’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특정심장질환 혈전제거술 보험금	‘특정심장질환’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순환계질환 I’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특정순환계질환 I 혈전제거술 보험금	‘특정순환계질환 I’ 으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뇌졸중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② 이 특약에서 ‘특정심장질환’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아래의 ‘특정심장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급성심근경색증	121
3. 후속 심근경색증	1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5. 오래된 심근경색증	125.2

③ 이 특약에서 ‘특정순환계질환 I’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20] ‘특정순환계질환 I’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여부를 판단합니다.

- ④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및 ‘특정순환계질환 I’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서 정한 병원,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단,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고 ‘특정심장질환’의 진단확정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또는 ‘특정순환계질환 I’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강정서상 사인이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또는 ‘특정순환계질환 I’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⑤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⑥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⑦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⑧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제3조 (혈전용해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혈전용해치료’라 함은 의사가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또는 ‘특정순환계질환 I’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혈전용해제’를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입하여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주사하는 약물 (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린 등) 및 경구용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③ 제2항의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지 않은 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 등)은 혈전용해 치료에서 제외됩니다.

**제4조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뇌졸중’, ‘특정심장질환’ 또는 ‘특정순환계질환 I’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140]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외에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이라 함은 “혈관으로부터 혈전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하며,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에 혈전용해제를 투여하여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한 치료법(혈전용해치료)은 제외됩니다.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3.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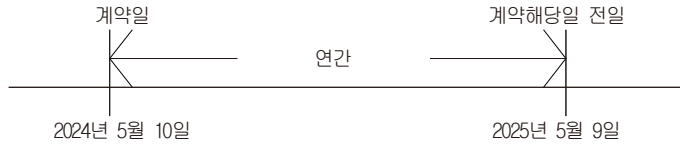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금액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 보험금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치매'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2] '치매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치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치매'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라 함은 [별표163] '치매 CDR척도검사 분류표'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 용어해설 】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의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

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 외에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9조 (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인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2인이 지정된 경우 그 중 대표대리인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대리인이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4. 치매MRI·CT·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치매 MRI·CT·PE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금액
급여 치매 MRI·CT·PET검사 보험금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의 진단 및 치료목적으로 ‘급여 치매 MRI·CT·PET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장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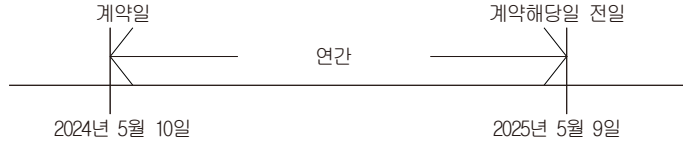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 예시안내 】

#### < 연간에 대한 예시 >



### 제2조 (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치매'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2] '치매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치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치매'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급여 치매 MRI·CT·PET검사의 정의 및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치매 MRI·CT·PET검사'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치매'의 진단 및 치료(치료 후 경과관찰 포함)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자기공명영상(MRI),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또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치매 MRI·CT·PE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 항목에서 아래의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진료행위	분류번호
일반 전산화단층영상진단 CT(Computed Tomography)	다-245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agnetic Resonance Imaging)	다-246
양전자방출단층촬영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다-339



### 【 용어해설 】

####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강한 자기장 내에서 인체에 고주파를 전사해서 반향 되는 전자기파를 측정하여 영상을 얻어 질병을 진단하는 검사

#### <전산화단층영상진단(CT)>

X선을 이용하여 인체의 횡단면상의 영상을 획득하여 진단에 이용하는 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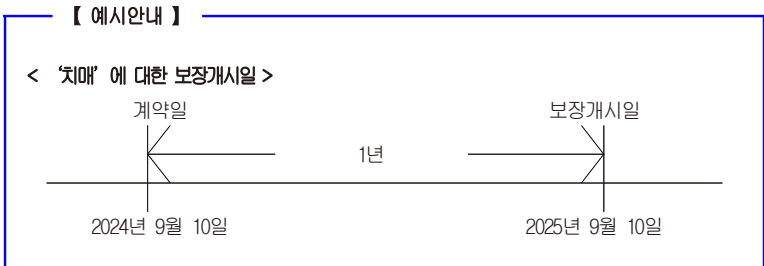
####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양전자를 방출하는 방사성 의약품을 이용하여 인체에 대한 생리화학적, 기능적 영상을 3차원으로 얻는 핵의학 영상법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치매 MRI·CT·PET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치매 MRI·CT·PET검사' 외에 '급여 치매 MRI·CT·PET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 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함

-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부터 '치매' 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 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인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1조(지정대리청구인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1조(지정대리청구인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2인이 지정된 경우 그 중 대표대리인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대리인이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

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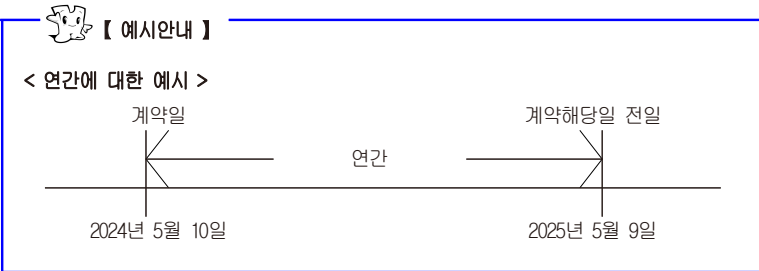
**2-255. 특정치매약제치료(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특정 치매약제치료' 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금액
급여 치매 약제치료 보험금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로 '급여 특정 치매약제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급여 특정 치매약제치료' 는 '급여 특정 치매약제' 의 종류와 상관없이 연간 1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치매' 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2]

- '치매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치매'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치매'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 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급여 특정 치매약제 및 급여 특정 치매약제치료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급여 특정 치매약제' 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처방한 약제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특정 치매약제' 란 처방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번호 '119(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에 준하는 분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효능·효과' 항목에 치매의 치료제로 기재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급여 특정 치매약제 해당 성분 안내 >**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도네페질(donepezil)
- 리바스티그민(rivastigmine)
- 갈란타민(galantamine)
- 메만틴(memantine)

※ 상기 치매 치료제 해당 성분명은 2025년 10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성분명에 해당하는 의약품이라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에만 ‘급여 특정 치매약제’로 인정합니다.

**< ‘효능·효과’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에 따라 대상 약제 제외 또는 분류가 변경된 경우에는 대상 약제 제외 또는 분류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 치매약제’에 준하여 ‘급여 특정 치매약제’를 결정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급여 특정 치매약제치료’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치매’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 치매약제’를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함)

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6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여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치매약물치료증명서(의약품 분류번호 ‘119(기타의 중추신경용약)’ 처방여부 및 의약품명이 기재된 서류(진단서, 의사소견서 또는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인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2인이 지정된 경우 그 중 대표대리인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대리인이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6.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보장 특별약관은 아래의 세부 보장(3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보장(최초1회한)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보장(7회이상,최초1회한)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보장(19회이상,최초1회한)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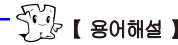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세부보장별로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금액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7회이상,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7회이상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표적치매약물허가 치료비 (19회이상, 최초1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19회이상 받은 경우	이 보장 보험가입금액

### 제2조 (최경증치매상태 및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최경증치매상태' 라 함은 '치매' 로 진단확정 받고 '최경증인지기능의 장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라 함은 '알츠하이머치매' 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치매' 라 함은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1.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제1호에 의한 기질성장장애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지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④ 제2항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 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치매' 에 해당되고,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164]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 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에서 정한 '최경증인지기능의 장애' 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0.5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정한 '경도인지기능의 장애' 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1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

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⑦ 제1항의 '최경증치매상태' 및 제2항의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취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치매'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 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이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amyloid PET), 뇌척수액검사 등)의 결과가 '양성(Positive)' 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amyloid PET)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센틸로이드(Centiloid) 이상' 인 상태를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아밀로이드베타(Aβ)>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주성분으로서 알츠하이머 병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36-43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의미합니다.

##### <센틸로이드(Centiloid)>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임상에서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착량을 표준화하여 측정하는 정량적 척도이며 0~100의 범위를 가집니다.

- ②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의 판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판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양전 지방출산층술(PET), 뇌척수액검사, 혈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정신건강 의학과 또는 신경과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뇌내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 제거를 위해 처방하는 치료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성분 안내 >**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레카네맵(lecanevab)
- ※ 상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성분명은 2025년 10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효능·효과’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최경증치매상태 및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제3항의 ‘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검사결과지(CDR검사결과지, ‘아밀로이드베타 양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amyloid PET) 판독지, 뇌척수액검사 결과지 등)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초1회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7회이상, 최초1회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19회이상,

최초1회한)’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해당 세부보장은 소멸되며, 소멸된 세부보장에 대해서는 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계약자는 소멸된 세부보장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를 세부보장별로 각각 1회씩 총 3회 지급한 경우 최종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인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

- 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2인이 지정된 경우 그 중 대표대리인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대리인이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

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7.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치료당,36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 1회당 아래에서 정한 금액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금액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 (치료당,36회한)	보장개시일 이후 ‘최경증치매상태’ 또는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양성’으로 판정받은 후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는 36회를 초과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받던 중 36회차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가 종료되기 전에 이 특약의 보험기간이 종료(특약이 소멸된 경우도 포함)되었을 때에도 36회차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가 종료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합니다.

**제2조 (최경증치매상태 및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최경증치매상태' 라 함은 '치매' 로 진단확정 받고 '최경증인지기능의 장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 있어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라 함은 '알츠하이머치매' 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 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치매' 라 함은 아래 각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1. 뇌(腦)속에 후천적으로 생긴 기질적인 병으로 인한 변화 또는 뇌속에 손상을 입은 경우
  - 2.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제1호에 의한 기질성장해에 의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에 한번 획득한 능력이 지속적으로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경우
- ④ 제2항에서 정한 '알츠하이머치매' 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치매' 에 해당되고,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별표164]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 의 질병으로 진단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⑤ 제1항에서 정한 '최경증인지기능의 장애' 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0.5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⑥ 제1항에서 정한 '경도인지기능의 장애' 라 함은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의 검사결과가 1점(단, 국내 의학계에서 인정되는 검사방법으로 이와 동등한 정도로 판정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해당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CDR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2001년) >**

CDR척도는 치매관련 전문가가 실시하는 전반적인 인지기능 및 사회기능 정도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전체 점수구성은 0, 0.5, 1, 2, 3, 4, 5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중증을 의미합니다.

- ⑦ 제1항의 '최경증치매상태' 및 제2항의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

- 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⑧ 회사는 '치매'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 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아밀로이드베타 양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이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amyloid PET), 뇌척수액검사 등)의 결과가 '양성(Positive)' 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단층촬영(amyloid PET)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센틸로이드(Centiloid) 이상' 인 상태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아밀로이드베타(Aβ)>**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아밀로이드 플라크의 주성분으로서 알츠하이머 병에 결정적으로 관여하는 36-43개의 아미노산 펩타이드를 의미합니다.

**<센틸로이드(Centiloid)>**

알츠하이머병 연구와 임상에서 뇌의 아밀로이드 플라크 침착량을 표준화하여 측정하는 정량적 척도이며 0~100의 범위를 가집니다.

- ②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의 판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해 내려져야 하며, 이 판단은 병력, 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뇌척수액검사, 혈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4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의 정의)**

이 특약에 있어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 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뇌내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A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처방하는 치료제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성분 안내 >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레카네맙(Lecanemab)
- ※ 상기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성분명은 2025년 10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시 해당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효능·효과’ 확인 방법 >

-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내 「효능효과」 확인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 의약품 검색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 ③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 또는 ‘치매’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보장의 계약일부터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조(최경증치매상태 및 경도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확정)의 제3항의 ‘치매’로 진단 확정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보장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



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검사결과지 (CDR검사결과지, '아밀로이드베타 양성' 을 확인할 수 있는 아밀로이드 양전자방출 단층술(amyloid PET) 판독지, 뇌척수액검사 결과지 등)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제' 투약 또는 투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 제9조 (특약의 소멸)

- ①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어 해당 지정 이후 보험료는 납입하지 않으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 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단,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36회차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가 종료되기 전까지의 계속중인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 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장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 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인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2인이 지정된 경우 그 중 대표대리인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대리인이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4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5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6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최경증치매상태’, ‘경도알츠하이머치매 상태’ 또는 ‘치매’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7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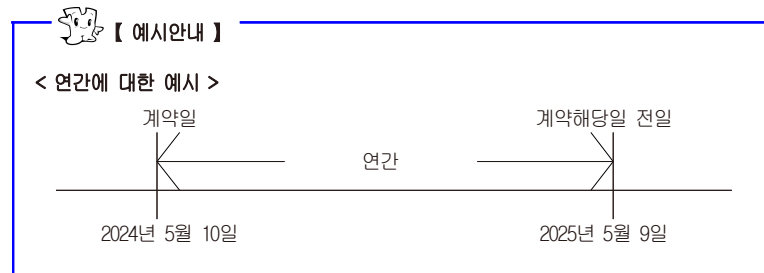
**2-258.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치매직접치료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12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치매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통원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2일한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치매’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2] ‘치매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치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치매'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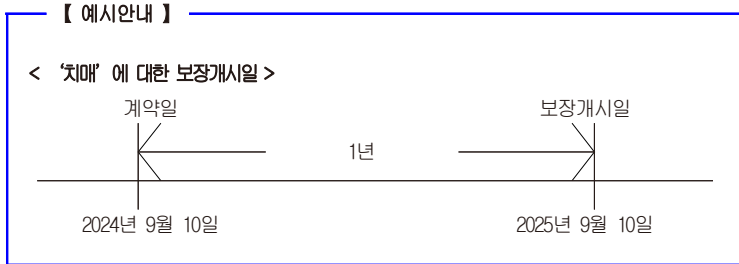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치매' 진단확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포함합니다)를 시행하는 경우, 치매 치료제 또는 치매의 증상 조절을 위한 약제를 투약하거나 투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치매 증상 변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치매의 치료 중에 발생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현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매를 통한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 제4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매'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5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6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 제7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 제8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9조 (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인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

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2인이 지정된 경우 그 중 대표대리인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대리인이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

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59.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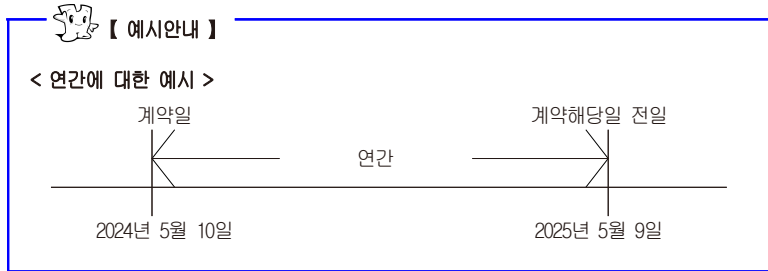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치매직접치료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12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치매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종합병원)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2일한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치매'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2] '치매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치매'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치매'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치매' 진단확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포함합니다)를 시행하는 경우, 치매 치료제 또는 치매의 증상 조절을 위한 약제를 투약하거나 투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치매 증상 변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치매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매를 통한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제4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5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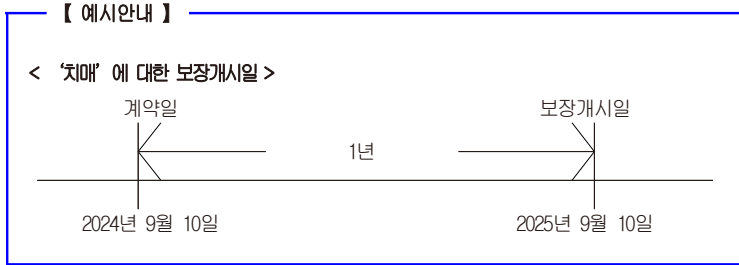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니다)에 의하여 ‘치매’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 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품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부터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함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인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2인이 지정된 경우 그 중 대표대리인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대리인이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2-260.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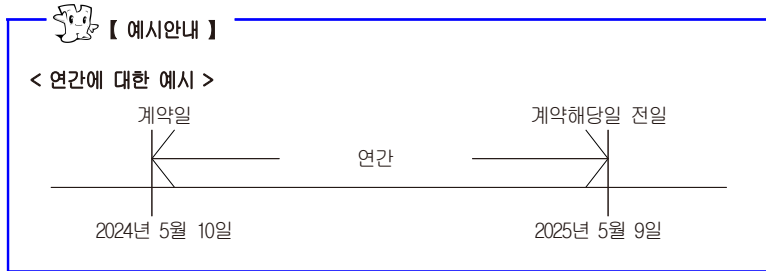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제6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치매' 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매'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통원한 경우에는 통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치매직접치료통원급여금의 지급횟수는 1일 통원당 1회에 한하며 연간 12일을 한도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치매 직접치료 통원급여금 (종합병원)	'치매' 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한 경우	통원1일당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연간 12일한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치매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치매' 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62] '치매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치매'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의 진단서에 의합니다.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 검사 등 일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치매'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치매'

의 진단을 위해 실시한 검사결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치매의 직접적인 치료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치매' 의 직접적인 치료라 함은 치매 진단을 위한 정밀검사(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치매' 진단확정을 위한 정밀검사를 포함합니다)를 시행하는 경우, 치매 치료제 또는 치매의 증상 조절을 위한 약제를 투약하거나 투약을 변경하는 경우 또는 치매 증상 변화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등 의학적으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어 임상적으로 통용되는 치료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치매' 의 직접적인 치료에는 치매의 치료 중에 발병된 합병증 또는 새로이 발견된 질병의 치료가 병행되는 때에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치매를 통한 치료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치매' 의 직접적인 치료로 봅니다.

**제4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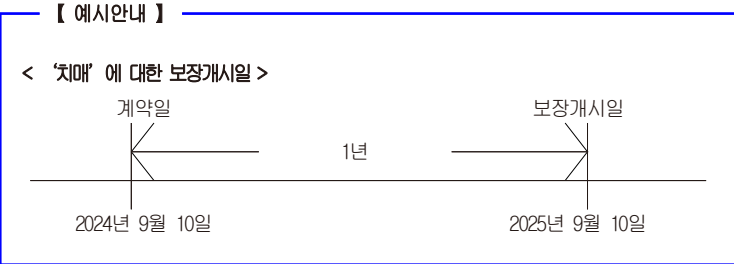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제5조 (통원의 정의 및 장소)**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매' 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치매' 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다만, 상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치매' 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② 보통약관 제3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해지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분열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친 인지기능의 장애
  2.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은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3. 알코올 중독, 습관성 약물 또는 환각제의 복용 및 사용

**제8조 (특약의 무효)**

보통약관 제26조(계약의 무효)에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치매'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이 특약은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험료를 해당 납입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

이 특약의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모두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제10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이라 합니다)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3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지정 또는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은 2인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2인을 지정하는 경우 대표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제11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 ①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니면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② 회사는 제1항의 지정대리청구인 변경 지정시 계약자의 지정 편의를 위해 가족관계서류의 수령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15조(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1조(지정대리청구의 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별  
약관

기타  
특별  
약관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2인이 지정된 경우 그 중 대표대리인에 한하여 제1항의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표대리인이 사망 등을 원인으로 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표대리인이 아닌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대표대리인의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지정대리청구인에 의한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14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8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5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치매’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6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3. 상해 및 질병관련 특별약관

#### 3-1 5대장기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5대장기이식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 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장기이식수술보험금	장기수혜자로서 '5대장기이식수술' 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5대장기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5대장기' 라 함은 '간장', '신장', '심장', '췌장' 및 '폐장' 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5대장기이식수술' 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5대장기를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단, 항게르한스 소도세포 이식수술은 '5대장기이식수술' 로 보지 않습니다.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

- 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장기이식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2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 각막이식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각막이식수술보험금	장기수혜자로서 ‘각막이식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각막이식수술의 정의)**

이 특약에서 ‘각막이식수술’이라 함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기증자의 각막을 이식대상자(피보험자)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료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각막이식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형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형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3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II,수술후감염,기타감염)수술 보장 특별약관 /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II,수술후감염,기타감염)수술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특정감염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특정감염질환’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감염질환수술 보험금	‘특정감염질환’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특정감염질환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특정감염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112] ‘특정감염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특정감염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보장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용어해설】**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제3조(수술의 정의와 장소) 제4항에서 정한 레이저에 의한 수술의 경우, 레이저에 의한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4 김스치료보장 특별약관 / 김스치료[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김스치료보험금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김스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김스치료의 정의)

이 특약에서 ‘김스(Cast)치료’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김스(Cast)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하에 석고붕대 또는 섬유유리붕대(Fiberglass Cast)를 병변이 있는 뼈, 관절부위의 둘레 모두에 착용시켜(Circular Cast) 감은 다음 굳어지게 하여 치료효과를 가져오는 치료법을 말합니다.

단, 환자의 근골격계 손상 부위의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근골격계 손상 부위의 일측면 또는 양측면을 부목(Splint)으로 고정하면서 지지하는 치료인 부목(Splint)치료는 제외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김스치료를 2회 이상 받거나 동시에 서로 다른 신체 부위에 김스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김스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5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보장 특별약관 /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내원 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응급실’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및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특약에서 ‘응급환자’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뇌식장애,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체질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다발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상실
- 사. 알러지 : 열공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체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

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회사양식)
  -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사본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6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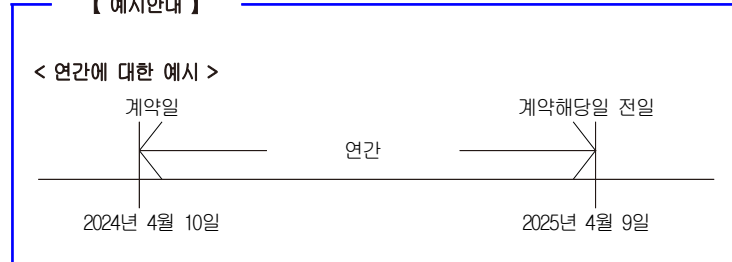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11대중대질환' 으로 인해 '응급환자' 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이 때 응급실 도착전 사망하였거나 외부에서 병원을 옮겨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도 보상합니다. 다만, 응급실이 아닌 곳에서의 야간진료 또는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1대중대질환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	'11대중대질환' 으로 인해 '응급환자' 로 '응급실' 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연간 1회한)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 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응급실, 응급환자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응급실' 이라 함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5호에서 정하는 응급의료기관(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정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된 응급실 및 종합병원의 응급실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이 법에 따라 지정된 중앙응급 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2(응급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

이 법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이 특약에서 '응급환자' 라 함은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자 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에서 정하는 자로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또는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관련법규 】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2. 제1호의 증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응급의료종사자가 판단하는 증상

※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

1. 응급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급성뇌막염, 급성신경학적 이상, 구토·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있는 두부 손상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증상, 급성호흡곤란, 심장질환으로 인한 급성 흉통, 심계항진, 박동이상 및 쇼크
  - 다. 중독 및 대사장애 : 심한 탈수, 약물·알콜 또는 기타 물질의 과다복용이나 중독, 급성대사장애(간부전·신부전·당뇨병 등)
  - 라. 외과적 응급증상 :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급성복막염·장폐색증·급성체장염 등 중한 경우에 한함), 광범위한 화상(외부신체 표면적의 18% 이상), 관통상, 개방성 골절 또는 대퇴부 척추의 골절, 사지를 절단할 우려가 있는 혈관 손상, 전신마취하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다발성 외상
  - 마. 출혈 : 계속되는 각혈, 지혈이 안되는 출혈, 급성 위장관 출혈
  - 바. 안과적 응급증상 : 화학물질에 의한 눈의 손상, 급성 시력 상실
  - 사. 알러지 : 알콜 부종을 동반한 알러지 반응
  - 아.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경련성 장애
  - 자. 정신과적 응급증상 :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신장애
2.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
  - 가. 신경학적 응급증상 : 의식장애, 현훈
  - 나. 심혈관계 응급증상 : 호흡곤란, 과호흡
  - 다. 외과적 응급증상 : 화상, 급성복증을 포함한 배의 전반적인 이상증상, 골절·외상 또는 탈골, 그 밖에 응급수술을 요하는 증상, 배뇨장애
  - 라. 출혈 : 혈관손상
  - 마. 소아과적 응급증상 : 소아 경련, 38℃ 이상인 소아 고열(공휴일·야간 등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어려운 때에 8세 이하의 소아에게 나타나는 증상을 말한다)
  - 바. 산부인과적 응급증상 : 분만 또는 성폭력으로 인하여 산부인과적 검사 또는 처치가 필요한 증상
  - 사. 이물체에 의한 응급증상 : 귀·눈·코·항문 등에 이물이 들어가 제거술이 필요한 환자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②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2.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공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3.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받은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5조 ( ‘11대중대질환’의 정의)

- ① 이 특별약관에서 ‘11대중대질환’이라 함은 [별표142] ‘11대중대질환 분류표’에서 정한 질환을 말합니다.
- ② ‘11대중대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병원이나 의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국외의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에 의해 작성한 문서화된 진료기록 또는 검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11대중대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사망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응급실기록지 사본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7 6대인공관절치환수술(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6대인공관절치환수술(연간1회한)[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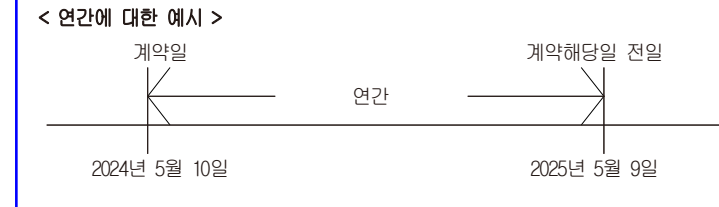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6대 인공관절치환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수술에 대해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6대인공관절 치환수술(전치환)	인공관절 전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2. 6대인공관절 치환수술(부분치환)	인공관절 부분치환수술을 받은 경우	이 보장의 보험가입금액 (연간1회한)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0]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및 상병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6대인공관절치환수술’이라 함은 고관절(엉덩이 관절), 견관절(어깨 관절), 슬관절(무릎 관절), 주관절(팔꿈치 관절), 완관절(손목 관절) 또는 족관절(발목 관절)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 손상된 관절을 제거하고 인공적으로 만든 관절(특수 소재를 사용한 인공적 신체의 관절로 이하 ‘인공관절’이라 합니다)을 삽입하여 치환하여 줌

로써 원래의 관절기능을 회복시켜주는 인공관절전치환수술 또는 인공관절부분치환수술을 말합니다.

단, 신체 내에 금속 등을 삽입하여 관절을 고정하는 금속내고정술 또는 신체외부에 철심 등을 사용하여 관절을 고정하는 외고정술 등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③ 제1항의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제3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뽑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 용어해설 】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 예시안내 】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가 하나의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수술보험금만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3-8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특별약관 / 보험료납입면제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 가입 가능한 보험종목 >

이 특별약관은 2종(납입면제형),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계약에 한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 제1조 (특약의 보험기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세만기형)(Hi2601) 계약의 보험료납입기간과 동일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제2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2종(납입면제형)>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애분류표 ([별표1] '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 나.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 ( '유사암' 제외)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 <3종(해약환급금 미지급형 I)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가.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애분류표 ([별표1] '장애분류표' 참조)에서 정한 장애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된 경우
- 나.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거나, 보험기간 중에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 다.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 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보험료납입면제대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장애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거나 암 ( '유사암' 제외)또는 '뇌졸중' 또는 '급성심근경색증' 또는 '말기신부전증' 또는 '말기간경화' 또는 '말기폐질환' 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상해로 '뇌손상' 또는 '내장손상' 을 입고 사고일부터 180일 이내에 개두·개흉·개복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가입금액)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제3조 (암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제외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유사암’ 이라 함은 제3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4항에서 정한 ‘갑상선암’, 제5항에서 정한 ‘제자리암’ 및 제6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을 총칭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기타피부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44)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이 특약에서 ‘갑상선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분류번호 C73)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⑤ 이 특약에서 ‘제자리암’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⑥ 이 특약에서 ‘경계성종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⑦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 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의 진단확정 시점은 상기 검사에 의한 결과보고 시점으로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암(‘유사암’ 제외)’ 및 ‘유사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예시안내 】**

**< 제7항에 따른 진단방법이 가능하지 않을 때 예시 >**

- 피보험자가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받을 여유없이 급속한 병증 악화로 사망한 경우
- 종양의 발생부위 및 피보험자의 신체상태 등의 이유로 조직을 추출하는 경우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병리학적 검사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

**【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 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원발부위의 암이 완치되었다면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C77-C80)의 진단확정 시점은 원발암 진단확정 시점으로 변경되지 않습니다.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 기준 예시>

- ‘갑상선암(C73)’과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로 인해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 불명의 악성신생물(C77)’로 진단된 경우 ‘갑상선암(C73)’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이 폐로 전이되어 ‘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8.0)’로 진단된 경우 ‘유방의 악성신생물(C50)’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 ‘위의 악성신생물(C16)’이 뇌로 전이되어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C79.3)’로 진단된 경우 ‘위의 악성신생물(C16)’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봅니다.

즉, 이차성암으로 진단시 이차성암의 원인이 되는 원발암이 확인된 경우 원발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며, 이차성암에 대한 보험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발암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차성암이 발생한 부위의 암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뇌졸중 등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뇌졸중’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1] ‘뇌졸중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뇌졸중’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촬영(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 보험기간 중 뇌졸중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뇌졸중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③ 이 특약에서 ‘급성심근경색증’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 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④ ‘급성심근경색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증상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심장동맥) 촬영술, 혈액중 심장효소검사 등 검사결과 상기 질환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이상 소견을 보이는 경우 진단합니다.
- 그러나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상기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확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보험기간 중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는 경우
  2. 부검감정서상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정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 ⑤ 이 특약에서 ‘말기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말기 신질환(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콩팥병(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말기신부전증으로 보지 않습니다.([별표27] ‘말기신부전증 분류표’ 참조)
- ⑥ ‘말기신부전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또한, 회사가 ‘말기신부전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⑦ 이 특약에서 ‘말기간경화’라 함은 만성 말기간경화를 의미하며, 다음 중 한 가지 이상의 원인이 됩니다.
- 다만, 알코올중독 또는 약물중독에 의한 간질환, 선천적 및 독성 간질환은 제외됩니다.
1. 통제가 불가능한 복수증
  2. 영구적인 황달
  3. 위나 식도벽의 정맥류
  4. 간성 뇌증
- ⑧ ‘말기간경화’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혈액검사소견, 동위원소간주사(Radioisotope Liver Scan), 복부초음파(Abdomen Sono), 복부전산화단층촬영(Abdomen CT Scan)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 또한, 회사가 ‘말기간경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⑨ 이 특약에서 ‘말기폐질환’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26] ‘말기폐질환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만성 호흡부전을 일으키는 폐질환의 악화된 상황으로써 다음의 각 호의 특징을 모두 보여야 합니다.
-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하여 제2호의 검사방법을 진단의 기초로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그와 동일한 상태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를 진단확정의 기초로 할 수 있습니다.

1. 영구적인 산소공급 치료가 요구되는 상태
  2. 정상시 FEV1 검사가 정상예측치의 25% 이하
- ⑩ ‘말기폐질환’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한의사, 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합니다.
- 또한, 회사가 ‘말기폐질환’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뇌손상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뇌손상’이라 함은 두부(頭部)에 가해진 충격에 의해 뇌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내장손상’이라 함은 신체 외부에서 가해진 충격에 의해 내장(심장, 폐, 위, 장, 간장, 췌장, 비장, 신장, 방광)의 기관에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에 해당하는 기질적 손상을 입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각각 아래의 수술을 말하며, 뇌 및 내장에 의료기구를 삽입하여 시행하는 두개골 천공술, 복강경, 내시경 등의 수술 및 시술은 ‘개두(開頭)수술’, ‘개흉(開胸)수술’, ‘개복(開腹)수술’로 보지 않습니다.
  1. ‘개두(開頭)수술’이라 함은 두개를 열어 뇌를 노출시키는 수술을 말합니다.
  2. ‘개흉(開胸)수술’이라 함은 흉강을 여는 수술로서 농흉수술, 흉막, 폐장, 심장, 횡격막, 종격동, 식도수술 등 흉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흉수술에 준하는 것은 늑골(갈비뼈), 흉골(복장뼈)의 절제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3. ‘개복(開腹)수술’이라 함은 복벽을 절개하여 복강을 여는 수술로서 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충수, 간장 및 담도, 췌장, 비장, 난소 및 자궁수술 등 복강내에 조작을 가할 때에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개복수술에 준하는 것으로서 신장, 뇨관 및 방광수술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지만 경도노적조작에 의한 것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제6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항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 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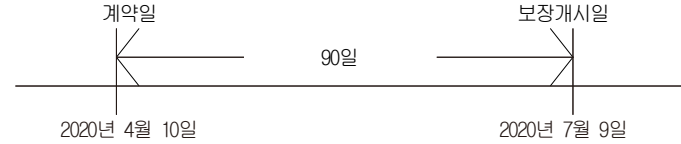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7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에서 ‘암’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



- ②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③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되었으나, 제2항에 따라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부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확정된 ‘암’ ( ‘유사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다만,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진단확정 받더라도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 ( ‘유사암’ 제외)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부터 5년 이 지난 이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한 보장을 개시합니다.

【 유의사항 】

-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④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에 장애판정시기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험기간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에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2년 이내
  2.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로부터 1년 이내
- ⑥ 장애분류표(별표1)에 해당되지 않는 후유장애는 피보험자의 직업, 나이, 신분 또는 성별 등에 관계없이 신체의 장애정도에 따라 장애분류표(별표1)의 구분에 준하여 지급률을 결정합니다.
-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장애분류별 최저 지급률 장애정도에 이르지 않는 후유장애에 대하여는 장애지급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⑦ 같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⑧ 다른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후유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후유장애지급률을 결정하고,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에 대한 후유장애지급률을 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장애분류표(별표1)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릅니다.
- 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전까지의 후유장애에 대한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험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고 최종 후유장애상태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에서 이미 지급받은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험금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을 차감하여 장애지급률을 결정합니다.
1. 이미 이 계약에서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경우(보장개시 이전의 원인에 의하거나 또는 그 이전에 발생한 후유장애를 포함합니다)
  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았던 피보험자에게 그 신체의 동일 부위에 또다시 제8항에 규정하는 후유장애상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 예시안내 】

< 장애지급률의 계산 예시 >

보험가입 전 한 팔의 뼈에 기형(지급률 5%)이 있는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후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경우(지급률 60%) 장애지급률 계산

- 장애지급률 = 55%(보험가입 후 발생한 장애(60%) - 보험가입 전 장애지급률(5%))

- 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회사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다만, 회사가 제13조(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제1항에 따라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합니다.
- ⑪ 3종(해약환급금지급형 I) 계약의 경우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두 가지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한 가지 사유에 의한 보험료납입면제대상 보험금만을 지급합니다.

- ⑫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8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보통약관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특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보통약관 제18조(계약전 알릴 의무),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보통약관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 및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암' ( '유사암' 제외)에 대하여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 제5조의2(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9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별약관 / 양전자방출단층촬영검사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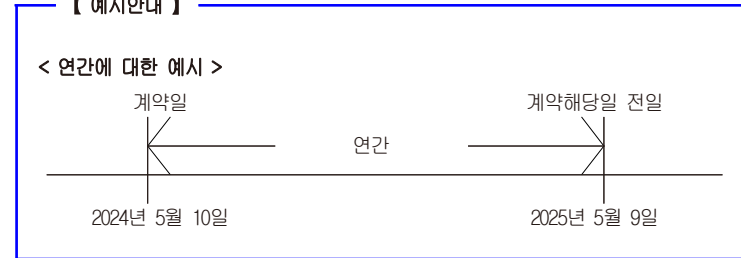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조건을 토대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한도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양전자방출 단층촬영(PET) 검사 보험금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를 받은 경우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50% 해당액	이 특약 보험가입금액의 100% 해당액	연간1회한

- ② 제1항의 '의료행위'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를 말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제2조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질병 또는 상해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85]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 항목에서 급여항목(다-339)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외에 '급여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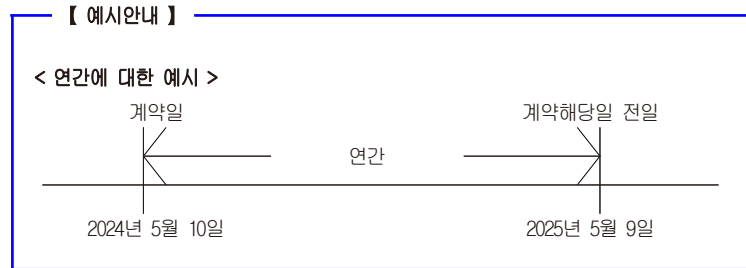
**3-10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보험금	질병으로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상해로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 ② 제1항의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이라 함은 [별표90]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 분류표’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용어해설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유의사항 】

<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자(뇌혈관질환)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기간동안 재수술시 재수술일로부터 최대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보장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요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

립니다.

-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보장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보장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보장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11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Ⅱ]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 또는 진단확정된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기간 중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보험금	질병으로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로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으로 등록된 경우	

- ② 제1항의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보험금은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에 해당되어 여러번 등록되더라도 등록 1회당 연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제2조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의 정의)

- ① 이 보장에서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 이라 함은 [별표91]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에서 정한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제도 >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비용의 일부부담) 동법 시행령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2 및 의료급여법 제10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동법 시행령 제13조(급여비용의 본인부담) 제1항 별표1에 근거하여 진료비 본인부담이 높은 중증질환자와 희귀질환자 등에 대하여 외래 또는 입원진료시 본인부담률을 경감해주는 제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개정으로 산정특례적용기준이 변경되더라도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지급사유 발생 당시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이미 보험금 지급여부가 판단된 경우에는 이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 유의사항 】

#### < 중증질환자 심장질환 산정특례 등록신청 절차 및 적용기간 >

-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 에 해당하는 사람은 별도의 등록절차없이 병원측의 요양급여비 청구만으로 산정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증질환자(심장질환)의 산정특례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별도의 자격전환 및 산정특례 등록없이 자동등록이 되며, 등록시 최대 30일(단,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심장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간 적용이 됩니다. 다만, 심장질환 산정특례 기간동안 재수술시 재수술일로부터 최대30일 추가로 산정특례 적용기간이 늘어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산정특례대상이 되어 법령에 따라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4조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계약내용의 변경)

- ①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국민건강보험법 및 관련법령(이하 ‘법령’ 이라 합니다)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에는 판단하는 시점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적용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사유로 이 보장의 기초서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기초서류에 따라 새로운 보장내용 또는 보험료율로 변경하여 드리며, 제3항에 따라 변경된 보장내용 및 보험료 등에 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알려드립니다.
1.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이 폐지되는 경우
  2. 법령의 개정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도의 변경으로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법령의 개정에 따라 ‘계약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있거나 급격한 보험금 지급 증가로 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칠 수가 있는 등’ 의 사유로 금융위원회의 기초서류 변경 명령이 있는 경우
- ③ 회사는 제2항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안내할 경우에는 계약내용 변경일 15일전까지 보장내용 및 보험료 변경 내용, 계약내용 변경 절차 등에 대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계약내용 변경시점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계약내용 변경일 전일까지 계약내용의 변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회사에 통지하지 않으면 이 보장은 변경되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⑥ 제2항에 따라 보장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그 때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보장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변경 전후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차액을 정산하여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회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⑦ 제2항 내지 제6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보장내용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더 이상 효력이 없으며 회사는 이 보장의 효력이 소멸되는 날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관련 내용을 계약자에게 2회 이상 알립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보장의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효력소멸일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수 있는 서류(진단서(상병명, 상

- 병코드, 특정기호, 산정특례적용기간, 수술명, 수가코드 등 기입), 진료비세부내역서(산정특례적용영수증), 진료기록부 등)
-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청구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0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12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연간3회한,급여)[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분류표’ ([별표33]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을 받은 경우(이하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을 받은 경우(이하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라 합니다)에는 각 보장별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A형) 보험금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분류표’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A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A형)’ 보장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2.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B형) 보험금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분류표’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B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B형)’ 보장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3.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C형) 보험금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분류표’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C형)’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C형)’ 보장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은 각각 연간 발생한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와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회 한도로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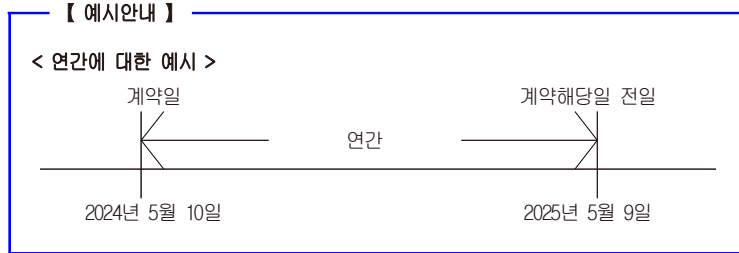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2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별표93]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에 준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대상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 외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 이라 함은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과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각각에 대해 각 보장별로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을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을 받은 경우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강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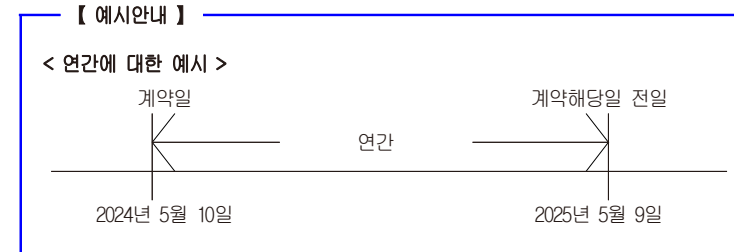
**3-13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 [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진단확정된 질병 또는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 중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분류표' ([별표94]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참조. 이하 같습니다.)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을 받은 경우(이하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라 합니다)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을 받은 경우(이하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라 합니다)에는 각 보장별 1일 1회, 연간 3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1.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A형) 보험금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분류표' 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A형)' 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A형)' 보장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2.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B형) 보험금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분류표' 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B형)' 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B형)' 보장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3.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C형) 보험금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 또는 통원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분류표' 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C형)' 을 받는 경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C형)' 보장 보험가입금액 (1일1회, 연간3회한)

- 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은 각각 연간 발생한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와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③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진료행위 중 [별표94]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대상 수가코드 분류표’에 해당하는 진료 행위를 말하며,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에 준하여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대상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외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입원 및 통원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입원’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통원’이라 함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지급사유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 입원하지 않고 내원하여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과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 각각에 대해 각 보장별로 1일 1회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을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외래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을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입원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을 받은 경우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수술기록지 포함), 수술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죽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14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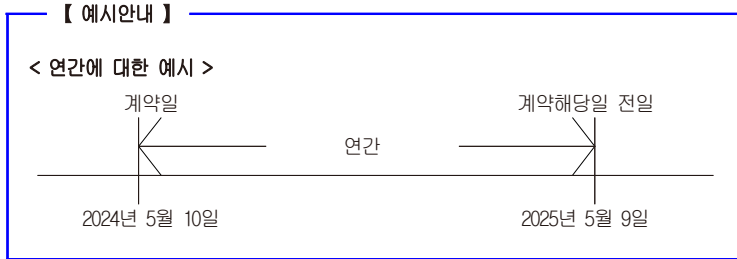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추간판장애'로 진단확정되고, 그 '추간판장애'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을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다만,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을 받은 부위 및 횡수와 관계없이 연간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 보험금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 '추간판장애'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추간판장애'라 함은 척추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통증 및 신경 증상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44] '추간판장애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추간판장애'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면허를 가진 자에 의한 진단서에 의합니다.
- ③ 이 특약에서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추간판장애'의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 95]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④ 제3항의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절차를 거쳐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 항목에

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⑥ 제3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3항에서 정한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 외에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약관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15 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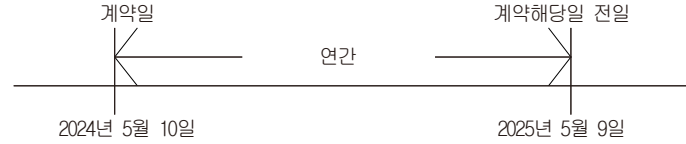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를 받은 경우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인공호흡기치료’는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특정중증 치료 (4종) 보험금	질병으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상해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 연간에 대한 예시 >**



**제2조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이라 함은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별표 111]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대상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아래의 의료행위를 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단, ‘인공호흡기치료’는 12시간을 초과한 경우에 한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인공호흡기 치료 (12시간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 이용)</li> <li>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li> </ul>	M0860
		M5860
저체온 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치료적저체온요법(1일당)</li> <li>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li> <li>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처치일 다음날부터 1일당</li> </ul>	M5970
		M5990
		M5991
대동맥 내 풍선펌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동맥내풍선펌프</li> <li>대동맥내풍선펌프-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li> </ul>	01921
		01922
부분 체외순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분체외순환</li> <li>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li> <li>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li> <li>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이후(1일당) -10시간 초과 계속 사용</li> <li>부분체외순환-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li> <li>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li> </ul>	01901
		01902
		01903
		01904
		01905
		01906

- ② 제1항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이라 함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로서, 의료법 제3조 제2항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에 준하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외에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피보험자에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이 발생한 경우에도 하나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에 따른 급여 특정 중증치료(4종)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중 연간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이 발생한 경우에도 연간 1회를 한도로 급여 특정 중증치료(4종)보험금을 지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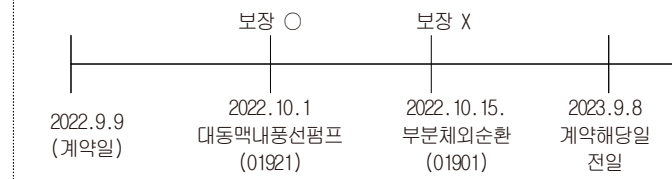
#### 【 예시안내 】

##### <예시1>

병원에 입원하여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M5860)과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M5990)을 동시에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을 받더라도 하나의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치료보험금을 지급함)

##### <예시2>

병원에 입원하여 대동맥내풍선펌프(01921)를 받은 이후, 부분체외순환(01901)치료를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1회 지급(연간1회 한도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치료보험금을 지급함)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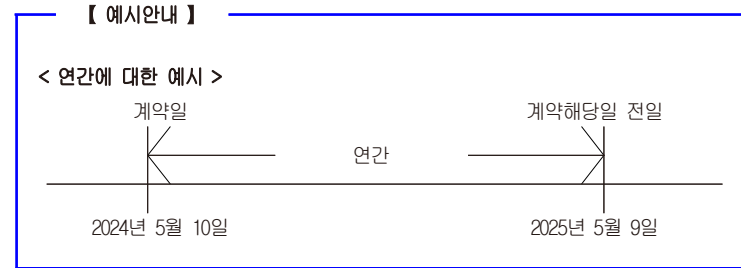
**3-16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연간1회환,급여)보장 특별약관 /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연간1회환,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수술보험금	질병으로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상해로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제2조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 (심방 또는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00203
경정맥 체내용심박기거치술-심박기거치술 (심방 및 심실 전극을 삽입하는 경우)	00204
개흉적 체내용심박기거치술	02004
경정맥 체내용 심박기 거치술-심박기 거치술 -전극유도선이 없는 심박기 거치술	00230

- ② 제1항의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에 준하여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외에 ‘급여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17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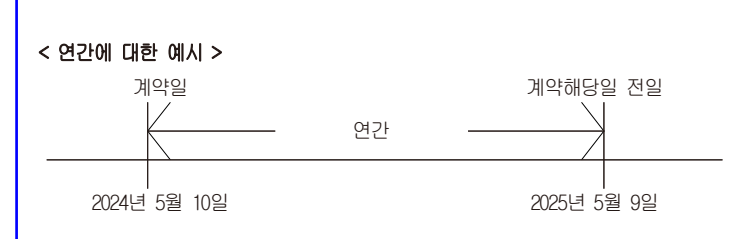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에는 연간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수술보험금	질병으로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상해로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의 100%

-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예시안내 】**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제2조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의 정의)**

① 이 특약에서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라 함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아래의 진료행위가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경정맥접근-삽입술	00211
심율동전환제세동기거치술-피하접근-삽입술	02211

- ② 제1항의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항목에서 급여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에 준하여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 외에 ‘급여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단서, 진료비계산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중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18 무릎관절연골손상(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 무릎관절연골손상(중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증무릎관절 연골손상 진단보험금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제2조 (무릎관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무릎관절증’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7] ‘무릎관절증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무릎관절증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M17 S83.3

- ② ‘무릎관절증’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방사선단순영상(X-ray), 전산화단층영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무릎관절증’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3조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이라 함은 제2조(무릎관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무릎관절증’으로 진단확정되고, 국제 연골재생 및 관절보존협회(International Cartilage Regen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에서 규정한 연골결손 깊이에 따른 연골손상 분류법(이하 ‘ICRS Grade’라 합니다)에 따라 무릎관절연골손상 4등급(연골의 심각한 결손으로 소실되어 연골하부의 뼈가 노출된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관절경검사(Arthroscopy)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증무릎관절연골손상’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검사결과지(자기공명영상(MRI), 관절경검사)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 죽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3-19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도이상)진단보장 특별약관 /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도이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중등도이상 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보험금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 으로 진단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최초1회한)

**제2조 (무릎관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무릎관절증' 이라 함은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별표147] '무릎관절증 분류표'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무릎관절증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M17 S83.3

- ② '무릎관절증'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방사선단층영상(X-ray), 전산화단층영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무릎관절증'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 ① 이 특약에서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 이라 함은 제2조(무릎관절증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한 '무릎관절증' 으로 진단확정되고, 국제 연골재생 및 관절보존협회(International Cartilage Regeneration & Joint Preservation Society)에서 규정한 연골결손 깊이에 따른 연골손상 분류법(이하 'ICRS Grade' 라 합니다)에 따라 무릎관절연골손상 3등급(연골의 심각한 결손으로 병변이 연골두께의 1/2 이상 침범) 또는 4등급(연골의 심각한 결손으로 소실되어 연골하부의 뼈가 노출된 상태)인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 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치과의사 제외)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고 합니다)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과 함께 자기공명영상(MRI) 또는 관절경검사(Arthroscopy)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 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검사결과, 진료기록부 사본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

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제6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료비세부내역서, 진단서, 검사결과지(자기공명영상(MRI), 관절경검사)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7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에게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무릎관절연골손상 진단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7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3-20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 (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및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 (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	상해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																		
		<table border="1"> <thead> <tr> <th>마취시간</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td>3시간 이상</td><td>600만원</td></tr> <tr><td>4시간 이상</td><td>1200만원</td></tr> <tr><td>5시간 이상</td><td>1,500만원</td></tr> <tr><td>6시간 이상</td><td>1,800만원</td></tr> <tr><td>7시간 이상</td><td>2,100만원</td></tr> <tr><td>8시간 이상</td><td>2,400만원</td></tr> <tr><td>9시간 이상</td><td>2,700만원</td></tr> <tr><td>10시간 이상</td><td>3,000만원</td></tr> </tbody> </table>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600만원	4시간 이상	1200만원	5시간 이상	1,500만원	6시간 이상	1,800만원	7시간 이상	2,100만원	8시간 이상	2,400만원	9시간 이상	2,700만원	10시간 이상	3,000만원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600만원																			
4시간 이상	1200만원																			
5시간 이상	1,500만원																			
6시간 이상	1,800만원																			
7시간 이상	2,100만원																			
8시간 이상	2,400만원																			
9시간 이상	2,700만원																			
10시간 이상	3,000만원																			
	질병으로 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지급금액의 50% 해당액 (각 구간별)	<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 >																	
			<table border="1"> <thead> <tr> <th>마취시간</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td>3시간 이상</td><td>600만원</td></tr> <tr><td>4시간 이상</td><td>1200만원</td></tr> <tr><td>5시간 이상</td><td>1,500만원</td></tr> <tr><td>6시간 이상</td><td>1,800만원</td></tr> <tr><td>7시간 이상</td><td>2,100만원</td></tr> <tr><td>8시간 이상</td><td>2,400만원</td></tr> <tr><td>9시간 이상</td><td>2,700만원</td></tr> <tr><td>10시간 이상</td><td>3,000만원</td></tr> </tbody> </table>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600만원	4시간 이상	1200만원	5시간 이상	1,500만원	6시간 이상	1,800만원	7시간 이상	2,100만원	8시간 이상	2,400만원	9시간 이상	2,700만원	10시간 이상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600만원																			
4시간 이상	1200만원																			
5시간 이상	1,500만원																			
6시간 이상	1,800만원																			
7시간 이상	2,100만원																			
8시간 이상	2,400만원																			
9시간 이상	2,700만원																			
10시간 이상	3,000만원																			

**제2조 ( '전신마취' 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전신마취"라 함은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별표118]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마취 방법은 제외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신마취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 외에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

-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 주1)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때마다 산정

**제3조 (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 따른 종합병원 요건 >**

-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출 것
-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제5조 (질병 및 상해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질병 및 상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상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 감염병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신마취’ 는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과 실제 마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취기록지 포함)상의 마취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마취시간(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점부터 이를 제거하기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기형, 병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7.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8.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진단서(병명 및 분류코드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기재), 전신마취 종류와 마취시간,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의 진료기록부,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3-21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 (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질병 및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수술1회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최초계약		갱신계약																		
		계약일부 1년 미만	계약일부 1년 이상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	상해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 기준 > <table border="1"> <thead> <tr> <th>마취시간</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td>3시간 이상</td><td>2,400만원</td></tr> <tr><td>4시간 이상</td><td>2,800만원</td></tr> <tr><td>5시간 이상</td><td>3,500만원</td></tr> <tr><td>6시간 이상</td><td>4,200만원</td></tr> <tr><td>7시간 이상</td><td>4,900만원</td></tr> <tr><td>8시간 이상</td><td>5,600만원</td></tr> <tr><td>9시간 이상</td><td>6,300만원</td></tr> <tr><td>10시간 이상</td><td>7,000만원</td></tr> </tbody> </table>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2,400만원	4시간 이상	2,800만원	5시간 이상	3,500만원	6시간 이상	4,200만원	7시간 이상	4,900만원	8시간 이상	5,600만원	9시간 이상	6,300만원	10시간 이상	7,000만원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2,400만원																					
4시간 이상	2,800만원																					
5시간 이상	3,500만원																					
6시간 이상	4,200만원																					
7시간 이상	4,900만원																					
8시간 이상	5,600만원																					
9시간 이상	6,300만원																					
10시간 이상	7,000만원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신마취를 하고 마취시간 3시간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이 특약 지급금액의 50% 해당액 (각 구간별)	< 보험가입금액 7,000만원 기준 > <table border="1"> <thead> <tr> <th>마취시간</th> <th>지급금액</th> </tr> </thead> <tbody> <tr><td>3시간 이상</td><td>2,400만원</td></tr> <tr><td>4시간 이상</td><td>2,800만원</td></tr> <tr><td>5시간 이상</td><td>3,500만원</td></tr> <tr><td>6시간 이상</td><td>4,200만원</td></tr> <tr><td>7시간 이상</td><td>4,900만원</td></tr> <tr><td>8시간 이상</td><td>5,600만원</td></tr> <tr><td>9시간 이상</td><td>6,300만원</td></tr> <tr><td>10시간 이상</td><td>7,000만원</td></tr> </tbody> </table>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2,400만원	4시간 이상	2,800만원	5시간 이상	3,500만원	6시간 이상	4,200만원	7시간 이상	4,900만원	8시간 이상	5,600만원	9시간 이상	6,300만원	10시간 이상	7,000만원
마취시간	지급금액																					
3시간 이상	2,400만원																					
4시간 이상	2,800만원																					
5시간 이상	3,500만원																					
6시간 이상	4,200만원																					
7시간 이상	4,900만원																					
8시간 이상	5,600만원																					
9시간 이상	6,300만원																					
10시간 이상	7,000만원																					

**제2조 (‘전신마취’의 정의와 장소)**

① 이 특약에 있어서 "전신마취"라 함은 의사의 관리 하에 약물 등을 사용하여 전신을 의식, 감각, 운동 및 반사행동이 없는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해 [별표118]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에서 정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단순 정맥마취, 신경차단술, 신경파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 신체의 특정 부위의 감각만을 차단하는마취 방법은 제외하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병원 중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및 의원급 의료기관에서의 전신마취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 외에 '전신마취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예시안내 】**

**<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 계산 예시 >**

- ①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10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10회 = 21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 ②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21(마취유지주1)) 3회의 경우  
: 60분 x 1회 + 15분 x 3회 = 105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되지 않음
- ③ L1211(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1회, L1212(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2회의 경우  
: 60분 x 1회 + 60분 x 2회 = 180분  
→ 마취시간 3시간 이상에 해당  
주1) 마취유지 : 1시간을 초과하여 마취관리를 지속시킨 경우에 매 15분 증가할 때마다 산정

**제3조 (상급종합병원의 정의)**

이 특약에서 '상급종합병원'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서 정한 상급종합병원을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요건 >**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함
- 의료법 제77조(전문요) 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이어야 함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질병군별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여야 함

**제4조 (수술의 정의와 장소)**

- ① 이 특약에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

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 ② 제1항의 수술에는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생체에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 ③ 제1항의 수술은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행한 것에 한합니다.
- ④ 제1항의 수술에서 아래 각호의 사항은 제외합니다.
  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2.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3.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4.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5.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6.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7.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되지 않는 시술

**【 용어해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 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예시안내 】**

**<기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 예시>**

- 체외 충격파 쇄석술
- 변연절제를 동반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
- 절개 또는 배농술
- 치, 치수, 치은, 치근, 치조골의 처치
- 전기소작술
- IPL(Intense Pulsed Light) : 아이피엘 레이저 시술
- ※ 본 시술들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시술의 예시로, 예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제5조 (질병 및 상해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질병 및 상해라 함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의 (A00~Y98)에 해당하는 질병 및 상해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규정한 제1급 감염병

### 제6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전신마취’는 수술 1회당 "마취시간"을 기준으로 보장하며, 2회 이상의 전신마취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각각의 마취시간을 더하여 보장하지 않습니다.
- ②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상 마취관리기본 및 마취 유지 수가코드에 의한 마취시간과 실제 마취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마취기록지 포함)상의 마취시간이 상이할 경우 실제 마취시간(마스크 또는 기관내 삽관을 시행한 시점부터 이를 제거하기까지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정신 및 행동장애(F00~F99)로 인한 질병
  2.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Q00~Q99)으로 인한 질병
  3.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4. 치의보철 및 미용상의 처치로 인한 경우
  5. 정상임신, 분만전후의 간호 및 검사와 인공유산, 불법유산 등으로 인한 경우
  6.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지 않는 불임수술 또는 제왕절개수술 등으로 인한 경우
  7. 치료를 수반하지 않는 건강진단으로 인한 경우
  8.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Z00-Z99)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진단서(병명 및 분류 코드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I)’ 필수기재), 전신마취 종류와 마취시간, 수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의 진료기록부,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

- 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9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10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9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11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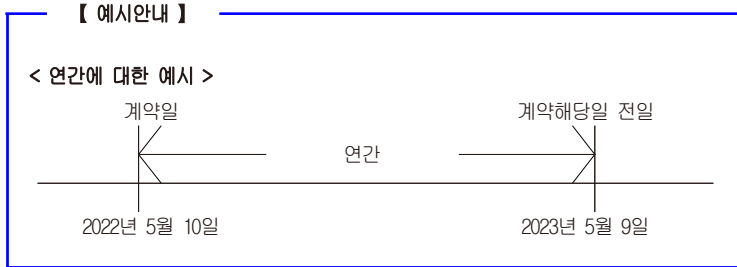
## 3-22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마취(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연간1회에 한하여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특정마취 치료비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특정마취(급여)' 를 받은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② 제1항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③ 제1항의 보험금 지급 기준일은 제2조( '특정마취(급여)' 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행위를 시행한 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제2조 ( '특정마취(급여)' 의 정의)

-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마취(급여)"라 함은 의사의 관리하에 [별표154] '특정마취(급여) 의료행위 분류표' 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마취항목에서 급여항목으로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단, 치과마취, 신경차단술, 신경과괴술, 표면마취, 침윤마취 및 간단한 전달마취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특정마취(급여) 의료행위' 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특정마취(급여) 의료행위' 외에 '특정마취(급여) 의료행위'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정신 및 행동장애(F04 ~ F99)
  - 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 장애로 인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관련 합병증(N96 ~ N98)
 

단,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N96 ~ N98)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피보험자가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로 수술한 경우(O00 ~ O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Q00 ~ Q99)
  - 비만(E66)
  - 요실금(N39.3, N39.4, R32)
  - 치핵 및 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K60 ~ K62, K64)
  - 치아우식증, 치아 및 치주질환 등의 치과질환(K00 ~ K08)
-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건강검진(단, 검사결과 이상 소견에 따라 건강검진센터 등에서 발생한 마취항목 중 급여항목으로 발생한 마취는 보상합니다), 예방접종, 인공유산
  - 영양제, 비타민제, 호르몬 투여, 보신용 투약, 친자 확인을 위한 진단, 불임검사, 불임수술, 불임복원술, 보조생식술(체내, 체외 인공수정을 포함합니다), 성장촉진과 관련된 수술
  -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탈기코(주사비), 점, 모반(피보험자의 가입나이가 태어난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합니다),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O47.3)은 보상합니다), 치료를 동반하지 않는 단순포경(phimosis),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별표38] 비급여대상)에 따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치료를 위한 수술
    -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다만, 안검하수(눈꺼풀처짐), 안검내반(눈꺼풀속달림) 등을 치료하기 위한 시력개선 목적의 이중검수술은 보상합니다), 코성형수술(윤비술), 유방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 사시교정, 안외각리증(양쪽 눈을 감싸고 있는 뼈와 뼈 사이의 거리가 넓은 증상)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서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 수술방법 또는 치료재료가 사용되지 않은 부분은 시력교정술로 봅니다)
    -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7. 마약, 습관성 의약품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우

- ④ 회사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정한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I~IV(진료행위코드 EA001-EA004)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받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5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증명서, 수술증명서, 진단서(병명 및 분류 코드 기입), 진료기록부(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계산서 및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수가 코드(ED1)’ 필수기재), 마취종류와 마취시간, 수술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마취기록지 및 수술기록지 등의 진료기록부, 각종사고 증명서류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4.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 4-1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법률비용보험금 (민사소송)	민사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 제2조 (소송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소송사건'이라 함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심급 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 ③ 이 특약에서 '연간'이라 함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소송은 연간 하나의 사건에 의해 제기된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② 회사는 심급별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59]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 【 예시안내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의 경우  
 $[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times (8/100)] = 440만원$  (보상한도)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times (8/100)]$

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개정 2020.12.28.)'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칙을 따르므로 상기 산출예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60]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표61]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다만,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종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한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하명령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보험’ 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용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가족 간의 민사소송
19. 소송의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연체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20.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 용어해설 】**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 연간 하나의 사건 >**  
보험기간 첫날(1회 보험료 받은 시점)부터 1년이 되는 마지막 날 그 시점까지 및 이후 각 1년간의 기간 중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발생한 법적 분쟁으로서 소송이 제기된 원인이 된 하나의 사실을 말합니다.

**< 하나의 소송 >**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2조(소송 등의 정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소의 취하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의 각하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소장각하명령 >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가족 >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고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나료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9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계약의 보상책임액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2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

<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장금액 60, 계약2 보장금액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bullet \text{계약1} = 48 = 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quad \bullet \text{계약2} = 32 = 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제10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1조 (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4-2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심급별로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법률비용보험금 (행정소송)	행정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인지액+송달료	500만원 한도


제2조 (소송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소송'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소송사건'이라 함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을 말합니다.

심급 구분	행정사건	사건별 부호
1심	행정1심사건	구합
	행정1심재정단독사건	구단
항소심	행정항소사건	누
상고심	행정상고사건	두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소송은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② 회사는 심급별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1.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59]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 예시안내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의 경우  
 $[200만원 + (5000만원 - 2,000만원) \times (8/100)] = 440만원$  (보상한도)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times (8/100)]$

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개정 2020.12.28.)'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칙을 따르므로 상기 산출예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법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별표60]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3.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표62]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행정소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다만,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중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행정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하명령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보험'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법률비용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소송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소송비용 일체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국민투표무효소송 및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선거 무효소송’ (공직선거법 제222조) 및 ‘당선 무효소송’ (공직선거법 제223조)
  19.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20.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에 있어서의 그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때 이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국민의 구체적 권의 구체와는 관련이 없는 기관소송(지방의회 또는 교육위원회 의결무효 소송, 감독처분에 대한 이의소송 등을 말합니다)
  21.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법률상의 응답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는 경우 행정청의 응답을 신속하게 하기 위한 소송
  22. 소송의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연체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23.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 【 용어해설 】

#####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이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국가 기관 및 행정청으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 < 하나의 소송 >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4조(소송 등의 정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행정소송법에 정한 제3자에 의한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 소의 취하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 < 소의 각하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 소장각하명령 >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대된 때에는 그 증



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하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보통약관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9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2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예시안내 】

#### <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장금액 60, 계약2 보장금액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bullet \text{계약1} = 48 = 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quad \bullet \text{계약2} = 32 = 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제10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제11조 (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아니함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12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4-3 가족화재별금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실화에 대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형법 제170조(실화) 또는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라 벌금형이 확정 판결되었을 때(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의 벌금 확정판결이 보험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가족화재별금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	벌금액 실손보상 (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	벌금액 실손보상 (2,000만원 한도)

#### 【 관련법규 】

- ※ 형법 제170조(실화)에서 정한 죄  
: 과실로 인하여 물건 또는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을 소훼한 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서 정한 죄  
: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형법 제170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 중인 미혼 자녀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제3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가족화재별금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예시안내 】

##### <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장금액 60, 계약2 보장금액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bullet \text{계약1} = 48 = 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quad \bullet \text{계약2} = 32 = 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2. 보험수익자의 고의
3. 계약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및 방화
4.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에 의한 사고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 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5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4-4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 중 또는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1심에 한하여 1사고당 피보험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의료사고법률비용	'의료사고' 가 발생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변호사 착수금의 80%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2조 (의료사고 등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의료사고' 라 함은 의료행위로 인하여 예상외의 원하지 않는 결과를 초창하는 것으로 의료과오로 인한 것과 불가항력적인 것을 포괄하여 말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인한 손해는 의료사고로 보지 않습니다.
- ② 이 특약에서 '의료기관' 이라 함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병원 또는 의원 등(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진단에 따른 치료를 받고 보험기간 만료 후 그 치료의 직접결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여 법원에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의료사고법률비용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초과했을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보상합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장금액 60, 계약2 보장금액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bullet \text{계약1} = 48 = 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quad \bullet \text{계약2} = 32 = 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에게 계약일 이전에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2.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피보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의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8조 (보험금의 청구)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법원의 소장접수증명원, 변호사 착수비용 세금계산서, 병원 또는 의원의 진료확인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9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4-5 강력범죄피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강력범죄피해보험금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제2조 (강력범죄의 정의)

이 특약에서 ‘강력범죄’라 함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2장에서 정하는 강간죄
4.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5.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강력범죄의 정의)에서 정한 제1호의 살인,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5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③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4.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와 보장개시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발생한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으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용어해설 】**

**< 습관성 유산, 불임 및 인공수정 관련 합병증 >**

제9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분류번호 N96-N98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용어해설 】**

**< 고용관계 >**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 관련법규 】**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활동)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가담 형태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4-6 폭력피해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폭력피해’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폭력피해보험금	폭력피해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가입금액

### 제2조 (폭력피해의 정의)

이 특약에서 '폭력피해'라 함은 일상생활 중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범죄에 의하여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합니다.

1. 형법 제24장에서 정하는 살인죄
2. 형법 제25장에서 정하는 상해와 폭행의 죄
3. 형법 제38장에서 정하는 강도죄
4.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정한 폭력 등의 죄

### 제3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제2조(폭력피해의 정의)에서 정한 제2호의 상해와 폭행 및 제4호의 폭력 등으로 피보험자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은 때에만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②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제4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6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범죄행위를 하던 중 또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의 범죄단체를 구성 또는 이에 가담함으로써 발생한 손해
  2. 피보험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 의한 손해
  3.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 【 용어해설 】

##### < 고용관계 >

피고용인이 고용인에게 노무를 제공하고, 고용인은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관계를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등의 구성·활동)

: 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가담 형태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 제5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제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합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5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제7조 (보험금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사망진단서, 장해진단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3. 사건신고확인원(관할 경찰서장 발행)
  4.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사실서명확인서 포함)
  5.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4-7 가족법률비용손해 II (의료과외)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의료과외와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되고 피보험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또는 결정이 내려진 경우 1사고당 아래의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이하 '특별약관' 은 '특약' ,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은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보험금의 종류		지급금액
법률비용 보험금	1. 의료과외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피보험자의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 10만원)
	2. 의료과외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피보험자가 부담해야하는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비용	1,5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소송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30%)
	3. 의료과외와 관련된 소송사건이 종료되어 법률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	500만원 한도

###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라 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고, 주민등록상 동거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별거중인 미혼자녀
- 위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 관련법규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 제3조 (소송 등의 정의)

- 이 특약에서 "소송" 이라 함은 1심 소송, 그 1심 소송에 대한 항소심 및 항소심에 대한 상고심 각각(이하 "심급별" 이라 합니다.)을 말하며, 이 계약에서 정한 보험기간 내에 제기되어야 합니다.
- 이 특약에서 '소송사건' 이라 함은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아래와 같이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기된 소장예 의료과외와 관련된 소송에 한합니다

심급 구분	민사사건	사건별 부호
1심	민사1심합의사건	가합
	민사1심단독사건	가단
	민사소액사건	가소
항소심	민사항소사건	나
상고심	민사상고사건	다

- 이 특약에서 "의료과외" 라 함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시의 의학 지식 또는 의료기술의 원칙에 준하는 업무상 필요로 하는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환자에게 적절치 못한 결과를 초래한 것을 말합니다.

###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소송은 각 심급별 하나의 소송에 한합니다.
- 회사는 심급별로 다음 각 호에 대해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59]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130%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피보험자의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예시안내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의 경우  
[200만원 +(5000만원-2,000만원) x (8/100)] x 130% = 572만원 (보상한도)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개정 2020.12.28.)' 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칙을 따르므로 상기 산출예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비용([별표59]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비용'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소송 상대방의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소송 상대방 변호사 비용의 30%)을 초과하는 금액  
다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에서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 예시안내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의 경우  
[200만원 +(5000만원-2,000만원) x (8/100)] = 440만원 (보상한도)

※ 소송목적의 값이 5,000만원인 경우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단,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별표](개정 2020.12.28.)' 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칙을 따르므로 상기 산출예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 정한 인지액([별표60]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인지액  
다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 4.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별표61]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참조)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송달료  
다만,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을 따릅니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각 호에 대하여 중국 판결 결과의 변동에 따라 미지급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거나 이미 지급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제5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소송사기를 포함합니다)에 의한 손해
2. 지진, 분화,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에 기인한 손해
3.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4. 제3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5. 민사소송법에 정한 청구의 포기(원고가 변론에서 자기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없음을 자인한 것을 말합니다), 인낙(피고가 원고의 소송상의 청구가 이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소장각하명령
6. 특허법에 정한 특허, 저작권법에 정한 저작권, 상표법에 정한 상표권, 실용신안법에 정한 실용신안권 및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송
7. 피보험자가 각종 단체(상법상 회사, 민법상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 재단, 조합 등)의 대표자, 이사, 임원 등의 자격으로 행한 업무와 관련된 소송
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에 따라 제기된 소송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정한 금융투자상품에 관련된 소송
10. 보험기간 이전에 소송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한 경우 및 구두계약(口頭契約) 등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1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에 관련된 쟁의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에 관련된 시위행위에 관련된 소송
1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에 관련된 소송
13.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하며, 이하 '의무보험' 이라 합니다)에서 보상되는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비용
14. 환경오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관련 분쟁, 명예훼손, 이와 유사한 사건과 관련한 분쟁에 기인한 소송
15.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보험자가 민사소송 상대방에게 부담하여야 할 인지액 및 송달료
16. 석면(이를 구성물질로 하거나 유사한 물질을 포함합니다)의 발암성, 전자파(전자장)의 피해, 의약품의 지속적인 투여로 인한 피해, 의약품구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인한 피해,

- 흡연으로 인한 피해로 인한 소송
17.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 도박 등 사행행위 또는 마약 등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물건과 관련된 소송
  18.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가족 간의 민사소송 및 피보험자 사이의 민사소송
  19. 소송의 결과로 피보험자에게 부과된 손해배상금, 벌금, 과태료, 연체이자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금액
  20. 대한민국 외에서 제기된 또는 대한민국 이외의 법령에 의거한 소송

**【 용어해설 】**

**<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 >**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사건으로 그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의 경우 : 보험기간 이전에 발생한 일이 없고, 보험기간 중에 처음으로 채무불이행/부당이득이 발생한 사건
- 손해배상의 경우 : 해당 사고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건

**< 하나의 소송 >**

대법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및 사건별 부호문자에 관한 예규에서 분류되는 소송사건 중 제2조(소송 등의 정의) 제2항에 해당하는 사건 분류 번호 상의 구별되는 1개의 사건 소송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에 정한 파기환송심, 재심은 제외합니다)

다만, 사건번호가 달리 구분되지만 이미 발생된 소송으로 인한 반소(민사소송법 제269조(반소)에 정한 것으로 피고가 원고의 소송에 대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말합니다), 동법 제412조(반소의 제기)의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소송에 포함된 것으로 보며, 구분되는 사건 소송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소의 취하 >**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정한 것으로 판결이 확정되기 전 제기된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에 대해 취하하는 것을 말합니다.

**< 소의 각하 >**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소장각하명령 >**

행정소송법 및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동법 제399조(원심

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 심사권), 동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에 따라 소(항소, 상고를 포함합니다)장을 해당 재판장이 심사하여 보정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치지 않은 경우에 취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 가족 >**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 위에 정한 가족은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건 당시의 피보험자와의 관계를 말합니다.

**제6조 (특약의 소멸)**

피보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의 피보험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한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7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 본인이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6조(특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용어해설 】**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 제8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에 의해 소송이 발생한 경우(사건의 때와 사건 관련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및 피보험자의 소송 내용을 회사가 알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2. 소송 판결 전 청구의 포기, 소의 취하, 소의 각하, 인낙, 소송의 변경, 소송상 화해, 소송상 조정 등이 발생한 경우
  3. 소송에 따른 판결이 내려진 경우
  4. 기타 회사가 손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회사는 관련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제1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2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아래의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송부하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보험금지급을 위한 증명서(소장, 소송상 조정, 소송상 화해시 해당 조서, 선임한 변호사가 발급한 세금계산서,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서 등)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용어해설 】

#####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1]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제10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 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회사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 예시안내 】

##### < 다른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상책임 60, 계약2 보상책임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bullet \text{계약1} = 48 = 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quad \bullet \text{계약2} = 32 = 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 + \text{계약2}(40)}$$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2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제11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 한도 내에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합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2조 (조사)**

-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소송 진행 사항,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소송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협력하지 않음에 따라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3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회사가 보상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다만, 제10조(중도인출금) 및 제12조(만기환급금의 지급)의 규정은 제외합니다.

## 5. 무배당 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5-1.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누수사고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후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を負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③ 제6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주거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 용어해설 】

#####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 재물손해 >

-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 재물손해 중 직접손해의 법률상배상책임 >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 용어해설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제3조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라 함은 피보험자 주택의 건물 및 부대설비 노후화, 피보험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주택의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 또는 바닥벽체 등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고, 그 누수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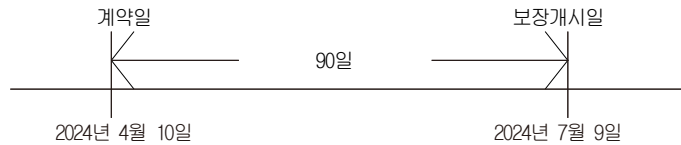
**제4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동조항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보장개시일
갱신형(최초계약)	누수 이외의 사고	보험계약일
	누수사고	보험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갱신형(갱신계약)		이 특별약관의 갱신일

**【 예시안내 】**

< '누수사고' 에 대한 보장개시일 >  
- 갱신형(최초계약)의 경우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동조항 제35조(계약의 자동갱신) 제1항에서 정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누수사고' 에 대한 보장개시일을 갱신일로 합니다.

**제5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동조항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동조항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동조항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6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기중된 배상책임
  -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자파, 전자기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애(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8.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중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합니다.
- 10.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제7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대인, 대물(누수사고) 및 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 제5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대물(누수사고)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제8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9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 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

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 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계약일로 하며, '누수사고'에 대하여 제4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1항의 보장개시일을 다시 적용합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중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 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 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2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10조 (특약의 자동갱신)**

이 특별약관을 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에 따라 갱신됩니다.

**제11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 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5-2.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 V(가족)(누수사고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제1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 ① 회사는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아래에 열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이하 '신체장해'라 합니다)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이하 '재물손해'라 합니다)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신체는 신체보조장구(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를 제외하나,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는 포함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 1. 피보험자가 주거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하 '주택' 이라 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주택 이외의 부동산의 소유, 사용 및 관리는 제외합니다)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3.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합니다.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거 이동 또는 주택에 대한 소유변동 등으로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된 주택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 ③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항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변경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보험증권상 기재된 주택과 실제 주거 또는 소유하게 된 주택이 다르게 된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주거 및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변경된 주택의 사용용도 등이 달라져 그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그로 인한 배상책임이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변경된 주택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합니다.

**【 용어해설 】**

**< 신체장해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재물손해 >**

- 1)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직접손해
- 2)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진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3) 물리적으로 망가뜨려지지 않은 유체물의 사용불능으로 생긴 간접손해

**< 재물손해 중 직접손해의 법률상배상책임 >**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2조 (피보험자의 범위)**

- ① 이 특약에서 피보험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합니다.
  1.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피보험자 본인' 이라 합니다)
  2. 피보험자 본인의 배우자(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를 말합니다. 이하 '배우자' 라 합니다)
  3.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주민등록상 동거 중인 동거 친족(민법 제777조)
  4. 피보험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별거중인 미혼 자녀
- ② 제1항에서 피보험자 본인과 본인 이외의 피보험자의 관계는 사고 발생 당시의 관계를 말합니다.

**【 용어해설 】**

※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서 규정한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제3조 (누수사고의 정의)**

이 특약에서 '누수사고' 라 함은 피보험자 주택의 건물 및 부대설비 노후화, 피보험자의 과실 등으로 인하여 주택의 각종 급·배수 설비(배관, 수관, 수조, 오수관, 우수관, 싱크대 배관, 보일러배관, 난방배관 등 건물 내 설치된 모든 급·배수 설비를 지칭합니다) 또는 바닥벽체 등을 통해 누수가 발생하고, 그 누수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에 수침손해 또는 오염 손해를 끼치게 되는 사고를 말합니다. 단 화재사고 발생시 스프링클러 작동, 소방수 피해 등의 소방피해는 누수사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생긴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4.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배상책임
5. 핵연료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위 제5호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7.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 핵연료물질 >**

사용된 연료를 포함합니다.

**<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

원자핵 분열 생성물을 포함합니다.

- ② 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다음 각 호에 열거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의 장애(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로 인한 배상책임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5.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단, 호텔의 객실이나 객실내의 동산에 끼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7.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8. 항공기, 선박, 차량,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용어해설 】**

**<차량>**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말합니다.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 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총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9. 주택의 수리, 개조, 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 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10. 폭력행위로 인한 배상책임
11. 피보험자가 누수사고로 인하여 재물손해로 생긴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 ① 회사는 1회의 보험사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각각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1.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의 손해배상금 : 1사고당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하되, 자기부담금이 약정된 경우에는 그 자기부담금을 초과한 부분만 보상합니다.  
다만,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은 대인 및 대물(누수사고제외) 사고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가' 목, '나' 목 또는 '마' 목의 비용 : 비용의 전액을 보상합니다.
  3.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 : 이 비용과 제1호에 의한 보상액의 합계액을 이 특약의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합니다.
- ② 하나의 사고를 원인으로 대인배상 및 대물(누수사고제외)배상 중 두가지 이상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각각의 보험사고로 보고 보상한도액과 자기부담금을 적용합니다.

**제7조 (보장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보장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8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5-3.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공통조항**

**제1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제1조 (목적)**

이 보험계약(이하 '계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자(이하 '계약자' 라 합니다)와 보험회사(이하 '회사' 라 합니다) 사이에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결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다르게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계약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보험목적	보험사고의 발생의 객체가 되는 경제상의 재화
피보험자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손해를 입은 사람(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을 말합니다.

2. 보상 관련 용어

용 어	정 의
중요한 사항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등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배상책임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에서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책임을 말합니다.
보상한도액	회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중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조항에 따라 회사가 책임지는 금액의 최대한도를 말합니다.
자기부담금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금 분담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 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있을 경우 비율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대위권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법률상의 권리를 말합니다.

3. 이자율 관련 용어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용어	정의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예시) 1차년도 이자 : 10원(100원(원금)×10%(이율)) 2차년도 이자 : 11원(110원(원금+1차년도 이자)×10%(이율))
평균공시이율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이 계약 체결 시점의 이율을 말합니다. 다만, 갱신형 계약의 경우 갱신일 현재의 이율을 말합니다. · 연도별 평균공시이율 확인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a href="http://www.fss.or.kr">www.fss.or.kr</a> ) > 업무자료 > 보험 > 보험상품자료
보험계약 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로써 회사에서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해약환급금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 4.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용어	정의
보험기간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을 제외합니다.



#### 【 관련법규 】

#####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

#####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석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제6호·제7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제4호·제6호·제7호·제9호 또는 제10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 향후 관련법령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 제2관 보험금의 지급

### 제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의 지급사유는 5-1. (무)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누수사고포함)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5-2.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누수사고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조항에서 각각 정합니다.

#### 제4조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회사가 1사고당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대위 취득할 것이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을 뺍니다)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 가.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1호의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나. 피보험자가 제12조(손해방지의무) 제1항 제2호의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 마. 피보험자가 제13조(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제5조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특별약관의 보상하는 않는 손해는 5-1.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누수사고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5-2.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누수사고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조항에서 각각 정합니다.

#### 제6조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

이 특별약관의 보험금 등의 지급한도는 5-1.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누수사고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및 5-2. (우)일상생활중배상책임V(가족)(누수사고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조항에서 각각 정합니다.

#### 제7조 (손해의 발생과 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1.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 피해자의 주소와 성명, 사고상황 및 이들 사항의 증인이 있을 경우 그 주소와 성명
  2.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았을 경우
  3.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소송을 제기 받았을 경우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 각 호의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회사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제1항 제3호의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상법 제657조 제1항에 의해 보험사고의 발생을 회사에 알린 경우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 제1호 및 제2호 ‘다’ 목 또는 ‘라’ 목의 비용에 대하여 보상한도액을 한도로 보상합니다.

#### 제8조 (보험금의 청구)

피보험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보험금 청구서(회사양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3. 손해배상금 및 그 밖의 비용을 지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자료

#### 제9조 (보험금의 지급절차)

- ① 회사는 제8조(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드리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도 보내며, 그 서류를 접수받은 후 지체없이 지급할 보험금을 결정하고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면 7일 이내에 이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한 지급할 보험금이 결정되기 전이라도 피보험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회사가 추정한 보험금의 50% 상당액을 가지급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정한 지급기일 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부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보험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  
그러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10조 (의무보험과의 관계)

- ① 회사는 이 계약에 의하여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이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 한하여 그 초과액만을 보상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이 다수인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분담)를 따릅니다.
- ② 제1항의 의무보험은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으로서 공제계약(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포함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가 가입했다더라면 의무보험에서 보상했을 금액을 제1항의 ‘의무보험에서 보상하는 금액’으로 봅니다.

#### 제11조 (보험금의 분담)

- ①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다른 계약(공제조합 등에서 공제부금을 받아 운영하는 ‘공제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동일합니다.)이 있을 경우 각 계약에 대하여 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할 때에는 아래에 따라 손해를 보상합니다. 이 계약과 다른 계약이 모두 의무보험인 경우에도 같습니다.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text{손해액} \times \frac{\text{이 계약의 보상책임액}}{\text{다른 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각 계산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

- ② 이 계약이 의무보험이 아니고 다른 의무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의무보험에서 보상되는 금액(피보험자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상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간주하여 제1항에 의한 보상할 금액을 결정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다른 계약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우에도 회사의 제1항에 의한 지급보험금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예시안내 】**

**< 보험금의 분담 >**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 80, 계약1(현대해상) 보장금액 60, 계약2 보장금액 40인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계약1(현대해상)에서 48을 보상받습니다. 나머지 손해액은 계약2에서 보상됩니다.

$$\bullet \text{계약1} = 80 \times \frac{\text{계약1}(60)}{\text{계약1}(60)+\text{계약2}(40)} \quad \bullet \text{계약2} = 32 = 80 \times \frac{\text{계약2}(40)}{\text{계약1}(60)+\text{계약2}(40)}$$

**제12조 (손해방지의무)**

-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일(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 긴급호출 또는 그 밖의 긴급조치를 포함합니다)
  2.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
  3. 손해배상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하여 지급(변제), 승인 또는 화해를 하거나 소송, 중재, 또는 조정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회사의 동의를 받는 일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제4조(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의한 손해에서 다음의 금액을 뺍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그 노력을 하였더라면 손해를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던 금액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었던 금액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소송비용(중재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포함) 및 변호사비용과 회사의 동의를 받지 않은 행위에 의하여 증가된 손해

**제13조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①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때에는 피해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가 피보험자에게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 한도 내에서 회사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써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

피해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가 그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손해배상금액 등이 부당하다고 여겨 따지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피해자에게 반대하는 등 대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피보험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필요한 서류·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③ 피보험자가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의 청구를 받았을 경우 회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이에 협력하여야 합니다.
- ④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 및 제3항의 요구에 협조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제14조 (합의·절충·중재·소송의 협조·대행 등)**

- ① 회사는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피해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합니다.

**【 용어해설 】**

**<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를 말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하며,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로 말미암아 늘어난 손해에 대해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회사는 다음의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2.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을 때

- ⑤ 회사가 제1항의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 내에서, 가입유나 가입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이 경우 대부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를 포함합니다)의 회수청구권을 회사에 양도하여야 합니다.

**제15조 (대위권)**

- 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때(현물보상한 경우를 포함합니다)에는 회사는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아래의 권리를 가집니다.  
다만, 회사가 보상한 금액이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의 일부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가집니다.
  1.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청구권
  2.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함으로써 대위 취득하는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대위권
- ②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제1항에 의하여 회사가 취득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지키는 것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또한 회사가 요구하는 증거 및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제16조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원인으로 사망시 지급금)**

-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한 해당 피보험자에 대한 이 특약의 사망당시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 ② 제1항 및 제34조(계약의 소멸)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17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

- ① 계약자(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피보험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나누어 지급받거나 일시에 지급받는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일시에 지급할 금액을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지급할 금액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며, 나누어 지급할 금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금을 나누어 지급받을 경우 >**

보험금 : 6,000만원, 보험금 지급일자 : 2025년 1월 1일 일 때 보험금을 일시에 지급받지 않고 3년간 매년 동일한 금액으로 나누어 지급받는 경우

지급일	지급액
2025년 1월 1일	2천만원
2026년 1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2027년 1월 1일	2천만원 × (1 + 평균공시이율) <sup>2</sup>

**제18조 (보험수익자의 지정)**

보험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은 때의 보험수익자는 피보험자로 합니다.

**제19조 (대표자의 지정)**

- 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각 대표자를 1명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를 대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 ②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소재가 확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 1명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③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집니다.



**【 예시안내 】**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계약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계약전 알릴의무, 보험료 납입의무 등 보험계약에 따른 계약자의 의무를 연대로 합니다.

· 연대

2인 이상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므로 각자 채무의 전부를 이행할 책임을 지되(지분만큼 분할하여 책임을 지는 것과 다름), 다만 어느 1인의 이행으로 나머지 사람들도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제3관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 의무 등**

**제20조 (계약전 알릴 의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은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전 알릴 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 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 관련법규 】**

**< 상법에 따른 “고지의무” >**

※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상법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질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합니다.

**제21조 (계약후 알릴 의무)**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계약을 맺은 후 보험목적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위험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을 다른 보험회사와 체결하고자 할 때 또는 이와 같은 계약이 있음을 알았을 때
  3. 위험이 뚜렷이 변경되거나 변경되었음을 알았을 때
- ② 제1항의 따라 위험이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 될 수 있으며 남아있는 기간의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의 차이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돌려받을 금액이 생길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위험이 증가된 경우에 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주소변경통지)**

- ①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변경내용을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회사에 알린 최초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회사가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기간이 지난 때에 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등기우편 등 우편물에 대한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알린 사항에 한합니다.

**제23조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의 발생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뚜렷한 위험의 변경 또는 증가와 관련된 제21조(계약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②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1.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2.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이 지났을 때
  3. 계약을 체결한 날(강신청 계약의 경우 최초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부터 3년이 지났을 때
  4. 보험설계사 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알릴 기회를 주지 않았거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는 것을 방해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알리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릴 것을 권유했을 때.
- 다만, 보험설계사 등의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부실한 사항을 알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③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손해가 발생 후에 제1항에 의한 계약의 해지가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않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회사가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의 전자문서 수신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서면(등기우편 등)으로 다시 알려드립니다.
-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제1항의 사실로 생긴 것이 아님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 ⑥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⑦ 제1항에 따라 보장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24조 (양도)**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보험목적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다만, 의무보험인 경우에는 회사의 서면동의가 없는 경우에도 청약서에 기재된 사업을 양도하였을 때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제25조 (사기에 의한 계약)**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의 사기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에는 계약일부 5년 이내(사기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4관 계약의 성립과 유지**

**제26조 (계약의 성립)**

- ① 계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목적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등)을 붙여 승낙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청약일부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증권을 드립니다.  
그러나 30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
- ④ 회사가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와 함께 받은 금액을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 + 1%를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7조 (청약의 철회)**

-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의 경우에는 철회의사를 표시한 시점에 동종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만 철회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용어해설 】**

**< 전문금융소비자 >**

보험계약에 관한 전문성, 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자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회사, 주권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9호에서 정하는 전문금융소비자를 말합니다.

**< 일반금융소비자 >**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계약자를 말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다만, 만65세이상의 계약자가 전화를 통해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초과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 관련법규 】**

※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청약의 철회)에서 정한 청약철회 가능 기간  
: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 ③ 청약철회는 계약자가 전화로 신청하거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한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이하 '서면 등' 이라 합니다)를 발송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자는 서면 등을 발송한 때에 그 발송 사실을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 ④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 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⑤ 제1항의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하여 다름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⑦ 청약을 철회할 때에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계약자가 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 해당 계약의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8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

① 회사는 계약자가 청약할 때에 계약자에게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하며, 청약 후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계약자가 원하는 방법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만약, 회사가 전자우편 및 전자적 의사표시로 제공한 경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을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② 제1항과 관련하여 통신판매계약의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가입한 특약만 포함한 약관을 드리며,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은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방법으로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전화를 이용하여 청약내용, 보험료 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 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등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는 방법.  
이 경우 계약자의 답변과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 용어해설 】**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③ 계약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제공될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청약할 때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경우
2. 계약자가 청약할 때 회사가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
3. 계약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도장을 찍음) 및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않은 경우



**【 용어해설 】**

**< 약관의 중요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설명 의무) 등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을 말합니다.

- 보통약관 및 특약별로 보장하는 사망, 질병, 상해 등 주요 위험 및 보험금
- 위험보장사항 및 각각의 보험료 및 보험료 납입기간
- 청약의 철회에 관한 사항(기한·행사방법·효과 등)
-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 보험금 지급제한 조건
- 고지의무 및 통지의무 위반의 효과

- 계약의 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에 관한 사항(납부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다는 사실 포함)
-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절차에 관한 사항
- 만기시 자동갱신되는 보험계약의 경우 자동갱신의 조건
- 저축성 보험계약의 공시이율
- 유배당 보험계약의 경우 계약자 배당에 관한 사항
-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 해약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동일한 보장내용으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상품에 관한 사항
- 저축성보험 계약의 경우 납입보험료 중 사업비 등이 차감된 일부 금액만 특별계정에 투입되어 운용되거나 적용이율로 부리된다는 내용
-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및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약관에 기재된 보험계약의 중요사항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가. 서명자의 신원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음성녹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드림으로써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를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1.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계약의 경우
  2. 계약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계약일 경우
- ⑤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29조 (계약의 무효)**

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의 목적에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의 보장보험료를 해당 납입일

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제30조 (계약내용의 변경 등)**

- ①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승낙을 서면 등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보험종목
  2. 보험기간
  3. 보험료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4. 계약자, 피보험자
  5. 보상한도액, 보험료 등 기타 계약의 내용
- ② 회사는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1년 이상 지난 유효한 계약으로서 그 보험종목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변경하여 드립니다.
- ③ 회사는 계약자가 제1항 제5호에 따라 보상한도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써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를 변경한 경우, 변경된 계약자에게 보험증권 및 약관을 교부하고 변경된 계약자가 요청하는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 유의사항 】**

**< 보험가입금액 등의 감액시 환급금 >**

보험가입금액, 보험료 등의 감액시 환급금이 없거나 최초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 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제31조 (조사)**

- ① 회사는 보험목적에 대한 위험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보험기간 중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시설과 업무내용을 조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개선을 피보험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③ 회사는 이 계약의 중요사항과 관련된 범위 내에서는 보험기간 중 또는 회사에서 정한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피보험자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제32조 (타인을 위한 계약)**

- ① 계약자는 타인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반드시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이를 알리지 않았을 때에는 그 타인은 이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회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② 타인을 위한 계약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

으로 생긴 손해를 배상한 때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에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 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제33조 (보험나이 등)**

- ① 이 약관에서의 피보험자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실제 만 나이를 기준으로 6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6개월 이상의 끝수는 1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다만, 계약해당일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관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정정된 나이 또는 성별에 해당하는 보험금 및 보험료로 변경합니다.

**【 예시안내 】**

**< 보험나이 계산 >**

생년월일 : 1994년 3월 3일, 현재(계약일) : 2023년 10월 13일  
 ⇒ 2023년 10월 13일 - 1994년 3월 3일 = 29년 7개월 10일 = 30세  
 ※ 피보험자의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및 성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해당일 >**

최초계약일과 동일한 월, 일을 말합니다.  
 계약일: 2023년 10월 13일 ⇒ 계약해당일: 매년 10월 13일  
 단, 계약해당일 2월 29일이 없을 경우에는 2월 28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나이 또는 성별의 정정 기준 >**

청약서에 기재된 피보험자의 나이 또는 성별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신분증에 기재된 사실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신분증에 기재된 나이 또는 성별로 정정합니다.

**제34조 (계약의 소멸)**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제35조 (계약의 자동갱신)**

- ①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 월 계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약(이하 '갱신계약' 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이 계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 ③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④ 갱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갱신계약의 보험기간 종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 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예시안내 】**

**< 43세의 피보험자가 10년만기로 100세까지 갱신하는 경우 >**

갱신시점의 나이 : 53세, 63세, 73세, 83세, 93세  
 → 93세 갱신시점에서는 100세 갱신종료시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10년보다 짧아 7년만기로 갱신합니다.

-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이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시점에 유효한 보장에 한하여 자동갱신하여 드립니다.
-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약관 변경내역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자동으로 갱신되며,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⑨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갱신일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드립니다.

**제5관 보험료의 납입**

**제36조 (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

- ①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또한,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승낙한 경우에도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보장이 개시됩니다.
- ②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자동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또는 신용카드매출 승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를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로 합니다.  
다만,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이체 또는 매출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③ 회사가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 용어해설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 ④ 회사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 1.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알린 내용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 2. 제5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2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및 제29조(계약의 무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제37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적립 부분에 대한 계약자의 갱신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합니다)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계약을 해제합니다.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38조 (제2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우체국을 포함합니다)를 통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증으로 대신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② 계약자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낼 수 있으며 3개월 이상의 보험료를 미리 낼 때에는 보장보험료에 한하여 평균공시이율로 할인하여 드립니다.
- ③ 제2항의 경우 계약이 보험기간 중에 소멸 또는 변경되었을 경우 선납보험료가 있으면 선납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장보험료는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선납보험료에 더하여 계약자에게 돌려 드립니다.

**제39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 ① 계약자는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에 따른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이 지나기 전까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7조(보험계약대출)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다만, 계약자가 서면 이외에 인터넷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할 경우 회사는 자동대출납입 신청내역을 서면 또는 전화(음성녹음)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의 금액이 제2호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습니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  
다만, 이자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일의 다음날부터 그 다음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까지의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합니다.
  2. 해당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해약환급금과 계약자에게 지급할 기타 모든 지급금의 합계액에서 계약자의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액을 뺀 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은 최초 자동대출납입일로부터 1년을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위해서는 제1항에 따라 재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④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전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

료의 자동대출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46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⑤ 회사는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 기간이 종료되거나 제2항에 따라 자동대출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 이를 최초 도래하는 납입일로부터 15일 이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전자문서(SMS 포함) 등으로 계약자에게 알려 드립니다.

**제40조 (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과 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아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여 계약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 드립니다.
  1. 납입최고(독촉)기간 내에 연체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
  2.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
  3. 계약자가 회사로부터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회사가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화(음성녹음)로 안내하고자 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험업감독규정」 제4-36조 제3항에 따른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에게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한다는 사실을 미리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것
  2. 전자적 상품설명장치를 활용하여 안내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계약자가 모두 수신하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할 것
  3. 계약자가 질의를 하거나 추가적인 설명을 요청하는 등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의 활용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회사는 전화(음성녹음) 방법으로 전환하여 제1항에 따른 납입최고(독촉) 등을 실시할 것
  4. 전자적 상품설명장치에 안내의 속도/음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5.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에게 안내할 것
- ④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 특정된 타인에게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내용을 알려 드립니다.
- ⑤ 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이라도 계약의 해지 전에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하여 회사는 보상합니다.
- ⑥ 회사가 제1항에 의한 납입최고(독촉) 등을 전자문서로 안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서면,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얻어 수신확인을 조건으로 전자문서를 송신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전자문서에 대하여 수신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 전자문서는 송신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전자문서가 수신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을 서면(등기우편 등) 또는 전화(음성녹음)로 다시 알려 드립니다.
- ⑦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46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

특별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약관



자에게 지급합니다.

**【 용어해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제41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 ①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보험계약대출 등에 따라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으나 받지 않은 경우 또는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의한 해지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때에 계약자는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보험료와 평균공시이율 + 1%로 계산한 연체된 보장보험료의 이자를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 ③ 제1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에는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 제2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제25조(사기에 의한 계약), 제26조(계약의 성립) 및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를 준용합니다.  
이 때 회사는 해지 전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를 이유로 부활(효력회복)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④ 제1항에서 정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최초계약 청약시(2회 이상 부활이 이루어진 경우 종전 모든 부활 청약 포함) 제20조(계약전 알릴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3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가 적용됩니다.

**제42조 (강제집행 등으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 ① 회사는 계약자의 해약환급금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 담보권실행,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제30조(계약내용의 변경 등) 제1항의 절차에 따라 계약자 명의를 피보험자로 변경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음을 지정한 피보험자에게 해지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하고자 하는 해지 당시의 피보험자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고, 계약 해지로 회사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금액을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③ 회사는 법정상속인이 피보험자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계약자에게 할 수 있습니다.
- ④ 피보험자는 통지를 받은 날(제3항에 따라 계약자에게 통지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통지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 청약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
- ⑤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피보험자의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

력회복) 청약을 승낙하며, 계약은 청약한 때부터 특별부활(효력회복) 됩니다.

다만, 회사의 통지가 해지된 날부터 7일을 지나서 도달하고 이후 피보험자가 제1항에 의한 계약자 명의변경 신청 및 계약의 특별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된 날부터 7일이 되는 날에 특별부활(효력회복)됩니다.

**【 용어해설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실행으로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을 압류할 수 있으며,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 추심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금전채권을 대위의 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직접 추심(받아냄)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결정
- 전부명령 :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시키고 그 대신 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되는 집행법원의 결정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시 국세청 및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채무자의 해약환급금이 압류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회사는 채권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제6관 계약의 해지 및 해약환급금 등**

**제43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제46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3조의2 (위법계약의 해지)**

- ① 계약자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범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법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해지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계약자에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계약자는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회사는 제46조(해약환급금) 제5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⑤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기간에도 불구하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용어해설 】**

**<위법계약>**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을 말합니다.

**제44조 (중대사유로 인한 해지)**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고의로 보험금 지급사유를 발생시킨 경우
  -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에 고의로 사실과 다른 것을 기재하였거나 그 서류 또는 증거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다만, 이미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 경우 회사는 그 취지를 계약자에게 통지하고 제46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유의사항 】**

**< 이미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한 보험금 지급>**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가 보험금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변조하여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실제 발생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45조 (회사의 파산선고와 해지)**

- ① 회사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지하지 않은 계약은 파산선고 후 3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 효력을 잃는 경우에 회사는 제46조(해약환급금)에서 정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46조 (해약환급금)**

- ①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합니다.
- ② 제1항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에 따라 납입된 보험료와 이자, 보험계약대출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이자가 있는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 ③ 해약환급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회사에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회사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부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에 따릅니다.
- ④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합니다.
- ⑤ 제43조의2(위법계약의 해지)에 따라 위법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회사가 적절한 해지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제47조 (보험계약대출)**

- ①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순수보장성보험 등 보험상품의 종류에 따라 보험계약대출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 ② 계약자는 제1항에 따른 보험계약대출원금과 그 이자를 언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지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할 수 있습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제4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보험계약대출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의 원금과 이자를 차감합니다.

- ④ 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계약대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 제48조 (배당금의 지급)

회사는 이 보험에 대하여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7관 분쟁의 조정 등

#### 제49조 (분쟁의 조정)

- ①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과정에서 계약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인 계약자가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에서 정하는 일정 금액 이내인 분쟁사건에 대하여 조정 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제50조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한 소송 및 민사조정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하여 관할법원을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 제51조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만기환급금청구권, 보험료 반환청구권, 해약환급금 청구권,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 【 유의사항 】

##### < 소멸시효의 완성 >

소멸시효는 해당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때부터 시작됩니다.

보험금 지급사유가 2020년 1월 1일에 발생하였음에도 2023년 1월 1일까지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제52조 (약관의 해석)

- ①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 【 용어해설 】

##### < 신의성실의 원칙 >

계약관계의 당사자는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정당한 이익을 배려해야 하고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합니다.

※ 민법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 ②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 ③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불리하거나 부담을 주는 내용은 확대하여 해석하지 않습니다.

#### 제53조 (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 ① 회사는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청약의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계약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계약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또는 녹취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 ② 설명서, 약관, 청약서 부분 및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 ③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제작의 보험안내자료의 내용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 【 용어해설 】

##### < 보험안내자료 >

계약의 청약의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을 말합니다.

#### 제54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 ①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자 및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
- ② 회사는 보험금 지급 거절 및 지연지급의 사유가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소를 제기하여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③ 회사가 보험금 지급여부 및 지급금액에 관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로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도 회사는 제2항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 용어해설 】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사회통념상 일반 보통인이라면 그 같은 일을 하지 않을 정도로 현저하게 공정성을 잃은 것을 말합니다.

**제55조 (개인정보보호)**

- ① 회사는 이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동의없이 수집, 이용, 조회 또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는 이 계약의 체결, 유지, 보험금 지급 등을 위하여 위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는 계약과 관련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합니다.

**제5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 법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되며,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민법 등 관계 법령을 따릅니다.

**제57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

회사가 파산 등으로 인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 용어해설 】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란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환급금을 각각 예금자 1인당 1억원까지 지급함으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부표3]

**보험금을 지급할 때의 적립이율 계산**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승낙거절로 제1회보험료 반환		보험료를 받은 기간	평균공시이율 + 1%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청약 철회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반환기일 <sup>주)</sup>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단, 신용카드 매출은 이자 없음)
계약 무효로 기납입보험료 반환	회사의 고의/과실로 계약무효 또는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를 알았으나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보험료 납입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특별약관 보장 보험금	지급기일 <sup>주)</sup>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급기일의 다음 날 부터 3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지급기일의 31일이후 부터 6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 <sup>주)</sup> (4.0%)
		지급기일의 61일이후 부터 90일 이내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6.0%)
		지급기일의 91일이후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가산이율(8.0%)

구 분	적립기간	적립이율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1년 이내	평균공시 이율의 50%
		1년 초과	평균공시이 율의 40%
	환급금을 청구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	보험계약대출이율	

-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금리연동형보험은 일자 계산합니다.
- ※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했다는 사유만으로 이자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 ※ 보험사가 해지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 표의 ‘청구일’은 보험사의 해지 의사표시(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포함)가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게 도달한 날로 봅니다.
- ※ 보험금의 지연이자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가 공제됩니다.

- (주) 1. 반환기일 : 청약 철회 접수날부터 3영업일  
 2. 지급기일  
 - 신체손해/비용손해 보험금 :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 재물손해/배상책임손해 보험금 : 지급보험금 결정일부터 7일  
 3. 가산이율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지연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가산이율 적용시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대하여 가산이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6. 기타 특별약관

### 6-1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계약자,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보험금을 받는 자)가 모두 동일한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에 적용됩니다.

####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소멸)

- ① 이 특약은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부가되어집니다.
- ② 제1조(적용대상)의 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제3조 (지정대리청구인의 지정)

- ① 계약자는 보통약관 또는 특별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계약체결시 또는 계약체결 이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보험금의 대리청구인(이하, '지정대리청구인' 이라 합니다)으로 지정(제4조(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에 의한 변경 지정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대리청구인은 보험금 청구시에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1. 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피보험자의 3촌 이내의 친족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이 지정된 이후에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정된 지정대리청구인의 자격은 자동적으로 상실된 것으로 봅니다.

#### 제4조 (지정대리청구인의 변경지정)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지정대리청구인을 변경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변경 지정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의 뒷면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1. 지정대리청구인 변경신청서(회사양식)
2. 지정대리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등록부(기본증명서 등)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제5조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 ① 지정대리청구인은 제6조(보험금의 청구)에 정한 구비서류 및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낙을 얻어 제1조(적용대상)의 보험수익자의 대리인으로서 보험금(사망보험금 제외)을 청구하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② 회사가 보험금을 지정대리청구인에게 지급한 경우에는 그 이후 보험금 청구를 받더라도 회사는 이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제6조 (보험금의 청구)

지정대리청구인은 회사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1. 청구서(회사양식)
2. 사고증명서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 발행 신분증)
4. 피보험자 및 지정대리청구인의 가족관계등록부(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5. 기타 지정대리청구인이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제7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6-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도특별약관

#### 제1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기본계약을 말하며, 선택계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선택계약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거나 해당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등으로 보장이 제한될 경우에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 집니다. (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이라 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을 부가할 때 회사의 계약인수지침 기준에 따라 피보험자의 과거 병력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 또는 질병 등으로 제한하며, 보장제한 범위 및 사유를 계약자에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 ③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④ 계약이 해지,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⑤ 계약에서 정한 보장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질병에 대하여 계약을 무효로 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을 무효로 하지 않습니다.
  1.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부위에 질병이 발생한 경우

- 이 특약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특정질병에 대하여 면책을 조건으로 체결한 후 보장개시일 이전에 동일한 특정질병이 발생한 경우

### 제2조 (특별면책조건의 내용)

- 이 특약에서 정한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계약에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별표68] ‘특정부위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부위(이하 ‘특정부위’라 합니다.)에 발생한 질병 또는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전이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단, 전이는 합병증으로 보지 않습니다.)
  - [별표69] ‘특정질병 분류표’ 중에서 회사가 지정한 질병(이하 ‘특정질병’이라 합니다.)
- 제1항의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기간(이하 ‘부담보 기간’이라 합니다.)은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의 상태에 따라 ‘1개월부터 5년’ 또는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그 판단기준은 회사에서 정한 계약인수지침을 따릅니다. 다만, 개개인의 질병의 상태 등에 대한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계약의 보험기간 >

계약이 갱신 또는 재가입 계약인 경우 최초 계약일부터 최종 갱신 또는 재가입 계약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에 따른 보장내용 등이 비슷한 보험계약(이하 ‘유사계약’이라 합니다.)이 계약 청약일 현재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경우 다음 각 호를 따릅니다.
  - 유사계약에서 정한 부담보 기간 종료일 이내에서 계약의 부담보 기간을 적용합니다.
  - 유사계약에서 정한 질병과 동일하거나 축소된 범위로 계약의 부담보 설정 범위를 정합니다.
  - 유사계약이 다수인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조건을 적용합니다.
-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유사계약 청약일 이후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과 관련한 새로운 위험(재진단, 치료 등은 해당하지 않습니다)이 발생하거나, 새로운 질병에 대한 보장이 추가(암원비, 수술비, 진단비 등 보장 범위의 변경 또는 확대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된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관련법규 】

#### ※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법 제9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보험계약 또는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또는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같을 것
  -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위험보장의 범위가 법 제20제1호 각 목의 생명보험상품, 손해보험상품, 제3보험상품의 구분에 따라 비슷할 것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합니다.
  -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특정부위 이외의 부위에 발생한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발생한 특정질병 이외의 질병으로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제1항 제1호에서 지정한 특정부위에 발생한 질병 또는 제1항 제2호에서 지정한 특정질병에 대해서 계약 청약일 이후 5년이 경과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인하여 추가적인 진단(단순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이 계약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만, 계약 청약일 현재 부담보 기간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적용한 유사계약이 유지중이거나, 계약 청약일 전 6개월 이내에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요구 또는 보험료 납입연체로 해지된 경우 유사계약 청약일과 계약 청약일 사이에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정한 질병으로 재진단 또는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계약의 청약일은 유사계약의 청약일로 봅니다.

【유의사항】

추가적인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합니다.

1. 검진 결과 추가검사 또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2. 부담보가 지정된 질병 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고 유지된 경우

- ⑥ 피보험자가 회사에서 정한 면책기간의 종료일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 그 입원에 대해서는 면책기간 종료일의 다음날을 입원의 개시일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⑦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특정질병 또는 특정부위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인지 아닌지는 의사의 진단서와 의견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⑧ 회사는 제1항의 특정부위 또는 특정질병을 모두 더하여 4개 이내에서 선택하여 부가할 수 있습니다.
- ⑨ 보통약관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계약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제3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유의사항】

< 보장보험료 납입의 면제 >

회사는 제2조(특별면책조건의 내용) 제1항 각 호의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로 인하여, 이륜자동차 운전자로 인한 위험도가 우리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의 청약과 우리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효력발생일은 보통약관 제30조(제1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에서 정한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계약이 해지, 기타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제2조 (이륜자동차의 정의)**

- ① 이 특약에서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하위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이륜자동차로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하며,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를 포함합니다.(다만,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 보행보조용 의자차는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합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축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및 도로교통법(하위 법령, 규칙 포함)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유의사항】

※ 퍼스널모빌리티(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는 자동차관리법에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제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① 회사는 계약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이륜자동차를 운전(탑승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하는 중에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상해사고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과 출퇴근용도 등 주기적

**6-3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

- ① 이 특별약관은 계약(보통약관을 말하며, 특별약관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별약관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체결할 때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의



로 운전하는 사실을 회사가 입증하지 못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합니다.

- ②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그 사고가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인가 아닌가는 관할 경찰서에서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등을 주된 판단자료로 하여 결정합니다.

#### 제4조 (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6-4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 제1조 (보험료의 납입)

- ① 계약자는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에 따라 계약자의 거래은행(우체국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지정계좌를 이용하여 보험료를 자동납입합니다.
- ② 제1항에 의하여 제1회 보험료의 납입방법을 계약자의 거래은행 지정계좌를 통한 자동납입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서를 접수하고 자동이체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거래은행의 지정계좌로부터 제1회 보험료가 이체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를 청약일 및 제1회 보험료 납입일로 하여 보통약관 제22조(계약의 성립)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 제2조 (보험료의 영수)

자동납입일자는 이 보험계약청약서에 기재된 보험료 납입해당일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계약자가 별도로 약정한 일자로 합니다.

#### 제3조 (계약후 알릴의무)

계약자는 지정계좌의 번호가 변경되거나 폐쇄 또는 거래정지된 경우에는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특약을 따릅니다.

### 6-5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 제도특별약관

#### 제1조 (보험계약의 성립)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의 진단결과 보험회사가 정한 표준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보험계약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이하 이 특별약관의 적용을 받는 계약은 '해당 계약' 이라 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해당 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③ 해당계약이 해지 또는 기타 사유에 의하여 효력이 없을 경우에는 이 특약도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용어해설 】

##### < 표준체보험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보험

##### < 할증위험률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 제2조 (특약의 내용)

이 특약은 피보험자의 위험도가 높아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계약의 보험기간 중 위험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제3조 (특약의 부가조건)

- ① 특약에 의하여 부가하는 계약조건은 계약체결 시 피보험자의 건강상태, 위험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가합니다.
- ② 할증위험률에 의한 보험료와 표준체 보험료와의 차액을 특약보험료라 하며 표준체 보험료에 특약보험료를 더하여 납입보험료로 합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에 부가된 조건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드립니다.

#### 제4조 (특약의 보험기간 및 보험료의 납입)

-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해당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합니다.
- ② 이 특약의 보험료는 해당 계약의 납입기간 중에 해당 계약의 보험료와 함께 납입하여야 하며, 해당 계약의 보험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 제5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6-6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우리회사에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의 계약자가 새로운 장기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 우리회사는 ‘회사’ 라 합니다.)

1. 보험기간 종료일(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종료나이, 재가입계약의 경우 재가입종료나이)이 6개월 이내인 유효한 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종료된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계약.
2. 이미 납입한 보험료(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이상인 계약.  
단,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영업보험료(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임의 또는 수시로 납입하는 보험료는 제외)를 대상으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계약에 대해서는 회사에 가입한지 1년 이상 경과한 유효한 다른 장기손해보험 계약이 있을 경우 그 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총액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제2조 (보험요율의 적용)

이 특약을 부가하는 장기손해보험 계약에 대하여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할인한 보험요율을 적용합니다.

### 제3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특약의 부활(효력회복))

회사는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 청약을 받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승낙한 경우에 한하여 보통약관 제34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에 따라 이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을 취급합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6-7 전자서명 제도특별약관

###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은 전자서명을 포함한 전자문서 작성 및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사전동의서를 통한 동의)를 받은 계약에 적용됩니다.(이하 ‘특별약관’은 ‘특약’이라 합니다.)

### 제2조 (특약의 체결 및 효력)

- ① 이 특약은 계약 보통약관을 말하며, 다른 특약이 부가된 경우에는 그 특약도 포함합니다. 이하 ‘보통약관’이라 합니다)을 체결할 때 계약자의 청약과 회사의 승낙으로 보통

약관에 부가하여 이루어집니다.

- ② 이 특약을 통하여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계약을 청약할 수 있으며, 전자서명은 자필서명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것으로 합니다.

### 제3조 (약관교부의 특례)

- ① 계약자가 동의하는 경우 보험증권, 상품설명서, 약관 및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등(이하 ‘보험계약 안내자료’라 합니다)을 광기록매체(CD, DVD 등), 전자우편 등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이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해당 문서를 드린 것으로 봅니다.
- ② 계약자가 보험계약 안내자료에 대하여 전자적 방법의 수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약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우편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에게 드립니다.

### 제4조 (보험계약자의 알릴 의무)

- ① 계약자가 제3조(약관교부의 특례) 제1항에 정한 방법으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을 청약할 때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수신할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지정하여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가 변경되거나 사용 정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지정한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은 경우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최근의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로 보험계약 안내자료를 송부함으로써 회사의 보험계약 안내자료 제공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며, 전자우편(이메일) 주소를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제5조 (준용규칙)

이 특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 6-8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제도특별약관

### 제1조 (특별약관의 적용범위)

- ①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이라 합니다)은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이하 “전환대상계약”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청약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1. 「소득세법 제 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제 59조의 4 (특별세액공제) >**

-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의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2(제1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보험료별로 그 합계액이 각각 연100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각 없는 것으로 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2.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제1호에 따른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 118조의 4 (보험료의 세액공제)>**

- ①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험·공제로서 보험·공제 계약 또는 보험료·공제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보험·공제의 보험료·공제료를 말한다.
- ②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보증·공제의 보험료·보증료·공제료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또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및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 다만,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61조의 3 (공제대상보험료의 범위)>**

영 제118조의 4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를 말한다.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관련법규 】**

**<「소득세법 시행령 제 107조 (장애인의 범위)」에서 규정한 장애인>**

- ①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 54조 (장애아동의 범위) >**

영 제107조 제1항 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 예시안내 】**

**<이특약을 적용할 수 없는 사례 예시>**

1.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인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전환대상계약의 보험수익자 1인은 비장애인이고 피보험자 2인 중 한명은 비장애인, 한명은 장애인인 경우  
⇒ 모든 피보험자가 장애인이 아니므로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전환대상계약의 피보험자는 비장애인이고 보험수익자가 법정상속인(장애인)인 경우  
⇒ 현재 법정상속인이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특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수익자 지정이 필요합니다.
- ② 전환대상계약이 해지(解止) 또는 기타 사유로 효력이 없게 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③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제3조(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④ 이 특약의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의 계약자와 동일하여야 합니다.

### 제2조 (제출서류)

- ① 이 특약에 가입하고자 하는 계약자는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의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 서식에 의한 장애인증명서의 원본 또는 사본」(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을 제출하여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에 해당함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증명서·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이나 그 밖의 장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 1항의 장애인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③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1항에 따라 회사에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이를 다시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④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장애인증명서의 장애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계약자는 이를 회사에 알리고 변경된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3조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

- ① 회사는 이 특약이 부가된 전환대상계약을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후부터 납입된 전환대상계약 보험료는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됩니다.

#### 【 예시안내 】

2020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0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경우, 이 특약을 청약하기 전(2020년 1월 15일~ 2020년 5월 31일)에 납입된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고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이후(2020년6월1일~2020년12월31일) 납입된 보험료만 2020년 특별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된 당해년도에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에 납입한 모든 전환대상계약보험료가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예시안내 】

2020년 1월 15일에 전환대상계약에 가입한 계약자가 2020년 6월 1일에 이 특약을 청약하고 회사가 승낙하여 전환대상계약이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전환되었으나

2020년 12월 1일에 전환을 취소한 경우, 이 전환대상계약에 납입된 모든 보험료는 당해년도 보험료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료로 표시되지 않으며 소득세법에 따라 보험료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 ④ 전환대상계약에 이 특약이 부가된 이후 제4조(전환 취소)에 따라 전환을 취소한 경우 또는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 이 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 해당 전환대상계약에는 이 특약을 다시 부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2조(제출서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장애인증명서상 장애예상기간(또는 장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전환대상계약이 제1조(특별약관의 적용범위)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만족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제4조 (전환 취소)

계약자는 전환대상계약에 대하여 장애인전용보험으로의 전환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환취소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5조 (준용규정)

- ①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전환대상계약 약관,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② 소득세법 등 관련법규가 제·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릅니다.

## 6-9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 특별약관

최초계약 체결 시 가입 나이가 70세 이하인 계약에 한하여 무사고 계약전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 중 특별조건부(할증보험료법)제도 적용 계약은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 제1조(가입 후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의 목적)

보험계약 체결 이후 피보험자의 위험이 감소되어 무사고 기간이 변경된 경우, 이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합하는 형태로 전환하여, 이후 보험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변경하고 최초 계약체결시점과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합니다.

### 제2조(계약전환 적용대상)

- ① 제1호 내지 제4호를 모두 만족하는 계약의 계약자가 제4조(계약전환 안내 및 계약전환의 신청)에 따라 계약전환을 신청하고,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피보험자의 건강상태에 부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합하는 형태로 계약을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단, 보험기간 중 특별조건부(할증보  
험료법)제도 적용 계약은 계약전환 신청이 불가합니다.

1. 전환신청 시 전환전 계약의 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유효한 계약
2.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변경되어 위험이 감소된 계약

**【 예시안내 】**

**< 위험이 감소된 경우 >**

피보험자의 무사고 기간이 아래와 같이 변경된 경우를 말합니다.

1. 최초계약일부더 1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계속하여 2일이상)을 하지 않은 경우
2. 최초계약일부더 2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계속하여 2일이상)을 하지 않은 경우
3. 최초계약일부더 3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계속하여 2일이상)을 하지 않은 경우
4. 최초계약일부더 4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계속하여 2일이상)을 하지 않은 경우
5. 최초계약일부더 5년간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입원(계속하여 2일이상)을 하지 않은 경우

3. 전환전 계약이 건강고지Ⅱ(10년) 계약이 아닌 계약
  4. 최초계약 체결 시 가입 나이가 70세 이하인 계약
- ② 회사는 제1항의 내용을 확인하여 계약전환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계약 전환을 거절한 경우에는 기존계약이 유지됩니다.

**제3조(무사고 및 무사고기간의 정의)**

- ① 이 계약에서 무사고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인 경우 최초계약일) 이후에 질병이나 상해로 인하여 입원(계속하여 2일이상)을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② 이 계약에서 무사고기간이라 함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갱신계약의 경우 최초계약일)부 더 제1항에서 정한 '무사고' 상태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기간을 말합니다. "무사고 기 간"의 산정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부더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하며,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 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함)전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제4조(계약전환 안내 및 계약전환의 신청)**

- ①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해당일 이전까지 계약전환 요건, 계약전환 절차 및 계약전환 신 청 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 등을 서면(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 로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계약전환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 적 의사표시 등을 통해 확인합니다.
- ② 제1항의 계약해당일 이란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부더 그날을 포함하여 매1년 단위로 도래

하는 날을 말하며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과 동일한 월,일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연도의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③ 계약전환의 신청기한은 최초계약 체결시 가입한 건강고지Ⅱ 유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 용합니다.

최초계약 체결시	계약전환 신청기한
일반심사	최초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더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8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건강고지Ⅱ(6년)	최초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더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건강고지Ⅱ(7년)	최초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더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6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건강고지Ⅱ(8년)	최초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더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건강고지Ⅱ(9년)	최초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더 최초 보험계약 시작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날 이전까지
건강고지Ⅱ(10년)	계약전환 불가

- ④ 제3항에서 정한 계약전환 신청기한 내에 회사가 계약자의 계약전환 의사를 확인하지 못한 경우(계약자와의 연락두절로 회사의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계약전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5조(계약전환의 적용)**

- ① 회사가 계약전환을 승낙하여 계약이 전환된 경우, "전환후 계약"은 제3조(무사고 및 무 사고 기간의 정의)에서 정한 "무사고 기간"에 따라 아래 계약으로 적용됩니다.

【 예시안내 】

< 무사고기간 별 전환가능계약 예시 >

전환전 계약 (계약 체결시)	전환가능계약				
	무사고 기간 (1년)	무사고 기간 (2년)	무사고 기간 (3년)	무사고 기간 (4년)	무사고 기간 (5년)
일반심사	건강고지 II (6년)	건강고지 II (7년)	건강고지 II (8년)	건강고지 II (9년)	건강고지 II (10년)
건강고지 II (6년)	건강고지 II (7년)	건강고지 II (8년)	건강고지 II (9년)	건강고지 II (10년)	
건강고지 II (7년)	건강고지 II (8년)	건강고지 II (9년)	건강고지 III (10년)		
건강고지 II (8년)	건강고지 II (9년)	건강고지 II (10년)			
건강고지 II (9년)	건강고지 II (10년)				
건강고지 II (10년)	전환가능 계약 없음				

-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전환이 되는 경우 "전환후 계약"은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전환전 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전환 됩니다
1. 보장내용
  2. 갹신/비갹신 유형
  3. 납입면제 운영에 관한사항
  4. 해약환급금지급에 관한 사항 등
  5. 건강고지II형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등 기타 계약의 내용
  6. 보험료 납입유형에 관한 사항(보험료 기본납입형/보험료 현명한납입형)
- ③ 전환전 계약에서 특별약관의 소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합니다(세부 보장별 소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사유가 발생한 해당 세부 보장은 계약전환이 불가능함). 전환전 계약에서 해당 특별약관이 특별약관의 소멸조항에 의하여 이미 효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전환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당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효력이 없어진 이후 이미 납입한 해당특별약관의 보험료는 환급합니다.
- ④ 전환후 계약의 적용일은 회사의 계약전환 신청 승낙 후 최초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일로 합니다.

**제6조(계약전환에 관한 세부규정)**

- ① 계약이 전환된 경우 전환후 계약의 적용일부터 납입하는 보험료가 변경되며,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후 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계약자적립액 등의 차이로 인하여 정산금액(이하 '정산금액' 이라 합니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경우 환급합니다.

- ② 제1항에 따라 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정산금액과 이에 대한 이자(정산금액을 계약전환 적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평균공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합니다.
- ③ 계약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만기(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최초 가입시 안내한 만기(해약)환급금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료 변경 및 정산금액 등을 환급하였으나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전환전 계약의 제3조(무사고 및 무사고 기간의 정의)에서 정한 무사고의 판별 기준이 되는 사고를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전환을 무효로 하며 전환전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⑤ 제4항에 따라 전환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환급 받았던 정산금액과 이자(이하 '추징액' 이라 합니다)가 추징되며, 전환전 계약의 유지를 위한 보험료 증액의 추가납입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정상적으로 납입 하여야 합니다.
- ⑥ 회사는 제5항의 보험료 증액의 추가납입 및 추징액이 연체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삭감한 후 지급합니다.
- ⑦ 계약이 전환되는 경우에도 최초계약의 보통약관 제18조(계약 전 알릴 의무), 제19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20조(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21조(사기에 의한 계약) 조항은 전환후 계약에서도 효력이 계속됩니다.

**제7조(준용규칙)**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을 따릅니다.

**6-10 갹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갹신 제도특별약관**

**제1조 (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손해의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 계약의 다른 특별약관 중 갹신형 특별약관(이하 '갹신형 특약' 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제2조 (자동갹신에 관한 사항)**

- ① 회사는 종전의 갹신형 특별약관(이하 '갹신전 계약' 이라 합니다)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갹신 될 계약(이하 '갹신계약' 이라 합니다)의 보험료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 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갹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갹신형 특약을 자동으로 갹신하여 드립니다.
- ③ 갹신계약의 보험료는 갹신일 현재의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를 반영하여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그 보험료는 나이의 증가, 보험료산출에 관한 기초율의 변동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인상될 수 있습니다.
- ④ 갹신계약의 보험기간은 갹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으로 하며, 최종 갹신계약의 보험기간 중

특별  
약관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료나이(이하 '갱신종료나이' 라 합니다)는 이 계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나이로 합니다.

다만,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보다 짧은 경우에는 갱신계약 보험기간 중 잔여보험기간 이내의 최장보험기간으로 갱신합니다.

- ⑤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 ⑥ 갱신계약의 보험증권은 별도로 발행하지 않습니다.
- ⑦ 회사는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 시점에 유효한 보장에 한하여 자동갱신하여 드립니다.
- ⑧ 제5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및 표준약관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약관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 전까지 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계약의 보험료, 약관 변경내역 및 계약의 연장여부를 묻는 통지를 계약자에게 서면(등기우편),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등으로 2회 이상 알려드리고, 회사는 계약자의 자동갱신 의사를 전화(음성녹음), 직접 방문 또는 전자적 의사표시, 통신판매 계약의 경우 통신수단을 통해 확인합니다. 자동갱신 의사가 확인되는 경우 갱신일에 자동으로 갱신되며, 계약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는 경우 갱신일에 갱신전 계약은 만료됩니다.
- ⑨ 제8항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계약자와 연락두절 등으로 회사 안내가 계약자에게 도달하지 못한 경우 포함)에는 갱신형 특약을 자동으로 갱신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 등에 대해 90일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회사는 갱신일 이후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전액을 환급해드립니다.
- ⑩ 보통약관 제3조의2(보험료 납입면제)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갱신되는 계약에서는 갱신전 보험사고로 인한 보험료 납입면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보험료를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3조 (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

- ① 계약자가 갱신전 계약의 보험료를 정상적으로 납입하고, 갱신계약의 제1회 보험료를 갱신일까지 납입하지 않는 때에는 회사는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납입최고(독촉)기간으로 정하며 이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에 이 특약을 해제합니다.
- ② 납입최고(독촉)기간의 마지막 날이 영업일이 아닌 때에는 납입최고(독촉)기간은 그 다음 날까지로 합니다.
- ③ 납입최고(독촉)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즉시 갱신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회사는 지급할 보험금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및 해당 갱신형 특별약관을 따릅니다.

## 6-11 보험금 선지급 제도특별약관

### 제1조 (적용범위)

이 특별약관(이하 '특약' 이라 합니다)은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 별지에서 정한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상품' 및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별약관(이하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약' 이라 합니다)' 에 해당하고,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이 특약을 적용합니다.

1. 이 특약이 부가된 상품의 계약체결일이 2025년 12월 1일 이후인 경우
2.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별약관' 계약이 유효한 경우

### 제2조 (보험금 선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 ①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약이 부가된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약' 의 보험기간 중에 보장개시일(책임개시일)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에서 정한 치료 또는 수술을 받기 위해 치료일자 또는 수술일자 예약 후, 보험수익자가 제3조(선지급 보험금의 청구)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선지급 보험금' 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예약된 실제 치료일자 또는 수술일자 이후에 선지급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치료 또는 수술 이전에 행하는 검사를 포함한 준비, 계획 단계상의 의료행위(모의치료 포함)는 선지급 보험금 대상에서 제외하며,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치료 또는 수술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예약된 수술 또는 치료와 예약일에 행하는 실제 수술 또는 치료는 동일해야 하며,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약' 에서 정한 '중환자실입원' 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에는 '선지급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② 제1항의 '선지급 보험금' 이란 예약된 치료일자를 기준으로 해당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약'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여 지급될 것으로 계산한 보험금의 70%를 말합니다. 단, '선지급 보험금' 은 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③ '선지급 보험금' 을 청구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려야합니다. 이 경우 '선지급 보험금' 은 변경된 예약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 ④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 을 지급한 이후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고, 변경된 예약내용이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약'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과 변경된 예약내용에 따라 계산된 '선지급 보험금' 의 차액을 정산 합니다.
- ⑤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 을 지급한 이후 치료를 받지 않거나 치료일자 및 치료항목, 치료내용, 치료병원 등 예약내용이 변경되어, 변경된 예약내용이 아래에서 정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회사에 알린 후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 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 의 지급일로부터 예약내용의 변경을 회사에 알린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를 회사에 반환하여야합니다.
  1. '보험금 선지급 적용대상 특약'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⑥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 실제 치료일자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약' 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잔여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선지급 보험금' 을 차감한 금액을 잔여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예약된 치료일자 이후에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의 반환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특별한 사정없이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단, 피보험자가 이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 이미 지급된 선지급 보험금은 반환하여야 합니다.
- ⑧ 제7항에 따라 회사는 제5항에서 정한 '선지급 보험금'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여 이미 지급한 '선지급 보험금' 및 평균공시이율로 계산한 '선지급 보험금' 의 지급일로부터 회사가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시점까지의 기간 상당분의 이자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⑨ 제5항 및 제8항에 따라 '선지급 보험금' 에 대한 반환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 선지급 적용 대상 특약' 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금액을 보험금에서 차감한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⑩ 회사가 '선지급 보험금' 을 지급한 경우 해당 치료항목에 대한 잔여보험금 청구 이전에는 동일한 치료항목에 대하여 추가 '선지급 보험금' 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3조 ( '선지급 보험금' 의 청구)**

- ① 보험수익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1. 청구서(회사양식)
  - 2. 사고증명서(진단서, 진료비계산서, 입원치료확인서, 의사처방전(처방조제비) 등)
  - 3. 신분증(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붙은 정부기관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전자적 수단을 활용한 보험수익자 의사표시의 확인방법 포함)
  - 4. 기타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수령에 필요하여 제출하는 서류
  - 5. 의사가 작성한 수술치료계획(수술 또는 치료일자, 수술 또는 치료명)이 기재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 치료 예약 확인서, 진료기록부  
(치료 또는 수술은 보험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실제 치료 또는 수술을 기준으로 적용하며, 치료 또는 수술 이전에 행하는 검사를 포함한 준비, 계획 단계상의 의료행위(모의 치료 포함)를 제외함)
- ② 제1항 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 관련법규 】**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구분
  - 의원급 의료기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 병원급 의료기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
  - 조산원: 조산사가 임부, 해산부 등을 대상으로 보건활동 등을 하는 의료기관

**제4조 (준용규정)**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통약관 및 보통약관에 부가된 특약의 규정을 따릅니다.

상해

질병

상해  
및  
질병

비용  
손해

독립  
특약

기타  
특별  
약관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  
(Hi2601)

 현대해상

표  
표





[별표1]

## 장애분류표

### 제1장 총칙

#### 1. 장애의 정의

- 1) '장애'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하여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및 기능상실 상태를 말한다. 다만, 질병과 부상의 주증상과 합병증상 및 이에 대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장애에 포함되지 않는다.
- 2) '영구적'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치유하는 때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에서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임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3) '치유된 후'라 함은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또한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를 말한다.
- 4)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 종결 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장애지급률로 한다.
- 5) 위 4)에 따라 장애지급률이 결정되었으나 그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계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은 상해 발생일 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장애지급률을 결정한다.

#### 2. 신체부위

'신체부위'라 함은 ① 눈 ② 귀 ③ 코 ④ 씹어먹거나 말하는 기능 ⑤ 외모 ⑥ 척추(등뼈) ⑦ 체간골(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 ⑧ 팔 ⑨ 다리 ⑩ 손가락 ⑪ 발가락 ⑫ 흉·복부 장기 및 비호생식기 ⑬ 신경계·정신행동의 13개 부위를 말하며, 이를 각각 동일한 신체부위라 한다. 다만, 좌·우의 눈, 귀,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은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본다.

#### 3. 기타

- 1) 하나의 장애가 관찰방법에 따라서 장애분류표상 두 가지 이상의 신체부위에서 장애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2) 동일한 신체부위에 두 가지 이상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더하지 않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3) 하나의 장애가 다른 장애와 통상 파생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중 높은 지급률만을 적용하며, 하나의 장애로 둘 이상의 파생장애가 발생하는 경우 각 파생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 지급률과 최초 장애의 지급률을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4) 의학적으로 뇌사판정을 받고 호흡기능과 심장박동기능을 상실하여 인공심박동기 등 장치에 의존하여 생명을 연장하고 있는 뇌사상태는 장애의 판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뇌사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닌 식물인간상태(의식이 전혀 없고 사지의 자발적인 움직임이 불가능하여 일상생활에서 항상 간호가 필요한 상태)는 각 신체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5) 장애진단서에는 ① 장애진단명 및 발생시기 ② 장애의 내용과 그 정도 ③ 사고와의 인과관계 및 사고의 관여도 ④ 향후 치료의 문제 및 호전도를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다만, 신경계·정신행동 장애의 경우 ① 간병(장애로 혼자서 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곁에서 돌보는 것)여부 ② 객관적 이유 및 간병의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2장 장애분류별 판정기준

#### 1. 눈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눈이 멀었을 때	100
2) 한 눈이 멀었을 때	50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35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25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15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5
7) 한 눈의 안구(눈동자)에 뚜렷한 운동장애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를 남긴 때	10
8) 한 눈에 뚜렷한 시야장애를 남긴 때	5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10
10)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시력장애의 경우 공인된 시력검사표에 따라 최소 3회 이상 측정한다.
- 2) '교정시력'이라 함은 안경(콘택트렌즈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시력 교정수단)으로 교정한 원거리 최대교정시력을 말한다. 다만, 각막이식술을 받은 환자인 경우 각막이식술 이전의 시력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3) '한 눈이 멀었을 때'라 함은 안구의 적출은 물론 명암을 가리지 못하거나( '광각무' ) 겨우 가릴 수 있는 경우( '광각유' )를 말한다.

- 4) '한눈의 교정시력이 0.020이하로 된 때' 라 함은 안전수동(Hand Movement)<sup>주1)</sup>, 안전수지(Finger Counting)<sup>주2)</sup> 상태를 포함한다.  
 주1) 안전수동 : 물체를 감별할 정도의 시력상태가 아니며 눈앞에서 손의 움직임을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주2) 안전수지 : 시표의 가장 큰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정도의 시력은 아니나 눈 앞 30cm 이내에서 손가락의 개수를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시력상태
- 5) 안구(눈동자) 운동장애의 판정은 질병의 진단 또는 외상 후 1년 이상이 지난 뒤 그 장애 정도를 평가한다.
- 6)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운동장애' 라 함은 아래의 두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한 눈의 안구(눈동자)의 주시야(머리를 움직이지 않고 눈만을 움직여서 볼 수 있는 범위)의 운동범위가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  
 나) 중심 20도 이내에서 복시(물체가 둘로 보이거나 겹쳐 보임)을 남긴 경우
- 7) '안구(눈동자)의 뚜렷한 조절기능장애' 라 함은 조절력이 정상 1/2 이하로 감소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조절력의 감소를 무시할 수 있는 50세 이상(장애진단시 연령 기준)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 8) '뚜렷한 시야 장애' 라 함은 한 눈의 시야 범위가 정상시야 범위의 60%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시야검사는 공인된 시야검사방법으로 측정하며, 시야장애 평가 시 자동시야검사계(골드만 시야검사)를 이용하여 8방향 시야범위 합계를 정상범위와 비교하여 평가한다.
- 9)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라 함은 눈꺼풀의 결손으로 눈을 감았을 때 각막(검은 자위)이 완전히 덮이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10) '눈꺼풀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눈을 뜬 때 동공을 1/2 이상 덮거나 또는 눈을 감았을 때 각막을 완전히 덮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11) 외상이나 화상 등으로 안구의 적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이 가산된다. 이 경우 안구가 적출되어 눈자위의 조직요물(凹液) 등으로 의안마저 끼워 넣을 수 없는 상태이면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으로, 의안을 끼워 넣을 수 있는 상태이면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으로 지급률을 가산한다.
- 12) '눈꺼풀에 뚜렷한 결손을 남긴 때'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포함하여 장애를 평가한 것으로 보고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가산하지 않는다. 다만, 안면부의 추상(추한 모습)은 두 가지 장애평가 방법 중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것을 적용한다.

2. 귀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80
2)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고, 다른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45
3)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25
4) 한 귀의 청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5
5) 한 귀의 청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6)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10
7)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 청력장애는 순음청력검사 결과에 따라 데시벨(dB : decibel)로서 표시하고 3회 이상 청력검사를 실시한 후 적용한다. 다만, 각 측정치의 결과값 차이가 ±10dB 이상인 경우 청성뇌간반응검사(ABR)를 통해 객관적인 장애 상태를 재평가하여야 한다.
- '한 귀의 청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90dB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8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귀에다 대고 말하지 않고는 큰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순음청력검사 결과 평균순음역치가 70dB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50cm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의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기 곤란하거나(청력의 감소가 의심되지만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만 3세 미만의 소아 포함) 검사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언어청력 검사, 임피던스 청력검사, 청성뇌간반응검사(ABR), 이음향방사검사' 등을 추가실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다. 귓바퀴의 결손

-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때' 라 함은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이상 결손된 경우를 말한다.
- 귓바퀴의 연골부가 1/2 미만 결손이고 청력에 이상이 없으면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 장애로만 평가한다.

라. 평형기능의 장애

- '평형기능에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전정기관 이상으로 보행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아래의 평형장애 평가항목별 합산점수가 30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항 목	내 용	점수
검사 소견	1) 양측 전정기능 소실	14
	2) 양측 전정기능 감소	10
	3) 일측 전정기능 소실	4
치료 병력	1) 장기 통원치료(1년간 12회이상)	6
	2) 장기 통원치료(1년간 6회이상)	4
	3)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이상)	2
	4) 단기 통원치료(6개월간 6회미만)	0
기능 장애 소견	1)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 곤란하거나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는 경우	20
	2)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는 경우	12
	3) 두 눈을 뜨고 10m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cm 이상 벗어나는 경우	8

2) 평형기능의 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며, 뇌병변 여부, 전정기능 이상 및 장애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아래의 검사들을 기초로 한다.

가) 뇌영상검사(CT, MRI)

나) 온도안진검사, 전기안진검사(또는 비디오안진검사) 등

### 3. 코의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15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코의 호흡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일상생활에서 구강호흡의 보조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코로 숨쉬는 것만으로 정상적인 호흡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강통기도 검사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검사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 2)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후각신경의 손상으로 인하여 양쪽 코의 후각기능을 완전히 잃은 경우를 말하며, 후각감퇴는 장애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3) 양쪽 코의 후각기능은 후각인지기검사, 후각역치검사 등을 통해 6개월 이상 고정된 후각

의 완전손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4) 코의 추상(추한 모습)장애를 수반한 때에는 기능장애의 지급률과 추상장애의 지급률을 합산한다.

### 4. 씹어먹거나 말하는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80
3)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60
4)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40
5)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씹어먹는 기능과 말하는 기능 모두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7) 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8) 치아에 14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20
9) 치아에 7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10
10) 치아에 5개 이상의 결손이 생긴 때	5

#### 나. 장애의 평가기준

- 1)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의 맞물림(교합), 배열상태 및 아래턱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삼킴(연하)운동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 2) '씹어먹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심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물이나 이에 준하는 음료 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 3) '씹어먹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뚜렷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뚜렷한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미음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음식물(죽 등)이외는 섭취하지 못하는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1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5cm이상인 경우
  - 라) 1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 시 흡인이 발생하고 연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4) '씹어먹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약간의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 또는 약간의 저작(씹기)운동 제한으로 부드러운

- 고형식(밥, 빵 등)만 섭취 가능한 경우
- 나)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최대 개구(입벌리기)운동이 2cm이하로 제한되는 경우
  - 다) 위아래턱(상·하악)의 부정교합(전방, 측방)이 1cm이상인 경우
  - 라) 양측 각 1개 또는 편측 2개 이하의 치아만 교합되는 상태
  - 마) 연하기능검사(비디오 투시검사)상 연하장애가 있고, 유동식 섭취시 간헐적으로 흡인이 발생하고 부드러운 고형식 외에는 섭취가 불가능한 상태
- 5) 개구(입벌리기)장애는 턱관절의 이상으로 개구(입벌리기)운동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최대 개구(입벌리기)상태에서 위아래턱(상·하악)의 가운데 앞니(중절치)간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가운데 앞니(중절치)가 없는 경우에는 측정가능한 인접 치아간 거리의 최대치를 기준으로 한다.
- 6) 부정교합은 위턱(상악)과 아래턱(하악)의 부조화로 윗니(상악치아)와 아랫니(하악치아)가 전방 및 측방으로 맞물림에 제한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
- 7)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경우
  - 나) 전실어증, 운동성실어증(브로카실어증)으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경우
- 8) '말하는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50%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25 미만인 경우
- 9) '말하는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때를 말한다.
  - 가) 언어평가상 자음정확도가 75%미만인 경우
  - 나) 언어평가상 표현언어지수 65 미만인 경우
- 10) 말하는 기능의 장애는 1년 이상 지속적인 언어치료를 시행한 후 증상이 고착되었을 때 평가하며, 객관적인 검사를 기초로 평가한다.
- 11) 뇌중추신경계 손상(정신인지기능 저하, 편마비 등)으로 인한 말하는 기능의 장애(실어증, 구음장애) 또는 씹어먹는 기능의 장애는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평가와 비교하여 그 중 높은 지급률 하나만 인정한다.
- 12) '치아의 결손' 이란 치아의 상실 또는 발치된 경우를 말하며, 치아의 일부 손상으로 금관치료(크라운 보철수복)를 시행한 경우에는 치아의 일부 결손을 인정하여 1/2개 결손으로 적용한다.
- 13) 보철치료를 위해 발치한 정상치아, 노화로 인해 자연 발치된 치아, 보철(복합레진, 인레이, 온레이 등)한 치아, 기존 의치(틀니, 임플란트 등)의 결손은 치아의 상실로 인정하지 않는다.
- 14) 상실된 치아의 크기가 크든지 또는 치간의 간격이나 치아 배열구조 등의 문제로 사고와 관계없이 새로운 치아가 결손된 경우에는 사고로 결손된 치아 수에 따라 지급률을 결정한다.
- 15) 어린이의 유치는 향후에 영구치로 대체되므로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선천적으로 영구치 결손이 있는 경우에는 유치의 결손을 후유장애로 평가한다.

- 13) 가철성 보철물(신체의 일부에 붙였다 떼었다 할 수 있는 틀니 등)의 파손은 후유장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외모의 추상(추한 모습)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외모에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15
2) 외모에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외모' 란 얼굴(눈, 코, 귀, 입 포함), 머리, 목을 말한다.
- 2) '추상(추한 모습)장애' 라 함은 성형수술(반흔(흉터)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한다.
- 3) '추상(추한 모습)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처의 흔적, 화상 등으로 피부의 변색, 모발의 결손, 조직(뼈, 피부 등)의 결손 및 함몰 등으로 성형수술을 하여도 더 이상 추상(추한 모습)이 없어지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 4) 다발성 반흔(흉터) 발생시 각 판정부위(얼굴, 머리, 목) 내의 다발성 반흔(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은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길이가 5mm 미만의 반흔(흉터)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
- 5) 추상(추한 모습)이 얼굴과 머리 또는 목 부위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머리 또는 목에 있는 흉터의 길이 또는 면적의 1/2을 얼굴의 추상(추한 모습)으로 보아 산정한다.

**다. 뚜렷한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10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5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2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가) 손바닥 크기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라. 약간의 추상(추한 모습)**

- 1) 얼굴
  - 가) 손바닥 크기 1/4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 나) 길이 5cm 이상의 추상 반흔(추한 모습의 흉터)



- 다) 지름 2cm 이상의 조직함몰
- 라) 코의 1/4 이상 결손
- 2) 머리
  - 가)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반흔(흉터) 및 모발결손
  - 나) 머리뼈의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손상 및 결손
- 3) 목
  - 손바닥 크기 1/2 이상의 추상(추한 모습)

**마. 손바닥 크기**

‘손바닥 크기’ 라 함은 해당 환자의 손가락을 제외한 손바닥의 크기를 말하며, 통산 12세 이상의 성인에서는 8×10cm(1/2 크기는 40cm<sup>2</sup>, 1/4 크기는 20cm<sup>2</sup>), 6~11세의 경우는 6×8cm(1/2 크기는 24cm<sup>2</sup>, 1/4 크기는 12cm<sup>2</sup>), 6세 미만의 경우는 4×6cm(1/2 크기는 12cm<sup>2</sup>, 1/4 크기는 6cm<sup>2</sup>)로 간주한다.

**6. 척추(등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척추(등뼈)에 심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40
2) 척추(등뼈)에 뚜렷한 운동장애를 남긴 때	30
3) 척추(등뼈)에 약간의 운동장애를 남긴 때	10
4) 척추(등뼈)에 심한 기형을 남긴 때	50
5) 척추(등뼈)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30
6) 척추(등뼈)에 약간의 기형을 남긴 때	15
7)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	20
8)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	15
9)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	10

**나. 장애판정기준**

- 1) 척추(등뼈)는 경추에서 흉추, 요추, 제1천추까지를 동일한 부위로 한다.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및 미골은 체간골(어깨뼈, 골반뼈, 빗장뼈, 가슴뼈, 갈비뼈)의 장애로 평가한다.
- 2)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말하며, 횡돌기 및 극돌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신체부위에서 같다)의 압박률 또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만곡변화는 객관적인 측정방법(Cobb's Angle)에 따라 골절이 발생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상·하 인접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포함하여 측정하며, 생리적 정상만곡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 나)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 골절의 부위 등으로 판정한다.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은 인접 상·하부[인접 상·하부 척추체

- (척추뼈 몸통)에 진구성 골절이 있거나, 다발성 척추골절이 있는 경우에는 골절된 척추와 가장 인접한 상·하부] 정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전방 높이의 평균에 대한 골절된 척추체(척추뼈 몸통) 전방 높이의 감소비를 압박률로 정한다.
- 다) 척추(등뼈)의 기형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 경추부, 흉추부, 요추부로 구분하여 각각을 하나의 운동단위로 보며, 하나의 운동단위 내에서 여러 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을 합산하고, 두 개 이상의 운동단위에서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3) 척추(등뼈)의 장애는 퇴행성 기형증 병변과 사고가 그 증상을 악화시킨 부분만큼, 즉 이 사고와의 관여도를 산정하여 평가한다.
- 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신경 장애는 수술 또는 시술(비수술적 치료)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후에 평가한다.
- 5) 신경학적 검사상 나타난 저린감이나 방사통 등 신경자극증상의 원인으로 CT, MRI 등 영상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된 경우를 추간판탈출증으로 진단하며, 수술 여부에 관계없이 운동장애 및 기형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 6) 심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4개 이상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 제1경추, 제2경추를 모두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7) 뚜렷한 운동장애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3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나) 머리뼈(두개골)와 제1경추 또는 제1경추와 제2경추를 유합 또는 고정한 상태
  - 다)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사이에 CT 검사 상, 두개 대후두공의 기저점(basion)과 축추 치돌기 상단사이의 거리(BDI : Basion-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라)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 CT 검사상, 환추 전방 궁(arch)의 후방과 치상돌기의 전면과의 거리(ADI: Atlanto-Dental Interval)에 뚜렷한 이상전위가 있는 상태
- 8) 약간의 운동장애
  - 머리뼈(두개골)와 상위목뼈(상위경추: 제1, 2경추)를 제외한 척추체(척추뼈 몸통)에 골절 또는 탈구로 2개의 척추체(척추뼈 몸통)를 유합(아물어 붙음) 또는 고정한 상태
- 9) 심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3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2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6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90% 이상일 때
- 10) 뚜렷한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 등으로 15° 이상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

- 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10° 이상의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4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60% 이상일 때
- 11) 약간의 기형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1개 이상의 척추(등뼈)의 골절 또는 탈구로 경도(가벼운 정도)의 척추전만증(척추가 앞으로 휘어지는 증상), 척추후만증(척추가 뒤로 휘어지는 증상) 또는 척추측만증(척추가 옆으로 휘어지는 증상) 변형이 있을 때
- 나) 척추체(척추뼈 몸통) 한 개의 압박률이 20%이상인 경우 또는 한 운동단위 내에 두 개 이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골절로 각 척추체(척추뼈 몸통)의 압박률의 합이 40% 이상일 때
- 12)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심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을 2마디 이상(또는 1마디 추간판에 대해 2회 이상) 수술하고도 마미신경증후군이 발생하여 하지의 현저한 마비 또는 대소변의 장애가 있는 경우
- 13)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뚜렷한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하여 추간판 1마디를 수술하고도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고 척추신경근의 불완전 마비가 인정되는 경우
- 14) '추간판탈출증으로 인한 약간의 신경 장애'란 추간판탈출증이 확인되고 신경생리검사에서 명확한 신경근병증의 소견이 지속되는 경우

7. 체간골(어깨뼈,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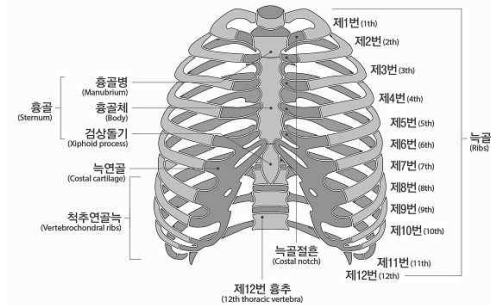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어깨뼈(견갑골)나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5
2)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에 뚜렷한 기형을 남긴 때	10

나. 장애판정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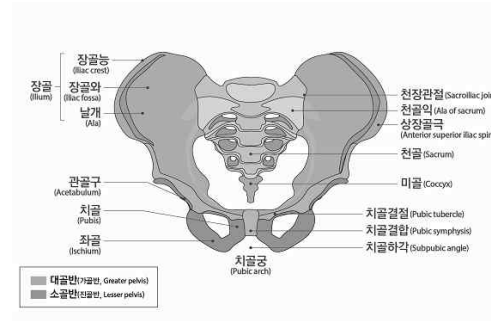
- 1) '체간골(어깨뼈,골반뼈,빗장뼈,가슴뼈,갈비뼈)' 이라 함은 어깨뼈(견갑골), 골반뼈(장골, 제2천추 이하의 천골, 미골, 좌골 포함),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를 말하며 이를 모두 동일한 부위로 본다.
- 2) '골반뼈의 뚜렷한 기형' 이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천장관절 또는 치골문합부가 분리된 상태로 치유되었거나 좌골이 2.5cm이상 분리된 부정유합 상태
- 나) 육안으로 변형(결손을 포함)을 명백하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방사선 검사를 통해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

다) 미골의 기형은 골절이나 탈구로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70° 이상 남은 상태

- 3) '빗장뼈(쇄골), 가슴뼈(흉골), 갈비뼈(늑골), 어깨뼈(견갑골)에 뚜렷한 기형이 남은 때' 라 함은 방사선 검사로 측정된 각(角) 변형이 20°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4) 갈비뼈(늑골)의 기형은 그 개수와 정도, 부위 등에 관계없이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애로 취급한다. 다발성늑골 기형의 경우 각각의 각(角) 변형을 합산하지 않고 그 중 가장 높은 각(角) 변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가슴뼈 >



< 골반뼈 >

8. 팔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해의 분류	지급률(%)
1) 두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팔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팔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해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해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해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해(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팔' 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부터 손목관절(완관절)까지를 말한다.
- 4) '팔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어깨관절(견관절), 팔꿈치관절(주관절), 손목관절(완관절)을 말한다.
- 5) '한 팔의 손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손목관절(완관절)로부터(손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팔꿈치관절(주관절)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팔의 관절기능장해 평가는 팔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해평가기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해를 표시할 경우 장해부위의 장해각도와 정상부위의 측정치를 동시에 판단하여 장애상태를 명확히 한다. 단, 관절기능장해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굳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다)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가관절<sup>\*)</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요골과 척골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2)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요골과 척골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3)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상완골 또는 요골과 척골에 변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팔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해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2) 1상지(팔과 손가락)의 장해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 9. 다리의 장해

#### 가. 장해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두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100
2)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60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30
4)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20
5)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5
7)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8)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0
9) 한 다리의 뼈에 기형을 남긴 때	5
10) 한 다리가 5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30
11) 한 다리가 3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15
12) 한 다리가 1cm 이상 짧아지거나 길어진 때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을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다리’ 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부터 발목관절(족관절)까지를 말한다.
- 4) ‘다리의 3대 관절’ 이라 함은 엉덩이관절(고관절), 무릎관절(슬관절), 발목관절(족관절)을 말한다.
- 5) ‘한 다리의 발목 이상을 잃었을 때’ 라 함은 발목관절(족관절)로부터(발목관절 포함) 심장에 가까운 쪽에서 절단된 때를 말하며, 무릎관절(슬관절)의 상부에서 절단된 경우도 포함한다.
- 6) 다리의 관절기능 장애 평가는 다리의 3대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및 무릎관절(슬관절)의 동요성 등으로 평가한다.
  - 가)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나) 관절기능장애가 신경손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운동범위 측정이 아닌 근력 및 근전도 검사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7)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완전 강직(관절균음)
  - 나)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0등급(zero)’ 인 경우
- 8) ‘관절 하나의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인공관절이나 인공골두를 삽입한 경우
  - 다)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라) 근전도 검사상 완전손상(complete injury) 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1등급(trace)’ 인 경우
- 9) ‘관절 하나의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1/2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10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2등급(poor)인 경우
- 10) ‘관절 하나의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해당 관절의 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범위의 3/4 이하로 제한된 경우
  - 나) 객관적 검사(스트레스 엑스선)상 5mm 이상의 동요관절(관절이 흔들리거나 움직이는 것)이 있는 경우
  - 다) 근전도 검사상 불완전한 손상(incomplete injury)소견이 있으면서 도수근력검사(MMT)에서 근력이 3등급(fair)인 경우
- 11) 동요장애 평가 시에는 정상측과 환측을 비교하여 증가된 수치로 평가한다.
  - 12) ‘가관절<sup>주)</sup>이 남아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 또는 경골과 종아리뼈의 2개 뼈 모두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주) 가관절이란, 충분한 경과 및 골이식술 등 골유합을 얻는데 필요한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골절부의 유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불유합’ 상태를 말하며, 골유합이 지연되는 지연유합은 제외한다.
  - 13) ‘가관절이 남아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경골과 종아리뼈 중 어느 한 뼈에 가관절이 남은 경우를 말한다.
  - 14) ‘뼈에 기형을 남긴 때’ 라 함은 대퇴골 또는 경골에 기형이 남아 정상에 비해 부정유합된 각 변형이 15°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15) 다리 길이의 단축 또는 과신장은 스캐노그램(scanogram)을 통하여 측정한다.

**다. 지급률의 결정**

- 1)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생기고 다른 관절 하나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2) 1하지(다리와 발가락)의 장애 지급률은 원칙적으로 각각 더하되, 지급률은 60% 한도로 한다.

**10. 손가락의 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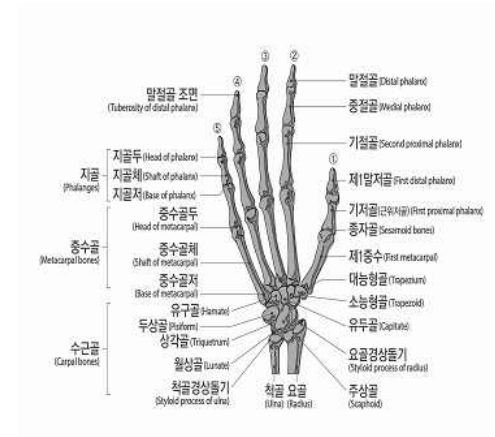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손의 5개 손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55
2)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을 잃었을 때	15
3)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을 잃었을 때(손가락 하나마다)	10
4) 한 손의 5개손가락 모두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한 손의 첫째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10
6) 한 손의 첫째 손가락 이외의 손가락의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손가락 하나마다)	5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손가락에는 첫째 손가락에 2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지관절이라 한다.
- 4) 다른 네 손가락에는 3개의 손가락관절이 있다. 그 중 심장에서 가까운 쪽부터 중수지관절, 제1지관절(근위지관절) 및 제2지관절(원위지관절)이라 부른다.
- 5) '손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에서, 다른 네 손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부터(제1지관절 포함) 심장에서 가까운 쪽으로 손가락이 절단되었을 때를 말한다.
- 6) '손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지관절, 다른 네 손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손가락 뼈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손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7) '손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첫째 손가락의 경우 중수지관절 또는 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 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손가락에 있어서는 제1, 제2지관절의 굴신운동영역을 합산하여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이거나 중수지관절의 굴신(굽히고 펴기)운동영역이 정상운동영역의 1/2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 8) 한 손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손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9) 손가락의 관절기능장애 평가는 손가락 관절의 관절운동범위 제한 등으로 평가한다. 각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시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손가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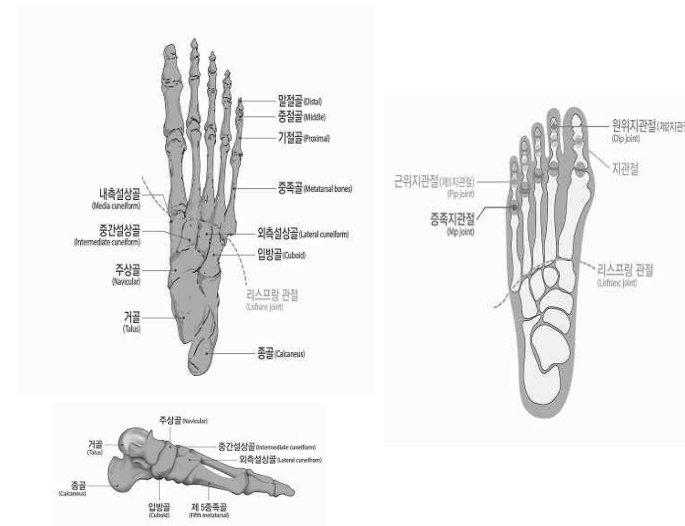
11. 발가락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한 발의 리스프랑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40
2) 한 발의 5개발가락을 모두 잃었을 때	30
3) 한 발의 첫째발가락을 잃었을 때	10
4)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을 잃었을 때(발가락 하나마다)	5
5) 한 발의 5개발가락 모두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20
6) 한 발의 첫째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8
7) 한 발의 첫째발가락 이외의 발가락의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또는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발가락 하나마다)	3

나. 장애판정기준

- 1) 골절부에 금속내고정물 등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기능장애의 원인이 되는 때에는 그 내고정물 등이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단, 제거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정물 등이 있는 상태에서 장애를 평가한다.
- 2) 관절을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일시적인 기능장애(예를 들면 캐스트로 환부를 고정시켰기 때문에 치유 후의 관절에 기능장애가 발생한 경우)는 장애로 평가하지 아니한다.
- 3) '발가락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제1지관절(근위지관절)(제1지관절 포함)부터 심장에서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말한다.
- 4) 리스프랑 관절 이상에서 잃은 때라 함은 족근-중족골간 관절 이상에서 절단된 경우를 말한다.
- 5) '발가락뼈 일부를 잃었을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에서는 지관절, 다른 네 발가락의 제1지관절(근위지관절)로부터 심장에서 먼 쪽으로 발가락 뼈 일부가 절단된 경우를 말하며, 뼈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나 발가락 길이의 단축 없이 골편만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다.
- 6) '발가락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첫째 발가락의 경우에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골신(굽히고 펴기)운동범위 합계가 정상 운동 가능영역의 1/20이하가 된 경우를 말하며, 다른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중족지관절의 신전운동범위만을 평가하여 정상운동범위의 1/20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7)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지급률은 각각 적용하여 더한다.
- 8) 발가락 관절의 운동범위 측정은 장애평가기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및 제3항의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기능영역을 기준으로 정상각도 및 측정방법 등을 따른다.



< 발가락 >

12. 흉·복부장기 및 비노생식기의 장애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100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노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75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노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50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노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30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노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15

나. 장애의 판정기준

- 1) '심장 기능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심장 이식을 한 경우를 말한다.
- 2) '흉복부장기 또는 비노생식기 기능을 잃었을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
  - 나)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하여 혈액투석, 복막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



- 다) 방광의 저장기능과 배뇨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때
- 3)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위, 대장(결장~직장) 또는 체장의 전부를 잘라내었을 때  
 나) 소장을 3/4 이상 잘라내었을 때 또는 잘라낸 소장의 길이가 3m 이상일 때  
 다) 간장의 3/4 이상을 잘라내었을 때  
 라) 양쪽 고환 또는 양쪽 난소를 모두 잃었을 때
- 4)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한쪽 폐 또는 한쪽 신장을 전부 잘라내었을 때  
 나) 방광 기능상실로 영구적인 요도루, 방광루, 요관 장문합 상태  
 다) 위, 체장을 50% 이상 잘라내었을 때  
 라) 대장절제, 항문 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장루, 인공항문을 설치한 경우(치료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제외)  
 마) 심장기능 이상으로 인공심박동기를 영구적으로 삽입한 경우  
 바) 요도괄약근 등의 기능장애로 영구적으로 인공요도괄약근을 설치한 경우
- 5)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아래의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 가) 방광의 용량이 50cc 이하로 위축되었거나 요도협착, 배뇨기능 상실로 영구적인 간헐적 인공요도가 필요한 때  
 나) 음경의 1/2 이상이 결손되었거나 질구 협착으로 성생활이 불가능한 때  
 다) 폐질환 또는 폐 부분절제술 후 일상생활에서 호흡곤란으로 지속적인 산소치료가 필요하며, 폐기능 검사(PFT)상 폐환기 기능(1초간 노력성 호기량, FEV1)이 정상에 측치의 40% 이하로 저하된 때
- 6) 흉복부, 비뇨생식기계 장애는 질병 또는 외상의 직접 결과로 인한 장애를 말하며, 노화에 의한 기능장애 또는 질병이나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적으로 장기를 절제, 적출한 경우는 장애로 보지 않는다.
- 7) 상기 흉복부 및 비뇨생식기계 장애항목에 명기되지 않은 기타 장애상태에 대해서는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을 때 ADLs 장애 지급률을 준용한다.
- 8) 상기 장애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장기간의 간병이 필요한 만성질환(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은 장애의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13. 신경계·정신행동 장애

#### 가. 장애의 분류

장애의 분류	지급률(%)
1) 신경계에 장애가 남아 일상생활 기본동작에 제한을 남긴 때	10~100
2)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100
3)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75
4)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50
5)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25
6)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10
7) 극심한 치매 : CDR척도 5점	100
8) 심한치매 : CDR척도 4점	80
9) 뚜렷한 치매 : CDR 척도 3점	60
10) 약간의 치매 : CDR 척도 2점	40
11) 심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70
12) 뚜렷한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40
13) 약간의 뇌전증 발작이 남았을 때	10

#### 나. 장애판정기준

- 1) 신경계
- 가) '신경계에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뇌, 척수 및 말초신경계 손상으로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의 5가지 기본동작중 하나 이상의 동작이 제한되었을 때를 말한다.
- 나) 위 가)의 경우 '[붙임]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상 지급률이 10% 미만인 경우에는 보장대상이 되는 장애로 인정하지 않는다.
- 다) 신경계의 장애로 발생하는 다른 신체부위의 장애(눈, 귀, 코, 팔, 다리 등)는 해당 장애로도 평가하고 그 중 높은 지급률을 적용한다.
- 라) 뇌졸중, 뇌손상, 척수 및 신경계의 질환 등은 발병 또는 외상 후 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그러나, 12개월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뚜렷하게 기능 향상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또는 단기간내에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는 6개월의 범위내에서 장애 평가를 유보한다.
- 마) 장애진단 전문의는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로 한다.
- 2) 정신행동
- 가) 정신행동장애는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뇌의 질병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8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의식상실이 1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질병발생 또는 상해를 입은 후 12개월이 경과한 후에 판정할 수 있다.
- 나) 정신행동장애는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충분한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전문적 치료를 받은 후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판정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로써 고정되거나 중하게 된 장애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 다) '정신행동에 극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3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라) '정신행동에 심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GAF 4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마) '정신행동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sup>주)</sup> 상 6개 항목 중 3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5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 주) 능력장애측정기준의 항목 : ㉠ 적절한 음식섭취, ㉡ 대소변관리, 세면, 목욕, 청소 등의 청결 유지, ㉢ 적절한 대화기술 및 협조적인 대인관계, ㉣ 규칙적인 통원·약물 복용, ㉤ 소지품 및 금전관리나 적절한 구매행위, ㉥ 대중교통이나 일반공공시설의 이용
- 바) '정신행동에 약간의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6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사) '정신행동에 경미한 장애를 남긴 때' 라 함은 장애판정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를 받았으며, 보건복지부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의 '능력장애측정기준' 상 6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독립적 수행이 불가능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GAF 70점 이하인 상태를 말한다.
- 아) 지속적인 정신건강의학과와의 치료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 자) 심리학적 평가보고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기관에서 실시되어져야 하며, 자격을 갖춘 임상심리전문가가 시행하고 작성하여야 한다.
- 차) 정신행동장애 진단 전문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한다.
- 카) 정신행동장애는 뇌의 기능 및 결손을 입증할 수 있는 뇌자기공명촬영, 뇌전산화촬영, 뇌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평가한다. 다만, 보호자나 환자의 진술, 감정의 추정 혹은 인정, 한국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신빙성이 적은 검사들(뇌 SPECT 등)은 객관적 근거로 인정하지 않는다.
- 타) 각종 기질성 정신장애와 외상후 뇌전증에 한하여 보상한다.
- 파)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반응성) 등의 질환, 정신분열증(조현병), 편집증, 조울증(양극성장애), 불안장애, 전환장애, 공포장애, 강박장애 등 각종 신경증 및 각종 인격장애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치매

- 가) '치매' 라 함은 정상적으로 성숙한 뇌가 질병이나 외상 후 기질성 손상으로 파괴되어 한번 획득한 지적기능이 지속적 또는 전반적으로 저하되는 것을 말한다.
- 나) 치매의 장애평가는 임상적인 증상 뿐 아니라 뇌영상검사(CT 및 MRI, SPECT 등)를 기초로 진단되어져야 하며, 18개월 이상 지속적인 치료 후 평가한다. 다만, 진단 시점에 이미 극심한 치매 또는 심한 치매로 진행된 경우에는 6개월간 지속적인 치

료 후 평가한다.

- 다) 치매의 장애평가는 전문의(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에 의한 임상치매척도(한국판 Expanded Clinical Dementia Rating) 검사결과에 따른다.

4) 뇌전증

- 가) '뇌전증' 이라 함은 돌발적 뇌파이상을 나타내는 뇌질환으로 발작(경련, 의식장애 등)을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 나)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은 지속적인 항뇌전증제(항경련제) 약물로도 조절되지 않는 뇌전증을 말하며, 진료기록에 기재되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뇌전증 발작의 빈도 및 양상을 기준으로 한다.
- 다) '심한 뇌전증 발작' 이라 함은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발작할 때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구역질, 두통, 인지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 라) '뚜렷한 뇌전증 발작' 이라 함은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마) '약간의 뇌전증 발작' 이라 함은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상태를 말한다.
- 바) '중증발작' 이라 함은 전신경련을 동반하는 발작으로써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쓰러지는 발작 또는 의식장애가 3분 이상 지속되는 발작을 말한다.
- 사) '경증발작' 이라 함은 운동장애가 발생하나 스스로 신체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발작 또는 3분 이내에 정상으로 회복되는 발작을 말한다.

일상생활 기본동작(ADLs) 제한 장애평가표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이동동작	특별한 보조기구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기기를 포함하여 휠체어 이동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40%
	휠체어 또는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밖을 나올 수 없는 상태 또는 보행이 불가능하나 스스로 휠체어를 밀어 이동이 가능한 상태	30%
	목발 또는 보행기(walker)를 사용하지 않으면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	20%
	보조기구 없이 독립적인 보행은 가능하나 보행시 파행(절뚝거림)이 있으며, 난간을 잡지 않고는 계단을 오르고 내리기가 불가능한 상태 또는 평지에서 100m 이상을 걷지 못하는 상태	10%
음식물 섭취	입으로 식사를 전혀 할 수 없어 계속적으로 튜브(비위관 또는 위루관)나 경정맥 수액을 통해 부분 혹은 전적인 영양공급을 받는 상태	20%
	수저 사용이 불가능하여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없이는 식사를 전혀 할 수 없는 상태	15%
	숟가락 사용은 가능하나 젓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음식물 섭취에 있어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독립적인 음식물 섭취는 가능하나 젓가락을 이용하여 생선을 바르거나 음식물을 자르지는 못하는 상태	5%

유형	제한정도	지급률
배변 배뇨	배설을 돕기 위해 설치한 의료장치나 외과적 시술물을 사용함에 있어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지속적인 유치도뇨관 삽입상태, 방광루, 요도루, 장루상태	20%
	화장실에 가서 변기위에 앉는 일(요강을 사용하는 일 포함)과 대소변 후에 뒤처리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간헐적으로 자가 인공도뇨가 가능한 상태(CIC), 기저귀를 이용한 배뇨, 배변 상태	15%
	화장실에 가는 일,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대소변후 뒤처리에 있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빈번하고 불규칙한 배변으로 인해 2시간 이상 계속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 또는 배변, 배뇨는 독립적으로 가능하나 요실금, 변실금이 있는 때	5%
	세안, 양치, 샤워, 목욕 등 모든 개인위생 관리시 타인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목욕	세안, 양치시 부분적인 도움 하에 혼자서 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5%
	세안, 양치와 같은 개인위생관리를 독립적으로 시행가능하나 목욕이나 샤워시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상·하의 의복 착탈시 다른 사람의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	10%
옷입고 벗기	상·하의 의복 착탈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또는 상의 또는 하의중 하나만 혼자서 착탈의가 가능한 상태	5%
	상·하의 의복착탈시 혼자서 가능하나 미세동작(단추 잠그고 풀기, 지퍼 올리고 내리기, 끈 묶고 풀기 등)이 필요한 마무리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3%

[별표2]

**골절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갈비뼈),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대퇴골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3]

**골절(1-5급)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1-5급)’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2. 머리의 으깬손상	S07
3.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늑골(갈비뼈),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6.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7.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8.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9.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48
10. 아래팔의 골절	S52
11.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2. 대퇴골의 골절	S72
13. 둔부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78
14.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5.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6.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7.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8.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9.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20.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4-1]

**골절 등급분류 기준표1**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1-5급)’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급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머리	두개원개의 골절	S02.0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S02.7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02.9
	목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S12.2
		경추의 다발골절	S12.7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12.9
	몸통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1
	기타	다리와 함께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6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골절	T02.8
	2	머리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골절			T02.0
목		제1경추의 골절	S12.0
		제2경추의 골절	S12.1
		목의 기타 부분의 골절	S12.8
몸통		흉추의 골절	S22.0
		늑골(갈비뼈)의 다발골절	S22.4
		동요가슴	S22.5
		장골의 골절	S32.3
		절구의 골절	S32.4
		치골의 골절	S32.5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32.8
팔		상완골 몸통의 골절	S42.3
	상완골 하단의 골절	S42.4	
	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 및 상완골의 다발골절	S42.7	

등급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견갑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42.9
		어깨관절의 외상성 절단	S48.0
		한 쪽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2
	다리	대퇴골 경부의 골절	S72.0
		대퇴골전자부골절	S72.1
		전자하골절	S72.2
		대퇴골 몸통의 골절	S72.3
		대퇴골의 다발골절	S72.7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S72.8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72.9
		엉덩이의 외상성 절단	S78.0
		엉덩이과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S78.1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S78.9
		경골 몸통의 골절	S82.2
		한 쪽 다리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3
	양쪽 다리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5	
	기타	아래등, 골반 및 사지와 함께 흉부를 침범한 골절	T02.7
		상세불명의 다발성 골절	T02.9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3	머리	두개저의 골절
비골(코뼈)의 골절			S02.2
안외바닥의 골절			S02.3
광대뼈 및 상악골(위턱뼈)의 골절			S02.4
하악골(아래턱뼈)의 골절			S02.6
얼굴의 으깬손상			S07.0
두개골의 으깬손상			S07.1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깬손상			S07.8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으깬손상			S07.9
몸통		흉추의 다발골절	S22.1
		흉골의 골절	S22.2
		골성 흉곽의 기타 부분의 골절	S22.8
		골성 흉곽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22.9

등급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4		요추의 골절	S32.0
		천골(薦骨)의 골절	S32.1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S32.7
		아래등 및 골반과 함께 흉부를 침범한 골절	T02.1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폐쇄성	T08.0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개방성	T08.1
	팔	상완골 상단의 골절	S42.2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부분의 골절	S42.8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S48.9
		척골 상단의 골절	S52.0
		척골 몸통의 골절	S52.2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S52.6
		아래팔의 다발골절	S52.7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골절	S52.8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52.9
		중수골의 다발골절	S62.4
		상세불명 부위의 팔 부위의 골절, 폐쇄성	T10.0
		상세불명 부위의 팔 부위의 골절, 개방성	T10.1
	다리	대퇴골 하단의 골절	S72.4
		경골 상단의 골절	S82.1
		경골 하단의 골절	S82.3
		아래다리의 다발골절	S82.7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S82.8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82.9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T12.0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개방성	T12.1
	몸통	늑골(갈비뼈)골절	S22.3
		가슴으깬	S28.0
		미추의 골절	S32.2
		팔	쇄골(빗장뼈)의 골절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S42.1

등급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5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S48.1	
		요골 상단의 골절	S52.1	
		요골 몸통의 골절	S52.3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S52.4	
		요골 하단의 골절	S52.5	
		손 주상골의 골절	S62.0	
		기타 수근골의 골절	S62.1	
		1중수골의 골절	S62.2	
		기타 중수골의 골절	S62.3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62.8	
		다리	무릎뼈의 골절	S82.0
			비골(종아리뼈)만의 골절	S82.4
			안쪽복사의 골절	S82.5
			외측복사의 골절	S82.6
	종골의 골절		S92.0	
	거골의 골절		S92.1	
	기타 족근골의 골절		S92.2	
	중족골의 골절		S92.3	
	엄지발가락의 골절		S92.4	
	발의 다발골절		S92.7	
	발의 상세불명 골절	S92.9		
	머리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팔	엄지손가락의 골절	S62.5
			기타 손가락의 골절	S62.6
			손가락의 다발골절	S62.7
			양쪽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4
			다리	기타 발가락의 골절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4-2]**

**골절 등급분류 기준표2**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골절(1-5급)’로 분류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등급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 번호
1	머리	두개원개의 골절	S02.0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S02.7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02.9
	목	기타 명시된 경추의 골절	S12.2
		경추의 다발골절	S12.7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12.9
	몸통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1
	기타	다리와 함께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6
		기타 신체부위를 복합적으로 침범한 골절	T02.8
	2	머리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목과 함께 머리를 침범한 골절			T02.0
목		제1경추의 골절	S12.0
		제2경추의 골절	S12.1
		목의 기타 부분의 골절	S12.8
몸통		흉추의 골절	S22.0
		늑골(갈비뼈)의 다발골절	S22.4
		동요기슴	S22.5
		장골의 골절	S32.3
		절구의 골절	S32.4
		치골의 골절	S32.5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32.8
팔		상완골 몸통의 골절	S42.3
		상완골 하단의 골절	S42.4
		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 및 상완골의 다발골절	S42.7

등급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 번호	
3		견갑대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42.9	
		어깨관절의 외상성 절단	S48.0	
		한 쪽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2	
	다리	대퇴골 경부의 골절	S72.0	
		대퇴골전자부골절	S72.1	
		전자하골절	S72.2	
		대퇴골 몸통의 골절	S72.3	
		대퇴골의 다발골절	S72.7	
		대퇴골의 기타 부분의 골절	S72.8	
		대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72.9	
		엉덩이의 외상성 절단	S78.0	
		엉덩이과 무릎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S78.1	
		엉덩이 및 대퇴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S78.9	
		경골 몸통의 골절	S82.2	
		한 쪽 다리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3	
		양쪽 다리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5	
		기타	아래등, 골반 및 사지와 함께 흉부를 침범한 골절	T02.7
	상세불명의 다발성 골절		T02.9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T14.2	
	머리	두개저의 골절	S02.1	
		비골(코뼈)의 골절	S02.2	
		안와바닥의 골절	S02.3	
		광대뼈 및 상악골(위턱뼈)의 골절	S02.4	
		하악골(아래턱뼈)의 골절	S02.6	
		얼굴의 으깬손상	S07.0	
		두개골의 으깬손상	S07.1	
		머리의 기타 부분의 으깬손상	S07.8	
		머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으깬손상	S07.9	
		몸통	흉추의 다발골절	S22.1
			흉골의 골절	S22.2
골성 흉곽의 기타 부분의 골절			S22.8	
골성 흉곽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22.9			

등급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 번호	
4		요추의 골절	S32.0	
		천골(薦骨)의 골절	S32.1	
		요추 및 골반의 다발골절	S32.7	
		아래등 및 골반과 함께 흉부를 침범한 골절	T02.1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폐쇄성	T08.0	
		상세불명 부위의 척추의 골절, 개방성	T08.1	
	팔	상완골 상단의 골절	S42.2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부분의 골절	S42.8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S48.9	
		척골 상단의 골절	S52.0	
		척골 몸통의 골절	S52.2	
		척골과 요골 모두의 하단의 골절	S52.6	
		아래팔의 다발골절	S52.7	
		아래팔의 기타 부분의 골절	S52.8	
		아래팔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52.9	
		중수골의 다발골절	S62.4	
		상세불명 부위의 팔 부위의 골절, 폐쇄성	T10.0	
		상세불명 부위의 팔 부위의 골절, 개방성	T10.1	
		다리	대퇴골 하단의 골절	S72.4
			경골 상단의 골절	S82.1
	경골 하단의 골절		S82.3	
	아래다리의 다발골절		S82.7	
	아래다리의 기타 부분의 골절		S82.8	
	아래다리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82.9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폐쇄성		T12.0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개방성		T12.1	
	몸통	늑골(갈비뼈)골절	S22.3	
		가슴으깬	S28.0	
		미추의 골절	S32.2	
		팔	쇄골(빗장뼈)의 골절	S42.0
			견갑골(어깨뼈)의 골절	S42.1
			어깨와 팔꿈치 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S48.1



등급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 번호
5		요골 상단의 골절	S52.1
		요골 몸통의 골절	S52.3
		척골과 요골 모두의 몸통 골절	S52.4
		요골 하단의 골절	S52.5
		손 주상골의 골절	S62.0
		기타 수근골의 골절	S62.1
		1중수골의 골절	S62.2
		기타 중수골의 골절	S62.3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62.8
	다리	무릎뼈의 골절	S82.0
		비골(종아리뼈)만의 골절	S82.4
		안쪽복사의 골절	S82.5
		외측복사의 골절	S82.6
		종골의 골절	S92.0
		거골의 골절	S92.1
		기타 족근골의 골절	S92.2
		중족골의 골절	S92.3
		엄지발가락의 골절	S92.4
		발의 다발골절	S92.7
	발의 상세불명 골절	S92.9	
	머리	치아의 파절	S02.5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09.9
	팔	엄지손가락의 골절	S62.5
		기타 손가락의 골절	S62.6
		손가락의 다발골절	S62.7
		양쪽 팔의 여러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4
	다리	기타 발가락의 골절	S92.5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5]

**5대골절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5대골절'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머리의 으깬손상	S07
2. 목의 골절	S12
3. 흉추의 골절 및 흉추의 다발골절	S22.0 - 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5. 대퇴골의 골절	S72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6]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추, 흉추 및 요추 골절'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목의 골절	S12
2. 흉추의 골절	S22.0
3. 흉추의 다발골절	S22.1
4.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7]

화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화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8]

의료기관의 시설규격

다음의 시설규격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4조(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는 별표4에 따르며, 법령의 변경으로 변경 또는 추가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1. 입원실
  - 가. 입원실은 3층 이상 또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하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내화구조(耐火構造)인 경우에는 3층 이상에 설치할 수 있다.
  - 나. 입원실의 면적(벽·기둥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다)은 환자 1명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1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고(면적의 측정 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산정 방법에 따른다. 이하 같다) 환자 2명 이상을 수용하는 곳인 경우에는 환자 1명에 대하여 6.3제곱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다. 삭제 <2017. 2. 3.>
  - 라. 입원실에 설치하는 병상 수는 최대 4병상(요양병원의 경우에는 6병상)으로 한다. 이 경우 각 병상 간 이격거리는 최소 1.5미터 이상으로 한다.
  - 마. 입원실에는 손씻기 시설 및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바.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실(前室) 및 음압시설(陰壓施設: 방 안의 기압을 낮춰 내부 공기가 방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드는 설비) 등을 갖춘 1인 병실(이하 "음압격리병실"이라 한다)을 1개 이상 설치하되, 300병상을 기준으로 100병상 초과할 때 마다 1개의 음압격리병실을 추가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카목에 따라 중환자실에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입원실에 설치한 것으로 본다.
  - 사. 병상이 300개 이상인 요양병원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화장실 및 세면시설을 갖춘 격리병실을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 아. 산모가 있는 입원실에는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 감염병환자등의 입원실은 다른 사람이나 외부에 대하여 감염예방을 위한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중환자실
  - 가. 병상이 300개 이상인 종합병원은 입원실 병상 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중환자실 병상으로 만들어야 한다.
  - 나. 중환자실은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별도의 단위로 독립되어야 하며, 무정전(無停電)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다. 중환자실의 의사당직실은 중환자실 내 또는 중환자실과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 라. 병상 1개당 면적은 15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생아만을 전담하는 중환자실(이하 "신생아중환자실"이라 한다)의 병상 1개당 면적은 5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병상 1개당 면적"은 중환자실 내 간호사실, 당직실, 청소실, 기기창고, 청결실, 오물실, 린넨보관실을 제외한 환자 점유 공간[중환자실 내에 있는 간호사 스테이션(station)과 복도는 병상 면적에 포함한다]을 병상 수로 나눈 면적을 말한다.
- 마. 병상마다 중앙공급식 의료가스시설, 심전도모니터, 맥박산소계측기, 지속적수액주입기를 갖추고, 병상 수의 10퍼센트 이상 개수의 침습적 동맥혈압모니터, 병상 수의 30퍼센트 이상 개수의 인공호흡기, 병상 수의 70퍼센트 이상 개수의 보육기(신생아중환자실에만 해당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 바. 중환자실 1개 단위(Unit)당 후두경, 앰부백(마스크 포함), 심전도기록기, 제세동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의 경우에는 제세동기 대신 광선기와 집중치료를 갖추어야 한다.
- 사. 중환자실에는 전담의사를 둘 수 있다. 다만, 신생아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아. 전담간호사를 두되, 간호사 1명당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는 1.2명(신생아 중환자실의 경우에는 1.5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자. 중환자실에 설치하는 병상은 벽으로부터 최소 1.2미터 이상, 다른 병상으로부터 최소 2미터 이상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차. 중환자실에는 병상 3개당 1개 이상의 손씻기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 카. 중환자실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병상 10개당 1개 이상의 격리병실 또는 음압격리병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음압격리병실은 최소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9]**

**심한상해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한상해'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뇌신경의 손상	S04
2. 두개내손상	S06
3.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4.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5. 심장의 손상	S26
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7
7.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8.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9. 복강내기관의 손상	S36
10.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11.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44
12.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54
13.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S64
1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S74
15.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S84
16.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S94
17. 기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 및 척수의 손상	T06.1
1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신경의 손상	T06.2
19. 복부내 및 골반 기관을 포함한 흉곽내기관의 손상	T06.5
20. 척수의 상세불명 부위의 손상	T09.3
21. 몸통의 상세불명의 신경, 척추신경근 및 척추 신경총의 손상	T09.4
2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T11.3
23.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신경의 손상	T13.3
24.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신경손상	T14.4
25. 절단잘린끝의 신경종	T87.3
26. 척수손상의 후유증	T91.3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0】**

**중대한 특정상해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특정상해’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뇌손상	두개내 손상	S06
내장손상	심장의 손상	S26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손상	S27
	복강내기관의 손상	S36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1]

**악성신생물(암)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악성신생물(암)’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00-C14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C26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0-C39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3-C44
6. 종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C49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1-C58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4-C68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69-C72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3-C75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76-C80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C97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5
17. 골수형성이상 증후군	D46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1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증가증	D47.3
20. 골수섬유증	D47.4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

침’ 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

**간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간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바이러스 간염	B15 ~ B19
2. 간의 질환	K70 ~ K77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간질환’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간질환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간장애	K77.0*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B25.1+
		톡소포자충간염	B58.1+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3]

**26대질병 II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26대질병 II’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중증근무력증	중증근무력증 및 기타 근신경장애	G70
안와장애	안와의 장애	H05
유리체의 장애	유리체의 장애	H43
하지정맥류	하지의 정맥류 임신중 하지의 정맥류성 정맥 산후기중 기타 정맥합병증	I83 O22.0 O87.8
과민대장증후군	과민대장증후군	K58
치열 및 치루	항문 및 직장부의 열창 및 누공 항문 및 직장부의 농양 항문 및 직장의 기타 질환	K60 K61 K62
전신결함조직 장애 II	전신홍반루푸스 피부다발균염 전신경화증	M32 M33 M34
골수염 및 골괴사증	골수염 골괴사	M86 M87
뼈의 파열병 및 뼈의기타장애	뼈의 파열병[변형성 골염] 뼈의 기타 장애	M88 M89
연골병증	고관절 및 골반의 연소성 골연골증 기타 연소성 골연골증	M91 M92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골연골병증 연골의 기타 장애	M93 M94
신장 및 요관의 결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요도결석증	요도결석 기타 하부요로결석 상세불명의 하부요로결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1.1 N21.8 N21.9 N22
다한증	다한증	R61
눈및부속기관의 양성종양	눈 및 부속기의 양성 신생물	D31
수면무호흡증	수면무호흡	G47.3
결막장애	결막염 결막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결막의 장애	H10 H11 H13
외이의 질환	외이염 외이의 기타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외이의 장애	H60 H61 H62
림프절염	비특이성 림프절염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I88 I89
대상포진	대상포진	B02
급성기관지염	급성 기관지염	J20
급성 세기관지염	급성 세기관지염	J21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I80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2
식도정맥류	식도정맥류	I85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후각특정질환 II	코 및 비동의 기타장애	J34
유방의장애 II	유방의 비대	N62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4]

제자리신생물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제자리신생물’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3.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4. 제자리흑색종	D03
5.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6.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7.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경계성종양’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7.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10. 미결정의 단클론감마글로불린병증	D47.2
11.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2.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1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6]

**고액치료비암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액치료비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 1. 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70-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 뇌의 악성신생물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5.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C96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96
6. 만성 골수증식질환,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1, D47.5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

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7]

여성특정암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특정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유방의 악성신생물	C50
2. 외음의 악성신생물	C51
3. 질의 악성신생물	C52
4. 자궁경부의 악성신생물	C53
5. 자궁체부의 악성신생물	C54
6.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5
7. 난소의 악성신생물	C56
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57
9. 태반의 악성신생물	C58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8]

남성생식기암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남성생식기암’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음경의 악성신생물	C60
2. 전립선의 악성신생물	C61
3. 고환의 악성신생물	C62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3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합니다.
-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9]

**양성뇌종양 분류표**

- 가.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생명에 치명적이며 암이 아닌 뇌에 발생한 병리조직학적 양성뇌종양을 말하며 뇌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두개내(머리내)의 종양을 포함합니다.
- 나. 위 가.의 양성뇌종양은 신경외과적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거나,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함의 원인이(수술로 인해) 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다. 낭종, 육아종, 혈종, 뇌농양, 뇌의 정맥기형 또는 동맥기형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 라. 양성뇌종양의 진단확정은 신경과 의사 또는 신경외과 의사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 신경학적검사상 객관적인 이상소견(Sign)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조직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별표20]

**뇌출혈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출혈’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I60
2. 뇌내출혈	I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I62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1]

**뇌졸중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2]

**뇌혈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혈관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 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7.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8. 기타 뇌혈관 질환	167
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1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3]

**급성심근경색증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성심근경색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심근경색증	I21
2. 후속심근경색증	I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4]

**허혈심장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허혈심장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I20
2. 급성심근경색증	I21
3. 후속심근경색증	I22
4.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3
5.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4
6. 만성 허혈심장병	I25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5]

**급성신우신염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성신우신염’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급성신우신염	급성세뇨관-간질신장염	N10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6]

**말기폐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말기폐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인플루엔자 및 폐렴	J09 - J18
2. 기타 급성 하기도 감염	J20 - J22
3.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J40 - J47
4.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 - J70
5. 주로 간질에 영향을 주는 기타 호흡기 질환	J80 - J84
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 - J86
7. 흉막의 기타 질환	J90 - J94
8. 호흡계통의 기타 질환	J95 - J99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말기폐질환’의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 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말기폐질환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폐렴	J17.1*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수두폐렴	B01.2+
기생충질환에서의 폐렴	J17.3*	폐톡소포자충증	B58.3+
류마티스 폐질환	J99.0*	류마티스 폐질환	M05.1+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7]**

**말기신부전증 분류표**

말기 신부전증이라 함은 양쪽 신장 모두가 비가역적 기능부전을 보이는 만성 콩팥병(End Stage Renal Disease)으로서 만성 신장질환(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N18)에 해당하는 질병 중에서 보전요법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정기적인 신장투석요법(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거나 받은 경우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투석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부전증은 보장에서 제외합니다.

[별표28]

**만성당뇨합병증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만성당뇨합병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형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0.2+
	· 눈 합병증을 동반	E10.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0.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0.5
2형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1.2+
	· 눈 합병증을 동반	E11.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1.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1.5
영양실조-관련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2.2+
	· 눈 합병증을 동반	E12.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2.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2.5
기타 명시된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3.2+
	· 눈 합병증을 동반	E13.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3.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3.5
상세불명의 당뇨병	· 신장 합병증을 동반	E14.2+
	· 눈 합병증을 동반	E14.3+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	E14.4+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	E14.5
기타 당뇨병성 합병증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 당뇨병성 백내장	H28.0
	·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29]

**특정감염병 분류표**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감염병’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감염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 - 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리증	A03.9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 - 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볼거리	B26
15. 탄저병	A22
16. 브루셀라병	A23
17. 렙토스피라병	A27
18. 성홍열	A38
19. 수막알균 수막염	A39.0 †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5
21. 레지오넬라병, 비페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악열]	A48.1 - A48.2
22. 발진티푸스	A75
23. 광견병	A82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A98.5
25. 말라리아	B50 - B54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별표30]

대상포진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상포진’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포진	B02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31]

대상포진눈병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상포진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포진눈병	B02.3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32]

**통풍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통풍’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통풍	M10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33]

**당뇨병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당뇨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1형 당뇨병	E10
2. 2형 당뇨병	E11
3. 영양실조와 관련된 당뇨병	E12
4.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5. 상세 불명의 당뇨병	E14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34]

**결핵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결핵’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세균학적 및 조직학적으로 확인된 호흡기 결핵	A15
2. 세균학적으로나 조직학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호흡기 결핵	A16
3. 신경계통의 결핵	A17
4. 기타 기관의 결핵	A18
5. 좁쌀 결핵	A19
6. 다약제내성결핵	U84.30
7. 광범위약제내성결핵	U84.31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결핵’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결핵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뼈 및 관절의 결핵	A18.0+	결핵 관절염	M01.1*
		척추의 결핵	M49.0*

결핵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뼈의 결핵	M90.0*
비노생식계통의 결핵	A18.1+	결핵성 방광염	N33.0*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N74.1*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A18.3+	결핵성 복막염	K67.3*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K93.0*



[별표35]

**특정감염병 II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감염병 II’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콜레라	A00
2. 장티푸스	A01.0
3. 파라티푸스	A01.1 - A01.4
4. 상세불명의 시겔라증	A03.9
5. 장 출혈성 대장균 감염	A04.3
6. 페스트	A20
7. 파상풍	A33 - A35
8. 디프테리아	A36
9. 백일해	A37
10. 급성 회색질척수염	A80
11. 일본뇌염	A83.0
12. 홍역	B05
13. 풍진	B06
14. 볼거리	B26
15. 탄저병	A22
16. 브루셀라병	A23
17. 렘토스피라병	A27
18. 성홍열	A38
19. 수막알균 수막염	A39.0
20.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A41.5
21. 레지오넬라병, 비페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A48.1 - A48.2
22. 발진티푸스	A75
23. 광견병	A82
24. 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A98.5
25. 말라리아	B50 - B54
26.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U07.1
27. 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U04.9
28.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B34.20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36]

**1-5종수술 III 분류표**

**I.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b>피부, 유방의 수술</b>	1. 피부이식수술(25cm <sup>2</sup> 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 <sup>2</sup> 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3-1.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제자리암, 경계성종양)	3
	3-2. 기타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2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질병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otomy)는 수술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b>근골(筋骨)의 수술</b>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치근(齒根)·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코뼈)·비중격(鼻中隔)·상악골(위턱뼈)·하악골(아래턱뼈)·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7. 비골(코뼈)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제외]	1
	8. 상악골(위턱뼈), 하악골(아래턱뼈),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 늑골(갈비뼈), 흉골(胸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b>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b>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b>순환기계, 비장(脾臟)의 수술</b>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臟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臟) 절제수술	3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胰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총수(蟲垂)절제술(총수염관련 총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
비뇨기계·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함)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비뇨기계·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함)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辜丸), 부고환(副辜丸), 정관(精管), 정삭(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내분비기계의 수술	55. 질탈(腔脫)근본수술	1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신경계의 수술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눈꺼풀처짐증)수술(안검내반증 포함)	1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피부를 통한)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	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주)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 II.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단, 기타피부암(C44)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피부를 통한)적 수술 등은 제외함]	5
1-1. 기타피부암(C44)	3
2. 내시경 수술, 카테터 · 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혈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혈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III.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명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㉞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수술III 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함)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III분류표> 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회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수술III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수술III분류표> 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1) <1-5종수술III분류표> 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

- 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수술III분류표> 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피부를 통한)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수술III분류표> 중 '일반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되는 가는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써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⑦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별표37]

**특정질병(남성)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남성)’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	고혈압성 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이차성 고혈압	I10 I11 I12 I13 I15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I67.4 H35.0
당뇨병	당뇨병 질환 <sup>주)</sup>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관절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 - I69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간 질환	바이러스 간염 간의 질환	B15 - B19 K70 - K77
만성 하부호흡기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J40 J41 J42 J45 J46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5 K26 K27

- 주)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특정질병(남성)’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정질병(남성)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칸디다심내막염	B37.6+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간장애	K77.0*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B25.1+
		톡소포자충간염	B58.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주)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I32.0-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38]

특정질병(여성)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여성)’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	고혈압성 질환	I10 I11 I12 I13 I15
	고혈압성 합병증	I67.4 H35.0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당뇨병	당뇨병 질환 <sup>주)</sup>	E10 E11 E12 E13 E14
	당뇨병성 합병증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I00 - I02 I05 - I09 I20 - I25 I26 - I28 I30 - I52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I60 - I69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5 K26 K27
신부전	신부전	N17 - N19

- 주)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항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특정질병(여성)'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특정질병(여성)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9.8*	칸디다심내막염	B37.6+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132.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9.8*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	141.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	152.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특정질병(여성)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주) 132.0-1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132.0-1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39]

**비급여대상**

다음의 비급여대상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비급여대상) 제1항에서 정하는 별표2에 따르며, 법령 변경시 변경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1. 다음 각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 나. 주근깨·다모(多毛)·무모(無毛)·백모증(白毛症)·말기코(주사비)·점(모반)·사마귀·여드름·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다. 발기부전(impotence)·불감증 또는 생기기 선천성기형 등의 비뇨생식기 질환
  - 라. 단순 고골음
  - 마. 질병을 동반하지 아니한 단순포경(phimosis)
  - 바. 검열반 등 안과질환
  - 사. 기타 가목 내지 바목에 상당하는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
2. 다음 각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코성형수술(용비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나. 사시교정,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로써 시력개선의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
  - 다. 치과교정. 다만, 입술입천장갈림증(구순구개열)을 치료하기 위한 치과교정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턱얼굴(악안면) 교정술
  - 마.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반흔(흉터)구축성형술 등 외모개선 목적의 반흔(흉터)제거술
  - 바. 안경, 콘택트렌즈 등을 대체하기 위한 시력교정술
  - 사. 질병 치료가 아닌 단순히 키 성장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상당하는 외모개선 목적의 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진료
3. 다음 각목의 예방진료로서 질병·부상의 진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본인의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가입자들에게 실시하는 건강검진 제외)
  - 나. 예방접종(파상풍 혈청주사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예방주사 제외)
  - 다.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 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증

- 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다만,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전체 치석제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라. 볼소부분도포,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등 치아우식증(충치) 예방을 위한 진료. 다만, 18세 이하인 사람의 치아 중 치아우식증(충치)이 생기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 또는 제2큰어금니에 대한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은 제외한다.
  - 마. 멀미 예방, 금연 등을 위한 진료
  - 바. 유전성질환 등 태아 또는 배아의 이상유무를 진단하기 위한 유전학적 검사
  - 사. 장애인 진단서 등 각종 증명서 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료
  - 아. 기타 가목 내지 마목에 상당하는 예방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예방진료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 가. 가입자 등이 다음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1개의 입원실에 1인(「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 및 제3호나목에 따른 치과병원의 경우 3인 이하)이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하 "상급병상"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따라 제8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대상인 입원료(이하 "입원료"라 한다)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만, 상급종합병원 및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은 제외한다)의 상급병상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입원료를 포함한 입원실 이용비용 전액(다만, 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 (1) 의료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병상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이하 "일반병상"이라 한다)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운영하는 경우. 다만, 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일반병상 및 상급병상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 (가) 의료법령에 따라 신고한 병상이 10병상을 초과하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의 의원급 의료기관, 같은 항 제3호나목의 치과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지정 받은 산부인과 또는 주산기(周産期) 전문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2분의 1 이상 확보할 것
        -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치과병원을 제외한다):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3 이상 확보할 것
        -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나목의 종합병원 및 같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지정 받은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분의 4 이상 확보할 것
      - (2) 의료법령에 의하여 신고한 병상이 10병상 이하인 경우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
      - (1) 가입자등이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

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중 입원실 이용비용을 입원료만으로 산정하는 일반병상(규칙 제1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요양기관 현황신고서 또는 요양기관 현황 변경신고서 상의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특수진료실 및 중환자실과 「의료법」 제2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위한 전용 병실 및 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을 50퍼센트 이상 확보하여 운영하는 요양병원에서 1개의 입원실에 5인 이하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을 이용하는 경우: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2) 가입자등이 가목(1)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중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1인실 병상을 이용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받는 경우(격리치료 대상인 환자가 1인실에 입원하는 경우, 임종실을 이용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고시한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실의 입원료 중 4인실 입원료 외에 추가로 부담하는 입원실 이용 비용

다.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라. 삭제 <2017. 9. 1.>

마. 친자확인을 위한 진단

바. 치과의 보철(보철재료 및 가공료 등을 포함한다) 및 치과임플란트를 목적으로 실시한 부가수술(골이식수술 등을 포함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는 제외한다.

사. 및 아. 삭제 <2002.10.24>

자. 이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에 관한 급여목록표에서 정한 일반의약품으로서 「약사법」 제23조에 따른 조제에 의하지 아니하고 지급하는 약제

차. 삭제 <2006.12.29>

카. 삭제 <2018. 12. 31.>

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이식을 위하여 다른 의료기관에서 채취한 골수 등 장기의 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마약류중독자의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하. 이 규칙 제11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3조의4에 따른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전성·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만, 제11조제9항 또는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소급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되는 행위·치료재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한다)는 제

외한다.

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8항제2호에 따른 제한적 의료기술

너.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의료기기를 장기이식 또는 조직 이식에 사용하는 의료행위

더. 그 밖에 요양급여를 함에 있어서 비용효과성 등 진료상의 경제성이 불분명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또는 치료재료

5. 삭제 <2006.12.29>

6.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한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4호(제4호 하목을 제외한다), 제7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아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

나. 질병군 진료 외의 목적으로 투여된 약제

6의2. 영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호스피스·완화의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나목(2)·더머에 해당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다만, 제2호사목, 제3호아목 및 제4호더머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및 치료재료에 한정한다.

7. 건강보험제도의 여건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방물리요법

나. 한약첩약 및 기상한의서의 처방 등을 근거로 한 한방생약제제

8. 약사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약제를 처방·투여하려는 자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의학적 근거 등을 입증하여 비급여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공고에 따른다.

[별표40]

시각질환(백내장, 녹내장)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시각질환(백내장, 녹내장)’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백내장	노년 백내장	H25
	기타 백내장	H26
	수정체의 기타 장애	H27
2. 녹내장	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1]

치핵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치핵’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치핵 및 항문주위정맥혈전증 포함 - 치질 제외 - 출산 및 산후기 합병(087.2), 임신 합병(022.4)	K64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2]

총수염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총수염’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총수의 질환	K35 - K38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3]

탈장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탈장’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사타구니 탈장	K40
2. 대퇴 탈장	K41
3. 배꼽 탈장	K42
4. 복부 탈장	K43
5. 기타 복부 탈장	K45
6. 상세불명의 복부 탈장	K46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4]

추간판장애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추간판장애’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경추간판장애	M50
2. 기타 추간판장애	M51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추간판장애’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척추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경추간판장애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0-M51+	추간판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1*

[별표45]

심뇌혈관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뇌혈관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3. 허혈성 심장질환	I20-I25
4.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5.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6. 뇌혈관질환	I60-I69
7. 칸디다심내막염	B37.6
8. 수막알균성 심장병	A39.5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6]

**당뇨고혈압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당뇨고혈압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	고혈압성 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고혈압성 심장병 고혈압성 신장병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이차성 고혈압	I10 I11 I12 I13 I15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I67.4 H35.0
당뇨병	당뇨병 질환 <sup>주)</sup>	1형 당뇨병 2형 당뇨병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기타 명시된 당뇨병 상세불명의 당뇨병	E10 E11 E12 E13 E14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당뇨병성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병증 당뇨병성 관절병증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G59.0 G63.2 H28.0 H36.0 M14.2 N08.3

주)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47]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사구체 질환	급성 신염 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 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 증후군	N03
	신 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 증후군	N05
	명시된 형태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
신세뇨관-간질질환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폐쇄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성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4
	기타 신세뇨관-간질 질환	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세뇨관-간질 장애	N16	
신부전	급성 신부전	N17
	만성 콩팥병	N18
	상세불명의 신부전	N19
요로결석증	신장 및 요관의 결석	N20
	하부 요로의 결석	N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로의 결석	N22
	상세불명의 신장 급통증	N23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신세뇨관 기능 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 위축	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방광염	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 기능 장애	N31
	방광의 기타 장애	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 장애	N3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 장애	N37
남성 생식기관의 질환	전립선증식증	N40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1
	전립선의 기타 장애	N42
	음낭수종 및 정액류	N43
	고환의 염전	N44
	고환염 및 부고환염	N45
	달리 분류되지 않은 남성 생식기관의 염증성 장애	N49
	남성 생식기관의 기타 장애	N5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 생식기관의 장애	N51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남성특정질병비뇨기계질환’ 중 일부는 원인적 질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검표코드(원인코드)로 동시 진단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원인질환코드(검표코드)만 명기된 경우는 보상하지 않으며, 반드시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별표코드)가 병기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아래의 검표코드로만 진단받은 경우 검표코드 왼쪽의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별표코드와 동시 부여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별표코드(증상코드, *)		원인질병에 따른 병행코드 검표코드(원인코드,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분류된감염성및기생충 성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N08.0	말라리아 원충 말라리아에서의 사구체 장애	B52.0
		볼거리에서의 사구체 장애	B26.8
		주혈흡충증[빌하르츠주혈흡충증]에서의 사구체장애	B65
		패혈증에서의 사구체 장애	A40-41
		분선충증에서의 사구체 장애	B78
		매독에서의 사구체 장애	A52.7
신생물 질환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1	다발성 골수종에서의 사구체 장애	C90.0
		알덴스트림 마크로콜로블린 혈증에서의 사구체 장애	C88.0
혈액 질환 및 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 장애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2	한랭글로불린혈증에서의 사구체 장애	D89.1
		파중성혈관내응고병[탈피브린증후군]에서의사구체장애	D65
		용혈-요독증후군에서의사구체장애	D59.3
		헤노흐[-선라인]자반에서의사구체장애	D69.0
		낮적혈구 장애에서의 사구체 장애	D57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별표코드(증상코드, *)		원인질병에 따른 병행코드 검표코드(원인코드,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3	당뇨병에서의 사구체 장애	E10-14
기타내분비, 영양및대사질 환에서의사구체장애	N08.4	아밀로이드증에서의 사구체 장애	E85
		파브리(-앤더슨)병에서의사구체장애	E75.2
		레시틴 콜레스테롤 아실전이효소 결핍에서의 사구체 장애	E78.6
전신 결합조직 장애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5	굿파스처증후군에서의 사구체 장애	M31.0
		현미경적 다발혈관염에서의 사구체 장애	M31.7
		전신성 홍반루푸스에서의 사구체 장애	M32.1
		혈전성 혈소판감소자반에서의 사구체 장애	M31.1
		베게너육아종증에서의 사구체 장애	M31.3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사구체 장애	N08.8
달리분류된감염성및기생충 성질환에서의세뇨관-간질 장애	N16.0	브루셀라(에의한)(에서)세뇨관-간질장애	A23
		디프테리아(에의한)(에서)세뇨관-간질장애	A36.8
		살모넬라감염(에의한)(에서)세뇨관-간질장애	A02.2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별표코드(증상코드, *)		원인질병에 따른 병행코드 검표코드(원인코드,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분류된감염성및기생충 성질환에서의세뇨관-간질 장애	N16.0	패혈증(에의한)(에서)세뇨관-간질장애	A40-41
		독소포자충증(에의한)(에서)세뇨관-간 질장애	B58.8
신생물질환에서의세뇨관- 간질장애	N16.1	백혈병에서의세뇨관-간질장애	C91-95
		림프종에서의세뇨관-간질장애	C81-85 C96
		다발성골수종에서의세뇨관-간질장애	C90.0
혈액질환및면역메커니즘을 침범한장애에서의세뇨관- 간질장애	N16.2	혼합성항글로불린혈증에서의세뇨관- 간질장애	D89.1
		사르코이드증에서의세뇨관-간질장애	D86
대사질환에서의세뇨관-간 질장애	N16.3	시스틴증에서의세뇨관-간질장애	E72.0
		글리코젠축적증에서의세뇨관-간질장애	E74.0
		윌슨병에서의세뇨관-간질장애	E83.0
전신결합조직장애에서의세 뇨관-간질장애	N16.4	건성증후군[슈그렌]에서의세뇨관-간질 장애	M35.0
		전신성홍반루푸스에서의세뇨관-간질장 애	M32.1
이식거부에서의세뇨관-간 질장애	N16.5	이식거부에서의세뇨관-간질장애	T86
주혈흡충증에서의 요결석	N22.0	주혈흡충증에서의 요결석	B65
신장의 만기매독	N29.0	신장의 만기매독	A52.7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별표코드(증상코드, *)		원인질병에 따른 병행코드 검표코드(원인코드,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1	주혈흡충증[빌하르츠주혈흡충증]에서의 신장및요관의장애	B65
		결핵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장애	A18.10
달리분류된기타질환에서의 신장및요관의기타장애	N29.8	시스틴축적병	E72.0
결핵성 방광염	N33.0	결핵성 방광염	A18.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방광 장애	N33.8	주혈흡충증[방광주혈흡충증]에서의방광 장애	B6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요도염	N37.0	칸디다요도염	B3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	N51.0	임균 전립선염	A54.2
		편모충 전립선염	A59.0
		결핵 전립선염	A18.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	N51.1	클라미디아 부고환염	A56.1
		클라미디아 고환염	A56.1
		임균성 부고환염	A54.2
		임균성 고환염	A54.2
		불거리 고환염	B26.0
		부고환의 결핵	A18.1
		고환의 결핵	A18.1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별표코드(증상코드,*)		원인질병에 따른 병행코드 검표코드(원인코드, †)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귀두염	N51.2	아메바귀두염	A06.8
		칸디다귀두염	B37.4
기타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남성 생식기관의 장애	N51.8	고환초막의 사상충성 유미류	B74
		남성생식로의헤르페스바이러스성[단순 헤르페스]감염	A60.0
		정낭의 결핵	A18.1

※ 검표코드(†): 원인이 되는 질환에 관한 질병분류코드

※ 별표코드(\*): 원인(검표코드)으로 인한 발현증세에 대한 질병분류코드

검표코드(†)와 별표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따라 상기와 같이 정의되며, 원인과 질환에 따라 병행하여 동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즉, 별표코드는 검표코드의 추가적인 질병분류번호로서, 다양한 원인 질환(검표코드)과 병행될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남성특정질병비뇨기계질환'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	N51.0*	편모충성 전립선염	A59.08+
		결핵 전립선염	A18.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	N51.1*	불거리고환염	B26.0+
		부고환의 결핵	A18.14+

주) N51.0~N51.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14+도 보장합니다.  
즉, N51.0~N51.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14+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48]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이란 유방의 악성신생물(C50)로 인한 유방수술로서 다음의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에 의한 수술 및 처치코드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수술	수술 및 처치코드
유방수술	85
※ 단, 아래 의료 행위는 제외	
- 유방의 진단적 처치	(85.1)
- 유방의 흡인	(85.91)
- 유방내 치료약물의 주입	(85.92)

국제의료행위 분류표(ICD.9-CM)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국제의료행위 분류표를 따릅니다.

[별표49]

**간경변증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간경변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알코올성 간성유증 및 간의 경화증	K70.2
2. 알코올성 간경변증	K70.3
3. 간의 섬유증 및 경화증을 동반한 독성간질환	K71.7
4. 간의 섬유증 및 경변증	K74
5. 간의 만성 수동울혈(심장성 간경화증)	K76.1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50]

만성특정폐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만성특정폐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2. 단순성및점액화농성만성기관지염	J41
3. 상세불명의만성기관지염	J42
4. 폐기종	J43
5. 기타만성폐쇄성폐질환	J44
6. 기관지확장증	J47
7. 외부요인에 의한 폐질환	J60 - J70
8.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0
9. 폐부종	J81
10.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4
11.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호흡부전	J96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51]

여성생식기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생식기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N70 - N77
2.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N80 - N95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뇨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99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여성생식기질환’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성생식기질환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여성생식기관의 결핵	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	N74.1*		

N74.0~N74.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17+도 보장합니다.  
 즉, N74.0.0~N74.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17+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52]**

**요실금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요실금’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스트레스 요실금	N39.3
2. 기타 명시된 요실금	N39.4
3. 상세불명의 요실금	R32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53]

요실금수술 대상 추가코드

약관에 규정하는 '요실금수술' 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10호, 2017.7.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추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용	추가코드
요실금수술-개복에 의한 수술	R3562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 수술-자가근막을 이용한 경우(근막채취료 포함)	R3564
요실금수술-질강을 통한수술-기타의 경우	R3565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에 따라 추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요실금수술' 에 준하여 '요실금수술 추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별표54]

24대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24대질병'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100 ~ 102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105 ~ 109
	허혈심장질환	120 ~ 1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126 ~ 1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130 ~ 152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160 ~ 169
간 질환	바이러스 감염	B15 ~ B19
	간의 질환	K70 ~ K77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위궤양	K25
	십이지장궤양	K26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27
동맥경화증	죽상경화증	I70
만성 하부호흡기 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0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J41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J42
	천식	J45
	천식지속상태	J46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폐 령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레지오넬라병	A48.1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녹 내 장	녹내장	H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42
결 핵	결핵	A15 ~ A19
	결핵의 후유증	B90
신 부 전	신부전	N17 ~ N19
패혈증	연쇄알균패혈증	A40
	기타 패혈증	A41
중추신경계 통의 염증성질환 (수막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0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3
중추신경계 통의 염증성질환 (뇌및척수의 염증성질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 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8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09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다발경화증	다발경화증	G35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자율신경계 통의 장애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0
대동맥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폐질환	폐기종	J43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4
	기관지확장증	J47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85-J86
	흉막의 기타 질환	J90-J94
급성 체장염	급성 체장염	K85
체장질환	체장의 기타 질환	K8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담낭, 담도 및 체장의 장애	K87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뇌성마비	뇌성마비	G80
수두증	수두증	G91
버거씨병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24대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4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뼈 및 관절의 결핵	A18.0+	결핵 관절염	M01.1*
		척추의 결핵	M49.0*
		뼈의 결핵	M90.0*
비뇨생식계의 결핵	A18.1+	결핵성 방광염	N33.0*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N74.1*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A18.3+	결핵성 복막염	K67.3*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K93.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칸디다심내막염	B37.6+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폐렴	J17.1*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수두폐렴	B01.2+
톡소포자충증에서의 폐렴	J17.3*	폐톡소포자충증	B58.3+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간장애	K77.0*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B25.1+
		톡소포자충간염	B58.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0* <sup>주1)</sup>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I39.8* <sup>주1)</sup>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24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0* <sup>주1)</sup>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0* <sup>주1)</sup>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1*	수막알균수막염 결핵성 수막염	A39.0 A17.0+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수막염	G02.0*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 볼거리수막염 수두수막염 대상포진수막염	A87.1+ A87.0+ B00.3+ B05.1+ B26.1+ B01.0+ B02.1+
진균증에서의 수막염	G02.1*	칸디다수막염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	B37.5+ B38.4+
결핵(-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	G05.0*	결핵성 수막뇌염	A17.81+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1*	아데노바이러스뇌염 엔테로바이러스뇌염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 뇌염이 합병된 홍역 볼거리뇌염 수두뇌염 대상포진뇌염	A85.1+ A85.0+ B00.4+ B05.0+ B26.2+ B01.1+ B02.0+
풍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	G05.1* <sup>주2)</sup>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B06.0+

24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풍진(에 의한)수막염 풍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	G02.0* <sup>주2)</sup> G05.1* <sup>주2)</sup>		
리스테리아(~에서의) 수막염 리스테리아(~에서의) 뇌염, 척수염 또는 뇌척수염	G01* <sup>주3)</sup> G05.0* <sup>주3)</sup>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A3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아메바성 뇌농양 수막결핵종 뇌 및 척수의 결핵종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A06.6 A17.1+ A17.80+ A17.8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체장장애	K87.1*	거대세포바이러스체장염 볼거리체장염	B25.2+ B26.3+

주1)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I32.0~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2) G02.0-G05.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B06.0+도 보장합니다.  
즉, G02.0-G05.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B06.0+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주3) G01-G05.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2.1+도 보장합니다.  
즉, G01-G05.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2.1+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55]

**다발성10대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다발성10대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계통의 양성신생물	D13	
중아호흡계통 및 흉곽의 양성신생물	중이 및 호흡계통의 양성 신생물	D14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 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신생물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조직의 양성신생물	중피조직의 양성 신생물	D19	
	후복막 및 복막 연조직의 양성 신생물	D20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1	
생식기 양성 종양	여성 생식기의 양성종양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남성 생식기의 양성종양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비뇨기관의 양성신생물	D30	
수막의 양성신생물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2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양성신생물	뇌 및 기타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내분비선의 양성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유방의 양성종양	유방의 양성 신생물	D24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56]**

**58대질병 II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58대질병 II’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담석증	담석증	K80
사타구니 탈장	사타구니 탈장	K40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편도 및 아데노이드의 만성 질환	J35
만성 부비동염	만성 부비동염	J32
급성상기도감염	급성상기도감염	J00-J06
후각특정질환	혈관운동성 및 알레르기성 비염 만성비염, 비인두염 및 인두염 코용종	J30 J31 J33
인후부위의 특정질환	편도주위 농양 만성 후두염 및 후두기관염 상기도의 기타 질환	J36 J37 J39
성대결절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성대및 후두의 질환	J38
근육장애	근염 근육의 석회화 및 골화 근육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근육장애	M60 M61 M62 M63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M72.2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중이염	비화농성 중이염	H65
	화농성 및 상세불명의 중이염	H6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염	H67
중이 및 유도의 질환	귀인두관염 및 귀인두관 폐색	H68
	귀인두관의 기타 장애	H69
	유도염 및 관련 병태	H70
	중이의 진주종	H71
	고막의 천공	H72
	고막의 기타 장애	H73
	중이 및 유도의 기타 장애	H7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중이 및 유도의 기타 장애	H75
내이의 질환	내이의 질환	H80-H83
황반변성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H35.3
공막·각막·홍채·섬모체의 장애	공막, 각막, 홍채 및 섬모체의 장애	H15-H22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 (황반 및 후극부의 변성 제외) - H35.0(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병변) 중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당뇨병성 망막병증 제외)	H30-H36 (H35.3제외)  (H36.0제외)
	시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시신경염 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시[제2]신경 및 시각경로의 장애
사구체질환	급성 신염증후군	N00
	급속 진행성 신염증후군	N01
	재발성 및 지속성 혈뇨	N02
	만성 신염증후군	N03
	신증후군	N04
	상세불명의 신염증후군	N05
	명시된 현대학적 병변을 동반한 고립된 단백뇨	N06
	달리 분류되지 않은 유전성 신장병증	N07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사구체장애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제외)	N08 (N08.3제외)	
신세뇨관-간질질환	급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0	
	만성 세뇨관-간질신장염	N11	
	급성 또는 만성으로 명시되지 않은 세뇨관-간질신장염	N12	
	폐쇄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약물 및 중금속 유발 세뇨관-간질 및 세뇨관 병태	N14	
	기타 신세뇨관-간질질환	N1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신세뇨관-간질장애	N16	
방광의결석	방광의 결석	N21.0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신세뇨관기능손상으로 인한 장애	N25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7	
	달리 분류되지 않은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	
비뇨계통의 기타 질환	방광염	N30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방광의 신경근육기능장애	N31	
	방광의 기타 장애	N3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방광장애	N33	
	비뇨계통의 기타 장애	N3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유도장애 (결핵성 방광염(A18.11†)제외) (스트레스요실금 제외) (기타 명시된 요실금 제외)	N39 (N33.0제외) (N39.3제외) (N39.4제외)	
	유방의 장애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이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특정 부위의 탈장		대퇴탈장	K41
	배꼽탈장	K42	
	복부탈장	K43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횡격막탈장 기타 복부탈장 상세불명의 복부탈장	K44 K45 K46
비감염성장염 및 결장염	크론병[국소성 장염] 케양성 대장염 기타 비감염성 위장염 및 결장염	K50 K51 K52
특정 장질환	장의 혈관장애 탈장이 없는 마비성 장폐색증 및 장폐쇄 장의 괴사병	K55 K56 K57
복막의 질환	복막의 질환 (결핵성 복막염 제외)	K65-K67 (K67.3제외)
담낭담도 질환	담낭염(쓸개염) 담낭의 기타질환 담도의 기타질환	K81 K82 K83
척추변형	척추후만증 및 척추전만증 척추측만증 척추골연골증 기타 변형성 등병증	M40 M41 M42 M43
척추병증	강직척추염 기타 염증성 척추병증 척추증 기타 척추병증	M45 M46 M47 M48
추간판장애 (디스크질환)	경추간판장애 기타 추간판장애	M50 M51
골다공증	병적 골질을 동반한 골다공증 병적 골질이 없는 골다공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골다공증 골연속성의 장애	M80 M81 M82 M84
안면 신경장애	삼차신경의 장애 안면신경장애	G50 G51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뇌신경의 장애	G52	
손목터널증후군	손목터널증후군	G56.0	
단일신경병증	팔의 단일신경병증 (손목터널증후군 제외) 다리의 단일신경병증 기타 단일신경병증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단일신경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제외)	G56 (G56.0제외) G57 G58 G59 (G59.0제외)	
특정 누적외상성질환	결합조직의 기타 전신침범 경추상완증후군 기타 연조직장애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어깨병변)	M35 M53.1 M70-M79 (M74, M78제외) (M72.2제외) (M75제외)	
윤활막 및 힘줄장애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윤활막 및 힘줄의 장애	M65 M66 M67 M68	
식도질환	식도염 위-식도역류병 식도의 기타질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식도의 장애	K20 K21 K22 K23	
위·십이지장 질환	위염 및 십이지장염 기능성 소화불량	K29 K30	
어깨병변	어깨병변	M75	
고혈압	고혈압성 질환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고혈압성 심장병	I11
		고혈압성 신장병	I12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3
		이차성 고혈압	I15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고혈압성 합병증	고혈압성 뇌병증	167.4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변화 (고혈압성 망막병증) 제외 - 고혈압성 이외의 배경망막병증 및 망막혈관 변화	H35.0	
당뇨병	1형 당뇨병	E10	
	2형 당뇨병	E11	
	영양실조 관련 당뇨병	E12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3	
	상세불명의 당뇨병	E14	
	당뇨병성 합병증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	G59.0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	G63.2
		당뇨병성 백내장	H28.0
		당뇨병성 망막병증	H36.0
		당뇨병성 관절병증	M14.2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	N08.3
	용혈-요독증후군 (행버거병)	용혈-요독증후군	D59.3
	비장질환	비장의 질환	D73
부갑상선질환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0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1	
뇌하수체질환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2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23	
대사장애	쿠싱증후군	E24	
	부신생식기장애	E25	
	고알도스테론증	E26	
	부신의 기타 장애	E27	
마비	편마비	G81	
	하반신마비 및 사지마비	G82	
	기타 마비증후군	G83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귀의 기타장애	전음성 및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H90
	기타 청력소실	H91
	귀통증 및 귀의 삼출액	H9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의 기타 장애	H9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귀의 기타 장애	H94
	달리 분류되지 않은 귀 및 유도의 처치후 장애	H95
동맥및세동맥의 질환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4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7
외부요인에의한폐 질환	탄광부진폐증	J60
	석면 및 기타 광섬유에 의한 진폐증	J61
	실리카를 함유한 먼지에 의한 진폐증	J62
	기타 무기물먼지에 의한 진폐증	J63
	상세불명의 진폐증	J64
	결핵과 연관된 진폐증	J65
	특정 유기물먼지에 의한 기도질환	J66
	유기물먼지에 의한 과민성 폐렴	J67
	화학물질, 가스, 훈증기 및 물감의 흡입에 의한 호흡 기병태	J68
	고체 및 액체에 의한 폐렴	J69
	기타 외부요인에 의한 호흡기병태	J70
폐부종	폐부종	J81
특정호흡기질환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2 J84
	침샘질환	침샘의 질환
위공장계양	위공장계양	K28
특정소화기질환	위 및 십이지장의 기타 질환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제외)	K31 (K31.7제외)
	장흡수장애	장흡수장애
전신결합조직장애	결절성 다발동맥염 및 관련 병태	M30
	기타 과사성 혈관병증	M31

- 주) 당뇨병 질환(E10-E14)에는 눈, 신장 등의 합병증을 동반한 당뇨병이 포함되어 있음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58대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8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경추관판장애 및 기타 추간판장애	M50-M51+	추간관 장애에서의 신경근 및 신경총 압박	G55.1*
결핵에서의 중이염	H67.0*	결핵성 중이염	A18.6+
홍역에서의 중이염	H67.1*	중이염이 합병된 홍역(H67.1*) 홍역후 중이염(H67.1*)	B05.3+ B05.3+
결핵성 맥락망막염 결핵성 상공막염 결핵에서의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간질성) 결핵에서의 홍채섬모체염	H32.0* <sup>주1)</sup> H19.0* <sup>주1)</sup> H19.2* <sup>주1)</sup> H22.0* <sup>주1)</sup>	눈의 결핵	A18.5+
헤르페스바이러스[단순헤르페스] 감염에서의 홍채섬모체염	H22.0*	홍채섬모체염 홍채염 전방포도막염	B00.50+ B00.50+ B00.50+
헤르페스바이러스 각막염 및 각막결막염	H19.1*	각막염 각막결막염	B00.51+ B00.51+

58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각막상피염 간질각막염 각막내피염	B00.51+ B00.51+ B00.51+
유행성 각막결막염	H19.2*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각막결막염 유행성 각막결막염 조선소노병	B30.0+ B30.0+ B30.0+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사구체장애	N08.5*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 (제외 - 사구체질환 동반 이외 의 전신홍반루푸스)	M32.1+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신세뇨관-간질장애	N16.4*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 홍반루푸스 (제외 - 신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이외의 전신홍반루푸스)	M32.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신장 및 요관의 기타 장애	N29.1*	신장의 결핵 요관의 결핵	A18.10+ A18.18+
결핵성 식도염	K23.0*	식도의 결핵	A18.82+
결핵성 방광염	N33.0*	방광의 결핵	A18.11†
클라미디아복막염	K67.0*	클라미디아복막염	A74.8+
각막결막염(를) 동반한 쉐그렌중후군	M35.0+	건성 각막결막염	H19.3*
결핵에서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8.0*	결핵성 윤활막염 결핵성 힘줄윤활막염	A18.08 † A18.08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결막염	H13.1*	아데노바이러스에 의한 결막염 클라미디아결막염	B30.1+ A74.0+

58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급성 유행성 출혈성 결막염(엔테로바이러스) 결막염 기타 바이러스결막염	B30.3+ B00.52+ B30.8+

주1) H19.0+H3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5도 보장합니다.  
즉, H19.0+H32.0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57]**

**5대기관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5대기관질병'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장질환	급성 류마티스열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기타 형태의 심장병	100 - 102 105 - 109 120 - 125 126 - 128 130 - 152
뇌혈관질환	뇌혈관 질환	160 - 169
간 질환	바이러스 감염 간의 질환	B15 - B19 K70 - K77
신장질환	신부전	N17 - N19
폐질환	폐기종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흉막의 기타 질환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기관지염 상세불명의 만성기관지염 천식 천식지속상태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레지오넬라병 폐렴이 합병된 홍역	J43 J44 J47 J85-J86 J90-J94 J40 J41 J42 J45 J46 J12 J13 J14 J15 J16 J17 J18 A48.1 B05.2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5대기관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5대기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칸디다심내막염	B37.6+
달리 분류된 바이러스질환에서의 폐렴	J17.1*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폐렴이 합병된 홍역	B05.2+
		수두폐렴	B01.2+
기생충질환에서의 폐렴	J17.3*	폐톡소포자충증	B58.3+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간장애	K77.0*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	B25.1+
		톡소포자충간염	B58.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5대기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주)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즉, I32.0-I52.0 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39.5+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58]

3대질병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3대질병'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관절염	감염성 관절병증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당뇨병성 관절병증 제외) 관절증 기타 관절 장애	M00 ~ M03 M05 ~ M14 (M14.2) M15 ~ M19 M20 ~ M25
백내장	노년 백내장 기타 백내장 수정체의 기타장애	H25 H26 H27
생식기질환	남성생식기관의 질환 (남성불임 제외) 여성골반내 기관의 염증성 질환 여성생식기관의 비염증성 장애 (습관적 유산자 제외) (여성불임 제외) (인공 수정과 관련된 합병증 제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비노생식계통의 처치후 장애	N40~N45, N49~N51 N70 ~ N77 N80 ~ N85  N99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3대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대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류마티스 폐질환	M05.1+	류마티스 폐질환	J99.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전립선장애	N51.0*	편모충성 전립선염	A59.08+
		결핵 전립선장애	A18.14+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고환 및 부고환의 장애	N51.1*	볼거리고환염	B26.0+
		부고환의 결핵	A18.14+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여성 생식기관의 결핵	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	N74.1*		

주) N51.0~N51.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14+도 보장합니다. 즉, N51.0~N51.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14+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N74.0~N74.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17+도 보장합니다. 즉, N74.0.0~N74.1.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17+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별표59]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변호사 비용

소송목적의 값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비율
3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300만원을 초과하여 2,000만원까지 부분 [3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300만원) x (10/100)]	10%
2,000만원을 초과하여 5,000만원까지 부분 [20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000만원) x (8/100)]	8%
5,000만원을 초과하여 1억원까지 부분 [4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000만원) x (6/100)]	6%
1억원을 초과하여 1억5천만원까지 부분 [7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원) x (4/100)]	4%
1억5천만원을 초과하여 2억원까지 부분 [9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1억5천만원) x (2/100)]	2%
2억원을 초과하여 5억원까지 부분 [1,0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2억원) x (1/100)]	1%
5억원을 초과하는 부분 [1,340만원 + (소송목적의 값 - 5억원) x (0.5/100)]	0.5%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에 정한 변호사비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별표60]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정한 인지액

소송목적의 값	인지액
1천만원 미만	소송목적의 값 × 0.5%
1천만원 ~ 1억원 미만	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45%
1억원 ~ 10억원 미만	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4%
10억원 이상	555,000원 + 소송목적의 값 × 0.35%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에서 정한 인지액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법에 따릅니다.

[별표61]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민사소송)

소송목적의 값	송달료
1심 민사소액 / 민사단독 / 민사합의	104,000원 / 156,000원 / 156,000원
항소심 / 상고심	124,800원 / 83,200원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별표62]

송달료 규칙에 정한 송달료(행정소송)

사 건	송달료
1심 / 항소심	104,000 원
상고심	83,200 원

※ 대법원이 정한 송달료 규칙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규칙에 따릅니다.



[별표63]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위·십이지장, 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위·십이지장	위의 양성 신생물	D13.1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D13.2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K31.7
대장	맹장의 양성 신생물	D12.0
	충수의 양성 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양성 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 신생물	D12.8
	직장용종	K62.1
	결장의 용종	K63.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64]

**특정바이러스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바이러스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C형 간염	B17.1
2. 델타-병원체가 있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0
3. 델타-병원체가 없는 만성 바이러스 B형간염	B18.1
4. 만성 바이러스 C형 간염	B18.2
5.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
6.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
7. 기타 명시된 질환을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
8. 기타 병태를 유발한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
9. 상세불명의 사람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65]

**갑상선기능항진증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갑상선기능항진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 기능항진증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66]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간	간의 양성종양, 간내담관의 양성종양	D13.4	
2. 담관	간외담관의 양성종양	D13.5	
3. 췌장	췌장의 양성종양	D13.6	
4. 기관지 및 폐	기관지 및 폐의 양성종양	D14.3	
5. 갑상선	갑상선의 양성종양	D34	
5. 생식기관	남성	남성생식기관의 양성종양	D29
	여성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종양	D26
		난소의 양성종양	D27
기타 및 상세불명 여성생식기관의 양성종양		D28	
	여성생식기관의 용종	N84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67]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6대기관 양성종양(폴립포함) 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0-5호, 2020.2.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수술내용		수가코드
내시경 종양제거 수술		Q7611-Q7789, QX706
간	1. 간농양(낭종) 수술 가. 개복에 의한 흡입 또는 주입술	Q7211
	나. 배액을 위한 간절개술	Q7212
	다. 조대술	Q7213
	라. 낭종적출술	Q7214
담낭및 담도	1. 담도낭종수술 가. 우회술	Q7331
	나. 절제술	Q7332
	2. 담도종양수술 가. 양성	Q7341
췌장	1. 췌장가성낭종수술 가. 조대술	Q7541
	나. 외부배액법	Q7542
	다. 내부배액법	Q7543
	2. 췌장양성종양(낭종, 선종) 절제	Q7550
	1. 폐엽절제술 가. 단일폐엽절제술	01421
기관지 및 폐	나. 쌍폐엽절제술	01422
	다. 폐엽과 폐구역절제술	01423
	라. 소매폐엽절제술	01424

수술내용		수가코드	
갑상선	1. 갑상선수술 가. 갑상선염 전절제술 (1) 편측 (2) 양측 나. 갑상선염 아전절제술 (1) 편측 (2) 양측	P4551 P4552  P4553 P4554	
	2. 갑상선선관낭종절제술	P4558	
생식기관	남성	1. 외성기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01
	여성	1. 외음부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66
		2. 질 종양적출술 가. 양성	R4070
		3. 자궁근종절제술 가. 복부접근 (1) 단순 (2) 복잡	R4124 R4127
		나. 질부접근	R4123
		다. 복강경술 (1) 단순 (2) 복잡	R4128 R4129
		4. 자궁경하 자궁근종절제술 가. 3cm 미만 나. 3cm 이상(다발성 포함)	R4125 R4126
		5. 자궁경관점막폴립절제술	R4240
		6. 자궁경하 자궁내막폴립절제술	R4241
		7. 부속기 종양 적출술 가. 양성	R4421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신경차단·파괴술'에 준하여 '신경차단·파괴술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별표68]

**특정부위 분류표**

구 분	특 정 부 위
1	위, 십이지장
2	공장(빈창자), 회장(돌창자), 맹장(총수돌기 포함)
3	직장
4	항문
5	간
6	담낭(쓸개) 및 담관
7	췌장
8	비장
9	기관, 기관지, 폐, 흉막 및 흉곽(늑골(갈비뼈) 포함)
10	코(외비(코 바깥), 비강(코 안) 및 부비강(코 곁골) 포함)
11	인두 및 후두 (편도 포함)
12	구강, 치아, 혀, 악하선(턱밑샘), 이하선(귀밑샘) 및 설하선(혀밑샘)
13	귀(외이(바깥 귀), 고막, 중이(가운데귀), 내이(속귀), 청신경 및 유양돌기(꼭지 돌기) 포함)
14	안구 및 안구부속기 (안검(눈꺼풀), 결막, 누기(눈물샘), 안근 및 안와내 조직 포함)
15	신장
16	부신
17	요관, 방광 및 요도
18	음경
19	전립선
20	유방 (유선 포함)
21	자궁 (자궁체부(자궁몸통) 포함)
22	난소 및 난관
23	고환(고환초막(고환집막) 포함) 부고환, 정관, 정삭 및 정낭
24	갑상선
25	경추부 (해당신경 포함)
26	흉추부 (해당신경 포함)
27	요추부 (해당신경 포함)
28	천골(엉치뼈)부 및 미골(꼬리뼈)부(해당신경 포함)

구 분	특 정 부 위
29	왼쪽 어깨
30	오른쪽 어깨
31	왼쪽 고관절
32	오른쪽 고관절
33	왼팔 (왼쪽 어깨 제외, 왼손 포함)
34	오른팔 (오른쪽 어깨 제외, 오른손 포함)
35	왼쪽 다리 (왼쪽 고관절 제외, 왼발 포함)
36	오른쪽 다리 (오른쪽 고관절 제외, 오른발 포함)
37	자궁체부(자궁몸통) (제왕절개술을 받은 경우에 한함)
38	서혜부(넓적다리 부위의 위쪽 주변)(서혜 탈장, 음낭 탈장 또는 대퇴 탈장이 생긴 경우에 한함)
39	식도
40	대장(맹장, 직장 제외)
41	피부(두피 및 입술 포함)
42	상·하악골(위턱뼈·아래턱뼈)
43	왼손(왼쪽 손목 관절 이하)
44	오른손(오른쪽 손목 관절 이하)
45	왼발(왼쪽 발목 관절 이하)
46	오른발(오른쪽 발목 관절 이하)
47	부갑상선
48	질 및 외음부
49	쇄골(빗장뼈)
50	늑골(갈비뼈)

별표

[별표69]

**특정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질병이외에 약관에서 정하는 질병이 있는 경우는 그 질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1	심장질환	100 - 102 105 - 109 120 - 125 126 - 128 130 - 152
2	뇌혈관질환	160 - 169
3	당뇨병	E10 - E14, O24
4	고혈압질환	I10 - I13, I15
5	결핵	A15 - A19 B90
6	담석증	K80
7	요로결석증	N20, N21, N23
8	골관절증 및 류마티스관절염	M05 - M06 M08 M15 - M19
9	등병증	M40 - M43 M45 - M51 M53 - M54
10	골반염	N73 - N74

구분	대상질병	분류번호
11	자궁내막증	N80
12	자궁의 평활근증	D25
13	하지의 정맥류	I83
14	통풍	E79, M10
15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16	사시	H49 - H51
17	탈장	K40 - K46, N43
18	복막의 질환	K65 - K67
19	골다공증	M80 - M82
20	천식	J45 - J46
21	난소의 양성신생물	D27
22	바르톨린샘의 질환	N75
23	여성 생식관의 용종	N84
24	백내장	H25 - H26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특정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

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N74.0-N74.1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18.17+도 보장합니다. 즉, N74.0.0-N74.1중 일부만 보장하는 경우 A18.17+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특정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뼈 및 관절의 결핵	A18.0+	결핵 관절염	M01.1*
		척추의 결핵	M49.0*
		뼈의 결핵	M90.0*
비뇨생식계통의 결핵	A18.1+	결핵성 방광염	N33.0*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N74.1*
장, 복막 및 장간막 림프절의 결핵	A18.3+	결핵성 복막염	K67.3*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	K93.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칸디다심내막염	B37.6+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I32.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장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I39.8*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내막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심근염	I41.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근염	A39.5+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I52.0* <sup>주)</sup>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	A39.5+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N74.0*	여성 생식기관의 결핵	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	N74.1*		

주) I32.0-I52.0은 약관상 동시에 보장하고 있는 경우만 A39.5+도 보장합니다.

[별표70]

**뇌혈관질환(Ⅰ)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혈관질환(Ⅰ)’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	164
2. 기타 뇌혈관질환	167
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168
4.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71]

**뇌혈관질환(Ⅱ)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혈관질환(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72]

**심혈관질환(특정 I, 149제외)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혈관질환(특정 I)’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협심증	120
2.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3. 만성 허혈심장병	125
4. 발작성 빈맥	147
5. 심방세동 및 조동	148
6. 심부전	150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73]

**심혈관질환(특정 II)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혈관질환(특정 II)’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심근경색증	121
2. 후속심근경색증	1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4.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46.0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75]

**독감(인플루엔자)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독감(인플루엔자)’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확인된 동물매개 또는 범유행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09
2. 확인된 계절성 인플루엔자바이러스에 의한 인플루엔자	J10
3.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인플루엔자	J11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76]

**폐렴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폐렴’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 폐렴	J12
폐렴연쇄구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77]

**특정 패혈증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패혈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연쇄구균패혈증	A40
기타 패혈증	A41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78]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아나필락시스쇼크’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2.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3.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4.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 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9]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분류표**

- ① 아래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 여부는 반드시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の内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항암호르몬약물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 (국문 및 영문)	의약품명(국문)
1	아비라테론 abiraterone	자이티가정500밀리그램 (아비라테론아세테이트(미분화))
2	아나스트로졸 anastrozole	에이덱스정(아나스트로졸) 아리미덱스정(아나스트로졸) 테바아나스트로졸정1밀리그램 아트로졸정(아나스트로졸) 페미젯정1밀리그램(아나스트로졸) 아나스토정(아나스트로졸)
3	비칼루타미드 bicalutamide	카소덱스정(비칼루타미드) 비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50밀리그램 비카루드정 칼루타미정1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칼루타미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비카소정(비칼루타미드)

		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카소비트(비칼루타미드) 프로세이드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카덱스정(비칼루타미드) 프로칼린정50밀리그램(비칼루타미드) 테바비칼루타미드정50밀리그램 피엠에스비칼루타미드정50밀리그램 (비칼루타미드(미분화))
4	다로루타미드 darolutamide	뉴베카정300밀리그램(다로루타미드)
5	데가렐릭스 degarelix	퍼마곤주80밀리그램(데가렐릭스) 퍼마곤주120밀리그램(데가렐릭스)
6	엔잘루타미드 enzalutamide	엑스탄디엔질캡슐40mg(엔잘루타미드)
7	엑스메스탄 exemestane	아로마신정25mg(엑스메스탄)
8	풀베스트란트 fulvestrant	파슬로덱스주(풀베스트란트)
9	고세렐린 goserelin	졸라덱스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고세렐린아세트산염)
10	레트로졸 letrozole	페마라정(레트로졸) 레나라정(레트로졸) 트로젯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레트론정(레트로졸) 브레트라정(레트로졸) 파누엘정2.5밀리그램(레트로졸) 테바레트로졸정2.5밀리그램
11	류프로렐린 leuprorelin	루피어데포주3.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데포주사(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로렐린주사액(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4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30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22.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엘리가드주7.5밀리그램(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주3.75mg(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3.7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11.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루프린디피에스주22.5밀리그램

		(류프로렐린아세트산염)
12	타목시펜 tamoxifen	광동타목시펜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광동타목시펜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디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놀바덱스정(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1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모프렉스정20밀리그램(타목시펜시트르산염) 타목센정
13	토레미펜 toremifene	화레스톤정40밀리그램(토레미펜시트르산염)
14	트립토헤린 triptorelin	데카펩틸-데포(트립토헤린아세트산염) 데카펩틸주0.1밀리그램(트립토헤린아세트산염) 디페렐린피알3.75밀리그램주(초산트립토헤린) 디페렐린피알주11.25밀리그램(파모산트립토헤린) 디페렐린에살알주22.5밀리그램 (트립토헤린파모산염)
15	메게스트롤 megestrol	메게시아정4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정160mg(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네옥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애피트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제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가프렉스정40밀리그램(초산메게스트롤) 메가프렉스정160밀리그램(초산메게스트롤) 대원메게스트롤이에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대원초산메게스트롤현탁액 메게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시아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스에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이트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메게프로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비씨메게스트롤현탁액(초산메게스트롤) 애피트롤이에스내복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원광초산메게스트롤내복현탁액(수출용) 제이트롤현탁액(메게스트롤아세테이트)
16	아팔루타미드 apalutamide	얼리다정(아팔루타미드)
17	시프로테론 cyproterone	안드로쿨정(시프로테론아세테이트)

**[별표80]**

**PSI 지표 점수 산정**

① PSI 지표 점수는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의 폐렴 진료지침에서 환자의 중증도나 사망위험도에 따라 입원여부,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치료 등을 결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으로 사용하도록 권고하는 폐렴 중증도 판정도구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인자	점수
환자특성	남자	만 연령
	여자	만 연령-10
	요양시설 거주자	+10
동반질환	악성종양	+30
	간질환	+20
	울혈성 심부전	+10
	뇌혈관질환	+10
	신장질환	+10
신체검진소견	의식변화(저하)	+20
	호흡수 $\geq$ 30/분	+20
	수축기혈압 < 90mmHg	+15
	체온 < 35℃ 혹은 $\geq$ 40℃	+15
	맥박수 $\geq$ 125/분	+10
검사실 /방사선 소견	동맥혈 pH < 7.35	+30
	BUN $\geq$ 30mg/dL	+20

Sodium(혈청 나트륨) < 130mEq/L	+10
Glucose(혈청 포도당) > 250mg/dL	+10
Hgb < 9g/dL (적혈구용적률 < 30%)	+10
PaO <sub>2</sub> (대기하 동맥혈 산소분압) < 60mmHg (SaO <sub>2</sub> < 90%)	+10
흡막염(흡수저류)	+10

1. 동반질환

- 악성종양 (일년이내 모든 종양, 단 피부 기저세포나 편평상피세포암 제외)
- 간질환 : 임상적 또는 조직학적 간경화나 만성 활동성 간염
- 울혈성 심부전 : 병력, 신체검진 또는 검사소견으로 진단
- 뇌혈관질환 : 임상적인 뇌졸중 또는 CT나 MRI로 증명된 경우
- 신장질환 : 만성 신질환 또는 비정상적인 BUN이나 혈청 creatinine

2. 의식 변화(저하): 사람, 장소, 시간에 대한 인식 상실이나, 최근 의식 혼탁(stupor, coma)

**[별표81]**

**갑상선관련질병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갑상선관련질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질환	갑상선의 장애 치치후 갑상선기능저하증 방사선조사후 갑상선기능저하증 수술후 갑상선기능저하증	E00-E07 E89.0
갑상선의 양성신생물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유의사항]**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 의거하여 상기 갑상선관련질병 중 일부는 아래와 같이 동시 진단될 수 있으며, 동시 진단 가능 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갑상선관련질병 대상코드		동시 진단 가능 코드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독증 [갑상선기능항진증]	E05+	갑상선이상성 안구돌출	H06.2*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82】**

**심혈관질환(149)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혈관질환(149)’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심장부정맥	149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83]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심장막염	130
2. 심장막의 기타질환	131
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132
4.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33
5.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8
6. 급성 심근염	140
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141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84]

**뇌심장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합니다.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질환	뇌혈관질환	거미막하 출혈 160 뇌내출혈 161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162 뇌경색증 163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166 기타 뇌혈관질환 16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두개내손상	두개내손상 S06
	뇌전증	뇌전증 G40 뇌전증지속상태 G41
	일과성허혈발작	일과성 뇌허혈발작 및 관련 증후군 G45
	파킨슨병	파킨슨병 G20 이차성 파킨슨증 G21
	뇌수막염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4
심장질환	허혈성심장질환	협심증 120 급성 심근경색증 121 후속심근경색증 122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기타 급성 허혈성심장질환 124 만성 허혈성심장병 125
	대동맥류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흉부 혈관 및 심장의 손상	흉곽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	S25 S26
	기타 형태의 심장병	급성 심장막염	130
심장막의 기타 질환		13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132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33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134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135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136	
폐동맥판장애		137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139	
급성 심근염		140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141	
심근병증		1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143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144	
기타 전도장애		145	
심장정지		146	
발작성 빈맥		147	
심방세동 및 조동		148	
기타 심장부정맥		149	
심부전	150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15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152		
류마티스 심장질환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 열	101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105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106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107	
	다발성판막질환	108	
	기타 류마티스성심장질환	109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85]**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HK0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심근	HK020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HK03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	HK040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	HK050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HK060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 에 준하여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검사 수가 코드’ 를 결정합니다.

[별표86]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 분류표**

- ① 아래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2년 7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험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해당 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암종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の内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제’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성분명 (국문 및 영문)	의약품명(국문)
1	티사젠렉류셀 Tisagenlecleucel	김리아주(티사젠렉류셀)

[별표87]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대상 수가코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이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뇌정위적방사선수술-감마나이프이용	HD113
뇌정위적방사선수술-사이버나이프이용	HD114
뇌정위적방사선수술-선형가속기이용	HD115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에 준하여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 ③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 사’ 외에 ‘급여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8]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	C8003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고형암-Level II	C8004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	C8005
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패널검사비-비유전성 유전자검사-혈액암-Level II	C8006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에 준하여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 ③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외에 ‘급여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89]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이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급여 전립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전립선생검-경피적	C8551
급여 갑상선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갑상선생검-침생검	C8591
급여 유방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유방생검[편측]-침생검	C8641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에 준하여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 ③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외에 ‘급여 바늘생검조직병리검사’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90]

**중증질환자(뇌혈관)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 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1.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혈관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은 경우 최대 30일.	V191
2.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에서 160~162에 해당하는 상병의 중증 뇌출혈환자가 급성기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68
3.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에서 163에 해당하는 상병의 뇌경색증환자가 증상 발생 24시간 이내에 병원에 도착하여 입원진료중 NIHSS가 5점 이상인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에 해당하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	V275

- 주) 1. NIHSS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Stroke Scale의 약자로 의료 제공자가 뇌졸중으로 인한 손상을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데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90-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상병**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상병명	상병코드
뇌혈관질환	160~167
경동맥의 동맥류 및 박리	172.0
후천성 동정맥루	177.0
순환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28.0~Q28.3
두개내손상	S06

[별표90-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뇌혈관질환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3.1. 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1]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명	수술코드
혈중제거를 위한 개두술	S4621, S4622
뇌동맥류수술	S4641, S4642
뇌동정맥기형적출술	S4653-S4658
두개강내 혈관문합술	S4661, S4662
단락술 또는 축로조성술	S4711-S4715
뇌엽절제술	S4780
뇌 기저부 수술	S4801-S4803
중추신경계정위수술 - 혈중제거	S4756
경피적풍선혈관성형술	M6593, M6594, M6597
경피적뇌혈관악물성형술	M6599
경피적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1, M6602, M6605
경피적혈전제거술	M6630, M6632, M6635, M6636, M6637, M6639
혈관색전술	M1661-M1667, M6644
천두술	N0322-N0324
개두술 또는 두개절제술	N0333

수술명	수술코드
혈관내 축중제거술	00226, 00227, 02066
경동맥결찰술	S4670
뇌내시경수술	S4744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HD113-HD115

[별표91]

**중증질환자(심장)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 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별표9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에 해당하는 상병의 심장질환자가 해당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별표9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에 해당하는 수술 또는 ‘[별표9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약제성분’ 에 해당하는 약제를 투여받은 경우 최대 30일. 단, ‘[별표9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에 해당하는 상병 중 복잡 선천성 심기형질환자 또는 ‘[별표9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에 해당하는 수술 중 심장 이식술을 받은 경우 최대 60일	V192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뇌혈관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91-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상병**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상병을 말합니다.

상병명	상병코드
심장의 양성 신생물	D15.1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I01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허혈심장질환	I20~I25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 I28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1
대동맥의죽상경화증	I70.0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장애	I79.0, I79.1
대동맥궁증후군[다가야수]	M31.4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Q20~Q25
대정맥혈관의 선천기형	Q26.0~Q26.4, Q26.8, Q26.9
흉부 혈관의 손상, 심장의 손상	S25~S26



[별표91-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명	수술코드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0A640, 0A641, 0A647~0A649, 01640~01641, 01643~01649
심장 창상봉합술	01660
동맥관개존폐쇄술	01671, 01672
대동맥축착증수술	01680
폐쇄식 승모판 교련 절개술	01690
심혈관단락술	01701, 01702
폐동맥결찰술	01703, 01704
심방중격결손조성술	01705
심방, 심실중격결손증수술	01710, 01711, 01721~01723
판막협착증수술	01730, 01740, 01750, 01760
심방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	01770
판막성형술	01781~01784
인공판막치환술	01791~01793, 01797
인공판막재치환술	01794~01796, 01798
비봉합 대동맥판막치환술	01799
활로씨 4 증후군 근본수술	01800
심실중격결손증 겸 폐동맥판협착증수술	01810
심내막상결손증 수술	01821, 01822
좌심실류절제술	01823

수술명	수술코드
좌심실용적축소성형술	01824
좌심실, 우심실 유출로 성형술	01825, 01826
관상동맥 내막절제술	01830
발살바동 동맥류파열수술	01840
동정맥기형교정술	01841
기타 복잡기형에 대한 심장수술	01851, 01852
좌우폐동맥 성형술	01861
기능적 단심실증 교정술	01873, 01874
라스텔리씨수술	01875
총 폐정맥 환류이상증 수술	01878
대혈관전위증 수술	01879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	00881, 00882, 00883, 00886, 00887, 00888, 00889
인공심폐순환	01890
개흉심장마사지	01895
부분체외순환	01901~01902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01903~01904, 01907
국소관류	01910
대동맥내풍선펌프	01921, 01922
심낭루조성술	01931
심낭창형성술	01932, 01935
심막절제술	01940
폐동맥혈전제거술	01950
대동맥-폐동맥 창 폐쇄술	01960
심내이물제거술	01970
심장중앙제거술	01981, 01982

수술명	수술코드
심박기거치술	02001, 02004, 02005, 02009, 00203-00210, 00241-00243
부정맥수술	02006, 02007
심율동전환 제세동기거치술	00211, 00212, 02211, 02212
동맥류 절제술	02021, 02022, 02031-02033
혈전제거술-심장	00260
경피적 동맥관개존 폐쇄술	M6510
경피적 심방중격결손폐쇄술	02751
경피적 근성부 심실중격결손 폐쇄술	M6513
경피적 심방중격절개술	M6521, M6522
경피적 심장 판막성형술	M6531-M6533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및 냉각절제술	M6541-M6543, M6546-M6548, M6550, M6551, M6557, M6558, M6561, M6562
경피적 관상동맥확장술	M6551, M6552, M6553, M6554
경피적 관상동맥스텐트삽입술	M6561-M6564, M6565-M6567
경피적 관상동맥죽상반절제술	M6571, M6572
경피적 대동맥판삽입	M6580, M6581, M6582
경피적 폐동맥판 삽입술	M6585
경피적 풍선혈관성형술	M6595-M6597
경피적 혈관내 금속스텐트삽입술	M6603-M6605
경피적 혈관내 스텐트-이식설치술	M6611-M6613
대동맥 혈관내 이식편 고정술	M6651, M6652
경피적 혈관내 죽종제거술	M6620
경피적 혈전제거술	M6632, M6634, M6638, M6639
혈관색전술	M6644

수술명	수술코드
심장이식술	Q8080
심장 및 폐이식술	Q8103

[별표91-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억제성분**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심장질환의 억제성분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에서 [별첨2]에 해당하는 아래의 억제성분을 말합니다.

억제성분명	분류
Alteplase	주사제
Tenecteplase	주사제
Urokinase	주사제

[별표92-1]

**1-5종수술Ⅳ 분류표**

1. 일반 질병 및 상해 치료목적의 수술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피부, 유방의 수술	1. 피부이식수술(25cm <sup>2</sup> 이상인 경우), 피판수술(피판분리수술, Z flap, W flap 제외)	3
	2. 피부이식수술(25cm <sup>2</sup> 미만인 경우)	1
	3.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
	3-1.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제자리암, 경계성종양)	3
	3-2. 기타 유방절단수술(切斷術, Mastectomy)	2
	4. 기타 유방수술(농양의 절개 및 배액은 제외) [단, 치료목적의 유방절제술(Mamotomy)는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근골(筋骨)의 수술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 제거술은 제외함] [치(齒)-치은-치근(齒根)-치조골(齒槽骨)의 처치, 임플란트(Implant) 등 치과 처치 및 수술에 수반하는 것은 제외함]	5. 골(骨) 이식수술	2
	6. 두개골(頭蓋骨, cranium) 관혈수술 [비골(코뼈)·비중격(鼻中隔)·상악골(위턱뼈)·하악골(아래턱뼈)·악관절(顎關節)은 제외함]	3
	7. 비골(코뼈) 수술 [비중격 만곡증(彎曲症)수술 제외]	1
	8. 상악골(위턱뼈), 하악골(아래턱뼈), 악관절(顎關節) 관혈수술	2
	9. 척추골(脊椎骨), 골반골(骨盤骨), 추간판 관혈수술	3
	10. 쇄골(빗장뼈), 견갑골(어깨뼈), 늑골(갈비뼈), 흉골(胸骨) 관혈수술	2
	11. 사지(四肢) 절단수술(다지증에 대한 절단수술은 제외함)	-
	11-1. 손가락, 발가락 절단수술[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1
	11-2. 기타 사지(四肢)절단수술	3
	12. 절단(切斷)된 사지(四肢)재접합수술(再接合手術) [골, 관절의 이단(離斷)에 수반하는 것]	3
	13.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13-1. 손가락, 발가락의 골 및 관절 관혈수술	1
	13-2. 기타 사지골(四肢骨), 사지관절(四肢關節) 관혈수술	2
	14. 근(筋), 건(腱), 인대(靭帶), 연골(軟骨) 관혈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호흡기계, 흉부(胸部)의 수술	15. 만성부비강염(慢性副鼻腔炎) 근본수술(根本手術)	1
	16. 후두(喉頭) 관혈적 절제수술	3
	17. 편도, 아데노이드 절제수술	1
	18. 기관(氣管), 기관지(氣管支), 폐(肺), 흉막(胸膜) 관혈수술 [개흉술(開胸術, Thoracotomy)을 수반하는 것]	4
	19. 폐장(肺臟) 이식수술 [수용자(受容者)에 한함]	5
	20. 흉곽(胸郭) 형성수술(形成手術)	3
	21. 종격종양(縱隔腫瘍), 흉선 절제수술[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순환기계, 비장(脾腸)의 수술	22. 혈관관혈수술(하지정맥류 및 손가락·발가락은 제외)	3
	23. 하지 정맥류(靜脈瘤) 근본수술 및 손가락·발가락 혈관관혈수술	1
	24. 대동맥(大動脈), 대정맥(大靜脈), 폐동맥(肺動脈), 관동맥(冠動脈) 관혈수술[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25. 심막(心膜)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4
	26. 심장내(心臟內) 관혈수술 [개흉술을 수반하는 것]	5
	27. 심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5
	28. 체내용(體內用) 인공심박조율기(人工心搏調律機, Artificial pacemaker) 매입술(埋入術)	3
29. 비장(脾腸) 절제수술	3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소화기계의 수술	30. 이하선 절제수술	3
	31-1. 악하선, 설하선 절제수술	2
	31-2. 기타 타액선 절제수술(타석제거는 제외)	1
	32. 식도(食道) 이단술(離斷術) [개흉술, 개복술(開腹術, Laparotomy)을 수반하는 것]	4
	33. 위 절제수술(胃 切除手術, Gastrectomy)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4. 기타의 위·식도 관혈수술 [개흉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5. 간장(肝臟), 췌장(膵臟)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4
	36. 담낭(膽囊), 담도(膽道) 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3
	37. 간장 이식수술 [수용자에 한함,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5
	38. 췌장 이식수술 [개복술을 수반해야 하며 수용자에 한함] (단, 랑게르한스 소도(Islet of Langerhans)세포 이식수술은 제외함)	5
	39. 탈장(脫腸) 근본수술	1
	40. 전신성 복막염(全身性 腹膜炎, Generalized peritonitis) 수술	2
	41. 총수(蟲垂)절제술(총수염관련 총수주위 농양수술, 국한성 복막염 수술 포함), 맹장봉축술(盲腸縫縮術)	2
	42. 직장탈(直腸脫) 근본수술	1
비뇨기계·생식기 계의 수술 (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함)	43. 소장(小腸), 결장(結腸), 직장(直腸), 장간막(腸間膜) 관혈수술[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단, 직장탈근본수술은 제외)	4
	44. 치루(痔瘻), 탈항(脫肛), 치핵(痔核) 근본수술 [근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수술은 제외함]	1
	45. 신장(腎臟), 방광(膀胱), 신우(腎盂), 요관(尿管)관혈수술 [개복술을 수반하는 것, 경요도적 조작 및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은 제외]	4
	46. 요도 관혈수술 [경요도적 조작은 제외함]	2
	47. 방광류·요실금 교정수술	1
	48. 신장(腎臟) 이식수술(移植手術) [수용자에 한함]	5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비뇨기계·생식기계의 수술 (인공임신 중절수술은 제외함)	49. 음경(陰莖) 절단수술 (포경수술 및 음경이물제거수술은 제외)	3
	50. 고환(辜丸), 부고환(副辜丸), 정관(精管), 정삭(精索), 정낭(精囊)관혈수술, 전립선(前立腺)관혈수술	2
	51. 음낭관혈수술	1
	52. 자궁, 난소, 난관 관혈수술 (단, 제왕절개만출술 및 경질적인 조작은 제외)	2
	53. 경질적 자궁, 난소, 난관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54. 제왕절개만출술(帝王切開娩出術)	1
55. 질탈(膺脫)근본수술	1	
내분비기계의 수술	56. 뇌하수체종양(腦下垂體腫瘍) 절제수술	5
	57. 갑상선(甲狀腺)·부갑상선(副甲狀腺) 관혈수술	3
	58. 부신(副腎) 절제수술	4
신경계의 수술	59. 두개내(頭蓋內) 관혈수술 [개두술(開頭術, Craniotomy)을 수반하는 것]	5
	60. 신경(神經) 관혈수술	2
	61. 관혈적 척수종양(脊髓腫瘍) 절제수술	4
62. 척수경막내외(脊髓硬膜內外) 관혈수술	3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3. 안검하수증(눈꺼풀저림증)수술(안검내반증 포함)	1
	64. 누소관(淚小管)형성수술(누관튜브삽입술 포함)	1
	65. 누낭비강(淚囊鼻腔) 관혈수술	2
	66. 결막낭(結膜囊) 형성수술	2
	67. 각막, 결막, 공막 봉합수술	1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시각기의 수술 [약물주입술은 제외]	68. 각막, 공막 이식수술	2
	69. 전방(前房), 홍채(虹彩), 유리체(琉璃體) 관혈수술	2
	70. 녹내장(綠內障) 관혈수술	3
	71. 백내장(白內障), 수정체(水晶體) 관혈수술	1
	72. 망막박리(網膜剝離)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3.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시력회복 및 시력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74. 냉동응고(冷凍凝固)에 의한 안구(眼球)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2
	75. 안구적출술, 조직충전술(組織充填術)	3
	76. 안와내종양절제수술	3
	77. 관혈적 안와내(眼窩內) 이물제거수술(異物除去手術)	1
78. 안근(眼筋)관혈수술	1	
청각기(聽覺器)의 수술	79. 관혈적 고막(鼓膜) 성형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2
	80. 유양동 절제술(乳樣洞切除術, mastoidectomy)	2
	81. 중이(中耳) 관혈수술 [중이내 튜브유치술 제외]	2
	82. 중이내(中耳內) 튜브유치술 [고막 패치술은 제외,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
	83. 내이(內耳) 관혈수술	3

구분	수술명	수술종류
상기 이외의 수술 [검사, 처치, 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음]	84. 상기 이외의 개두술(開頭術)	3
	85. 상기 이외의 개흉술(開胸術)	3
	86. 상기 이외의 개복술(開腹術)	2
	87. 체외충격파쇄석술(體外衝擊破碎石術, E.S.W.L)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체외충격파치료술(E.S.W.T)은 제외	2
	88.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경피(피부를 통한)적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88-1. 뇌, 심장	3
	88-2. 후두, 흉부장기(심장 제외), 복부장기(비뇨, 생식기 제외), 척추, 사지관절(손가락, 발가락은 제외)	2
	88-3. 비뇨, 생식기 및 손가락, 발가락	1

(주) 상기 1~87항의 수술 중 내시경(Fiberscope)을 이용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적(經皮的, Percutaneous) 수술은 88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복강경·흉강경에 의한 수술은 해당부위(1~87항)의 수술로 적용합니다.

## II. 악성신생물 치료 목적의 수술

수술명	수술종류
1. 관혈적 악성신생물(惡性新生物) 근치수술(根治手術, Radical curative surgery)(단, 기타피부암(C44),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자궁경부의 암(C53), 자궁체부의 암(C54), 전립선암(C61), 방광암(C67) 제외)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의 경피(피부를 통한)적 수술 등은 제외함]	5
1-1. 기타피부암(C44)	3
1-2. 갑상선암(C73), 유방암(C50), 자궁경부의 암(C53), 자궁체부의 암(C54), 전립선암(C61), 방광암(C67)	4
2. 내시경 수술, 카테터·고주파 전극 등에 의한 악성신생물 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3. 상기 이외의 기타 악성신생물수술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3

- (주) 1. 제자리암·경계성종양에 대한 수술은 '1. 일반 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항목의 적용을 받습니다.
2. 카테터(Catheter)를 이용한 흡인·천자·약물주입요법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수술은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에 준하여 5종 수술로 인정합니다.
- 비고형암에 대한 비관혈적 근치술 중 조혈모세포 이식술은 일련의 과정(추출, 필터링, 배양, 제거, 주입)을 모두 포함하여 1회의 수술로 인정합니다.
  - 다만 약물 등을 투여하기 위한 시술(예. 중심정맥삽관술)만 시행할 경우에는 5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III. 악성신생물 근치·두개내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분류표

수술명	수술종류
1. 악성신생물 근치 방사선 조사 [5,000Rad 이상의 조사(照射)를 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악성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定位的 放射線 治療, Stereotactic radiotherapy)를 포함함]	3
2.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 나이프(Gamma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	3

(주)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1-5종수술Ⅳ 분류표 사용 지침)**

1. '수술' 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 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5종수술Ⅳ 분류표>에서 정한 행위(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도 포함됩니다.
2. '관혈(觀血)' 수술이라 함은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하는 것을 말합니다.
3. '근본(根本)' 혹은 '근치(根治)' 수술이라 함은 일화의 수술로 해당 질병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수술을 말합니다.
4. '관혈적 악성신생물 근치수술'이라 함은 관혈적 방법을 통해 악성신생물의 원발 병소를 완전히 절제, 적제, 적출하고 혹은 광청술을 함께 실시한 경우입니다.
5. <1-5종수술Ⅳ 분류표> 상에 열거되지 않은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에 대한 인정 및 적용 기준  
<1-5종수술Ⅳ 분류표>에서의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은 상기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여야 하고 약물투여치료, 방사선조사치료 또는 기타의 보존적 치료로 분류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 1) <1-5종수술Ⅳ 분류표>상의 수술 이외에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 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으로 치료한 경우 <1-5종수술Ⅳ 분류표>상의 동일부위 수술로 봅니다. 이 때에 해당 최신수술기법은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2) 단, 이 선진의료적 첨단 수술이 본질적으로 내시경(Fiberscope)에 의한 내시경 수술 또는 카테터(Catheter) 등에 의한 경피(피부를 통한)적 수술인 경우에는 <1-5종수술Ⅳ 분류표>중 '일반질병 및 상해치료 목적의 수술' 88항 (악성신생물의 경우는 '악성신생물 치료목적의 수술' 2항)을 우선 적용합니다.
6. '악성 신생물 근치 사이버 나이프(Cyberknife) 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선형가속기(LINAC)에서 발생하는 가느다란 방사선(Pencil beam)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악성 신생물을 향해 집중적으로 조사하면서 동시에 악성신생물의 움직임을 병변 추적 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추적하면서 치료하는 방법입니다.
7. '두개내 신생물 근치 감마나이프 (Gammaknife)정위적 방사선 치료'라 함은 정위 좌표계를 이용하여 코발트 60 방사성 동위원소 (Co-60) 에서 나오는 감마선을 두개강 내의 신생물을 향해 집중 조사함으로 두개(頭蓋)를 열지 않고도 수술적 제거와 같은 효과를 내는 치료를 말합니다.

8. 다음과 같은 수술은 수술급여금 지급대상에서 보장을 제외합니다.

- ①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들이는 것)
- ②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등의 조치
- ③ 신경(神經) 차단(NERVE BLOCK)
- ④ 미용성형 목적의 수술
- ⑤ 피임(避妊) 목적의 수술
- ⑥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목적의 수술
- ⑦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강경검사(腹腔鏡檢査) 등)



[별표93]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 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2021.12.0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창상봉합술(급여) (안면/경부)(A형)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1.5cm 미만)	S002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1.5cm 이상~3.0cm미만)	S002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1.5cm미만)	SA02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1.5cm이상~3.0cm미만)	SA022
창상봉합술(급여) (안면/경부)(B형)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3.0cm 이상~5.0cm미만)	S002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5.0cm 이상~7.5cm미만)	S0028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7.5cm 이상~10.0cm미만)	S002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10cm 이상, 5cm마다 추가)	S0030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1.5cm미	S0031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창상봉합술(급여) (안면/경부)(B형)	만)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1.5cm이상~3.0cm미만)	S003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3.0cm이상~5.0cm미만)	S003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5.0cm이상~7.5cm미만)	S0038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7.5cm이상~10.0cm미만)	S003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10cm이상, 5cm마다 추가)	S0040
창상봉합술(급여) (안면/경부)(C형)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3.0cm이상~5.0cm미만)	SA02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5.0cm이상~7.5cm미만)	SA028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7.5cm이상~10.0cm미만)	SA02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10cm이상, 5cm마다 추가)	SA030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1.5cm미만)	SA03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1.5cm이상~3.0cm미만)	SA03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근육,	SA037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창상붕합술(급여) (안면/경부)(C형)	길이3.0cm이상~5.0cm미만)	
	창상붕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5.0cm이상~7.5cm미만)	SA038
	창상붕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7.5cm이상~10.0cm미만)	SA039
	창상붕합술(안면또는경부,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10cm 이상, 5cm마다 추가)	SA040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창상붕합술(급여)(안면/경부)'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표94]**

**창상붕합술(급여)(안면/경부외)대상 수가코드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창상붕합술(급여)(안면/경부외)'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77호, 2021.12.0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창상붕합술(급여) (안면/경부외)(A)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붕합, 표재성, 길이2.5cm미만)	SB021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붕합, 표재성, 길이2.5cm이상~5.0cm미만)	SB022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2.5cm미만)	SC021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2.5cm이상~5.0cm미만)	SC022
창상붕합술(급여) (안면/경부외)(B)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붕합, 표재성, 길이5.0cm이상~10.0cm미만)	SB029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붕합, 표재성, 길이10cm이상, 10cm마다 추가)	SB030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붕합, 근육, 길이2.5cm미만)	SB031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붕합, 근육, 길이2.5cm이상~5.0cm미만)	SB032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붕합, 근육, 길이5.0cm이상~10.0cm미만)	SB039
	창상붕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붕합, 근육, 길이10cm이상, 10cm마다 추가)	SB040

대상이 되는 항목		수가코드
창상봉합술(급여) (안면/경부외)(C)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 15.0cm이상~10.0cm미만)	SC029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표재성, 길이 10cm이상, 10cm 마다 추가)	SC030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 2.5cm 미만)	SC031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 2.5cm이상~5.0cm미만)	SC032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 5.0cm이상~10.0cm미만)	SC039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변연절제포함, 근육, 길이 10cm이상, 10cm마다 추가)	SC040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창상봉합술(급여)(안면/경부외)'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별표95]**

**급여 추가판장에 신경차단술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추가판장에 신경차단술'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내 용	수가코드
거미막하 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 신경차단술	
가. 일회성 차단	
(1) 경추 및 흉추	LA321
(2) 요추 및 천추	LA322
나. 지속적 차단	
(1) 피하터널식 카테터 삽입에 의한 방법	LA222, LA223
(2) 피하매몰 저장기펌프 삽입술에 의한 방법	LA224, LA225
(3) 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 의한 방법	LA226, LA227
다. 경막외패치술 [혈액채취료 포함]	LA228
경막외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 및 뇌신경말초지차단술	
가. 삼차신경절, 상악신경, 하악신경	LA340
나. 삼차신경의 분지	LA341
다. 안면신경	LA232
라. 설인신경	LA233
마. 접구개신경절	LA23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	
가. 대소후두신경	LA241
나. 상후두신경	LA242
다. 후두신경	LA243
라. 횡격막신경	LA244
마. 척추부신경	LA245
바. 액와신경	LA346
사. 액와하부신경	LA347
아. 견갑신경	LA247
자. 늑간신경	LA248
차. 장골서혜신경	LA249
카. 장골하복신경	LA270
타. 음부신경	LA271

파. 좌골신경	LA272
하. 폐쇄신경	LA273
거. 대퇴신경	LA274
너. 외측대퇴피신경	LA275
더. 상박신경총	LA276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	
가. 경신경총	LA251
나. 방척추신경	LA352
다. 미골신경	LA353
라. 선택적 신경근	LA354
마. 척추후근신경절	LA355
바. 척수회백신경교통지	LA356
사. 요천골신경총	LA253
아. 척수신경 후지	LA357
자. 후지내측지	LA358
차. 추간관절차단	LA359
교감신경총 및 신경절차단술	
가. 간단한 것	LA261
나. 복잡한 것	
(1) 흉부교감신경절	LA361
(2) 요부교감신경절	LA362
(3) 복강신경총	LA264
(4) 하장간막신경총	LA265
(5) 상하복신경총	LA366
(6) 외틀이신경절	LA367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에 준하여 ‘급여 추간판장애 신경차단술’를 결정합니다.

**[별표96]**

**주요관절손상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주요관절손상 분류표’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주요관절 (팔꿈치, 손목, 발 목)	팔꿈치의 골절	S52.09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아래팔 부위의 기타 신근 및 힘줄의 손상	S56.5
	아래팔 부위의 다발성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56.7
	팔꿈치의 으깬손상	S57.0
	팔꿈치 부위의 외상성 절단	S58.0
	손 주상골의 골절	S62.0
	기타 수근골의 골절	S62.1
	제1중수골의 골절	S62.2
	기타 중수골의 골절	S62.3
	중수골의 다발골절	S62.4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62.8
	손목의 탈구	S63.0
	손목 및 수근골 인대의 외상성 파열	S63.3
	손목의 측부 인대의 외상성 파열	S63.3
	요골수근골(인대)의 외상성 파열	S63.3
	척골수근골(손바닥) 인대의 외상성 파열	S63.3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가락인대의 외상성 파열	S63.4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측부인대의 외상성 파열	S63.4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바닥쪽 인대의 외상성 파열	S63.4
	중수지골 및 지골간 관절에서 손바닥판 인대의 외상성 파열	S63.4
	손목의 염좌 및 긴장	S63.5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으깬손상	S67.8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을 동반한 손가락(부분)의 복합성 외상성 절단	S68.3
	손목 및 손 부위의 외상성 절단	S68.4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68.8
	손목 및 손의 상세불명 부위의 외상성 절단	S68.9
	내측복사의 골절	S82.5

부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외측복사의 골절	S82.6
	아래다리의 다발골절	S82.7
	아래다리의 기타부분의 골절	S82.8
	발목관절의 탈구	S93.0
	거골의 탈구	S93.0
	비골, 하단의 탈구	S93.0
	거골의 탈구	S93.0
	경골, 하단의 탈구	S93.0
	발목 및 발 부위의 인대의 파열	S93.2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탈구	S93.3
	발목의 염좌 및 긴장	S93.4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S93.6
	족근(인대)의 염좌 및 긴장	S93.6
	족근골중족골(인대)의 염좌 및 긴장	S93.6
	발목의 으깬손상	S97.0
	발목부위의 발의 외상성 절단	S98.0
주요관절 (어깨, 무릎)	견갑골의 골절	S42.1
	쇄골, 견갑골 및 상완골의 다발골절	S42.7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46
	어깨의 으깬손상	S47
	어깨관절의 외상성 절단	S48.0
	무릎뼈의 골절	S82.0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3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S86.0
주요관절 (고관절)	무릎의 으깬손상	S87.0
	대퇴골의 골절	S72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76.1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깬손상	S77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절단	S78	

- 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

[별표97]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대상 수가코드’ 로 분류되는 의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5호, 2020.2.1.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고관절)	N0680, N0681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견관절, 슬관절)	N0684, N0687
급성화농성관절염절개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N0685, N0688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채취술[관절경검사 포함]	N0691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N0692
자가유래연골이식술	N0693, N0695
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피브리글루 이용	N0694
대퇴과 연골손상에 대한 생체재료 사용 개량 미세골절술	N0696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견관절	N0700, N0709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고관절	N0701, N0706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N0703, N0708
사지관절절제술[활막절제를포함]-슬관절	N0710, N0718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고관절]	N0711, N2070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고관절]	N0715, N2710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	N1711, N1721, N3710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N1715, N1725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견관절]	N2071, N2076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슬관절]	N2072, N2077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주관절]	N2073, N2078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완관절]	N2074
인공관절치환술-전치환[족관절]	N2075, N2079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견관절]	N2711, N2716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슬관절]	N2712, N2717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주관절]	N2713, N2718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완관절]	N2714
인공관절치환술-부분치환술[족관절]	N2715, N2719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	N3711, N3716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	N3712, N3717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주관절]	N3713, N3718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완관절]	N3714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족관절]	N3715, N3719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고관절]-복잡	N3720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견관절]	N3721, N3726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슬관절]	N3722, N3727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주관절]	N3723, N3728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완관절]	N3724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전치환[족관절]	N3725, N3729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	N4710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견관절]	N4711, N4716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N4712, N4717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주관절]	N4713, N4718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완관절]	N4714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족관절]	N4715, N4719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고관절]-복잡	N4720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견관절]	N4721, N4726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슬관절]	N4722, N4727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주관절]	N4723, N4728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완관절]	N4724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 경우	
인공관절재치환술-부분치환[족관절]	N4725, N4729
-인공관절삽입물의제거를동시에실시한경우	
절제관절성형술[고관절]	N0721
절제관절성형술[견관절, 슬관절, 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N0722
절제관절성형술[지관절]	N0723
관절고정술[고관절]	N0731
관절고정술[주관절, 완관절, 족관절]	N0733, N0736
관절고정술-족관절에 삼중관절고정술을 실시한 경우	N0735, N0737
관절고정술-견관절	N0738
관절고정술-슬관절	N0739
관절달구 관혈적정복술(고관절)	N0751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건관절)	N0752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주관절)	N0753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슬관절)	N0754
관절탈구 관혈적정복술(완관절, 족관절)	N0755
반월상연골봉합술(내측 또는 외측)	N0823, N0828
반월상연골봉합술(내외측 동시)	N0824, N0829
반월상연골이식술	N0825, N0820
반월판연골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N0821, N0826
반월판연골절제술(내외측 동시)	N0822, N0827
십자인대성형술	N0880, N0881
십자인대접합술	N0890
아킬레스건 재건술	N0920
아킬레스건 연장술	N0921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절제, 봉합, 박리]	N0931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것[이식, 이전, 교환, 인공건성형]	N0932
건및인대성형술-간단한것-근에 대한 봉합술, 이식술, 이행술, 교환술을 실시한 경우	N0933
건및인대성형술-복잡한것-근에 대한 봉합술, 이식술, 이행술, 교환술을 실시한 경우	N0934
건봉성형술	N0935
건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일차봉합술)	N0936
건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복원술(근 및 건성형이 동반된 경우)	N0937, N0938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대상 수가코드'에 준하여 '급여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 대상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별표98]**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 1. 1. 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중증화상환자가 적용일 부터 1년간 해당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단, 등록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별표1-1의 수술을 받는 경우 1년간 재등록할 수 있음(V306은 제외)	
1. '[별표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 면적 기준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247
2. '[별표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에서 중증도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상병에 해당하면서 체표 면적 기준의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248
3. '[별표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으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V305
4. '[별표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의 상병 중 제3호에 해당하는 상병(기능 및 일상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한함)에 대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수상(受傷)한 날 부터 3년 이내에 입원하여 별첨 3의 수술을 받는 경우	V306
5. '[별표4-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의 상병 중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V250

주) 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화상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98-1]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상병**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1.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상병을 말합니다.

<중증도 기준>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머리 및 목의 2도 화상	T20.2
	몸통의 2도 화상	T21.2
	손목 및 손의 2도 화상	T23.2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2도 화상	T22.2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2도 화상	T24.2
	발목 및 발의 2도 화상	T25.2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2도 화상	T30.2
	2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몸통의 3도 화상		T21.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3도 화상		T22.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3도 화상		T24.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3도 화상		T30.3
3		머리 및 목의 3도 화상 중 안면부에 수상한 경우
	몸통의 3도 화상 중 성기 또는 회음부에 수상한 경우	T21.3
	손목 및 손의 3도 화상	T23.3
	발목 및 발의 3도 화상	T25.3
	눈 및 부속기의 화상	T26.0~T26.4
4	호흡기도의 화상	T27.0~T27.3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T28.0~T28.3

<체표면적 기준>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1	신체표면적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2	신체표면적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적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적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적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적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적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적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신체표면적의 10-19%를 침범한 화상	T31.1
	신체표면적의 20-29%를 침범한 화상	T31.2
2	신체표면적의 30-39%를 침범한 화상	T31.3
	신체표면적의 40-49%를 침범한 화상	T31.4
	신체표면적의 50-59%를 침범한 화상	T31.5
	신체표면적의 60-69%를 침범한 화상	T31.6
	신체표면적의 70-79%를 침범한 화상	T31.7
	신체표면적의 80-89%를 침범한 화상	T31.8
	신체표면적의 90%이상을 침범한 화상	T31.9

[별표98-2]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수술**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중증화상의 수술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1.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수술명	수술코드
반흔(흉터)구축성형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1
반흔(흉터)구축성형술 및 식피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2~N0247, NA241~NA243
반흔(흉터)구축성형술 및 국소피판술(운동제한이 있는 것)	N0249

[별표99]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1.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상	특정기호
손상중증도점수(ISS) 15점 이상에 해당하는 중증외상환자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른 권역외상센터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최대 30일	V273

-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외상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00]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362호, 2022.3.1.시행)’ 제4조 별표3(중증질환자 산정특례 대상)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기호
제7조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암환자가 등록일로부터 5년간 해당 상병(C00~C97, D00~D09, D32~D33, D37~D48)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V193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00-1]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대상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질환자 암 산정특례대상’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산정특례 암질환 해당 상병	특정기호
1. 악성 신생물	C00~C97
2. 제자리 신생물	D00~D09
3. 수막의 양성신생물	D32
4.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3
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D48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01]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2대)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2대)’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장질환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144
	기타 전도장애	145
	발작성 빈맥	147
	심방세동 및 조동	148
	기타 심장부정맥	149
	심부전	150
폐색전증	폐색전증	126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02]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3대)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3대)’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호중구감소증	무과립구증	070
혈소판 감소증	특발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D69.3
	기타 원발성 혈소판감소증	D69.4
	이차성 혈소판감소증	D69.5
	상세불명의 혈소판감소증	D69.6
신경병증	약물유발 다발신경병증	062.0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	062.8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03]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5대) 분류표**

-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치료후5대합병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폐렴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	B25.0
	폐렴이 합병된 흉역	B05.2
	수두폐렴	B01.2
	폐독소포자충증	B58.3
	폐포자충증	B48.5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방사선에 의한 급성 폐증상	J70.0
	방사선에 의한 만성 및 기타 폐증상	J70.1
뇌부종	뇌부종	G93.6
	방사선조사후 뇌부종	G93.81
골괴사	골괴사	M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골괴사	M90.5
	턱의 염증성 병태	K10.2
방사선장염	방사선에 의한 위장염 및 결장염	K52.0
	방사선직장염	K62.7
방사선방광염	방사선방광염	N30.4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별표104]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병(4대)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항암방사선치료후4대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방사선피부염	방사선피부염	L58
	방사선에 관련된 피부 및 피하조직의 기타 장애	L59
방사선조사후 감상선기능저하증	치치후 감상선기능저하증	E89.0
방사선조사후 뇌하수체기능저하증	치치후 뇌하수체기능저하증	E89.3
방사선-유발 다발신경병증	기타 명시된 다발신경병증	G62.8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항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05]

**특정암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암’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식도의 악성신생물	C15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신생물	C22
3. 담낭의 악성신생물	C23
4.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신생물	C24
5. 췌장의 악성신생물	C25
6.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
7. 기관지 및 폐의 악성신생물	C34
8.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C41
-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
-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1
9.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0 ~ C72
- 수막의 악성신생물	C70
- 뇌의 악성신생물	C71
-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신생물	C72
10.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81 ~ C96
- 호지킨림프종	C81
- 소포성 림프종	C82
- 비소포성 림프종	C83
- 성숙 T/NK-세포림프종	C84
-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5
-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 다발성 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 신생물	C90
- 림프성 백혈병	C91
- 골수성 백혈병	C92
- 단핵구성 백혈병	C93
-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 악성신생물	C96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지침서의 ‘사망 및 질병이환의 분류번호부여를 위한 선정준칙과 지침’에 따라 C77~C80(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암))의 경우 일차성 악성신생물(암)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 ⑥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06]**

**심혈관질환(특정2대)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혈관질환(특정2대)’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특정 방실차단 및 전도장애	방실차단, 2도	144.1
	완전방실차단	144.2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144.3
	이중성유속차단	145.2
	삼중성유속차단	145.3
기타 심장부정맥	기타 심장부정맥	149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07]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희귀질환자 산정특례대상' 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 1. 1. 시행)' 제5조 별표4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 분	상병명	상병 코드	특정 기호
1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유전성 제8인자결핍	D66	V009
	제8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6	V009
	혈우병 NOS	D66	V009
	A형혈우병	D66	V009
	고전적 혈우병	D66	V009
	유전성 제9인자결핍	D67	V009
	크리스마스병	D67	V009
	제9인자결핍(기능적 결핍을 동반)	D67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성분결핍	D67	V009
	B형혈우병	D67	V009
	폰빌레브란트병	D68.0	V009
	혈관혈우병(Angiohaemophilia)	D68.0	V009
	혈관결손이 있는 제8인자결핍	D68.0	V009
	혈관혈우병(Vascular haemophilia)	D68.0	V009
	유전성 제11인자결핍	D68.1	V009
	C형혈우병	D68.1	V009
	혈장트롬보플라스틴전구물결핍	D68.1	V009
	기타 응고인자의 유전성 결핍	D68.2	V009
	선천성 무피브리노겐혈증	D68.2	V009
	AC글로불린결핍	D68.2	V009
	프로악셀레린결핍	D68.2	V009
	제1인자[피브리노겐]의 결핍	D68.2	V009
	제2인자[프로트롬빈]의 결핍	D68.2	V009
	제5인자[불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7인자[안정]의 결핍	D68.2	V009
	제10인자[스튜어트-프라우]의 결핍	D68.2	V009
	제12인자[하게만]의 결핍	D68.2	V009

2	제13인자[피브리노겐]의 결핍	D68.2	V009
	이상피브리노겐혈증(선천성)	D68.2	V009
	저프로콘버틴혈증	D68.2	V009
	오우렌병	D68.2	V009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크로이츠펠트-야콥병	A81.0	V102
	아급성 해면모양뇌병증	A81.0	V102
	가족성선종성폴립증	D12.6 (M8220/0)	V281
	포도당-6-인산탈수소효소결핍에 의한 빈혈	D55.0	V163
	잠두종독	D55.0	V163
	G6PD결핍빈혈	D55.0	V163
	해당효소의 장애에 의한 빈혈	D55.2	V164
	용혈성 비구상적혈구성 (유전성) II형 빈혈	D55.2	V164
	헥소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피루브산염카이네이스결핍빈혈	D55.2	V164
	상탄당인산염이성화효소결핍빈혈	D55.2	V164
	알파지중해빈혈	D56.0	V232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쿠울리빈혈	D56.1	V232
	중증 베타지중해빈혈	D56.1	V232
	중간형 지중해빈혈	D56.1	V232
	중증 지중해빈혈	D56.1	V232
	델타-베타지중해빈혈	D56.2	V232
	지중해빈혈 소질	D56.3	V232
	태아헤모글로빈의 유전적 존속	D56.4	V232
	비정형 용혈-요독증후군	D59.3	V219
	발작성 야간헤모글로빈뇨	D59.5	V187
	만성 후천성 순수적혈구무형성	D60.0	V023
	원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가족성 저형성빈혈	D61.0	V023
	판코니빈혈	D61.0	V023
	블랙판-다이아몬드증후군	D61.0	V023
	영아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기형을 동반한 범혈구감소증	D61.0	V023	
체질성 무형성빈혈	D61.0	V023	

선천성 무형성(순수)적혈구	D61.0	V023
특발성 무형성빈혈	D61.3	V023
골수형성저하	D61.9	V023
범골수항폐	D61.9	V023
저형성빈혈 NOS	D61.9	V023
선천성 적혈구조혈이상빈혈	D64.4	V220
이상조혈성 빈혈(선천성)	D64.4	V220
항인지질증후군	D68.6	V253
정상적 혈소판결손	D69.1	V106
베르나르-술리에[거대혈소판]증후군	D69.1	V106
글란즈만병	D69.1	V106
그레이혈소판증후군	D69.1	V106
혈소판무력증(출혈성)(유전성)	D69.1	V106
혈소판병증	D69.1	V106
에반스증후군	D69.3	V188
선천성 무과립구증	D70	V108
선천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영아 유전성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증	D70	V108
무과립구성 안지나	D70	V108
호중구감소 NOS	D70	V108
주기성 호중구감소	D70	V108
코스트만병	D70	V108
순환성 호중구감소	D70	V108
호중구감소성 비장비대	D70	V108
베르너-슐츠병	D70	V108
선천성 이상식작용증	D71	V109
만성 (소아기) 육아종성 질환	D71	V109
다형핵호중구의 기능장애	D71	V109
진행성 패혈성 육아종증	D71	V109
세포막수용체복합체[CR3]결손	D71	V109
혈구탐식성 림프조직구증	D76.1	V110
가족성 혈구탐식세망증	D76.1	V110
단핵탐식세포의 조직구증	D76.1	V110
세망조직구증(거대세포)	D76.3	V110
심한 림프선병증을 동반한 동조직구증	D76.3	V110
X-연관무감마글로불린혈증[브루튼](성장호르몬결핍을 동반)	D80.0	V111
보통염색체열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스위스형)	D80.0	V111

유전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원발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0	V111
공통가변성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저감마글로불린혈증 NOS	D80.1	V111
비가촉성 저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을 지닌 B-림프구가 있는 무감마글로불린혈증	D80.1	V111
면역글로불린A의 선택적 결핍	D80.2	V111
면역글로불린G 서브클래스의 선택적 결핍	D80.3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선택적 결핍	D80.4	V111
면역글로불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결핍	D80.5	V111
거의 정상인 면역글로불린 또는 고면역글로불린혈증을 동반한 항체결핍	D80.6	V111
항체결손이 현저한 기타 면역결핍	D80.8	V111
카파경쇄결핍	D80.8	V111
세망세포발생이상을 동반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0	V111
T- 및 B-세포수가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1	V111
B-세포수가 정상이거나 감소된 중증복합면역결핍	D81.2	V111
아데노신탈아미노효소결핍	D81.3	V111
네젤로프증후군	D81.4	V111
퓨린뉴클레오사이드인산화효소결핍	D81.5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형결핍	D81.6	V111
노출림프구증후군	D81.6	V111
주조직적합성복합체 II형결핍	D81.7	V111
바이오틴-의존카복실레이스결핍	D81.8	V111
오멘증후군	D81.8	V111
중증복합면역결핍장애 NOS	D81.9	V111
혈소판감소 및 습진을 동반한 면역결핍	D82.0	V111
비스코트-알드리치증후군	D82.0	V111
디조지증후군	D82.1	V111
흉선성 림프조직무형성	D82.1	V111
면역결핍을 동반한 흉선무형성 또는 형성저하	D82.1	V111
인두낭증후군	D82.1	V111
짧은사지체구를 동반한 면역결핍	D82.2	V111
엡스타인-바르바이러스에 대한 유전성 결손반응에 따른 면역결핍	D82.3	V111
X-연관 림프증식성 질환	D82.3	V111
고면역글로불린E증후군	D82.4	V111
B-세포 수 및 기능의 현저한 이상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0	V111

현저한 면역조절T-세포장애에 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1	V111
B- 또는 T-세포에 대한 자가항체를 동반한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2	V111
상세불명의 공통 가변성 면역결핍	D83.9	V111
림프구기능항원-1결손	D84.0	V111
C1에스테라이스억제인자결핍	D84.1	V111
보체계통의 결손	D84.1	V111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0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	D86.1	V111
림프절의 사르코이드증을 동반한 폐의 사르코이드증	D86.2	V111
피부의 사르코이드증	D86.3	V111
사르코이드관절병증(M14.8*)	D86.8	V111
사르코이드심근염(I41.8*)	D86.8	V111
사르코이드근염(M63.3*)	D86.8	V111
포도막귀밑샘염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흉채성모체염(H22.1*)	D86.8	V111
기타 및 복합부위의 사르코이드증	D86.8	V111
사르코이드증에서의 다발성 뇌신경마비(G53.2*)	D86.8	V111
한랭글로불린혈증성 혈관염	D89.1	V294
말단비대증 및 뇌하수체거인증	E22.0	V112
말단비대증과 관련된 관절병증 (M14.5*)	E22.0	V112
성장호르몬의 과잉생산	E22.0	V112
취한증후군	E23.0	V165
콜만증후군	E23.0	V165
뇌하수체 부신피질자극호르몬의 과다생산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쿠싱병	E24.0	V114
뇌하수체-의존 부신피질기능항진증	E24.0	V114
벨슨증후군	E24.1	V114
이소성 부신피질자극호르몬증후군	E24.3	V114
효소결핍과 관련된 선천성 부신생식기장애	E25.0	V115
염류소실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선천성 부신증식증	E25.0	V115
21-수산화효소결핍	E25.0	V115
부신생식기증후군 NOS	E25.9	V115
바더증후군	E26.8	V254
원발성 부신피질부전	E27.1	V116
애디슨병	E27.1	V116
자가면역성 부신염	E27.1	V116
가족성 부신코티코이드결핍	E27.1	V116

애디슨발증	E27.2	V116
부신피질발증	E27.2	V116
부신발증	E27.2	V116
부신흡혈	E27.4	V116
부신휘색증	E27.4	V116
저알도스테론증	E27.4	V116
부신피질부전 NOS	E27.4	V116
안드로젠저항증후군	E34.5	V166
송과선 기능이상	E34.8	V166
조로증	E34.8	V166
활동성 구루병	E55.0	V207
영아골연화증	E55.0	V207
연소성 골연화증	E55.0	V207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E70.0	V117
기타 고페닐알라닌혈증	E70.1	V117
타이로신대사장애	E70.2	V117
타이로신혈증	E70.2	V117
타이로신증	E70.2	V117
조직흑갈병	E70.2	V117
알칼톤뇨증	E70.2	V117
눈피부백색증	E70.3	V117
눈백색증	E70.3	V117
교차증후군	E70.3	V117
체디아크(-스타인브링크)-히가시증후군	E70.3	V117
헤르만스카-푸들라크증후군	E70.3	V117
바르덴브르그 증후군(백색증을동반한)	E70.3	V117
히스티딘대사장애	E70.8	V117
트립토판대사장애	E70.8	V117
단풍시럽뇨병	E71.0	V117
프로피온산혈증	E71.1	V117
메틸말론산혈증	E71.1	V117
아이소발레린산혈증	E71.1	V117
고발린혈증	E71.1	V117
고류신-이소류신혈증	E71.1	V117
지방산대사장애	E71.3	V117
부신백질디스트로피[애디슨-윌더]	E71.3	V117
근육카르니틴팔미틸트랜스퍼레이스결핍	E71.3	V117
장쇄수산화아실코에이탈수소효소결핍증(VLCAD)	E71.3	V117
아미노산운반장애	E72.0	V117

로베증후군	E72.0	V117
시스틴증	E72.0	V117
판코니(-드토니)(-드브레)증후군	E72.0	V117
시스틴뇨증	E72.0	V117
하르트넵병	E72.0	V117
시스틴축적병(N29.8*)	E72.0	V117
유황황유아미노산대사장애	E72.1	V117
호모시스틴뇨	E72.1	V117
아황산염산화효소결핍	E72.1	V117
시스타타이오닌뇨증	E72.1	V117
메타이오닌혈증	E72.1	V117
고호모시스테인혈증	E72.1	V117
요소회로대사장애	E72.2	V117
아르지닌숙산산뇨	E72.2	V117
시트룰린혈증	E72.2	V117
아르지닌혈증	E72.2	V117
고암모니아혈증	E72.2	V117
라이신 및 하이드록시라이신 대사장애	E72.3	V117
하이드록시라이신혈증	E72.3	V117
글루타르산뇨	E72.3	V117
고라이신혈증	E72.3	V117
오르니틴대사장애	E72.4	V117
오르니틴혈증( I , II형)	E72.4	V117
오르니틴트랜스카바미라제결핍	E72.4	V117
글라이신대사장애	E72.5	V117
사르코신혈증	E72.5	V117
비케톤고글라이신혈증	E72.5	V117
고하이드록시프롤린혈증	E72.5	V117
고프롤린혈증( I , II형)	E72.5	V117
감마글루타밀회로의 장애	E72.8	V117
베타아미노산대사장애	E72.8	V117
선천성 젓당분해효소결핍	E73.0	V117
글리코젠축적병 1b형 A	E74.0	V117
글리코젠합성효소결핍	E74.0	V117
코리병	E74.0	V117
타루이병	E74.0	V117
퐁페병	E74.0	V117
맥아들병	E74.0	V117

글리코젠축적병	E74.0	V117
포르브스병	E74.0	V117
폰기에르케병	E74.0	V117
간인산화효소결핍	E74.0	V117
허스병	E74.0	V117
심장글리코젠증	E74.0	V117
안데르센병	E74.0	V117
갈락토스혈증	E74.2	V117
갈락토스대사장애	E74.2	V117
갈락토카이네이스결핍	E74.2	V117
포스포에놀피루브산염카르복시카이네이스의 결핍	E74.4	V117
피루브산염대사 및 포도당신합성 장애	E74.4	V117
탈수소효소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카복실레이스피루브산염의 결핍	E74.4	V117
옥살산뇨	E74.8	V117
샌드호프병	E75.0	V117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연소형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테이-삭스병	E75.0	V117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0	V117
성인형 GM <sub>2</sub> -강글리오시드증	E75.0	V117
강글리오시드증 NOS	E75.1	V117
류코지질증 IV	E75.1	V117
GM <sub>1</sub>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GM <sub>3</sub> -강글리오시드증	E75.1	V117
파브리(-앤더슨)병	E75.2	V117
니만-픽병	E75.2	V117
화버증후군	E75.2	V117
크라베병	E75.2	V117
설파테이스결핍	E75.2	V117
이염성 백질디스트로피	E75.2	V117
고쇄병	E75.2	V117
신경세포세로이드라이포푸스신증	E75.4	V117
스필라이어-보그트병	E75.4	V117
쿠프스병	E75.4	V117
바텐병	E75.4	V117
안스키-빌쇼스키병	E75.4	V117
월만병	E75.5	V117

대뇌건의 콜레스테롤증[반보게르트-쉐러-엡스타인]	E75.5	V117
I 형 점액다당류증	E76.0	V117
헨러증후군	E76.0	V117
헨러-사이예증후군	E76.0	V117
사이예증후군	E76.0	V117
II 형 점액다당류증	E76.1	V117
헨터증후군	E76.1	V117
모르키오 (-유사)(고전적) 증후군	E76.2	V117
마로토-라미 (경도)(중증) 증후군	E76.2	V117
베타-글루쿠론산분해효소결핍	E76.2	V117
III, IV, VI, VII 형 점액다당류증	E76.2	V117
산필립포 (B형)(C형)(D형) 증후군	E76.2	V117
유코지질증III[거지헨러다발디스트로피]	E77.0	V117
유코지질증II[ I-세포병]	E77.0	V117
라이소솜효소의 번역후 수정의 결손	E77.0	V117
푸고스축적증	E77.1	V117
시알산증[유코지질증 I]	E77.1	V117
당단백질분해의 결손	E77.1	V117
아스파르틸글루코사민노	E77.1	V117
마노스축적증	E77.1	V117
레쉬-니한증후군	E79.1	V221
유전성 코프로포르피린증	E80.2	V118
포르피린증 NOS	E80.2	V118
급성 간헐성 (간성) 포르피린증	E80.2	V118
구리대사장애	E83.0	V119
멘케스(교인모발)(강모)병	E83.0	V119
월슨병	E83.0	V119
혈색소증	E83.1	V255
산성인산분해효소결핍	E83.3	V189
가족성 저인산혈증	E83.3	V189
저인산혈소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골연화증	E83.3	V189
비타민D저항구루병	E83.3	V189
인대사 및 인산분해효소 장애	E83.3	V189
폐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0	V120
장증상을 동반한 남성 섬유증	E84.1	V120
남성 섬유증에서의 태변장폐색 (P75*)	E84.1	V120
원위장폐쇄증후군	E84.1	V120

유전성 아밀로이드 신장병증	E85.0	V121
비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0	V121
가족성 지중해열	E85.0	V121
아밀로이드다발신경병증(포르투갈)	E85.1	V121
신경병성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1	V121
상세불명의 유전자족성 아밀로이드증	E85.2	V121
기관한정아밀로이드증	E85.4	V121
국소적 아밀로이드증	E85.4	V121
카다실	F01.1	V122
레트증후군	F84.2	V122
뇌전증에 동반된 후천성 실어증(失語症)[란다우-클레프너]	F80.3	V256
헨팅톤병	G10	V123
헨팅톤무도병	G10	V123
선천성 비진행성 운동실조	G11.0	V123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전)	G11.1	V123
X-연관 열성 척수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보류된 힘줄반사(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마이오클로누스[헨트운동실조]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본태성 떨림을(를) 동반한 조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	G11.1	V123
프리드라이히운동실조(보통영색체열성)	G11.1	V123
만기발병 소뇌성 운동실조(발병은 보통 20세 이후)	G11.2	V123
DNA복구결손을 수반한 소뇌성 운동실조	G11.3	V123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루이-바]	G11.3	V123
유전성 강직성 허반신마비	G11.4	V123
기타 유전성 운동실조	G11.8	V123
상세불명의 유전성 운동실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변성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병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증후군	G11.9	V123
유전성 소뇌의 운동실조 NOS	G11.9	V123
영아척수성 근위축, I형[베르드니하-호프만]	G12.0	V123
기타 유전성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기의 진행성 연수마비[파지오-룬데]	G12.1	V123
원위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어깨중아리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소아형, II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연소형, III형[쿠겔베르그-벨란더]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성인형 척수성 근위축	G12.1	V123
운동신경세포병 (단, 기타 및 상세불명의 운동신경세포병 (G12.28)은 제외)	G12.2	V123
가족성 운동신경세포병	G12.20	V123
산발형 근위축측삭경화증	G12.21	V123
케네디 병	G12.28	V123
기타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G12.8	V123
상세불명의 척수성 근위축	G12.9	V123
할러포르덴-스파츠병	G23.0	V257
색소성 담창구변성	G23.0	V257
진행성 핵상안근마비 [스틸-리차드슨-올스제위스키]	G23.1	V190
아급성 과사성 뇌병증[리이]	G31.81	V208
다발경화증	G35	V022
뇌간(~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척수(~의) 다발경화증	G35	V022
다발경화증 NOS	G35	V022
전신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파종성(~의) 다발경화증	G35	V022
시신경척수염[데빅병]	G36.0	V276
레녹스-가스토증후군	G40.4	V233
웨스트증후군	G40.4	V233
긴장-간대성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대발작 뇌전증지속상태	G41.0	V125
소발작뇌전증지속상태	G41.1	V125
뇌전증 압상지속상태	G41.1	V125
복합부분뇌전증지속상태	G41.2	V125
기타 뇌전증지속상태	G41.8	V125
상세불명의 뇌전증지속상태	G41.9	V125
발작수면 및 허탈발작	G47.4	V234
멜커슨증후군	G51.2	V167
멜케르손-로젠탈증후군	G51.2	V167
데제린-소타스병	G60.0	V169
루시-레비증후군	G60.0	V169
영아기의 비대성 신경병증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I-IV형	G60.0	V169
유전성 운동 및 감각 신경병증	G60.0	V169
샤르코-마리-투스질환	G60.0	V169
비골근위축(축삭형, 비대형)	G60.0	V169
길랭-바레증후군	G61.0	V126

밀러휘셔증후군	G61.0	V126
다초점 운동신경병증	G61.8	V126
만성 영증성 탈수초성 다발신경병증	G61.8	V126
중증근무력증	G70.0	V012
선천성 및 발달성 근무력증	G70.2	V012
조기수축을 동반하는 양성 어깨종아리[에머리-드라이프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뒤센 또는 베커와 유사한 보통염색체열성, 소아형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어깨종아리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중증[뒤센]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양성[베커]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눈인두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지대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원위성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얼굴어깨팔 근디스트로피	G71.0	V012
근긴장장애	G71.1	V012
거짓근긴장증	G71.1	V012
신경근육긴장[아이작스]	G71.1	V012
중상성 근긴장증	G71.1	V012
선천성 근긴장증 NOS	G71.1	V012
열성[베커]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우성[통슨] 선천성 근긴장증	G71.1	V012
연골형성장애성 근긴장증	G71.1	V012
근긴장디스트로피[스타이너트]	G71.1	V012
선천성 이상근긴장증	G71.1	V012
다발성 병	G71.2	V012
선천성 근병증	G71.2	V012
근섬유의 특정 형태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G71.2)	G71.2	V012
미세섬 병	G71.2	V012
네말린근병증	G71.2	V012
선천성 근디스트로피 NOS	G71.2	V012
근세관성 (중심핵성) 근병증	G71.2	V012
중심핵 병	G71.2	V012
근섬유형 불균형	G71.2	V0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미토콘드리아근병증	G71.3	V012
멜라스증후군	G71.3	V012
유전성 근병증 NOS	G71.9	V012
주기마비(가족성) 저칼륨혈성	G72.3	V258
람베르트-이튼증후군(COO-D48 †)	G73.1*	V259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형	G90.5	V177
복합부위통증증후군 II형	G90.6	V168
척수공동증 및 연수공동증	G95.0	V172
폭스디스트로피	H18.5	V307
원추각막	H18.6	V307
맥락막결손	H31.2	V295
코츠망막병증	H35.0	V260
색소망막염	H35.51	V209
스타르가르트병	H35.58	V209
레베르선천성흑암시	H35.59	V209
상세불명의 유전성 망막디스트로피	H35.59	V209
컨스-세이어증후군	H49.8	V261
원발성 폐동맥고혈압	I27.0	V202
아이젠먼거복합	I27.8	V226
아이젠먼거증후군	I27.8	V226
비가역적 확장성 심근병증	I42.0	V127
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1	V127
비대성 대동맥판하협착	I42.1	V127
비폐색성 비대성 심근병증	I42.20	V127
심내막심근(호산구성)병	I42.3	V127
심내막심근(열대성)섬유증	I42.3	V127
뢰플러심내막염	I42.3	V127
심내막탄력섬유증	I42.4	V127
선천성 심근병증	I42.4	V127
긴QT증후군	I49.82	V296
모야모야병	I67.5	V128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3.1	V129
유전성 출혈성 모세혈관확장증	I78.0	V297
랑뒤-오슬러-웨버병	I78.0	V235
버드-키아리증후군	I82.0	V173
폐포단백질증	J84.0	V222
특발성 폐성유증	J84.1	V236
불완전상아질형성	K00.51	V310

이완불능증	K22.0	V315
소장의 크론병	K50.0	V130
대장의 크론병	K50.1	V130
소장 및 대장 모두의 크론병	K50.8	V130
가성 장 폐색	K56.0	V312
원발성 담즙성 경변증	K74.3	V174
자가면역성 간염	K75.4	V175
원발성 담관염/경화성 담관염(두 상병 진단기준 모두 충족하는 경우)	K83.0	V262
보통천포창	L10.0	V132
낙엽천포창	L10.2	V210
수포성 유사천포창	L12.0	V211
흉터유사천포창	L12.1	V212
양성 점막유사천포창	L12.1	V212
후천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L12.3	V176
전신농포건선	L40.1	V313
손발바닥농포증	L40.3	V313
중증 화농성 한선염	L73.22	V309
성인발병 스틸병	M06.1	V298
류마티스인자가 있거나 없는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류마티스관절염	M08.0	V133
연소성 강직척추염	M08.1	V133
전신적으로 발병된 연소성 관절염	M08.2	V133
(혈청감사음성인)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만성 연소성 다발관절염	M08.3	V133
결절성 다발동맥염	M30.0	V134
폐침범을 동반한 다발동맥염[처그-스트라우스]	M30.1	V134
연소성 다발동맥염	M30.2	V134
굿파스처증후군	M31.0	V135
혈전성 혈소판감소성 자반	M31.1	V135
혈전성 미세혈관병증	M31.1	V135
베게너육아종증	M31.3	V135
괴사성 호흡기육아종증	M31.3	V135
대동맥궁증후군[다까야수]	M31.4	V135
현미경적 다발동맥염	M31.7	V238
기관 또는 계통 침범을 동반한 전신홍반루푸스	M32.1	V136
심내막염 동반 전신홍반루푸스(139.8*)	M32.1	V136
리브만-삭스병(139.0*)	M32.1	V136



루푸스 심장낭염(132.8*)	M32.1	V136
폐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J99.1+)	M32.1	V136
사구체질환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M32.1	V136
세뇨관-간질신장병증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16.4*)	M32.1	V136
신장침범 동반 전신홍반루푸스(N08.5*, N16.4*)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뇌염(G05.8*)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근병증(G73.7*)	M32.1	V136
전신홍반루푸스에서의 대뇌동맥염(168.2*)	M32.1	V136
연소성 피부근염	M33.0	V137
기타 피부근염	M33.1	V137
다발근염	M33.2	V137
진행성 전신경화증	M34.0	V138
크레스트증후군	M34.1	V138
석회증, 레이노현상, 식도기능장애, 경지증(硬指症), 모세혈관확장의 조합	M34.1	V138
폐침범을 동반한 전신경화증(J99.1*)	M34.8	V138
근병증을 동반한 전신경화증(G73.7*)	M34.8	V138
근병증을(를) 동반한 슈그렌증후군(G73.7*)	M35.0	V139
폐침범을(를) 동반한 슈그렌증후군(J99.1*)	M35.0	V139
건조증후군[슈그렌]	M35.0	V139
각막결막염을(를) 동반한 슈그렌증후군(H19.3*)	M35.0	V139
신세뇨관-간질성 장애을(를) 동반한 슈그렌증후군(N16.4*)	M35.0	V139
혼합결합조직병	M35.1	V139
베체트병	M35.2	V139
류마티스성 다발근통	M35.3	V139
미만성(호산구성) 근막염	M35.4	V139
다초점 섬유경화증	M35.5	V139
재발성 지방층염[웨버-크리스찬]	M35.6	V139
진행성 골화섬유형성이상	M61.1	V224
두개골의 파젯병	M88.0	V213
기타 뼈의 파젯병	M88.8	V213
상세불명의 뼈의 파젯병	M88.9	V213
수근반달뼈의 골연골증(연소성) [킨빅]	M92.2	V299
성인의 킨빅병	M93.1	V299
재발성 다발연골염	M94.1	V178
소사구체이상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최소변화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0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사구체병변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유리질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및 분절성 경화증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초점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1	V263
미만성 막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2	V263
미만성 메산지음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3	V263
미만성 모세혈관내 증식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4	V263
미만성 메산지음 모세혈관성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1형, 3형 또는 NOS를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5	V263
고밀도침착병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막증식성 사구체신염, 2형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6	V263
미만성 반월형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모세혈관의 사구체신염을 동반한 선천성 신증후군	N04.7	V263
신장성 요붕증	N25.1	V141
덴디-워커증후군	Q03.1	V239
무뇌이랑증	Q04.3	V214
큰뇌이랑증	Q04.3	V214
분열뇌증	Q04.6	V240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경추	Q05.0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흉요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척추	Q05.1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요천추	Q05.2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이분천추	Q05.3	V179
수두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4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경추	Q05.5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흉추	Q05.6	V179
이분흉요추 NOS	Q05.6	V179
이분척추 NOS	Q05.6	V179
이분요천추 NOS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요추	Q05.7	V179
수두증이 없는 이분천골	Q05.8	V179
상세불명의 이분척추	Q05.9	V179
척수이개증	Q06.2	V180
아놀드-키아리증후군	Q07.0	V143

(외)이도의 선천성 결여, 폐쇄, 협착	Q16.1	V291
소이증(小耳症)	Q17.2	V291
총동맥관	Q20.0	V144
동맥간존속	Q20.0	V144
타우시그-빙중후군	Q20.1	V144
이중출구우심실	Q20.1	V144
이중출구좌심실	Q20.2	V144
대혈관의 (완전)전위	Q20.3	V144
심실대혈관연결불일치	Q20.3	V144
대동맥의 우축전위	Q20.3	V144
단일심실	Q20.4	V225
수정혈관전위	Q20.5	V144
방실연결불일치	Q20.5	V144
좌축전위	Q20.5	V144
심실내번	Q20.5	V144
방실중격결손	Q21.2	V269
총방실관	Q21.2	V269
심내막용기결손	Q21.2	V269
제1공심방중격결손( I 형)	Q21.2	V269
팔로네징후	Q21.3	V269
폐동맥 협착 또는 폐쇄, 대동맥의 우축위치 및 우심실비대를 동반한 심실중격결손	Q21.3	V269
대동맥폐동맥창	Q21.4	V269
대동맥폐동맥중격결손	Q21.4	V269
대동맥중격결손	Q21.4	V269
아이젠엔거결손	Q21.8	V226
폐동맥판폐쇄	Q22.0	V145
삼첨판폐쇄	Q22.4	V146
에브스타인이상	Q22.5	V146
형성저하성 우심중후군	Q22.6	V146
대동맥판의 선천협착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폐쇄	Q23.0	V147
선천성 대동맥판협착	Q23.0	V147
이첨대동맥판막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기능부전	Q23.1	V147
대동맥판의 선천성 기능부전	Q23.1	V147
선천성 대동맥판류역류	Q23.1	V147
선천성 승모판협착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폐쇄	Q23.2	V147
선천성 승모판기능부전	Q23.3	V147
(승모판 협착 또는 폐쇄와 함께) 상행대동맥의 형성저하와 좌심실의 결손발육을 동반하는 대동맥구멍 및 판막의 폐쇄 또는 현저한 발육부전	Q23.4	V147
형성저하성 좌심중후군	Q23.4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기타 선천기형	Q23.8	V147
대동맥판 및 승모판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23.9	V147
선천성 대동맥판하협착	Q24.4	V270
관상동맥혈관의 기형	Q24.5	V148
선천성 관상동맥류	Q24.5	V148
선천성 심장치단	Q24.6	V271
대동맥의 축착	Q25.1	V272
대동맥의 축착(관전, 관후)	Q25.1	V272
대동맥의 폐쇄	Q25.2	V272
판막상부 대동맥협착	Q25.3	V272
대동맥의 협착	Q25.3	V272
폐동맥의 폐쇄	Q25.5	V149
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하)(상)대정맥의 선천성 협착	Q26.0	V150
좌상대정맥존속	Q26.1	V150
전폐정맥결합이상	Q26.2	V150
부분폐정맥결합이상	Q26.3	V150
상세불명의 폐정맥결합이상	Q26.4	V150
문맥결합이상	Q26.5	V150
문맥-간동맥루	Q26.6	V150
무설증(無舌症)	Q38.3	V241
담관의 폐쇄	Q44.2	V181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열성	Q61.1	V264
다낭성 신장, 영아형	Q61.1	V264
다낭성 신장, 보통염색체우성	Q61.2	V264
방광외반	Q64.1	V227
방광이소증	Q64.1	V227
방광외번	Q64.1	V227
선천성 다발관절만곡증	Q74.3	V292
두개골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Acrocephaly)	Q75.0	V265
두개골의 불완전유합	Q75.0	V265
뾰족머리증(Oxycephaly)	Q75.0	V265

삼각머리증	Q75.0	V265
크루존병	Q75.1	V151
두개안면골이골증	Q75.1	V151
하악안면골이골증	Q75.4	V182
프란체스웨티 증후군	Q75.4	V182
트레차-콜린스 증후군	Q75.4	V182
연골무발생증	Q77.0	V228
연골발생저하증	Q77.0	V228
치사성 단신	Q77.1	V228
질식성 흉부형성이상[쥐느]	Q77.2	V228
짧은늑골증후군	Q77.2	V228
정상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어깨고관절 정상 연골형성이상(1형-3형)	Q77.3	V228
X-연관 우성 연골형성이상	Q77.3	V228
연골무형성증	Q77.4	V228
연골형성저하증	Q77.4	V228
선천성 골경화증	Q77.4	V228
디스트로피성 형성이상	Q77.5	V228
엘리스-반크레벨트증후군	Q77.6	V228
연골외배엽형성이상	Q77.6	V228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만발성 척추골단형성이상	Q77.7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기타 골연골형성이상	Q77.8	V228
말단왜소 형성이상	Q77.8	V228
관상골 및 척추의 성장결손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골연골형성이상	Q77.9	V228
불완전골형성	Q78.0	V183
골취약증(Fragilitas ossium)	Q78.0	V183
골취약증(Osteopsathyrosis)	Q78.0	V183
다골성 섬유성 형성이상	Q78.1	V154
얼브라이트(-맥콘)(-스텐버그)증후군	Q78.1	V154
골화석증	Q78.2	V229
알베르스-쇤베르그증후군	Q78.2	V229
카무라타-앵겔만증후군	Q78.3	V266
내연골증	Q78.4	V230
마푸치증후군	Q78.4	V230
올리에르병	Q78.4	V230
필레증후군	Q78.5	V215

다발선천외골증	Q78.6	V242
골간병적조직연결	Q78.6	V242
유전성 다발외골증	Q78.6	V242
선천성 황격막탈장	Q79.0	V155
황격막결여	Q79.1	V155
황격막 탈출	Q79.1	V155
황격막의 기타 선천기형	Q79.1	V155
황격막의 선천기형 NOS	Q79.1	V155
배꼽내장탈장	Q79.2	V155
선천복벽탈장	Q79.2	V155
복벽파열증	Q79.3	V155
말린지두배증후군	Q79.4	V155
복벽의 기타 선천기형	Q79.5	V155
엘리스-단로스증후군	Q79.6	V155
근골격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Q79.8	V155
부근	Q79.8	V155
선천성 짧은힘줄	Q79.8	V155
근육의 결여	Q79.8	V155
폴란드증후군	Q79.8	V155
힘줄의 결여	Q79.8	V155
선천성 근위축	Q79.8	V155
선천성 협착띠	Q79.8	V155
근골격계통의 상세불명의 선천기형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이상 NOS	Q79.9	V155
근골격계통의 선천변형 NOS	Q79.9	V155
X-연관비늘증	Q80.1	V300
X-연관비늘증; 스테로이드설파타제결핍	Q80.1	V300
할리퀸태아	Q80.4	V300
치사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1	V184
헤를리츠증후군	Q81.1	V184
디스트로피성 수포성 표피박리증	Q81.2	V184
탄력섬유성 거짓황색증	Q82.8	V314
신경섬유종증(비악성)	Q85.0	V156
폰렉글링하우젠병	Q85.0	V156
신경섬유종증(비악성) 1형, 2형	Q85.0	V156
결절성 경화증	Q85.1	V204
에필로이아	Q85.1	V204
부르느뷰병	Q85.1	V204
폰 히펠-린다우 증후군	Q85.8	V216

포이츠-제거스 증후군	Q85.8	V216
스터자-베버(-디미트리) 증후군	Q85.8	V216
(이상형태성) 태아알코올증후군	Q86.0	V157
고린-사우드라-모스 증후군	Q87.0	V185
주로 얼굴형태에 영향을 주는 선천기형증후군	Q87.0	V185
잠복안구증후군	Q87.0	V185
골덴하 증후군	Q87.0	V185
로빈 증후군	Q87.0	V185
첨두다지유합증	Q87.0	V185
첨두유합지증	Q87.0	V185
단안증	Q87.0	V185
외비우스 증후군	Q87.0	V185
입-얼굴-손발 증후군	Q87.0	V185
휘파람부는 얼굴	Q87.0	V185
카펜터 증후군	Q87.0	V185
안치지의 형성이상	Q87.0	V185
드 랑즈 증후군	Q87.1	V158
두보위츠 증후군	Q87.1	V158
프라다-윌리 증후군	Q87.1	V158
로비노-실버만-스미스 증후군	Q87.1	V158
시클 증후군	Q87.1	V158
주로 단신과 관련된 선천기형증후군	Q87.1	V158
아르스코그 증후군	Q87.1	V158
코케인 증후군	Q87.1	V158
누난 증후군	Q87.1	V158
러셀-실버 증후군	Q87.1	V158
스미스-렘라-오피츠 증후군	Q87.1	V158
쉐그렌-라손 증후군	Q87.1	V158
루빈스타인-데이비 증후군	Q87.2	V243
바테르 증후군	Q87.2	V243
클리펠-트레노우네이-베버 증후군	Q87.2	V243
홀트-오람 증후군	Q87.2	V243
손발톱무릎 증후군	Q87.2	V243
소토스 증후군	Q87.3	V244
위버 증후군	Q87.3	V244
마르팡증후군	Q87.4	V186
알포트 증후군	Q87.8	V267
로렌스-문(-바르데)-비들 증후군	Q87.8	V267
젤웨거 증후군	Q87.8	V267

좌치 증후군	Q87.8	V267
21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0.0	V159
21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0.1	V159
21삼염색체증, 전위	Q90.2	V159
21삼염색체증 NOS	Q90.9	V159
18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0	V160
18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1	V160
18삼염색체증, 전위	Q91.2	V160
13삼염색체증, 감수분열비분리	Q91.4	V160
13삼염색체증, 섞임증형(유사분열비분리)	Q91.5	V160
13삼염색체증, 전위	Q91.6	V160
13삼염색체증후군	Q91.7	V160
5번 염색체 단완의 결손	Q93.4	V205
고양이울음증후군	Q93.4	V205
개취22증후군	Q93.5	V217
엔젤만증후군	Q93.5	V217
스미스-마제니스 증후군	Q93.5	V217
윌리엄스 증후군	Q93.5	V217
핵형45, X	Q96.0	V021
핵형46, X동인자(Xq)	Q96.1	V021
동인자(Xq)를 제외한 이상 성염색체를 가진 핵형46, X	Q96.2	V021
섞임증, 45, X/46, XX 또는 XY	Q96.3	V021
섞임증, 이상성염색체를 가진 45, X/기타 세포열	Q96.4	V021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7, XXY	Q98.0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두 개 이상의 X염색체를 가진 남성	Q98.1	V218
클라인펠터증후군, 핵형 46, XX를 가진 남성	Q98.2	V218
취약X증후군	Q99.2	V245
3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극히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0
4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기타염색체이상질환자가 해당 상 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01
5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7조 제2항에 따른 요양기관을 통해 등록된 상세불명희귀질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V999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희귀 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08]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중증난치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1.1.시행)’ 제5조 별표4의2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 번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1	만성신부전증환자의 경우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 외래진료,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또는 인공신장투석을 위한 혈관 시술·수술 관련 진료		V001
	계속적 복막관류술 실시, 복막관류액 수령 당일 외래 진료 또는 해당 시술 관련 입원진료		V003
2	혈우병 환자가 항응고인자·동결침전제 등의 약제 및 기타 혈우병 치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해당 치료 관련 입원 진료		
	후천성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간질환에 의한 응고인자결핍	D68.4	V284
3	장기이식 환자의 경우 간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3
	체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4
	심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15
	신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005
	폐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7
	소장 이식술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입원치료 및 외래진료		V278
	정신질환자가 해당 상병으로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4	편집조현병	F20.0	V161
	편집분열성 조현병	F20.0	V161

구 번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파과형조현병	F20.1	V161
	해체성 조현병	F20.1	V161
	파과증	F20.1	V161
	긴장성 조현병	F20.2	V161
	긴장성 혼미	F20.2	V161
	조현병성 카탈렐시	F20.2	V161
	조현병성 긴장증	F20.2	V161
	조현병성 납굴증	F20.2	V161
	미분화조현병	F20.3	V161
	비정형조현병	F20.3	V161
	조현병후우울증	F20.4	V161
	잔류조현병	F20.5	V161
	만성 미분화조현병	F20.5	V161
	레스트루스탄트(조현병성)	F20.5	V161
	조현병성 잔류상태	F20.5	V161
	단순형조현병	F20.6	V161
	기타 조현병	F20.8	V161
	체감장애조현병	F20.8	V161
	조현양상장애 NOS	F20.8	V161
	조현양상정신병 NOS	F20.8	V161
	상세불명의 조현병	F20.9	V161
	조현형장애	F21	V161
	잠재 조현병성 반응	F21	V161
	경계성 조현병	F21	V161
	잠재성 조현병	F21	V161
	전정신병적 조현병	F21	V161
	전구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신경증성 조현병	F21	V161
	거짓정신병증성 조현병	F21	V161
	조현형인격장애	F21	V161
	망상장애	F22.0	V161
	편집증	F22.0	V161
	편집증정신병	F22.0	V161
	편집증상태	F22.0	V161
	망상분열증(만기의)	F22.0	V161

구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민감망상	F22.0	V161
	기타 지속성 망상장애	F22.8	V161
	망상성 이상형태공포증	F22.8	V161
	퇴행성 편집상태	F22.8	V161
	불평편집증	F22.8	V161
	상세불명의 지속적 망상장애	F22.9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없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0	V161
	조현병 및 상세불명의 증상이 없는 순환형 정신병	F23.0	V161
	조현병 증상이 없거나 상세불명의 부패 델리랑뜨	F23.0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급성 다형성 정신병장애	F23.1	V161
	조현병의 증상이 있는 순환형 정신병	F23.1	V161
	조현병 증상이 있는 부패 델리랑뜨	F23.1	V161
	급성 조현병-유사정신병장애	F23.2	V161
	급성 (미분화형) 조현병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장애	F23.2	V161
	단기 조현양상정신병	F23.2	V161
	몽환정신병	F23.2	V161
	조현병성 반응	F23.2	V161
	기타 급성 주로 망상우세성 정신병장애	F23.3	V161
	편집반응	F23.3	V161
	심인성 편집정신병	F23.3	V161
	기타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8	V161
	상세불명의 급성 및 일과성 정신병장애	F23.9	V161
	단기 반응성 정신병 NOS	F23.9	V161
	반응성 정신병	F23.9	V161
	유도망상장애	F24	V161
	감응성 정신병	F24	V161
	유도편집장애	F24	V161
	유도정신병장애	F24	V161
	조현정동장애,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양상정신병, 조증형	F25.0	V161
	조현정동장애,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정동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조현양상정신병, 우울증형	F25.1	V161

구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조현정동장애, 혼합형	F25.2	V161
	순환성 조현병	F25.2	V161
	혼합형 조현병성 및 정동성 정신병	F25.2	V161
	기타 조현정동장애	F25.8	V161
	상세불명의 조현정동장애	F25.9	V161
	조현정동정신병 NOS	F25.9	V161
	기타 비기질성 정신병장애	F28	V161
	만성 환각성 정신병	F28	V161
	상세불명의 비기질성 정신병	F29	V161
	정신병 NOS	F29	V161
	아래의 상병을 갖고 있는 환자가 해당 상병 관련 진료를 받은 당일 외래진료 또는 입원진료		
	도슨 붕입체뇌염	A81.1	V282
	아급성 경화성 범뇌염	A81.1	V282
	밴보게르트 경화성 백질뇌병증	A81.1	V282
	진행성 다초점백질뇌병증	A81.2	V282
	다초점백질뇌병증 NOS	A81.2	V282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8	V282
	쿠루	A81.8	V282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의 비정형바이러스감염	A81.9	V282
	중추신경계통의 프리온질환 NOS	A81.9	V282
	마이코박테리아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B20.0	V103
	결핵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B20.0	V103
	기타 세균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B20.1	V103
	거대세포바이러스병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B20.2	V103
	기타 바이러스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B20.3	V103
	칸디다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B20.4	V103
	기타 진균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B20.5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jirovecii pneumonia)	B20.6	V103
	폐포자충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 병 (HIV disease resulting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B20.6	V103

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다발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7	V103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8	V103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0.9	V103
	감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NOS	B20.9	V103
	카포시육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0	V103
	버킷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1	V103
	기타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2	V103
	림프성, 조혈성 및 관련 조직의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3	V103
	다발성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7	V103
	기타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8	V103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1.9	V103
	뇌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0	V103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치매	B22.0	V103
	림프성 간질폐렴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1	V103
	소모증후군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슬림병	B22.2	V103
	성장장애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2	V103
	달리 분류된 다발성 질환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2.7	V103
	급성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감염증후군	B23.0	V103
	(지속성) 전신림프선병증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1	V1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혈액학적 및 면역학적 이상을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2	V103
	기타 명시된 병태를 유발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3.8	V103
	상세불명의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병	B24	V103
	후천면역결핍증후군 NOS	B24	V103
	에이즈-관련복합 NOS	B24	V103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2	V162
	약물유발 무형성빈혈	D61.1	V283

코드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약물유발 호중구감소	D70	V285
	과당대사장애	E74.1	V286
	유전성 과당불내성	E74.1	V286
	과당-1, 6-이인산분해효소결핍	E74.1	V286
	수크레이스결핍	E74.3	V286
	장성 탄수화물흡수의 기타 장애	E74.3	V286
	포도당-갈락토스흡수장애	E74.3	V286
	신생물말림 신경근육병증 및 신경병증	G13.0	V287
	신생물말림 변연부뇌병증(C00-D48+)	G13.1	V287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을 침범하는 계통적 위축	G13.8	V287
	파킨슨병	G20	V124
	특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원발성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G20	V124
	편측파킨슨증	G20	V124
	떨림마비	G20	V124
	파킨슨증 또는 파킨슨병 NOS	G20	V124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국소발병의 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0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복합부분발작을 동반한 국소화-관련 (초점성)(부분적) 증상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21	V279
	난치성 뇌전증을 동반한 전신성 특발성 뇌전증 및 뇌전증증후군	G40.31	V279
	결핵(-에서의) 다발신경병증(A17.82†)	G63.0	V170
	디프테리아(-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6.8†)	G63.0	V170
	감염성 단핵구증(-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7.-†)	G63.0	V170
	나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30.-†)	G63.0	V170
	라임병(-에서의) 다발신경병증(A69.2†)	G63.0	V170
	볼거리(-에서의) 다발신경병증(B26.8†)	G63.0	V170
	포진후(-에서의) 다발신경병증(B02.2†)	G63.0	V170
	만기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2.1†)	G63.0	V170
	만기선천매독(-에서의) 다발신경병증(A50.4†)	G63.0	V170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다발신경병증	G63.0	V170
	독성근신경장애	G70.1	V288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노년성 황반변성(삼출성)	H35.31	V201
	울혈성 심근병증	I42.0	V289
	기타 비대성 심근병증	I42.28	V289
	기타 제한성 심근병증	I42.5	V289
	궤양성 (만성) 범결장염	K51.0	V131
	궤양성 (만성) 직장염	K51.2	V131
	좌측 결장염	K51.5	V131
	기타 궤양성 대장염	K51.8	V131
	상세불명의 궤양성 대장염	K51.9	V131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L20.85	V308
	중증 보통건선	L40.00	V280
	비장림프절비대 및 백혈구감소가 동반된 류마티스관절염	M05.0	V223
	팻티증후군	M05.0	V223
	류마티스폐질환(J99.0*)	M05.1	V223
	류마티스혈관염	M05.2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관절염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막염(132.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다발신경병증(663.6*)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141.8*)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근병증(673.7*)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내막염(139.→*)	M05.3	V223
	기타 기관 및 계통의 침범을 동반한 류마티스 심장염(152.8*)	M05.3	V223
	기타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8	V223
	상세불명의 혈청검사양성 류마티스관절염	M05.9	V223
	절단성 관절염(L40.5 †)	M07.1	V237
	건선척추염(L40.5 †)	M07.2	V237
	기타 건선관절염(L40.5 †)	M07.3	V237
	과민성 혈관염	M31.0	V290

구분	상병명	상병코드	특정기호
	강직척추염, 척추의 여러 부위	M45.0	V140
	강직척추염, 후두환추부	M45.1	V140
	강직척추염, 경부	M45.2	V140
	강직척추염, 경흉추부	M45.3	V140
	강직척추염, 흉추부	M45.4	V140
	강직척추염, 흉요추부	M45.5	V140
	강직척추염, 요추부	M45.6	V140
	강직척추염, 요천부	M45.7	V140
	강직척추염, 천주 및 천미추부	M45.8	V140
	신생아의 호흡곤란증후군	P22.0	V142
	유리질막병	P22.0	V142
	신생아의 기타 호흡곤란	P22.8	V142
	신생아의 상세불명의 호흡곤란	P22.9	V142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중증 난치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09]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4호, 2023. 1. 1. 시행)’ 제5조의2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분	산정특례대상 및 적용기간	특정 기호
결핵 질환	<p>가. 대상 :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결핵질환자 중 결핵치료가 진행 중인 자가 항결핵제 내성(U84.3) 및 결핵(A15-A19)상병으로 확진 받아 공단에 산정특례로 등록한 자</p> <p>나. 적용기간 : 산정특례 적용시작일부터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 따른 산정특례 종료일까지</p> <p>- 산정특례 종료일은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3조 및 별지서식의 치료결과보고에서 치료결과 구분항목이 “완치” 또는 “완료” 일 경우는 치료종료일을, “사망”은 사망일을, “진단변경”은 진단변경일로 “중단 및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은 해당 요양기관의 최종 진료일로 한다.</p>	V000

주)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이 개정되는 경우 이후 약관에서 보장하는 결핵질환자 산정특례 대상 해당여부는 당시 시행되고 있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별표110]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인공관절치환수술 대상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 및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질병 및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감염성 관절병증	M00-M03
2. 염증성 다발관절병증	M05-M14
3. 류마티스페질환(M05.1+)	J99.0
4. 고관절증	M16
5. 기타 관절증	M19
6. 사지의 기타 후천변형	M21
7. 기타 특정 관절장애	M24
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관절장애	M25
9. 강직성 척추염	M45
10.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M65
11. 윤활막 및 힘줄의 자연파열	M66
12. 윤활막 및 힘줄의 기타 장애	M67
13. 사용, 과용 및 압박에 관련된 연조직장애	M70
14. 기타 윤활낭병증	M71
15. 섬유모세포장애	M72
16. 어깨병변	M75
17. 기타 골부착부병증	M77
18.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M79
19. 골밀도 및 구조장애	M80-M85
20. 기타 골병증	M86-M90
21. 연골병증	M91-M94
22.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기타 후천성 변형	M95
2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후 근골격장애	M96
2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생체역학적 병변	M99
25.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26.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27.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28. 대퇴골의 골절	S72
29.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30. 내부 정형외과적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	T84
31. 기타 내부 인공삽입장치, 삽입물 및 이식편의 합병증	T8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11】**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대상 수가코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의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인공호흡기 치료 (12시간 초과)	•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고빈도 진동 호흡모드 이용)	M0860
	• 인공호흡(기관내삽관료 별도)-12시간초과1일당	M5860
저체온요법	• 치료적저체온요법(1일당)	M5970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	M5990
	• 선택적 두부 저체온 요법-처치일 다음날부터 1일당	M5991
대동맥 내 풍선펌프	• 대동맥내풍선펌프	01921
	• 대동맥내풍선펌프-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01922
부분체외 순환	• 부분체외순환	01901
	•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01902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시술당일	01903
	• 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익일 이후(1일당) -10시간 초과 계속 사용	01904
	• 부분체외순환-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01905
	•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익일부터(1일당) -ILA Membrane Ventilator 사용	01906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개정에 따라 수가코드 및 분류번호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에 준하여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 ③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외에 ‘급여 특정중증치료(4종)’ 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12]

**특정 감염질환 분류표**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감염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특정패혈증II	독성 쇼크증후군	A483
	패혈성 쇼크	R572
	기타 쇼크	R578
	살모넬라 패혈증	A021
	패혈증페스트	A207
	탄저패혈증	A227
	에리시펠로트릭스 패혈증	A267
	리스테리아패혈증	A327
	위터하우스-프리데릭센증후군	A391
	급성 수막구균혈증	A392
	만성 수막구균혈증	A393
	상세불명의 수막구균혈증	A394
	기타 수막구균감염	A398
	상세불명의 수막구균 감염	A399
	연쇄알균패혈증	A40
	기타 패혈증	A41
	방선균패혈증	A427
칸디다패혈증	B377	
외상 후 감염 수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외상후 상처감염	T793
수술 후 감염 수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처치에 따른 감염	T814
기타 감염 질환 수술	장티푸스 및 파라티푸스	A01
	국소적 살모넬라감염	A022
	기타 명시된 살모넬라감염	A028
	상세불명의 살모넬라 감염	A029
	보툴리누스 중독	A051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기타 부위의 아메바성 감염	A068
	상세불명의 아메바증	A069
	기타 부위의 결핵	A1888
	좁쌀결핵	A19
	림프절형페스트	A200
	연조직염피부형 페스트	A201
	페스트수막염	A203
	기타 형태의 페스트	A208
	상세불명의 페스트	A209
	퀘양림프절 야생토끼병	A210
	눈림프절야생토끼병	A211
	전신야생토끼병	A217
	기타 형태의 야생토끼병	A218
	상세불명의 야생토끼병	A219
	기타 형태의 탄저병	A228
	상세불명의 탄저병	A229
	브루셀라병	A23
	마비지 및 유사마비지	A24
	쥐물음열	A25
	피부유사단독	A260
	기타형태의 유사단독	A268
	상세불명의 유사단독	A269
	렙토스피라병	A27
	파스퇴렐라증	A280
	장외에르시니아증	A282
	달리분류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동물 매개의 세균성 질환	A288
	상세불명의 동물매개의 세균성 질환	A289
	나병[한센병]	A30
	기타 마이코박테리아감염	A318
	상세불명의 마이코박테리아감염	A319
	피부 리스테리아병	A320
	기타 형태의 리스테리아병	A328
	상세불명의 리스테리아병	A329
	기타 파상풍	A35
	기타 디프테리아	A368
	상세불명의 디프테리아	A369
	성홍열	A38
	기타 형태의 방선균증	A428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상세불명의 방선균증	A429
	기타 형태의 노카르디아증	A438
	상세불명의 노카르디아증	A439
	바르토넬라병	A44
	가스 괴저	A480
	비폐렴성 재향군인병[폰티액열]	A482
	브라질자반열	A484
	기타 명시된 세균성 질환	A488
	상세불명 부위의 세균감염	A49
	중상성 조기 선천매독	A500
	잠복성 조기 선천 매독	A501
	상세불명의 조기 선천 매독	A502
	기타 중상성 만기 선천매독	A505
	잠복성 만기 선천매독	A506
	상세불명의 만기선천매독	A507
	상세불명의 선천매독	A509
	기타 부위의 일차매독	A512
	기타 이차매독	A514
	잠복성 조기매독	A515
	상세불명의 조기매독	A519
	기타 중상성 만기매독	A527
	잠복성 만기매독	A528
	상세불명의 만기매독	A529
	기타 및 상세불명의 매독	A53
	기타 임균감염	A548
	상세불명의 임균감염	A549
	기타 부위의 편모충증	A598
	상세불명의 편모충증	A599
	비성병성 매독	A65
	기타 요스의 증상	A667
	잠복요스	A668
	상세불명의 요스	A669
	판타의 만기병변	A672
	상세불명의 판타	A679
	재귀열	A68
	라임병	A692
	기타 명시된 스피로헤타감염	A698
	상세불명의 스피로헤타감염	A699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클라미디아 시타시 감염	A70
	기타 클라미디아질환	A748
	상세불명의 클라미디아감염	A749
	발진티푸스	A75
	홍반열	A77
	큐열	A78
	기타 리케차병	A79
	급성 비마비성 화색질척수염	A804
	기타 모기매개바이러스열	A92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절지동물매개바이러스열	A93
	상세불명의 절지동물매개 바이러스열	A94
	황열	A95
	아레나바이러스출혈열	A96
	뎅기	A97
	크리미아-통고출혈열	A980
	옴스크출혈열	A981
	키아사나삼림병	A982
	마르부르그바이러스병	A983
	에볼라바이러스병	A984
	기타 명시된 바이러스출혈열	A988
	상세불명의 바이러스 출혈열	A99
	파종성 헤르페스바이러스병	B007
	기타 형태의 헤르페스바이러스감염	B008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수두	B018
	합병증이 없는 수두	B019
	파종성 대상포진	B027
	대상포진	B028
	마마	B03
	엠폍스	B04
	장합병증이 동반된 홍역	B054
	홍역 각막염 및 각결막염(H192*)	B058
	합병증 없는 홍역	B059
	기타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B068
	합병증이 없는 풍진	B069
	기타 오르토평스바이러스감염	B080
	돌발발진[제6병]	B082
	감염성 홍반[제5병]	B083
	발진을 동반한 엔테로바이러스성 소수포 구내염	B084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기타 명시된 피부 및 점막병변이 특징인 바이러스감염	B088
	피부 및 점막병소가 특	B09
	거대세포바이러스병	B25
	기타 합병증이 있는 볼거리	B268
	합병증 없는 볼거리	B269
	감염성 단핵구증	B27
	로스강병	B33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레트로바이러스감염	B333
	한타바이러스(심)-페 증후군[HPS][HCPS](J171*)	B334
	기타 명시된 바이러스 질환	B338
	상세불명 부위의 바이러스감염	B34
	페칸디다증	B371
	칸디다수막염(G02.1*)	B375
	칸디다심내막염(I398*)	B376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바이러스 감염	B3788
	상세불명의 칸디다증	B379
	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B38
	히스토플라스마증	B39
	분아균증	B40
	파라콕시디오이데스진균증	B41
	스포로트릭스증	B42
	색소진균증 및 피오진균농양	B43
	아스페르길루스증	B44
	크립토크쿠스증	B45
	접합진균증	B46
	진균증	B47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진균증	B48
	기타 명시된 진균증	B49
	내장리슈만편모충증	B550
	상세불명의 리슈만편모충증	B559
	아프리카동편모충증	B56
	심장 침범이 없는 급성 사가스병	B571
	소화계통 침범을 동반한 사가스병(만성)	B573
	신경계통 침범을 동반한 사가스병(만성)	B574
	기타 기관 침범을 동반한 사가스병(만성)	B575
	기타 기관 침범을 동반한 톡소포자충증	B588
	상세불명의 톡소포자충증	B589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원충질환	B60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상세불명의 원충병	B64
	일본주혈흡충에 의한 주혈흡충증	B652
	기타 주혈흡충증	B658
	상세불명의 주혈흡충증	B659
	장형흡충증	B662
	기타 명시된 흡충감염	B668
	상세불명의 흡충감염	B669
	뼈의 단방조충감염	B672
	기타 및 여러 부위의 단방조충 감염	B673
	상세불명의 단방조충 감염	B674
	기타 및 여러 부위의 다방조충감염	B676
	상세불명의 다방조충감염	B677
	기타 및 상세불명의 포충증	B679
	드리쿤쿠루스증	B72
	회선사상충증	B73
	사상충증	B74
	선모충증	B75
	기타 연충증	B83
	상세불명의 기생충병	B89
	기타 기관의 결핵의 후유증	B908
	나병의 후유증	B92
	기타 명시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의 후유증	B948
	상세불명의 감염성 또는 기생충성 질환의 후유증	B949
	기타 및 상세불명의 감	B99
	진균증에서의 수막염	G021
	급성 비인두염[감기]	J09
	급성 비인두염[감기]	J108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기타 증상을 동반한 인플루엔자	J118
	진균증에서의 폐렴	J172
	자연손발가락절단증	L946
	기타 및 원인미상의 열	R50
	주입, 수혈 및 치료용 주사에 따른 감염	T802
	예방접종에 따른 감염	T880
	상세불명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	U049
	바이러스가 확인된 코로나19	U071
	바이러스가 확인되지 않은 코로나19	U072
	상세불명의 코로나19 이후 병태	U099
		U180

주)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이외에 추가로 상기 분류표에 해당하는 상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병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13】**

**특정 외상성 뇌손상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외상성 뇌손상’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미만성 뇌손상	S06.2
2. 초점성 뇌손상	S06.3
3. 경막외출혈	S06.4
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5.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S06.7
7. 기타 두 개내손상	S06.8
8.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S06.9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14]

**특정외상성뇌출혈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외상성뇌출혈’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경막외출혈	S06.4
2.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3.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15]

**특정외상성장기손상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외상성장기손상’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1. 심장의 손상	S26
2.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7
3. 복강내기관의 손상	S36
4.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5. 골반기관을 동반한 복강내기관의 손상	S39.6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16]

**유사암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사암’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 분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기타 피부암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암)	C44
갑상선암	갑상선의 악성신생물(암)	C73
제자리암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0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1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2
	제자리흑색종	D03
	피부의 제자리암종	D04
	유방의 제자리암종	D05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6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경계성종양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D38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뇌 및 중추신경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조직구 및 비만세포 종양	D47.0
	미결정의 단골혼감마글로블린병증	D47.2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상세불명의 신생물	D47.9
	상세불명의 신생물	D4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17]

**전이암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전이암’ 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림프절전이암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7
특정전이암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C80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18]

**전신마취 의료행위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전신마취 의료행위’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의료행위		수가코드
기관내 삽관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1
	마취유지	L1221
	마취유지(상급종합병원)	L1231
마스크에 의한 폐쇄순환식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2
	마취유지	L1222
	마취유지(상급종합병원)	L1232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 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전신마취 의료행위’ 외에 ‘전신마취 의료행위’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19]

**특정 시술치료(급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시술치료(급여)’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 코드
특정 시술 치료 (흡인, 천 자, 절개, 배액, 배 농)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	C8000
	경막하천자	C8005
	후두하대조천자, 경지주막하천자	C8010
	관절천자[간단한검사또는관절액이동술포함][편측]	C8020
	골수천자	C8031
	흉막천자	C8040
	복수천자, 복막천자	C8050
	심낭천자	C8060
	뇌실천자	C8070
	상악동천자[간단한액검사포함][편측]	C8080
	고실천자[편측]	C8090
	고실천자[편측]-내시경하에서 실시한 경우	C8091
	더글라스와천자[간단한액검사포함]	C8100
	방광천자	C8120
	음낭수종천자	C8130
	기타부위천자[림프절, 피부 등]	C8140
	골수천자생검[편측]	C8520
	개봉선원치료-기타방법[복막천자, 흉강천자, 관절천자등]	HD073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냉각풍선절제술-중격천자	M0652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0653
	부정맥의 냉각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0655
	부정맥의 냉각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M0656
	경피적경화술-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낭종]	M1771
	경피적경화술-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혈관기형]	M1772
	경피적경화술-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이외-낭종]	M1773
	경피적경화술-단순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이외-혈관기형]	M1774
	경피적경화술-카테터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낭종]	M1775
	경피적경화술-카테터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혈관기형]	M1776

경피적경화술-카테터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이외-낭종]	M1777
경피적경화술-카테터천자법에의한것[두경부이외-혈관기형]	M1778
경피적기관카테터삽입및인공호흡[윤상갑상막천자를통한것]	M5830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0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4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심방세동)-중격천자	M6545
삼차원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상심실성 부정맥)-중격천자	M6549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중격천자	M6556
경피경간담즙배액술[유도료별도산정]	M6670
경피적배액관교환술	M6750
낭종흡인요법[유도료별도산정]	M6850
유주농양천자술	N0100
근농양배농술(요장근농양)	N0841
근농양배농술(둔근농양)	N0842
근농양배농술(대퇴근농양)	N0843
근농양배농술(기타근농양)	N0844
추간판제거술-척추수핵용해술[방사선료포함]	N1495
척추수핵흡인술[뉴크레오름 이용 수핵제거등][방사선료포함]	N1496
범발성플립양성대절개및흡인술	01233
경피적확장기관절개술	01301
농흉세척[흉막강내주입 포함]	01502
흉강삼관술(폐쇄식)	01510
중격동염배농술(비개흉식)	01581
타석절개술(단순적출)	Q2241
인후농양절개술(경구강)	Q2251
편도주위농양절개술또는흡인술	Q2320
간농양(낭종)수술-개복에 의한 흡인 또는 주입술	Q7211
역행성 담체관 내시경 수술-담(췌)관배액술	Q7762
경피적담관[낭]경이용시술[PTBD Route또는T-Tube이용]-담관확장술(단순[카테터등이용 확장만하는경우])	Q7771
경피적담관[낭]경이용시술[PTBD또는T-Tube이용]-담석제거술(바스켓또는풍선카테터이용, 기계적쇄석술시)	Q7773
경피적담관[낭]경이용시술[PTBD Route또는T-Tube이용]-담석제거술(전기수압식쇄석술시)	Q7774

	)	
	요도주위농양절개술	R3750
	포상기태제거술-흡인소파술에의한것	R4481
	자궁 내 태아 흡수 배액술[유도로 별도산정]-흉강천자	R4536
	절개술(안면또는경부, 제1범위, 1cm미만)	S0011
	절개술(안면또는경부, 제1범위, 1cm이상~2cm미만)	S0012
	절개술(안면또는경부, 제1범위, 2cm이상)	S0013
	중추신경계정위수술-생검, 흡인, 병소절제, 혈종제거	S4756
	경피적척수낭종흡은공동흡인술	S4811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단순천자에 의한 시립적 약물주입술	S4841
	유리체흡인술	S5050
	전방천자	S5080
	안검농양절개술	S5240
	맥립종절개술	S5400
	각막 전부기질천자술[편측]	S5542
	골막하농양절개배액술	S5761
특정 시술 치료(화상 처리)(연 간1회한, 급여)	화상처리-9%이하의범위[수족지, 안면, 경부, 성기를 포함하는경우]	N0011
	화상처리-9%이하의범위[수족지, 안면, 경부, 성기를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N0012
	화상처리-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등의경우-하지의1지, 복부또 는배부에준하는범위[10%-18%의범위]	N0053
	화상처리-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등의경우-양하지또는동체(복 부및배부)에준하는범위[19%-36%의범위]	N0054
	화상처리-전기화상의 경우(근육, 골격, 인대의 손상이 포함된 경우)	N0057
	화상처리-전기화상의 경우(기타)	N0058
	화상처리-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등의경우-상, 하지또는양하지 외복부또는배부에준하는범위[37-54%]	NA055
	화상처리-열탕, 화염, 동상, 화학화상등의경우-전신대부분의범위[5 5%이상]	NA056
	화상처리-전기화상의 경우(근육, 골격, 인대의 손상이 포함된 경우)-성광또는화염동반	NA057
	화상처리-전기화상의 경우(기타)-성광 또는 화염동반	NA058
특정 시술 치료(신경 차 단 술) (연간1회	지주막하신경차단술	LA210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피하터널식카테터삽입에의한방 법-삼입당일[삼입료포함]	LA222

한, 급여) 보형금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피하터널식카테터삽입에의한방 법-삼입당일이후(1일당)	LA223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피하매몰저장기펌프삼입술에의 한방법-삼입당일[삼입료포함]	LA224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피하매몰저장기펌프삼입술에의 한방법-삼입당일이후(1일당)	LA225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의한방 법-삼입당일[삼입료포함]	LA226
	경막외신경차단술(지속적차단)-기타(비터널식카테터)에의한방 법-삼입당일이후(1일당)	LA227
	경막외신경차단술(경막외패치술[혈액채취료포함])	LA228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면신경	LA232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설인신경	LA233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접구개신경절	LA234
	내시경하 접구개신경절차단술	LA23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소후두신경	LA24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상후두신경	LA24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후두신경	LA243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횡격막신경	LA24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척추부신경	LA24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견갑신경	LA247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늑간신경	LA248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장골서혜신경	LA249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경신경총	LA251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요천골신경총	LA253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간단한것	LA261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복강신경총)	LA264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하장간막신경총)	LA26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장골하복신경	LA270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음부신경	LA27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좌골신경	LA272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폐쇄신경	LA273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대퇴신경	LA274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외측대퇴피신경	LA275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상박신경총	LA276	
경막외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경추및흉추)	LA321	

	경막의신경차단술-일회성차단(요추및천추)	LA322
	경막의 저장기펌프 제거술	LA330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삼차신경절, 상악신경, 하악신경	LA340
	뇌신경및뇌신경말초지차단술-안와상, 안와하, 턱끝, 이개측두신경	LA341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신경	LA346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액와하부신경	LA347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방척추신경	LA352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미골신경	LA353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선택적신경근	LA354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추후근신경절	LA355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회백신경교통지	LA356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척수신경후지	LA357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후지내측지	LA358
	척수신경총, 신경근및신경절차단술-추간관절차단	LA359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흉부교감신경절)	LA361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요부교감신경절)	LA362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상하복신경총)	LA366
	교감신경총및신경절차단술-복잡한것(외돌이신경절)	LA367
	전척추블록(기본[1시간기준])	LY051
	전척추블록(유지[1시간초과시15분당])	LY052
특정 시술 치료(도수 정복술) (연간1회 한, 급여)	늑골골절 비관혈적정복술	NO531
	척추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	NO630
	사지골절도수정복술[골반골, 대퇴골]	NO641
	사지골절도수정복술[상완골, 하퇴골]	NO642
	사지골절도수정복술[전완골]	NO643
	사지골절도수정복술[수근골, 족근골]	NO644
	사지골절도수정복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NO645
	관절탈구 도수정복술(고관절)	NO761
	관절탈구 도수정복술(견관절)	NO762
	관절탈구 도수정복술(주관절, 슬관절)	NO763
	관절탈구 도수정복술(완관절, 족관절, 지관절)	NO764
	척추골절 및 탈구의 도수정복술	NO765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1.5cm미만)	S002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1.5cm이상-3.0cm 미만)	S002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3.0cm이상-5.0cm 미만)	S002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5.0cm이상-7.5cm	S0028

	미만)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7.5cm이상~10.0cm 미만)	S002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10cm이상, 5cm마다 추가)	S0030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1.5cm미만)	S0031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1.5cm이상-3.0cm미만)	S0032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3.0cm이상-5.0cm미만)	S0037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5.0cm이상-7.5cm미만)	S0038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7.5cm이상~10.0cm 미만)	S0039
	창상봉합술(안면또는경부, 단순봉합, 근육, 길이10cm이상, 5cm마다 추가)	S0040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2.5cm미만)	SB021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2.5cm이상-5.0cm미만)	SB022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5.0cm이상~10.0cm미만)	SB029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표재성, 길이10cm이상, 10cm마다 추가)	SB030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 길이2.5cm미만)	SB031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 길이2.5cm이상-5.0cm 미만)	SB032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 길이5.0cm이상~10.0cm 미만)	SB039
	창상봉합술(안면과경부이외, 단순봉합, 근육, 길이10cm이상, 10cm마다 추가)	SB040
특정 시술 치료(기타 시술)(연 간1회한, 급여) 보험금	이식형사건기록기삽입술	E6551
	박피술[종양치료에 한함]-25cm미만	N0111
	타눈제거술(전기소작, 냉동응고술 또는 약물밀봉대)	N0143
	조갑거터술	N0215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대퇴골]	N0972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상완골, 견갑골]	N0973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요척골 동시, 경비골 동시	N0974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쇄골, 슬개골, 수근골, 족근골]	N0975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중수골, 중족골, 지골]	N0976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전완골, 하퇴골]-요골과척골중 하나, 경골과비골중 하나	N0977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금속정등을근막절개하에간단히제거한경우	N0978
사지체내고정용금속제거술-골에삽입한금속핀이나금속정등을근막절개없이간단히제거한경우	N0979
인공심폐순환[1회당]	01890
부분체외순환	01901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일일부터[1일당]	01902
부분체외순환-ECMO 사용	01903
부분체외순환10시간초과일일부터[1일당]-ECMO 사용	01904
요관스텐트제거술(요관경하)	R3266
요관스텐트제거술(방광경하)	R3267
요관스텐트제거술(경피적)[경피적신루설치술, 방사선료포함]	R3268
인공요도괄약근제거술	R3566
두개강내신경자극기설치, 교환및제거술[운동장애, 뇌전증, 통증치료, 난치성강박장애등]-두개강내신경전극제거	S0475
현미경하각막봉합사제거술	S5390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및제거술-영구자극기설치술[경피적]-자극분석및재조정	SY634
척수신경자극기설치, 교환및제거술-시험적거치술[경피적]-자극분석	SY638
투시하 이물제거술	MY762
투시하 물제거술(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의경우)[유도료별도산정]	MY763
비내이물제거술-간단한 것[비내접근]	00971
비내이물제거술-복잡한 것[전신마취하 실시 또는 비외 접근시]	00972
후두이물제거술(성문상부)	01291

후두이물제거술(성문, 성문하부)	01292
내시경적기관또는기관지이물제거술(연성기관지경)	01332
개흉적기관또는기관지이물제거술	01336
식도이물제거술(흉부접근)	Q2382
식도이물제거술(경부접근)	Q2383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단순	Q7611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이물제거술-복잡	Q7612
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670
에스상결장경하 이물 제거술	Q7720
역행성 담체관 내시경 수술-이물질제거술	Q7767
안구내이물제거술-자석이용	S4891
안구내이물제거술-기타의 것	S4892
안와내 이물제거술	S4895
결막이물제거술	S4930
각막이물제거술-단순[filament제거포함]	S4971
각막이물제거술-복잡[심층, 녹제거를하는경우]	S4972
공막이물제거술	S4990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복잡한것	S5571
외이도이물또는이구전색제거[간단한것은 기본진료료에 포함]-극히 복잡한것[진주종제거 포함]	S5572
금성복막투석-도관삽입술	07061
체외복수투석[복막천자포함]	07080
혈액투석[1회당]	07020



[별표120]

**특정순환계질환 I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순환계질환 I’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류마티스열	100-102
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105-109
3. 고혈압성 질환	110-115
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124
5.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으로 기술된 것	125.0
6. 죽상경화성 심장병	125.1
7. 심장의 동맥류	125.3
8. 관상동맥류 및 박리	125.4
9. 허혈심근병증	125.5
10. 무증상성 심근허혈	125.6
11. 기타 형태의 만성 허혈심장병	125.8
12. 상세불명의 만성 허혈심장병	125.9
13.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126-128
14. 급성 심장막염	130
15. 심장막의 기타 질환	131
1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132
17.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133
18. 비류마티스성 승모판장애	134
19. 비류마티스성 대동맥판장애	135
20. 비류마티스성 삼첨판장애	136
21. 폐동맥판장애	137
22.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138
23.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내막염 및 심장판막장애	139
24. 급성 심근염	140
2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141
26. 심근병증	142
2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143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28. 방실차단 및 좌각차단	144
29. 기타 전도장애	145
30.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46.0
31. 발작성 빈맥	147
32. 심방세동 및 조동	148
33. 기타 심장부정맥	149
34. 심부전	150
35. 심장병의 불명확한 기록 및 합병증	151
3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기타 심장장애	152
37.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164
38. 기타 뇌혈관질환	167
39.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168
40.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169
41. 동맥, 세동맥 및 모세혈관의 질환	170-179
42.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180
43. 문맥혈전증	181
44.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182
45. 하지의 정맥류	183
46. 식도정맥류	185
47. 기타 부위의 정맥류	186
48. 비특이성 림프절염	188
49. 림프관 및 림프절의 기타 비감염성 장애	189
5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순환계통의 처치후 장애	197
5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순환계통의 기타 장애	198
52. 순환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애	199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1]

**심·뇌혈관질환(특정 II)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뇌혈관질환(특정 II)’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2021.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II)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심혈관질환(특정 II)	1. 급성심근경색증	121
	2. 후속심근경색증	122
	3.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4.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46.0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2]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 분류표**

다음의 장애의 종류 및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서 정하는 별표1에 따릅니다.

구분	기준
1. 지체장애인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변장장애인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구분	기준
5. 언어장애인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	소아기 자폐증, 비전형적 자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 장애인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별표123]**

**뇌출혈 및 뇌경색증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졸중'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4]

**폐렴 II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폐렴 II’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2
2.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3
3.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4
4.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5
5.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6
6.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7
7.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18
8. 음식 또는 구도물에 의한 폐렴	J69.0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5]

**심부전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부전’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심부전	I50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6]

**심·뇌혈관질환(특정Ⅲ)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뇌혈관질환(특정Ⅲ)’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Ⅱ)	1. 거미막하출혈	160
	2. 뇌내출혈	161
	3. 기타 비외상성 두 개내 출혈	162
	4. 뇌경색증	163
	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5
	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166
심혈관질환(특정Ⅲ)	1. 불안정협심증	120.0
	2.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120.1
	3. 급성심근경색증	121
	4. 후속심근경색증	122
	5. 급성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123
	6.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124.0
	7. 드레슬러증후군	124.1
	8.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146.0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7]

**특정 자궁및난소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자궁및난소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자궁의 평활근종		D25
2.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3.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5.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6. 자궁경부의 염증성 질환		N72
7. 자궁내막증		N80
8. 여성생식관을 침범한 누공		N82
9. 여성생식관의 용종		N84
10. 자궁경부의 미란 및 외반		N86
11. 자궁경부의 이형성		N87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8]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전립선및방광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2. 비뇨기관의 양성 신생물	D30
3.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4.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양성 신생물	D35
5.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7
6.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7.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8.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9.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10. 기타 명시된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7
11.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2. 폐색성 및 역류성 요로병증	N13
13. 상세불명의 신장위축	N26
14. 원인불명의 작은 신장	N27
15. 요도염 및 요도증후군	N34
16. 요도협착	N35
17. 전립선증식증	N40
18. 전립선의 염증성 질환	N41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29]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 내분비및소화계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기타 비독성 고이더	E04
2. 갑상선독증[갑상선기능항진증]	E05
3. 쿠싱증후군	E24
4. 사타구니탈장	K40
5. 배꼽탈장	K42
6. 복벽탈장	K43
7. 횡격막탈장	K44
8. 담석증	K80
9. 담낭의 기타 질환	K82
10. 담도의 기타 질환	K83
11. 췌장의 기타 질환	K86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30]

**뇌동맥류(비파열성)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뇌동맥류(비파열성)’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I67.1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31]

**급여 뇌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뇌 특정 혈전제거술’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혈전제거술(동맥-기타)	02056
혈전제거술(심부정맥-기타)	02059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	M6636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7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기타혈관	M6639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뇌 특정 혈전제거술’ 에 준하여 ‘급여 뇌 특정 혈전제거술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별표132]

**급여 심장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심장 특정 혈전제거술’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혈전제거술-심장	00260
폐동맥혈전제거술	01950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관상동맥	M6638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기타혈관	M6639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장 특정 혈전제거술’ 에 준하여 ‘급여 심장 특정 혈전제거술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별표133]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남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두경부암)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0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C01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2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3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4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5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6
	귀밑생의 악성 신생물	C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생의 악성 신생물	C08
	편도의 악성 신생물	C09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0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2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3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14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위암 및 식도암)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0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21 C26 C78.4 C78.5 C78.82 C78.88 C78.89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담낭의 악성 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22 C23 C24 C25 C78.7 C78.81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흉곽내기관·중 피성암 및 연조 직암)	후두의 악성 신생물 기관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흉선의 악성 신생물 심장, 중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종피종 카포시육종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중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32 C33 C34 C37 C38 C39 C45 C46 C47 C48 C49 C78.0 C78.1 C78.2 C78.3 C78.6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골피부 등 전 신 부위암)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피부의 악성 흑색종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40 C41 C43 C76 C77 C79.2 C79.5 C79.88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79.9 C80 C97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유방·비뇨기관· 부신암 및 내분 비선암)	유방의 악성 신생물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신우의 악성 신생물 요관의 악성 신생물 방광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부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50 C64 C65 C66 C67 C68 C74 C75 C79.0 C79.1 C79.80 C79.7
남성통합암 (전이포함) (남성생식기암)	음경의 악성 신생물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고환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60 C61 C62 C63 C79.81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뇌암 및 중추 신경계통암)	수막의 악성 신생물 뇌의 악성 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0 C71 C72 C79.3 C79.4
남성통합암 (전이 포함) (혈액암)	호지킨림프종 소포성 림프종 비소포성 림프종 성숙T/NK-세포림프종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림프성 백혈병	C81 C82 C83 C84 C85 C86 C88 C90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성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34]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여성통합암(전이포함)(유사암제외)’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두경부암)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0
	혀뿌리의 악성 신생물	C01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2
	인도의 악성 신생물	C03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4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5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6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8
	편도의 악성 신생물	C09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0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2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3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14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0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1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69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위암 및 식도암)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5
	위의 악성 신생물	C16
	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8.80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소장·대장·항문암 및 기타암)	소장의 악성 신생물	C17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8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0

	향문 및 향문관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소장외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대장 및 직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비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21 C26 C78.4 C78.5 C78.82 C78.88 C78.89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간·담낭·담도암 및 췌장암)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담낭의 악성 신생물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췌장의 악성 신생물 간 및 간내 담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췌장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22 C23 C24 C25 C78.7 C78.81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흉곽내기관·중피성암 및 연조직암)	후두의 악성 신생물 기관의 악성 신생물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흉선의 악성 신생물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종피종 카포시육종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 신생물 기타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폐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종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흉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호흡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후복막 및 복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32 C33 C34 C37 C38 C39 C45 C46 C47 C48 C49 C78.0 C78.1 C78.2 C78.3 C78.6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골피부 등 전심 부위암)	사지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피부의 악성 흑색종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피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골 및 골수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기타 명시된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40 C41 C43 C76 C77 C79.2 C79.5 C79.88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C79.9 C80 C97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유방·비뇨기관·부신암 및 내분비선암)	유방의 악성 신생물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신우의 악성 신생물 요관의 악성 신생물 방광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부신의 악성 신생물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신장 및 신우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방광과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유방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부신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50 C64 C65 C66 C67 C68 C74 C75 C79.0 C79.1 C79.80 C79.7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여성생식기암)	외음부의 악성 신생물 질의 악성 신생물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태반의 악성 신생물 생식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51 C52 C57 C58 C79.81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난소암)	난소의 악성 신생물 난소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56 C79.6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자궁암)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3 C54 C55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뇌암 및 중추신경계통암)	수막의 악성 신생물 뇌의 악성 신생물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신경계통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0 C71 C72 C79.3 C79.4
	호지킨림프종	C81

여성통합암 (전이 포함) (혈액암)	소포성 림프종	C82
	비소포성 림프종	C83
	성숙T/NK-세포림프종	C84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림프종	C85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6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88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0
	림프성 백혈병	C91
	골수성 백혈병	C92
	단핵구성 백혈병	C93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4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9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5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6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본태성 혈소판혈증	D47.3
	골수성유증	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	D47.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35]**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106.0
폐쇄부전이 있는 류마티스성 대동맥협착	106.2
대동맥판협착	135.0
폐쇄부전을 동반한 대동맥판협착	135.2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36]**

**심혈관질환(심근병증)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혈관질환(심근병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심근병증	1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143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37]**

**특정뇌동맥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뇌동맥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167.0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167.1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37-1]

**급여 혈관색전술(동맥류)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혈관색전술(동맥)’ 이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뇌혈관[척추포함] 동맥류 - 보조물지지	M1661
뇌혈관[척추포함] 동맥류 - 기타의 경우	M1662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혈관색전술(동맥)’ 에 준하여 ‘급여 혈관색전술(동맥)’ 을 결정합니다.

[별표138]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이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상심실성 부정맥	M6541
	상심실성 부정맥 - 중격천자	M6544
	심방세동	M6542
	심방세동 - 중격천자	M6545
	심방세동 - 하대정맥-상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	M6654
	심실성 부정맥	M6543
	삼차원(3-D) 빈맥 지도화를 이용한 부정맥의 고주파절제술	
	상심실성 부정맥	M6546
	상심실성 부정맥 - 중격천자	M6549
	심방세동	M6547
	심방세동 - 중격천자	M6540
	심실성 부정맥	M6548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6550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중격천자	M6556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부정맥의 냉각절제술	
	상심실성 부정맥	M0657
	상심실성 부정맥 - 중격천자	M0653
	심방세동	M0658
	심방세동 - 중격천자	M0655
	심방세동 - 하대정맥-상첨판륜 협부에 대한 선형절제술	M0659
	심방세동 - 냉각풍선절제술	M0651
	심방세동 - 냉각풍선절제술 - 중격천자	M0652
	심실성 부정맥	M0661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M0662
	방실결절 절제술, 히스속 절제술 - 중격천자	M0656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에 준하여 ‘급여 심장부정맥 고주파·냉각절제술’ 을 결정합니다.



[별표139-1]

항혈소판제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항혈소판제’ 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에 있어 다음에 적은 코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ATC코드 명칭	ATC코드
1. 헤파린 이외의 혈소판응집억제제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B01AC
2.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01AC04
3. 티클로피딘(Ticlopidine0)	B01AC05
4. 아세틸살리실산(Acetylsalicylic acid)	B01AC06
5. 인도부펜(Indobufen)	B01AC10
6. 압식시맙(Abciximab)	B01AC13
7. 티로피반(Tirofiban)	B01AC17
8. 트리플루살(Triflusal)	B01AC18
9. 베라프로스트(Beraprost)	B01AC19
10. 푸라수그렐(Prasugrel)	B01AC22
11. 실로스타졸(Cilostazol)	B01AC23
12. 티카그렐러(Ticagrelor)	B01AC24
13. 리마프로스트(Limaprost)	B01AC28
14. 상기 의약품의 조합제품	B01AC30

- ②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코드분류하의 ‘항혈소판제’ 에 준하여 ‘항혈소판제’ 를 결정합니다.

[별표139-2]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항혈소판제(아스피린)’ 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에 있어 다음에 적은 코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ATC코드 명칭	ATC코드
1. 아세틸살리실산(Acetylsalicylic acid)	B01AC06

- ②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코드분류하의 ‘항혈소판제(아스피린)’ 에 준하여 ‘항혈소판제(아스피린)’ 를 결정합니다.

[별표139-3]

항혈소판제(아스피린이외)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항혈소판제(아스피린이외)’ 이라 함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에 있어 다음에 적은 코드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말합니다.

ATC코드 명칭	ATC코드
1. 헤파린 이외의 혈소판응집억제제 (Platelet aggregation inhibitors excl. heparin)	B01AC
2. 클로피도그렐(Clopidogrel)	B01AC04
3. 티클로피딘(Ticlopidine0)	B01AC05
4. 인도부펜(Indobufen)	B01AC10
5. 암식시맙(Abciximab)	B01AC13
6. 티로피반(Tirofiban)	B01AC17
7. 트리플루살(Triflusal)	B01AC18
8. 베라프로스트(Beraprost)	B01AC19
9. 프라스그렐(Prasugrel)	B01AC22
10. 실로스타졸(Cilostazol)	B01AC23
11. 티카그렐러(Ticagrelor)	B01AC24
12. 리마프로스트(Limaprost)	B01AC28
13. 상기 의약품의 조합제품	B01AC30

② 세계보건기구(WHO)의 해부·치료·화학적 분류 코드(ATC Code,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ode)분류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코드분류하의 ‘항혈소판제(아스피린이외)’ 에 준하여 ‘항혈소판제(아스피린이외)’ 를 결정합니다.

[별표140]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의료행위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 행위	의료행위 수가코드
혈전제거술(심부정맥-하지)	00218
혈전제거술-심장	00260
폐동맥혈전제거술	01950
혈전제거술(동맥-흉부)	02053
혈전제거술(동맥-복부)	02054
혈전제거술(동맥-경부)	02055
혈전제거술(동맥-기타)	02056
혈전제거술(심부정맥-흉부)	02057
혈전제거술(심부정맥-복부)	02058
혈전제거술(심부정맥-기타)	02059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내 혈관	M6636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두개강외 경부혈관	M6637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관상동맥	M6638
경피적혈전제거술-기계적혈전제거술[카테터법]-기타혈관	M6639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등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에 준하여 ‘급여 특정 혈전제거술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별표141]

**8대중대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8대중대질환’으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특정 두개내손상	외상성 뇌부종	S06.1
	초점성 뇌손상	S06.3
	경막외출혈	S06.4
	외상성 경막하출혈	S06.5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S06.6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S06.7
	기타 두개내손상	S06.8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S06.9
머리의 으깬손상	머리의 으깬손상	S07
심장의 손상	심장의 손상	S26
특정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S02.0
	두개저의 골절	S02.1
	안와바닥의 골절	S02.3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S02.4
	하악골의 골절	S02.6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S02.7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8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02.9
목의 골절	목의 골절	S12
흉추의 골절 및 다발골절	흉추의 골절	S22.0
	흉추의 다발골절	S22.1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대퇴골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S72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상병 이외에 신생아에게 적용하는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코드)’ 질병분류번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표142]

**11대중대질환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11대중대질환’ 으로 분류되는 상병 또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뇌혈관질환	뇌혈관질환	160~169
특정 두개내손상	외상성 뇌부종 초점성 뇌손상 경막외출혈 외상성 경막하출혈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지속적 혼수를 동반한 두개내손상 기타 두개내손상 상세불명의 두개내손상	S06.1 S06.3 S06.4 S06.5 S06.6 S06.7 S06.8 S06.9
머리의 으깬손상	머리의 으깬손상	S07
허혈심장질환	허혈심장질환	I20~I25
심장정지	심장정지	I46
심장의 손상	심장의 손상	S26
특정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두개원개의 골절 두개저의 골절 안와바닥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하악골의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기타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두개골 및 안면골의 상세불명 부분의 골절	S02.0 S02.1 S02.3 S02.4 S02.6 S02.7 S02.8 S02.9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목의 골절	목의 골절	S12
흉추의 골절 및 다발골절	흉추의 골절 흉추의 다발골절	S22.0 S22.1
요추 및 골반의 골절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대퇴골의 골절	대퇴골의 골절	S72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상병 이외에 신생아에게 적용하는 ‘출생전후기에 기원한 특정병태(P코드)’ 질병분류번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별표143]

**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성분명 및 의약품명 분류표**

- ① 아래 ‘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의약품명 및 성분명은 2024년 9월 기준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규 허가 또는 허가 취소 시 해당 내용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보형가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 이므로, 처방된 항암제의 ‘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 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②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https://nedrug.mfds.go.kr>) 검색창에서 의약품명, 성분명을 검색하시면 어떤 양중에 해당 의약품이 허가되었는지 효능·효과の内容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약품명과 성분명
- 성분명은 ‘효능·효과’를 발현시키는 물질의 명칭을 의미하며, 동일 성분명을 가진 여러 의약품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병기하고 있으며, 괄호안의 명칭이 성분명을 의미합니다. - 의약품명은 제약사마다 상품판매를 위해 명명한 상품명(Brand Name)을 의미합니다. - 의료인 및 의료관계인의 도움을 받으시면 의약품명과 성분명을 보다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요방사성의약품’ 해당여부는 전문의료인의 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성분명 (국문 및 영문)	의약품명(국문)
방사성리간드 약품	루테튬(177Lu) 옥소도트레오타이드액 Lutetium(177Lu) Oxodotreotide	루타테라주
	루테튬(177Lu) 비피보타이드테트라세탄액 Lutetium(177Lu) Vipivotide Tetraxetan	플루빅토주
방사성물질 단독약품	요오드화나트륨(131I) Sodium Iodide(131I)	유니텍요오드화나트륨(131I)캡슐 테라캡131캡슐(30mCi)
	3-요오도벤질구아니딘(131I) 3-iodobenzylguanidine(131I)	캐리엠아이비지(131I)주사액 (방사성물질단독약품)

[별표144]

**자궁특정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자궁특정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자궁의 평활근종 자궁의 자궁내막증	D25 N80.0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형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45]

### 갑상선특정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갑상선특정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기타 비독성 고이터	E04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환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환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46]

**유방특정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유방특정질환’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유방의 양성신생물	D24
양성 유방형성이상	N60
유방의 염증성 장애	N61
유방의 상세불명의 덩어리	N63
유방의 기타 장애	N64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47]

**무릎관절증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무릎관절증’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무릎관절증 현존 무릎관절연골의 찢김	M17 S83.3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48]

**통합상해 분류표**

① 약관에 규정하는 ‘통합상해사고’ 로 분류되는 상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부위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머리 및 목	경증	머리의 표재성 손상	S00
		머리의 열린상처	S01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03
		머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09
		목의 표재성 손상	S10
	중등증	목의 열린상처	S11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목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19
		두개골 및 안면골의 골절	S02
중증	뇌신경의 손상	S04	
	눈 및 안와의 손상	S05	
	두개내손상	S06	
중등증	목의 골절	S12	
	목부위의 혈관의 손상	S15	
	목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16	
	머리의 으깬손상	S07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08	
중증	목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14	
	목의 으깬손상	S17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S18	
	흉부의 표재성 손상	S20	
복부 및 등	경증	흉부의 열린상처	S21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기타 및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손상	S27
		흉부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29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표재성 손상	S30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S31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33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39

부위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복부 및 등	중등증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22
		흉부부위의 신경 및 척수의 손상	S24
		흉부 혈관의 손상	S25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32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신경 및 허리척수의 손상	S34
		복부, 아래등 및 골반 부위의 혈관의 손상	S35
	복강내기관의 손상	S36	
	중증	심장의 손상	S26
		흉부의 으깬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28
		비뇨 및 골반 기관의 손상	S37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깬손상 및 외상성 절단		S38	
어깨 및 팔	경증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S40
		어깨 및 위팔의 열린상처	S41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어깨 및 위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49
		아래팔의 표재성 손상	S50
		아래팔의 열린상처	S51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아래팔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59
	중등증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44
		어깨 및 위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45
		어깨 및 위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46
		아래팔의 골절	S52
		아래팔 부위의 신경의 손상	S54
	중증	아래팔 부위의 혈관의 손상	S55
		아래팔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56
		어깨 및 위팔의 으깬손상	S47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48
중등증	아래팔의 으깬손상	S57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S58	

부위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손목 및 손	경증	손목 및 손의 표재성 손상	S60
		손목 및 손의 열린상처	S61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손목 및 손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69
	중증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손목 및 손 부위의 신경의 손상	S64
		손목 및 손 부위의 혈관의 손상	S65
		손목 및 손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66
	중증	손목 및 손의 으깬손상	S67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S68
엉덩이 및 다리	경증	엉덩이 및 대퇴의 표재성 손상	S70
		엉덩이 및 대퇴의 열린상처	S71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엉덩이 및 대퇴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79
		아래다리의 표재성 손상	S80
		아래다리의 열린상처	S81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3
		아래다리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89
		중증	대퇴골의 골절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신경의 손상		S74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혈관의 손상		S75
	엉덩이 및 대퇴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76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아래다리 부위의 신경손상		S84
	아래다리 부위의 혈관의 손상		S85
	아래다리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6	
	중증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깬손상	S77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78
아래다리의 으깬손상		S87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S88	

부위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발목 및 발	경증	발목 및 발의 표재성 손상	S90
		발목 및 발의 열린상처	S91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93
		발목 및 발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손상	S99
	중증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발목 및 발 부위의 신경의 손상	S94
		발목 및 발 부위의 혈관의 손상	S95
		발목 및 발 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96
	중증	발목 및 발의 으깬손상	S97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S98	
기타	경증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표재성 손상	T0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열린상처	T01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기타 손상	T06
		상세불명의 다발손상	T07
		척추 및 몸통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09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1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기타 손상	T1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손상	T14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와 팔의 화상 및 부식	T22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표재성 동상	T33
		조직괴사를 동반한 동상	T3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동상 및 상세불명의 동상	T35		

부위	구분	대상이 되는 상병	분류번호
기타	중등증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2 T08 T10 T12
	중증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깬손상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T04 T0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별표149]**

**특정마취합병증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마취합병증’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상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마취에 의한 쇼크	T88.2
2. 마취에 의한 악성 고체온	T88.3
3. 실패한 삼관 또는 삼관관란	T88.4
4. 마취의 기타 합병증	T88.5
5.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 쇼크	T88.6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50]

**고혈압(원발성)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고혈압(원발성)’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0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51]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지질단백질대사장애 및 기타 지질증	E78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52]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12대기관 양성신생물 및 폴립’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위·십이지장	위의 양성 신생물	D13.1
	십이지장의 양성 신생물	D13.2
	위 및 십이지장의 용종	K31.7
대장	맹장의 양성 신생물	D12.0
	충수의 양성 신생물	D12.1
	상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2
	횡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3
	하행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4
	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5
	상세불명의 양성 신생물	D12.6
	직장구불결장의 양성 신생물	D12.7
	직장의 양성 신생물	D12.8
	직장용종	K62.1
결장의 용종	K63.5	
간, 담관 및 췌장	간의 양성 신생물	D13.4
	간외담관의 양성 신생물	D13.5
	췌장의 양성 신생물	D13.6
갑상선	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4
남성생식기관	남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9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여성생식기관	자궁의 평활근종	D25
	자궁의 기타 양성 신생물	D26
	난소의 양성 신생물	D27
	기타 및 상세불명 여성생식기관의 양성 신생물	D28
	여성생식기관의 용종	N84
소장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 소장의 양성 신생물	D13.3
종격동	종격의 양성 신생물	D15.2
	기타 명시된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7
	상세불명의 흉곽내기관의 양성 신생물	D15.9
골	골 및 관절연골의 양성 신생물	D16
호르몬기관	부신의 양성 신생물	D35.0
	부갑상선의 양성 신생물	D35.1

- ② 제10차 개정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53]

특정천공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천공’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 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식도의 천공	K22.3
장의 천공(비외상성)	K63.1
담낭의 천공	K82.2
담관의 천공	K83.2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 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54]

특정마취(급여) 의료행위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특정마취(급여)’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의료행위		수가코드	
정맥마취	전신마취	L0101	
	부위(국소)마취		L0102
	감시하 전신마취	마취관리기본[30분기준]	L0103
마취	척추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3
	경막외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4
	상박신경총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5
	척추경막외마취	마취관리기본[1시간기준]	L1216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특약 체결시점 이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예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특정마취(급여)’ 에 준하여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법령 등의 개정으로 제1항에서 정한 ‘특정마취(급여)’ 외에 ‘특정마취(급여)’ 에 해당하는 진료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진료행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별표155]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일반-촬영료 등	HI 1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일반-촬영료 등	HI 1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경부혈관-일반-촬영료 등	HI 13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경부혈관-일반-판독료	HI23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촬영료 등	HI4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경부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53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일반-판독료	HJ1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일반-판독료	HJ1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경부혈관-일반-판독료	HJ13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경부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3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판독료	HJ4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경부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36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뇌-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01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동맥 또는 정맥]-뇌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35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촬영료 등	HI 1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촬영료 등	HI3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일반-판독료	HJ1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중재적시술유도제2회부터-판독료	HJ3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심장-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24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촬영료 등	HI 1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촬영료 등	HI2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촬영료 등	HI5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일반-판독료	HJ1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판독료	HJ2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판독료	HJ5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영상의학과 전문의	HJ640
자기공명영상진단-기본검사-혈관 [동맥 또는 정맥]-심혈관-외부병원 필름 판독-전문의	HJ740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에 준하여 ‘심뇌혈관질환 MRI검사 수가코드’ 를 결정 합니다.



[별표156]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에 준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수가코드'를 결정합니다.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심뇌혈관질환 CT검사'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	HA45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조영제를사용하는경우	HA46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제한적 CT	HA44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85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삼차원	HA52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CT 혈관조영	HA53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Cine CT	HA55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두부-특수검사-뇌조 CT	HA561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 Brain SPECT	HC291
뇌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약물부하)	HC296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HZ201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고해상력	HA42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지않는경우-기타의 경우	HA4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조영제를사용하는 경우	HA46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제한적 CT	HA44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중재적시술유도 제2회부터	HA8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이중시기 또는 삼중시기	HA51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삼차원	HA52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CT 혈관조영	HA534
일반전산화단층영상진단-흉부-특수검사-Cine CT	HA554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	HC292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재주사또는지연영상)	HC301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게이트방법)	HC302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안정상태(재주사또는지연영상)(게이트방법)	HC303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운동부하(게이트방법)	HC304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약물부하(게이트방법)	HC305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운동부하	HC297
심근 단일광자전산화단층촬영-약물부하	HC298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별표157]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에 준하여 '급여 심 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심뇌혈관질환 혈관조영술/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검사'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혈관 조영술	두경부동맥조영-추골동맥	HA601
	두경부동맥조영-총경동맥	HA602
	두경부동맥조영-외경동맥	HA603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	HA604
	두경부동맥조영-내경동맥폐색검사(조영술료 포함)	HA606
	두경부동맥조영-전뇌동맥	HA605
관상동 맥 조영술	흉부동맥조영-우심방조영	HA610
	흉부동맥조영-우심실조영	HA611
	흉부동맥조영-좌심실조영	HA612
	흉부동맥조영-좌심방조영	HA613
	관상동맥조영	HA670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	HA680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2개월 관부터최대3개월간	HA681
	이식된관동맥우회로조영촬영[환자본래의관상동맥조영촬영포함]과 동시 촬영된좌심실조영촬영	HA682
PET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HK01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심근	HK020
	양전자방출단층촬영-뇌	HK030
	양전자방출단층촬영-전신	HK040
	양전자방출단층촬영-부분	HK050
	양전자방출단층촬영-토르소 또는 전신촬영 후 재주사 없이 특정부위를 추가 촬영	HK060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별표 158]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의료행위 분류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뇌파검사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이상-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	F6140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1
	각성뇌파검사-18채널미만(이동뇌파를실시한 경우)	F6142
	보행뇌파검사-4시간이상8시간이하	F6143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 경우)	F6144
	수면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5
	보행뇌파검사-8시간초과	F6146
	특수뇌파검사-약물또는물리적유발뇌파검사-18채널미만	F6147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미만	F6148
	지속적 뇌파 감시[1일당]	F6149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 1일당]-64채널미만	F6151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내, 1일당]-64채널미만	F6152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외, 1일당]-64채널이상	F6153
	지속적비디오뇌파검사[두개강내, 1일당]-64채널이상	F6154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1
	각성뇌파검사-18채널이상(이동뇌파를실시한 경우)	FA142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각성뇌파검사와동시에실시한 경우)	FA144
	수면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5
특수뇌파검사-약물또는물리적유발뇌파검사-18채널이상	FA147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18채널 이상	FA148	
초음파 검사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흉부 심초음파	EB430
	심장-경흉부 심초음파-단순	EB431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EB432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전문	EB433
	심장-부하 심초음파-약물부하	EB434
	심장-부하 심초음파-운동부하	EB435
	심장-태아정밀 심초음파	EB436

	혈관-뇌혈류 초음파 혈관-두개외 혈관 도플러 초음파-경동맥 심장-경식도 심초음파 심장-선천성 심질환 경식도 심초음파 심장-심장내 초음파	EB481 EB482 EB611 EB610 EB612
뇌척수액검사	요추천자[뇌척수압측정포함]	C8000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에 준하여 ‘급여 심뇌혈관질환 뇌파/초음파/뇌척수액검사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별표 159]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2호 2025.1.20.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구분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	수가코드
위폴립절제술	위폴립절제술	Q2521
종양절제술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종양절제	Q7651
점막 및 점막하종양 절제술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652
점막하박리절제술(위)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위	Q7653
점막하박리절제술(식도)	내시경적 상부소화관종양수술-점막하박리절제술-식도	Q7654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에 준하여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별표 160]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대상 수가코드**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로 분류되는 진료행위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5-12호 2025.1.20.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진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진료행위	수가코드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	Q7701
결장경하 종양 수술-폴립 절제술(1개 이상시 초과되는 폴립1개당)	Q7702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절제술 및 점막하종양절제술	Q7703
결장경하 종양 수술-점막하 박리절제술	QX706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에 준하여 ‘대장용종제거수술(급여) 수가코드’ 를 결정합니다.

[별표161]

심장질환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심장질환’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1. 급성 류마티스열	I00-I02
2.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05-I09
3. 허혈성 심장질환	I20-I25
4.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26-I28
5. 기타 형태의 심장병	I30-I52
6. 칸디다심내막염	B37.6
7. 수막알균성 심장병	A39.5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62]

치매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치매’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치매 분류표	분류번호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혈관성 치매	F01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상세불명의 치매	F03
치매에 병발된 섬망	F05.1
알츠하이머병	G30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별표163]

**치매 CDR척도검사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 라 함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1-167호 2021.7.1. 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다음에 적은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상이 되는 의료행위	수가코드
치매척도검사[CDR]	F6222

- ②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따라 수가코드가 폐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폐지 또는 변경 직전의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 에 준하여 ‘급여 치매 CDR척도검사’ 를 결정합니다.

[별표164]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

- ① 약관에서 규정하는 ‘알츠하이머치매’ 으로 분류되는 질병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중 다음에 적은 질병을 말하며,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대상이 되는 질병	분류번호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알츠하이머병	G30

- ② 제10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확정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 ③ 다만, 진단확정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상기 상병 또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를 판단한 경우에는, 이후에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되더라도 상기 상병 또는 질병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 ④ 진단서 상의 분류번호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질병코딩지침서(향후 지침서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지침서에 따릅니다)에 따라 기재된 것을 인정합니다.
- ⑤ 상기 외에도 대상질병 분류표의 분류번호와 연관성이 있어, 분류번호가 동시에 부여된 경우 대상질병 분류에 포함합니다.

무배당  
현대해상퍼펙트플러스종합보험  
(세만기형)  
(Hi2601)

**H** 현대해상

인용 법 · 규정







## 인용 법·규정 목차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법-5	법규22 의료급여법	법-23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법-6	법규23 의료급여법 시행령	법-23
법규3 공직선거법	법-6	법규24 의료법	법-23
법규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법-7	법규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법-24
법규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법-7	법규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법-25
법규6 국민건강보험법	법-7	법규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26
법규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법-8	법규28 장애인복지법	법-26
법규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14	법규2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법-27
법규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법-16	법규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법-29
법규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16	법규31 전자서명법	법-30
법규1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법-17	법규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30
법규12 도로교통법	법-17	법규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법-30
법규13 도로법	법-18	법규34 지역보건법	법-30
법규14 민법	법-18	법규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법-30
법규15 민사소송법	법-19	법규36 형법	법-31
법규16 상법	법-19	법규3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법-32
법규17 상법 시행령	법-20	법규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33
법규18 소비자기본법	법-20		
법규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20		
법규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21		
법규21 약사법	법-23		



## 법규1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4.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국외의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 법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 2. 4.>

###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제6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의 동의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받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4. 18., 2017. 7. 26., 2020. 2. 4.>
-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제1호, 제17조제1항제1호,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때에는 정보주체와의 계약 체결 등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입증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3.29., 2017.4.18.>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4.18.>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을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 및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4.18.>
- ⑥ 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세부적인 방법 및 제6항에 따른 최소한의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개인정보의 수집매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8.>

###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민감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민감정보가 분실·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3.29.>

###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 ② 삭제 <2013.8.6.>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4.>

- ④ 보호위원회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종류·규모, 종업원 수 및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제3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⑤ 보호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조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9., 2017. 7. 26., 2020. 2. 4.>

## 법규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 제17조(동의를 받는 방법)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동의 내용이 적힌 서면을 정보주체에게 직접 발급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전달하고, 정보주체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
  2.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3. 전화를 통하여 동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주체에게 인터넷주소 등을 통하여 동의 사항을 확인하도록 한 후 다시 전화를 통하여 그 동의 사항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4.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
  5. 동의 내용이 적힌 전자우편을 발송하여 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의 의사표시가 적힌 전자우편을 받는 방법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에 준하는 방법으로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의의 의사표시를 확인하는 방법
- ② 법 제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10. 17.>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2.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8조에 따른 민감정보
    - 나. 제1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로부터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에 따른 동의를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선택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사항 외의 사항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30., 2017. 10. 17.>
-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2조제6항에 따라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해당 아동으로부터 직접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방법 중 소관 분야의 개인정보처리자별 업무, 업종의 특성 및 정보주체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동의방법에 관한 기준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지침(이하 "개인정보 보호지침"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동의를 받도록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0., 2017. 10. 17.>

## 법규3 공직선거법

### 제222조(선거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선거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선거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當選人를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 1. 25.>

### 제223조(당선소송)

- ①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候補者를 추천한 政黨에 한한다) 또는 후보자는 당선인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제52조제1항·제3항 또는 제19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당선인을, 제187조(大統領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제2항, 제188조(地域區國會議員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제1항 내지 제4항, 제189조(比例代表國會議員議席의 배분과 當選人의 決定·公告·통지) 또는 제194조(당선인의 재결정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석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석의 재배분)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의 위법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당선인을 결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각각 피고로 하여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0. 2. 16., 2002. 3. 7., 2005. 8. 4., 2010. 1. 25., 2010. 3. 12., 2020. 1. 14., 2020. 12. 29.>
- ②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선의 효력에 관한 제220조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소청인 또는 당선인인 피소청인(제219조제2항 후단에 따라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피소청인인 경우에는 당선인을 포함한다)은 해당 소청에 대하여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선인(제219조제2항 후단을 이유로 하는 때에는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말한다)을,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용결정을 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제220조제1항의 기간 내에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대법원에, 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 3. 7., 2010. 1. 25.>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피고로 될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전원을, 국회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부의장중 1인을 피고로 한다. <개정 2010. 1. 25.>
-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로 될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제1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같은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선이 무효로 된 때에는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법무부장관을,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관할고등검찰청장장을 피고로 한다.

## 법규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제3조(처벌의 특례)

-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 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 [전문개정 2011. 4. 12.]

## 법규5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 제5조(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 ① 요양기관은 가입자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0. 12. 23., 2018. 9. 28.>
- ③ 조혈모세포이식 및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약계·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을 들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각각 고시한다. <신설 2018. 9. 28.>
-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2 제3호마목에 따른 중증질환자(이하 "중증환자"라 한다)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5조의2에 따른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정하여 공고한다. 이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요양기관 및 가입자 등이 해당 공고의 내용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5. 10. 11., 2008. 3. 3., 2010. 3. 19., 2012. 8. 31., 2018. 9. 28.>

## 법규6 국민건강보험법

### 제41조(요양급여)

- ① 가입자와 피보험자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移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범위(이하 "요양급여대상"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 2. 3.>
  1. 제1항 각 호의 요양급여(제1항제2호의 약제는 제외한다):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대상으로 정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
  2. 제1항제2호의 약제: 제41조의3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
- ③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2. 3.>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제42조(요양기관)

- ① 요양급여(간호와 이송은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양기관에서 실시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이나 국가정책에 비추어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1.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3. 「약사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
  4.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원 및 보건지소
  5.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효율적인 요양급여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장

- 비·인력 및 진료과목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을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전문요양기관에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정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한다.
1. 제2항 전단에 따른 인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제2항 후단에 따라 발급받은 인정서를 반납한 경우
- ④ 제2항에 따라 전문요양기관으로 인정된 요양기관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에 대하여는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절차 및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다른 요양기관과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6. 2. 3.>
- ⑤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요양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요양급여를 거부하지 못한다.

## 법규7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 제19조(비용의 본인부담)

-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본인일부부담금"이라 한다)의 부담률 및 부담액은 별표 2와 같다.
- ② 본인일부부담금은 요양기관의 청구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요양기관에 납부한다. 이 경우 요양기관은 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 ③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의 총액은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연간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모두 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은 더하지 않는다. <개정 2018. 6. 26., 2019. 4. 2., 2019. 6. 11., 2019. 10. 22., 2020. 10. 7., 2021. 6. 29.>
1. 별표 2 제1호(가목1)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 그 입원료로 부담한 금액
  2. 별표 2 제3호(라목5)·6)·9) 및 10)에 따라 부담한 금액
  3. 별표 2 제3호사목, 거목 및 너목에 따라 부담한 금액
  4. 별표 2 제4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5. 별표 2 제6호에 따라 부담한 금액
- ④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본인부담상한액(이하 "본인부담상한액"이라 한다)은 별표 3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 ⑤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단이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및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서 개설된 예금계좌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예금계좌를 말한다)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해당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 ⑥ 제2항 및 제5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본인일부부담금의 납부방법이나 본인부담상한액을 넘는 금액의 지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전문개정 2017. 3. 20.]

**[별표2] <개정 2021. 11. 1.>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 제1호 및 제3호 (제19조제1항 관련)**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1) 요양급여비용 총액(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대와 장애인 치과진료에 대한 가산금액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에 입원기간 중 식대[입원환자의 식사의 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부가적 요소에 드는 비용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이하 "식대가산금액"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제2호 및 제3호가목·나목·아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다만, 상급종합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4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50·100분의 40·100분의 30으로 하고,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각각 100분의 40·100분의 30으로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100분의 10으로 한다.
  - 12)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사람 중 입원치료보다는 요양시설이나 외래진료를 받는 것이 적합한 환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나. 외래진료의 경우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치료재료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모든 지역	일반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총액) × 6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4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20/100으로 한다.
		의약분업예외환자	진찰료 총액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진찰료 총액) × 60/100 + 약값 총액 × 30/100. 다만, 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 + 약값 총액 ×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20/100 + 약값 총액 × 21/100로 한다.
종합병원	동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5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읍·면 지역	읍·면 지역	일반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의약분업예외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3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5/100) + 약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 분	본인일부부담금
병원, 치과 병원, 한방 병원, 요양 병원, 정신 병원	동 지역	일반환 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의약분 업 예외환 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4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 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 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음·면 지역	음·면 지역	일반환 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의약분 업 예외환 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5/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 우에는 2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 약값 총 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의원, 치과 의원, 한의 의원, 보건 의료원	모든 지역	일반환 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의약분 업예외 환자	(요양급여비용 총액 - 약값 총액) × 30/100(임신부 외래진료의 경 우에는 10/100,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5/100) + 약 값 총액 × 30/10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21/100).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이면서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보건 소, 보건 지 소, 보건 진료 소	모든 지역		요양급여비용 총액 × 30/100.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 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기관 종류	소재지	환자 구 분	본인일부부담금
비고			<p>1. 위 표에서 "의약분업 예외환자"란 「약사법」 제23조제4항제3호 중 조헌병(調絃病) 또는 조울증 등으로 자신 또는 타인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신질환자, 같은 항 제4호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1군감염병환자 및 같은 항 제8호·제9호에 해당하는 환자를 말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을 적용받는 사람은 제외한다.</p> <p>2. 위 표에서 "약값 총액"이란 요양기관이 해당 약제를 구입한 금액의 총액을 말한다.</p> <p>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입원진료인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은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의 총액으로 한정한다.</p> <p>4. 요양기관의 외래진료를 통하여 주기적으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입(사용)하여야 하는 치료재료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료재료의 경우에는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교체를 위한 직접적 행위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비용을 제외한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위 표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으로 하여 위 표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해당 치료재료 비용 및 관련 행위 비용의 100분의 20(1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에는 14/100)을 더한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제3호마목이 적용되는 중증질환자는 제외한다.</p> <p>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의 환자가 요양기관(의원으로 한정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절차 또는 방법에 따라 외래진료를 지속적으로 받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그 다음 진료부터 (진찰료 총액 × 20/100) + [(요양급여비용 총액 - 진찰료 총액) ×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p> <p>6.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p>

- 다. 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
-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요양급여를 받는 사람이 65세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다만, 제1호가목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외한다.
  - 「약사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에서 조제하는 경우로서 진료를 담당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의약품 조제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
    - 가)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 나)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 3) 1)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 조제받은 경우[음·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창천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

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의 금액

- 가) 상급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0
- 나)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40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이 경우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 요령, 평균 입원 일수, 입원실 이용 비용 등 해당 질병군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가 산정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20

$$[\text{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 + (\text{입원 일수} - \text{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 \times \text{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 \times \text{제21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상대가치점수의 점수당 단가}$$

※ 비교

1. 위 표에서 "질병군별 기준 상대가치점수"란 질병군별 평균 입원 일수만큼 입원했을 때 발생하는 입원건당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2. 위 표에서 "질병군별 일당 상대가치점수"란 입원 일수가 1일 증가함에 따라 추가되는 질병군별 상대가치점수를 말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실을 이용한 경우에는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입원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다. 삭제 <2021. 11. 1.>

라. 가목 및 나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

3. 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으로 한정한다)·정신병원에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입원실의 2인실·3인실 및 정신과 입원실의 2인실·3인실을 이용한 경우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제1호가목1) 단서에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가. 다음의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

- 1) 자연분만에 대한 요양급여
- 2) 「모자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생아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 4)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뇌사자 또는 사망한 사람만 해당한다)의 장기등(같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을 말한다) 적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나. 다음의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1) 삭제 <2017. 9. 29.>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3)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위험 임신부에 대한 입원진료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

4) 삭제 <2018. 12. 24.>

다.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1) 1세 이상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보건의료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 2)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다만,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제1호 나목 표에 따른 금액을 부담한다.
- 3) 6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약국 또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인 요양기관에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이하 "희귀난치성질환등"이라 한다)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하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라 한다) 중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이 속한 세대(배우자를 포함한다)의 소득 및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하 "소득인정액"이라 한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이고, 희귀난치성질환자등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하 "부양의무자"라 한다)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본인일부부담금 경감 인정 신청(이하 "경감인정신청"이라 한다)을 하여 그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일부부담금의 경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서 경감인정신청을 한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소득인정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세대의 범위, 소득 및 재산의 범위,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등 소득인정액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 및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1)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인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식대가산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100분의 20

2)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해당하는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을 더한 금액. 다만, 가목에 해당하거나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만을 부담한다.

기관 종류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p>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p> <p>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p> <p>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 마목, 차목 또는 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p> <p>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p>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의료급여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2)가)에 따른 만성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만성질환에 대하여 외래진료를 받거나 해당 만성질환자가 나목2)(치매)를 제외한다) 또는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는 경우와 법률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는 경우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그 밖의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나)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 이 호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 마목, 차목 또는 하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

		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라)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외래진료	1,5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그 밖의 외래진료	1,000원. 다만,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음
	입원진료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4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가) 정신건강의학과 입원진료 또는 나목2)(치매)는 제외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나) 나목2)(치매)만 해당한다)·3), 마목 또는 차목(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다) 자목(6세 이상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외래진료 및 입원진료	없음
약국, 한국회기·필수의약품센터	「약사법」 제23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처방전에 따르지 않고 직접 조제한 경우	9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를 제외한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500원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경우	없음

※ 비고

1.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하거나 법을 제8365호 약사법 전부개정법을 부칙 제8조에 따라 한의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하고 처방전을 함께 발급하는 경우에는 1,000원을 부담한다.
  2. 외래진료로서 전산화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진단(MRI)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비를 이용한 진료에 대해서는 그 의료장비를 이용한 비용 총액의 100분의 14(나목2)(치대는 제외한다)에 따른 환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나목2(치대만 해당한다), 마목, 하목 또는 제1호나목(임신부 외래진료만 해당한다)에 따른 환자 및 1세 미만 영유아 외래진료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부담한다.
  3.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질병군에 대한 입원 진료의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은 제2호가목, 나목 또는 라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위 표의 해당 기관 종류별 입원진료에 해당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격리 입원에 대해서는 그 입원료에 한정하여 해당 입원료의 100분의 5를 부담한다.
  5. 임신부가 유산 또는 사산을 한 경우 해당 유산 또는 사산에 따른 외래진료는 위 표에 따른 임신부 외래진료에 포함한다.
- 3)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4)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5
  - 5)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6)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20
  - 7)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이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질병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에 대한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읍·면 지역 소재 종합병원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거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보훈병원의 의사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재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상급종합병원 또는 종합병원의 의사가 해당 법률에서 정한 의료지원 대상자에게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 다만, 본인일부부담금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원을 본인일부부담금으로 한다.

- 8) 2)에도 불구하고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로서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
  - 9) 희귀난치성질환등을 가진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3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10) 희귀난치성질환등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4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 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바. 65세 이상인 사람이 틀니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그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사. 65세 이상인 사람이 치과임플란트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아. 제왕절개분만을 위한 입원진료에 대하여 요양급여(라목8)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자.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가목2) 및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
- 차.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외래진료 또는 16세 이상 18세 이하 아동의 치아홈메우기 입원진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10
- 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난임진료(인공수정 및 체외수정시술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30
- 타. 다음의 경우에는 본인일부부담금 없는 것으로 한다.
- 1)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일반건강검진 결과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추가적인 진료 또는 검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이 그 질환이나 질병에 대하여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원 및 병원만 해당하되, 결핵에 대한 진료 또는 검사의 경우에는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도 해당한다)를 받는 경우
  - 2)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원격의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3) 요양급여를 의뢰받은 요양기관이 환자의 상태가 호전됨에 따라 요양급여를 의뢰한 요양기관 등으로 환자를 회송(回送)하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가 회송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

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해 정신건강의학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요양급여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표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다음 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계산한 금액은 제외한다)을 더한 금액. 다만, 6세 미만의 경우에는 본인이 부담할 비용의 부담률(제1호나목 및 다음 표에 따른 부담률을 말한다)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지 않으면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기관 종류	본인일부부담금
상급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40/100
종합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30/100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20/100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 10/100

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산아(早産兒)와 저체중 출생아의 외래진료(출생일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외래진료를 말한다)에 대한 요양급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100분의 5

- 1) 삭제 <2019. 10. 22.>
- 2) 삭제 <2019. 10. 22.>
- 3) 삭제 <2019. 10. 22.>

거. 가목1)·2)·3), 나목, 다목1), 마목, 자목 및 하목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추나요법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으로 한다.

너.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증질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41조의4 및 이 영 제18조의4에 따른 선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5. 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정신병원 외의 요양기관에서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신고한 입원병실 중 일반 입원실에 16일 이상 연속하여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입원료에 한정하여 다음 표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군에 대하여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및 질병 또는 환자 특성상 16일 이상 장기입원이 불가피한 경우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구분	본인일부부담금	
	입원일수 16일 이상 30일 이하	입원일수 31일 이상
가. 상급종합병원의 5인실 이상, 요양기관의 4인실 이상	16일째 입원일 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2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30/100
나. 상급종합병원의 4인실,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의 3인실	16일째 입원일 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3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40/100
다.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 종합병원	16일째 입원일 부터 30일째 입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원·병원·한방병원의 2인실	원일까지의 입원료 × 45/100	입원료 × 50/100
라. 상급종합병원의 2인실	16일째 입원일 부터 30일째 입원일까지의 입원료 × 55/100	31일째 입원일부터의 입원료 × 60/100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의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담한다.

- 가.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 나. 법 제5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급여가 정지되는 경우
- 다. 법 제109조제10항에 따라 공단이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 경우
- 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 중 학생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 마. 보험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 바.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별표3] <개정 2021. 6. 29.>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

1. 본인부담상한액은 지역가입자의 세대별 보험료 부담수준 또는 직장가입자의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이하 "상한액기준보험료"라 한다)에 따라 그 금액을 달리한다.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체적인 산정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가입자 또는 피양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나목에 따른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별로 가목의 산정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가.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방법

1) 계산식

$$\text{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 = \text{전년도 본인부담상한액} \times (1 + \text{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은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전년도와 대비한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되, 그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100분의 5를 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적용한다.

3) 1)의 계산식에 따라 해당 연도 본인부담상한액을 산정한 경우에 1만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나. 본인부담상한액 산정 단위 상한액기준보험료의 구간

1) 지역가입자인 경우. 이 경우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제32조제2호나목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과 같은 경우에는 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지역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2)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가)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나)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다)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라)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마)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바)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고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경우

사) 상한액기준보험료가 전체 직장가입자의 하위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경우

3. 본인부담상한액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에 12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이하 "120일 초과 입원"이라 한다)와 그 밖의 경우로 나누어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지역가입자인 경우

구 분	본인부담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 제2호나목1)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2) 제2호나목1)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3) 제2호나목1)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4) 제2호나목1)라)의 경우	280만원	
5) 제2호나목1)마)의 경우	350만원	
6) 제2호나목1)바)의 경우	430만원	
7) 제2호나목1)사)의 경우	580만원	

나. 직장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경우

구 분	본인부담상한액	
	120일 초과 입원	그 밖의 경우
1) 제2호나목2)가)의 경우	125만원	81만원
2) 제2호나목2)나)의 경우	157만원	101만원
3) 제2호나목2)다)의 경우	211만원	152만원
4) 제2호나목2)라)의 경우	280만원	
5) 제2호나목2)마)의 경우	350만원	
6) 제2호나목2)바)의 경우	430만원	
7) 제2호나목2)사)의 경우	580만원	

## 법규8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제9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전문금융소비자"란 금융상품에 관한 전문성 또는 소유자산규모 등에 비추어 금융상품 계약에 따른 위험감수능력이 있는 금융소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하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동의하여야 하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동의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소비자는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

가. 국가

나.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증권상장법인(투자성 상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을 할 때에는 전문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제19조(설명 의무)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게 계약 체결을 권유(금융상품계약자가 자문에 응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및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일반금융소비자가 특정 사항에 대한 설명만을 원하는 경우 해당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보장성 상품

1) 보장성 상품의 내용

2) 보험료(공제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보험금(공제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급제한 사유 및 지급절차

4) 위험보장의 범위

5) 그 밖에 위험보장 기간 등 보장성 상품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호 각 목의 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이하

"연계·제휴서비스등"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내용

나.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이행책임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계·제휴서비스등의 제공기간 등 연계·제휴서비스등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제46조에 따른 청약 철회의 기한·행사방법·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에 필요한 설명서를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설명한 내용을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하였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금융소비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설명을 할 때 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 또는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리는 행위를 말한다)하여 설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빠뜨려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른 설명서의 내용 및 제공 방법·절차에 관한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1. 9. 25.] 제19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3조(계약서류의 제공의무)**

- ①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는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유형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서류를 금융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내용 등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류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금융소비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서류 제공의 방법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21. 9. 25.] 제23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제28조(자료의 기록 및 유지·관리 등)**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상품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여야 하며,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1항에 따라 기록 및 유지·관리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 또는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금융소비자는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제1항에 따라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 및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사본의 제공 또는 청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제3항에 따른 열람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해당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소비자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열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하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 ⑤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다.
1. 법령에 따라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열람으로 인하여 해당 금융회사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현저히 침해되는 등 열람하기 부적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가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와 우송료(사본의 우송을 청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 ⑦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열람의 요구·제한, 통지 등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 2021. 9. 25.]

**제36조(분쟁의 조정)**

- ①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에는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분쟁조정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합의를 권고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에 회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청한 내용이 분쟁조정대상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신청한 내용이 관련 법령 또는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합의권고절차 또는 조정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금융감독원장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 ⑤ 조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조정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 ⑥ 금융감독원장은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
- ⑦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42조(소액분쟁사건에 관한 특례)**

- 조정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충족하는 분쟁사건(이하 "소액분쟁사건"이라 한다)에 대하여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제36조제6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36조제3항에 따라 서면통지를 받거나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2.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제46조(청약의 철회)**

- ①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의 철회를 한 일반금융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청약의 철회할 수 있다.
1. 보장성 상품: 일반금융소비자가 「상법」 제640조에 따른 보험증권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의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2. 제1항에 따른 청약의 철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효력이 발생한다.
    1.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일반금융소비자가 청약의 철회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을 발송한 때
    2.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받은 금전·재화등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보장성 상품: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받은 금전·재화등을 반환하고, 금전·재화등의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할 것
  3. 제1항에 따라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4.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청약이 철회된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아니한다. 다만, 일반금융소비자가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음을 알면서 청약의 철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
  6.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약 철회권의 행사 및 그에 따른 효과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6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 제47조(위법계약의 해지)

- ①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 ②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2021. 9. 25.] 제47조 중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

### 법규9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 제2조(정의) 제6항 및 제8항

- ⑥ 영 제2조제10항제1호아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인·조합·단체
  2. 「금융위원회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4. 「농업협동조합법」, 「산림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
  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래소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이하 “집합투자기구”라 한다)
  9. 지방자치단체
  10. 법 제22조제9호라목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11. 법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
  12. 주권을 외국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
  1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 가. 외국 정부
    - 나. 국제기구
    - 다. 외국 중앙은행
- ⑧ 영 제2조제10항제2호바목·같은 항 제3호바목 및 제4호바목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제6항제2호부터 제1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제12조(설명 의무) 제1항 및 제6항

- ① 영 제13조제1항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별표 3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 ⑥ 영 제13조제8항제3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란 연계·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말한다.

### 법규10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조(정의)

- ⑦ 법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장성 상품(이하 “보장성 상품”이라 한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제2호가목·나목·바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자
    - 나.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 1) 금융회사
      - 2) 제6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규정된 자
      - 3)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 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⑧ 법 제2조제9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란 모든 금융회사를 말한다.
- ⑨ 법 제2조제9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외파생상품(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에 대한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 체결의 권유를 하거나 청약 받는 것을 말한다.
- ⑩ 법 제2조제9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한다.
  4. 보장성 상품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 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 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
    - 다. 「보험업법 시행령」 제6조의2제3항제18호에 해당하는 자
    - 라. 보장성 상품을 취급하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
    - 마.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는 자
    -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자에 준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 제13조(설명 의무)

- ① 법 제19조제1항제1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위험보장 기간
  2. 계약의 해지·해제
  3. 보험료의 감액 청구
  4. 보험금 또는 해약환급금의 손실 발생 가능성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⑦ 법 제19조제1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계·제휴서비스등(금융상품과 연계되거나 제휴된 금융상품 또는 서비스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공기간
  2. 연계·제휴서비스등의 변경·종료에 대한 사전통지
- ⑧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민원처리 및 분쟁조정 절차
  2. 「예금자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보호 여부(대출성 상품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일반금융소비자의 의사결정 지원 또는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⑨ 법 제1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제22조(계약서류의 제공) 제3항**

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가 계약서류를 제공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공한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특정 방법으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서면교부
2. 우편 또는 전자우편
3.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법규11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보건진료소의 설치·운영)**

- ① 시장[도농복합형태(都農複合形態)의 시의 시장을 말하며, 읍·면 지역에서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군수는 보건의료 취약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구의 관할구역의 도서지역에는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군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의 행정구역이 행정구역의 변경 등으로 시 또는 구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구청장이 보건진료소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되,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보건진료소의 설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10.22.]

**법규12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제19호, 제19의2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3. 21.,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7. 3. 21., 2017. 7. 26., 2017. 10. 24., 2018. 3. 27., 2020. 5. 26., 2020. 6. 9., 2020. 12. 22., 2021. 10. 19.>

19.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
  - 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나. 그 밖에 배기량 125시시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
- 19의2. “개인형 이동장치”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장소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

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28.,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18. 3. 27., 2021. 10. 19.>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초등학교 교과과정인 학교
  5. 그 밖에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7.>
- ④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등은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의 도로 중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제4조의2에 따른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 ⑤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24.>
1.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시설의 주 출입문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간선도로상 횡단보도의 신호기
  2. 속도 제한 및 횡단보도에 관한 안전표지
  3.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 중 과속방지시설 및 차마의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4. 그 밖에 교육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 [전문개정 2011. 6. 8.]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6. 9., 2020. 12. 22., 2021. 1. 12.>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게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 [전문개정 2011. 6. 8.]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6. 12. 2., 2018. 3. 27.>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② 제1항의 경우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들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차 또는 노면전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2. 2., 2018. 3. 27.>
  1. 사고가 일어난 곳
  2.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3.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4.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③ 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가경찰관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④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⑤ 긴급자동차, 부상자를 운반 중인 차, 우편물자동차 및 노면전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한 경우에는 동승자 등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나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게 하고 운전을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7.>
- ⑥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6. 8.]

**법규 13 도로법**

**제10조(도로의 종류와 등급)**

-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제11조(고속국도의 지정·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고시한다.

**제13조(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으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향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2.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해당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우회하거나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를 서로 연결하는 도로
- ② 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지선의 지정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지선은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종류에 따라 각각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로 본다. 이 경우 지선이 연결되는 주된 도로의 범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 ①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자는 도로에 연결시키려는 해당 시설을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허가(이하 "연결허가"라 한다)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제23조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는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하여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④ 도로관리청은 연결허가를 할 때 도로와 다른 도로, 통로나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대량의 교통수요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교통체계상 다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연결허가를 받는 자에게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 ⑤ 연결허가를 받아 도로에 연결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법규 14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

- ①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 ②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4.10.>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제754조(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그러나 그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심신상실을 초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령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 [전문개정 2011.3.7.]

**제777조(친족의 범위)**

- 친족관계로 인한 법률상 효력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미친다.
- 1. 8촌 이내의 혈족
  - 2. 4촌 이내의 인척
  - 3. 배우자
- [전문개정 1990.1.13.]

**법규 15 민사소송법**

**제254조(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 ①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법원 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원고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④ 재판장은 소장을 심사하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으며, 원고가 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266조(소의 취하)**

- ①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 ②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 ③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서 말로 할 수 있다.
- ④ 소장을 송달한 뒤에는 취하의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상대방이 변론 또는 변론준비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일의 조서등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 ⑥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3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소를 취하한 날부터,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의 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69조(반소)**

- ①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소송의 목적이 된 청구가 다른 법원의 관할에 전속되지 아니하고 본소

- 의 청구 또는 방어의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어야 한다.
- ②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와,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02조(항소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 ①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하였음에도 원심재판장등이 제3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항소장의 부분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항소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항소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 ② 항소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 또는 제39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심재판장이 항소장을 각하하지 아니한 때에는 항소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412조(반소의 제기)**

- ①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 ②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반소의 본안에 관하여 변론을 한 때에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규 16 상법**

**제651조(고지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31.>

**제651조의2(서면에 의한 실문의 효력)**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제657조(보험사고발생의 통지의무)**

- ①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는 보험사고의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 ②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가 제1항의 통지의무를 태대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 <신설 1991.12.31.>

**제682조(제3자에 대한 보험대위)**

- ①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다만,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②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규 17 상법 시행령**

**제44조의2(타인의 생명보험)**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본인 확인 및 위조·변조 방지에 대한 신뢰성을 갖춘 전자문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자문서로 한다.

- 1. 전자문서에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액,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의 신원, 보험기간이 적혀 있을 것
  - 2. 전자문서에 법 제731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이하 "전자서명"이라 한다)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을 할 사람을 직접 만나서 전자서명을 하는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하는 본인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작성될 것
  - 3.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에 그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보험계약에 동의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지문정보를 이용하는 등 법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추어 작성될 것
  - 4. 전자문서 및 전자서명의 위조·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 [본조신설 2018. 10. 30.]

**법규 18 소비자기본법**

**제70조(단체소송의 대상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는 사업자가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권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중지를 구하는 소송(이하 "단체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 1.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소비자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정관에 따라 상시적으로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일 것
  - 나. 단체의 정회원수가 1천명 이상일 것
  - 다.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등록 후 3년이 경과하였을 것
- 2.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비자원
- 3.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전국 단위의 경제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
- 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

- 가. 법률상 또는 사실상 동일한 침해를 입은 50인 이상의 소비자로부터 단체소송의 제기를 요청받은 것
- 나. 정관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목적으로 명시한 후 최근 3년 이상 이를 위한 활동실적이 있을 것
- 다. 단체의 상시 구성원수가 5천명 이상일 것
- 라.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되어 있을 것

**법규 19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때마다 미리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3. 11., 2018. 12. 11., 2020. 6. 9.>
  - 1. 서면
  -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이 있는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 3.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내용 및 제공 목적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
  - 4. 유무선 통신으로 동의 내용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는 방법. 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 내용, 그에 대한 해당 개인의 답변을 음성녹음하는 등 증거자료를 확보·유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사후 고지절차를 거친다.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
-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 ④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필수적 동의사항은 서비스 제공과의 관련성을 설명하여야 하며, 선택적 동의사항은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 ⑤ 신용정보회사들은 신용정보주체가 선택적 동의사항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신용정보주체에게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 3. 11.>
- ⑥ 신용정보회사들(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3. 11., 2020. 2. 4.>
  -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영업양도·분할·합병 등의 이유로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하면서 그와 관련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4.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5.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6. 범죄 때문에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심각한 위험 발생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상황에서 제5호에 따른 법관의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로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검사는 지체 없이 법관에게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영장을 청구하여야 하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영장을 발부받지 못하면 지체 없이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여야 한다.
7.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질문·검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관할 관서의 장이 서면으로 요구하거나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의 제공을 요구함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8. 국제협약 등에 따라 외국의 금융감독기구에 금융회사가 가지고 있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99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정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9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9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우
  -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⑦ 제6항 각 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자 또는 제공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또는 그 밖에 유사한 방법을 통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5. 19., 2015. 3. 11.>
- ⑧ 제6항제3호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3. 11.>
- ⑨ 제8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 거래 중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와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3. 11.>
- ⑩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신원(身元)과 이용 목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 ⑪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미리 개별적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5. 3. 11.>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 [전문개정 2020. 2. 4.]

**법규20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 ① 삭제 <2015.9.11.>
- ②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외한다)의 정보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무선 통신을 통하여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1.>
- ④ 법 제3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동의 내용을 알리고 동意的 의사표시를 확인하여 동의를 받는 방식을 말한다. <신설 2015.9.11.>
- ⑤ 제4항의 방식으로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는 경우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보 제공 동意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채택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1.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유형·특성·위험도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 또는 업종의 특성
    - 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 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 다.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
  3.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는 신용정보주체의 수
- ⑥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

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방식의 특성상 동의 내용을 전부 표시하거나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나 사업장 전화번호 등 동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동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0. 8. 4.>

1.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자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3. 제공받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4.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 ⑦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았는지를 서면, 전자적 기록 등으로 확인하고, 확인한 사항의 진위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15. 9. 11., 2020. 8. 4.>
- ⑧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필수적 동의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해야 한다. <신설 2015. 9. 11., 2020. 8. 4.>
  1.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를 설정·유지할 수 없는지 여부
  2.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함으로써 제공·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의 상거래관계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신용정보주체가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에게 신청한 상거래관계에서 제공하기로 한 재화 또는 서비스를 그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 등을 체결한 제3자가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 다)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3. 신용정보주체가 그 동의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지 여부
- ⑨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법 제32조제4항 전단에 따라 필수적 동의 사항과 그 밖의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하여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서 양식을 구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주체가 각 동의사항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15. 9. 11., 2020. 8. 4.>
- ⑩ 법 제32조제6항제4호에서 "채권추심(추심채권을 추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인가·허가의 목적, 기업의 신용도 판단, 유가증권의 양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11. 8. 17., 2015. 9. 11., 2017. 1. 10., 2020. 8. 4.>
  1. 채권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채권추심회사에 제공하거나 채권추심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2.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가 변제기일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자 또는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3. 행정기관이 인가·허가 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4.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그 기업의 대표자 및 제2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5.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이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또는 어음·수표 소지인이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변제 의사 및 변제지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어음·수표의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및 보증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 위한 목적
  6. 「민법」 제450조에 따라 지명채권을 양수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기 위한 목적  
 가. 지명채권의 양도인이 그 지명채권의 원인이 되는 상거래관계가 설정될 당시 법 제3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것에 대하여 해당 채무자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그 지명채권의 채무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수 있는 경우

7. 삭제 <2020. 8. 4.>
- ⑪ 법 제32조제6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매매에 따른 위험 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위해 장외파생상품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한국은행에 제공하는 경우
  2. 「상법」 제179조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의 제3자에 대한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3. 「상법」 제172조의2에 따른 자동차보험계약의 제3자의 정보를 보험사기 조사·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 ⑫ 신용정보회사등이 법 제32조제7항 본문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사실 및 이유 등을 사전에 알리는 경우와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사후에 알리거나 공시하는 경우에 그 제공의 이유 및 그 알리거나 공시하는 자별로 알리거나 공시하는 시기 및 방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5. 9. 11.>
- ⑬ 법 제32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1. 8. 17., 2015. 9. 11., 2020. 8. 4.>
- ⑭ 법 제32조제8항에서 "제공하는 신용정보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공되는 개인신용정보의 범위, 제공받는 자의 신용정보 관리·보호 체계를 말한다. <개정 2011. 8. 17., 2015. 9. 11.>

#### 제28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이용)

법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각 호의 자가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그 업무와 관련하여 이용하기 위한 목적을 말한다.

1.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수행하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보험업 또는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개인의 건강 유지·증진 또는 질병의 사전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의 목적으로 수행하는 업무
  2. 「여성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가 수행하는 같은 법 제46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수업무로서 신용카드회원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신용카드회원에게 사망 또는 질병 등 특정 사고 발생 시 신용카드회원의 채무(같은 법 제2조제2호나목과 관련된 채무에 한정한다)를 면제하거나 그 채무의 상환을 유예하는 업무
  3.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신관서가 수행하는 보험업무
  4. 공제조합등이 수행하는 공제사업
  5.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수행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으로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업무
  6. 법 제25조의2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수행하는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업무 외에 금융기관이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 [본조신설 2020. 8. 4.]



## 법규21 약사법

### 제2조(정의) 제1호 ~ 제3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0. 17., 2008. 2. 29., 2009. 12. 29., 2010. 1. 18., 2011. 6. 7., 2013. 3. 23., 2014. 3. 18., 2016. 12. 2., 2017. 10. 24., 2019. 8. 27.>

1.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授與)]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2.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약국"이란 약사나 한약사가 수여할 목적으로 의약품 조제 업무[약국제제(藥局製劑)]를 포함한다]를 하는 장소(그 개설자가 의약품 판매업을 겸하는 경우에는 그 판매업에 필요한 장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의 조제실은 예외로 한다.

## 법규22 의료급여법

### 제7조(의료급여의 내용 등)

-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한 의료급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찰·경사
  2.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과 그 밖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과 그 밖의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
- ② 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의 방법·절차·범위·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고, 의료수가기준과 그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의료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6. 12.]

## 법규23 의료급여법 시행령

### 제13조(급여비용의 부담)

- ① 법 제10조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3. 12. 30., 2005. 7. 5., 2013. 12. 11.>
- ② 삭제 <2005. 7. 5.>
-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가 제한되는 경우, 기금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항목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는 급여비용외에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하 "급여대상

- 본인부담금"이라 한다)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수급권자가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다. <개정 2004. 6. 29.>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별표 1 제1호라목·마목, 같은 표 제2호마목·바목 및 같은 표 제3호에 따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매 30일간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 6. 29., 2007. 2. 28., 2008. 2. 29., 2010. 3. 15., 2012. 6. 7., 2014. 7. 16.>
    1. 1종수급권자 : 2만원
    2. 2종수급권자 : 20만원
  - ⑥ 급여대상 본인부담금에서 제5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금에서 부담한다. 다만, 초과금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수급권자가 부담한다. <개정 2004. 6. 29., 2007. 2. 28., 2009. 3. 31., 2017. 12. 29.>
    1. 1종수급권자 : 매 30일간 5만원
    2. 2종수급권자: 연간 80만원.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연간 24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연간 120만원으로 한다.
  - ⑦ 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권자가 제6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기금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초과금액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금액을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04. 6. 29., 2008. 2. 29., 2010. 3. 15.>

## 법규24 의료법

### 제3조(의료기관)

- ① 이 법에서 "의료기관"이란 의료인이 공중(公衆) 또는 특정 다수인을 위하여 의료·조산의 업(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하는 곳을 말한다.
- ②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9. 1. 30., 2011. 6. 7., 2016. 5. 29., 2019. 4. 23., 2020. 3. 4.>
  1.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외래환자를 대상으로 각각 그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의원
    - 나. 치과의원
    - 다. 한의원
  2. 조산원: 조산사가 조산과 임산부 및 신생아를 대상으로 보건활동과 교육·상담을 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3. 병원급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주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기관으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병원
    - 나. 치과병원
    - 다. 한방병원
    - 라. 요양병원(「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마. 정신병원
    - 바. 종합병원

### 제3조의2(병원등)

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이하 "병원등"이라 한다)은 30개 이상의 병상(병원·한방병원만 해당한다) 또는 요양병상·요양병원만 해당하며, 장기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설치한 병상을 말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3조의3(종합병원)**

- ① 종합병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 8. 4.>
1.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것
  2.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와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포함한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3.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포함한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 ② 종합병원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진료과목(이하 이 항에서 "필수진료과목"이라 한다) 외에 필요하면 추가로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수진료과목 외의 진료과목에 대하여는 해당 의료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한 전문의를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1. 30.]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종합병원 중에서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추고 각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둘 것
  2. 제77조제1항에 따라 전문의가 되려는 자를 수련시키는 기관일 것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것
  4. 질병군별(疾病群別) 환자구성 비율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전문성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8.>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에 대하여 3년마다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가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⑤ 상급종합병원 지정·재지정의 기준·절차 및 평가업무를 위탁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18.>  
[본조신설 2009. 1. 30.]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1. 제28조제1항에 따른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에서 각각 추천하는 자
  2.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3.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4. 변호사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보건의료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보건의료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 ④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5호에 따른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⑤ 위원의 지리가 빈 때에는 새로 위원을 임명하고,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 ⑥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 전문평가위원회를 둔다.
- ⑦ 그 밖에 위원회·전문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법규2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자동차의 종별 구분)**

법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는 그 규모별 세부기준 및 유형별 세부기준에 따라 별표 1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5. 7. 7., 2017. 1. 6.>  
[전문개정 2011. 12. 15.]

**[별표 1] <개정 2021. 8. 27.>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 2,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cc(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cc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cc 초과 260cc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cc 이상(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 초과)인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 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경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춘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경화물형이 아닌 것
승합 자동차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화물 자동차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현형·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 자동차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이륜 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 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를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톤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교

-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의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 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 이륜인 자동차에 축차를 붙인 자동차
  -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 나. 복수의 기준 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법규2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2조(건설기계 범위의 범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건설기계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4. 2. 5., 2021. 1. 5.>

- 덤프트럭
- 타이어식 기중기
- 콘크리트믹서트럭
- 트럭적재식 콘크리트펌프
- 트럭적재식 아스팔트살포기
- 타이어식 굴삭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에 따른 특수건설기계 중 다음 각 목의 특수건설기계
  - 가. 트럭지게차
  - 나. 도로보수트럭
  - 다. 노면측정장비(노면측정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보험금 등)

-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유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한다)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이하 "책임보험금"이라 한다)은 피해자 1명당 다음 각 호의 금액과 같다. <개정 2014. 2. 5., 2014. 12. 30.>
  - 사망한 경우에는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 부상한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다만, 그 손해액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診療酬價)에 관한 기준(이하 "자동차보험진료수가기준"이라 한다)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한다.
  -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

- 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② 동일한 사고로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할 돌 이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 8. 22.>
    1. 부상한 자가 치료 중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2.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
    3. 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지급한 후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금액 중 사망한 날 이후에 해당하는 손해액을 뺀 금액
  - ③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고 1건당 2천만원의 범위에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 법규27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제4조(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 15., 2020. 4. 7.>
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 나. 말초혈(조혈모세포를 이식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골수·안구
    - 다. 뼈·피부·근육·신경·혈관 등으로 구성된 복합조직으로서의 손·발 또는 발·다리
    - 라.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장기등이식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한 것
    - 마.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 하는 사람으로서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4. "장기등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5. "살아있는 사람"이란 사람 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사람을 말하고, "뇌사자"란 이 법에 따른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6. "가족" 또는 "유족"이란 살아있는 사람·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
    - 가. 배우자
    - 나. 직계비속
    - 다. 직계존속
    - 라. 형제자매
    - 마. 가로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 제42조(장기등의 적출·이식 비용의 부담 등)

- ①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은 해당 장기등을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한다. 다만, 이식받은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서 규정하지 아니한 비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다.

## 법규28 장애인복지법

### 제32조(장애인 등록)

- ① 장애인,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6. 22., 2017. 2. 8.>
- ② 삭제 <2017. 2. 8.>
-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장애인의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장애인이나 법정대리인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2. 8., 2017. 12. 19.>
- ④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인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7. 12. 19.>
- 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정도를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정도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0. 5. 27., 2015. 6. 22., 2015. 12. 29., 2017. 12. 19.>
- ⑦ 삭제 <2021. 7. 27.>
- ⑧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 등록증의 발급, 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장애인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5. 27., 2015. 12. 29., 2017. 2. 8., 2021. 7. 27.>

## 법규29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 제2조(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 ①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정도는 별표 1과 같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3. 3., 2010. 3. 19., 2019. 6. 4.>

### 제4조(장애인등록증 교부 등)

-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진단 결과나 장애 정도에 관한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장애인에 대한 장애인등록카드를 작성하고,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9. 6. 4.>
- ② 장애인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그 등록증이 훼손되어 못 쓰게 되었을 때 또는 제3항에 따라 「여성전용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카드는나 직불카드(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와 통합된 등록증으로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

을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31., 2016. 6. 30., 2021. 6. 4.>

-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신용카드등과 통합된 등록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할 수 있다.
- ④ 장애인은 등록증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장애인등록증과 기재사항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기재사항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별표 1] <개정 2021. 4. 13.> 장애인의 장애 정도(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잃은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라)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마)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나. 관절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중 2개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두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손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바) 한 팔의 어깨관절, 팔꿈치관절 또는 손목관절 중 하나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한 다리의 엉덩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자)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차)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다. 지체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가) 두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두 손의 엄지손가락 및 둘째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다)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라) 한 팔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마) 한 다리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다리의 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사)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을 잃은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한 팔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세 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다)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라)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두 손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및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사) 한 다리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 아)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기능이 저하된 사람

라. 신체에 변형 등의 장애가 있는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 해당함)

-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센티미터 이상 짧거나 건강한 다리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 2) 척추요골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 3) 척추위골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 4)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5)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센티미터 이하인 사람
- 6)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2. 뇌병변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보행 또는 일상생활동작이 상당히 제한된 사람
- 2) 보행이 경미하게 제한되고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현저히 제한된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보행 시 질퍽거림을 보이거나 섬세한 일상생활동작이 경미하게 제한된 사람

3. 시각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로 측정된 것을 말하며, 굴절 이상이 있는 사람은 최대 교정시력을 기 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람
-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5)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검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

가. 청력을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두 귀의 청력을 각각 8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가)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나) 두 귀의 청력을 각각 6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 발생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
- 다) 한 귀의 청력을 80데시벨 이상 잃고, 다른 귀의 청력을 40데시벨 이상 잃은 사람

나.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로 두 눈을 뜨고 직선으로 10미터 이상을 지속적으로 걸을 수 없는 사람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평형기능의 감소로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어려운 사람

5. 언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을 잃은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음성·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을 하기 곤란할 정도로 음성기능이나 언어기능에 현저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사람으로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함)

제10차 국제질병사인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10th Version)의 진단기준에 따른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않고,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및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 않은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에 따른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하지는 않으나,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의욕·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이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로 1)부터 3)까지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또는 기면증으로 기분·의욕·행동 및 사고의 장애증상이 심한 경우로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신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신부전증으로 3개월 이상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에서 가벼운 활동은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을 하면 심부전증상이나 협심증증상 등이 나타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하기 어려운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장애로 평지에서 보행해도 호흡근력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배출량) 또는 폐확산능(폐로 유입된 공기가 혈액내로 녹아드는 정도)이 정상에 축치의 40퍼센트 이하이거나 안정시 자연호흡상태에서의 동맥혈 산소분압이 65밀리미터수은주(mmHg)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C등급인 사람

2) 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 만성 간질환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잔여 간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Pugh score) 평가상 B등급이면서 난치성 복수(腹水)가 있거나 간성뇌증 등의 합병증이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75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50퍼센트 이상이 변형되고 코 형태의 3분의 2 이상이 없어진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코 형태의 3분의 1 이상이 없어진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45퍼센트 이상에 백반증(白斑症)이 있는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30퍼센트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

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2)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3)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인

가. 성인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6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5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10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발작으로 인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질,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 3회 이상의 발작(중증 발작은 월 1회 이상을 연 1회, 경증 발작은 월 2회 이상을 연 1회로 본다)이 있고, 이에 따라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 나. 소아청소년 뇌전증
  -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수시로 필요한 사람
  - 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전신발작,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筋間代) 발작, 부분발작 등으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16. 중복된 장애의 합산 판정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둘 이상 가진 장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가. 지체장애와 뇌병변장애가 같은 부위에 중복된 경우
  - 나.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중복된 경우
  - 다. 그 밖에 중복장애로 합산하여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 법규3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 [별표 1] <개정 2021. 4. 13.>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1. 지체장애인(肢體障礙人)
  - 가. 한 팔, 한 다리 또는 몸통의 기능에 영속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
  - 나.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골(指骨 : 손가락 뼈)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두 개 이상의 손가락을 모두 제1지골 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다.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lisfranc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라.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잃은 사람
  - 마.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또는 한 손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한 손가락 두 개 이상의 기능을 잃은 사람
  - 바. 왜소증으로 키가 심하게 작거나 척추에 현저한 변형 또는 기형이 있는 사람
  - 사. 지체(肢體)에 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 이상의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뇌병변장애인(腦病變障礙人)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腦卒中)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3. 시각장애인(視覺障礙人)

- 가. 나쁜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따라 측정된 교정시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나.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 다.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주시점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라. 두 눈의 시야 2분의 1 이상을 잃은 사람
- 마. 두 눈의 중심 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複視)]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인(聽覺障礙人)
  -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5. 언어장애인(言語障礙人)  
음성 기능이나 언어 기능에 영속적으로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6. 지적장애인(知的障礙人)  
정신 발육이 항구적으로 지체되어 지적 능력의 발달이 불충분하거나 불완전하고 자신의 일을 처리하는 것과 사회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한 사람
7.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礙人)  
소아기 지폐증, 비전형적 지폐증에 따른 언어·신체표현·자기조절·사회적응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정신장애인(精神障礙人)  
다음 각 목의 장애·질환에 따른 감정조절·행동·사고 기능 및 능력의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가. 지속적인 양극성 정동장애(情動障礙, 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조현병, 조현정동장애(調絃情動障礙) 및 재발성 우울장애
  - 나.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
9. 신장장애인(腎臟障礙人)  
신장의 기능장애로 인하여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0. 심장장애인(心臟障礙人)  
심장의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곤란 등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1. 호흡기장애인(呼吸器障礙人)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 기능부전으로 인한 호흡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2. 간장애인(肝障礙人)  
간의 만성적 기능부전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으로 인한 간기능의 장애로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3. 안면장애인(顔面障礙人)  
안면 부위의 변형이나 기형으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4. 장루·요루장애인(腸瘻·尿瘻障礙人)  
배변기능이나 배뇨기능의 장애로 인하여 장루(腸瘻) 또는 요루(尿瘻)를 시술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15. 뇌전증장애인(腦電症障礙人)  
뇌전증에 의한 뇌신경세포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법규31 전자서명법

### 제2조(정의) 제2호

- 2. "전자서명"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
  - 가. 서명자의 신원
  - 나.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

## 법규3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58조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며, 교육장을 임명할 때에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 법규3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 제34조(하급교육행정기관의 설치 등)

- ①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시·군 및 자치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으로서 교육지원청을 둔다. <개정 2013. 12. 30.>
- ②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 ③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되 장학관으로 보하고, 그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 ④ 교육지원청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2. 30.>

## 법규34 지역보건법

### 제10조(보건소의 설치)

-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제12조(보건의료원)

보건소 중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에 따른 병원의 요건을 갖춘 보건소는 보건의료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법규3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8., 2011. 7. 25., 2016. 1. 19., 2021. 3. 23., 2021. 8. 17.>

1. “학원”이란 사인(私人)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 또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예능을 교습(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 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 밖의 법령에 따른 학교나 도서관·박물관 및 과학관
  - 나. 사업장 등의 시설로서 소속 직원의 연수를 위한 시설
  - 다.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 또는 보고된 평생교육시설
  - 라.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나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시설
  - 바. 「도로교통법」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 사.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자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입주인을 위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2. “교습소”란 제4호에 따른 과외교습을 하는 시설로서 학원 및 제1호 각 목의 시설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개인과외교습자”란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교습비등을 받고 과외교습을 하는 자를 말한다.
  - 가.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로서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 나. 제1호사목에 따른 시설
4. “과외교습”이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의 학생이나 학교 입학 또는 학력 인정에 관한 검정을 위한 시험 준비생에게 지식·기술·예능을 교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 가. 제1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에서 그 설치목적에 따라 행하는 교습행위
  - 나. 같은 등록기준지 내의 친족이 하는 교습행위
  -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봉사활동에 속하는 교습행위
5. “학습자”란 다음 각 목의 자를 말한다.
  - 가. 학원이나 교습소에서 교습을 받는 자
  - 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
  - 다. 개인과외교습자로부터 교습을 받는 자
6. “교습비등”이란 학습자가 다음 각 목의 자에게 교습이나 학습장소 이용의 대가로 납부하는 수량료

- 이용료 또는 교습료 등(이하 “교습비”라 한다)과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모든 경비(이하 “기타경비”라 한다)를 말한다.
- 가. 학원을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학원설립·운영자”라 한다)
- 나. 교습소를 설립·운영하는 자(이하 “교습자”라 한다)
- 다. 개인과외교습자

## 법규36 형법

### 제24장 살인의 죄

####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여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2조(축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

- ① 사람의 축탁 또는 승낙을 받아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 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축탁살인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축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제256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0조, 제252조 또는 제253조의 경우에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1. 6.>

#### 제259조(상해치사)

-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제262조(폭행치사상)

전2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제257조 내지 제259조의 예에 의한다.

####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결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

### 제26장 과실치사상의 죄

#### 제266조(과실치상)

- ①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②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 제267조(과실치사)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

정 1995. 12. 29.>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2. 12. 18.]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1995. 12. 29.]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18. 10. 16.>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2018. 10. 16.>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95. 12. 29., 2012. 12. 18., 2020. 5. 19.>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제305조의2(상습범)**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2. 12. 18.>

[본조신설 2010. 4. 15.]

**제305조의3(예비, 음모)**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9조(준강간죄에 한정한다), 제301조(강간 등 상해죄에 한정한다) 및 제305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제339조(강도강간)**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법규 3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
2.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제16조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임종과정에 있다는 의학적 판단을 받은 자를 말한다.
3. "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
  - 가. 암
  - 나. 후천성면역결핍증
  - 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 라. 만성 간경화
  - 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4. "연명의료"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기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을 말한다.
6.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이하 "말기환자"이라 한다)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
7. "담당의사"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말기환자들을 직접 진료하는 의사를 말한다.
8. "연명의료계획서"란 말기환자들의 의사에 따라 담당의사가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하여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9.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법규3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조(등록 및 결정)

- ①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신청 대상자"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신청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등록을 신청할 수 있고, 그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신청 대상자가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15., 2013.5.22.>
  1. 「국가보훈 기본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에 따라 발골된 희생·공헌자의 경우
  2.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등록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
- 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9.15.>
-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요건을 확인한 후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4호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이하 "전몰군경등"이라 한다)가 되기 위하여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그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은 관련 사실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1.9.15.>
- ④ 국가보훈처장은 제3항 전단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결정할 때에는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요건이 객관적인 사실에 의하여 확인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1.9.15.>
- ⑤ 국가보훈처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제1호, 제2호 및 제1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청 대상자가 없어 등록신청을 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유공자로 기록하고 예우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5.29.>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개정 2011.9.15., 2016.5.29.>



## 특별약관 (가나다순)

### (0-9)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11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Ⅲ](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947
120대질병수술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20대질병수술Ⅱ[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96
120대질병수술Ⅱ보장 특별약관/ 120대질병수술Ⅱ[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93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맞춤고지Ⅱ]/	
12대기관양성신생물및폴립수술비(연간1회한)[맞춤고지Ⅲ](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505
2대질병입원중특정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2대질병입원중특정합병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56
3대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3대질병사망[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4
3대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3대질병후유장해(80%이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9
5대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5대골절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02
5대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5대골절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46

5대기관질병수술(관혈/비관혈)(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5대기관질병수술(관혈/비관혈)(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00
5대장기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5대장기이식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941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별약관/	
6대기관양성종양(폴립포함)수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04
6대인공관절치환수술(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6대인공관절치환수술(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949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8대중대질환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연간1회한)[맞춤고지Ⅲ](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232

### (ㄱ)

가족법률비용손해Ⅱ(의료과외)보장 특별약관	993
가족화재벌금보장 특별약관	988
각막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각막이식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942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보장/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갱신형)보장/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맞춤고지Ⅱ] 보장/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맞춤고지Ⅲ](갱신형)	

보장	170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9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74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보장/간병인사용상해 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상해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지Ⅱ](갱신 형)보장 특별약관	178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보장/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 0일)(갱신형)보장/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맞춤고지Ⅱ]보 장/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633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180일, 전환용)[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50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181-365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37
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보장	

특별약관/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갱신형) 보장 특별약관/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 지Ⅱ]보장 특별약관/간병인사용질병입원일당Ⅶ(상급종합병원)(1-180일)[맞춤고 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42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지원상해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35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Ⅱ(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간병인지원질병입원일당Ⅱ(1-180일)[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46
간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간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73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갑상선고주파열치료(최초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86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갑상선암수술후호르몬약물치료[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59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갑상선항진증치료(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06
강력범죄피해보장 특별약관	990
갱신형 특별약관의 자동갱신 제도특별약관	1027
결핵진단보장 특별약관/ 결핵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15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결핵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51



경추/흉추및요추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경추/흉추및요추골절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47
고액치료비암진단보장 특별약관/ 고액치료비암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58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고혈압(원발성)약제치료[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00
고혈압(원발성)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고혈압(원발성)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99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보장 특별약관/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43
골절수술Ⅱ(1-5급)보장 특별약관/ 골절수술Ⅱ(1-5급)[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01
골절수술보장 특별약관/ 골절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절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골절수술[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00
골절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골절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66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치아파절제외)[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1
골절진단Ⅱ(치아파절제외)(1-5급)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Ⅱ(치아파절제외)(1-5급)[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42
골절진단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골절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40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골절철심제거수술(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19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골절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10회한, 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44
관상동맥성형술(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관상동맥성형술(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5
관상동맥우회술(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관상동맥우회술(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4
급성신우신염진단보장 특별약관/ 급성신우신염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312
급성심근경색증진단보장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급성심근경색증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8
김스치료보장 특별약관/ 김스치료[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944

(ㄴ)

남성생식기암진단보장 특별약관/ 남성생식기암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61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남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63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1회한)보장 특별약관/ 남성특정비뇨기계질환수술(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8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보장 특별약관/ 뇌동맥류(비파열성)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316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뇌정위적방사선수술(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39
뇌졸중진단보장 특별약관/ 뇌졸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뇌졸중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뇌졸중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4
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뇌출혈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304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보장 특별약관/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70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상급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766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30일한, 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68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보장 특별약관/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76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상급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772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종합병원) 보장 특별약관/ 뇌혈관허혈심장질환통원일당(연간60일한, 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74
뇌혈관질환(Ⅰ)진단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Ⅰ)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Ⅰ)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Ⅰ)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6
뇌혈관질환(Ⅱ)진단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Ⅱ)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Ⅱ)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Ⅱ)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7

뇌혈관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80
뇌혈관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뇌혈관질환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5

(=)

다발경화증진단보장 특별약관/ 다발경화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89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보장 특별약관/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다발성질병수술(3대질병)[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99
당뇨고혈압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당뇨고혈압질환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03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6.5%이상)[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97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당뇨병진단(당화혈색소7.5%이상)[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95
당뇨인슐린치료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당뇨인슐린치료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98
대상포진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대상포진눈병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31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보장 특별약관/ 대상포진진단(10일면책)[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92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12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보장 특별약관/  
 대장용종제거수술비(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09

독감(인플루엔자)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독감(인플루엔자)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30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 10일면책)(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독감(인플루엔자)항바이러스제치료(연간1회한, 10일면책)[맞춤고지Ⅱ]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81

(㉓)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10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로봇암수술(다빈치및레보아이)(최초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06

(㉔)

만기고객보험료할인 제도특별약관 .....1023

만성간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만성간질환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85

만성당뇨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만성당뇨합병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90

만성신부전증진단보장 특별약관/ 만성신부전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86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진단보장 특별약관/  
 만성특정폐질환(중기이상)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87

말기간경화진단보장 특별약관/ 말기간경화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82

말기신부전증진단보장 특별약관/ 말기신부전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84

말기폐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말기폐질환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483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도이상)진단보장 특별약관/  
 무릎관절연골손상(중등도이상)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971

무릎관절연골손상(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무릎관절연골손상(중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970

무사고 고객 계약전환 제도 특별약관 .....1025

(㉕)

법률비용손해(민사소송)보장 특별약관 .....981

법률비용손해(행정소송)보장 특별약관 .....984

보험금 선지급 제도특별약관 .....1028

보험료 자동납입 제도특별약관 .....1022

보험료납입면제대상보장 특별약관/  
 보험료납입면제대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951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 특별약관/  
 보험료납입지원(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Ⅱ] 특별약관 .....731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 특별약관/  
 보험료납입지원(유사암진단)[맞춤고지Ⅱ] 특별약관 .....729

보험료환급(6대질환진단) 특별약관/  
 보험료환급(6대질환진단)[맞춤고지Ⅱ] 특별약관 .....725

보험료환급/지원(6대질병진단) 특별약관 .....722

(스)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41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상급종합병원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Ⅱ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81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상부소화관(위포함)용종제거수술(급여,연간1회한)[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507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상해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18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상해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16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상해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69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사망[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34

상해사망추가보장 특별약관/ 상해사망추가[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34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29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30

상해수술(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27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Ⅲ(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8

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81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84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82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89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상해수술입원일당(1-120일,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186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1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수술(당일입원제외, 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194
상해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155
상해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157
상해입원일당(1-1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10일, 중환자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159
상해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153
상해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156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158
상해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154
상해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162
상해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165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1인실)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1인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61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2-3인실)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2-3인실)[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	163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보장 특별약관/ 상해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213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 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 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상해재활치료(연간15회한, 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224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상해질병통합수술(상급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맞춤고 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976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상해질병통합수술(종합병원)(전신마취시간당(3시간이상))[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973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보장 특별약관/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3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보장 특별약관/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상해통원수술(당일입원포함, 경증상해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96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상해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25

상해후유장해(20%이상)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20%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5

상해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50%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7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50%이상, 월지급형)[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9

상해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80%이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6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보장 특별약관/  
 상해후유장해(80%이상, 월지급형)[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38

상해흉터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상해흉터성형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08

상·뇌혈관질환(특정 II)장애진단보장 특별약관/  
 상·뇌혈관질환(특정 II)장애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755

상·뇌혈관질환(특정 III)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90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상·뇌혈관질환(특정 III)특정재활치료(1일1회, 연간90회한, 급여)[맞춤  
 고지 II]보장 특별약관 .....777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78

심뇌혈관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수술[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76

심뇌혈관질환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15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 급여) 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 급여)(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검사비(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737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약제치료비(연간1회한, 급여)[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574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577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 II(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 II(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 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심뇌혈관질환주요치료비 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36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연간1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심장부정맥고주파냉각절제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687  
 심한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심한상해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05  
 심혈관질환(149)진단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149)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149)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149)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1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대동맥판막협착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316  
 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심혈관질환(심근병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317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주요심장염증)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2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2대)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4  
 심혈관질환(특정Ⅰ, 149제외)진단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Ⅰ, 149제외)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Ⅰ, 149제외)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Ⅰ, 149제외)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0  
 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심혈관질환(특정Ⅱ)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13

(○)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아나필락시스쇼크진단(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15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보장 특별약관/  
 안면부상해흉터성형수술(1cm이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10  
 암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수술[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60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666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암수술(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63  
 암수술보장 특별약관/ 암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57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검사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733  
 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  
 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  
 년)[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29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Ⅱ(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521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Ⅲ(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00
암주요치료비Ⅲ(유사암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Ⅲ(유사암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Ⅲ(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암주요치료비Ⅲ(유사암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88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58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75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866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암주요치료비Ⅳ(종합병원)(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66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05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입원일당(1-180일, 요양병원제외)[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602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암직접치료통원일당(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16
암직접치료통원일당보장(종합병원) 특별약관/ 암직접치료통원일당보장(종합병원)[맞춤고지Ⅱ] 특별약관	719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보장 특별약관/ 암진단Ⅱ(소액암및유사암제외)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301
암진단Ⅱ(유사암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암진단Ⅱ(유사암제외)[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3
암진단Ⅱ(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보장 특별약관/ 암진단Ⅱ(유사암제외)[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암진단Ⅱ(유사암제외)추가[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51

양성뇌종양진단보장 특별약관/ 양성뇌종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03

양전자방출단층촬영영상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 보장 특별약관/  
양전자방출단층촬영영상지원비(PET)(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  
장 특별약관 .....956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보장 특별약관/  
여성통합암(전이포함)진단(유사암제외)[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68

여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여성특정생식기질환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91

여성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여성특정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59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12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보장 특별약관/  
요양병원암입원일당(1-9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09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보장 특별약관/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원격지암직접치료통원임시거주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54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위·십이지장·대장양성종양(폴립포함)진단(연간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516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보장 특별약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89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  
형)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  
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주요치료비I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  
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24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주요치료비III(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813

유사암진단 II 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진단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진단 II [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유사암진단 II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56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보장 특별약관/  
응급실내원진료비(응급)[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945

의료사고법률비용보장 특별약관 .....989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제도특별약관 .....1021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약제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03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이상지질혈증(고지혈증포함)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02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이식형제세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969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인공심박동기삽입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968

(ㄷ)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자궁근종고강도초음파집속술(HIFU)(최초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784

자동차사고성형수술보장 특별약관 .....209

장애인전용보험전환 제도특별약관 .....1023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보장 특별약관/

재진단암진단(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82

재진단암진단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재진단암진단Ⅱ[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77

재진단암진단Ⅱ보장 특별약관/ 재진단암진단Ⅱ[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73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52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갑상선림프절전이제외)(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46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56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549

전이암진단(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20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전이암진단(최초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18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69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63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77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78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62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방사선치료[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66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약물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59

전이암항암약물치료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약물치료[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67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전이암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73

전자서명 제도특별약관 .....1023

조혈모세포이식수술보장 특별약관/  
 조혈모세포이식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69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주요관절손상수술치료(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12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보장 특별약관/  
 중대한재생불량성빈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8

중대한특정상해수술보장 특별약관/

중대한특정상해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06

중증갑상선암진단보장 특별약관/ 중증갑상선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85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중증난치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749

중증루푸스신염진단보장 특별약관/  
 중증루푸스신염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28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중증외상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22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뇌혈관)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  
 장 특별약관 .....957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신규암)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92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심장)산정특례대상(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59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특암)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중증질환자(중복암및재등특암)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92

중증폐렴진단보장 특별약관/ 중증폐렴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중증화상/부식진단II보장 특별약관/  
 중증화상/부식진단II[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148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중증화상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220

지정대리청구서비스 제도특별약관 .....1019

질병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질병CT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46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질병MRI검사지원비(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45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보장 특별약관/  
 질병간호간병통합서비스입원일당[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631

질병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3

질병사망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추가보장 특별약관  
 질병사망보장[맞춤고지II] 특별약관/ 질병사망추가[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243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7대및경증질병제외,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53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49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48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백내장 및  
 대장용종제외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51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60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질병제외)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상급종합병원,경증질병제외)[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62

질병수술(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종합병원)[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758

질병수술IV(1-5종)(수술회당지급)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IV(1-5종)(수술회당지급)(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IV(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IV(1-5종)(수술회당지급)[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55

질병수술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맞춤고지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646

질병수술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II]보장 특별약관 .....619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16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 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 상급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25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질병수술입원일당(1-120일, 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22
질병입원일당(1-10일)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1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87
질병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10일, 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90
질병입원일당(1-1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10일, 중환자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93
질병입원일당(1-180일)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180일)(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18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84
질병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180일, 종합병원)[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88
질병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180일, 중환자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91
질병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85
질병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1인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96
질병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30일, 상급종합병원, 2-3인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600
질병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1인실)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1인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94
질병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2-3인실)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일당(1-30일, 종합병원, 2-3인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598
질병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 보장 특별약관/ 질병입원후통원일당(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맞춤고지Ⅱ] 보장 특별약관	713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 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 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질병재활치료(연간15회한, 급여)[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753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질병특정급여시술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764
질병후유장해(50%이상)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50%이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7
질병후유장해(80%이상)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80%이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248
질병후유장해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질병후유장해[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246

(㉜)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 연간3회한, 급여)보장 특별약관/ 창상봉합술(안면/경부)(1일1회, 연간3회한, 급여)[맞춤고지Ⅱ] 보장	
--	--

특별약관 .....961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창상봉합술(안면/경부외)(1일1회,연간3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963  
 추간판장애수술보장 특별약관/ 추간판장애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75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추간판장애신경차단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964  
 충수염수술보장 특별약관/ 충수염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74  
 치매CDR척도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 보장 특별약관 .....914  
 치매MRI·CT·PET검사지원비(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917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보장 특별약관 .....932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상급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937  
 치매직접치료통원일당(연간12회한,종합병원)보장 특별약관 .....935

(㉞)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카티(CAR-T)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61  
 크론병진단보장 특별약관/ 크론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88

(㉟)

통풍진단보장 특별약관/ 통풍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494  
 통합상해진단보장 특별약관/ 통합상해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통합상해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통합상해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151  
 특별조건부(활증보험료법) 제도특별약관 .....1022  
 특정 신체부위·질병 보장제한부 인수 제도특별약관 .....1019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특정NGS유전자패널검사(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741  
 특정감염병 II 입원일당(1-30일)보장 특별약관/  
 특정감염병 II 입원일당(1-30일)[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28  
 특정감염병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특정감염병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91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II,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 보장 특별약관/  
 특정감염질환(특정패혈증 II, 수술후감염, 기타감염)수술[맞춤고지 II]보  
 장 특별약관 .....943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특정뇌동맥질환 혈관색전술(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686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급여)(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특정마취치료(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78  
 특정마취합병증진단보장 특별약관/  
 특정마취합병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34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장(최초1회한) 특별약관/  
 특정바이러스질환진단보장(최초1회한)[맞춤고지 II] 특별약관 ...517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특정생검조직병리검사(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743  
 특정암진단보장 특별약관/ 특정암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99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보장 특별약관/  
 특정외상성뇌손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50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보장 특별약관/  
 특정외상성뇌출혈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49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보장 특별약관/



특정외상성장기손상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150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특정유방병변진공흡인절제치료비(최초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  
 장 특별약관 .....787

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특정중증치료(4종)(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966

특정질병수술(남성)보장 특별약관/  
 특정질병수술(남성)[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70

특정질병수술(여성)보장 특별약관/  
 특정질병수술(여성)[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71

특정질환로봇수술(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특정질환로봇수술(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781

특정천공진단 보장 특별약관/ 특정천공진단[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506

특정치매약제치료(급여,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921

특정패혈증진단보장 특별약관/ 특정패혈증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20

(표)

폭력피해보장 특별약관 .....991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  
 (치료당,36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2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최경증치매및경도알츠하이머치매)(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2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6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비급여)[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8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8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  
 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  
 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0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  
 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갱신형)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  
 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37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10  
 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갱신형)보장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진단후  
 10년)(기타피부암및갑상선암제외)[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37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연간1회한)[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391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치료당,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91

(중)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541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536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883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주요치료비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889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894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  
하이클래스암특정치료비(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903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63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하이클래스항암약물치료(연간1회한,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360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23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28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 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 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36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426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세기조절)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431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3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6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양성자)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18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성의약품)치료(연간1회환)(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주요방사성의약품)치료(연간1회환)[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442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중입자)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47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환)(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환)[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323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환)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 II(연간1회환)[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21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약물치료후5대질병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87
항암방사선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28
항암방사선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38
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36
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33
항암방사선치료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 II[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31
항암방사선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26
항암방사선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 II(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36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33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31
항암방사선치료 II 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 II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326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항암방사선치료후9대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290
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 형)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 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44
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치료당, 진단후10년)[맞 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56
항암약물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54
항암약물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치료당, 진단후10년)[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50
항암약물치료 II (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 II [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47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갱신형) 보장 특별약관	368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 II (상급종합병원(국립암센터포함))[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365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47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 II (치료당)[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358
항암약물치료 II 보장 특별약관/ 항암약물치료 II [맞춤고지 II] 보장 특별약관	342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49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치료당)[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454
허혈심장질환수술보장 특별약관/ 허혈심장질환수술[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681
허혈심장질환진단보장 특별약관/ 허혈심장질환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허혈심장질환진단[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허혈심장질환진단[맞춤고지 II](갱신형)보장 특별약관	309
혈전용해치료비 II (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혈전용해치료비 II (연간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72
혈전용해치료비 II (최초1회한)보장 특별약관/ 혈전용해치료비 II (최초1회한)[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68
혈전용해치료비 III(연간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보장 특별약관/ 혈전용해치료비 III(연간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맞춤고지 II]보장 특별약관	573
혈전용해치료비 III(최초1회한)(특정순환계질환 I)보장 특별약관/	

혈전용해치료비Ⅲ(최초1회한)(특정순환계질환Ⅰ)[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571
혈전제거치료Ⅱ(연간1회한,급여)보장 특별약관/ 혈전제거치료Ⅱ(연간1회한,급여)(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혈전제거치료Ⅱ(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혈전제거치료Ⅱ(연간1회한,급여)[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682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보장 특별약관 /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혈전주요치료비(연간1회한)[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912
화상수술보장 특별약관/ 화상수술(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화상수술[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화상수술[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204
화상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보장 특별약관/ 화상입원일당(1-180일,중환자실)[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167
화상진단보장 특별약관/ 화상진단(갱신형)보장 특별약관/ 화상진단[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화상진단[맞춤고지Ⅱ](갱신형)보장 특별약관 .....	148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보장 특별약관/ 희귀질환자산정특례대상[맞춤고지Ⅱ]보장 특별약관 .....	747

## 용어정의 (가나다순)

### (가)

#### < 가족 >

1.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2. 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3.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4. 피보험자의 법률상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5. 피보험자의 며느리
6. 피보험자의 사위

#### < 가지급보험금 >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보험수익자 청구에 따라 확정된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

#### < 강제집행과 담보권실행 >

강제집행이란 사법상 또는 행정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에 대하여 국가가 강제 권력으로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담보권실행이란 담보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하여 해당 담보권을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 < 계약자적립액 >

장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을 지급하기 위하여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회사가 적립해 둔 금액

#### < 공제계약 >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는 다수의 집단이 결합해 보험사고가 발생할 위험을 제거하고 공동으로 재산을 형성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공탁보증보험료 >

‘공탁보증보험’은 가압류, 가집행, 가처분 신청등 각종 민사사건을 신청함에 있어 권리인(피신청인)의 손해 보전을 위해 법원이 담보 제공을 원할 경우 신청인(보험계약자)이 납부해야 할 공탁금액을 대신하는 상품이며, ‘공탁보증보험료’는 이러한 공탁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보험자에게 내는 일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 <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 절차 >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할 경우 국세 기본법 및 지방세법에 의하여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가산금 징수, 독촉장 발부 및 재산 압류 등의 집행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 (나)

#### < 납입기일 >

계약자가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날을 말합니다.

#### < 납입최고(독촉) >

약정된 기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을 경우, 회사가 계약자에게 납입을 재촉하는 일

### (마)

#### < 미경과보험료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차회 보험료 납입시기까지 남아있는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일시납 또는 월납으로 보험료를 납입하는 경우는 미경과보험료를 적립하지 않습니다.

### (바)

#### < 보상책임은 지는 한도 >

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보험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액수

#### < 법정상속인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민법에서 정한 상속의 순위에 따라 상속인이 되는 자

#### < 보장개시일 >

회사가 보장을 개시하는 날로서 계약이 성립되고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하나, 회사가 승낙하기 전이라도 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을 말합니다. 또한, 보장개시일을 계약일로 봅니다. 단, 일부 보장의 경우 별도로 보장개시일을 정할 수 있습니다.

#### < 보장성보험 >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 <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입금액이라 함은 보험사고 발생시 보험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말합니다.

#### < 보험년도 >

보험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의 연도(당해연도 보험계약 해당일로부터 다음년도 보험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를 말합니다.

**< 보험요율 >**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험단위 또는 단위위험 당 적용된 비율로서 보험요율에 보험금액을 곱하게 될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됩니다.

**(스)**

**< 사업방법서 >**

회사가 보험사업의 허가를 신청할 때 첨부해야 하는 기초서류의 하나로서, 피보험자의 범위, 보험금액 및 보험기간에 대한 제한 등이 기재된 서류를 말합니다. 각 상품별 사업방법서 별지는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의 상품공시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

의료법 제54조(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에 의거 설치된 위원회로서 신의료기술에 관한 최고의 심의기구를 말합니다.

**< 신체장애 >**

신체의 상해, 질병 및 그로 인한 사망을 말합니다.

**<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라 함은 의식은 있으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신의 행위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금지산자가 되며, 금지산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심신박약자 >**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라 함은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마음이나 정신의 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을 말합니다. 민법에서는 법원의 선고에 의해 한정치산자가 됩니다. 이 경우 한정치산자의 법률행위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실종선고 >**

어떤 사람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 이상 계속될 때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또는 감사의 청구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는 법원의 결정으로 민법 제27조(실종의 선고)를 따릅니다.

**(오)**

**< 연대책임 >**

여러명의 계약자가 각각 동일한 내용의 책임을 부담하는 관계

**< 예금자보호제도 >**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미리 보험료를 받아 적립해 두었다가 금융기관이 경영악화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보험금 및 환급금을 각각 예금자 1인당 1억원까지 지급함

로써 예금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위법계약 >**

금융상품판매업자들이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서 정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또는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

**(ㅈ)**

**< 자필서명 >**

계약자가 성명기입란에 본인의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란에 사인(signature) 또는 도장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합니다.

**< 중상해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를 말합니다.

**(ㅊ)**

**< 차량 >**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동차’,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 세그웨이류,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이륜자동차’,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개인형이동장치(시속25킬로미터 미만의 속도제한 및 총량 30킬로그램 미만) 역시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됩니다.

**< 최저보증이율 >**

공시이율이 낮아지더라도 회사가 보증하는 최저한도의 적용이율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보증이율이 0.3%인 경우 공시이율이 0.1%로 낮아지더라도 계약자적립액은 공시이율(0.1%)이 아닌 최저보증이율(0.3%)로 적립됩니다.

**(=)**

**< 타인을 위한 계약 >**

계약자가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체결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 통신판매계약 >**

전화·우편·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ㅊ)**

**< 표준체보험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여 위험률을 할인, 할증하지 않은 보험



(후)

**< 할증위험률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가 회사가 정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높게 적용되는 위험률

**< 해지 >**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계약 또는 효력이 상실된 계약을 장래를 향하여 소멸시키거나 계약유지 의사를 포기하여 만기일 이전에 계약관계를 청산하는 것

**<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합의 >**

회사가 보험수익자의 경제적·신체적·정신적인 어려움, 경솔함, 경험 부족 등을 이용하여 동일·유사 사례에 비추어 보험수익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합의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blue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blue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blue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blue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A large rectangular area with a blue border, containing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